

# Part 01

제1장

## 규제개혁 추진 개요

## 기고문

- 일자리 창출,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이 첫걸음이다.** 6  
송 재 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
- 경제의 역동성,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12  
김 준 경 한국개발연구원장
-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 규제개혁을 혁신하다.** 21  
정 윤 수 한국행정연구원장

- 제1절 규제개혁의 의의 및 추진 방향** 30
- 제2절 규제개혁 추진체계** 32
1. 개요 32
  2. 추진체계별 기능 및 역할 33
  3.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36
  4.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0
  5.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설치 및 운영 42
- 제3절 규제등록제도** 44
1. 규제등록제도 개요 44
  2. 규제등록제도 개편 44

# 2015

## WHITE PAPER ON REGULATORY REFORM BOOK

### Part 02

제2장

## 규제개혁 추진 주요 성과

<b>제1절 규제개혁장관회의</b>	<b>54</b>	<b>제5절 공장설립이 쉬운 나라 프로젝트</b>	<b>89</b>
1. 추진현황	54	1. 프로젝트 추진배경	89
2.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요	54	2. 추진경과	89
3.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 실적	56	3. 추진결과 및 주요 개선사례	90
4. 주요 규제개혁 추진 방안	60		
<b>제2절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b>	<b>65</b>	<b>제6절 규제개혁신문고</b>	<b>96</b>
1. 추진배경	65	1. 규제개혁신문고 개요	96
2.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요	65	2.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처리 절차	96
3.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실적	66	3. 2015년도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성과	98
		4. 주요 규제 개선 사례	98
		5. 향후 계획	105
<b>제3절 각 부처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 (핵심규제 등 기존규제 정비)</b>	<b>71</b>	<b>제7절 경제단체 건의과제</b>	<b>106</b>
1. 개요	71	1. 추진배경	106
2. 핵심규제 정비 추진 배경 및 경과	72	2. 개요	106
3. 핵심규제 등 기존규제 정비 주요 성과 및 사례	72	3. 경제단체 건의과제 처리결과	107
<b>제4절 인증규제 정비</b>	<b>78</b>	<b>제8절 손톱 밑 가시 규제 개선</b>	<b>112</b>
1. 추진배경	78	1. 개요	112
2. 추진경과	79	2. 손톱 밑 가시 개선 실적	113
3. 추진결과	79	3. 손톱 밑 가시 주요 개선 사례(10選)	115
4. 정비 원칙	80	4. 현장간담회 운영실적	123
5. 주요 정비사례	81		
6. 향후 관리방안	82		



Part 03

제3장

규제개혁시스템 운영 성과

<b>제9절 일몰규제 정비</b>	<b>125</b>	<b>제1절 규제비용총량제 운영</b>	<b>144</b>
1. 규제일몰제 개요	125	1. 의의 및 도입배경	144
2. 2015년 기한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	126	2. 관련 조직 등 운영 방식	145
3. 주요 심사사례	126	3.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현황	149
4. 향후 계획	127	4.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주요 사례 및 실적	151
		5. 향후 계획	154
<b>제10절 지방규제 개선</b>	<b>128</b>	<b>제2절 규제영향평가 강화</b>	<b>155</b>
1. 추진 배경	128	1. 강화배경	155
2. 추진 개요	128	2. 주요내용	156
3. 2015년도 지자체 규제개혁 성과 및 주요 개선사례	133	3. 규제비용·편익자동산정시스템	158
4. 향후 계획	135	<b>제3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b>	<b>160</b>
<b>제11절 규제개혁 국제협력</b>	<b>136</b>	1. 개정 배경	160
1. 개요	136	2. 개정안 주요내용	161
2. 국제회의 참석	137	3. 개정 추진경과	162
3. 규제개혁 양자 협력 강화	140	4. 향후 계획	163
4. OECD 규제개혁 국가별 심사 준비	141	<b>제4절 규제정보화 추진</b>	<b>164</b>
		1. 추진배경 및 경과	164
		2. 규제정보포털의 주요 기능	165
		3. '15년 규제정보화 중점추진 내용	166

# 2015

## WHITE PAPER ON REGULATORY REFORM BOOK

### Part 04

제4장

###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1절 개요	172	제8절 교육·과학기술 및 문화 분야	477
제2절 재정·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174	1. 교육부	477
1. 기획재정부	174	2. 미래창조과학부	494
2. 공정거래위원회	182	3. 문화체육관광부	513
3. 관세청	189	4. 문화재청	534
4. 금융위	192	5. 원자력안전위원회	537
5. 금융감독원	225	제9절 보건복지·여성 분야	543
제3절 산업·에너지 분야	231	1. 보건복지부	543
1. 산업통상자원부	231	2. 여성가족부	584
2. 중소기업청	256	3. 식품의약품안전처	592
3. 특허청	266	제10절 통일·외교 및 국방 분야	646
제4절 국토·해양 분야	269	1. 국기보훈처	646
1. 국토교통부	269	제11절 일반행정·안전 분야	649
2. 해양수산부	349	1. 행정자치부	649
제5절 농림·산림분야	396	2. 인사혁신처	650
1. 농림축산식품부	396	3. 경찰청	653
2. 농촌진흥청	421	4. 법무부	659
3. 산림청	422	5. 국민안전처	665
제6절 방송·통신 분야	429	6. 국민권익위원회	692
1. 방송통신위원회	429	제12절 규제영향평가	698
제7절 노동·환경 분야	437	1. 규제영향분석제도 개요	698
1. 고용노동부	437	2. 평가항목 및 요소	701
2. 기상청	446	3. 작성 대상 및 절차	704
3. 환경부	447	4.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706

## Part 05

— 제5장

### 규제개혁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1절 2015년 규제개혁 평가	716
1. 규제개혁 평가 개요	716
2. 2015년 규제개혁 평가결과	717
3. 부처별 평가결과	717
4. 분야별 평가결과	718
제2절 2016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720
1. 기본방향	720
2. 중점 추진분야	720

## Part 06

— 제6장

### 부 록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일지	724
1. 본 회의 개최 일지	724
2. 경제분과위원회 개최 일지	726
3. 행정사회분과위원회 개최 일지	727

## 일자리 창출,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이 첫걸음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 **송재희**

2015년은 우리 경제가 내수·수출 동반부진, 메르스 쇼크, 청년 고용난 등 안팎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내수침체가 지속되고 제조업 위기가 고착화 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FTA로 대표되는 세계 무역질서 재편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유럽, 중국 등 주요 경제권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특히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중국과 거대 신흥국들의 성장둔화가 장기화될 전망이어서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이 지속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국 무역 의존도가 25~30%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러한 불안한 대내외 환경은 내수침체를 장기화하여 온전히 내수에 의존하는 자영업자부터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고 고용시장의 가장 큰 수요자인 소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경영불안이 확산되어 '청년 고용절벽'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심각한 고용난의 악순환이 우려된다.

이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역시 끝없는 고용절벽에 막혀 나아가지 못하는 청년층이다. 2012년 7.5%였던 청년실업률은 3년 내내 증가해 2015년 9.2%를 기록했고, 금년 1월에는 9.5%를 넘어서며 2000년 이후 16년 내 최고 실업률을 기록했다. 이마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생과 공무원·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등 공식 실업률 통계에는 잡히는 않는 잠재적 구직자 그룹을 제외한 수치다. '헬조선', '흙수저' 등 사회적 불신감을 내포한 극단적인 표현들이 유행하는 것만 보아도 취업과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순환시스템에 진입 단계에서부터 좌절감을 맛보는 청년들이 체감하는 절망과 불안감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다른 경제정책에 앞서 우선해야 할 과감한 규제개혁은 결코 멈출 수 없는 과제이다.

## 1. 2015년 규제개혁 평가: 다양한 채널의 전방위적 규제개혁 노력

지난해 정부는 경제계와 협력하여 '전방위적 규제개혁 노력'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장관회의, 총리 주재 현장점검회의,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규제발굴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단순한 과제해결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해결과정에서 건의자와 소관부처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대국민 신뢰도를 향상시킨 점은 지난해 정부 규제개혁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이다.

먼저 두 차례의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그린벨트, 인증, 금융, 융합·신산업, 바이오헬스, 외국인투자 등 고질적인 규제애로를 패키지로 추가 개선하였다. 토론시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는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실시간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였으며, 해당부처가 관련 규정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개선하고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규제개선 수혜를 받고 있는 지까지 확인하고 있음은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에 더하여 총리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규제개혁을 단기적 과제가 아닌 장기적 추동력을 가지고 지속 수행할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귀중한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규제개혁신문고는 '부처검토 → 국무조정실 조정·소명 →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로 이어지는 3심제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15년말 누적 수용률이 40%에 달했는데 '13년 규제건의 수용률 8%와 비교해 괄목할 만한 성과다.

민과 관이 합동하여 규제애로를 발굴, 개선한 성공적인 사례도 규제적용의 주체인 정부와 경제혁신의 근본주체인 기업계의 협력 추진을 위해 향후 귀감이 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성과다. 중소기업의 인증비용은 '06년 평균 1,300만원에서 '15년 3,000만원으로 2.3배나 증가, 일부 인증은 영세중소기업에게 매출액의 6%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 등 중소기업들의 과도한 인증부담은 줄곧 지적되어 온 사안이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지난해 5월 개최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개선'하라고 직접 지시한 바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민·관 기관이 합동하여 인증혁신을 위한 '민관합동 인증혁신 TF'를 구성하였다. 이후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의를 수렴하는 등 수요자인 기업과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113개의 인증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실시되었고 매년 5,420억원 가량의 인증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현장밀착형 규제개선'에 중점을 두어 기업의 규제애로 사항인 손톱 밑 가시 해결에 집중하여 2,434건의 규제 및 기업애로를 발굴, 1,625건을 처리완료하고 490건을 개선하여 30.2%의 수용률을 기록하였다.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두 차례의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개선이 시급한 266건의 현장규제를 집중 검토하고 이 중 196건을 개선하여 무려 73.7%의 수용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중소기업들에 고질적인 행정·비용 부담으로 작용하는 환경 분야 건의과제 중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초기에 지적된 애로사항을 포함한 35건을 대폭 수용·개선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7,800억원의 투자 유발, 960억원의 비용절감, 8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바, '찾아와서 해결까지 해주는' 적극적인 규제개혁 활동에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계는 적극 환영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해 규제개혁 우수사례 150건 중 현장체감 39건을 표본조사한 결과 총 1조 1천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1만 2천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투자와 고용창출의 순환효과야 말로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의 강력한 동기가 되기에 이러한 분명한 성과를 통해 규제개혁이 경제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그 추진력을 잃지 않고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 중소기업 규제부담 체감은 개선 추세, 더욱 현장중심적 개혁 기대

이러한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기업현장과 일반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 대상 「규제현황 및 대응」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개선 정도’ 문항에 40.7%의 업체가 ‘만족한다’로 응답해 2014년 말 실시된 동일조사 결과 대비 23.9%p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은 다소 아쉽다는 목소리가 높다. 역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2015년 중소기업 경영환경 및 정책우선순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수활성화(38.3%)에 이어 규제개혁(23.5%)이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지만 아직도 59.7%의 중소기업 응답업체들은 규제의 개선 정도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규제개혁의 최대 수혜기업군이 대기업 위주(80%)라는 현장 인식이 팽배하여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건의기회·건의채널·협상기회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는 규제개혁 시스템 정착 요구가 크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업부담지수를 살펴봐도 비슷한 양상이다. 전체 부담지수는 하락하는 추세지만 기업규모별 부담지수로 구분해보면 대기업이 104, 중견기업 103, 중소기업 110으로 조사되어 중소기업은 여전히 전체 기업부담지수보다 높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시 인력부족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은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 대한 행정업무 처리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바, 행정조사 부담지수는 2014년 136에서 오히려 3포인트 증가한 139를 기록했다. 이러한 수치들만 종합해 보아도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의 성과는 무시할 수 없지만 규제개혁이 가장 절실한 중소기업의 규제상황은 좀 더 수요자 중심일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3. 수요자가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기대한다.

우리경제가 성장과 분배 모든 부문에서 한계점에 도달해 중소기업 육성과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정·관·학계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소수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과거의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다수의 중소기업이 끊임없는 혁신과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매년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제시 해왔으며 2015년 한해에만 3조 260억원의 정책자금이 집행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 노력이 뚜렷한 성과가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다. 이는 지원정책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해당 정책을 담아내는 규제환경이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환경과 업계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규제가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효과적인 정책목적 달성에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 등을 가장 큰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체질개선과 혁신을 고려할 때 그 중심에 서야 할 중소기업들의 '수혜자로서 입장'을 항상 우선 순위로 상정해야 함은 간과해서는 안 될 전제 조건이다.

첫째,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규제개혁을 가시적 성과 지표에 집착하여 발굴 건수와 수용 비율 등에 초점을 맞추면 정작 개선된 규제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의 목소리는 외면될 수 있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은 규제개선 체감도 조사(중소기업중앙회), 기업부담 지수(대한상공회의소) 등을 조사, 발표하고 있지만 사후 반응조사 수준으로 단순 참고자료가 될 뿐 규제개혁의 목표와 결과를 설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직접 당사자인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이에 규제 설계나 변경 시 기업과 국민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켜 규제개혁 과정과 그 결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 협의체제 정착이 요구된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규제부담 능력 차이를 고려하여 규제면제·적용유예 등 차등규제 적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규제유연법에 근거를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규제를 적용할 때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한국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규제가 일관되게 적용돼 역진성 현상이 크게 나타난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중소기업규제 총 8,291건 중 규제차등적용은 137건(1.7%)에 불과, 역진적인 규제를 발굴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규제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규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정규제 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공동으로 조사한 ‘중소기업 행정부담 애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33.7%가 정부에 대한 의무보고(신고) 등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기존의 관행에 기댄 법령에 적합하지 않는 불필요한 서류제출과 과도하게 많은 행정절차 등은 행정업무 전담인력 배정 자체가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에게는 그 자체로 커다란 규제 장벽이다. 정부가 민간과 공동의 노력으로 부당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더라도 그 집행과정에서 각종 행정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 이탈된 목적성과 상시성은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이는 개선 전·후 제도를 적용 받는 기업은 물론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드는 정부와 경제계의 노력을 이중 삼중으로 낭비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관부처별로 각종 인증·허가·검사 등 의무 행정사항에 대해 법령의 근거 내에서 서류와 절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관련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끝으로 정부가 규제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대국민 홍보는 물론 민관합동 협력체 구성 등을 통해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경제환경 전반에 대한 규제개혁은 일시적·단기적으로 수행·완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정해진 과제가 아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환경에 발맞추지 못하는 온갖 규제들로 인해 기업과 국민의 애로사항은 일거에 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개혁 추진은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민의 지지야말로 그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다.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꾸준한 지지는 추상적인 성과 수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현장에서 수요자가 체감하고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 결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생산적 과정을 통해 나오는 것이다. 국민의 지지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이자 보상이자 보상이다.

# 경제의 역동성,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한국개발연구원장 김 준 경

## 1. 규제개혁의 필요성

지난 수십 년간 한국경제는 “Korean Miracle”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장가도를 달려왔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극복한 2000년대 초중반 이후 기존 추격형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이 전 세계 평균치를 하회하는 등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생산성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하면서 잠재성장률은 최근 3% 아래로 떨어지고 있으며 기업의 수익성은 외환위기 때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좀비기업의 비중은 15%에 달하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진입률, 퇴출률이 낮아지면서 경제의 신진대사가 저하되는 모습이 뚜렷하고, 2000년대 중반 이래 가계부채 증가율은 가계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경제의 저성장 기조 속에 사회통합이 훼손되는 모습 또한 뚜렷하다. 조기퇴직, 자영업으로 내몰린 노인의 빈곤율이 48%에 달하는 가운데 청년실업률은 9%를 넘어 세대 간 갈등이 노정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1/3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도 개선이 요원하다. 사회 이동성, 노력을 통한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인터넷 검색창에는 계층, 분배, 형평이라는 키워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사회통합의 훼손 또한 그 원인을 저성장 기조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하여 구성원 간에 나눌 파이가 커지는 상황, 즉 plus-sum 사회에서는 잠재적으로



분배, 형평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 반면, 경제가 성장을 멈춰 파이가 고정된 zero-sum 사회에서는 분배, 형평의 요구가 쉽사리 밖으로 표출되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사회통합을 제고할 수 있을까? 중국경제의 급부상과 더불어 가격경쟁, 모방에 기초한 공급자 주도형 성장전략은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지속적인 창조와 혁신활동, 차별화 전략을 통해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를 끊임없이 창출해 내는 것이다.

현 시기 새로운 제품, 서비스는 주로 ICT와 타 산업의 융합,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등 산업융합을 통해 발굴될 전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규제는 대부분 업종별로 특화된 수직적 규제체계의 형태를 띠고 있어異업종 간 수평적 융합을 통한 새로운 제품, 서비스의 창출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기술은 급속히 진화하고 소비자 니즈는 부단히 변화하는데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포용이 용이하고 산업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의 설계, 즉 규제개혁은 경제의 역동성과 사회통합을 회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 2. 현 정부 규제개혁의 성과와 평가

현 정부는 지난 3년간 규제개혁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에 놓고 규제정비와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해 왔다. 개혁작업에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기업인들과 관련 단체 등 다양한 피규제자들이 폭넓게 참여하였으며, 정비대상도 중앙정부 규제사무뿐만 아니라 지자체 규제 사무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부문이 망라되었다. 이렇듯 규제개혁이라는 정책과제가 선언적 수사로 끝나지 않고 광범위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개혁에 대한 최고 국정책임자의 강력한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비가 동반되었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정책에 있어서 현 정부의 가장 큰 차별성은 규제개혁에 대한 최고 국정책임자의 관심과 의지를 추진체계를 통해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의 대통령 주재회의는 규제개혁이 국정운영의 중심 과제로 설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규제개혁장관회의는 규제개혁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이는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명임과 동시에 회의를 정례화하여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의해 추진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또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서도 기업의 창의성과 혁신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규제개혁이 선언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개혁과제 도출부터 정부가 아닌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정부 주도의 과제 선정은 현장과 유리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에서 제안된 개혁과제가 제안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개혁과제의 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규제개혁 신문고’, ‘손톱 및 가시’, ‘규제 기요틴’ 등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정책은 기업들이 직접 과제를 건의하고 민관합동으로 그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함으로써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참여도 및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규제개혁신문고의 경우 2013년에는 300건이 건의되고 그 가운데 24건만 수용되었던 것이 2015년 11월에 이르면 7,715건의 건의건수와 3,097건의 수용건수를 기록하여, 민간의 건의건수와 정부의 수용률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있어 무엇보다 긍정적인 것은 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이 일회성의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규제의 신설·강화 시 발생하는 규제순응비용을 측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의 폐지·완화를 유도하는 규제비용총량제가 2014년 7월 8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15년 4월에는 대상 부처가 14개로 확대되었으며, 올해 3월부터는 22개 부처로 확대·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2015년 5월에는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T/F를 구성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검증과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정책 실무자들의 분석서 작성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비용편익 자동산정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실무자들이 규제입안 업무에 임하는 태도와 방식의 변화를 견인하여 궁극적으로 규제품질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3.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향후 과제

OECD는 규제개혁을 넓은 의미의 구조개혁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규제개혁이란 단순히 피규제자의 규제부담 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과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정의하는 작업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규제개혁이란 곧 구조개혁”이라는 관점에서 향후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 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 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의 패러다임 전환

새로운 제품, 서비스가 시장에 등장하면 통상 그것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들이 도입된다. 그런데 규제를 도입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새로운 제품, 서비스로 인해 파생되는 부정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해당 제품, 서비스의 시장 출시 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관리하는, 즉 진입규제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신제품,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진입규제 방식의 정책대응은 평가의 기회를 정부가 선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외 시장의 흐름에 역행할 개연성이 높다. 특히 ICT 기술의 진화와 함께 급변하는 소비자의 니즈 및 시장환경을 고려했을 때, 시장참여자를 정부가 선별하는 방식의 규제는 더 이상 정당하지 않으며 효과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앞으로의 규제방식은 시장참가자와 경쟁기준을 정부가 설정하는 사전적 규제 방식에서 탈피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되 정부 개입은

부정적인 효과들을 선별, 해소하는 데에 집중하는 사후적 규제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 시기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융합 활성화, 신산업 창출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이 규제장벽에 막히지 않도록 사후적 행태규제체계로의 정비가 매우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 나. 이해관계자 참여와 갈등조정

규제개혁은 기존 규제우산 아래에서 암묵적으로 보호를 받아왔던 이익집단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기존 사업자들이 제도정비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성을 주장하고 그것이 여론화되면 개혁의 추진력은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 물론 이익집단들의 우려와 저항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통행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시장이 성숙되어 시장에 의한 자정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만을 우려해 규제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견과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면적인 시행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시행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프리존 제도는 주목할 만한 정책이다. 규제프리존은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2개씩 선정하여 전략산업의 육성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들을 해당 지자체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로서, 전국 단위의 전면적 도입이 용이하지 않은 규제완화조치를 일정 지역에 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즉, 한정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제도정비를 시행해 본 후 그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가 정밀하게 설계·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조정자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 다. 규제개혁 시스템 강화

### 1) 규제영향분석제도 내실화

최근 규제비용편의 자동산정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계량화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 되었다. 이제 문제는 규제영향분석의 전반적인 품질도 함께 개선될 수 있느냐 여부다. 이와 관련한 정책 제언들은 주로 분석서 작성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분석역량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규제영향분석이 입법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하나의 절차로만 간주될 뿐 정책결정의 판단근거로 활용되지 않는 현 환경에서는 규제의 영향에 대한 유의미한 분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내실 있는 분석을 수행할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영향분석의 품질개선은 결국 정부의 정책결정 시스템의 선진화로 귀결된다. 즉, 규제영향분석이 규제입안의 초기 단계에 수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결정하는 문화와 제도가 갖추어질 때에만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 과제가 추진력을 갖게 될 것이며,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관심과 투입되는 자원은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 2) 일몰제도 내실화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도입 시 존속기한 혹은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일몰기한이 도래했을 때 자동으로 효력이 정지되거나, 그간의 성과와 필요성을 검토하여 효력정지 혹은 규제내용을 정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정부는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여 일몰기한을 단축(5년→3년)하는 등 규제일몰제 운영을 개편하는 중에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제에 대해 제대로 된 사후평가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규제일몰제가 자칫 실적 위주로 부실하게 운영될 위험이 있다. 규제성과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지 않으면 막연한 부작용을 우려하여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규제들만 정비되고 정작 면밀한 점검과 정비가 필요한 중요한 규제들은 성과와 상관없이 존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일몰제는 규제 폐지·완화·개선을 통해 기존 규제를 합리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러한 수단이 실효성을 지니려면 사후평가제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몰 도래 1~2년 전에 국무조정실과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심층분석이 필요한 규제들을 선별하고, 해당 규제들에 대해 심층적인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라. 지방규제개혁

지방규제개혁은 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하나로서, 기업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가 존속하는 한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은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규제개혁의 성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의 지방규제개혁은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대한 조사·정비, 지자체간 자율경쟁 유도, 지방공무원들의 월권행위 및 소극행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세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간 6,440건의 불합리한 지방규제가 선별되어 2016년 상반기까지 단계별로 정비될 예정이며, 지자체 간 경쟁을 유발하고 지역별 규제정보의 제공을 위해 ‘전국규제지도’가 작성·공시되고 있다. 또한 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추진 실적과 성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를 선정, 특별교부금 지급과 포상, 승진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규제개혁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지자체가 주체가 되기보다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규제개혁을 지역경제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현안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단지 피평가자의 위치에서 중앙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한다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다.

지방규제개혁은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야만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거시적인 방향이 설정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지자체가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스스로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법률정비 차원에서 지원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앞서 언급한 규제프리존은 지자체 중심의 규제개혁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규제프리존을 통해 지역경제발전과 지방규제개혁이라는 정책목표가 서로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4. 글을 마무리하며

최근 한국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으며, 장기적인 성장이나 정체냐의 기로에서 있다. 현재 정부는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개혁, 금융개혁, 노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개혁의 대상이 대부분 지대의 혁파임을 감안할 때 모든 개혁의 중심에는 결국 규제개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 정부는 규제개혁에 대한 최고 국정책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규제개혁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통해 과거 정부와 비교되는 규제개혁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산업 창출·융합 촉진을 위한 사후규제·네거티브규제로의 전환, 규제개혁 시스템의 강화와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을 향후 과제로 안고 있다. 규제개혁 성공사례의 지속적인 발굴과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의 동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다루지 못한 두 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먼저 현재 국회에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이 개정안은 규제비용총량제의 실시, 규제유예 등 사후규제·네거티브규제의 적용, 일몰제의 확대 적용, 덩어리규제 정비 등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본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규제영향분석이 수행되지 않는 의원발의 입법안이 전체 발의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회기를 거듭할수록 점점 증가하여 제19대 국회에서는 93%를 넘고 있으며,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서 의원입법안이 차지하는 비중도 86%에 달하고 있다. 현재 의원발의의 규제 관련 법안에 대해 규제사전검토서 작성 및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효성 있는 규제영향분석이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핵심 전제라고 할 때, 규제영향분석이 수행되지 않는 의원입법안은 규제개혁 노력에 있어 커다란 공백이 된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중차대한 과제에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 규제개혁을 혁신하다.

한국행정연구원장 정윤수

세계는 바야흐로 규제경쟁의 시대라 할 수 있다. 규제경쟁에는 ‘바닥으로의 질주(race to the bottom)’와 ‘꼭대기로의 질주(race to the top)’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국가간의 투자유치와 기업부담 감축을 위한 규제완화 경쟁인 ‘바닥으로의 질주’가 일반적이다<sup>1</sup>. 그러나 분야와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는 ‘꼭대기로의 질주’도 필요하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 규제나 새로운 경제통합 지역의 환경이나 경쟁분야에서는 규제강화 경쟁이 관찰되기도 한다. ‘바닥으로의 질주’건 ‘꼭대기로의 질주’건 국가간 규제경쟁의 목적은 자국의 경쟁력의 강화와 기업과 국민의 부담완화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에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십 수년의 규제정비 추진과 제도개선을 통한 나름의 규제개혁 경험을 축적하고 OECD의 모범적인 규제개혁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면 아직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15년은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로 임기 초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들이 세부적인 수정·보완 절차를 거쳐 어느덧 성과를 내기위한 강력한 집행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은 이전 정부의 규제개혁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규제개혁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혁신’의 정책적 의미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방향에 대해 전망하기로 한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을 ‘규제개혁의 혁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혁신이란 말 그대로 가죽을 단단하게 하여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처럼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은 기존의 규제개혁 시스템을 강화하여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sup>1</sup> D. Vogel & Kagan, R.A.(2004), Dynamics of Regulatory Chang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둘째, 혁신이 새로운 작업방식의 도입을 의미하듯이 박근혜 정부의 규제정비 추진방식은 국무총리가, 때로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추진방식으로 어느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새로운 규제정비 방식이기 때문이다.

## 1.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혁신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시스템은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으로 기본 틀이 구축되었다. 규제개혁 추진은 크게 기존 규제의 정비와 신설·강화 규제의 통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개혁 총괄기구로 부처의 규제개혁을 감독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만들어 기존규제 정비를 별도로 추진한 이명박 정부를 제외하면 두 가지는 모두 규제개혁위원회 소관업무이다. 기존규제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규제품질을 개선하고 규제의 경제적 합리성을 심사·통제하는 것이다.

2014년 시범 도입한 규제비용총량제는 이런 의미에서 이전 정부의 규제 심사제도를 혁신한 것이다. 신설·강화 규제의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규제영향분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에서는 규제영향분석제도가 규제의 개선과 품질관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유는 현재의 행정여건으로는 충실한 규제영향분석과 이에 기초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취지는 사실상 퇴색되어 규제영향분석서는 하나의 형식요건으로만 존재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언젠가는 불필요한 규제로 개혁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우려가 공공연히 얘기되는 상황에서 규제비용총량제의 도입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규제 정비의 계획적 추진을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을 제공하였다. 규제영향분석이 형식화된 이유 중의 하나는 분석담당 공무원의 인식부족이다. 공무원 입장에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은 인력과 시간 투입을 요하는 부담스런 업무다. 또한 분석수준에 대한 실질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에 부처의 입장에서나 규제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충실하게 분석서를 작성할 유인이 없다.



그러나 규제비용총량제가 시행되면 규제영향분석의 중요한 평가요소인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이 한층 강화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존규제의 개선 폭이 정해지므로 규제 영향분석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규제비용총량제가 2년이 넘게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현재의 상황은 기대와 함께 우려도 야기한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총량제에 대한 오해와 함께 어려운 여건에서 비용분석과 함께 기존규제 개선의 부담까지 떠 앉은 부처의 두려움이다. 후술하겠지만 지금은 이러한 두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실시와 함께 규제개혁 시스템 혁신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는 규제개혁 신문고 제도이다. 규제개혁 신문고도 2014년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소개되고 도입되었다. 기존의 규제와 관련된 애로사항 처리방식과는 달리 건의가 들어오면 건의에 대한 부처답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별도의 검토절차를 거치게 된다.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소명절차를 통해 부처에서 수용거부한 사안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015년 3월 기준으로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규제건의는 6,981건으로 이중 37.5%인 2,620건이 개선 되었는데 이는 제도도입 이전의 수용율 8%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sup>2</sup>. 또한 규제조정실에서 발표한 2015년도 상반기 총리실 현장 규제개혁 10선에서 신문고 건의개선안은 5건이었는데 하반기 20선에서는 16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만큼 신문고제도가 규제개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추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3</sup>.

규제신문고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도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강화에 기여하였다. 규제신문고는 밑으로부터의 개선요구를, 규제개혁장관회의는 위로부터의 개선 요구를 발생시키는 전략적 회의기구이다. OECD에서 항상 강조하듯이 규제개혁은 정치적 지지가 확고해야하고 이러한 확고한 지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개혁의 추진동력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규제는 대부분 독립규제기관이 관장하지 않고 일선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다. 또한 부처의 규제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sup>2</sup> 국무조정실(2015), 통계로 알아보는 규제개혁 현황

<sup>3</sup> 규제혁신기획관실·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2015), 총리실 현장 규제개혁

규제개혁은 흔히 부처의 업무권한과 조직약화의 징조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강력한 정치적 지지가 없다면 상시적 규제개혁은 더욱 어렵다. 따라서 정기적인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개혁의 추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밖에도 규제개혁 시스템과 관련한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규제조정실의 조직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었고, 규제비용총량제 지원을 위한 규제전문 위원회와 규제연구센터의 설치, 규제정보화시스템 및 규제등록제도 개선, 규제영향분석 자동화시스템 구축 등 규제개혁의 역량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규제개혁의 제도적 기반 강화는 장기적으로 규제품질 개선과 규제부담 완화라는 실질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2. 규제개혁 추진방식 혁신

박근혜 정부의 기존규제 개선은 국무총리가 규제현장에서 규제개혁 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에서 건의된 개선과제를 직접 점검하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으로 추진되고 있다. 총리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는 규제개선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보여줌으로써 규제개혁의 추동력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은 총리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뿐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규제개선 간담회도 있다. 규제조정실과 규제개선 추진단이 협력하여 각 지방의 현장업체들과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규제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개선사례로는 기존공장의 부지확 장을 통한 공장 증축이 가능하도록 건폐율 특례를 적용한 공장증축 사례, 계획관리지역 내 화장품공장 입지규제완화 등이 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규제개선활동 게시자료에 따르면 2015년 모두 12회의 지방순회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sup>4</sup>. 2015년 12월 3일 개최된 제3차 규제개혁

<sup>4</sup>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홈페이지(2016.3.9.)



현장점검회의의 결과보고에 의하면 경제단체 건의과제 총 90건 중 73건이 수용되었고, 경쟁제한적 규제 18건이 개선되었다<sup>5</sup>. 이러한 정부의 현장중심 규제개혁 추진은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실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생산적이다. 또한 중앙부처의 입장이 아닌 규제집행 일선에 있는 지자체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고,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는 중앙부처, 지자체, 현지 기업간의 규제협력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런 현장밀착형 규제개선이 장기적으로 투명하고 참여적인 규제거버넌스 구축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규제개혁 시스템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개혁 추진방식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면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단순히 개인의 민원해소 창구가 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애로사항 해결과정에서 규제개선의 원칙과 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수렴된 개선 건의안은 물론 부처협의를 필요하면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하여 해결방안이 도출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절차적 규칙과 건의안 처리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3. 지속가능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과제

이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는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이전 정부에서 적용해온 규제개혁 시스템을 한 단계 개선한 혁신적 조치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은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아직 진행 중이란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규제개혁은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있어 해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일시적인 혁신이 아닌 혁신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혁신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규제개혁 여건은 만만치가 않다. 2016년은 박근혜 정부 4년차로 다양한 이유로 규제개혁의 가시적 성과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정치적 지지와 지속가능성이다. 앞서 소개한 박근혜

<sup>5</sup>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2015),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의 결과보고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 시스템과 추진방식의 혁신이 일정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조급해하지 않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인내가 요구된다. 또한 개선된 규제개혁 시스템이 지속가능하고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가장 시급한 개선은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제고이다. 정부는 규제개혁에 소요되는 자원을 명확히 인식하고 평가해야 한다. 지금처럼 명령지시적 규제개혁으로는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어렵다. 무엇보다 각 부처별로 규제개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평가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규제개혁의 성과에 따른 차등적용이 시급하다. 얼마 전 사회 초년생들 사이에 열정페이와 화두가 된 적이 있었다. 인적·물적 지원이 결여된 명령지시만 있는 규제개혁은 이런 열정페이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미국의 ‘비재정지원 위임사무 개혁법률(Unfunded Mandate Reform Act)’처럼 일정 수준이상의 지출을 요하는 규제개혁 과제는 필요한 재원이나 업무에 대한 협의를 통해 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규제담당 개별 공무원차원에서도 규제개혁의 유인을 줄 수 있도록 규제개혁 업무성과를 개인성과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규제개혁이 부처의 기득권 약화로 인식되는 상황이라면 규제개혁 성과를 개인성과에 반영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규제개혁의 시계를 단기 중심에서 장기로 확대해야 한다. 5년 단임제 정부에서 반영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단기중심의 규제개혁은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지금의 연간단위 단기적 규제정비계획에서 벗어나 중장기 규제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기초해서 단기 과제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단기 및 중장기 규제정비계획에는 목표하는 규제정비의 핵심적 결과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지표를 담아서 규제개혁 평가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폭넓은 규제개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정부 내에서 부서간, 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규제개혁을 위한 상시적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기관간의 상시적 인력교환이나 업무교류를 통해 범정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부처의 규제개혁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직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의 지평확대도 필수적이다. 정부의 나홀로 규제개혁은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 입법부의 지원과 규제개혁 원칙의 공유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규제개혁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정략적 접근, 이데올로기적 주장 등은 규제개혁 추진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한다. 규제개혁은 규제완화나 경제자유화와는 다른 개념임에도 아직도 규제개혁을 규제완화나 폐지와 동일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규제는 확실하게 집행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 또는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대부분의 규제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이후 관리를 하지 않아 변화된 현실과 맞지 않거나, 위험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거나 복잡한 절차와 서류요건으로 과도한 행정부담을 발생시키는 규제들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 필요한 규제라 하더라도 규제목적 달성에 더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방식이 있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처럼 규제의 철학과 보다 상세한 규제의 원칙을 행정규제기본법에 명시하고 이를 국회와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에도 규제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만 미국에 비하면 다소 추상적 수준의 원칙만 간략히 제시하고 있다. 미국사례나 영국이나 EU에서 사용하는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 개념을 도입하여 보다 구체적인 규제의 원칙을 제시한다면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규제개혁을 위한 보다 폭넓은 사회적 합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규제개혁을 둘러싼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불필요한 대립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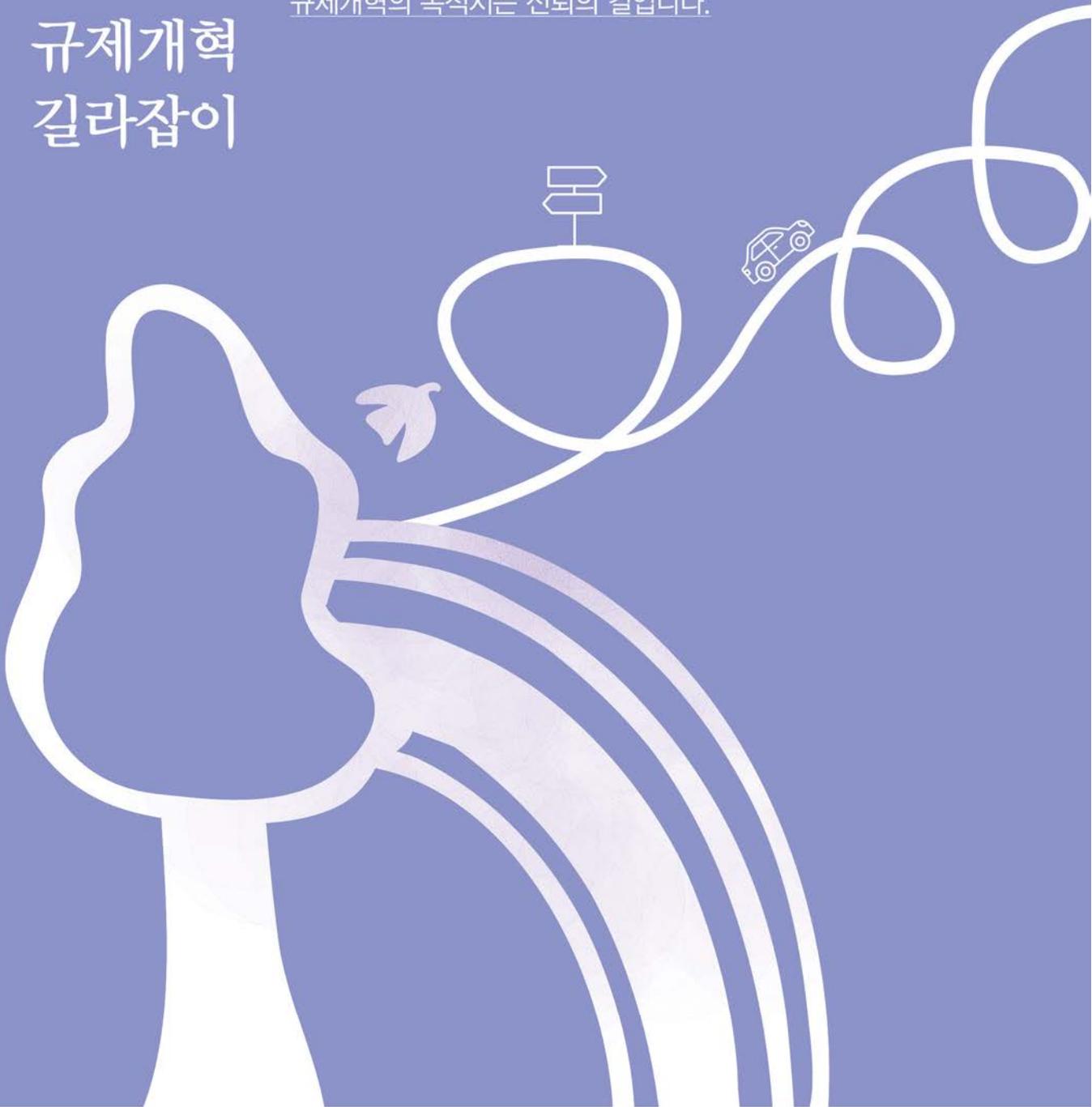
규제경쟁의 시대에도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기존의 정제된 규제개혁 시스템을 개선하고 규제개혁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회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개혁시스템과 추진방식을 혁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의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규제개혁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규제개혁 시스템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들이다. 지금은 이러한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남겨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 2015

WHITE PAPER ON REGULATORY REFORM BOOK

## 믿음직한 규제개혁 길라잡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제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규제개혁의 목적지는 신뢰의 길입니다.





# Part 01

## — 제1장



### 규제개혁 추진 개요

제1절 규제개혁의 의의 및 추진 방향	30
제2절 규제개혁 추진체계	32
1. 개요	32
2. 추진체계별 기능 및 역할	33
3.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36
4.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0
5.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설치 및 운영	42
제3절 규제등록제도	44
1. 규제등록제도 개요	44
2. 규제등록제도 개편	44

## 제1절 규제개혁의 의의 및 추진 방향

◎ 집필자 박현수 사무관 ① 044-200-2452 ㉠ qkrgustrn@pmo.go.kr

그동안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노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었다. 그간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규제개혁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다루었으며, 4차에 걸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 덕분에 가시적인 성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중소기업 CEO들은 이번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 2위로 규제개혁을 선정하기도 했다.

먼저 정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현장·수요자 중심의 목소리를 듣고 입간판 합법화, 음식점의 옥외 영업 제한 완화 등의 생활 속 규제애로 해결부터 녹색 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주택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까지 많은 분야의 핵심 규제를 혁파해왔다. 또한 규제비용총량제의 도입과 규제 등록제도 개편, 규제개혁 신문고 구축을 통해서 단편적인 규제 개혁이 아닌 시스템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규제 개선의 현장에서 개최하여 건축·국토·산업 등 11개 분야 6,400여건의 지방규제 개선과제에 대한 정비 추진 및 산업단지 규제를 점검하는 등 다양한 분야를 살펴보기도 했다.

이 외에도 경제단체에게 건의를 받아 개선하는 경제단체 건의과제(규제 기요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애로를 발굴·개선하는 손톱 밑 가시도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개혁 신문고의 경우에는 2014년 3월 이후 수용률이 40%를 돌파하는 등 규제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5년은 작년의 규제시스템 개혁을 기반으로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특히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는 2015년 7월 처음으로 개최되어 12월까지 총 3차례 개최되었는데, 이는 4차례 개최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이어 현장을 점검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전 내각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규제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방안으로 규제등록체계를 규제 사무 중심에서 규제 조문 중심으로 개편하였고, 규제편의·비용 자동산정시스템을 구축하여 규제업무의 과학화를 이루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2015년에는 규제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해이다. 규제개혁 현장 체감사례 200개 조사결과, 2015년 투자·비용절감 등 현장에서 5.5조원 규모의 경제효과 체감을 달성했다. 이는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걸림돌 제거가 2016년부터 본격적인 투자집행으로 나타난다고 볼 때,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이라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 읽는다’는 대통령의 지침이 경제에 실효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 제2절 규제개혁 추진체계

- ◎ **집필자** 정재상 사무관 ☎ 044-200-2416 ✉ kkirri@pmo.go.kr  
 박성준 사무관 ☎ 044-200-2398 ✉ econlaw@pmo.go.kr  
 안 호 사무관 ☎ 044-200-2443 ✉ anho1226@pmo.go.kr  
 홍성애 사무관 ☎ 02-6050-3292 ✉ hong@pmo.go.kr

### 1. 개요

좋은 규제개혁거버넌스 확립은 규제개혁 성공의 제1요건(OECD 강조)이며,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다양한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박근혜정부의 경우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신설('14년 3월)하였고, 국민의 규제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한 규제개혁 신문고('14년 4월)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015년에는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통한 체감도 제고를 위해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신설하였다.

#### 〈 규제개혁 추진체계 변경 현황 〉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2015년 추진체계
○ 규제개혁위원회(규제조정실)	○ 규제개혁위원회(규제조정실) - 신설·강화 규제 심사 중심	○ 규제개혁위원회(규제조정실) - 규제개혁정책 총괄	○ 규제개혁위원회(규제조정실) - 규제개혁 총괄
○ 총리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덩어리 규제 개혁 및 규제정책 관련 대통령 보좌	○ 대통령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 대통령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 규제개혁기획단 - 덩어리규제 개혁	○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 기업 현장 규제애로 개선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손톱 밑 가시 등 기업 규제애로 해소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손톱 밑 가시 등 기업 규제애로 해소
○ 규제신고센터 - 규제민원 처리		○ 규제개혁신문고 - 규제민원 처리	○ 규제개혁신문고 - 규제민원 처리



## 2. 추진체계별 기능 및 역할

### 가. 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제개혁을 효과적이고 획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신설(대통령훈령 제328호), 2014년도, 2015년도 각 두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규제개혁장관회의에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으며 관계장관이 참석하며 회의 안건 등에 따라 각계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이 참석하였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규제개혁의 강력한 추진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규제개혁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규제개혁 관련 법제도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한편, 일반 국민 및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기능한다.

### 나.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현장 및 수요자가 원하는 규제의 개선을 통해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실제 현장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신설하였다. 회의는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및 지역 기업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며 주요 규제개선 대책 및 지역 기업의 현장 규제애로 개선 등을 논의한다. 2015년도에는 7.30 경기도 안산의 반월·시화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10.20 광주 테크노파크, 12.3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3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다 강력하게 전파하기 위해 2016년도에는 격월마다 개최할 예정이다.

### 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신설·강화 규제의 대한 규제심사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 2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효율적인 규제정책 추진 및 심사를 위해 경제분과 위원회 및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 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전담하는 사무국의 역할과 동시에 규제개혁장관회의 운영,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등 주요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조율 및 각 부처의 규제개혁정책 추진 지원 등을 총괄한다. 규제조정실은 14년 11월, 규제개혁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규제심사관리관실의 3국 11과로 운영되고 있다.

## 마.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기업 현장애로 및 불합리한 규제(손톱 밑 가시) 등의 발굴·개선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설치(국무총리훈령 제615호)하여 운영하고 있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3인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기구로, 4개팀 26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의 공동으로 운영하던 민관합동규제개혁 추진단이 '13년 2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폐지로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는 보다 보완·발전된 조직으로 재정비되었다.

## 바.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과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를 직접 듣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원스톱 규제건의·처리 창구로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14년 4월 개설되었다. 기존에도 규제애로를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지속 운영한 바 있으나 개선효과가 미미하였고 건의자는 자신이 건의한 규제의 처리상황을 알기 쉽지 않았다.

규제개혁신문고는 합리적 규제건의가 사장되지 않도록 3단계 검토과정(부처답변-소명-개선권고)을 도입하였으며, 각 단계는 검토자의 실명 및 직급 등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건의처리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안내함과 별도로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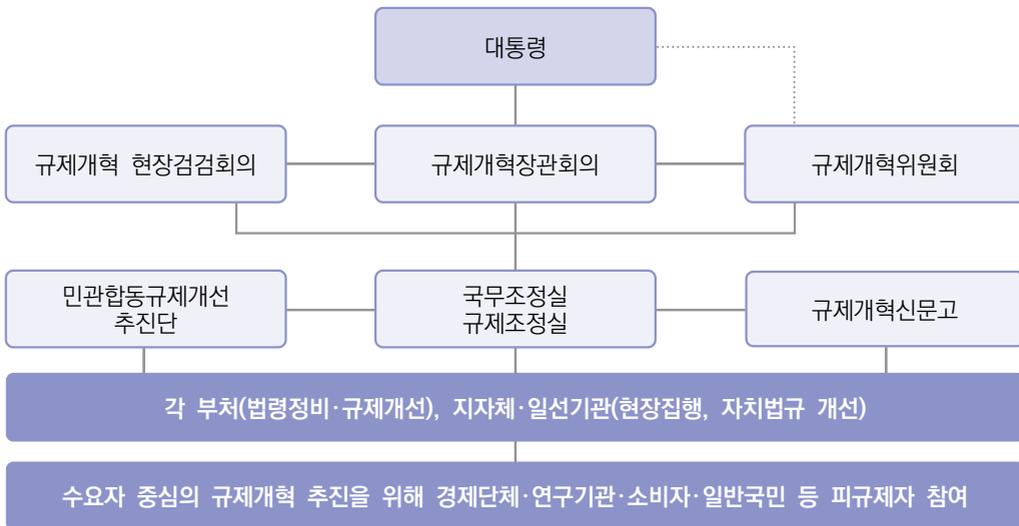
## 사. 중앙행정기관 규제법무담당관실

각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규제의 신설·강화시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심사를 하고, 기존규제에 대한 연차별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아.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맞추어 지역실정에 맞는 규제개혁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조례·규칙에 근거한 규제의 정비 및 조례·규칙 제·개정시 사전심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규제개혁추진체계도 〉



### 3.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가. 구성 및 기능

##### (1) 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2) 기능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및 발전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규제의 등록·공표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 (3) 구성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당연직) 및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20~25인으로 구성되며, 2015년 12월 현재 위원장 2인, 민간위원 16인, 정부위원 6인 등 총2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명단〉

(2016년 1월 기준)

구 분	성 명	현 직
위 원 장	황 교 안 서 동 원	국무총리 김&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정부위원 (6)	유 일 호 홍 윤 식 주 형 환 이 석 준 정 재 찬 제 정 부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법제처장
민간위원 (16)	김 종 일 전 의 찬 김 동 원 김 민 호 김 용 하 김 진 국 김 태 윤 손 원 익 신 용 현 윤 창 현 원 숙 연 이 원 호 이 인 실 조 준 모 전 병 준 한 경 희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세종대 환경에너지융합학과 교수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순천향대 글로벌경영대학 학장 한국규제학회 회장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광운대 건축학과 교수 청운국제특허법인 대표변리사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매일경제 논설실장 (주)한경희 생활과학 대표

나. 회의운영

(1) 소집

위원장은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회의는 매월 1회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중앙행정기관 입법상황 등을 감안하여 현재에는 매월 2회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어려운 경우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2)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회의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4) 회의출석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실장 또는 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또한 국무총리실 규제조정실 직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5) 조정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다. 신설·강화규제 심사

### (1) 일반적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중요 규제)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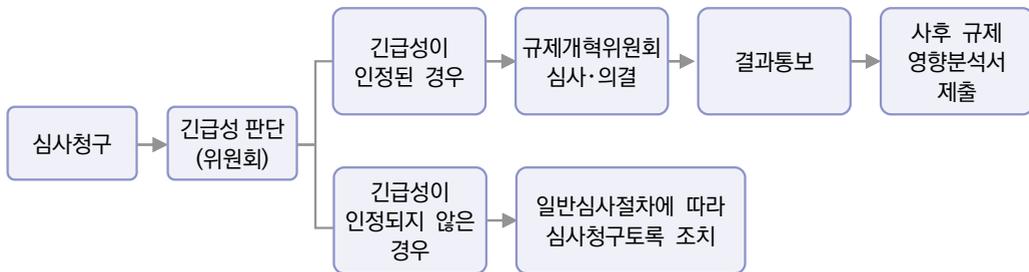
중요규제인 경우에는 심사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 (2) 긴급한 규제의 경우

긴급한 규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수렴,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평가를 생략하고 이에 대한 사유를 명시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긴급성 여부를 판단하여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분과위원회는 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일반적인 경우의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3) 15년 본회의 운영 실적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는 2015년 총 22회(340회~361회) 개최되었으며, 17개 부처의 총 37개 안건을 처리(의결 23건, 보고 14건)하였다. 23건의 의결안건을 통해 40건의 규제를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12건, 개선권고 25건, 철회권고 3건이었다.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일지 참조

## 4.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가. 구성 및 기능

#### (1) 분과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2) 기능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3) 분과위원회의 구성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은 분야별로 5개 이내의 분과위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4.12월 현재 경제분과, 행정사회분과 등 2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7~9인, 정부위원 4인 등 11~1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분과위원회 구성〉

(2015년 12월 기준)

구분	분과위원		소관부처
경제	민간위원	김종일(위원장) 김진국 손원익 신용현 윤창현 이인실 조준모 한경희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농촌진흥청, 행복도시건설청, 산림청
	정부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구 분	분 과 위 원		소 관 부 처
행정사회	민간위원	전 의 찬(위원장) 김 동 원 김 민 호 김 용 하 김 태 윤 원 숙 연 이 원 호 전 병 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안전처,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기상청 (25개 부처)
	정부위원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 나. 회의 운영

### (1) 회의 소집

분과위원회 회의는 당해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 (2) 의결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회의공개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회의 출석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또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 직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5) 위원회 의결로 의제되는 분과위원회 의결사항

기타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서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 5.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설치 및 운영

### 가. 설치배경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손톱 밑 가시'와 국민의 불편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듣고 해결하기 위해 민과 관이 합동으로 설립한 규제개선 전담 조직이다.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며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비합리적인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들이 규제개선을 피부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국민의 목소리 청취 및 소통이 중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2013년 9월 12일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추진단을 발족하였다. 추진단은 이전 정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2013년 2월 새정부 출범으로 폐지됨에 따라 그 기능과 조직을 더욱 보강하여 출범하였다.

### 나. 추진단 운영

추진단은 민관합동으로 구성되어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1급)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3인의 공동단장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추진단 실무를 총괄하는 부단장은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이 맡고 있다. 추진단은 총괄기획팀, 규제개선전략팀, 투자환경개선팀, 중기·소상공인지원팀의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주요 민간단체에서 파견한 직원 총 26명(공무원 13명, 민간 13명, 단장제외)으로 운영된다.

#### 〈추진단 조직도〉



\* 국조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 다. 추진단 역할

추진단은 ‘손톱 밑 가시’를 포함한 불합리한 기업의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개선한다.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해결하기 위해 기업 현장방문, 찾아가는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관이 공동으로 정책 수요자인 기업·국민과 정책 공급자인 정부 상호간의 입장을 전달하고 조정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는 기업 현장의 규제애로 발굴에 역점을 두고, 공무원은 정부나 관계기관과의 제도개선 협의·조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함으로써 민관합동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 라. 주요 업무처리 절차

추진단 업무는 크게 규제개선 과제 발굴→관계부처 협의·조정→규제개선 추진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제별로 책임담당관을 지정하여 민원인에게 건의과제 진행상황을 수시로 통보하여 소통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또한 규제개선 추진 중인 과제는 이행계획에 따라 과제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다.

추진단은 과제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와 열린 사무실 형태의 오픈 오피스(open-office) 간담회를 개최하며, 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02-6050-3366)를 통해서도 규제 애로를 접수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 무역협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와 부처의 규제개혁 담당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건의된 과제는 추진단의 자체 검토를 거쳐 소관부처에 전달되며, 소관부처는 건의과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추진단은 소관부처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협의·조정을 진행하며, 규제 건의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소관부처에서 개선하기로 한 과제는 후속조치가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규제정보화 시스템(www.ris.go.kr)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과제 추진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개선된 과제는 개선결과를 건의자에게 통지하는 한편 주요 개선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보고하고, 언론사를 통해 발표함으로써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 제3절 규제등록제도

◎ 집필자 김경태 사무관 ① 044-200-2429 ② kt0112@pmo.go.kr

### 1. 규제등록제도 개요

규제등록제도는 국민 및 기업 등 정책수요자에게 전체적인 규제체계 및 규제내용 등 규제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함과 동시에 규제개혁의 질적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등록하여야 하며, 규제를 신설하거나 변경·폐지한 경우 해당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는 등록 규제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매년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대상 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이 정한 행정규제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 2. 규제등록제도 개편

1998년 이후 큰 변화없이 운영되어온 규제등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 이후 처음으로 등록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했다.

#### 가. 기존 등록제도

개편 전 규제등록제도는 1998년 도입 이후 규제사무단위 등록방식을 유지했다. 즉, 규제사무별로 규제정보카드가 작성되고 하나의 규제정보카드는 한 건의 등록규제가 된다. 규제정보카드에는 규제사무명, 법적 근거, 규제성격·유형·분야, 소관부처 및 담당자, 일몰 정보, 변경이력 등을 담았다.



규제사무는 법령의 1개 조(條)를 1개 규제사무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조(條)단위로 나누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조(條)의 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규제사무로 등록할 수 있었다. 다만, 고시 등 행정규칙의 경우 행정규칙 전체를 1개의 규제사무로 등록했다.

규제사무는 그 내용에 따라 핵심적인 내용은 주규제로, 주규제로부터 파생된 사전·사후적 규제는 부수규제로 구분하였다.

각 부처 규제담당자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 규제정보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규제등록 및 변경을 신청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은 부처의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규제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 그대로 승인하여 등록이 완료되며, 신청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반려하여 다시 작성·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 나. 기존 등록제도의 문제점

### (1) 등록단위의 모호성(주관적 등록단위)

기존 등록제도의 등록단위인 규제사무는 어느 수준까지를 하나의 규제사무로 볼 것인가<sup>6</sup>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지 못했다.

또한 고시 등 행정규칙의 경우 행정규칙 전체를 1개의 규제로 등록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고시 단계의 규제가 등록체계상에 표현되지 못했다.

이러한 등록단위의 모호성으로 인해 여러 법 조문을 통합하여 등록하는 사례와 개별 조문단위로 등록하는 사례가 혼재되었고 이에 따라 부처별 등록규제수의 비교 및 전체 등록규제수가 큰 의미를 갖기 어려웠다.

<sup>6</sup>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노선운송사업(시내, 시외, 마을버스 등)과 구역운송사업(전세버스, 택시 등), 수요응답형운송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이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체를 하나의 규제사무로 등록해야 하는지, 노선·구역·수요응답형으로 구분해서 등록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마을버스면허, 전세버스면허 등으로 등록해야 하는지가 규제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또한 상위법에서 허가를 규정하고 하위법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규정한 경우 상·하위법 전체 내용을 하나의 규제사무로 판단해야 하는지, 또는 각각을 별도 규제사무로 판단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 (2) 미등록규제 및 등록정보의 오류 발생

기존 등록제도는 규제가 신설 또는 변경되었음에도 부처가 등록하지 않을 경우 국무조정실에서 매 건마다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각 부처 역시 적극적으로 규제를 등록할 유인이 없어 해마다 미등록규제가 발생<sup>7</sup>했다.

미등록규제뿐 아니라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즉각적으로 규제정보에 반영하지 않거나, 여러 조문이 1개의 규제에 통합등록된 상황에서 1개 조문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1개 조문을 신규 등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규제정보카드상의 규제정보와 실제 법령상의 규제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 (3) 규제수 중심의 관리

전술한 바와 같이 부처별 규제수 및 총 규제수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수 관리로 인해 규제부담이 큰 규제의 개선보다는 규제수 감축 중심의 규제개혁이 이루어져 국민의 규제체감도와외의 괴리가 발생했다.

## 다. 등록체계 개편 추진경과

### (1) 체계개편 원칙 확립 및 개선방안 마련

규제등록체계의 개편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①규제등록단위의 객관성 확립, ②시스템을 통한 규제정보의 실시간 현행화라는 두 가지 개편원칙을 확립하고 이에 대한 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14년 10월)

이를 토대로 「규제등록체계 개편방안」을 수립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본격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15년 1월)

### (2) 등록규제데이터의 정비 및 신규등록시스템 개발

먼저 각 부처는 기존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규제정보와 '14년에 발굴된 미등록규제 전수를 조문단위로 구분하는 작업과 구분된 모든 개별 규제조문에 대해 상·하위 법령의 연관조문과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와 별도로 등록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법제 연구원이 협업하여 법령정보시스템상의 모든 법령을 대상으로 규제조문을 추가로 발굴했다. ('15년 2~4월)

<sup>7</sup> 미등록규제 조사결과 : ('09년) 5,692건, ('14년) 4,747건 발굴



이렇게 정비된 부처별 규제조문 및 연계체계는 국무조정실, 소관부처, 법제연구원이 각각 두 차례 검증을 실시했다. ('15년 5~6월)

규제데이터 정비와 동시에 데이터를 담는 그릇인 규제정보화시스템도 개편방안에 따라 새롭게 개발했다. 신규 규제정보화시스템에는 조문단위 규제등록, 상·하위 조문간 연계, 법령정보 시스템과의 실시간 정보 교환 기능이 추가되었다. ('15년 2~6월)

### (3) 신규 규제등록체계 공개 및 규제정보포털 서비스 개시

개편된 등록체계는 '15년 9월 기자간담회 및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10월부터 규제정보 포털을 통해 대국민서비스를 실시했다. 규제정보포털에서는 부처별 규제조문 및 연계체계, 맞춤형 생활규제정보, 키워드 검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라. 규제 등록제도 개편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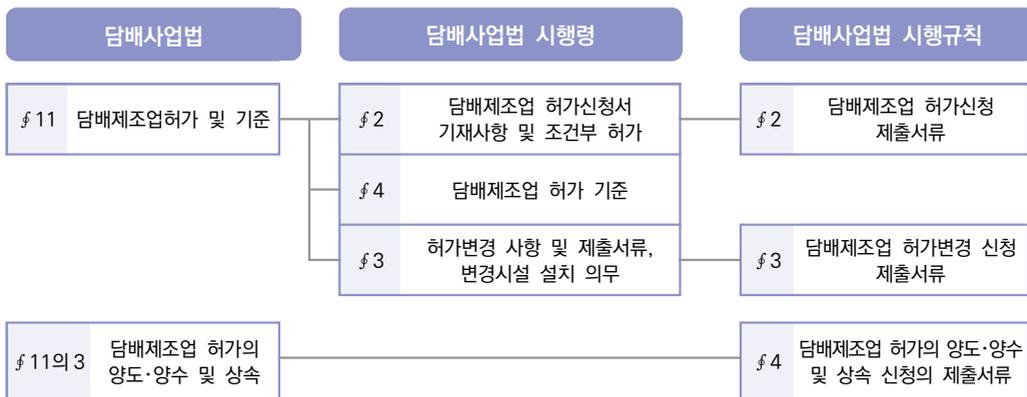
### (1) 객관적 등록단위

등록단위를 규제조문으로 변경하여 등록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조문단위로 등록함에 따라 등록의 객관성을 확립했다. 또한 고시 등 행정규칙도 조문단위로 등록한다.

### (2) 규제조문간 연계

등록된 모든 규제조문은 상·하위 법령의 관계조문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과 연계된다. 이에 따라 여러 법령 단계에 의해 구체화되는 규제내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예시〉



### (3) 규제정보의 실시간 현행화

신규 규제등록시스템과 법령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법령의 제·개정시 해당 규제정보를 즉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제·개정법령이 시행되면 법령정보시스템은 제·개정법령의 모든 조문 정보를 규제정보화시스템으로 전송하고, 각 부처 규제담당자들은 이를 검토하여 규제정보에 반영한다.

### (4) 등록절차 간소화

신규 규제등록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이 규제등록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하던 불필요한 정보<sup>8</sup>를 요구하지 않고 필수적인 정보(규제명, 규제요지, 일몰정보, 키워드)만 입력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필수적인 정보 외에는 텍스트 입력방식이 아닌 관련 정보 검색 및 선택 방식을 활용하여 등록절차를 간소화했다.

### (5) 대국민 제공 규제정보의 다양화

기존 등록시스템이 제공하던 규제유형, 규제성격 등 다소 학술적이고 활용가능성이 낮은 규제정보를 과감히 배제하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확충했다. 부처별 규제조문 및 연계체계를 제공하여 상·하위법령으로 나누어져 있는 규제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수요자 맞춤형 규제정보를 통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주요 사안별 규제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마. 기대효과

법령 조문에 기반한 객관적 등록단위를 활용하여 등록규제의 신뢰성 및 일관성이 확보 되었으며, 법령정보-규제정보간의 연계로 미등록규제 및 규제정보 오류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앙정부 법령부터 지자체 자치법규까지 일련의 규제정보를 개방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생활규제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됨으로써 정부 3.0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sup>8</sup> 기존 등록시스템 등록 규제사무별로 규제성격(경제규제, 사회규제, 행정규제), 규제유형(허가, 인가, 면허, 지정 등), 입법유형, 처리기관 등 다수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했으나 각 정보들은 실무적으로 구분이 용이하지 않아 정보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학술적인 정보가 많아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로 적합하지 않았다.



참고자료 : 규제정보포털의 등록규제정보

1. 법령별 규제조문간 위계정보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규제정보포털**

홈 > 규제현황 > 규제등록 > 부처별 규제

**규제현황**

지역별 규제지도

---

지역별 규제현황

---

규제등록

- 규제등록제도
- 부처별 규제
- 맞춤형 규제
- 키워드 검색

---

분야별 규제건의

### 부처별 규제

부처별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 관광진흥법 검색하기

법령명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관광진흥법	4조(등록)	3조(등록일자)	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5조(등록기준)	3조(관광사업의 변경등록)	
		6조(변경등록)		
	5조(허가와 신고)			
	6조(지정)	2조(관광사업의 종류)	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9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9조(보통 가입 등)			
	10조(관광표지의 부착 등)	8조(상호의 사용제한)	19조(관광사업장의 표시)	
	11조(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20조(타인 경영 금지 관광시설)	
	12조(기획여행의 실시)			
	13조(국외여행 인솔자)			
	14조(여행계약 등)			22조의4(여행자 안전정보 등)

2. 규제정보카드 및 법령정보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규제정보포털**

홈 > 규제현황 > 규제등록 > 부처별 규제

**규제현황**

지역별 규제지도

---

지역별 규제현황

---

규제등록

- 규제등록제도
- 부처별 규제
- 맞춤형 규제
- 키워드 검색

---

분야별 규제건의

### 부처별 규제

부처별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 관광진흥법 검색하기

법령명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관광진흥법	4조(등록)	3조(등록일자)	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5조(등록기준)	3조(관광사업의 변경등록)	
		6조(변경등록)		
	5조(허가와 신고)			
	6조(지정)	2조(관광사업의 종류)	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9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9조(보통 가입 등)			
	10조(관광표지의 부착 등)	8조(상호의 사용제한)	19조(관광사업장의 표시)	
	11조(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20조(타인 경영 금지 관광시설)	
	12조(기획여행의 실시)			
	13조(국외여행 인솔자)			
	14조(여행계약 등)			22조의4(여행자 안전정보 등)

**관광진흥법**

(시정 2015.8.19.) [법률 제19000호, 2015.5.19.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618

**제4조(등록)**
(제3조의4) 합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수련업, 관광학 이용사업업 및 국제 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둘째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① 시제 <2009.3.25.>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7.7.19., 2009.3.25.>
 ③ 제1항에 따른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9.3.25.>

### 3. 법령정보-조례정보 연계

The screenshot displays a search interface for laws and regulations. At the top, there are three columns representing different types of legal instruments: '국도의 계획 및 대항에 관한 법률' (Law), '국도의 계획 및 대항에 관한 법률 시행령' (Regulation), and '국도의 계획 및 대항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nforcement Decree). Below this, there are two main sections: '제77조(수도지역의 건설제한)' and '제64조(수도지역안정시설의 건설제한)'. Each section contains a list of specific regulations, such as '수도권광역권역계획' and '수도권광역권역계획 시행규칙', along with their respective dates and administrative status (e.g., '일부개정').

### 4. 맞춤형 규제정보

The screenshot shows the '맞춤형 규제정보' (Customized Regulation Information) portal. At the top, there is a search bar and a navigation menu.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On the left, there is a '규제현황' (Regulation Status) section with sub-sections for '지역별 규제지도' (Regional Regulation Map), '지역별 규제현황' (Regional Regulation Status), '규제등록' (Regulation Registration), and '분야별 규제건의' (Regulation Requests by Field). The '맞춤형 규제' (Customized Regulation) opti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On the right, there is a '맞춤형 규제' (Customized Regulation) section with a sub-section for '주제별 생활법령, 맞춤형 생활법령, 생애주기별 생활법령, 관심사사 생활법령을 제공합니다.' (We provide customized living regulations, tailored living regulations, life-cycle-based living regulations, and interest-based living regulations). Below this, there is a grid of icons representing various regulatory categories. A red box highlights the '맞춤형 생활법령' (Customized Living Regulations) icon in the grid.



## 5. 키워드 검색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규제정보포털**

---

**규제현황**

지역별 규제지도

지역별 규제현황

**규제등록**

- 규제등록제도
- 부처별 규제
- 맞춤형 규제
- 키워드 검색

**분야별 규제건의**

### 키워드 검색

규제정보를 쉽고 다양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

**소관부처**

검색어  규제요지  결과내 재검색

조회 초기화

규제 사무명	법령명	조문번호	조문제목	연관규제
이미용기구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상의에 관한 규정	54조		
과태료	공중위생관리법	22조	과태료	<a href="#">11조</a>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업무등	공중위생관리법	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업무등	<a href="#">4조, 5조, 6조, 7조</a>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공중위생관리법	6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a href="#">9조, 10조, 14조</a>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공중위생관리법	7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a href="#">12조, 19조</a>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공중위생관리법	8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a href="#">13조, 14조</a>
이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5조	이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a href="#">4조</a>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증의 재교부등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10조	면허증의 재교부 등	<a href="#">6조</a>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14조	업무범위	<a href="#">6조, 8조</a>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9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a href="#">6조</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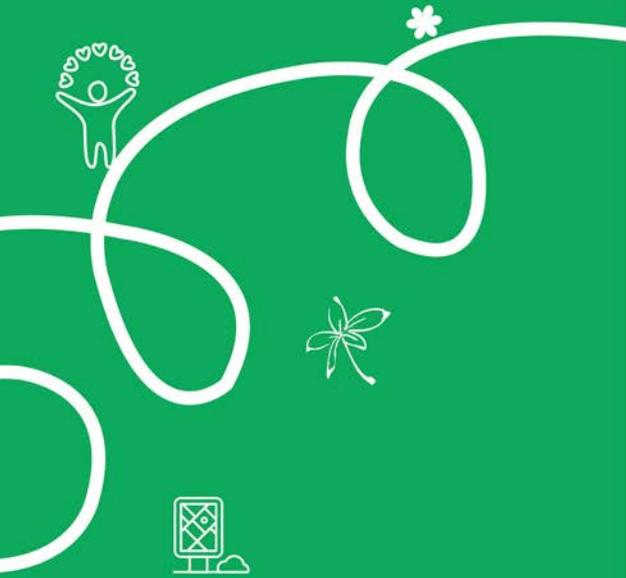
2015

WHITE PAPER ON REGULATORY REFORM BOOK

# 국민행복 경제부흥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혁하여  
기업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 Part 02

## 제2장



### 규제개혁 추진 주요 성과

제1절 규제개혁장관회의	54
제2절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65
제3절 각 부처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 (핵심규제 등 기존규제 정비)	71
제4절 인증규제 정비	78
제5절 공장설립이 쉬운 나라 프로젝트	89
제6절 규제개혁신문고	96
제7절 경제단체 건의과제	106
제8절 손톱 밑 가시 규제 개선	112
제9절 일몰규제 정비	125
제10절 지방규제 개선	128
제11절 규제개혁 국제협력	136

## 제1절 규제개혁장관회의

◎ 집필자 박현수 사무관 ☎ 044-200-2452 ✉ qkrgustrn@pmo.go.kr

### 1. 추진현황

2014년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처음 개최한 이래 지난 11월 제4차 회의까지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국정 의 중요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만큼 규제개혁의 추진력을 유지하고 규제시스템을 혁신하는 규제개혁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서의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다.

특히 3·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과 미래 신산업 부문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제시되었다. 3차 회의에서는 IT·금융 융합(핀테크), 융복합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상용화,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창조경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논의되었고, 4차 회의에서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 미래성장동력 서비스 분야 혁신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동북아 물류허브 선점 등이 주요 계획으로 부각되었다.

### 2.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요

#### 가. 목적

규제개혁을 강력하고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신설하였으며, 현장에서의 규제 애로를 느끼고 있는 단체·기업과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함께 공유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특징이 있다.



## 나. 기능

규제개혁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서비스산업 등 주요 분야 사항, 규제개혁 관련 법제도 및 규제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관계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다. 구성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며,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장관과 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 위원회위원장·법제처장·중소기업청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국정기획담당 수석비서관으로 회의를 구성한다. 다만, 회의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라. 운영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를 둔다.

또한, 관계 부처간 이견 조율 등 회의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규제조정회의를 둔다. 조정회의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며, 조정회의의 구성원은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차관과 국무조정실차장·공정거래 위원회부위원장·법제처차장·중소기업청차장 및 조정회의 상정 안건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조정회의의 의장은 조정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3.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 실적

#### 가.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5.6)

##### (1) 일시·장소

- '15.5.6(수), 청와대 영빈관

##### (2) 참석자

- 대통령(회의 주재), 국무총리, 감사원 사무총장, 관련부처 장·차관, 규제위 민간위원, 경제단체장, 민간전문가, 현장공무원 등 130여명

- 세션1 : 국민 체감형 현장중심 규제개혁
  - (보고1) 변화를 일으키는 힘 : 전국규제지도(대한상의)
  - (보고2) 외국인투자 규제혁신 방안(산업부)
  - (보고3)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 방안(국토부)
- 세션2 : 창조경제 생태계 규제혁파
  - (보고) 창조경제 비즈니스 모델 창출(관계부처 합동)
    - 융합 신산업 창출 규제개혁 방향(미래부)
    - IT·금융 융합(핀테크) 활성화 방안(금융위)
    - 융복합 헬스케어 활성화 대책(식약처)
    -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국토부)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인프라 규제개혁 방안(국토부)



### (3) 주요 실적

- 총 10건의 개선과제가 현장에서 건의되었으며 이 중 7건이 정부내 조치완료(국회 심의 중 1건 포함) 되었고, 3건은 지속 추진 중이다.

과제명(건의자)	개선전	개선후	부처
화평법 R&D 저해요소 개선 <b>(안드레 노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회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평법상 R&amp;D용 물질은 등록 면제 확인 대상이며, 면제 확인 신청 시 다양한 첨부서류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용 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의 등록을 면제받기 위하여 등록 면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0.1톤 미만일 때는 사후처리결과에 대한 서류 제출 생략 가능</li> <li>*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5.10월)</li> </ul>	환경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 <b>(조기춘 한양대 연구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S 시험로 사용료 시간당 370,000원 소요</li> <li>* 학계에서 ITS 시험로를 연간 약 400시간 사용('14년 기준) 함으로써 약 1억 5천만원 소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에서 연구목적으로 ITS 시험로를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50% 인하</li> <li>* 사용료 50% 인화로 연간 8천만원의 비용절감 효과, 대학교의 자율주행 연구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li> </ul>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 <b>(이용호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운영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만이 기존 주유소 및 충전소에 세차시설 설치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유소 및 충전소 소유자는 해당 시설에 세차시설 뿐만 아니라 소매점, 간이정비시설 설치 가능</li> </ul>	국토부
외국계 금융회사 정보처리 위탁 규제 완화 <b>(에이미 잭슨 주한미상의 대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체계의 이원화로 정보처리 위탁은 금감원 보고, 전산설비 위탁은 금융위 승인으로 구분</li> <li>○ 정보처리 보고는 사전보고 형식</li> <li>○ 국외위탁 시 수탁회사 제한 및 재위탁 제한, 일률적 표준계약서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전산설비·정보처리 위탁은 정보처리 위탁으로 일원화 (금감원 보고)</li> <li>○ 정보처리 보고는 사후보고 형식으로 변경</li> <li>○ 위탁 시 수탁회사 제한 철폐 및 재위탁 허용, 일률적 표준계약서 사용의무 철폐</li> </ul>	금융위

## 나.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11.6)

### (1) 일시·장소

- '15.11.6(금), 청와대 영빈관

### (2) 참석자

- 대통령(회의 주재), 국무총리, 감사원 사무총장, 관련부처 장·차관, 규제위 민간위원, 경제단체장, 민간전문가, 현장공무원 등 155여명

#### ■ 세션1 : 기업활력 제고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 (보고1) 인증규제 혁신(국조실)
- (보고2) 융복합·신산업 시장창출 규제개혁(산업부)

#### ■ 세션2 : 미래성장동력 서비스 분야 규제개혁

- (보고1)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개혁(복지부)
- (보고2) 동북아 물류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국토부)
- (보고3) 대학교육 혁신(교육부)



### (3) 주요 실적

- 총 3건의 개선과제가 현장에서 건의되었으며 이 중 1건이 정부내 조치완료 되었고, 2건은 지속 추진 중이다.

과제명(건의자)	개선전	개선후	부처
식용곤충의 식품원료 등재를 위한 신속 도입 체계 마련 (김용욱 한국식용곤충연구소 대표)	○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한시적 식품 원료로 검토 시 안전성 자료 제출	○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한시적 식품원료로 검토 시 안전성 자료 제출 면제 - 외국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허가)된 사례가 있는 경우, 독성시험자료가 면제됨에 따라 식품원료 1건당 최대 1억원의 독성시험비용 절감 효과	식약처
	○ 한시적 식품원료 신청 대상 자격이 식품제조 가공업자로 한정	○ 한시적 식품원료 신청을 누구나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제7조 제2항 개정 - 국가기관(농진청, 국립수산물과학원 등)도 한시적 식품원료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가예산으로 연구개발한 새로운 식품원료의 사용이 가능해짐	
	○ 한시적 식품원료의 일반 식품원료 전환 요건 미비	○ 한시적 식품원료를 누구나 사용가능하도록 일반 식품원료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받은 원료의 경우, 인정받은 후 3년이 경과하거나, 3인 이상이 인정받거나, 인정받은 자가 등재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 가능	
	○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받은 갈색겨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 인정받은 자만이 사용 가능	○ 갈색겨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하여 모든 영업자가 사용가능하도록 개선 - 2015년 곤충산업 규모가 3천억원 대로 성장하였고, 갈색겨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모든 영업자가 사용가능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식품 산업 확대와 이에 따른 고용창출이 기대됨. - 관련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홍보 실시(연합뉴스 등 24개 매체 보도)	

## 4. 주요 규제개혁 추진 방안

### 가. 융합신산업 추진성과 및 조치방안

#### (1) 자율주행자동차

##### 추진성과

국토부, 산업부, 미래부가 합동으로 추진중인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은 부처에서 먼저 자율주행차 실증을 위해 자율주행차 정의 및 시험운행 법적근거를 마련('15.8월)하였다.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시범도로구간을 확정('15.10월)하여 실증지구로 선정하고, 필요한 시험운행 허가 요건이나 자율조향장치 장착이 가능한 특례를 마련('15.12월)하여 추진 중에 있다.

##### 향후계획

실제 운행을 위하여 시범도로구간 시험운행을 실시('16.2월~)하며, 시범도로구간 중 고속도로 구간에는 차량, 인프라 간 협력주행 테스트가 가능한 '시범도로 테스트베드' 구축('17년 말)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해당 지역에서 자율주행차량 시연('18.2월) 예정이다.

#### (2) 무인기

##### 추진성과

역시 국토부, 산업부, 미래부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무인기 사업은 무인비행장치 전용 시범공역 4곳, 시범사업자 15개를 선정('15.10월)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무인기 무선설비 기술기준 연구반을 운영하여 무인기 지상제어 전용 주파수(5GHz) 기술기준 연구를 진행 중이다.

##### 향후계획

무인비행장치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을 통해 구호·수송·시설물관리 등 새로운 분야의 활용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기준을 검토('15.12월~)중에 있다. 특히 선정된 공역에서



현재 운영이 제한된 야간에 가시권 밖에서 150m 이상 고도로 비행 테스트 등을 실시하고 있다. 무인기 지상제어전용 주파수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함으로써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 (3) 융합신제품 신속 출시 지원 제도

#### 추진성과

산업부와 미래부가 공동으로 ‘융합 신기술·서비스 및 제품의 시장진입 신속처리 지원 공동지침’을 마련(’15.8월)하여 부처간 협동으로 블루투스 네트워크 저울, 접시없는 위성방송(DCS)을 신속히 임시허가했다.

〈융합신제품 신속출시 지원 성과〉



#### 향후계획

부처가 공동으로 수요발굴을 하고 민·관 협의체를 구축하는 등의 인증 지원체계 효율화를 진행중에 있으며, 융합 신제품의 신속출시지원을 위해 공동지침 운영기관인 국가산업융합 지원센터, 정보통신기술협회와 시험인증기관 간 MOU를 체결('16.1월)하여 현장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 나. 융합신산업 추가발굴 및 규제개선과제

### (1) ICT 융합 제조·서비스

#### (가) IoT 융합제품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가전, 의료기기 등 기존 제품에 접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현재는 IoT 융합 가전 등이 출현하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주요 기업들은 초기 플랫폼 선점을 위해 관련기업 간 표준 제정 및 협업을 추진하는 단계이다. 문제는 사업 추진에 대한 리스크가 크고,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가진 선도 기업이 미출현하여 시장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등 IoT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성·안전성 검증에 하는 실증단지(대구, 부산)를 구축·운영하고 있다('15.12월). 또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활용가능한 용도자유 주파수 폭 확대(7→15GHz) 및 실증 지원을 실시 중이다. ('15.12월)

#### (나) 3D 프린팅

소재를 적층하여 3차원 물체를 제조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3D 프린팅은 국내기업에서 만료특허를 활용하여 개인용 프린터 중심으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산업용은 미약한 상황이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 정보기술 기기로 분류되어 전기적 안전성(감전, 회로접속, 내열성, 과부하 보호 등 일반 사무용프린터 기준 적용)만 확인 후 시장 출시되어 신뢰도 부족으로 인한 국산제품 소외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광주 등 일부 산단의 경우 3D 프린터 등 신산업의 입주 허용 근거가 없어 입주가 불가능한 실태였다.

따라서 소재·출력물의 안전성, 유해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조기 구축('15.9월~'16.10월)중이며, 모든 국가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하도록 조치('15.12월)할 예정이다. (단 자원비축단지, 출판문화단지, 식품클러스터 등 특수목적 산단 제외)

#### (다) 스마트 홈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냉난방 기기, 방법 등 주요 가정 내 기기를 제어하는 기술인 스마트 홈은 KS 표준에서는 제어박스만 다루고, 제어박스와 주변기기 간 표준은



미제정인 상태다. 특히 신축아파트를 대상으로 공급되고 있는 홈네트워크 기기의 호환성 부족으로 일부 제품만 다른 업체의 제품으로 교환이 불가해, 소비자의 불편 초래 및 시장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품 간 상호 호환성을 테스트하는 ‘오픈랩’을 구축(‘15.11월)하고, 업체 간 제품 연동 지원을 위해 스마트 홈 제어박스와 12종의 주변기기 간 홈네트워크 KS표준을 제정·보급(‘16.6월)할 예정이다.

## (2) 신기술 융복합 제품

### (가) 탄소섬유

화학섬유를 최고 3,000℃내외의 열처리로 탄화해서 제조되는 탄소섬유는 일본·미국·독일 등이 생산을 주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3년에 국산화에 성공하여 효성 등에서 생산 중이다. 국산화에는 성공하였으나, 대규모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내수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실태다. 탄소섬유의 주요 수요 시장인 자동차, 항공기 등의 분야에 적용하는 속도가 늦고, 단계적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실정이다.

초기시장 창출에 필요한 탄소부품 신뢰성 평가기반을 2016년에 구축(자동차 탄소복합소재 상용화 토털 솔루션 지원센터 및 융복합 탄소소재 센터 신규 구축)하면서, 탄소섬유 CNG용기 버스 시범사업도 2015년 말부터 본격추진할 예정이다.

### (나) 일체형 태양광 모듈

태양빛을 받아 직류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모듈과 직류전기를 교류전기로 변환하는 인버터를 일체형으로 결합한 것을 일체형 태양광 모듈이라 한다. 교류형 태양광 모듈의 경우 인버터가 내장되어 기존제품에 비해 설치가 간편하고 전기손실이 적어 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직류형 모듈과 태양광인버터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지정되어 있지만, 두 제품의 장점을 결합한 일체형 태양광 모듈은 국내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제품 출시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일체형 태양광 모듈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16년 하반기). 제품출시 허용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대상 포함 관련하여 KS 시험기준 마련을 연구 중에 있다.

#### (다) 가정용 소형 전기발전 보일러

외부에서 투입되는 열을 발전기와 보일러에 사용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이 보일러는 미국,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이 '10년 이후 유럽에서 시판중이며, 국내는 경동나비엔이 '12년에 개발에 성공했다. 그러나 가정용 소형 전기발전 보일러는 관련 근거 규정이 없거나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해 보조금 지원 및 전기요금 상계 등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신제품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전기요금 상계처리를 위한 조치 예정('16.6월)으로 소규모 신재생발전전력 거래지침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 제2절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 집필자 정재상 사무관 ☎ 044-200-2416 ✉ kkirri@pmo.go.kr

### 1. 추진배경

정부는 2014년 경제활동 규제 10% 감축, 규제기요틴 등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과 함께 규제신문고 개설 및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실시 등 규제시스템 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규제개혁의 파급효과가 현장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등 현장의 체감만족도에 대한 개선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15년에는 규제개혁의 성과체감에 총력을 기하는 한편 그간 추진해온 규제시스템 개혁을 고도화 하는 등 2단계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특히,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규제개혁의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는 2단계 규제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정부의 핵심 아젠다인 규제개혁을 국무총리가 직접 챙김으로써 강력한 개혁의지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현장·수요자 중심의 주요 규제개선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지역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각종 규제애로에 대해 논의하면서 현장체감도를 제고해나가고 있다.

### 2.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요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는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역 기업대표 등의 참석으로 개최된다. 회의는 지역현장을 순회하면서 개최되며, 각 회의별 참석자는 개최장소 및 논의사항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

회의에 상정되는 주요 개선대책 등 논의안건은 규제조정실에서 직접 발굴·검토하거나 각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기업의 현장건의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발굴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

### 3.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실적

#### 가. 제1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 (1) 의의

황교안 국무총리 취임이후 개최된 첫 국가정책조정회의 겸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는 경기도 안산의 반월·시화 산업단지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조정실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동으로 전국 21개 산단 및 40여개 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산단내 입주 기업대표 등 20여명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함께 논의하였다.

##### (2) 개요

###### (가) 일시·장소

- '15.7.30(목), 경기도 안산 반월·시화 산업단지

\* 회의 전 총리님 기업현장 방문 및 관계직원 격려

###### (나) 참석자

- (정부) 국무총리, 국토부·산업부·농식품부·환경부 장관, 고용부·안전처 차관, 문화재청·산림청·병무청장, 경기도지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 (민간) 반월·시화 산단 입주기업 및 개별공장 기업 대표 20여명

###### (다) 주요 논의사항

- <세션1>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
- <세션2> 기업인과의 대화



### (3) 주요 성과사례

과제명(건의자)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제한지침 폐지 <b>(장인금속 대표)</b>	반월시화 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제한지침 개정 필요	반월·시화 산단 인근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최소화 하면서 관련 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 * 반월·시화산단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지침 개정 ('16.1월)	경기도
반월·시화산단내 대중교통 확대 및 주차공간 확충 <b>(동림스틸 대표)</b>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활성화, 주차공간 확충 등을 통해 산단내 교통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노선버스 및 통근용 전세버스 등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6.1월) * 주차장 확충 지원을 위해 산단개발지침 개정('16.3월)	국토부
산단 개발시 민간-공공 합작회사의 토지수용 및 선분양 시기 단축 <b>(서운산단 개발 대표)</b>	민관 합작 SPC 중 사실상 공공부분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경우에도 민간시행자로 분류, 토지수용 장기화 등 사업추진 애로발생	공공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SPC*는 공공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하여, 토지수용 및 선분양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15.9월)	국토부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대상 기준 설정 <b>(네오노바 대표 건의)</b>	공장 신설을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규모에 상관없이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규제로 소규모 공장설립시 기업의 부담이 상당	현재, 공장 설립 시 건축면적 500㎡ 이상인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음(500㎡ 이하의 소규모 대상 해당없음)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에 대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간소화방안 마련 및 개발사업자가 직접 작성가능하도록 모범사례 제시 *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 개정('16.4월)	안전처

## 나. 제2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 (1) 의의

제2차 회의는 광주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규제 개혁에 대한 국무총리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중앙과 지방 규제개혁의 동반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 현장의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였다.

### (2) 개요

#### (가) 일시·장소

- '15.10.20(화), 광주 테크노파크

#### (나) 참석자

- (정부) 국무총리, 환경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자부 차관, 식약처장, 조달·통계청 차장,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광주광역시장, 전남도지사, 완도부군수
- (민간) 지방규제 현안 건의 관련 기업대표 등 10여명

#### (다) 주요 논의사항

- <세션1> 지방규제개혁 추진현황, 규제개혁 우수사례 보고
- <세션2> 지역현장 규제애로 청취 및 토론

### (3) 주요 성과사례

과제명(건의자)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가능하도록 새울시스템 개선 (산들래(주) 대표)	식품업체가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한시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시 관할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행자부에서 새울시스템(시군구의 행정업무 중 농업, 환경 등 23개 업무에 대하여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구축하여 담당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지원) 개선('16.1월)	식약처 행자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3D프린터 제조업' 분류기준 마련 (주)드림C&G 대표이사)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3D프린터 제조업 관련 명확한 업종 분류기준이 없어 공장등록 등 경영 활동과정에서 애로	분류코드 색인어에 '3D프린터 제조업' 분류기준 마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분류코드' 개정(통계청, '15.10월)	통계청



## 다.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 (1) 의의

제3차 회의는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단체 및 기업대표 등과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건의과제 90건의 처리결과를 발표하고, 경쟁제한 규제개선 TF(국조실 규제실장-공정위 사무처장 공동 팀장)에서 조정·협정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하였다. 또한 부산·경남지역의 기업인들과 지방규제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2) 개요

#### (가) 일시·장소

- '15.12.3(목), 부산 상공회의소

#### (나) 참석자

- (정부) 국무총리, 산업부장관, 식약처장, 해수부차관, 관세청장, 국토부·환경부 기초실장, 산림청차장, 공정위 사무처장, 부산 광역시장, 경남 기초실장, 함안 부군수
- (민간) 지방규제 건의 관련 기업대표 8명, 부산 상공회의소장, 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 (다) 주요 논의사항

- <세션1> 제3차 경제단체 건의과제 처리결과, 2015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보고
- <세션2> 지역현장 규제애로 청취 및 토론

### (3) 주요 성과사례

과제명(건의자)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개발제한구역 내 인접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설치기준 완화 <b>(하이트진로(주) 마산공장)</b>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는 한 필지(지목 대)였으나 지적법 개정에 따라 불가피 하게 2개의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축을 허용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불가피하게 필지가 분할된 경우에도 인접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설치 허용 * '16년 상반기내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국토부

과제명(건의자)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지령이 분변토 생산시설 설치 허용 (홍동농원 대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지령이 사육장 내 지령이 분변토 생산시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 허용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령이 분변토 생산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 가능하도록 유권해석('15.10월)	국토부
보전관리지역 내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허용 (MS동양가스(주))	보전관리지역 내 입지한 기업의 경우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량을 등록 할 수 있도록 차고지 설치 허용	보전관리지역 내 차고지가 독립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닌 주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입지 허용('15.12월 유권해석)	국토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 합리화 (육육로지스틱스)	제조업, 보관·저장업, 판매업 및 운반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을 업종별 현황에 맞게 조정 - 운반업의 경우 취급량 기준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차량의 보유수량에 따라 관리자 선임인원을 규정토록 건의	취급차량 대수별 선임인원수 등 세부적 기준을 운반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6. 상반기)	환경부
일반주유업체도 유조차를 이용하여 선박급유 가능 (주)올름해양해운)	급유선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주유업체도 유조차를 이용하여 선박급유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일반 주유업체에 대해 일정 수준의 안전기준을 준수케 하는 것을 전제로 육상 급유업에 한정하여 급유선 없이 선박급유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 ('16.2월 입법예고중)	해수부



## 제3절 각 부처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 (핵심규제 등 기존규제 정비)

◎ **집필자** 지사향 사무관 ☎ 044-200-2912 ✉ sahyangl@pmo.go.kr  
전데레사 사무관 ☎ 044-200-2419 ✉ deresajeon@pmo.go.kr

### 1. 개요

#### 가. 법적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는 매년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여 전 부처에 배포한다. 각 부처는 정비지침에 따라 소관 기존규제에 대한 규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부처에서 제출한 규제정비계획을 종합하여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작성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 나. 기존규제 정비의 의의

기존규제 정비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전 부처가 합심하여 추진하는 가장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규제개혁 방식이다.

신설되는 규제나 강화되는 규제를 최소화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값은 항상 양의 정수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규제 정비라는 규제개혁 방식이 없다면 규제의 수는 누적되며 증가하게 될 것이다. 기존규제 정비라는 규제방식은 규제를 감축하거나, 규제의 강도를 약화시키면서 국민의 규제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 2. 핵심규제 정비 추진 배경 및 경과

### 가. 핵심규제 정비 추진배경

2014년부터 정부는 규제의 양적개선이 아닌 질적개선을 목표로 “핵심분야 규제 혁파”를 추진하였다. 2015년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금융, 입지, 기업활동 등 파급력이 큰 분야의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였다.

### 나. 추진방식 및 경과

각 부처는 지자체, 산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들을 발굴하였다. 국무조정실은 이해관계자 의견조율 필요 과제 및 다수부처 관련과제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각 부처를 독려함으로써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던 숙원 과제들이 핵심분야 규제개선과제로 발굴·선정되었다. 또한 현장조사·분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 3. 핵심규제 등 기존규제 정비 주요 성과 및 사례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입지관련 규제를 대폭적으로 개선하였다. 공장 신·증축시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비도시 지역내 공장허용 업종을 확대하고, 산업단지 입주규제 완화 및 폐수 배출시설 제한지역 입지가능 업종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정부의 4대 개혁과제중 하나인 금융관련 개혁의 경우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진입규제 철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마련 등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금융 모델 개발·출현 촉진, 융합 신산업 창출·기업활동 지원 및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 폭넓은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 가. 입지규제 관련

### (1) 비도시지역 공장허용 업종 규제완화

국토교통부는 환경기술 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용도지역별로 제한하고 있는 공장업종을 재검토하였으며, 종별 원료, 공정 등을 보아 환경오염 수준이 낮은 유기농화장품, 천연비누·세제, 천연식물보호제, 유기농어업자재, 천연염색물 제조시설 등에 대해 계획 관리지역 내 입지를 허용하였다.

특히, 업종완화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가 없도록, 현장방문 및 유해도 조사,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 광범위한 분야의 조사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시행령 개정(15.7.6) 이후 2개월 만에 7개 공장 증축 계획으로 약 176억원의 투자유발 효과를 보았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5.7)

### (2) 폐수 배출시설 제한지역 입지가능 업종 확대

환경부는 업종별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실태 분석을 토대로 주민편익, 수질영향, 사고대비 등을 감안하여 폐수 배출시설 제한지역 내 입지 가능한 업종을 선별하여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를 통해 토지·물류비용 절감 등 기업활동 부담 완화를 통해 투자확대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며, 도시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의 입지가 가능해져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 제고가 예상된다.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고시 개정(15.12월)

### (3) 계획적 관리를 통한 공장 건폐율 완화

국토교통부는 공장 등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쉽게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절차 및 지정요건을 간소화하여 보다 용이하게 공장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공장밀집 예상지역에 대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장 신·증축시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건폐율 완화 범위를 확대하였다.

법률 개정에 따른 공장 신·증축 애로해소로 개발진흥지구 40개소 지정시 약 4,000여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 국토계획법 개정(15.8)

#### (4) 산지이용시 연접개발 제한 완화

산림청은 기존의 250미터이내 산지전용면적 3ha이상을 개발제한 하도록 했던 연접개발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산림면적의 8.3%, 53만ha가 추가로 산지전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A씨의 경우, 중단위기였던 태양광발전시설사업이 가능해져서 사전 투자비용 등 33억여원의 손실을 방지하였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15.11)

### 나. 서비스업

#### (1) 핀테크 산업 육성

금융위원회는 관계 부처·기관(미래창조과학부·중소기업청·금융감독원 등) 협력으로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행정·법률 상담, 자금조달 자문, 금융사 연계 등 핀테크 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도모하였다. 또한 해외 사례 등에 비해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이 높아 핀테크 스타트업자 등의 활발한 진입이 저해되고 있는 만큼 선불업,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 결제대금예치업에 대해서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신설하여 제한적 범위의 영업을 허용하는 탄력적 진입 규제를 완화하였다.

\*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15.5),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규율 방안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15.7.7)

#### (2) 전자금융거래 규제완화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사전심사, 세세한 보안규정, 책임부담의 불명확성 등으로 금융회사가 신규 서비스 개발, 보안능력 강화 등에 소극적인 것을 착안하여 다양한 형태의 진입·보안 규제들을 체계적으로 파악, 일괄 개선을 추진하였다.

##### 〈진입·보안 관련 규제개선 사항〉

△ 보안성심의 제도 폐지 △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제도 폐지 △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 개선 △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 국가기관인증 정보보호제품 사용 의무 폐지 △ 비금융회사의 법적 책임성 인정 △ 전자금융거래 매체분리 원칙 완화 등

이를 통해 다양한 IT융합형 금융서비스 출현으로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였으며, 금융거래 관련 보안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15.6)



### (3)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외국환업무 허용

기획재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Payment Gateway)에게 외국환 업무를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업무대행에 따라 글로벌 카드사에 지급하던 해외사용 수수료를 절감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결제방법을 제공하여 해외구매 편의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은행이 독점하던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지급·결제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IT와 금융의 결합인 핀테크 산업의 발전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였다.

'15.12월 기준으로 총 16개 PG업체가 외국환 업무를 등록해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국내 중소 인터넷쇼핑몰이 해외 진출시 국내 PG업체의 이용이 가능해졌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15.6)

## 다. 융복합 신산업 분야

### (1) IoT활성화를 위한 실증단지 조성 및 법·제도 정비사항 발굴

미래창조과학부는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시티, 데일리 헬스케어 분야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국내외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사업 환경을 마련하였다. 또한 실증단지에서 발굴·실증된 IoT 융합 신서비스의 조기 사업화를 위해 현장의 의견 및 해외 정책사례를 토대로 법·제도 정비사항(웰니스 기기와 의료기기간 구분기준 마련, 전자의무기록 데이터의 외부 보관 허용 등)을 발굴 개선하였다.

실증단지 조성 및 규제개선을 통해 연간 약 50개의 IoT 유망 벤처·중소기업이 육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IoT 활성화를 위한 실증단지 조성 완료('15.9)

### (2)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연구 목적 임시운행허가 가능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시험·연구용 목적으로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임시운행이 가능토록 자율주행 시험운행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다.

\* 자동차관리법 개정('15.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15.11)

### (3) 웰니스 제품의 분류기준 마련 및 의료용 모바일 앱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목적과 위해도에 따라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을 구분하여, 비의료용·위해도가 낮은 제품을 웰니스 제품으로 판단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단순한 표시·저장·전송을 위한 앱은 의료기기 관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제품 개발 및 시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이에 웰니스 신산업 창출로 '20년까지 7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 판단기준(지침) 마련('15.7)

## 라. 기업활동 지원

### (1) 해양심층수 식품 이용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준규격에 적합한 해양심층수(원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미네랄 농축수)를 모든 식품의 식품용수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양심층수 개발 분야 투자활성화로 식품생산이 다양해져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며, 시장규모는 1천억대, 식품품목은 100여개 증가가 예상된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15.6)

### (2) 1인 창조기업 대상업종을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중기청은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통해 신규로 농업, 임업, 전자상거래업, 핀테크 관련 등 205개 업종, 15만 7천개 기업이 1인창조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입주공간, 전문가 상담·교육 및 마케팅 지원 등 정책지원을 받게 되었다.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15.2)

## 마. 기타 기존규제 정비 사례

- 공인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중 재정요건에 대하여 현행 8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15.3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



- 창업 3년이내 소기업 대표이사 연구원 겸직허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완화 ('15.3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USB·건전지 전원 사용제품 중 위해 가능성이 미약한 전자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시험항목 축소 및 시험 면제('15.3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고시 개정)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 시 즉시 대상여부 통보 및 7일 이내 방문일자를 정하여 발급기한 단축하여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개선('15.11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 중견기업으로 편입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에 한해서 도시형공장 전체입주가능 면적의 20% 이내에서 임차 가능('15.4월, 산업기술단지법 시행령 개정)
- 호스텔업의 경우 욕실 또는 샤워실 공용 설치 가능토록 호스텔업에 대한 시설설비기준 완화('15.7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 후 실무경력 요건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자격시험 응시 요건 완화('15.5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국가나 지자체가 해당 부지·건물을 매입하거나 기부 채납받는 경우 단독·공동주택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가능하도록 입지조건 완화('15.1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확보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15.2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행위능력, 파산 관련 결격사유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등록이 가능토록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영업승계 신고기간 완화('15.8월,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 제품개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구호용 의료기기, 의료기관 등에서 직접 제조하여 사용하는 시약 등의 제품까지 제조허가 면제대상 확대('15.7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 제4절 인증규제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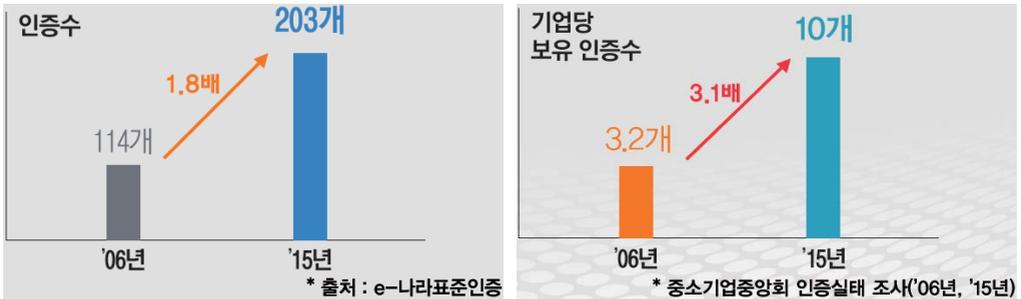
◎ 집필자 김창용 연구관 ① 044-200-2450 ② ckim@pmo.go.kr

### 1.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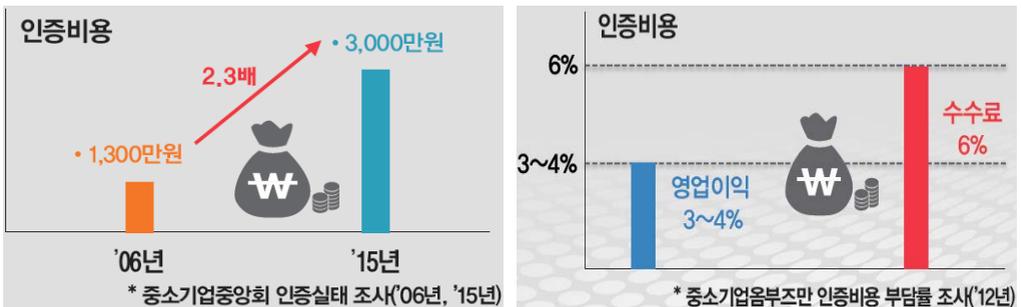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표준·기준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증명하는 제도로서,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의 합리적 선택 제고를 위해 '61년부터 도입되어 '15.3월 기준 203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지원정책으로 도입된 인증이, 오히려 경제적 부담과 시장진출의 진입규제로 변질되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인증비용은 '06년 평균 1,300만원에서 '15년 3,000만원으로 2.3배나 증가, 일부 인증은 영세중소기업에게 매출액의 6%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인증비용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인증 수 변화 추이 : 최근 10년간〉



〈인증비용 변화 추이 : 최근 10년간〉





## 2. 추진경과

정부는 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증제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인증혁신 TF\*를 구성하여, 정부 운영 중인 총 203개 모든 인증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다.

\* 인증혁신 TF :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국가기술표준원, 중소기업융합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등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의를 수렴하는 등 수요자인 기업과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으로 ‘인증제도 혁신 방안’을 확정하여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15.11.6)에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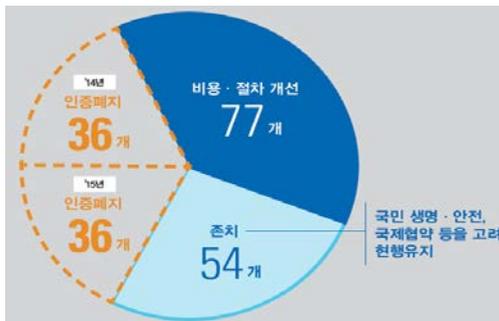
동방안은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5.6)에서 ‘인증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과도하니, 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개선’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이다.

## 3. 추진결과

금번 ‘인증제도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113개 인증규제 대대적 정비

- (폐지) 국제사례, 유사·중복 등을 검토하여 36개 폐지
  - ▲ 축산물/식품 HACCP ▲ 탄소성적표지 ▲ 공간정보품질인증 등
- (비용절감) 중소기업 비용·절차 부담 등을 고려하여 77개 개선
  - ▲ 환경표지 ▲ 친환경 가구 규제 ▲ 의료기기 허가 ▲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 다만, 국민 생명·안전, 국제협약 등 필수적인 54개 인증은 현행유지



## (2) 경제적 효과

- 이번 인증규제 정비를 통해 각 기업은 인증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수수료·시험검사비·인건비 등 인증비용을 매년 5,420억 원씩 절감하게 되며, 인증 유효기간이 평균 3년인 점을 감안시, 3년 누적 1조 6,260억원의 인증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 또한, 인증기간 단축으로 기업이 인증제품을 시장에 조기 출시하여 얻을 수 있는 매출 증가는 연간 8,63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인증 유효기간이 평균 3년인 점을 감안시, 3년 누적 2조 5,89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금번 인증규제 정비를 통해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은 약 23만개 업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KDI 경제적효과 검증(15.9~10월)

## 4. 정비 원칙

### (1) 국제사례 및 기준과 일치화

- 의료기기 품목등급 해외 동등수준으로 조정(73개), 경미변경 즉시인증(42일→즉시) 등 개선(~15.12월, 공통기준개정)
  - ➔ (비용절감)시험비용 1,677억원/년, (매출증대)조기출시 3,584억원/
- 해외 사례 없이 국내만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간정보 품질인증 폐지(~16.6월, 법개정)
  - ➔ (비용절감)도입 예측비용 13억원/년

### (2) 유사·중복 인증 전면 폐지

- 환경성 평가항목이 유사한 '탄소성적표지'를 폐지하고 '환경성적표지'로 통합(~15.12월, 고시개정)
  - ➔ (비용절감)탄소성적표지 수수료 47억원/년



- 유사한 소프트웨어 인증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으로 통합(~’16.1월)
  - ➔ (비용절감)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수수료 7억원/년

### (3) 중소기업 건의 해소 및 비용부담 집중 개선

- 환경표지의 연간 마크사용료 폐지, 모델별(색깔 등) 인증방식에서 제품별 인증으로 전환 등 (~’15.12월, 고시개정)
  - ➔ (비용절감)수수료 326억원/년, (매출증대)인증기간단축 2,074억/년
- 전기용품 안전인증 정기검사 주기 확대(1년→2년),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 시험항목 축소 등(~’15.12월, 고시개정)
  - ➔ (비용절감)수수료 339억원/년, (매출증대)시험기간단축 932억/년
-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 무선기기 시험 간소화,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및 자기적합선언 품목 확대(~’15.12월, 고시개정)
  - ➔ (비용절감)시험비용 209억원/년, (매출증대)시험기간단축 67억/년
- 고효율기자재인증 KC-KS-고효율 월스톱 인증처리로 중복 해소 및 中企 수수료 50% 경감(~’16.3월, 고시개정)
- (비용절감)시험비용 166억원/년, (매출증대)인증기간단축 490억/년

## 5. 주요 정비사례

- 화장지의 환경표지 인증은 50m, 70m 등 길이에 따라 각각 인증을 받도록하여 불필요한 인증 비용과 기간으로 중소기업에 상당한 부담
  - ➔ 이를 개선하여 길이에 관계없이 화장지로 단일인증을 받도록 개선
- 아파트에 설치되는 불박이 가구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재를 활용하여 제작한 경우에도 시험기구에 ‘통째로’ 넣어 다시 유해물질 방출량을 검사(대형챔버법 의무화)
  - ➔ 불박이 가구 ‘일부만’ 샘플 채취하여 시험하도록 개선(소형챔버법 허용)

- 기존 돈가스(고기함량 50% 이상)는 축산물 HACCP 인증을 받아 판매하고 있으나, 치즈, 고구마 등이 포함된 돈가스 신제품(고기함량 50% 미만)을 출시하려면 식품 HACCP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함
  - ➔ 고기 함량에 구분없이, 단일 HACCP으로 통합
- 수도용 밸브제품 적합인증은 업체당 6~10개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인증비용 이외에 마크사용료 명목으로 품목당 200만원 기본 수수료를 받고 있어 큰 부담
  - ➔ 연간 기본수수료(마크사용료) 200만원 폐지

## 6. 향후 관리방안

정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인증규제의 무분별한 도입을 차단하고,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 성과중심·사후규제 방식으로 규제를 심사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모든 인증규제에 다음과 같은 심사원칙을 적용한다.

### 인증규제 심사 원칙

- (신설 억제) 모든 인증제도에 대해 규제심사 적용 의무화, 신설 인증은 차별성·국제조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 심사
- (성과 중심) 개별 구성요소를 규제하지 않고 최종 목표를 규제
  - \* (사례) 창문·형광등·단열재 등 개별규제 → 건축물 에너지 최종 목표 규제
- (사후 규제) 자기적합선언 도입 확대, 시판품 조사 등 사후관리 강화

이와 더불어, 기술력 있는 기업이 인증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 조달제도도 개선한다. 조달 평가시 복수 인증 보유 기업에 대한 우대를 폐지하고, 인증 없이 조달진입이 가능하도록 인증 대신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금번 인증정비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실시간 관리·공개하고, 기업의 인증애로를 상시 접수·처리할 수 있는 인증규제 관리시스템을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내에 구축(15.11월~)하여 운영 중이다.

국무조정실은 인증규제 정비과제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중소기업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 국민과 기업이 만족할 때까지 끝까지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 인증규제 정비과제별 세부 추진현황**

( '16.2월말 기준)

연번	세부과제	유형	조치사항	기한	주관부처	진행현황
1	우수전자거래 사업자인증(eTrust인증)	폐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20151231	미래부	국회심의중
2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 및 장비 인증	폐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20151231	미래부	국회심의중
3	산림경영 교육·훈련 프로그램인증	폐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	20151231	산림청	국회심의중
4	공산품 안전인증	개선	고시 개정 및 품공법 개정	20151231	산업부	국회심의중
5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인증	폐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개정안 마련	20151231	고용부	완료
6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인증	개선	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 개정 및 시행	20151231	고용부	완료
7	사회적기업	개선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지표 개발	20151231	고용부	완료
8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개선	인증기관 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 개정 및 시행	20151231	고용부	완료
9	내화구조 인정	개선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 개정	20151231	국토부	완료
10	벽체차음 구조 인정	개선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 개정	20151231	국토부	완료
11	우수화물정보망인증	폐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20151231	국토부	완료
12	택시미터의 검정	개선	KS표준 제정안 마련 및 신청	20151231	국토부	완료
13	술품질인증	개선	술 품질인증기준 고시 개정	20160131	농림부	완료
14	유기 가공식품인증	개선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시험검사 상호인정	20151130	농림부	완료
15	친환경농축산물인증	개선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시험검사 상호인정	20151130	농림부	완료
16	토종가축의인정	개선	인정기준 고시 개정	20151231	농림부	완료
17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개선	고시 및 시행규칙 개정	20151231	농진청	완료
18	ICT융합품질인증	개선	인증기관(TTA)의 내부 운영 절차(품질절차서 등) 개정	20150930	미래부	완료

연번	세부과제	유형	조치사항	기한	주관부처	진행현황
19	데이터베이스품질인증(DQC)	폐지	고시 폐지 및 민간 인증제도 전환('15.12)	20151231	미래부	완료
20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제도(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개선	면제대상, 자기시험 적합등록 품목 확대 검토 및 고시 개정	20151231	미래부	완료
21	소프트웨어품질(GS)인증	개선	통합 정비(안) 관련 법령 등 개정 추진	20160131	미래부	완료
22	소프트웨어프로세스품질인증(SP)	개선	SP제도운영지침(미래부 고시) 및 관련 업무규정(인증기관) 등 개정	20151231	미래부	완료
23	웹접근성품질인증	개선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운영지침 개정	20151231	미래부	완료
24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개선	정보통신방법 개정	20151231	미래부	완료
25	정보보호시스템평가·인증(CC 인증)	개선	중소기업 지원 방안 마련	20151231	미래부	완료
26	국방마크(DQ마크)인증제도	개선	DQ마크 인증제도 운영 고시 개정	20151231	방사청	완료
27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	개선	관련 규정 개정	20151130	방사청	완료
28	가스용품검사	개선	고시개정	20151231	산업부	완료
29	계량기 형식승인. 검정	개선	고시개정	20151231	산업부	완료
30	고압가스안전관리	개선	고시개정	20151231	산업부	완료
31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개선	통합운영요령 시행	20150930	산업부	완료
32	어린이보호식품 품질인증	개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20150930	식약처	완료
33	방염성능검사	개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 개정	20151031	안전처	완료
34	수상레저기구의 우수사업장 인증	폐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20151231	안전처	완료
35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	가족친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51231	여가부	완료
36	성능인증	개선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20151231	중기청	완료
37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제도	개선	검정수수료 할인을 적용방안 마련 및 확정	20151231	해수부	완료



연번	세부과제	유형	조치사항	기한	주관부처	진행현황
38	측정분석능력인증	개선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정도관리 규정 개정	20151231	해수부	완료
39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폐지	관련 법령, 규정 등 개정 추진	20151231	행자부	완료
40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	폐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	20151231	환경부	완료
41	정수기 품질검사	개선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	20151231	환경부	완료
42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CCM)	개선	평가수수료 폐지	20160229	공정위	정상추진
43	AEO인증(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개선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개정	20160630	관세청	정상추진
44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폐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	20160630	교육부	정상추진
45	건설신기술인증	개선	통합요령 공동 고시 개정	20160331	국토부	정상추진
46	공간정보 품질인증	폐지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개정	20160630	국토부	정상추진
47	교통신기술인증	개선	통합요령 공동 고시 개정	20160331	국토부	정상추진
48	녹색건축인증	개선	녹색건축물 인증 규칙 기준 개정	20160531	국토부	정상추진
49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개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및 우수 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개정	20160630	국토부	정상추진
50	전국호환 교통카드인증	폐지	KS인증과의 통합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	20160831	국토부	정상추진
51	지능형건축물인증	개선	지능형건축물 인증규칙·기준 개정	20160630	국토부	정상추진
52	측량기기의 검사	개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20160630	국토부	정상추진
53	항공기 형식증명	개선	항공우주개발촉진법(산업부) 개정	20160630	국토부	정상추진
54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	폐지	기상법 개정	20160630	기상청	정상추진
55	기상측기의 검정	개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	20160331	기상청	정상추진
56	날씨경영인증	폐지	날씨경영기업 우대제도 운영규정 제정 및 운영	20160630	기상청	정상추진
57	농림식품 신기술	개선	통합요령 공동고시 개정	20160331	농림부	정상추진

연번	세부과제	유형	조치사항	기한	주관부처	진행현황
58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지정	폐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	20160531	농림부	정상추진
59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개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	20160531	농림부	정상추진
60	농산물의지리적표시제도	개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	20160531	농림부	정상추진
61	농업기계의 검정	개선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	20160630	농림부	정상추진
62	신기술농업기계지정	개선	통합요령 공동고시	20160331	농림부	정상추진
63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확인	폐지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	20160630	농림부	정상추진
64	위해쇠고기판매차단시스템구축 인증	폐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0160630	농림부	정상추진
65	전통식품품질인증	개선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20160630	농림부	정상추진
66	무대시설안전진단	개선	공연법 시행세칙(고시) 개정	20160331	문화부	정상추진
67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인증	폐지	관광진흥법 개정	20160630	문화부	정상추진
68	유기 시설, 기구의 안전성 검사	개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20160331	문화부	정상추진
69	그린인터넷인증	폐지	그린인터넷인증 관련 법령(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	20160630	미래부	정상추진
70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	폐지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20160630	미래부	정상추진
71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폐지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20160630	미래부	정상추진
72	보건신기술인증	개선	통합요령 공동 고시 개정	20160331	복지부	정상추진
73	어린이집평가인증	폐지	영유아보육법 개정	20160630	복지부	정상추진
74	의료기관 인증	개선	의료법 개정	20160630	복지부	정상추진
75	장애인생산물 인증	폐지	장애인복지법 개정	20160531	복지부	정상추진
76	목재제품 명인의 인정	폐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20160630	산림청	정상추진
77	목재제품신기술 지정	개선	통합요령 공동 고시 개정	20160331	산림청	정상추진
78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개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20160630	산림청	정상추진
79	산림탄소상쇄 우수제품 인증	폐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20160630	산림청	정상추진



연번	세부과제	유형	조치사항	기한	주관부처	진행현황
80	산림탄소흡수량인증	개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20160630	산림청	정상추진
81	수목원전문가교육과정인증	폐지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20160630	산림청	정상추진
82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폐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20160630	산림청	정상추진
83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개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20160630	산림청	정상추진
84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개선	세부운영방안마련 → 관련 규정 개정	20160331	산업부	정상추진
85	녹색인증	개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개정	20160630	산업부	정상추진
86	단체표준인증	개선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	20160630	산업부	정상추진
87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폐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20160630	산업부	정상추진
88	신기술인증(NET마크)	개선	통합요령 공동 고시 개정	20160331	산업부	정상추진
89	신제품인증(NEP마크)	개선	통합요령 공동 고시 개정	20160331	산업부	정상추진
90	한국산업표시인증(KS마크)	개선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	20160630	산업부	정상추진
91	항공우주 분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폐지	항공우주 산업개발 촉진법 개정	20160630	산업부	정상추진
92	급경사지 재해 예방용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폐지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	20160531	안전처	정상추진
93	방재신기술	개선	통합요령 공동 고시 개정	20160331	안전처	정상추진
94	소방용기계,기구 성능인증	개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160630	안전처	정상추진
95	소방용품형식승인	개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160630	안전처	정상추진
96	승강기검사	개선	승강기 부품인증과 검사 업무의 소관부처 일원화	20160430	안전처	정상추진
97	싱글PPM품질인증	폐지	관련법 개정(안) 국회제출	20160630	중기청	정상추진
98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형식 승인·검정	개선	선박안전법 개정	20160630	해수부	정상추진
99	수산물 지리적표시	개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	20160531	해수부	정상추진

연번	세부과제	유형	조치사항	기한	주관부처	진행현황
100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검사	폐지	항로표지법 개정	20160731	해수부	정상추진
101	해양오염방지설비 성능인증	폐지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20160831	해수부	정상추진
102	소음도 검사	개선	국토부 및 환경부 소음 중복규제 해소 방안 마련	20160630	환경부	정상추진
103	신기술인증·기술검증 (NET마크)	개선	통합요령 공동 고시 개정	20160331	환경부	정상추진
104	위생안전기준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품질인증	개선	적합인증제도 운영요강 개정	20160331	환경부	정상추진
105	탄소성적표지제도	폐지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20160630	환경부	정상추진
106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	폐지	환경교육진흥법개정	20160630	환경부	정상추진
107	S마크인증	개선	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 개정	20160930	고용부	정상추진
108	전기용품 안전인증	개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개정	20160630	산업부	정상추진
109	식품 HACCP	개선	식품 및 축산물 HACCP 법령 통합 법령 국회제출('16.12)	20161231	식약처	정상추진
110	의료기기 허가	개선	의료기기 공통기준규격 개정, 품목 재분류 개정	20161231	식약처	정상추진
111	축산물HACCP	폐지	식품 및 축산물 HACCP 법령 통합 법령 국회제출	20161231	식약처	정상추진
112	환경성적표지인증	개선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20160630	환경부	정상추진
113	환경표지제도	개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개정	20160731	환경부	정상추진
*	가구 친환경 규제 (대형챔버시험법) 개선	개선	대형챔버법 시험방법 개선, 소형챔버법 마련 및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개정	20160731	국토부	정상추진



## 제5절 공장설립이 쉬운 나라 프로젝트

◎ 집필자 박현수 사무관 ☎ 044-200-2452 ✉ qkrgustrn@pmo.go.kr

### 1. 프로젝트 추진배경

중국경기 둔화 등을 비롯하여 세계경기의 불확실성 증대가 내수경기 침체와 함께 나타나면서 경제의 성장속도에 대한 전망들이 부정적이었다. 특히 투자와 고용이 없는 성장, 산업간 불균형 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내수 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양적인 규제개선을 넘어 입지, 고용 등 파급력 큰 분야의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는 질적인 규제개선에 역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규제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들리는 현장으로 나아가 직접 규제애로 및 과제를 접하고 개선하고자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규제혁파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 2. 추진경과

2015년 3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직원 및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직원들로 10개팀을 구성하여 전국 21개 산단 및 40여개 관련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한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도 국무총리 취임 이후 첫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보고·논의되었다.

이날 회의는 국토부·산업부·농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 경기도지사,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개별공장 기업인들까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반월·시화 산업단지 현장에서 자리가 마련되었다. 규제로 불편을 겪는 중소기업인들도 회의에 초청하여 현장에서 느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회의에 앞서 별도로 국무총리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경영상 애로를 살펴보고 기업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 3. 추진결과 및 주요 개선사례

이번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규제개혁 대책은 그간 다양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던 부분을 직접 찾아 해결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융·복합 서비스업의 출현 등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에 입주가 허용되는 지식산업의 업종을 확대하고, 입주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산업단지는 지정해제 추진, 미분양 산업용지의 저가 경쟁입찰 및 중개의뢰 가능시기를 앞당겨 유휴 산업단지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산업단지 분양용지 및 기업지분 처분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재산권 처분을 용이하게 하였다.

한편 환경규제도 합리화하여 저수지 상류지역·계획관리지역이라도 환경오염 수준이 낮거나 관리가 가능하면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거리 및 업종제한을 완화기로 하였다. 환경영향 평가도 대기질 및 수질 현지조사의 경우 2계절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신뢰할 수 있는 기존자료가 있는 경우 현지조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도 명확히 하였다.

문화재 부문에서는 불명확한 지표조사 요건을 고증·학술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명확히 하면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도 지역 실정에 맞게 재조정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 1	산업단지 인허가 및 개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산단 지정해제 요건 완화, 미분양 용지 분양 촉진	○(현행) ① 입주수요가 부족한 산단도 지정해제 불가 ② 미분양 용지의 저가 경쟁입찰, 분양중개 의뢰가 준공 1년 후에 가능 → 미분양 해소 한계 * 현재 입주수요 부족을 사유로 산단 지정 해제는 불가능 ○(개선) ① 입주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 불가시, 지정해제 허용 ② 준공 즉시 저가 경쟁 입찰, 장기 미분양 예상 시 준공 전 분양중개 의뢰 허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현 행</th> <th>개 선</th> </tr> </thead> <tbody> <tr> <td>경쟁입찰 시기</td> <td>준공 1년 후</td> <td>준공 즉시 (준공 전 분양 공고시)</td> </tr> <tr> <td>분양중개 의뢰 가능 시기</td> <td>준공 1년 후에 경쟁입찰 실시 후</td> <td>2회 분양공고 후 경쟁입찰로도 미분양 예상될 경우</td> </tr> </tbody> </table>	구 분	현 행	개 선	경쟁입찰 시기	준공 1년 후	준공 즉시 (준공 전 분양 공고시)	분양중개 의뢰 가능 시기	준공 1년 후에 경쟁입찰 실시 후	2회 분양공고 후 경쟁입찰로도 미분양 예상될 경우
	구 분	현 행	개 선								
경쟁입찰 시기	준공 1년 후	준공 즉시 (준공 전 분양 공고시)									
분양중개 의뢰 가능 시기	준공 1년 후에 경쟁입찰 실시 후	2회 분양공고 후 경쟁입찰로도 미분양 예상될 경우									
	→ (개선효과) 유휴 산단을 타 용도로 활용 및 미분양 산업용지 분양 촉진										
대규모 산단 개발계획 변경시 산단절차 간소화 특례 적용	○(현행) 준공된 대규모 산단(공공 10km <sup>2</sup> , 민간 5km <sup>2</sup> 이상)은 기업 투자를 위한 일부 지역 변경·개발 시, 개발계획·실시계획 순서대로 변경 필요 → 장시간 소요 ○(개선)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계획 변경을 추진할 경우 변경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 처리하는 특례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개선효과) 계획수립 비용 20~30% 절감, 계획 변경 기간 2~3개월 단축										
민관합동 공공출자 SPC를 공공사업 시행자로 간주	○(현행) 민관합동 SPC는 민간시행자로 분류 → 토지수용, 先분양에 장시간 소요 ○(개선) 공공주도 민관합동 SPC(① 공공지분 50%이상 or ② 공공지분 30%이상 및 지배력 확보)는 공공시행자로 분류 → 조속한 토지수용, 先분양 가능 → (개선효과) 민관합동 산단개발 촉진(토지수용 약18개월, 先분양 약12개월 조기화)	* 토지수용 (약 18개월) 개선(공공) ←————— 현행(민간)									
	<table border="1"> <tr> <td>실시계획</td> <td>→ (약 12개월)</td> <td>보상(30%)</td> <td>→ (약 6개월)</td> <td>보상(50%)</td> </tr> </table>	실시계획	→ (약 12개월)	보상(30%)	→ (약 6개월)	보상(50%)					
실시계획	→ (약 12개월)	보상(30%)	→ (약 6개월)	보상(50%)							
	* 先분양 (약 12개월) 개선(공공) ←————— 현행 (민간)										

사례 2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	소관부처
		산업부 및 국토부
IT·융합 서비스업 위주로 산단 입주업종 확대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능 서비스업은 일부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기타 제조업 연관업종으로 제한</li> <li>○ (개선) 제조업 연계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융복합 유망업종 등의 입주 추가 허용 (지식산업 5개 내외 추가 허용, negative 규제방식 도입 검토)</li> <li>➔ (개선효과) 산단 내 제조·서비스 융복합 활성화 및 유망 서비스업 육성</li> </ul>	
입주기업 용지 및 지분처분 제한 등 과도한 거래규제 개선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저렴한 산업단지 용지를 활용한 투기적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은 공장설립 후 “5년간” 용지 처분을 제한받음</li> <li>* 공장설립전, 혹은 5년내 처분 희망시, 관리기관에게 용지를 취득원가로 양도할 필요</li> <li>- 해당 기업이 지분을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도 산업용지 처분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서 동등하게 규제</li> <li>○ (개선) (1)용지가격 및 투기적 행태의 안정화 조짐이 감지되는 지역부터 선별적으로 처분제한 기간(5년)을 완화, (2)투기적 의도가 없음이 명백한 지분거래에 대한 제한 완화 등의 제도개선 추진</li> <li>➔ (개선효과) 입주기업 용지거래에 대한 과도한 제한 완화로 경영여건 개선</li> </ul>	
노선·전세버스 확대, 산단 인근 아파트 특별공급 등 인프라 확충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근로자 A씨는 도시 외곽의 산단 내 직장까지 연결되는 대중교통이 없어 자가용으로 통근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가 심한 상황</li> <li>- 산단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기숙사 부족</li> <li>○ (개선) 고정수요가 적어 노선버스 운행이 어려운 경우, 출·퇴근 시간대만 운영하는 형태(한정면허)의 노선버스와, 통근형 전세버스 투입을 확대</li> <li>- 산단 인근 아파트를 입주기업과 근로자에게 특별공급하여 관사·기숙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공급기준과 절차 마련</li> <li>➔ (개선효과) 산업단지 접근성 제고 및 근로자 교통편의 향상,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산단 내 청년층 유입 촉진</li> </ul>	



사례 3	개별입지 공장규제 합리화	소관부처
		농식품부 및 국토부
개발진흥지구 등을 통한 공장건축 건폐율 완화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공장은 원칙적으로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에 허용하고 있고, 그 밖의 용도지역에는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공장 허용업종을 규정하면서, 건폐율은 20~40% 이내로 적용</li> <li>○ (개선)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 지정의 주민제안을 허용하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 허용업종 등의 건축규제를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수요가 높은 자연녹지지역 등에도 건폐율 완화 가능</li> <li>- 지자체가 공장밀집 예상지역 등에 대해 기반시설 등을 검토하여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경우에 건폐율 완화범위* 확대</li> <li>* (현재) 계획관리지역만 완화 → (개정)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도 완화 가능</li> </ul> </li> </ul> <p>➔ (개선효과) 공장 신·증축 애로 해소 및 계획적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p>	
저수지 상류지역 개별입지 공장설립 제한 완화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농어촌 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해 저수지 상류 유효거리 500m내에는 공장 설립을 금지하고, 2km초과 5km이내 비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만 설립 가능</li> <li>○ (개선) 저수지 상류 500m내의 경우 오폐수 전량을 공공하수처리 시설 등으로 유입시키는 등 저수지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판단시 공장 설립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km 초과 5km이내 비도시 지역의 경우에도 폐수배출시설 기준 명확화를 통해 저수지 수질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 공장설립 허용</li> </ul> </li> </ul> <p>➔ (개선효과) 저수지 상류 공장설립제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p>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절차 개선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기초-광역지자체간 의견 불일치로 인한 사업 장기화 및 건축물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10% 이상 증가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어 공사기간 지연 초래</li> <li>○ (개선) 시·도 위원회는 시·군의 자문결과를 미리 확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군의 의견을 시·도 위원회 심의 의견으로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지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5% 이하로 변경시, 허가권자가 기반시설, 안전, 환경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위원회 심의 생략</li> </ul> </li> </ul> <p>➔ (개선효과) 공장설립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비용 절감</p>	

사례 4	환경 규제 혁신	소관부처
		환경부
<p>대기·수질 현장조사 2계절 이상 실시하되, 대체기준 명확화 (환경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기존 자료와 무관, 3계절 이상 현장조사 실시요구</li> <li>○ (개선) 대기질 및 수질 현장조사를 2계절 이상 실시하되, 신뢰할만한 기존 데이터가 있을 경우 현장조사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질 현장조사는 4계절 이상에서 2계절 이상으로 완화(대기는 이전부터 2계절 조사 이상)</li> <li>** 국가 등 공공기관 측정망자료, 인근지역 환경영향평가 조사자료 등</li> </ul> </li> <li>➔ (개선효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최소 2계절 이상 단축 가능</li> </ul>	
<p>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환경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에도 타 사업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30일로 규정됨</li> <li>○ (개선)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20일 이내에 협의를 원칙으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만㎡ 미만의 공장, 창고 등 8개 사업</li> </ul> </li> <li>➔ (개선효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최소 10일 이상 단축 가능</li> </ul>	



사례 5	문화재 규제 혁신	소관부처 문화재청
<p>발굴조사 기간 명문화 및 부분완료 횟수 제한 폐지 (문화재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지자체장이 지표조사를 명(3만㎡이하)하는 요건이 불명확하고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이의제기 절차가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굴 조사기간의 예측근란과 부분완료 횟수 제한(2회) 및 지하유구를 훼손하지 않는 발굴유예대상을 단순성토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의 조기착수 지연</li> </ul> </li> <li>○ (개선) 지표조사는 고증·학술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적 유형에 따른 발굴기간 준수 의무를 명문화하고, 부분완료 횟수제한 폐지 및 발굴유예 대상을 건축으로 확대</li> </ul> </li> </ul> <p>* 발굴유예 : 발굴조사 없이 사업시행, 추후 조사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발굴</p> <p>➔ (개선효과) 매장문화재의 조사대상 명확화, 조사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자 부담 경감</p>	
<p>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문화재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건축허가 판단 시, 명료한 기준이 없이 전문가 판단에 의존함에 따라, 심의 결과 간 편차 발생 및 예측가능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 기준(허용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나, 원지형보존구역(신축제한), 매장문화재 주변(높이 제한) 등을 중심으로 허용기준이 일률적이고 과도하다는 불만</li> </ul> </li> <li>○ (개선) 문화재 유형별 검토기준을 수립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기준으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재조정하여, 사유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도록 건축 규제 개선</li> </ul> </li> </ul> <p>➔ (개선효과) 개발-보존 갈등이 높은 약 500건의 허용기준이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재산권 갈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p>	

## 제6절 규제개혁신문고

◎ 집필자 안희영 사무관 ☎ 044-200-2634 ✉ 1234567@pmo.go.kr

### 1. 규제개혁신문고 개요

규제개혁신문고는 2014년 3월 20일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시 ‘국민의 규제개선 의견을 직접 듣고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개설된 온라인 중심의 원스톱 규제건의 처리 창구이다.

국민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구축되어 있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쉽게 규제개선을 건의할 수 있으며, 청와대 홈페이지, 각 부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건의도 규제개혁신문고에서 일괄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또한, 본인의 건의가 접수되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어떤 건의들이 수용되어 개선되었는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의 건의가 수용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규제존치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 2.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처리 절차

#### 가. 3단계 검토과정

규제개혁신문고로 접수된 건의처리 시스템의 핵심은 합리적인 건의가 사장되지 않도록 “부처 답변 → 소명 → 개선권고”의 3단계 검토과정을 거친다는 점이다.

1단계로 소관부처에서는 규제건의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수용 여부를 검토하여 14일 내에 담당 국·과장 실명으로 답변해야 한다. 2단계로 국무조정실에서는 소관부처 답변의 적절성 여부를 민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여 소관부처에서 수용하지 않았으나 ‘합리적 측면’이 있는



건의에 대해서는 접수일 기준 3개월 내 규제준치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소관부처에 소명을 요청한다. 3단계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소관부처에서 규제준치로 소명한 건의에 대해 그 타당성 및 관련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 나. “답변실명제” 및 “소명제도” 도입

그동안 각종 민원이나 규제 건의처리 등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던 것은 무엇보다도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형식적으로 답변하거나 국민의 입장이 아닌 소관부처 입장에서 규제의 필요성 등을 자의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이다. 이에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소관부처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하였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대표적인 제도가 “답변실명제”이다. 소관 부처에서는 규제건의에 대한 답변시 반드시 규제를 소관하고 있는 부서의 국장과 과장의 실명을 걸고 답변해야 한다. 소명시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소관부서의 1급(실장)의 실명을 걸고 소명해야 한다. 실무자 선에서 답변하는 것과 책임자 실명을 걸고 답변하는 것은 책임성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또한, 소관부처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검토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소명제도”를 도입하였다. 소명제도에서는 각 부처에서 답변시 수용하지 않았지만 “합리적 측면”이 있는 건의를 선별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과정에서는 민간자문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민간자문단은 국토·농림·산업·금융·안전·교육·복지·노동·환경·법제 등 11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처 답변의 타당성 등을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하므로 총리실 규제신문고팀에서 소명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소명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는 소명 필요성 등을 첨부하여 소관부처로 전달된다. 때문에 소명절차는 해당 규제에 대하여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소명통보를 받은 부처는 심층적인 재검토 과정을 거쳐서 규제건의를 수용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규제준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사유를 소상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3. 2015년도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성과

2014년 3월 규제개혁신문고 개설 이후 2015년 말 현재 총 8,047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하여 그 중 3,218건을 수용하여 누적수용률이 40%를 돌파하였다. 규제개혁신문고 개설 이전인 2013년 규제건의의 수용율이 8%(24건/300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질적·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산시키는 핵심적인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5년 한해 기준으로는 총 2,200여건의 규제건의가 접수되어 920여건이 수용되었다. 수용된 920여건 중 46건은 각 부처에서 당초 답변시 수용하지 않았지만 총리실에서 합리적인 건의로 판단하여 각 부처에 소명조치를 시켜 수용을 이끌어 냈으며, 6건은 각 부처에서 규제존치로 소명한 건의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타당성 및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권고를 통해 수용을 이끌어 내었다. 수용된 건의 919건 중 681건은 2015년 말 현재 제도개선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건의도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을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2,200여건의 규제건의를 피규제자별로 분류해보면 ▲일반국민의 건의가 56.2%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건의 26.0% ▲기업 건의 15.3% ▲기타 건의 2.5% 순이었다. 수용되어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건 중에는 ▲국민생활 관련 규제개선이 49.8%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관련 규제개선 25.7% ▲기업관련 규제개선이 22.0% ▲기타 규제개선이 2.5%를 차지했다.

### 4. 주요 규제 개선 사례

#### 가. 입지규제 개선

##### (1) 개발행위허가기준(진입도로 확보의무) 완화

최근 해외 관광객 방문 수요 충족을 위해 목장 내 유기공 공장 증축을 추진하던 중 H씨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라 개발규모 5천㎡미만의 건축물 증축시에는 개발현장까지



4M폭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만 하는 규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본인이 소유한 목장 진입도로 폭을 감안할 때 유가공 공장 증축은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규제개혁신문고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규제개혁신문고에서는 ‘농업의 6차 산업화’가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정책목표임을 인지하고 관계기관 합동 회의, 합동 현장방문 및 수차례의 개별 협의 등을 통해 개선점을 모색함과 동시에 관계부처간 의견 차이를 조율하여 합의점 도출하여 농업인 등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이하의 농업 등의 소규모 가공·유통·판매시설의 경우, 도로폭 확보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2015년 5월 지침 개정을 완료하였다.

## (2) 산지경사도 제한 완화

경사도 제한이란 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면적의 40%를 넘을 경우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강원도·경상북도 등 산지경사가 급한 지역에서는 관광단지 조성 등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었다. 규제개혁신문고에서는 산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정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접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다양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산림청과 협의하였다. 이에 지역·지구 지정시 경사도 문제가 검토된 경우라면,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서 경사도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2015년 11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였다.

## (3) 그린벨트 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기준 완화

그린벨트 내 도로를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과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주변 토지이용 현황, 보전가치 등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것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제한되었다. 이에 규제개혁신문고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1만㎡를 일부 초과(상한 3만㎡)해도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2016년 3월까지 개정될 예정이다.

## 나. 진입규제 개선

### (1) 동물약품 제조 진입규제 해소

동물용 의약품(백신) 생산을 위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조사, 임상시험 수탁자의 범위를 기존 동물용 백신 제조사(5개사)로 한정, 기존 업체가 수탁을 거부할 경우 신규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하여 2014년부터 관련 기관에 수탁기관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줄기차게 건의 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가 규제개혁신문고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이에 규제개혁신문고 에서는 향후 백신 등 동물약품 개발 및 관련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고 현장실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했으며,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동물용 의약품의 임상시험 수탁업체의 범위를 전문 수탁업체 및 인체용 의약품 생산업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을 2015년 9월 완료하였다.

## 다. 환경규제 개선

### (1) 특정대기 유해물질 관리기준 개선

특정대기 유해물질이 극소량만 검출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은 산단 등에 입지가 제한되거나, 강화된 자가측정 대상으로 지정되어 사업에 어려움에 봉착하여 고전하던 중 규제개혁신문고의 문을 드렸다. 이에 규제개혁신문고에서는 환경부와 함께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공감하고, 향후 합리적인 한계농도 기준 등을 마련하여 극소량의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입지제한 및 자가 측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2015년 11월에 개정하였다. 이에 따른 관련업체 비용절감효과는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2)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규정 개선

소량·저가의 연구용 시약을 수입할 경우에도 품목당 1만원 이상의 등록면제 확인증 수수료를 매년 지불해야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정으로 영세사업장에 부담이 되던 차에,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를 접수하였다. 이에 시약이 동일물질인 경우



등록면제 확인증 수수료를 최초 1회 지불하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향후 업체당 평균 7,500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라.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 (1) 캠핑카 등 레저기구 전용면허 신설

최근 캠핑카, 카라반, 수상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레저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견인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형 면허가 있어야 가능해 관광·레저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되어 현장실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캠핑카, 수상오토바이 등과 같은 소형 트레일러 견인에 적합한 소형견인차 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5년 11월에 국회 제출되었다. 본 개정안 통과시 향후 관광·레저 활성화 및 캠핑카·수상 레저기구 제작·판매·대여 등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저수지의 유·도선 야간운행 허용

저수지에 보트를 띄워 관광객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A씨는 사람들에게 더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밤에도 보트 운행 등 유선업을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침 상 일몰 후에는 유선 운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야간 보트 운행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규제개혁신문고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의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서 유·도선 운행은 관련법에 따라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일몰 후에도 연장운행을 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지침」 개정을 2016년 2월 완료하였다.

### (3)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허용

환자진료라는 의료기관 본연의 업무에 밀려 진료정보에 대한 보안정책(인증 및 보안솔루션, 백업시스템, 보안담당자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이를 보안수준이 높은 외부전문기관에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어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를 접수하였다. 규제개혁신문고와 보건복지부는 환자 진료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환자진료

업무라는 본연의 업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여 2016년 2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던 진료정보를 보안수준이 높은 외부전문기관(보관소)에 보관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다수의 의료기관이 공동·투자하여 저비용으로 환자 진료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 (4) 외환이체업 도입

국가간 개인(소액)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을 검토 중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은행의 고유한 업무인 국경간 지급·수령 등 사무를 개인사업자가 개인 및 소액에 한하여 직접 취급할 수는 없는지 규제혁신문고에 개선을 건의하였다. 이에 규제개혁혁신문고와 기획재정부는 핀테크 기반 외화이체업 등 새로운 수요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건의자 면담, 일본 등 해외사례 조사, 외국인 근로자 송금 현장실태 조사, 관계기관 합동 TF 논의 등을 진행하여, 은행의 외국환 업무 위탁을 통한 소액 외화이체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6년 3월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향후 유학생 송금,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송금 등 소액 이체에 따르는 수수료 부담이 대폭 해소되고, 국내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마. 기업애로 해소

#### (1)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지방공무원 W씨는 지방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유치하려던 중 기업이 지방에 신·증설 투자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투자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이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이어야 가능하다는 규제로 고용자가 많은 경우 요건 충족이 곤란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규제개혁혁신문고에 개선을 요청하였고 이에 지원요건을 기업규모에 따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으로, 상시고용인원 10% 이상 또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5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100인 이상인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2015년 7월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을 완료하였다. 이로 인해 향후 9조1,547억원 투자, 23,902명 고용창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부담금 납부수단 다양화

환경개선 부담금 등 일부 부담금을 제외하고 수질개선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현금납부 외에는 납부 불가하여 불편을 초래하던 중 규제개혁신문고에 개선을 요청하는 건의가 접수되었다. 이에 신용·직불카드 등 다양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2015년 12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완료하였다. 향후 국민편의 증진 및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경영애로를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최저가낙찰제도 개선

최저가낙찰제는 덤핑입찰시 부실시공에 따른 품질저하 및 유지관리비로 인해 오히려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된다는 등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중 규제신문고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 건의가 접수되었다. 가격경쟁 위주의 입찰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6년부터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 대상으로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 낙찰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하고 2015년 12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였다.

## 바. 영세·자영업자 애로 해소

### (1) 복합매장 형태인 솜인솜 영업 허용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은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층 또는 벽으로 분리하도록 규정, 다양한 영업형태 및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규제개혁신문고에서는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분리 의무가 소상공인들에게는 진입규제로 작용하여 식품산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고객의 요구 및 다양한 영업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의를 통해 식품접객업 특성에 따라 시설 간 분리 및 구획, 구분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 솜인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완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2015년 12월 완료 하였다. 현재 823,576개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주된 원료 범위 확대

기존에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서는 해당 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산한 가공품은 주된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단순 가공품(쌀가루, 고춧가루 등)을 원료로 하는 일부 식품(한과, 고추장 등)의 경우에도 생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 하였으나 고춧가루, 쌀(밀)가루 등 1차 가공식품(본래 성질변화 없을 정도의 탈곡·도정·제분 등)을 활용한 가공·처리시설도 허용되도록 2016년 1월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금번 개정으로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주원료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6차산업 활성화, 농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 국민불편 해소

### (1) 수박의 신선도 판단기준 개선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표준규격」상 수박은 수박꼭지 유무에 따라 신선도를 판단, 농가에서는 꼭지 유지를 위해 많은 일손을 투입해야 하며, 유통과정에서 손상시 헐값에 수박을 팔아야만 했다. 농촌 현장의 소리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되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수박꼭지 절단여부가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고, 수박꼭지 제거 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은 344~627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수박꼭지 유무에 따른 신선도 판단기준을 없애는 2015년 6월 지침 개정이 완료되었다. 또, 수박꼭지를 대신하여 소비자가 좋은 수박을 선별할 수 있도록 당도나 입고 날짜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 (2) 승합자동차 검사기간 조정

중·대형승합차의 경우 차령 5년까지는 매1년마다 자동차검사를 받고 있으나, 5년을 초과한 경우 6개월마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자동차 소유주에게 과다한 규제로 작용하여 규제개혁신문고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과거에 비해 차량 성능이 향상된 점과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중형승합차 등의 검사 유효기간을 일부 조정(차령 5년 초과 기준을 8년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하고, 2016년 상반기 내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할 예정이다.



## 5. 향후 계획

내년에도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규제개혁신문고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국정 4년차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는 데 앞장 설 예정이다.

우선,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기업의 규제개혁신문고 활용도를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다. 공공 및 민간 매체 홍보를 통해 규제개혁신문고 인지도를 제고하고, 주요 언론사를 통해 규제개혁신문고 수범사례를 소개하는 등 기획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규제개혁신문고 메일링’을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등 맞춤형 현장 홍보도 적극 실시할 것이다.

둘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향적인 규제건의 검토를 통해 수용률을 지속 높여나갈 것이다. 각 부처에서 「규제신문고 운영 가이드라인」을 확행할 수 있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점검 및 민간전문가 등과 협업하여 각 부처에서 불수용한 답변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해 소명조치를 통해 규제개선을 유도할 것이다. 또한, 개별 규제개선 건의에서 착안하여 사업별·분야별로 얽혀있는 복합규제 등을 일거에 해소하는 ‘테마별 규제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 → 현장집행 → 애로해결’ 전 과정이 확실하게 완료될 때까지 건의자와 상시 소통하고 미흡사항은 신속히 보완하는 등 내실있는 사후관리를 통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 제7절 경제단체 건의과제

◎ 집필자 정재상 사무관 ① 044-200-2416 ㉠ kkirri@pmo.go.kr

### 1. 추진배경

'14년 규제기요틴 방식의 규제개혁 도입 이후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단기간 집중적으로 개선하여 기업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었다.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혁으로 체감도를 제고한다는 취지하에,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나서 각 경제단체 및 관련 기업대표 등과 함께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대체로 행정의 영역보다 빠른 호흡으로 움직이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한시라도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간담회에서 제기된 각종 규제애로들과 더불어 각 경제단체에서 모아진 규제개선 건의들을 모아 규제기요틴 방식으로 적극 개선하였다.

### 2. 개요

경제단체 건의과제는 경제단체 및 기업 등의 현장건의 접수 - 과제 검토 및 소명회의 - 민관합동회의 개최 및 처리결과 발표의 3단계로 추진되며, '15년에는 두 차례 경제단체 건의과제를 검토하였다.

특히, 각 경제단체에서 건의된 기업 규제애로는 관계부처에서 규제존치 필요성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건의를 완전히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대안마련을 통해 최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각 개선과제는 규제기요틴 방식을 도입, 즉시 추진이 가능한 사안은 즉시 조치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내 조치완료가 가능한 사안은 3개월 내, 법률 개정사안은 6개월내 완료함으로써 규제개혁의 효과가 현장에서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집중 추진한다.

모든 과제는 규제정보포털에 등록하여 실시간 관리해나가고 있으며 규제조정실에서 매주단위로 이행여부를 점검, 지연과제 등은 지속 독려해나가고 있다.



### 3. 경제단체 건의과제 처리결과

#### 가. 제2차 경제단체 건의과제('15.7.10)

'15.3월~4월에 걸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중견기업 연합회, 벤처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7개 경제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176건의 현장 규제애로를 접수하였으며, 부처 소명회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23건을 수용(수용률 69.8%)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총계	소계 (수용률)	수용			불수용
		수용	일부수용	대안마련	
176	123 (69.8%)	73 (기조치 43)	20	30	53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 ① 산단에 연접한 공업용지의 건폐율 80%까지 허용

- (현행) 현재 동일 산업단지로 관리되고 있으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단지(70%) 및 산업단지(80%) 여부에 따라 건폐율이 상이
- ➔ (개선) 공업용지 사업 단지로서 산업단지와 연접한 경우 자치단체 조례로 건폐율을 산업단지 수준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개선(70%→80%)

#### ② 계획관리지역내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 기준 합리화

- (현행) 계획관리지역내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 시설의 경우 배출량에 관계없이 유해물질을 미량이라도 배출하면 해당 시설을 폐쇄
- ➔ (개선) 측정분석기술 발달로 인해 해당 공장의 배출물질로 보기 어려운 미량까지 검출되는 점을 감안,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개정 등 통해 계획관리지역 내 미량의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마련

**③ 보험회사 스스로 이율·가격 설정이 가능토록 금융 감독규제 완화**

- (현행) 보험료 산출이율 등은 외형상 자율결정 구조이나 감독당국의 간섭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
- ➔ (개선) 보험회사 판단·책임하에 적용 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고 금융 당국의 행정지도 등을 최소화하도록 개선

**④ 건강관리 목적 스마트 기기 등 허용기준 마련**

- (현행) 건강관리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 등 건강관리 목적의 스마트 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또는 비의료기기간 분류기준 미비로 업계 혼란 가중
- ➔ (개선)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간 구별 기준 마련, 건강관리 목적의 스마트기기 등은 위해성 판단 등 통해 비의료기기로 분류 가능토록 개선

**⑤ 공공기관 문서보관시 공인전자문서 센터 활용**

-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기록물 보존을 위해 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전자문서법상 공인전자문서센터 활용은 불가하여 기록물 보관관련 신규 투자수요 저해
- ➔ (개선) 국가 및 지자체를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이 '민간기록물 관리시설(기록원장 지정·고시)'을 활용하여 전자기록물을 보존·활용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 마련

**⑥ 소음·진동 배출시설 판별시 마력기준 외 dB 등 소음도 기준 적용**

- (현행) 압축기·송풍기·단조기 등의 기계류는 10마력(HP)의 경우 소음도와 상관없이 소음·진동배출시설로 구분
- ➔ (개선) 마력(HP)은 동력 측정단위인 점 등 감안, 소음배출시설 판별시 현행 마력(HP) 기준과 함께 합리적인 '소음도 기준(dB 등)' 마련



**⑦ 가구제품 계약시 제출해야 하는 시험성적서 세부규격 수 축소**

- (현행) 가구제품 다수공급자 계약시 ISO 인증이 없는 경우 제품별·규격별 시험성적서 제출의무가 있으나, 과도한 비용부담 발생 우려
- ➔ (개선) 조달청과 가구업계간 간담회 등을 거쳐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세부규격 수 축소방안 마련

**⑧ 날개없는 선풍기를 에너지효율등급 적용품목에서 제외**

- (현행) 획일적인 선풍기 적용범위(날개 유무, 지름의 크기 및 축류형 팬 사용)로 인해 에너지효율등급 측정 불가 및 효율관리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함
- ➔ (개선) 날개없는 선풍기가 에너지효율등급 문제로 판로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에너지효율등급 적용품목에서 선풍기 제외

**⑨ 카센터 작업범위에 정비목적의 조향기어 탈·부착 허용**

- (현행) 자동차전문정비업(카센터)은 조향기어 탈·부착 작업이 불가
- ➔ (개선) 자동차전문정비업(카센터)에서도 조향기어 상부의 기기 또는 장치 정비에 수반되는 경우 조향기어 탈·부착이 가능토록 허용

**나. 제3차 경제단체 건의과제('15.12.3)**

'15.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 건의사항을 포함, 총 90건의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부처 소명회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73건의 과제를 수용(수용률 81.1%) 하였다. 특히, 제3차 건의과제는 시행초기인 화평법 및 화관법 관련 건의를 포함한 환경분야가 전체 건의의 절반 수준(40건)을 차지하였으며, 환경부의 전향적 검토를 통해 35건을 대폭 수용하였다.

수용과제 중 계량적인 기대효과 산출이 가능한 사례를 집계한 결과, 총 7,800억원의 투자유발 및 960억원의 비용절감, 8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총계	소계 (수용률)	수용			불수용
		수용	일부수용	대안마련	
90	73 (81.1%)	49 (기조치 17)	11	13	17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 ① 유해화학물질 실내저장시설 높이기준 완화

- (현행)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실내저장시설 높이기준 6m로 규정, 이미 저장시설 높이가 6m 초과하는 사업장은 시설보완 불가
- ➔ (개선) 안전설비 설치 저장시설은 6m 높이기준 면제

###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불연재료 사용 면제

- (현행) 유해화학물질 취급 건축물은 불연재료 사용해야 하나, 반도체 등 생산위해 특수 기능(분진방지 등) 있는 마감재 사용시 불연재료 사용 불가
- ➔ (개선) 화재·폭발 등 대비 안전장치 설치된 경우 불연재료 설치 면제

###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없는 판매점의 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 (현행)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없는 판매점의 경우에도 관리자 선임 의무
- ➔ (개선) 안전교육(8시간) 이수한 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역할 대체 허용

### ④ 산단내 연료전지발전소 입지 지원

- (현행) 국가·일반산단내 기존공장 유휴부지를 임차해 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불가
- ➔ (개선)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산업용지내 유휴부지를 지원용지로 전환하여 연료 전지발전소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



### ⑤ 산업용지 분할처분 관련 규제 완화

- (현행)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설립 완료 후 잔여부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잔여부지 분할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처분 제한

➔ (개선) 공장설립 완료로부터 5년 경과하는 경우 처분 허용

### ⑥ 농어촌공사 보유수면 점용료 인하

- (현행)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농어촌공사 보유수면 점용료(총 수입금 10%)는 타법상 점용료\*에 비해 과도

\* (하천법) 공시지가의 3%, (공유수면법) 인접 지가의 3%

➔ (개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점용료의 50%까지 감면 가능

### ⑦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출입국 규정 개선

- (현행) 국내공항 경유, 괌 출발 또는 도착하는 미국 VISA 소지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무비자 입국 불가

➔ (개선) 무비자 입국 허용을 통한 중국인 관광객 활성화 지원

## 제8절 손톱 밑 가시 규제 개선

◎ 집필자 김민정 사무관 ☎ 02-6050-3393 ✉ mjitop@pmo.go.kr  
백창열 사무관 ☎ 02-6050-3374 ✉ bcr7315@pmo.go.kr

### 1. 개요

2015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기업과 소상공인 및 일반 국민의 경제 활동에서 규제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손톱 밑 가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였다.

이를 위해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적극적인 규제개선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일자리 확대,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신산업 창출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접수된 규제개선 과제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손톱 밑 가시로 선정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부처의 중장기검토 과제와 수용근란 과제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아울러, 소관부처에서 개선하기로 한 과제는 후속조치가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규제개선 완료과제에 대해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와 성과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는 물론 정부의 신뢰 제고도 도모하고 있다.



## 2. 손톱 밑 가시 개선 실적

### 가. 전체 추진성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출범 이후('13.9~'15.12) 총 4,394건의 규제 및 기업애로 건의과제 중 3,035건을 처리 완료하고, 이 중 1,045건(34.4%)을 개선하였다.

계	일반민원 (이첩)	부처 협의중	처 리 결 과				
			소계	수용	기시행	중장기검토	불수용
4,394	1,249	110	3,035	485	560	406	1,584
			100%	16.0%	18.5%	13.4%	52.2%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영업 149건(14.3%), 환경 106건(10.1%), 자금·금융 102건(9.8%), 기술인증 85건(8.1%), 공장입지 80건(7.7%) 등이다.

계	영업	환경	자금 금융	기술 인증	공장 입지	재정 세제	국민 불편	판로 조달	위생 안전	인력	대·중 소상생	교육 의무	창업	기타
1,045	149	106	102	85	80	78	70	70	68	63	18	14	7	135

부처별로는 환경부가 130건으로 가장 많고, 국토부 112건, 고용부 89건, 산업부 84건, 금융위 78건, 식약처 77건 순으로 개선하였다.

계	환경부	국토부	고용부	산업부	금융위	식약처	중기청	기타
1,045	130	112	89	84	78	77	67	408

### 나. 2015년 추진 성과

총 2,434건의 규제 및 기업애로를 발굴하여 1,625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이중 490건 (30.2%)을 개선하였다.

계	일반민원 (이첩)	처 리 결 과				
		소계	수용	기시행	중장기검토	불수용
2,434	809	1,625	198	292	202	933
		100%	12.2%	18.0%	12.4%	57.4%

\* 2015년 분기별 주요 개선사례

분기별	주요 개선사례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기업 대외채권회수 기한 연장(1월)</li> <li>○ 정부공사 입찰적격심사기준 중 경영상태 평가 합리화(1월)</li> <li>○ 외국환거래법상 상계규정의 신고면제 범위 확대(1월)</li> <li>○ 토석채취 후 용도변경 제한 폐지(1월)</li> <li>○ 중소기업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부과 완화(2월)</li> <li>○ 장년인턴제 지원 대상 확대(2월)</li> <li>○ 연료전지발전소 개발제한구역 입지 규제개선(3월)</li> <li>○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설비 설치 허용(3월)</li> <li>○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인증방법 개선(3월)</li> <li>○ 해외건설업자의 보고 기한 연장(3월)</li> </ul>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 내 공장간 연결시설 설치 허용(4월)</li> <li>○ 제3국 여행 통과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 확대(4월)</li> <li>○ 조달입찰 공고 시 시설요건 과잉요구 개선(4월)</li> <li>○ 종합심사낙찰제 운영기준 완화(5월)</li> <li>○ 성서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처분 및 임대 제한 기간 완화(5월)</li> <li>○ 용접기업의 자동차 일반산업단지 입주 허용(5월)</li> <li>○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용도지역 변경(5월)</li> <li>○ 도로사선제한 규제 폐지(5월)</li> <li>○ 먹는 해양심층수 연장 서류 간소화 및 유통기한 확대(5월)</li> <li>○ 가구 원자재 수입자명 변동단위 표기 허용(6월)</li> </ul>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관리기능 탑재 스마트폰 등에 대한 허용기준 마련(7월)</li> <li>○ 국내 의료기기도 외국 의료기기와 동일하게 기술심사 면제(7월)</li> <li>○ 황열병 예방접종 기관 확대(7월)</li> <li>○ 수입의약품(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 시 제조판매증명서 제출 면제(7월)</li> <li>○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의 민간기관 근무경력 차별 해소(7월)</li> <li>○ 계획관리지역 화장품공장 설립 규제 완화(7월)</li> <li>○ 저수지 상류 공장설립 제한 완화(8월)</li> <li>○ LNG 저장탱크용 신소재 개발을 위한 검사기준 완화(9월)</li> <li>○ 연구개발서비스업 선정 시 매출액 비중 기준 완화(9월)</li> <li>○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인정범위 확대(9월)</li> </ul>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 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기준 완화(10월)</li> <li>○ 한국표준산업분류 3D프린터 제조업 분류기준 마련(10월)</li> <li>○ 소음·진동배출시설의 분류기준 합리화(10월)</li> <li>○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군사기지 고도제한 규제 개선 (10월)</li> <li>○ 게임물등급분류 제도 개선(11월)</li> <li>○ 아토피에 관한 화장품의 표시·광고 규제 개선(12월)</li> <li>○ 의약품 가격표시 방식 알기 쉽게 개선(12월)</li> <li>○ 학원에 통학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12월)</li> <li>○ 미반납 렌터카 말소등록 허용(12월)</li> <li>○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 완화(12월)</li> </ul>



### 3. 손톱 밑 가시 주요 개선 사례(10選)

#### 가. 산업단지 내 공장 간 연결시설 설치 허용

발광다이오드(LED) 전문업체인 S반도체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본사 공장(1공장)과 자회사인 공장(2공장)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180m 통로를 내고 싶었지만 공익적 목적 외에는 공원 부지에 통로를 낼 수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를 거부당했다. 하는 수 없이 그동안 트럭으로 공원을 돌아 1.2km 거리를 오가며 물건을 날랐다.

S반도체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에 건의하였고, 추진단은 국토교통부·경기도·안산시 등 관계당국과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2014년 3월에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하였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 9월 공공 목적이 아닌 시설물도 공원지역에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해당 시행령에 ‘지하 1.5m 이상 깊이에서만 시설물을 지을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지만 S반도체 1공장과 2공장은 지상 3층 높이여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담당자끼리 회의에 회의를 거듭했지만 지하통로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말만 나왔다. 그러다가 2015년 초 추진단의 중재로 국토교통부·경기도·안산시와 협의한 끝에 S반도체가 연결 통로를 내리는 일부 공원 부지만 공원 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S반도체는 바로 안산시에 공원 부지 이용 신청을 했고,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은 한 달 뒤인 2015년 4월 27일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 나. 산업단지 주차장 설치 규제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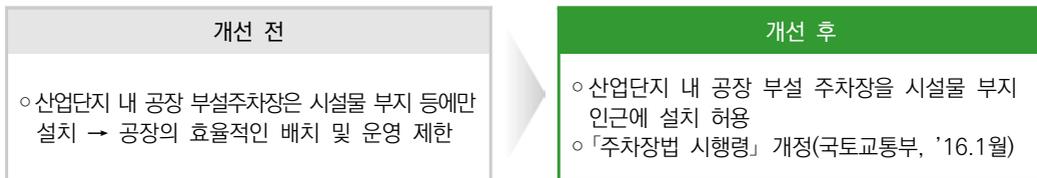
그동안 산업단지 내 공장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 부지에만 설치해야 해서 공장의 효율적인 배치와 운영이 제한되었으나, 이제 산업단지 부설 주차장을 시설물 부지 인근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L사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품 생산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주차장 확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 주차장(시설면적 350㎡당 1대)을 설치해야 하며, 산업단지에서 하천·도로와 같이 불가피한 여건으로 부지가 분리된 경우에도 각 부지별로 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L사 파주공장은 부지가 산업단지 내 하천으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두 부지(1, 2블록)를 교량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부지로 활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옆 블록에 주차 여유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블록에 공장을 건립하면 해당 부지에 별도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함에 따라 신설 주차장만큼 부지면적이 부족해져 대규모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추진단은 이러한 산업단지 주차장 설치 의무가 대규모 투자와 공장 증설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2016년 1월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산업단지 내 공장 부설주차장을 시설물 부지 인근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지에 상관없이 산업단지 내에서 주차장을 자유롭게 설치·이동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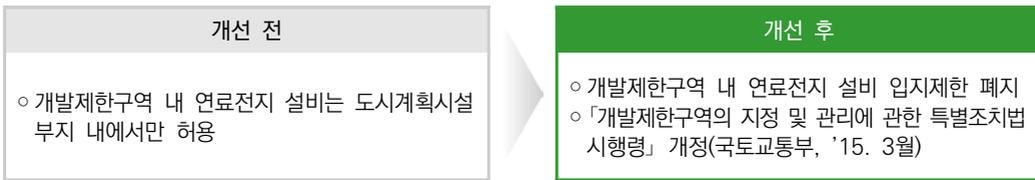
## 다. 연료전지발전소 개발제한구역 입지 규제 개선

C사 경기 안산공장은 1973년과 1975년 기존 공장부지 옆에 추가 매입한 1만여㎡ 부지가 이듬해인 1976년 공업지역이 아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며 40년 간 공장 증설을 할 수 없었다.

공장증설을 위해 2009년부터 여러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였다. 때마침 2013년 10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도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한해 연료전지 설비 사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불허했다.



이후 건의를 접수한 추진단은 부처에 적극적인 재검토를 요청하였고, 마침내 국토교통부는 2015년 3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 도시계획시설 부지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 신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도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C사는 연료전지 사업자를 통한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 안산공장 옆 개발제한구역 1만1,000㎡ 부지에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게 되었다.



## 라.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용도지역 변경

인천공항 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 등을 보장하는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 대기업 공장 유치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 장벽이 해결되었다.

자유무역지역 내의 55만㎡의 자연녹지를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이 주민의견 수렴 및 인천광역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2015년 5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용도 변경된 자유무역지역은 인천 공항을 동북아 물류중심공항으로 육성코자 하는 정부정책에 따라 조성되었지만, 자유무역지역 2단계 부지는 지난 2년간 입주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 한 곳에 불과하여 “무늬만 자유무역지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특히 이 지역은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어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의 국내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이 불가능함에 따라 국내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공항 배후에 제조·생산라인을 가진 국내 대기업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이 글로벌 물류기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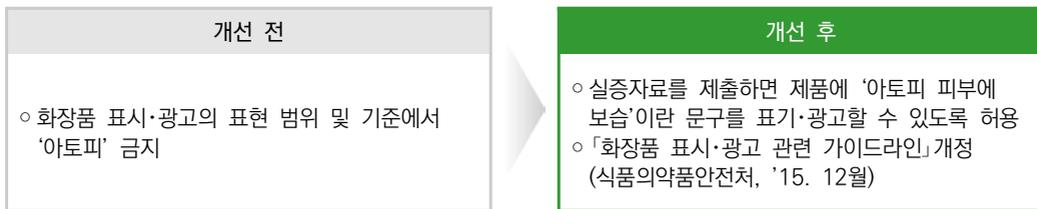
### 마. 아토피에 관한 화장품의 표시·광고 규제 개선

그동안 화장품에 제품표시나 광고를 할 때 ‘아토피’라는 표현이 금지됨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특별히 아토피 화장품을 개발·생산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아토피 관련 화장품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광고할 방법이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업체들은 제품 개발을 통한 시장 진출 등에 어려움을 겪고 경쟁력마저 잃고 있었다. 반면 해외 화장품 회사들은 자국에 특별한 규제가 없어 제품 표시나 광고에 ‘아토피’라는 용어를 자유롭게 쓰고 있으며, 영문 등으로 아토피 화장품이라는 것을 표시한 다국적 제약사와 다양한 수입브랜드들이 국내 시장을 공략해가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 H사는 2014년 11월 추진단이 충청지역에서 개최한 지역간담회에서 애로사항을 호소하였다. 추진단은 식약처와 해결방안을 논의하였고, 결국 실증자료를 제출하면 제품에 ‘아토피 피부에 보습’이라고 표기하거나 광고할 수 있도록 2015년 12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 라인」을 개정하였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기존의 다국적 제약사나 수입브랜드에 대응한 국내 제품을 개발·출시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국내·외 아토피 관련 화장품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 바.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군사기지 고도제한 규제 개선

추진단의 중재로 인천 영종 미단시티 개발의 걸림돌이었던 인근 레이더 군사기지 고도제한 문제가 풀리게 되었다. 이는 군의 원활한 방공작전 수행이라는 ‘안보’와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서로 상충하는 측면을 대화와 협의로 풀어낸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

외투기업인 L기업은 영종 미단시티 내에 복합리조트 건축을 추진하던 중 공군 레이더 위치보다 높은 건축물이 기지 인근에 건축되면 건물의 반사파에 의해 레이더 운용 범위가 축소된다는



국방부의 반대로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때문에 건축물 높이가 당초 200m에서 110m 이내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L기업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였고, 인천경제청은 추진단에 국방부와의 협의를 중재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추진단은 국방부와 함께 레이더기지 이전 등 여러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미단시티 내 최고층 건물인 복합리조트 높이를 150m로 낮추고 레이더 위치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국방부와 인천 경제청은 2015년 10월 정부개발계획협의회의심의를위원회를 통해 레이더를 49m 상향해 설치하고, 복합리조트 높이는 150m로 낮추는 해결책을 마련하였다.

L기업 관계자는 “복합리조트 공사는 2016년 3월에 착공하여 2018년 3월 상반기에 완료될 것이며, 투자규모가 총 2.3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앞으로 해당 지역에 최대 10조원 규모의 인천 외국인투자 기반이 조성되고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 기존 공장의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에 건폐율 특례 통합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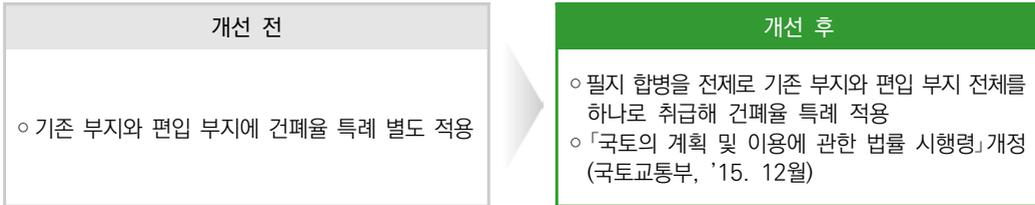
그동안 증축을 위해 인접 부지를 매입해도 기존 부지와 편입 부지에 건폐율 특례가 각각 적용되어 기존 부지 내 공장 증축이 불가능했으나, 이제 공장을 증축하려고 할 때 필지 합병을 전제로 기존 부지와 편입 부지 전체를 하나로 취급해 건폐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우유와 요구르트, 치즈 등 유제품을 제조하는 D기업은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건폐율 특례(20%→40%)\*를 적용하여 기존 부지에 공장을 증축하려 했으나, 건폐율 40%를 적용해도 부지가 부족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공장 옆 토지(704㎡)를 추가로 매입하였다.

\* 현재 녹지·관리지역에서 건폐율 (20%)을 한시적으로 40%까지 완화하고, 추가로 편입하는 부지에도 별도로 40%까지 완화하여 증축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 ('16.10월까지)를 규정

하지만 유제품 제조를 위해서는 생산라인이 연결되어 모여 있어야 하는데, 공장 증축을 위해 인접 부지를 매입해도 건폐율 특례 (20%→40%)가 기존 부지와 새로 매입한 부지에 각각 적용돼 기존부지 내에서는 공장을 증축할 수 없었다.

2015년 6월 건의를 접수한 추진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기업현장을 방문한 후 시설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필지 합병을 전제로 기존 부지와 편입 부지 전체를 하나로 보아 건폐율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기존 부지 내 공장 증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아. 도로사선제한 규제 폐지

거리에 많은 건물들 중에 층수가 위로 올라갈수록 면적이 좁아지는 이른바 계단형 외관을 가지고 있는 건물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도로사선제한 규제때문이었다.

도로사선제한은 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부터 도시 개방감과 시야, 일조권 확보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전면도로 폭의 1.5배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규제이다. 이 규제로 인해 도심 도로변에는 계단형·대각선 모양의 빌딩이 지어졌고, 규제를 피하기 위해 준공 후 빈 공간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등의 불법 행위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이 도로사선제한 규제 완화가 추진단에 건의되었고, 2014년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 회의에서 개선하기로 보고된 이후 2015년 5월, 53년만에 폐지되었다.

건설업계에서는 도로사선제한 폐지가 '건축법상 최고의 규제 완화'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이 규제 때문에 비스듬하게 지은 기형 건축물이 양산된 것은 물론 정해진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도 적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도로사선제한 폐지로 신규 건축이 늘면서 연간 1조원 이상의 투자유발 효과가 나타나고, 그동안 사선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져 재건축이 지연된 단지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보게 될 전망이다.





## 자. 지붕 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기준 완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K씨는 작은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 30여 채의 기존 주택의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 뒤 여기에서 얻은 전력은 한국전력에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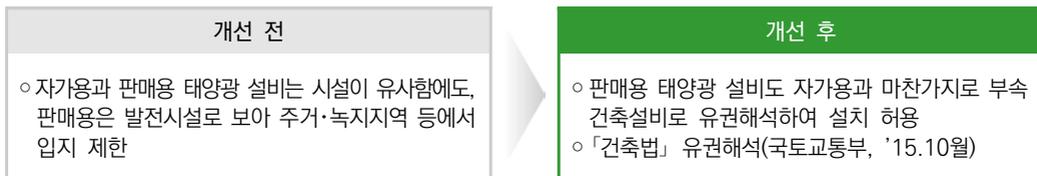
태양광 설비에서 나오는 전력을 자기소유 건물에서만 쓰는 '자가용 태양광 설비'는 안테나나 피뢰침 등과 같은 부속 건축설비로 취급되어 가능하지만, 남은 전기를 한국전력 등에 판매하면 '판매용 태양광 설비', 즉 '발전 시설'로 분류되어 주거·녹지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K씨는 곧바로 추진단에 건의하였고, 추진단은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외형적으로 동일한 상황에서 '자가용'은 되고 '판매용'은 안 된다는 것은 태양광 에너지 보급에 장애가 된다고 보았다.

결국 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현장 확인과 심층 검토를 거쳐 「전기사업법」 대신 「건축법」을 적용해 지붕 위의 태양광 설비를 공작물이 아닌 건축물에 부속되는 건축설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도 건축설비로 분류되는 자가용 발전기와 발전시설로 분류되는 판매용 발전기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자가용이든 판매용이든 상관없이 건축설비로 인정하여 관련 입지규제를 풀어 준 것이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태양광 발전기를 가정에 설치한 후 잉여전기 판매까지 가능해져서 재산성 향상과 관련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 차. 계획관리지역 화장품 공장 설립 규제 완화

화장품 제조업체인 A기업은 추가적인 공장 신축을 위해 2014년 12월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를 구매하였다. 그동안 주변 계획관리지역에 화장품 공장이 위치하여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공장 신축 허가를 문의했지만, 아산시청으로부터 현행 법령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 모든 화학제품 제조시설’은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됨에 따라 오염 수준이 낮은 천연소재 화장품 제조시설까지 입지가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A기업은 2015년 4월 추진단이 아산지역에서 개최한 ‘규제개선 현장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규제를 풀어줄 것을 건의하였고, 추진단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2015년 7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성분이 용해·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경우를 비롯하여 유기농화장품 제조, 천연재료를 사용한 비누 및 세제를 제조하는 화장품공장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예외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A기업은 이번 규제완화로 공장신축이 가능해져서 중국 등 해외시장에 연간 50억원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함을 알려왔다.





## 4. 현장간담회 운영실적

### 가. 개요

추진단은 규제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에서 규제애로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5년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일자리 확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손톱 밑 가시 해결에 중점을 두고 기업·민생 현장을 찾아가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하였다. 지역 및 업종별 간담회, 기업현장 등 총 40회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국 네트워크를 가진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70여개 지역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하였고, 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02-6050-3366)도 운영하고 있다.

### 나. 지역별·업종별 간담회 개최

추진단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대도시권을 비롯하여 안성, 안산, 여수 등 전국 각지의 기업현장을 방문하였고 박람회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다양하게 청취하였다. 또한 업종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협회 등과 공동으로 정보통신, 의료기기, MICE산업 등의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 230여건의 다양한 현장애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보다 심층적인 협의가 필요한 경우 추진단을 중심으로 부처와 기업인 간의 실무협의를 통해 최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현장간담회 주요 건의과제

- IPTV 직접사용 채널 운영 금지규정 개선(정보통신)
- 5인 미만 사업자도 장년취업인턴제도 혜택 허용(소공인)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국내제조 ODM 제품에 대한 기술심사 면제(의료)
- 국제회의 기획업(PCO)의 표준요금제 마련(MICE)
- 태양광발전설비 확대보급을 위한 규제개선(안성)
- CJ안산공장 연료전지설비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개선(안산)
- 계획관리지역 내 화학제품제조시설 입지 허용(아산)
- 향만시설부지 내 녹지 폐지 허용(인천산단)

### 다. 「기업현장 속으로」 활동 추진

지역·업종별 간담회를 보완하고 실제 기업의 현장실태를 생생하게 파악하기 위해 직접 기업 현장속으로 방문하는 활동을 추진하였다. 창원의 KR모터스, 마산의 하이트진로, 목포의 푸른 중공업 등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현장의 애로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

〈기업 현장속으로 활동 모습〉



KR모터스(창원)

하이트진로(마산)

### 라. 향후계획

앞으로도 현장간담회와 기업방문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듣는 정부, 소통하는 정부의 모습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선 체감도를 느낄 수 있도록 현장밀착형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제9절 일몰규제 정비

◎ 집필자 문유진 사무관 ☎ 044-200-2414 ✉ yujin700@pmo.go.kr

### 1. 규제일몰제 개요

#### (1) 개념

규제 일몰제는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고시등)상 행정규제에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폐지·개선하는 제도이다.

#### (2) 유형

현재 일몰제는 재검토행과 효력상실형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효력상실형은 규제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해당 규제가 폐지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재검토행은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규제의 폐지, 개선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법적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 8조 및 19조의 2에서는 신설·강화 규제 및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행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 등에 규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재검토행기한 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행기한 6개월 전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토록 하고 있다.

## 2. 2015년 기한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

2015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가 요청된 총 18개 부처의 93건의 재검토형 일몰규제에 대해 규제존속 및 일몰연장 여부를 심사하였다. 심사결과, 2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17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 구체적인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5년 기한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 결과〉

(단위 : 건)

총	재검토형(93)						
	규제폐지	규제개선			규제존속		
		소계	일몰연장	일몰해제	소계	일몰연장	일몰해제
93	2	17	16	1	74	52	22

## 3. 주요 심사사례

**1** 국토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비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제32조 제10항)

**규제내용** 혼인기간 5년 이내·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일정비율의 주택을 특별공급 할 수 있음

**심사결과** 동일한 내용이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비율」(고시)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훈령)」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 해당 고시를 폐지

**2** 산림청,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산지관리법 제12조)

**규제내용** 보전산지(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에서는 국방·군사시설, 사방시설, 도로철도 등 공용·공공용 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을 할 수 없도록 행위를 제한

**심사결과**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가축 방목지내 목초 종자의 파종 허용, 숲속야영장 및 산림 레포츠 시설의 설치 허용, 사찰림내 봉안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토록 규제개선



**3** 산업부, 중소기업인증신제품 구매 의무 비율 완화(산업혁신촉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신제품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규제내용** 공공기관 등에게 중소기업 인증 신제품을 20%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부과

**심사결과** 공공조달은 NEP인증 중소기업의 초기시장 창출 역할을 하고 대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대기업 뿐만 아니라 인증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20%는 과도한 수준이므로 10%로 낮추도록 개선

**4** 고용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양성시설 훈련과정 승인 및 취소(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시행규칙 제18조)

**규제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짓·부정의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에 시정명령 또는 승인취소토록 규정

**심사결과** 직업훈련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훈련시설과 훈련과정의 승인 및 관리가 필요하나, 인력·시설 및 장비요건 1회 위반시 바로 승인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1회 위반시 시정명령, 2회 위반시에 승인취소토록 개선

## 4. 향후 계획

규제개혁위원회는 2016년에도 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에 대하여 규제의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규제 폐지·개선 등 규제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의 소관 일몰규제 법령 정비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서도 필요 시 일몰을 설정하는 등 규제품질의 향상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제10절 지방규제 개선

◎ 집필자 김신영 사무관 ☎ 044-200-2415 ✉ ggo82@pmo.go.kr

### 1. 추진 배경

정부는 그 동안 규제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비해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었다. 국민 접점에 있는 일선 현장에서의 규제 개선을 통해 중앙정부의 노력이 지방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는 ①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② 지자체간 규제개혁 경쟁 촉진을 위한 전국규제지도 구축 ③ 공무원 행태개선의 세 가지 방향을 설정하여 지방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중 조례·규칙 등 지자체의 법령 규제를 정비한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사업'은 규제개혁 최초로 지방 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추진한 지자체 규제정비의 대표 정책이다.

### 2. 추진 개요

#### 가. 11개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 및 개선과제 확정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등록된 지방자치단체 규제 수가 많은 국토·산업·농림 등 11개 분야의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발굴하여 정비를 추진하였다. 법령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회의, 법제처 법리검토, 지방공무원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과제는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지자체에 시달되었다. 우선 통보된 건축 과제를 제외하고 국토·산업·농림·환경 등 1단계 과제 3,030건이 4월 초 최초 시달된 이후, 7월 중순 문화관광, 지방행정, 해양수산의 2단계 과제 1,478건, 교통, 보건복지, 산림 등의 3단계 과제 761건 등 총 6,440건이 순차적으로 지자체에 통보되어 정비가 추진되었다.



정비 과제는 유형별로 ① 중앙정부의 규제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에 미반영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 상위법 규정보다 더 과도하게 규정되는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지방 규제, ② 상위법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에만 근거를 둔 지방규제, ③ 상위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규정되었으나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한 위임사항 소극적용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상위법령 불일치 지방 규제 4,252건

(예) 입간판 설치를 허용토록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 설치방법을 조례로 위임하였으나 조례 미제정

(예)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한 경우 부과되는 산림보호법상 과태료 위임범위(5만원 ~15만원)를 초과하여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례에 규정

○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자치법규에만 근거를 둔 임의 규제 1,244건

(예) 법에서 설치 가능한 다락 설치를 지자체 임의기준에 의거하여 제한하고, 법에서 정한 설계도서 외의 추가서류를 요구

○ 상위 법령 위임사항을 소극적으로 적용한 규제 845건

(예) 도로와 사업 부지 간 이격거리 기준을 정할 때, 상위법에서 규정한 위임범위 내에서 최대치로 적용

〈분야별 유형별 발굴 과제 현황〉

분 야	계	상위법령 불일치	법령 미근거	위임사항 소극적용	기타
1단계 계	4,201	2,600	814	747	40
건 축	1,171	957	121	92	1
국 토	1405	733	265	398	9
산 업	962	536	292	134	0
농 업	338	126	95	117	0
환 경	325	248	41	6	30

분 야	계	상위법령 불일치	법령 미근거	위임사항 소극적용	기타
2단계 계	1,478	1,134	276	55	11
문화관광	260	132	69	52	7
지방행정	1,126	938	184	2	2
해양수산	92	64	25	1	2
3단계 계	761	531	152	43	48
교 통	138	137	0	1	0
보건복지	265	198	19	0	48
산 림	181	6	133	42	0
(수 수 료)	177	177	0	0	0
<b>총계</b>	<b>6,440</b>	<b>4,252</b>	<b>1,244</b>	<b>845</b>	<b>99</b>

## 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현황 월별 점검 및 정비결과 공개

시달된 정비대상 과제는 월별 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 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 회의) 등을 통해 정비를 독려하였다. 특히,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15.11.6.) 이후 법제처 및 국조실은 국가법령 - 자치법규 연계시스템(law.go.kr)에 정비 과제 내역 및 지자체별 정비율, 정비 순위를 공개하였다. 이는 지방규제 개혁 추진 상황에 대한 국민의 감시 및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강화하여 지방규제의 신속한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지자체별 정비현황·순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규제정보포털'에 함께 공개



**국가법령-자치법규 연계시스템 표시 내용**

**1. 불합리한 지방규제 과제표시**

**OO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13.7.8.] [OO군조례 제2192호, 2013.7.8., 일부개정]

규제개선  
정비시한  
'15.12월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3.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40

정비시한 : '15.12월

번호	규제 조례 조문	규제 개선 주요 내용	상위 법령 조문
1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사용료가 전년도 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한 부분까지 조례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 ('14.7.7. 공유재산법 시행령)되었으나, 조례에 미반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사용료의 조정)

**2. 지자체별 규제정비 현황**

1단계 정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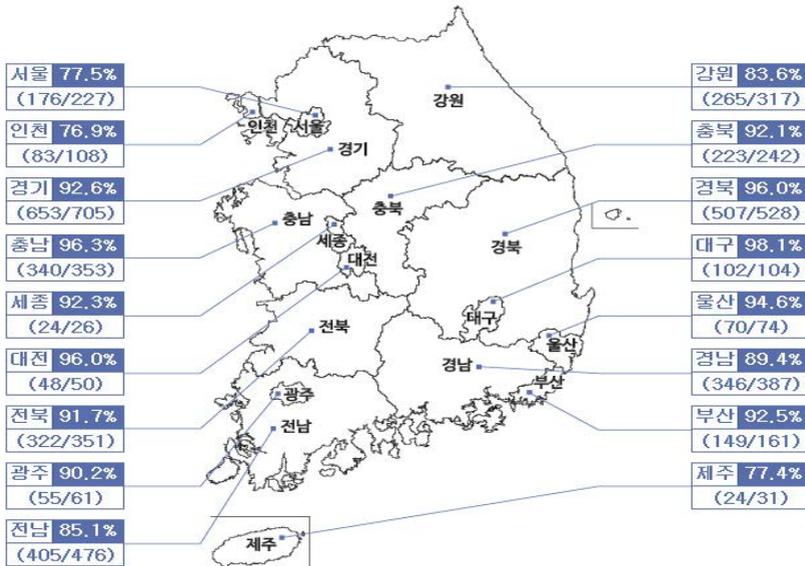
2단계 정비현황

3단계 정비현황

**지방규제 정비현황**  
(정비완료 건수/정비대상 건수)

주요 11개 정책분야의 지방규제를 3단계에 걸쳐 발굴 및 정비 수행

1단계 정비현황(건축·국토·산업·농업·환경 분야, 2월말 기준)  
정비시한 : 2015년 10월



\* 주: 위의 정비율은 광역 분청과 광역 내 기초 지자체 정비율을 모두 합한 수치임.

### 3. 지자체별 지방규제 정비순위

1단계 정비순위

2단계 정비순위

3단계 정비순위

#### 지방규제 정비순위

주요 11개 정책분야의 지방규제를 3단계에 걸쳐 발굴 및 정비 수행

1단계 정비순위(건축·국토·산업·농업·환경 분야, 2월말 기준)  
정비시한 : 2015년 10월

• 지자체 권역별 정비율 및 정비 순위

• 지자체 정비율 및 정비 순위

순위	지자체 권역	정비율 (정비대상 건수 / 정비완료 건수)	건수	순위	지자체단체	정비율 (정비대상 건수 / 정비완료 건수)	시한
1	대구	98.1%	102/104	1	대구 남구	100.0%	11/11
2	충남	96.3%	340/353	1	대전 중구	100.0%	6/6
3	경북	95.0%	501/528	1	대구 달서구	100.0%	7/7
3	대전	95.0%	49/50	1	경기 여주시	100.0%	19/19
5	울산	94.8%	70/74	1	부산 영도구	100.0%	9/9
6	경기	92.6%	653/705	1	경북 북문군	100.0%	16/16
7	부산	92.5%	149/161	1	경기 이천시	100.0%	22/22
8	세종	92.3%	24/26	1	경기 양주시	100.0%	20/20
9	충북	92.1%	223/242	1	충북 천안군	100.0%	30/30
10	전북	91.7%	322/351	1	경기 과천시	100.0%	23/23
11	광주	90.2%	55/61	1	서울 강동구	100.0%	11/11
12	경남	89.4%	346/387	1	대구 동구	100.0%	11/11
13	전남	86.1%	405/470	1	울산 남구	100.0%	10/10
14	경원	83.8%	265/317	1	대전 유성구	100.0%	4/4
15	서울	77.5%	176/227	1	경북 영덕군	100.0%	20/20
16	제주	77.4%	24/31	1	전북 완주군	100.0%	25/25
17	인천	76.3%	83/108	1	대구 중구	100.0%	10/10
				1	대구 수성구	100.0%	14/14

• 구·위 정비율은 행정·문화·관광·내·외국·지자체 정비율을 모두 합한 수치임.

#### 다. '15년 중앙정부·지자체 규제개혁 평가에 반영

한편, 추진 동력확보를 위해 과제 발굴실적, 정비결과를 2015년도 중앙정부 및 지자체 규제개혁 평가에 반영하였다. 중앙정부의 경우 발굴률 및 지자체 정비 결과(정비율)를, 지자체의 경우 정비율을 평가요소로 설정하였다. 지자체 정비결과의 경우, 과제 시달일에 따라 실적 인정기준을 달리하여 1단계는 10월 말 기준 공포·시행, 2단계는 10월말 의회 제출, 3단계의 경우는 12월 말 기준 입법예고 이상 진행된 과제를 정비 실적으로 인정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였다.



### 3. 2015년도 지자체 규제개혁 성과 및 주요 개선사례

2016년 2월말(15.4.30.~16.2.29.)까지 11개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6,440건 중 총 5,684건(88.3%)까지 정비 완료되었고, 입법예고 이상은 6,094건(94.6%)까지 진행되었다. 원활한 과제 완수를 위해 지자체들은 규제개혁 책임관 지정, 일괄 개정(Fast-track), 법제부서와 규제정비 담당부서 간 규제정비 협업회의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 가. 상위법령 불일치 지방 규제

##### (1) 전통상업보존구역 외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개선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의 대규모 점포 등록을 제한하고 특별한 조건을 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의 지역에 있어서도 점포 개설을 제한하여 지역 기업인들의 투자 및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렇게 상위법 위반 자치법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개선을 권고하였고, 해당 지자체들은 지역 경제 및 일자리 창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철폐하였다.

##### (2) 과도한 수수료 부담 경감



「지방자치법」은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의 표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제시하되, 표준금액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설정하여 주민들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었다.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과제 소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위법 조례를 발굴하여 위임 범위 내로 수수료 규정을 개선하였다.

## 나.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지방규제

### (1) 폐지된 쓰레기 유발부담금 징수규정 삭제

2012년 2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징수하던 쓰레기 유발부담금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조례 등에 근거하여 여전히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법령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관련 자치법규를 조사하여, 법상 근거가 없어진 쓰레기 유발부담금 징수 규정을 삭제토록 권고했고, 지자체에서는 상위법 규정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였다.

### (2) 준주거지역 등 주요 용도지역 건축제한 완화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등 주요 용도지역 건축제한이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령 개정내용을 미반영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발굴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하도록 조례 개정을 유도하여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등 주요 용도지역의 입지제한을 완화하였다.

### (3) 산업단지 입주자격 완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단지 입주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 희망기업의 ‘재정능력’은 이미 1997년에 삭제된 기준이다. 상위법에 없어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 지자체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권고를 받아 법령에 근거가 없어진 입주자격 요건을 폐지하고 산업단지 입주 가능업체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다.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지방규제

### (1) 법령에 근거 없는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 삭제

조사결과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법령의 위임 없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공사를 재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적인 규정으로 인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 일정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발사업 시행자들은 큰 불편을



겪어왔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자체들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 취소사유 외에 상위법 근거 없이 조례에 규정된 취소사유를 삭제하였다.

## (2) 상위법에 근거 없는 공유수면 사용료·점용료 미반환 규정 폐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벌칙으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위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없이 이미 납입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두고 있었던 지자체들은 허가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 라. 위임사항 소극적용

농업인 등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직접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으로 보다 완화된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위임받은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조례·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약 100 여개의 지자체들의 조례·규칙 제·개정을 유도하여 농업인이 보다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받아 창업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 4. 향후 계획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사업에 포함되지 않거나 누락된 지방 규제들은 법제처 등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그 불합리성을 제거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알림 서비스,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전검토제 등을 시행하여 향후 불합리한 지방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제11절 규제개혁 국제협력

◎ 집필자 한태경 사무관 ☎ 044-200-2431 ✉ xorud@pmo.go.kr

### 1. 개요

규제개혁 국제협력은 국제회의 참석 또는 외국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규제개혁 성과를 적극 소개·홍보하고 규제개혁 경험을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외국정부와 협력하여 포럼을 개최하는 등 대외협력 업무를 추진했다.

규제개혁 관련 국제회의 중에 가장 중요한 회의는 OECD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라 할 수 있다. 이 회의는 OECD 회원국들의 규제개혁 제도·정책·수단 현황과 추진성과 발표를 통해 규제개혁 논의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회의를 참석하여 한국의 최근 규제개혁 제도·정책을 발표했다. 그 외에도 ASEAN-OECD 모범규제관행 사무국 회의('15.3월, 12월), 규제개혁에 관한 아시아 공공정부 포럼('15.10월), 경제위기 대응 규제개혁 포럼('15.12월) 등에 참석하여 한국의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알리기도 했다.

또한 영국정부와 공동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 포럼('15.10월)을 개최하여 규제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진 규제개혁 방향을 소개하고 규제개혁의 이해도와 추진력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16년에는 한국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국제기구의 정확한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OECD 규제개혁 국가별 심사(Country Review)를 실시할 예정으로, '15년에는 이와 관련한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 2. 국제회의의 참석

### 가. OECD 회의

#### (1) 제12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

(Regulatory Policy Committee, 2015년 4월 15일 ~ 16일, 프랑스 파리)

2015년 4월 15일~16일 개최된 OECD 규제정책위원회에서는 규제개혁 분야의 국제협력, 규제정책위원회 운영사항, 콜롬비아·라트비아의 OECD 가입심사 등에 대해 논의했다.

##### (가) 규제정책위원회 운영

규제개혁 관련 국제협력의 저변 확대를 위해 그간 비회원국의 규제정책위원회 참여를 확대해 왔으며, 규제정책위원회의 논의 결과 및 작업결과를 폭넓게 알리고 확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ASEAN과 협업하여 아시아 국가의 규제개선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 (나) 규제정책 전망(Regulatory Policy Outlook)

규제정책위원회는 '15.11월 규제정책위원회에서의 최종 보고를 목표로 규제정책 전망 및 규제정책 평가지표 등 초안을 회람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 (다) 포용적 성장에 관한 원탁토론

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사회 각 분야를 모두 배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실제 분석방법, 행정부담, 분석대상 선정 등 실무상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사회적 소외계층, 여성, 빈곤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의사결정기관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 참석자들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라) 신규 대상국에 대한 가입심사

콜롬비아 및 라트비아에 대한 가입심사를 계속 진행했다. 콜롬비아는 향후 3년내 규제영향평가 도입 및 규제개선위원회를 설립해 규제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며, OECD 사무국은 콜롬비아 정부의 규제영향평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추가 검토하여 13차 규제정책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임을 밝혔다. 라트비아에 대해 사무국은 규제영향평가, EU 협상, 의회의 역할 등에 집중하여 검토했고 OECD의 규제정책 관련 정책을 준수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2) ASEAN-OECD 모범규제 관행 사무국 회의

(ASEAN-OECD Good Regulatory Practice Network, 2015년 3월 10일 ~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뉴질랜드·말레이시아가 공동 의장으로 진행을 맡은 ASEAN-OECD 모범규제 관행 사무국 회의에서는 모범규제 관행의 의의, 실천 전략 및 향후 방향, 그리고 효과적인 규제 이행에 대해 논의했다.

모범규제관행은 좋은 규제, 고품질 규제를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경제·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으며, 무엇이 좋은 규제인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기준이 상이하므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규제개혁 전략이 체계적으로 구성되면 규제이행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불필요한 규제비용을 유발하게 되어 규제개혁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의 규제자·피규제자·감시자의 경험·의견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규제개혁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분임토의에서는 모범규제정책의 이행을 위한 혁신적 접근 및 관리·감독 능력의 제고 방안, 국제규제협력 및 국제수준 규제기관, 지방정부의 규제관리능력, 규제영향평가 등을 논의했다.

## (3) ASEAN-OECD 모범규제 관행 사무국 회의

(ASEAN-OECD Good Regulatory Practice Network, 2015년 12월 1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OECD 등이 참석하여 '16년 이후 모범규제 관행 사무국 회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규제개혁 포럼과 같은 국제회의의 중요성을 감안,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참여국가간 규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각국에 도움이 되는 모범규제 관행을 도출하기로 했다.

향후 모범규제관행 회의는 ASEAN 역내 중소기업 관련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국 중앙정부간 회의뿐 아니라 중앙·지방간 회의 및 각국 지방정부간 회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 나. 기타 회의

### (1) 경제위기 대응 규제개혁 포럼 (2015년 12월 1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경제위기 대응 규제개혁 포럼은 한국,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이 참석,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각국의 규제개혁 경험을 소개하고 현재 및 미래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혁신적 규제개혁 사례를 공유했다.

#### (가) 규제개혁의 순서와 단계

ASEAN·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는 글로벌 위기와 경쟁압력으로 인해 각국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대응적 규제관리시스템의 현황을 소개했다. 지속적 추진국가, 간헐적 추진국가, 신흥 국가, 시작 국가로 구분했을 때 한국은 가장 상위 단계인 지속적 추진 국가로 분류되었다.

#### (나) 현재·미래의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장기적 규제개혁 사례 창출

규제부담이 높은 편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규제개혁 추진계획, 중기, 연례보고서, 로드맵 등을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한국의 규제개혁 성공사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은 2000년 이후 금융·통신·항공·물·에너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규제개선을 진행 중이며 지방정부의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중임을 발표했다.

#### (다) 경제위기 완화를 위한 최근 규제 혁신 사례

한국은 근본적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규제개혁을 진행중이고 강력한 규제개혁 리더십 하에 추진중인 규제정보포털·규제신문고·규제비용총량제 등 규제개혁 제도들을 소개했다.

### (2) 규제개혁에 관한 아시아 공공정부 포럼 (2015년 10월 13일 ~ 14일, 한국 서울)

아태지역 중앙정부의 규제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규제개혁의 의의·배경, 균형성장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규제개혁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관해 논의하고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30년간 세계 각국은 OECD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경로를 모색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규제개혁은 경제활동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주요 도구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규제제도·정책이 지속 가능한 성장에 어떻게, 얼마나 기여했는지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 규제개혁의 필요성·규제시스템의 혁신을 통한 규제개혁 추진과정 및 성과에 대해 발표했으며 아태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규제개혁 사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 3. 규제개혁 양자 협력 강화

양자간 규제개혁 협력강화를 위해 영국과 번영기금(Prosperity Fund) 사업을 진행하고, 일본·중국·베트남을 방문하여 각국의 규제개혁 체계 및 사례를 청취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분야와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도 했다.

'14년 진행했던 번영기금사업의 경우 영국 'One-in, Two-out' 제도의 벤치마킹을 위해 영국을 방문한 반면, '15년에는 'One-in, Two-out' 제도의 벤치마킹을 통한 '규제비용총량제'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한국 정부의 규제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규제품질 개선 역량강화 포럼을 세종, 서울에서 각각 개최했다. 포럼에는 영국 규제정책위원회의 前위원 및 보건안전처 이사·특별 감사관이 강연자로 참석하여 영국의 규제개혁 경험을 소개한 바, 규제개혁의 이해도 및 추진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한편, 일본의 규제개혁이 아베노믹스에 미친 영향 및 성과를 조사하기 위해 규제개혁회의 사무처 등 5개 기관을 방문하기도 했다. 내각부 경제재생본부 등 방문을 통해 국가전략특구 중심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기업투자 증진, 해외투자 유치 방안을 연구했다.

또한 중국을 방문하여 최근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온라인·모바일 시장을 중심으로 규제개혁 현황을 조사했다. 상무부 등 4개 기관을 방문하여 중국 온라인·모바일 쇼핑 관련 지적재산권 및 구현 기술 등의 규제 현황과 규제정책 방향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의 교역시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투자에 있어서 관련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다.

베트남의 산업무역부 등을 방문하여 베트남 정부의 외투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청취한 바, 외투기업 적극 유치 및 외투기업의 규제애로 사항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하기도 했다.



## 4. OECD 규제개혁 국가별 심사 준비

'15년에는 OECD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에서 회원국의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권고사항 이행정도를 평가하여 발표하는 OECD 규제개혁 국가별 심사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한국은 2000년, 2007년 두 차례 규제개혁 국가별 심사를 받았으며 이번 규제개혁 국가별 심사는 약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2017년 심사보고서 발표를 목표로 2016년에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15년에는 실무 협의, 예산 확보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OECD 규제개혁 국가별 심사는 각국의 규제개혁 정도에 따라 규제완화 단계, 규제품질향상 단계, 규제관리 단계로 구분한다. '00년의 경우, 총량적 접근방식에 따라 '규제완화 단계'에 해당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와 활발한 활동에 대해 국제적 최고수준으로 평가받았다. '07년에는 '00년 이후 단기간에 고품질 규제를 위한 정책·제도, 수단을 완비한 것에 대해 놀라운 진전으로 평가받으면서 개별규제의 품질향상을 추진하는 '규제품질향상 단계'에 해당되었다. '16년 심사에서는 규제개혁의 마지막 단계인 '규제관리 단계'로 평가될 전망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OECD 규제개혁 국가별 심사의 범위는 규제개혁 배경, 규제정책의 제도적 기반, 절차, 이행 및 성과 등이다. 심사 분야에서 규제개혁 리더십, 규제품질 관리, 규제감축 이니셔티브, 규제개혁 성과 평가 등이 포함된다. 각 심사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OECD 규제개혁 국가별 심사는 OECD의 객관적·전문적 검토를 통해 한국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정확하게 진단받아 규제정책 방향 및 거버넌스 향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 규제개혁 성과를 국제적으로 홍보하여 규제개혁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15

WHITE PAPER ON REGULATORY REFORM BOOK

## 기업과 상생하는 규제개혁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회를 바꿔 공정한 경쟁을 이끄는  
규제개혁은 기업의 성장과 창조경제의 바탕이 됩니다.

함께 성장의 길로 나아가는 규제의 가치는 상생의 길입니다.



# Part 03

## 제3장

### 규제개혁시스템 운영 성과



<b>제1절 규제비용총량제 운영</b>	<b>144</b>
1. 의의 및 도입배경	144
2. 관련 조직 등 운영 방식	145
3.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현황	149
4.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주요 사례 및 실적	151
5. 향후 계획	154
<b>제2절 규제영향평가 강화</b>	<b>155</b>
1. 강화배경	155
2. 주요내용	156
3. 규제비용·편익자동산정시스템	158
<b>제3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b>	<b>160</b>
1. 개정 배경	160
2. 개정안 주요내용	161
3. 개정 추진경과	162
4. 향후 계획	163
<b>제4절 규제정보화 추진</b>	<b>164</b>
1. 추진배경 및 경과	164
2. 규제정보포털의 주요 기능	165
3. '15년 규제정보화 중점추진 내용	166

## 제1절 규제비용총량제 운영

◎ 집필자 홍경은 사무관 T 044-200-2441 E hke0202@pmo.go.kr

### 1. 의의 및 도입배경

#### 가. 의의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은 규제 신설·강화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규제 폐지·완화를 통하여 규제비용의 총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는 규제가 들어올 때, 피규제자에게 어떠한 직접비용과 직접편익이 발생하는지 분석토록 하고, 순비용이 발생하면 기존의 규제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찾아내어 정비(폐지·완화)하려는 노력을 유도하는 제도로서 새로운 규제의 품질은 높이고 기존 규제는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 나. 도입 배경

규제총량제의 도입은 2014년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처음 발표되었다. 이후, 2월 국조실 업무보고,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비용총량제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용'을 기준으로 규제 신설시 기존 규제를 폐지
  - 이 때, '비용'은 기업과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
  - 다만, 비용계산이 어려운 경우 규제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한 '등급' 방식 적용
- 국민 생명 및 위기상황 관련 규제는 적용 제외
- 규제비용분석기구 설립, '14. 7월부터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실시
- 규제비용총량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추진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처음으로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 도입계획이 구체화되었다. 이는 2004~2005년 실시된 규제총량제 추진 경험에서 기인한 것으로, 당시 부처별 연간 규제 신설 건수를 2%로 제한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2006년 폐지된 바 있다. 따라서, 금번 규제비용총량제는 건수가 아니라 객관적·과학적인 방식인 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비용계산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등급 방식을 적용토록 설계하였다.

## 2. 관련 조직 등 운영 방식

### 가. 규제연구센터

2014년 6월 18일, KDI와 행정연 산하에 규제연구센터를 설치하였다. 현재 KDI는 2실 21명으로 경제부처 규제비용분석 검증, 행정연은 2팀 15명으로 행정·사회 부처 규제비용분석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KDI·행정연 규제연구센터 비교〉

	KDI 규제연구센터	행정연 규제연구센터
기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부처 규제비용분석 검증</li> <li>○ 비용분석기법 컨설팅</li> <li>○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사회 부처 규제비용분석 검증</li> <li>○ 비용분석기법 컨설팅</li> <li>○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연구</li> </ul>
인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21명(소장 : 이수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15명(소장 : 안혁근)</li> </ul>
조 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실(분석평가실, 제도연구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팀(분석평가실, 제도연구실)</li> </ul>

### 나. 비용전문위원회

2014년 8월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여부, 규제비용분석 검증의 적정성 판단, 규제제도 연구 등을 수행하는 비용전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총 11명으로 공동위원장 2인(규개위 위원 1인, 규제조정실장)과 규제연구센터장, 비용·편익 분석 전문가, 정부 위원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비용전문위원회 구성과 위원 명단〉

(2015년 12월 31일 기준)

구 분	성 명	현 직
위원장 (2)	김종일 강영철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위원 규제조정실장
민간위원 (6)	이수일 안혁근 이혁우 권남훈 최석준 김태연	KDI 규제연구센터장 행정연 규제연구센터장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
정부위원 (3)	이창수 이정원 강주홍	규제총괄정책관 규제혁신기획관 규제심사관리관

다. 운영 방식 (규제비용총량제 2차 시범사업 기준, '15.4~'16.2)

(1) 적용 대상

규제비용총량제 규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규제는 '기업 등'에 직접적인 비용 및 편익을 발생시키는 행정규제기본법 상의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기업 등'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행위를 하는 개인, 법인, 비영리법인을 의미한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규제, 국가 위기 상황 대처 규제 등은 규제개혁위원회(비용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비용총량제 적용을 제외한다.



### 〈매뉴얼상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제외 요건〉

1.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2. 조약이나 국제협정 등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
3. 국가의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4. 금융·외환시스템 위기의 방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환경 위기 대응과 관련된 규제로서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큰 규제
5. 1년 이하의 효력상실형 일몰이 설정된 규제
6. 통상적인 임금 및 물가상승에 상응해 기존규제 수준을 유지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규제
7. 수익적 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요금, 수수료
8. 규제의 미이행으로 부과되는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처분
9. 1항 내지 8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비용총량제 적용제외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제

## (2) 적용 방안

### (가) 비용 분석

규제비용총량제는 신설·강화 규제의 비용 분석 후,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토록 한다. 원칙적으로 신설·강화 규제 심사시 대응하는 폐지·완화 규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규제 심사시 폐지·완화 계획(대상 규제, 시기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측정비용은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순비용(직접비용-직접편익)으로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 후, 다시 연간균등순비용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신설·강화 규제와 폐지·완화 규제 간 규제 비용 교환 후 남은 금액은 적립하여 추후 사용할 수 있다. (규제비용적립제, banking)

다만, 비용분석 대상이나, 규제비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규제연구센터의 검증을 생략하는 간이 심사 절차를 적용한다. (간편심사, Fast-Track)

(나) 심사처리제

화폐적인 비용분석이 불가능하거나, 분석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어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규제의 성질·강도·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유사 수준의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심사처리제’를 적용할 수 있다. 비용분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규제이거나, 규제 기준 및 규제범위 설정이 대단히 어렵고 관련 통계 등이 전무하여 비용분석 추계(시뮬레이션)조차 불가능한 규제가 심사처리제 대상이 된다.

〈규제비용총량제 적용여부에 따른 분류〉

비용총량제 대상		비용총량제 비대상	
비용분석	간편심사	심사처리제	적용 제외

(3) 운영 절차

기존의 규제심사 절차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규제비용총량제 관련 절차가 일부 추가된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규제비용총량제 적용절차〉



\* 음영은 규제비용총량제와 관련하여 추가되는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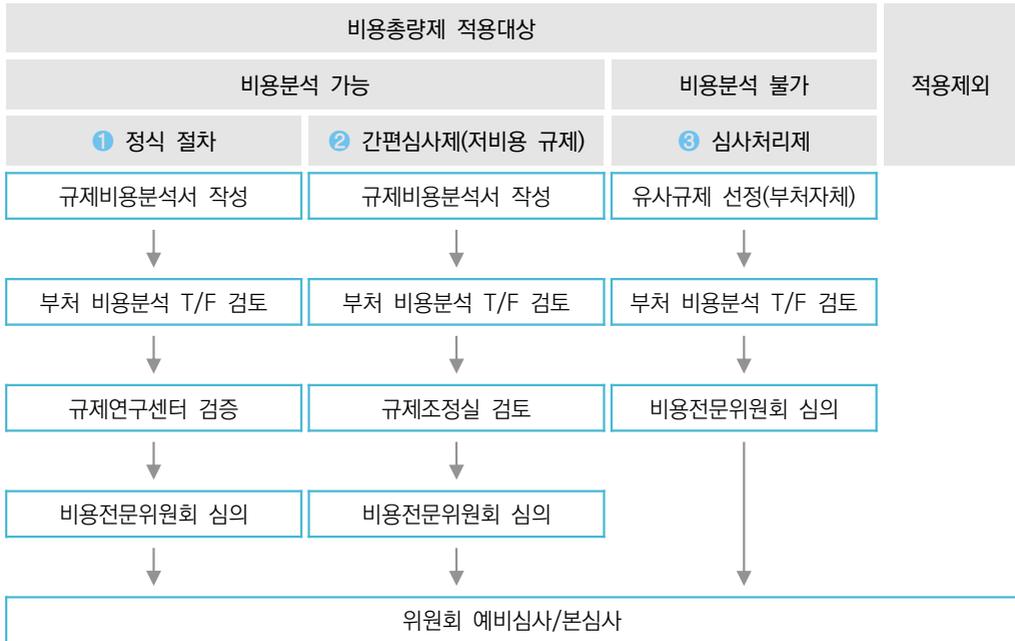
(비용분석 대상) 비용분석 대상으로 결정된 규제안은 위 표에 제시된 적용절차에 따라 규제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간편심사 대상 규제안에 대해서는 규제연구센터의 비용분석 검증 과정이 생략된다.

(심사처리제 대상)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대상이나, 심사처리제로 결정된 규제안에 대해서는 규제조정실에서 검토 후 비용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적용제의 대상) 비용총량제 비대상(적용제외)로 결정된 규제안은 규제비용총량제 관련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기존의 규제심사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규제비용총량제 적용여부에 따른 규제심사 적용절차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 3.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현황

#### 가. 시범사업 개요

2014년 7월부터 8개 부처(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중기청)를 대상으로 규제비용총량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15년 4월에 7개 부처(미래부, 행자부, 복지부, 방통위, 특허청, 관세청, 고용부(15.10월))를 추가하여 15개 부처로 2차 시범사업을 확대하였다. 시범사업은 부처의 비용분석 연습 차원에서 대표사례를 중심으로 적용하였다.

## 나. 시범사업 운영 현황 (2016년 1월말 기준)

### (1) 적용 현황

규제심사 대상(304개) 중 116건(38%)이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대상, 188건(62%)이 적용 제외되었다.

적용대상 116건(100%) 중 109건(94%)은 비용분석이 가능하였으며, 7건(6%)은 비용분석이 어려워 '심사처리제'를 적용하였다.

적용제외 188건(100%)은 그 사유별로 분류하면 「생명·안전」 92건(49%), 「수익적 행위에 대한 수수료 등」 32건(17%), 「행정질서 및 행정제재」 32건(17%) 순으로 나타났다.

### (2) 적용 대상에 대한 분석 현황

#### (가) 비용분석 안건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대상으로 비용분석 검증을 실시하여 비용전문위원회를 완료한 안건은 총 52건으로 신설·강화 24건, 폐지·완화 28건이다.(16.1월말 기준) 1기 시범사업으로 약 993억원의 연간균등순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기 시범사업으로 약 785억원의 연간균등 순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나) 심사처리제 안건

규제비용총량제가 적용 대상으로 비용분석이 어려워 심사처리제를 적용한 건은 국토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10건이다.



## 4.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주요 사례 및 실적

### 가. 비용분석 주요 사례

#### (1) 농식품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규정 강화

사례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시행령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규정 강화)	소관부처	유형
		농식품부	IN규제
규제내용	○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수 확대(2개→3개) 및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16개→20개)		
분석개요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강화되면서 ‘식품관련업체(건강기능식품업체, 총산물 가공업체 등)’, ‘외식업체(일반 음식점 등)’ 등에 대한 직접비용과 직접편익을 분석 ○ 메뉴판 변경비용 등 직접비용은 7,546백만원, 직접편익은 0원으로 순비용은 7,546백만원으로 산출 ➔ 이에 따른 연간균등순비용은 949백만원으로 산출 * 순비용 : 규제존속기한중 합산 개념 / 연간균등순비용 : 연간 개념		
시사점	○ 식품 관련업체, 외식업체 등 피규제자 규모 산출을 위해 관계부처(식약처)의 통계자료 활용하여 객관성 제고, ○ 피규제자를 대표하는 관련 협회 및 피규제업체를 면담하고 설문조사하여 피규제자가 부담하는 규제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 ➔ 총량제 적용시 기존 통계나 데이터의 부족, 규제비용·편익을 계량화하는 경험의 부족 등을 애로사항에 대해 타 부처가 생산한 통계나 현장에서 피규제자를 직접 만나 규제비용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객관적인 규제비용 산출		

#### (2) 방통위,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규제비용 분석

사례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고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소관부처	유형
		방통위	IN규제
규제내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해야하는 개인정보 취급 내부관리 계획 항목 추가, 개인정보취급자의 모바일 기기 접근 통제 조치, 여권관리번호 등의 암호화 저장 등		
분석개요	○ 규제의 강화로 인한 직접비용은 모바일기기의 개인정보 암호화 처리에 따른 예상비용 1,584백만원, 직접편익은 0원으로 순비용은 1,584백만원 ➔ 이에 따른 연간균등순비용은 158백만원으로 산출		
시사점	○ 피규제자인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숫자를 집계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 도메인 수 통계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자 수를 추정 ➔ 비용분석 시 기존 통계가 없더라도 관련 데이터를 통해 피규제자의 범위를 설정하는 등 창의적 아이디어 필요 ○ 피규제자 중 대형사업자의 경우 규제 관련조치를 이미 수행하여 추가 규제비용 부담이 없고, 보안 내부지침 강화 규정이나 접속시간 제한 등의 규제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이 없다는 점을 피규제자 인터뷰를 통해 확인 ➔ 비용분석 시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피규제자를 통해 규제비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 규제비용이 과다·과소 계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3) 미래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

사례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	소관부처	유형
		미래부	IN규제
규제내용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을 강화, 서비스 중단·침해사고 발생·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경우 이용자에게 통지하며 이용자 정보 유출 경위를 미래부에 신고하도록 함		
분석개요	○ 동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직접비용은 이용자 통지비용 6,441백만원, 신고에 소요되는 비용 829백만원 등 총 7,270백만원이며, 직접편익은 0원으로 순비용은 7,270백만원임 ➔ 이에 따른 연간균등순비용은 914백만원으로 산출		
시사점	○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는 새롭게 창출되고 급격히 성장하는 부문으로 관련 시장 전망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업자 수, 이용자 수, 매출 등 전망자료를 새로 만들고 조정하였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침해사고, 서비스 중단, 이용자 정보유출 빈도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업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나, 사업자에게 불리한 정보이기 때문에 응답저조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어려웠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델파이 방식을 통한 업계 전문가 심층자문 등을 통해 일반 사업체의 유사 사고율을 참고하여 적절히 가정함 ➔ 비용분석을 위한 데이터 확보가 곤란한 새로운 시장분야 등의 경우 규제의 신설·강화를 계기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전문가를 활용 및 유사분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규제비용 산출 가능		

나.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평가

1년 6개월간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운영을 통해 확인한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에 따른 비용을 관리함으로써 피규제자의 실질적 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1·2차 시범사업 기간 중 폐지·완화 규제비용분석 결과 12건의 폐지·완화를 통해 규제순비용 1천억원 이상의 경감 성과가 도출되었다.

둘째, 부처의 규제비용·편익 분석의 역량 제고를 통해 규제 품질의 향상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규제비용편익 자동산정시스템’이 구축(15.7월)되고, 10월부터 모든 부처는 자동산정 시스템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시스템이 개편되었다. 이후 직접비용·편익, 대안별 규제 비용에 대한 분석이 자동지원되면서 ‘규제비용의 계량적 분석’이 정착되고 부처의 규제도입·분석의 질적 수준이 제고되고 있다. 규제연구센터가 부처 규제비용 분석결과 대해 면밀하게 검증하는 절차를 통해 부처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셋째, 부처로 하여금 기존 규제를 개선토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실제로 시범사업 과정 중에서 현실적으로 피규제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 중복적인 규제 등을 발굴·개선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이 감축되었다.

넷째, 규제 도입시 새로운 정책대안 개발 모델을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규제비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규제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피규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항목들이 무엇이며 가격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규제자와 직접 면담, 설문조사를 하거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향후 규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소관 부처 중심이 아닌 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간 커뮤니티 구조(정책논의의 장)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시범사업을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규제비용총량제의 개선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비용과 편익을 분석함에 있어 과학적·계량적 분석에 익숙하지 않은 행정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 규제 담당자들이 신설·강화하고자 하는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추계하고 분석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규제효과에 대한 단순한 기대치나 계량적 분석이 아닌 서술적 분석에 치중하는 문제가 있었다. 자동산정시스템을 통해 계량화된 직접비용을 자동계산하고, 규제연구센터의 부처 방문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

둘째, 규제비용의 순증을 최소화하도록 규제신설·강화시 폐지·완화규제를 발굴하여 매칭하도록 부처의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규제비용총량제의 당초 도입 목적에 따라 부처가 자율적으로 기존규제의 정비를 통해 부처 총규제비용의 증가를 억제해야 하나 규제담당자들은 규제신설 및 강화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설득에 보다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부처별로 규제폐지·완화를 통한 규제비용 감축 등 규제비용총량제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기존규제 정비 유인을 강화하고, 규제신설·강화시 폐지·완화규제의 동시 제출이 곤란한 경우 비용적립제(banking)를 통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을 통해 기존규제 정비를 독려하고 있다.

## 5. 향후 계획

국무조정실은 규제비용총량제의 명확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해 '14년 8월 28일, 규제비용총량제의 명확한 도입 근거를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입법권 침해 등에 대한 쟁점으로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설득 등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16.3월부터 경제활동과 관련이 높은 7개 부처를 추가하여 총 22개 부처에 규제비용총량제가 확대시행된다. 이에 맞춰 규제정보화시스템을 개편하여 규제비용총량제를 규제심사과정에 연계하여 규제비용의 순증을 최소화하도록 강화할 계획이다.



## 제2절 규제영향평가 강화

◎ 집필자 문두식 사무관 ☎ 044-200-2913 ✉ heka214@pmo.go.kr

### 1. 강화배경

#### 가. 의의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ssessment)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규제 기본법 제2조)

이는 규제담당자들로 하여금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탐색·설계 시 복수의 규제 대안 및 비규제 대안을 폭넓게 비교·검토하고, 규제의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규제의 비용·편익, 파급효과, 집행의 실효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제시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도모하고 규제의 질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 나. 강화배경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미리 진단하기 위해서 규제영향분석서가 보다 내실 있게 작성되고 활용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계량적 비용편익 분석이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행정여건상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수치로 제시하기 보다는 일반적 서술로 작성하는 등 다소 미흡하여 규제에 대한 면밀한 비교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규제비용산정 항목의 표준화와 산출 공식 등 상세길라잡이 제공, 필수 작성요소의 보강 등 규제심사단계에서의 처리절차를 강화하여 한 단계 더 발전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였다. 다만, 규제의 파급효과가 경미하거나 이견이 거의 없는 미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처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2. 주요내용

### 가. 웹기반 규제영향분석 실시 및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규제비용·편익 자동산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웹기반 시스템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서의 전반적인 절차를 처리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안별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자동분류·축적하여 DB화하는 한편, 그 결과서인 규제영향분석서가 자동적으로 산출되도록 하였다.

웹기반 규제영향분석 실시 과정에 있어서 각 단계별 항목설명 및 사례예시를 제공함으로써 규제자가 규제영향분석 과정을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한 사항을 자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다.

### 나. 규제대안별 비용·편익분석 및 비교를 통한 최적대안 산출

규제의 신설·강화에 있어서 현행유지안, 비규제대안, 제시된 규제대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그 결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최적대안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 다. 규제비용총량제 추진기반 구축

규제영향분석 절차 중 대안별 비용·편익분석을 자동화함으로써 분석의 내실을 기하고, 기존에 별도로 작성하던 규제비용분석서를 규제영향분석서로 통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관련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총량제 추진기반을 구축하였다.

### 라. 표준작성·간편작성의 구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쟁점사항 등을 기준으로 규제를 구분하고, 규제의 파급효과가 경미하거나 관련 쟁점 또는 이견이 거의 없는 미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서의 간편작성을 실시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구분	설명	
	기준	예시
표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의 파급효과가 큰 경우(연간 규제 직접비용 10억원 이상, 피규제자수 10만명 이상 등)</li> <li>○ 관련 쟁점 및 이해관계자 대립이 큰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편작성 대상 외 규제</li> </ul>
간편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의 파급효과가 경미한 경우 (연간 규제 직접비용 10억원 미만, 피규제자수 10만명 미만 등)</li> <li>○ 관련 쟁점이나 이견이 거의 없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위법 위임에 따라 경미한 사항, 세부기준을 정하는 경우로서 비용·편익 수준이 미미한 규제</li> <li>○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수되는 절차관련 규제</li> <li>○ 비용·편익 수준이 미미한 규제</li> <li>○ 행정질서법 및 행정제재</li> </ul>

### (1) 표준대상 작성방법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해외사례 분석 등을 비롯하여 규제영향분석서의 모든 평가항목을 충실하게 작성한다. 단, 예외적으로 계량적인 비용·편익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객관적 근거를 명시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2) 간편대상 작성방법

피규제자(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직접비용, 직접편익 및 정부비용 분석은 의무적으로 계량분석을 실시하나 피규제자에 대한 간접비용, 간접편익, 일반국민, 피규제자 외의 민간부문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은 영향이 큰 경우에만 정성분석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규제대안2의 제시는 생략이 가능하다. 즉, 4가지 대안이 아닌 현행유지안, 비규제대안, 규제대안1의 3가지 대안으로 축소제시가 가능하다. 또한 행정질서법 또는 행정제재 처분에 따른 비용은 규제순응에 대한 비용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대안별 비용·편익분석은 생략한다.

## 마. 규제영향분석 T/F 운영

규제영향분석 T/F를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하는 한편, 규제분야 전문연구기관인 규제연구센터를 통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에 대한 영향분석의 심층검토를 추가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규제영향분석 검토의 내실화 및 규제품질 제고를 도모하였다.

### 3. 규제비용·편익자동산정시스템

#### 가. 필요성

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핵심은 객관적으로 계량화된 비용분석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하고, 그 중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계량화된 비용분석 경험이 부족한 행정 문화 속에서 체계적 비용편익 분석이 다소 미흡하게 수행되어 왔다. 따라서 부처 공무원들이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비용편익 산정에 있어 자동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규제 영향분석서도 함께 반영되도록 하여 내용상·절차상 편의성을 제고하기위해 국제표준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자동화된 규제비용계산시스템 도입하였다.

#### 나. 주요내용

##### (1) 비용편익분석 자동산정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영향분석의 핵심인 비용편익 분석 자동산정 기능을 마련하였다. 항목설명, 작성사례, 산출 공식 등 상세길잡이를 제공하고 항목별 수치를 입력하면 규제비용의 전체값 및 환산치가 자동 계산되게 하였으며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과 연계하여 인건비 등 주요 데이터를 시스템 내에서 바로 확인, 입력토록 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 (2) 광범위한 비용분석

기업 등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직접비용·편익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 발생하는 정량적·정성적 비용 분석 및 정부비용에 대한 분석도 지원하여 보다 광범위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3) 웹상에서 작성

비용편익 분석을 포함한 모든 규제영향분석서 항목을 웹상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중요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작성토록 유도하고, 해외사례 분석, 현행유지안 외에도 비규제대안을



포함한 최소 3개 대안\*의 제시 및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였다.

\* △비규제대안,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대안, △다른 방식의 규제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

#### (4) 일관성있는 활용성

작성이 완료되면 ‘규제비용편익 결과표(CBA Report)\*’와 ‘규제영향분석 결과표(RIA Report)\*\*’를 모두 출력할 수 있어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심사에 동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 Cost-Benefit Analysis Report :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직접비용/직접편익의 정량 분석

\*\*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eport : 피규제자, 일반국민, 정부에 발생하는 직·간접 비용편익의 정량적·정성적 분석

#### (5) 해외사례 비교

구 분	호 주 (RBM)	영 국 (IA Calculator)	한 국 (자동산정 시스템)
제공 형태	○ 웹 기반 시스템	○ 엑셀 툴	○ 웹 기반 시스템
주요 기능	○ 비용편익 분석 자동산정	○ 비용편익 분석관련 일부 계산 지원	○ 비용편익 분석 자동산정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원
분석 대상	○ 피규제자	○ 피규제자	○ 피규제자, 일반국민, 정부
분석 범위	○ 정량적 직접비용	○ 정량적 비용/편익	○ 정량적·정성적 직·간접 비용/편익

\* RBM : Regulatory Burden Measure, IA Calculator : Impact Assessment Calculator

##### 주요 기능과 특징(요약)

- ① 비용편익 분석 자동산정 기능
  - 항목설명, 작성사례, 산출공식 등 상세길잡이 제공
  - 항목별 수치를 입력하면 규제비용 전체값 및 환산치 자동계산
  - 인건비 등 주요 통계 데이터 연계
- ② 광범위한 비용편익 분석 지원
  - 기업 등 피규제자, 일반국민, 정부 대상 분석
  - 정성적·정량적 직·간접 비용편익 분석 가능
- ③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원
  - 분석서의 모든 항목이 빠짐없이 작성되도록 시스템 설계
  - 특히, 해외사례 분석, 최소 3개 대안 제시,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강화
- ④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심사에 동시 활용 가능
  - 규제비용편익 결과표(CBA Report)와 규제영향분석 결과표(RIA Report) 모두 출력 가능

##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 집필자 한태경 사무관 ☎ 044-200-2431 ✉ xorud@pmo.go.kr

### 1. 개정 배경

#### 가. 입법 연혁

행정규제기본법은 1997년 8월 제정된 이후 타법 개정을 제외하고 3차례의 일부 개정이 있었다. 2005년 법률 제7797호는 규제사무목록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도록 규정하여 규제의 투명성과 국회의 감시를 강화했다. 2010년 법률 제9965호는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적으로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2013년 법률 11935호는 규제의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여 규제가 주기적으로 재검토될 수 있도록 했다.

#### 나. 개정 추진

정부는 그간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각도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했으며 분야별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각 부처의 규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국민과 기업의 규제부담에 대한 호소도 계속되었다. 또한 저성장구조 고착화를 탈피하고 경제혁신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돈 들이지 않는 투자인 규제개혁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다. 이에 부응하도록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산업계, 학계 전문가로부터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행정규제기본법이 지난 1997년 제정된 이후 실질적인 개정이 없었던 점을 고려, 그간의 변화된 규제환경과 규제개혁의 이념·제도상 발전을 반영하여 규제시스템의 전면 개선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2. 개정안 주요내용

### 가. 목적조항 개정

1997년 법 제정 당시 규제개혁은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 규제 수에 초점을 맞춘 양적 규제완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세계적으로 규제개혁의 패러다임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설계 및 규제 품질제고로 변화했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의 목적조항도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 및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개선 뿐 아니라 행정규제 품질 제고 및 행정규제의 통합적·신축적 관리로 확대했다.

### 나.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의 상시적 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규제순비용의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소관 규제비용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게 했다.

### 다. 국민의 생명·안전 규제 관리 강화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할 경우 규제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는 것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규제의 원칙에 동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국민들이 생명·안전에 미비한 규제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규제부담 경감

과도하거나 일률적인 규제로 인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나친 규제부담을 완화하고 규제부담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 마.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 도입

시장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의 기반을 조성하여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에는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 바. 기타

그 밖에 △ 모든 규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존속기한을 설정하되 예외적으로 3년 이내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으며, △ 기술 발전·융합,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의 탄력 적용에 관한 조항을 두었다.

### 3. 개정 추진경과

2013년 12월 산업계·학계·정부 전문가가 모여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연구원은 2014년 3월부터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위한 연구를 실시했다. 국무조정실은 2014년 6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입법예고했고, 7월 학계·언론·국회·경제단체·시민단체 등 관련 인사를 초청하여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동 개정안은 2014년 8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2014년 8월 국회에 제출되어 정무위원회로 회부되었다. 11월 정무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후, 법안소위에서 6회(2014년 12월, 2015년 1월, 2월, 4월, 7월, 11월) 논의되었으며 현재까지 규제와 관련된 의원입법 11건과 함께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 가. 주요쟁점

법안소위 심의과정에서 대두된 주요 쟁점은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기능이다. 규제비용총량제와 관련해서는 적용제외 대상 및 범위 조정, 사회적 편익이 큰 규제의 도입 곤란 우려, 입법권의 지나친 제한 등이 지적되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 정부발의개정안이 아닌 일부 의원입법안에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바, 규제개혁위원회 권한의 강화 또는 약화 필요성, 정부입법과정에서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된 위원회가 규제 철폐·개선 권고 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 나.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서 규제비용총량제 및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 도입 등의 규제시스템 개편에 대해 전반적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나 규제비용 총량제의 경우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 밖의 일부 사안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4. 향후 계획

19대 국회 임기는 '16년 5월 종료되는바, 남은 기간 동안 정부는 국민의 규제부담을 낮추고 규제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제4절 규제정보화 추진

집필자 이용하 사무관 ☎ 044-200-2406 ✉ dufma@pmo.go.kr

### 1. 추진배경 및 경과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핵심 아젠다로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높아지는 상황에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국민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창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 지원시스템으로는 국민과의 소통기능에 한계가 있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규제개혁을 이끌어가는 국민참여형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개통하였다.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규제개혁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규제정보시스템 구축이력

- '08년 : 규제개혁차관회의 시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정보화 시스템 구축 결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규제정보화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 '09년 : (1단계) ▶규제심사지원시스템 ▶규제등록관리시스템 ▶규제과제관리시스템 구축
- '10년 : (2단계) ▶부처자체심사시스템 ▶규제건의관리시스템 구축
- '11년 : (3단계) ▶규제사무에 대한 업종별·활동별·분야별 규제정보서비스 실시
- '12년 : (4단계) ▶규제통합정보시스템(rims.go.kr) 구축
- '13년 : ▶행정조사시스템 구축 ▶규제개선 성과관리 및 변동사항 관리 구축
- '14년 : ▶규제정보포털(better.go.kr) 개통
- '15년 : ▶ 조문단위 등록규제 서비스 ▶외·투 기업에 신설·강화 규제정보 제공 ▶인증개혁 서비스



## 2. 규제정보포털의 주요 기능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은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개선해 가는 규제개혁 쌍방향 소통창구로, 규제건의 및 개선과제의 추진상황을 실시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보완을 추진하는 국민 맞춤형 규제개혁 One-stop 서비스 제공 포털시스템이다.

‘규제정보포털’은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에서 이용하는 규제정보화시스템(ris.go.kr)의 규제개혁 정보를 인터넷으로 국민에게 제공, 국민의 건의사항을 접수·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규제개혁신문고, 대통령주재회의 건의, 경제단체건의, 손톱밀가시 등 규제개혁 건의안건, 규제현황, 법령관리 등 다양한 규제정보의 제공·건의, 홍보영상, 웹툰 등을 통한 쌍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규제정보포털 화면 >



### 3. '15년 규제정보화 중점추진 내용

#### 가. 정부3.0에 따른 정보공유·협업으로 규제정보 포털 서비스 확대

〈기관 간 정보공유·협업으로 수요자에 대한 규제정보 서비스 강화 및 소통 확대〉

「정부3.0」 취지에 맞춰,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개편하여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의 모든 규제정보 및 개선 과정을 한눈에 조회·처리 할 수 있도록 범정부 연계를 확대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였다.

기재부, 법제처, 행자부, 대한상공회의소 등 규제개혁 유관기관 주요포털과 '규제정보포털' 연계를 통해 규제 관련정보 One-stop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였다.

각 부처 포털과 규제신문고를 연계하여 부처 홈페이지를 통한 규제개선 건의가 국무조정실에 자동 전송되어 부처와 협업으로 통합·검토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제공해오던 규제정보지도(중기음부즈만), 경제활성화 법안(기재부), 기업체 감도·경제활동 친화성 정보(대한상의) 서비스 연계를 확대하고, 법제처 '지방의 불합리한 규제정보 이행상황 공개' 서비스를 추가하였다.

아울러, '규제정보포털'을 통하여 규제개선 사례 전파 및 부처연계 공동홍보 기능을 확대·강화하였다. 규제개선 사례를 동영상, 포토툰, 웹툰 등으로 제작·홍보하고, 각 부처 포털과 연계하여 규제개선 사례의 공동홍보 창구로 운영하였으며, KTV '혁신을 혁신하라', '규제개혁현장' 등 방송매체와 협업으로 규제개선 사례를 제작·방송, '규제정보포털'을 통하여 전파하였다.

#### 나. 규제관련 주요포털 연계로 통합 규제정보 제공

〈규제-법령-지방조례 원스톱 서비스 제공〉

'법령정보센터'(law.go.kr, 법제처)와 '규제정보포털'을 연계하여 '규제-법령-조례' 정보를 통합 제공하였다. 국민·기업이 부처별 등록 규제 조회 시, 중앙부처 규제와 관련법령, 규제 조문별 지자체에 위임된 조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규제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였다.



〈규제↔법령↔지방조례 연계〉

**부처별 규제**  
 부처별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률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도 도로법	규 4조(사권의 제한)			
	규 117조(과태료) 조+ <input type="button" value="조+"/> <input type="button" value="조+"/>		규 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조+ <input type="button" value="조+"/>	

지방자치단체별 자치법규 현황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교육청
89	9	10	4	5	3	1	1	1	15	7	5	8	7	4	2	7	0	0

〈신설·강화되는 규제입법 정보 사전 제공 및 의견수렴〉

정부 및 의원발의 법안에 규제의 신설·강화 조문이 있는 경우 입안 단계부터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시 검토·반영하는 국민감시체계를 도입하였다. 국민과 기업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규제의 신설·강화와 관련된 입법정보를 제공,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은 소관 부처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시 검토되도록 하였다.

〈규제입법 정보공개 및 의견수렴 화면〉

**정부 입법**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 2015. 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170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규제검토	환경부	2015-12-04~2016-12-24	접수중
16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1-10~2016-11-21	접수중

〈규제신문고-국민신문고 연계〉

국민불편·기업애로 건의처리를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규제신문고’와 ‘국민신문고(people.go.kr)’를 연계, 국민신문고를 통해 건의된 규제민원도 규제신문고로 자동 이송되어 처리되도록 개편 하였다.

\* 「규제민원→규제신문고, 일반민원→국민신문고」 자동이첩 및 전담처리

국민은 일반·규제 민원 구분 없이 국민신문고 또는 규제신문고 어느 곳이든 편리하게 접수하고, 접수된 규제민원은 국조실·권익위 간 협업을 통해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로 자동 이송되어 처리절차(3심제)에 따라 신속하게 검토·답변 된다.

〈 규제신문고 ↔ 국민신문고 연계 〉



〈 지방자치단체 규제등록 현황 및 규제개혁 추진 현황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와 ‘규제정보포털’을 연계, 지자체 조례 및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지역별 규제등록’ 현황, 시도 순회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규제애로의 개선현황 및 성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였다.

〈 지자체별 규제등록현황, 규제개혁 추진현황 〉

번호	제목	연대일차	연방상황
57	전남농업인 산업 현장제안 관회	2015-07-10	발의중
56	6차 산업형 농어촌관광농업 견학 발의제안 관회	2015-07-10	발의중
55	내수면 잉어잡이 농기 금지제안 관회	2015-07-10	발의
54	불합리하게 지방청 농업진흥지역 해제	2015-07-10	발의
53	내장산 관광호텔 건축(10층)을 위한 규제 개선	2015-07-10	발의중

※ 기관 간 규제정보 연계 주요현황

- ▶ (행자부-국조실) 지역별 규제등록 현황, 지역토론회 건의과제 추진 현황
- ▶ (산업부-국조실) 인증제도 현황, 인증제도 정비 현황, 외·투기업대상 의원발의 규제법안 정보
- ▶ (기재부-국조실) 경제 활성화 법안
- ▶ (법제처-국조실) 의원입법 규제신설 정보, 불합리한 지방규제 이행상황
- ▶ (대한상의-국조실) 기업체감도, 경제활동 친화성 정보
- ▶ (중소기업 옴부즈만-국조실) 규제정보지도



## 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신설·강화 규제법령 제공

‘영문 규제정보포털’(e.better.go.kr)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①규제 신설·강화 시 사전에 규제입법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 조회, ②불합리한 기존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규제개혁 신문고, ③ 경제·사회·금융 등 12개 분야별 규제개선사례제공 등 3가지 주요 서비스에 대해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ombusman.kotra.or.kr)과 ‘영문 규제정보포털’을 연계하였다.

‘영문 규제정보포털’이 제공하는 신설·강화 규제정보 사전제공 및 의견수렴,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하여 외·투기업의 입법참여 확대, 규제환경 예측 가능성 제고로 외투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외·투기업에 규제 입법정보 공개 및 의견수렴 〉

### Government Legislation

New & strengthened government legislations are pre-announced for public opinion.

Competent Ministry

Area

Title

Search

No.	Area	Title of Bill	Competent Ministry	Advance Publication of Legislation	Opinion Submission Deadline
114	Others	Draft Partial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utual Savings Banks Act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015-12-17	2016-01-26
113	Finance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5-12-24	2016-01-11

## 라. 인증 개혁 서비스

‘e 나라 표준·인증 포털’(산업부)과 ‘규제정보포털’을 연계하여 인증제도 현황 및 인증제도 개선 상황을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정부가 운영중인 인증제도를 일괄조회 할 수 있는 ‘인증제도 현황’ 서비스와 인증 정비현황을 실시간 제공하는 ‘인증제도 정비’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증부담 경감과 인증제도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2015

WHITE PAPER ON REGULATORY REFORM BOOK

국민과  
함께 걷는  
규제개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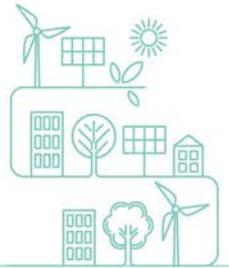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규제개혁과  
국민소통으로 희망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 Part 04

## 제4장

###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1절 개요	172	제8절 교육·과학기술 및 문화 분야	477
제2절 재정·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174	1. 교육부	477
1. 기획재정부	174	2. 미래창조과학부	494
2. 공정거래위원회	182	3. 문화체육관광부	513
3. 관세청	189	4. 문화재청	534
4. 금융위	192	5. 원자력안전위원회	537
5. 금융감독원	225	제9절 보건복지·여성 분야	543
제3절 산업·에너지 분야	231	1. 보건복지부	543
1. 산업통상자원부	231	2. 여성가족부	584
2. 중소기업청	256	3. 식품의약품안전처	592
3. 특허청	266	제10절 통일·외교 및 국방 분야	646
제4절 국토·해양 분야	269	1. 국가보훈처	646
1. 국토교통부	269	제11절 일반행정·안전 분야	649
2. 해양수산부	349	1. 행정자치부	649
제5절 농림·산림분야	396	2. 인사혁신처	650
1. 농림축산식품부	396	3. 경찰청	653
2. 농촌진흥청	421	4. 법무부	659
3. 산림청	422	5. 국민안전처	665
제6절 방송·통신 분야	429	6. 국민권익위원회	692
1. 방송통신위원회	429	제12절 규제영향평가	698
제7절 노동·환경 분야	437	1. 규제영향분석제도 개요	698
1. 고용노동부	437	2. 평가항목 및 요소	701
2. 기상청	446	3. 작성 대상 및 절차	704
3. 환경부	447	4.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706

## 제1절 개요

◎ 집필자 문유진 사무관 ☎ 044-200-2414 ✉ yujin700@pmo.go.kr

규제개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경제분과 및 행정사회분과) 및 본위원회를 거쳐 각 부처가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규제 총 1,022건(중요규제 96건, 비중요규제 926건)을 심사하여 이 중 52건에 대해 철회 또는 개선을 권고하였다. 각 부처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규제를 삭제 또는 개선하였다.

'15년 부처별 신설·강화 규제 심사결과

부처별	법령수	심사 규제수 (A=B+C)	2015년도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G=B+F)
			비중요 (B)	중요			원안동의 (F)	
				계 (C=D+E+F)	철회권고 (D)	개선권고 부대권고 (E)		
기 획 재 정 부	8	12	11	1	0	1	0	11
공정거래위원회	4	9	9	0	0	0	0	9
국 세 청	0	0	0	0	0	0	0	0
관 세 청	3	3	3	0	0	0	0	3
통 계 청	0	0	0	0	0	0	0	0
금 융 위	24	60	45	15	0	7	8	53
금 감 원	10	10	10	0	0	0	0	10
산업통상자원부	23	54	52	2	0	1	1	53
중 소 기 업 청	8	12	12	0	0	0	0	12
특 허 청	2	4	4	0	0	0	0	4
국 토 교 통 부	77	119	116	3	0	0	3	119
해 양 수 산 부	45	82	80	2	0	1	1	81
농림축산식품부	27	66	65	1	0	0	1	66
농 촌 진 흥 청	1	1	1	0	0	0	0	1



부처별	법령수	심사 규제수 (A=B+C)	2015년도 규제심사 결과						
			비중요 (B)	중요				원안동의 (F)	원안동의 (G=B+F)
				계 (C=D+E+F)	철회권고 (D)	개선권고 부대권고 (E)	원안동의 (F)		
산 립 청	7	14	14	0	0	0	0	14	
방송통신위원회	9	17	15	2	0	1	1	16	
고 용 노 동 부	6	11	7	4	0	2	2	9	
기 상 청	1	1	1	0	0	0	0	1	
환 경 부	34	56	44	12	0	8	4	48	
교 육 부	24	40	34	6	2	3	1	35	
미래창조과학부	21	46	45	1	0	0	1	46	
문화체육관광부	20	52	47	5	0	3	2	49	
문 화 재 청	5	7	7	0	0	0	0	7	
원자력안전위원회	7	12	12	0	0	0	0	12	
보 건 복 지 부	45	92	81	11	1	3	7	88	
여 성 가 족 부	7	20	19	1	0	1	0	19	
식품의약품안전처	62	97	90	7	0	6	1	91	
통 일 부	0	0	0	0	0	0	0	0	
외 교 부	0	0	0	0	0	0	0	0	
국 방 부	0	0	0	0	0	0	0	0	
국 가 보 훈 처	3	12	9	3	0	0	3	12	
행 정 자 치 부	1	2	2	0	0	0	0	2	
인 사 혁 신 처	4	6	6	0	0	0	0	6	
경 찰 청	7	19	18	1	0	1	0	18	
법 무 부	2	12	6	6	0	3	3	9	
국 민 안 전 처	40	61	54	7	1	2	4	58	
국민권익위원회	4	13	7	6	0	5	1	8	
<b>계</b>	<b>541</b>	<b>1,022</b>	<b>926</b>	<b>96</b>	<b>4</b>	<b>48</b>	<b>44</b>	<b>970</b>	

## 제2절 재정·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 1. 기획재정부

집필자 김세록 사무관 ☎ 044-200-2425 ✉ ksm123@pmo.go.kr

#### 가.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5년도에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영업초생산협동조합법 등 8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강화 등 총 12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중 1건 개선권고, 1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1)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15.06.12)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2) 영업초생산협동조합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21)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3) 관세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28)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4) 세무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관세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9.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2015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	경제분과위원회 (2015.10.30)	-	일몰규제 2건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11)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b>계</b>	-	<b>개선권고 1 원안의결 11</b>	<b>신설 7, 강화 5 (중요 1, 비중요 11)</b>



## 나.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외화건전성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강화**

- 외화건전성부담금 부과대상을 현행 은행 외에 증권사·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카드사, 캐피탈사)까지 확대

**심사결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경제여건의 변화 가능성 및 외화차입 규제 완화조치 등으로 인한 비은행의 단기외채 증가 등으로 대외지급능력이 악화될 잠재리스크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규제의 필요성 인정. 다만, 시행일 이전 부채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어 시행일 이후의 단기외채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할 것을 개선권고

### (2) 영업초생산협동조합법 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영업초생산협동조합 조합장 선임방법 **신설**

- 영업초생산조합 조합장 선출을 ①조합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거나 ②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규제

**심사결과** 조합장 선임방법 신설은 조합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대표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필요성 인정. 조합원 직접투표 내지 대의원회 선출 방식은 직·간접적으로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민주주의 선거 방식의 하나이고,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도 동일 또는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어 규제의 적정성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영업초생산협동조합 임원 선거 운동의 제한 **신설**

- (부정선거 금지) 금품·향응 및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타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의 부정 선거 행위를 금지
- (선거운동 방식) 선전 벽보·선거 공보·합동 연설회·전화·컴퓨터 통신·명함 배부 등으로 선거운동 방식을 제한
- (임직원 참여제한) 조합 임직원의 선거운동 참여를 제한

**심사결과** 연연초협동조합은 공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공명정대한 선거 진행을 위해 규제의 필요성 인정.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도 선거운동 제한에 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어 규제의 적정성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신설**

- 선거범죄를 저질러 ①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나 ②선거당선이 무효가 되어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임원자격을 제한
-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임원자격 제한

**심사결과** 연연초생산조합은 담배산업 발전을 위한 공법인적 성격도 가지므로 조합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집행하는 임원의 자격을 적절히 규제할 필요성 인정. 또한, 유사 입법례인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도 동일 또는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정성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3) 관세법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수리 공장 지정 취소 **신설**

-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수리공장 지정 취소 요건 신설
  - 공장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1년 이상 휴업하여 설치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 관세법위반으로 공장지정취소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심사결과**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수리공장은 관세 등을 면제 받은 원재료를 제조·수리작업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면세물품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취소 요건 필요. 또한, 관세법상 유사규정인 ‘특허보세구역’ 역시 동일·유사하게 지정 취소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규제의 적정성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강화**

-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 체납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체납금액을 기준으로, 5억원 이상 →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

**심사결과**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규제의 필요성 인정. 또한, 국제기본법의 경우에도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액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므로, 내국세와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도 적정성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4) 세무사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금품수수 등의 사유로 등록취소시 재등록 제한기간 연장 **강화**

- 아래 사유로 세무대리인이 제명 또는 등록취소시 재등록 제한기간을 3년→5년으로 연장
  - 납세자와 공무원간의 금품수수를 중개, 알선, 소개, 횡령한 경우
  -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

**심사결과** 현행 '3년의 제한기간'은 세무대리인들에게 강력한 정화장치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등록 제한기간을 '5년'으로 늘릴 필요성 인정. 또한, 부정부패척결 및 청렴문화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침해로 판단되며 등록취소 후 5년간 재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유사 전문자격과 비교하여서도 규제수준 동일·유사하여 적정성 인정되는 바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5) 관세사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금품제공 등의 사유로 등록취소시 재등록 제한기간 연장 **신설**

- 아래 사유로 관세사 등록취소시 재등록 제한기간을 2년→5년으로 연장
  - 납세의무자와 공무원간의 금품수수를 중개, 알선, 소개, 횡령한 경우
  -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

**심사결과** 현행 ‘2년의 제한기간’은 관세사에게 강력한 정화장치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등록 제한기간을 ‘5년’으로 늘릴 필요성 인정. 또한, 부정부패척결 및 청렴문화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침해로 판단되며 등록취소 후 5년간 재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유사 전문자격과 비교하여서도 규제수준 동일·유사하여 적정성 인정되는 바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감경에 대한 세부기준 설정

위반행위	부과기준
① 사업시행자의 토지출입 등을 거부·방해	1차 위반: 300만원 2차 이상: 500만원
② 증권시장 상장절차진행 이행명령 불이행	1차 위반: 500만원 2차 이상: 1000만원
③ 감독·명령 위반	
④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⑤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	1차 위반: 300만원 2차 이상: 500만원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대해 유형별·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필요성 인정됨. 한편, 개별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액 범위 내에 있으며, 감경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 타입법례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7) 2015년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안 (일몰규제 2건)

구분	계	규제 폐지	규제개선			규제준속		
			일몰 연장	일몰 해제	일몰 변경	일몰 연장	일몰 해제	일몰 변경
기획재정부	2	0	1	0	0	1	0	0

**규제내용**

동일인 주식소유 제한(공기업을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 동일인은 대상기업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 내지 사실상 지배 불가. 이를 위반시 초과분을 바로 처분해야 하며 처분 전에도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위에서 정한 한도로 제한

**심사결과**

동 규제는 공기업을 대한 민영화 추진시 특정 소수의 지배력 남용 방지 및 공기업 경영권 보호 등을 위해 규정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해외사례와 비교시(프랑스 5%한도)규제가 과도하지 않고, 지분 제한 외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현재 적용 대상기업 중 3개 공기업을 민영화가 완료되지 않아 규제준속에 동의. 또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방향 등에 따라 동일인의 주식 소유 제한 비율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일몰연장 동의

**규제내용**

판매자 의무 및 판매게시사항(수입인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전자수입인지 판매자의 의무
  - 보안에 유의하여 전자수입인지의 위조·변조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유출 등 방지
  -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컴퓨터 및 인쇄·출력기기의 규격 등을 갖출 것
  - 주소 및 성명을 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통보
  - 전자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그 2일 전까지 전자수입인지업무 대행기관에 통보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전자수입인지 판매자의 보안, 판매에 필요한 비품 등의 구비무무를 규정한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 인정됨. 다만, 제3호와 제5호가 판매장소 및 주소에 관한 내용으로 서로 유사하므로 한 개의 호로 통합 정리할 필요. 한편, 본 규제는 국민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원칙적으로 법률에 위임근거를 규정해야 함. 이에 따라 현재 판매자의 의무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한 「수입인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임(15.2.5 기재위 상정). 따라서, 수입인지법 개정 추진과 별도로 동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3호와 5호를 통합하고 수입인지법 개정시 시행령에 상향입법할 것을 권고함. 한편, 판매자의 의무 내용 및 수준 등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 필요성이 인정되어 일몰연장 동의

### (8) 국기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하도급법·상생법 위반 업체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강화**

- 하도급법·상생법 위반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및 과징금 부과율을 현행 3개월 및 4.5%에서 6개월 및 9%로 강화

**심사결과**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및 과징금 부과율이 하도급법·상생법 준수를 담보하기에 미흡하여 이를 강화할 필요성 인정. 또한 중대 위반행위는 통상 6월~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며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예방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생태계 구축이라는 편익이 매우 크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9) 국기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소액 수의계약에 대한 대기업·중기업 참여배제 **신설**

-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계약을 5천만원 이하 소액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체결하도록 함
- 다만, ①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여성기업·장애인기업과 계약체결하는 경우 ③ 공급자가 2인 미만인 경우 등은 대·중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판로지원법과 법체계를 일치시키고 통일적·체계적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지원 확대를 위해 필요성 인정. 또한 판로지원법과의 관계, 구체적 타당성,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및 경제적 형평성 강화라는 편익, 대·중기업 등 피규제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성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지역의무공동도급 **강화**

– 지역의무공동도급 일몰기한을 '17.12.31까지 2년간 연장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청사 신축사업에 대하여는 해당지역업체의 지분을 최소 20%~40% 포함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적용

심사결과

대형국책건설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 참여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규모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역별 건설업체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필요성 인정. 또한 동 규제는 기존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지역건설업체에게만 선별적으로 수혜가 돌아가는 제도로서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2. 공정거래위원회

◎ 집필자 김세욱 사무관 ☎ 044-200-2425 ✉ ksm123@pmo.go.kr

### 가.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5년도에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등 4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강화 등 총 9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개정안	예비심사 (2015.06.2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2015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	경제분과위원회 (2015.10.16)	-	일몰규제 1건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26)	원안의결 5	신설 2, 강화 3 (비중요 5)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b>계</b>	-	<b>원안의결 9</b>	<b>신설 6, 강화 3 (비중요 9)</b>



## 나.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소비자안전 분야(여객운송, 시설) 항목추가 **신설**

– 중요정보 제공 표시대상 및 제공 정보 추가

추가대상		제공정보
여객 운송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운송업</li> <li>○ 시외버스·전세버스운 송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년월, 최근 정비점검 일자 및 결과</li> <li>○ 대수리·대개조 승인일자 및 내용,</li> <li>○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배상기준</li> </ul>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텔업, 휴양콘도 미니업업,</li> <li>○ 체육시설법에 따른 전문체육시설,</li> <li>○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서 및 최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일자·결과</li> <li>○ 시트법에 따른 최근 점검일자 및 결과</li> <li>○ 소관법률에 의한 최근 안전관련 점검일자 및 결과</li> </ul>

**심사결과** 현행 여객운송수단 또는 대형시설물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가 안전한 여객운송수단 및 시설물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 정보에 대한 공개 필요성 인정. 또한, 안전점검은 현행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부처에서 실시하여 사업자들은 공개대상 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게시물을 통해 공개할 수 있어 정보 공개에 따른 사업자 부담이 크지 않아 규제의 적정성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리서비스 업자 의무 **신설**

– A/S과정에서 재생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① 재생부품을 사용한다는 사실 및 ② 새부품 – 재생부품 사용시 적용되는 가격 공개

**심사결과** A/S과정에서 재생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는 경우에도 새부품과 동일한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부품사용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여,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을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 또한, 사업자는 사업장 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으로써 이행의무를 다할 수 있는 바,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보이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2)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신설 1)

### 심사내용 심판정 질서유지 조항정비 **신설**

-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금지
  - 심판정내 금지된 행위유형에 ‘녹음’을 명시적으로 적시

**심사결과**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교환 및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 심판정에 참석한 사업자의 영업비밀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을 금지할 필요. 또한 타법령인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과 ‘법원조직법’ 관련 조항의 해석에서도 녹음을 금지하고 있어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3) 2015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 (일몰규제 1건)

구분	계	규제 폐지	규제개선			규제존속		
			일몰 연장	일몰 해제	일몰 변경	일몰 연장	일몰 해제	일몰 변경
공정위	1	0	0	0	0	0	1	0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고시))

**규제내용**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 등에 대해 원산지, 제조일, A/S책임자 등 필수적 정보와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을 사전에 제공토록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

**심사결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서비스의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정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는 점에서 규제유지 필요성 인정되고, 관련 법령(일반상거래)에서 이미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통신판매업자에게 정보제공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가 적정함. 한편, 동 규제는 정책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몰 해제



####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강화 3)

**심사내용** 각종 공시(공고)·신고 절차 및 방법 **신설**

- 회계감사보고서 공시방법 : 3년간 본점 비치 및 홈페이지 게시
- 지위승계 및 이전계약시 내용 공고방법
  - 일간신문(1회 이상) 및 홈페이지(2주 이상, 전체화면 1/6이상 크기의 팝업창)
- 이전계약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
  - 이전계약서, 회원명단, 선수금 총액 증명 서류, 자산목록 및 가액

**심사결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의 부도·폐업 및 합병·계약인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위승계·이전계약 공고 및 회계감사 공시 등에 관하여 할부거래법이 개정(15.7월)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상위법에서 위임한 공시·공고·신고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성 인정. 또한 동 규제는 유사 법령상 규제수준, 비용대비 편익, 규제목적 등을 고려시 적정성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소비자에 대한 통지 및 설명방법 **신설**

- (변경통지대상) 할부거래업체의 상호·주소·전화번호, 지급의무자 및 할부거래약관 변경시 소비자에게 통지
- (통지방법) 할부거래업체가 등록사항 변경이나 휴업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통지할 때,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
- (설명방법) 할부거래업체가 이전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에게 전화, 휴대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설명

**심사결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의 등록사항변경·업무정지 및 이전계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에 대한 통지와 설명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할부거래법이 개정(15.7월)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상위법에서 위임한 소비자에 대한 설명 및 통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성 인정. 또한, 각 규제는 유사 법령상 규제수준, 비용대비 편익, 규제목적 등을 고려시 적정성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시 첨부 서류 **강화**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추가
  - 주주명부
  - 자본금 예치된 통장 거래내역(법인의 등기변경일 전후 7일간)
  - 임원 및 지배주주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심사결과**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임원 등의 업무상 배임·횡령 사건 등이 계속 발생 발생함에 따라, 상조업 등록요건 및 결격사유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할부거래법이 개정(15.7월)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상조업 등록·변경시 등록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항목을 추가할 필요성 인정. 또한, 각 서류는 등록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며 유사법령과 비교시 적정성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 변경신고시 첨부 서류 **강화**

- 선불식 할부거래업 변경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추가
  - 주주명부
  - 자본금 예치된 통장 거래내역(법인의 등기변경일 전후 7일간)
  - 임원 및 지배주주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심사결과**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임원 등의 업무상 배임·횡령 사건 등이 계속 발생 발생함에 따라, 상조업 등록요건 및 결격사유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할부거래법이 개정(15.7월)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상조업 등록·변경시 등록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항목을 추가할 필요성 인정. 또한, 각 서류는 등록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며 유사법령과 비교시 적정성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과태료부과기준 **강화**

**<과태료 상한이 1,000만원인 새로운 위반행위 유형>**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200	500	1,000
○ 지위승계 또는 이전계약 시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고한 경우	200	500	1,000
○ 이전계약 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00	500	1,000
○ 이전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00	500	1,000
○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전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00	500	1,000
○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또는 이전계약) 시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00	500	1,000
○ 등록변경 사항 또는 휴업·영업정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200	500	1,000

**<과태료 상한이 3,000만원인 새로운 위반행위 유형>**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00	1,500	3,000
○ 시·도지사에게 지위승계 또는 이전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00	1,500	3,000
○ 이전계약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받은 경우	600	1,500	3,000
○ 상조업자의 모집인이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전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600	1,500	3,000
○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또는 이전계약) 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거나 확인을 받은 경우	600	1,500	3,000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서(이전계약도 포함)를 발급한 경우	600	1,500	3,000
○ 상조업체가 예치금을 입금하거나 예치금의 반환을 요청하면서 선수금의 증가 또는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	1,500	3,000

**<과태료 상한이 5,000만원인 새로운 위반행위 유형>**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받은 상조업체가 시·도지사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1,000	2,500	5,000

**심사결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업체의 각종 의무신설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할부거래법이 개정(15.7월)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상위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할 필요.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유사법령, 동일법령 내 타 위반행위와 비교시 유사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수준 대비 적정성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여행상품 판매시 통신판매업자가 제공해야 할 정보 **신설**

- 여행상품 판매시, 통신판매업자가 제공해야 할 정보 추가
  - 소비자가 부담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하여 가격 표시
  - 선택관광 경비 및 미선택시 제공되는 대체일정 표시
  - 가이드 팁은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

**심사결과** 비대면거래라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정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구체적인 상품정보를 제공할 필요성 인정. 또한, 필수경비, 선택관광 및 대체일정 등은 여행상품 구매를 위해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가격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로서, 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규제가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3. 관세청

◎ **집필자** 김세욱 사무관 ☎ 044-200-2425 ✉ ksm123@pmo.go.kr

#### 가.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5년도에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등 3개의 법령에 대해 강화 등 총 3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관세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1)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5.01.0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5.02.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5.02.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b>계</b>	-	<b>원안의결 3</b>	<b>신설 1, 강화 2 (비중요 3)</b>

#### 나.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원산지표시 원칙 **신설**

-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8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물품의 형태나 크기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적용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표시

- |                                      |   |
|--------------------------------------|---|
| ▲ 50cm <sup>2</sup> 미만 : 8포인트 이상     | ▲ 50cm <sup>2</sup> ~3,000cm <sup>2</sup> 미만 : 12포인트 이상 |
| ▲ 3,000cm <sup>2</sup> 이상 : 20포인트 이상 |   |

**심사결과**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소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사항이며 국내 생산품이 수입물품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 필요. 또한, 既 생산 포장지, 포장박스 등의 사용을 고려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적용기간을 1년 유예함으로써 수입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였는 바, 규제의 적정성 인정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2)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유통이력 관리 대상물품 기간연장 및 신규지정 **강화**

-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 대상물품 기간연장 및 신규지정 등
- 기간 연장 : 7개 품목
  - 황기, 지황, 천궁 : [지정기간] 2015.3.1 ~ 2016.4.30 (1년)
  - 구기자, 당귀 : [지정기간] 2015.2.23 ~ 2016.4.30 (1년)
  - 산수유, 오미자 : [지정기간] 2015.5.1 ~ 2016.4.30 (1년)
- 신규 지정 : 1개 품목
  - 식용 천일염 : [지정기간] 2015.2.23 ~ 2015.7.31 (5개월\*)

\* 비식용 천일염과 지정 만료기간('12.7.31~'15.7.31)을 일치시켜 지정기간 설정

**심사결과** 금번에 연장(추가)되는 한약재(7개)·식용 천일염 등 수입식품은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되거나 미표시 판매됨으로써 유통질서 문란과 부당이득 취득 사례가 빈번한 것들로서 유통의 투명성 및 국민건강·식탁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의 필요성 인정. 또한, 세계 각국에서도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수입식품에 대해 유통이력관리제도가 운영중이며 '유통이력 관리 포털시스템'이 기 구축('08.10)·활용 중으로, 정보제공(유통이력신고)에 따른 피규제자(수입업체·중간유통업체)의 직접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3)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특정물품의 통관지 세관 제한(제106조) 대상품목 추가 **강화**

- (품목) 쌀(HS 1006.20호(현미), 30호(정미) 해당물품)
- (통관지 세관) 부산, 인천, 평택, 군산, 목포, 동해, 울산, 광양, 마산세관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고세율(15.1.1, 513%)로 수입 개방되는 쌀에 대해 전국 주요 항만 9개 세관을 통관지세관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하게 하는 것으로 수입쌀의 높은 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저가신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쌀농가 보호를 위한 관리 강화 필요성 인정. 한편, 현재 MMA(최소시장접근)방식으로 쌀이 수입되는 전국 9개 주요 항만을 통관지세관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하게 한 것은 해당 항만인력의 전문성 활용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현재도 쌀수입 통관이 대부분 이번에 지정된 9개 세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쌀 수입업자입장에서 새로운 부담으로 보기 어려워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4. 금융위

◎ 집필자 문유진 사무관 ☎ 044-200-2414 ✉ yujin700@pmo.go.kr

### 가.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5년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24개의 법령에 대해 총 60개의 신설·강화규제에 대해 심사
- 심사대상 60건 중 개선권고 7, 원안의결 53건임

금융위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1.2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경제분과위 (2015.02.27)	개선권고 1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3 (중요 1, 비중요 3)
(3)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본위원회 (2015.03.13)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본위원회 (2015.03.13)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5)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3.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15.04.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본위원회 (2015.04.10)	개선권고 2 원안의결 1	강화 3 (중요 2, 비중요 1)
(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5.05.0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예비심사 (2015.05.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6.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예비심사 (2015.06.16)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2)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6.26)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1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5.07.03)	원안의결 2	강화 2 (중요 1, 비중요 1)
(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예비심사 (2015.07.03)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 6)
(1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5.09.11)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18) 증권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경제분과위 (2015.10.08)	원안의결 6	신설 6 (중요 1, 비중요 5)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0) 2015년 기한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경제분과위 (2015.10.16)	-	일몰규제 10건
(21)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경제분과위 (2015.11.13)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중요 3)
(2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경제분과위 (2015.11.13)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중요 3)
(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고시 등 개정안	경제분과위 (2015.12.1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4 (중요 1, 비중요 4)
(25)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b>계</b>	-	<b>개선권고 7 원안의결 53</b>	<b>신설 41, 강화 19 (중요 15, 비중요 45)</b>

## 나.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전자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보안점검의 날 설정 **신설**

-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3.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제 미흡 문제를 해소하고자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안점검의 날' 설정,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책임 하에 매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보안 계획을 최고경영자(CEO)에게 보고

**심사결과** 금융회사가 정보보호의 날을 지정하여 보안의식 고취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인정되고, 자율적 정보관리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바, 기업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비중요 원안동의

**심사내용** 외부주문개발 장소 및 시스템의 분리 **신설**

- 정보유출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외부주문 통제소홀 해소, 즉 정보처리시스템 관련 외주 개발업무의 개발장소를 내부 업무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정보처리 시스템 관련 외주 개발업무의 전산설비는 내부업무용 설비와 분리하여 운영

**심사결과** 외주업체 종사자의 개발장소를 내부 업무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개인정보에의 접근성을 차단할 필요가 인정되고, 내부 업무장소(사무실 기준)에 외주업체 직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실현 가능한바, 규제준수 비용이 낮아 규제적정성도 충족되는 바 비중요 원안동의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신설 1, 강화 3)

**심사내용** 최저자기자본 미달시 인가·등록 취소 유예기간 단축 **강화**

- 최저자기자본 미달시 인가·등록 취소유예기간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예시)	최저자기자본 미달시기	유예기간
현행	14년 12월	15년 12월까지
개정	14년 12월	15년 6월까지



**심사결과** 최저 자기자본이 인가·등록 유지요건에 미달하여도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은, 일시적 요인에 의한 최저자기자본 미달시에도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안정적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지속하도록 유도하기 위함

- 다만,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최장 2년 가까이\* 최저자기자본을 미달하여 영위할 수 있어, 금융투자업자의 과도한 자산 운용 등으로 투자자 피해 및 거래의 불안정성 등을 초래할 수 있는바, 유예기간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 인정되고, 이해관계자 의견 없으며, 제도수용에 수반되는 비용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비중요 원안동의

\* 특정 회계연도 초(1월)에 자기자본이 미달하더라도, 다음 회계연도 말(12월)까지 유예(약 2년) 가능

**심사내용** 상환사채권 상장법인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에 포함 **강화**

- ‘상환사채’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해당 상장법인을 사업보고서를 제출 대상에 포함

**심사결과**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전환사채권·교환사채권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상법 개정에 따른 입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상환사채’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교환사채와 유사한 ‘상환사채’를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경우에도 사업보고서를 제출·공시가 타당함. 주권상장법인 등은 이미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고 있어, 추가로 상환사채를 발행·상장하더라도 추가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다른 종류 증권을 발행하는 회사와의 규제 형평성 및 준수비용 등을 감안할 때, 적정·타당한 것으로 보여 비중요 규제 검토

**심사내용** 부실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평가업무 제한기간 연장 **강화**

- 외부평가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 점을 감안하여 외부평가기관이 현저히 부실한 평가를 한 경우 평가업무 제한의 최고한도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심사결과** 외부 평가기관의 합병가액 판단 재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커진다 할 수 있으므로, 부실한 평가 및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음. 다만, ‘현저히 부실한 평가에 대한 해석과 판단이 모호한 바, 구체적인 예시를 마련할 것을 부대권고하고, 해당 규제가 평가기관의 행태변화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검토 일몰(5년) 설정할 것을 개선권고함

**심사내용** 외국인 투자등록 제한 **신설**

- 실제 외국인이 아닌, ‘검은머리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투자등록을 거부하고, 사후적으로 동 내용이 확인될 경우 등록취소 및 효력정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내국인이 해외에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법인 등의 명의로 외국인 투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결과** 위장 외국인 기관 투자자는 실제 경영활동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내국인에 대한 규제회피 및 위법행위 수단으로 악용.페이퍼컴퍼니는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불공정 거래를 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가가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상이한 규제수준을 악용하는바,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 인정되며, 재무제표, 매출현황 등 서류상 지표 확인으로 실질 영업활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규제이행 비용이 높지 않음. 이해관계자 의견 없으며,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증권 거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검토

(3)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및 (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출연료 가감금액 신설 **신설**

- 금융회사의 신용·기술보증기금 출연금액에 ‘은행 혁신성 평가’실적에 따른 가감금액을 신설하여, 출연금액 차등적용

〈금융회사 신기보 출연 구조〉

현행	개정안	
대출잔액 × 출연요율	대출잔액 × 출연요율 (현행)	혁신성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금액 (추가)



- 가감금액은 은행을 1, 2군으로 나누어, '각 群의 평균출연금'에 '순위에 따른 가감률'을 적용하여 산정
- 출연 가감금액 = (출연 기준월 간은 군의 평균출연금) × (은행 혁신성 평가에 따른 가감율)

	은행 혁신성 평가에 따른 가감율				
	상위 1위	상위 2위	하위 3위	하위 2위	하위 1위
1군	-15%	-5%	+4%	+6%	+10%
2군	-7%	-3%	+2%	+3%	+5%

**심사결과**

그간 은행은 기술이나 아이디어보다 담보나 보증 위주로 금융 지원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바, 기술금융 확산을 위해 신·기보 출연금액을 차등적용할 필요성은 인정. 다만, 평가대상 기간 중에 평가 지표 및 활용방안이 결정되어, 은행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평가지표에 따른 은행의 기술금융 확대 노력을 반영하여 출연금 가감액 부과규정 적용시기를 늦출 것과, 일부 은행의 부담수준이 과도하지 않도록 가감 비율을 조정하고, 재검토일몰(2년)을 설정하여, 각 은행별 부담수준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개선권고함

**(5)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겸직금지 의무화 기관범위 설정 **신설**

-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겸직을 할 수 없도록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2837호, '14.10.15 공포, '15.4.16 시행) 개정됨에 따라, 이에,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인 대형 금융회사만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 적용

**심사결과**

개정안의 규제대상 선정 기준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각 업권별 금융회사 대비 CISO 겸직금지 규제를 적용받는 회사는 은행을 제외하고는 일부(42개사, 35.9%)에 불과

〈금융업권별 규제대상〉

구분	전체	은행	카드사	보험	증권
총 개수	117	18	8	42	49
겸직금지 적용회사	42	16	4	13	9
비중	35.9%	89%	50%	30.9%	18.4%

- 또한 피규제자 42개사 중 절반인 21개사는 이미 겸직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 개정안으로 인한 추가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정보보호 강화라는 입법취지, 이해관계자 의견, 금융회사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바, 비중요 원안동의

(6)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 강화

- 보험회사등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부과하는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을 700만원으로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인 보험업법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이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금지행위는 당초 시행령에 있는 사항이 상위법으로 상향 입법 된 것으로 추가적인 부담은 없으며, 보험업법상 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과 비교하여 과태료 수준을 700만원으로 정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보임. 이해관계자 의견 없으며, 처분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을 정한 것에 불과한 바, 비중요 원안동의

(7)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 설정기준 강화 강화

-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공제비율)을 20% 미만으로 설정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 자기부담금을 20% 이상으로 설정시 요양급여 제외비용 확인의무 없음



**심사결과** 자부담 비중이 높은 상품이 낮은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며, 인상 가능성도 낮을 것이라는 측면은 인정되나, 전체 실손보험가입자 중 99%이상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기존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신규가입자의 경우에도 의료서비스 이용시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보험료 절감은 상쇄되고, 각 상품군별 손해를 추이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도 보험료가 안정화 될 것이라는 확신도 곤란. 한편, 금번 개정의 배경이 된 모럴해저드로 인한 의료과잉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나뉘고 있어 일반화는 곤란하며, 의료과잉이 근본적 문제라고 한다면 인위적인 자부담 인상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제한보다는 비급여 대상여부 확인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따라서, 청구된 보험금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후에 개정안을 시행할 것을 개선권고함

**심사내용**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강화**

- 실손의료보험 순보험요율\*의 변경폭이 참조순보험요율\*\* 변경폭보다 더 높게 변경되는 경우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규정. 다만 순보험요율의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의 50%이상을 해당연도에 인하하여 적용하는 경우 제외하고, 보험료의 인하폭이 5%를 넘으면 인하폭 5%만 적용하도록 규정

\* 보험금의 지급에 총당되는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제176조)로서, 사업비 등 부가보험요율을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에 총당되는 부분

\*\*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한 보험종목별·위험별특성에 따른 위험률

(예시)	순보험요율		참조순보험요율		인하대상		보험료 인상폭
A사	4%	<	7%	⇒	×	⇒	4%
B사	8%	>	7%	⇒	○ 순보험료(8%)×50% = 4%	⇒	4% (순보험요율8%- 인하대상 4%)
C사	12%	>	7%	⇒	○ 순보험료(12%)×50% = 6% → 5%만 인하	⇒	7% (순보험요율12%- 인하대상 5%)

※ 보험료 10,000원, 순보험요율 12%, 참조순보험요율 7%인 경우 최종 보험료는 10,700원

**심사결과** 해당 규제는 보험료 인상의 책임을 보험회사에게도 일정부분 지우고자 하는 것으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보험사의 지구노력을 유도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고 인상 제한율은 개정안대로 하되, 평균치를 벗어나는 정도에 비례하여 보험료 인상 제한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참조순보험료를 초과비율에 따라 구간을 구분하여, 구간별로 차등화된 인상 제한율을 정하도록 개선권고함

**심사내용** 보험계약 설명의무 강화 및 보험상품 공시, 비교공시 강화 **강화**

-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하여 “65세 시점의 예상보험료 및 보험료의 지속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보험상품 공시내용에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보험가격 지수를 공시”하도록 함

$$* \text{보험가격지수} = \text{보험료} / (\text{참조순보험료} + \text{업계 평균사업비})$$

**심사결과** 설명의무 강화와 관련하여, 실손의료보험은 상품의 특성상 매년 갱신됨에 따라 보장내용은 동일하나 보험료는 상이해질 가능성 있음. 65세 이상 고연령이 될 경우 구체적인 보험료 부담수준과 지속 납입해야 함을 가입시점에 반드시 설명토록 하여, 가입자가 고연령이 될 경우 보험료가 현재 수준보다 높아질 수 있으며, 계속 납입해야 함을 인지한 후에 보험을 계약함으로써, 불완전 판매가 감소되고, 모집질서 건전화를 통해 소비자 불만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공시의무 강화와 관련하여, 보험료를 갱신할 때마다 보험회사별 보험료와 업계 평균 보험료와의 비교지수를 직접 안내토록 하여, 해당 상품 보험료의 상대적 수준을 쉽고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보험소비자가 부족한 정보에 기인하여 손실을 보거나, 분쟁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이 인정되고,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음을 감안하여, 비중요 원안동의

## (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신설 2)

**심사내용**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에 대한 제재수단 변경 **신설**

-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에 응하지 않는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현행 화재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특수건물 소유자가 의무보험에 미가입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으나, 미가입율 6.5%(2014년 기준)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부과한 판결이 없어 실효성이 낮으므로 특약부화재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제재를 벌금형(500만원)에서 과태료(1,000만원)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점검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권은 특수건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사고예방 및 적절한 보험료 산출 등을 위해 도입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규제인 것으로 인정되어 비중요 원안동의

**심사내용**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의무보험 담보위험 사고유형 확대 **신설**

- 특수건물 소유자가 「화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특약부화재보험의 담보사고 유형에 화재 외에 폭발, 붕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를 포함시켜, 보험담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제3자의 신체상 손해 이외에 재물손해를 추가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신체 손해' → '신체 및 재물 손해'로 확대

**〈의무보험 확대〉**

사고유형	신체손해	재산손해
화재	기존 의무보험 보장	배상범위 확대
폭발·붕괴	배상범위 확대	배상범위 확대

- 특수건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보험가입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함

**심사결과** 화재보상보험의 손해배상 범위를 재물손해까지 확대하는 것은 특수건물 화재 발생에 따른 재물손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배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여타 안전사고 관련 법률도 재해사고 발생시 재물손해를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과도하지 않음. 그러나 폭발·붕괴는 사고발생률 등이 현저하게 낮은 데다 이들을 의무보험 범위에 포함 시 의무보험료의 상당한 증가 등 과도한 규제비용이 발생될 수 있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해”는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폭발·붕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해”는 의무보험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개선권고함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 과징금 = 기준금액(부당이득 금액 또는 손실회피 금액) × 부과비율 및 감안사유에 따라 비율 산정  
(⇒ 0.5~1.5)

※ 부과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심사결과** 상위법은 내부자 거래, 주가조작, 부정거래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시장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 이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인 부과비율은 자본시장법령상 부과체계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상·하향 조정기준을 정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고(기준금액의 0.5배~1.5배) 조정기준도 법에서 정한 최고 한도(5억 초과시 1.5배)를 감안하여,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을 두었는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설정하였으므로 비중요 원안동의

### (10)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방법 **신설**

-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전달 및 이행함에 있어 지시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표준업무처리 인프라를 사용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퇴직연금사업자들이 퇴직연금 업무처리를 공통의 표준업무처리 인프라를 통해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권역간 상품교환 등을 활발하게 하여 연금관리 서비스의 질적 제고 유도할 필요성 인정됨. 표준화된 업무처리 인프라 마련으로 각 기관이 유지하는 전산구축 비용 및 권역간 상품교환을 위한 복수의 전산기관 사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기존의 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펀드넷'을 바탕으로 자체개발로 구축되어 비용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중요 원안동의



##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신설 5)

### 심사내용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 등록기준 및 가맹점모집인 등록요건 **신설**

#### - VAN사의 등록요건\* 및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 규정

\* △ 3년이상 경력 임직원 10명 이상 확보, △ 전산기기 보유, △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장치 구비, △ 신용카드부가통신업의 원활한 영위에 필요한 프로그램 보유, △ 전산자료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방안 확보 및 정보보호시스템 등 감시운영체제 구축 △ 전산실 등의 구조 및 내장, 설비 등의 안전성 확보하고 적절한 보안대책 수립

\*\* △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 등록사항 변경시 변경등록, △ 신용카드 가맹점의 영업여부 및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여부 확인

**심사결과** VAN사의 등록요건 규정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카드거래 승인 중계 과정을 담당하는 VAN사의 업태 특징상 백업장치 및 프로그램 보유는 추가적으로 갖춰야 할 사항이 아니며, 전자거래금융업법령에 따른 전자금융업 등록기준과 ‘인력요건’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함. 개정안은 3년이상 경력자를 10명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VAN사는 일반 전자금융업자와 달리 거래승인 대행·매입·정산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함을 감안할 때 타당하며 현재 영위 중인 VAN사의 경우 이미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추가적비용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요건을 살펴보면, 등록요건으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만을 요건으로 두어 사실상 모든 가맹점모집인이 이를 충족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가맹점의 영업여부 및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바, 현재에도 전표 전달 및 영수증 공급이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바, 해당 사항을 확인하는데 드는 비용은 미미함. 등록요건의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기 영위중인 사업자 모두가 이를 충족할 수 있는바, 비중요 원인등의

\* (전자금융업자) 관련 업무 종사 경력 2년 이상 임직원 5명 이상 / (VAN사) 정보기술부문 전공자 또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3년 이상 임직원 10명 이상

### 심사내용 결제대행업체 및 가맹점모집인의 준수사항 **신설**

-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으로 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조치의무,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이용시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별도 동의 받도록 규정
- 가맹점모집인 준수사항으로 가맹점 약관 설명, 영업장 방문을 통한 영업여부 확인, 등록 단말기 설치 의무, 신용정보 보호 조치 의무, 리베이트 제공 금지

**심사결과** 신용정보 보호 조치 및 제3자 정보제공·이용시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신용정보법상 결제대행업체가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서 지켜야 하는 신용정보법상 의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어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결제대행업체의 신뢰성 제고 및 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규제 필요성이 있음.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및 제3자 위탁금지는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가맹점 유치를 위한 리베이트 경쟁은 불합리한 거래구조를 야기하며, 수수료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현 규정 수준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비중요 원안동의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법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행위\*에 대하여 세부적 부과기준을 마련

\* 가맹점모집인의 금융당국 조사 거부, 가맹점의 등록단말기 미사용,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미실시, 부가통신사업자가 금감원의 자료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의견진술 요구 거부한 경우

**심사결과** ‘규제목적’이 ‘건전성·소비자보호’인 경우 ‘감독협조’ 보다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높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인에 비해 부담 능력이 낮은 개인, 예상 발생빈도 등을 감안, 과태료 법정 상한금액(5백만원)에 가중치를 곱하여 ‘과태료 기준금액’을 산정하였는바, 구체적 타당성 및 형평성을 갖춘. 이해관계자 의견 없으며, 이행강제력 확보를 위한 제재수단으로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부담은 크지 않아 비중요 원안동의

**심사내용** 신용카드 단말기 기술기준 **신설**

- 신용카드 단말기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기준 규정

\* △ 신용카드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안전성 및 신뢰성  
△ 신용카드 정보 등 중요 데이터에 대한 정보보호 가능성  
△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이 정하는 기술기준

**심사결과** 거래 안전성 및 신뢰성, 정보보호 가능성 등의 원칙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있으며, 세부기준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정하여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술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신기술 도입 및 국제 표준의 변화 등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부담 수준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비중요 원안동의



**심사내용** 정보기술부분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한 기준 **신설**

– 여신전문사업자 및 부가통신업자가 지켜야할 정보기술부분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 \* 전산자료 보호대책 :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 부여, 전산자료 보유현황 관리 및 책임자 지정·운영, 사용자 업무별로 전산자료 접근권한 통제 등
- \*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정기 유지보수 실시, 장애상황기록부 작성·보관,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정보처리시스템 책임자 지정·운영 등
- \* 해킹 등 방지대책: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및 운영, 내부 업무용 시스템의 망분리, 개발·운영 목적 단말기는 물리적으로 분리, 정보보호시스템 책임자 지정 등

**심사결과** 전자금융감독규정 중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일반적3개 조항\*만을 인용한 것으로 규제부담을 최소화 한 측면이 인정되고, 신용카드 거래가 널리 보편화되어 결제 안전성 및 카드번호 등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됨을 감안할 때, 해당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므로 비중요 원안동의

- \* 전산자료 보호, 정보처리시스템 보호, 해킹 등 방지대책

**(12)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보험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소액대출 규정화 **신설**

–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임직원에게 대출하는 경우 대출조건은 일반고객과 동일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보험료로 조성된 보험회사의 자산을 재원으로, 고객과 임직원에게 차등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자산을 운용할 때, 수익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자산을 자사 임직원에게 저리로 대출하여 자산운용의 수익률이 낮아져 또다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측면이 있음. 임직원에 대한 대출잔액 규모가 상당하고 소비자의 보험료로 조성된 책임준비금의 특성을 감안할 때, 해당 규제는 적정하므로 비중요 원안동의

- \* 보험업법 제104조(자산운용의 원칙) ①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심사내용** 경영실태평가제도 유예기간 조정 **신설**

- 보험회사의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은 영업개시 후 5년, 보험회사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평가를 유예

**심사결과** 해외점포와 국내 보험회사를 구분하여 각각 기간을 달리 정하여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 개정취지에 부합하고, 타 업권에서도 해외점포에 대해서만 평가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없음을 감안할 때, 보험업권에만 과도하게 적용되는 규제로 보이지 않아 비중요 원안동의

〈금융권별 신설사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 유예기간 비교〉

구 분	은행	증권	보험
국내지점	없음	없음	2년
해외점포	3년	5년	5년

**심사내용** 생명보험의 사업방법서 작성기준 개선 **신설**

- 최적해지율을 사용한 순수보장성상품에 한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의 판매를 허용하면서, 기존 상품(해약환급금 있는 상품)을 함께 판매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약환급금이 있는 기존상품과 함께 판매하여 계약자가 비교·선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새로운 유형의 보험상품 도입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존의 상품을 병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효력상실형 일몰(3년)을 설정하여 안정화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수준의 규제라 보이지 않는 바 비중요 원안동의

(1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소유시 승인 **강화**

-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종속회사 등 도관체를 통해 간접 소유한 경우\*에도 금융위에 주식소유에 대해 승인신청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

\* 금융기관의 종속회사 등이 소유한 '다른 회사 주식'을 동일계열 금융기관 소유분으로 의제

**심사결과** 현행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미비점을 이용한 탈법행위 및 이로 인한 금융사고,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고 여타 법률에서도 우회지배를 규제하고 있는 점을 종합



고려할 때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비금융회사 지분 간접소유의 경우 금융위에 사전승인 신청해야 하는 지분율이 현행 직접 소유 관련 지분율과 동일하므로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음. 따라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간접적으로 종속회사 등을 통해 산업자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주식소유 사전승인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원안동의

**심사내용** 초과소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및 제재부과 **강화**

- 금융기관이 금융위의 사전승인 없이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확대한 경우 동 지분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심사결과**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종속회사 등을 통해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분을 법에서 정한 비율 이상 소유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청의 처분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개정안은 법률 시행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칙을 통해 과거 법률 개정시와 같은 내용의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적정한 규제 수준으로 판단되는 바, 비중요 원안동의함

\* 기존에 비금융회사를 우회지배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보유지분에 대해 2년 유예 후 의결권을 제한함

**(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신설 6)**

**심사내용** 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 관리책임 강화 **신설**

-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개선) 신용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와 암호화 등 보안조치를 강화(영 제16조, 규정 제20조 별표3)
- (신용정보 보유관리강화) 금융거래 종료 후 보유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금융거래 종료 후로 단계별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

1단계(상거래 종료시)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위한 필수정보 :</li> <li>○ 별도 분리 관리하는 등으로 접근통제 강화</li> <li>○ 선택정보 : 거래종료 후 삭제 (영§17의2①②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정보도 5년 이내 삭제* (법§20의2②)</li> </ul>

\* 다만, 법령의무이행, 휴면예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삭제하지 않고 보관가능

- (기록보존 의무강화) 신용정보제공·이용·폐기시 등 기록\*을 3년간 보존토록 의무화(영 제16조의2)

\* 제공·이용·폐기 이유 및 근거, 보유·이용기간, 담당자 등에 관한 기록

**심사결과** 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와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상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정보는 정보보유에 따른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삭제하고, 정보 보유 기간 중에는 분리보관 및 접근제한을 실시할 필요. 또한 신용정보의 세부 처리내역(제3자 제공내역, 폐기근거 등)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3년간은 의무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어 비중요 원안동의

**심사내용** 임원으로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선임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 **신설**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일정 규모(총자산 2조원, 상시종업원 수 300인) 이상의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신용조회회사 제외), 모든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임원으로 임명하도록 의무화

\* 신용정보를 유출한 사례가 신용조회회사에서 '13년 발생한 데 대한 대응으로 모든 신용조회회사는 임원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두도록 함

\*\* 현재 6개 기관(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보험개발원)이며 2016.3월까지 1개 기관으로 통합할 예정

**심사결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 보호업무 관련 회사 내부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임원이 동 업무를 전담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존의 준법감시인이 신용정보관리·보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신용정보회사등의 추가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된 점을 고려해 비중요 원안동의

**심사내용** 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 위탁처리절차 강화 **신설**

-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할 경우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수탁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연 1회 의무화하고 위탁계약에 반영

**심사결과**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를 대량으로 유출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용정보를 위탁처리할 경우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다, 이미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정보보호조치 및 수탁자 교육을 명문화한 것이므로 비중요로 판단



**심사내용** 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책임 강화 **신설**

- (신용정보조회시스템 구축) 신용정보 주체가 최근 3년간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 신용정보 이용·제공시 등 조회시스템에 7일 이내 등록(규정 제39조의2)

-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신용정보가 누설될 경우 지체 없이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 다만, 1만명 이상의 신용정보가 누설될 경우 7일 이상 홈페이지, 점포 등을 통한 공시도 해야 함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화에 따른 가입기준\*을 마련(영 제35조의9, 규정 제43조의6)

\*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이 신용정보 유출을 함께 보장할 경우 가입기준 금액을 차감하여 중복 가입 부담을 완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

기관별 종류	가입기준
은행(지방은행·외은지점 제외), 지주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등	20억원
지방은행, 외은지점, 저축은행, 보험회사, 금투업자, 신탁 등	10억원
기타 기관	5억원

**심사결과** 신용정보회사등의 기존 신용정보 처리 및 제공내역 보존기간(3년)에 맞추어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이용내역 조회대상을 최근 3년간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정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 누설 시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1만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되는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게시 등도 추가적으로 취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신용거래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하여 적립금을 차등적으로 설정(20억/10억/5억)하고, 전자금융거래법상 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중복 가입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한 바 비중요 원안동의

**심사내용** 과징금 부과 기준 **신설**

- 개정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등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과징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직전 3개년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명시

**심사결과** 신용정보회사등의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 유출 시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원안동의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 신용정보법 및 시행령 위반행위별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의 성격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세분화
- 법상 최고 과태료 5,000만원 범위(법§52) 내에서, 기중·감경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 별로 과태료 기준을 설정

**심사결과** 위반행위의 책임 정도에 비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비례·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부과 기준금액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과태료 부과체계에 상응하게 설정하였으며,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른 조정기준을 정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갖춤(기준금액의 0.5~1.5배)에 따라 비중요 원안동의

**(1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법인·단체의 실제소유자에 관한 사항 **신설**

-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국제기준(FATF Recommendation)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준에 해당하는 실제소유자에 관해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외국인의 경우) 정보를 수집. 다만, 다만, 고객이 상장법인, 국가·지자체·공공단체 또는 금융회사인 경우는 실제소유자 확인 의무 면제

\* ① 100분의 25 이상의 지분(지배지분)을 소유한 자\* ② 지배지분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의심되거나 지배지분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 다른 수단을 통해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앞의 사항(①, 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



**심사결과** 불법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 방지 등을 위해 법인·단체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확인내용도 국제기준을 반영한 것인 데다 규제비용 최소화를 위해 시행령을 수정한 점 등을 감안해 비중요 원안동의

## (16)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부수업무 구분 계리 의무 **신설**

-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인 부수업무에 대해 구분계리를 실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구분계리 하지 않을 경우, 부수업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카드 이용고객에게 전가(수수료 상승 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카드사의 경영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수업무와 본업을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규정할 필요성 인정됨. 또한, 기존에 영위하던 부수업무\*는 구분계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최소 기준을 높게 설정하여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는바, 비중요 원안동의

\* 현재 카드매출액 대비 부수업무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A카드사의 자동차 장기렌탈 업무 (14말 기준, 3.01%)

##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시 개정안 (신설 5)

**심사내용** 클라우드펀딩증권 발행 관련 준수사항 규정화 **신설**

- 클라우드펀딩증권을 발행하려는 사업자는 금융위에 등록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법령상의 발행 관련 조치사항\*을 준수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증권을 발행해야 함

\* ① 발행인은 증권 발행 시 온라인투자중개업체의 홈페이지에 증권 모집 관련 정보(모집관련 정보, 발행인 정보, 사업계획서 등) 및, 증권 모집 후 모집결과 및 결산 후 재무제표 등 홈페이지에 게재, ②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등록요건·절차 및 내부통제사항 등 규정

**심사결과** 클라우드펀딩증권 발행인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사항은 투자자가 사업목적, 기업가치 및 자금조달 목적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원안동의

**심사내용** 크라우드펀딩의 성립요건 **신설**

-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을 원칙적으로 크라우드펀딩증권 발행인으로 설정하되 주권상장법인과 일부 업종\*은 발행인에서 제외. 다만, 비상장 중소기업의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되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프로젝트\*\*로 한정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등 제외),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캠핑업 및 베틀업 등

\*\*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총비용중 연구개발비용이 50%이상인 경우), 문화산업, 산업재산권의 창출·매입·활용 등

- 1기업은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모집 가능
- 모집예정금액의 80% 이상 청약을 받아야 펀드가 성립

**심사결과** 크라우드펀딩 제도 취지를 감안할 때 부동산업 등은 제한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당 연간 발행금액(7억원) 설정 및 크라우드펀딩 성공요건(계획 대비 80% 이상 모집)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해 비중요 원안동의

**심사내용** 투자자별 투자한도 제한 **신설**

- 투자자의 전문성, 위험감수능력 등을 감안하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등을 기준으로 투자한도를 차등화

**〈투자자별 크라우드펀딩증권 투자한도〉**

한도	동일기업당	연간 총 투자한도
일반투자자	200만원	500만원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 <sup>1)</sup>	1,000만원	2,000만원
전문투자자 <sup>2)</sup>	없음	없음

주 : 1) 개인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

법인 :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벤처기업투자조합 등

**심사결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증권에 대해 손실감내 능력을 감안하여 투자자별로 투자한도를 설정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원안동의



**심사내용** 발행인 및 대주주의 지분매각 제한 **신설**

- 크라우드펀딩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한 발행인이 제품 개발, 판매 촉진 등 자금조달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지분 매각으로 차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 발행 후 1년간 지분매각 금지
- 크라우드펀딩증권의 발행인 및 대주주는 증권 발행 후 1년 동안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매도를 금지. 다만 투자자보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사유\*를 구체화

\* ① 해당 발행인에 대한 매도, ② 전문투자자 등에 대한 매도, ③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로 인한 양도 등의 경우

**심사결과** 크라우드펀딩증권의 제도 취지 및 투자자 보호를 감안해 동 증권 발행인 및 대주주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매각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로 분류하고 원안동의

**심사내용** 청약증거금의 관리 **신설**

- 청약증거금은 온라인투자중개업자의 자금 유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안전하게 은행에게 보관토록 하는 한편, 동 중개업자의 합병 등의 경우 양도 허용

**심사결과** 크라우드펀딩 청약금의 관리 및 양도·반환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존 투자자예탁금에 관한 규제 내용을 원용한 것이므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로 분류하고 원안동의

**(18) 증권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신설 6)**

**심사내용** 상장증권 등에 대한 전자증권 의무 적용 **신설**

- 현재 예탁제도를 통해 전자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장증권, 투자신탁증권(펀드 가입시 발행되는 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증권예탁증권의 전자증권 전환을 의무화

**심사결과** 현재 상장주식 및 채권 등의 온라인 거래가 상당히 보편화된 상황이므로 증권 발행·유통과 관련한 과도한 비용 감소, 전자증권 제도 도입에 따른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탈세 문제 해소 및 횡령 등 사고 방지 효과를 고려할 때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전자증권법」(안)은 비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전자증권 전환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데다, 기존

실물증권 보유 주주의 권리 보호장치를 마련했으며 법 시행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한 점을 감안할 때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원안동의

**심사내용** 기 발행 주권의 관리 및 처리 등 **신설**

- 주권(株券)이 발행된 주식을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려는 발행인은 주주, 질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전자증권 전환을 통지 및 공고\*해야 함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을 통해 2회 이상 공고(예정)

- 동 증권 발행인은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주주 등의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해야 함

\* 현재 예탁결제원, 하나은행, 국민은행이 수행(명의개서 : 주식의 이전으로 주주가 교체되었을 때 그 취득자를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하는 사무, 발행회사가 직접 하기 번거로우므로 대행회사에 위임)

- 전자증권 의무화 비대상 증권은 발행인이 전자증권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예탁결제원에 통보

**심사결과** 실물발행 증권을 전자증권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주주 등에 대한 통지·공고 및 특별계좌 개설 등의 경과조치가 필요하므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원안동의

**심사내용**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회사 업무수행 **신설**

- 한국예탁결제원만 전자등록회사 업무\*를 수행

\* ① 증권 등의 등록에 관한 업무, ② 계좌(발행인계좌, 계좌관리회사고객계좌 및 계좌관리회사등자기계좌) 개설, 폐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③ 계좌부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④ 외국전자등록회사의 계좌 설정을 통한 증권등의 등록에 관한 업무, ⑤ 소유자명세의 작성에 관한 업무, ⑥ 등록증권등에 대한 권리행사 대행에 관한 업무, ⑦ 등록증권등의 발행 내역의 공개에 관한 업무 등

**심사결과** 한국예탁결제원이 현재 전자증권제도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점 및 전자증권제도의 안정성 및 공정성 확보 등을 감안해,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원안동의

**심사내용** 초과등록증권 관련 말소의무 및 손해배상의무 등 **신설**

- 전자등록회사(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회사(증권사 등)의 전산시스템 오류 또는 전산 조작자의 실수 등으로 전자증권이 발행인의 발행총량보다 초과등록된 경우 동 증권이 초과발행된 사실을 모르고 증권을 매입한 증권소유자(선의취득자)의



권리는 인정하되, 전자등록회사 및 계좌관리회사는 시장에서 동 증권을 매입하여 소각해야 함

- 증권 발행 초과분으로 발생하는 배당금 과소지급 등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전자등록회사 및 계좌관리회사가 증권 소유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 만약 초과분이 발생한 기관이 손해를 배상하지 못한 경우(예 : 1개 증권사가 배상능력이 불충분한 경우) 위탁결제원 및 모든 증권사 등이 연대하여 손해배상

**심사결과** 초과발행증권에 대해서는 증권 소유자 보호를 위해 전자증권 운영기관이 부담하는 말소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원안동의

**심사내용** 계좌관리회사의 자료제출의무 및 수검의무 **신설**

- 계좌관리회사(증권사 등)는 전자등록회사(예탁결제원)가 증권등록 업무와 관련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고, 계좌관리회사는 등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함

**심사결과** 계좌관리회사의 업무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예탁결제원이 제출받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계좌관리회사 검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원안동의

**심사내용** 과태료 **신설**

-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중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 부과

법률 위반 행위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행인이 전자증권 등록지정을 예탁결제원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전자증권 전환의무 불이행)</li> <li>○ 예탁결제원이 주식 소유자에게 소유자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li> <li>○ 예탁결제원과 증권사 등이 주식 소유자에게 권리내역 열람·복사를 못하게 경우</li> <li>○ 예탁결제원과 증권사 등이 법령이 정하는 증권등록정보 보존의무를 불이행한 경우</li> <li>○ 증권사가 금융위원회 검사를 거부한 경우 등</li> </ul>	5천만원 이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탁결제원 및 증권사가 주식의 소유자명세 작성 등의 업무 처리를 위한 각종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li> <li>○ 전자증권 등록업무와 관련한 증권사의 보고의무·자료 제출 의무 위반 등</li> </ul>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심사결과** 전자증권제도의 원활한 유지·운동을 위해서는 제도운영기관 및 이용자의 법적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므로 동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유사한 취지의 관련 입법례를 참조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및 부과 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원안동의

###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소규모 펀드 합병시 합병비율 적정성 등 확인 **강화**

- 非소규모펀드와 소규모펀드간 수익자 총회 없이 합병시, 합병비율 적정성 확인절차 이해여부 등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에 확인

\* 소규모펀드간 합병시에는 현재와 같이 합병비율 적정성 등을 금융위에 확인 받을 필요 없음

**심사결과** 자산운용사 등이 소규모펀드에 대한 정리유인을 증대시키고자, 합병에 대한 수익자 총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합병당사자에 대한 합병비율 확인절차를 마련할 필요 인정됨 제반사항을 점검하도록 할 필요 인정. 또한, 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규제수준이 적정, 비중요 원안동의

### (20) 2015년 기한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계	규제 폐지	규제개선			규제존속		
		일몰 연장	일몰 해제	일몰 변경	일몰 연장	일몰 해제	일몰 변경
10	0	1	-	-	8	1	-

**규제내용** 은행의 겸영업무 사전신고(은행법 제28조,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 은행이 은행업 외의 업무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여야 함

**심사결과** 은행업무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감독 차원에서 겸영 시 사전신고제 유지 필요성 인정. 또한, 금융서비스 혁신 및 수익다변화 지원 등을 위해 은행 업무범위 확대 및 탄력적인 운영의 필요성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일몰 연장(3년) 필요

**규제내용** 신기술사업자의 용자한도(여신전문금융업법 제45조,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제9조)

-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투자액이 자기자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간 용자 순증액은 연간 투자액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음



**심사결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활성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무분별한 용자확대 방지를 위한 적절한 제재수단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 용자액이 투자액을 상회하고 있어,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용자잔액이 투자한도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바, 규제준속 필요. 다만, 용자순증한도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일몰 연장 필요

**규제내용** 종합금융회사의 신용공여 한도(자본시장법 제342조, 동법 시행령 제334조)  
 - 종합금융회사 관계인(임원·자회사, 신용위험 공유자)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 제한(자기자본의 15%이내)

**심사결과** 임원 등 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여 종합금융회사의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거래질서를 안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임을 감안할 때, 규제 준속 필요. 다만, 용자순증한도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일몰 연장 필요

**규제내용** 종합금융회사의 채권발행한도(자본시장법 제340조, 동법 시행령 332조)  
 - 종합금융회사의 채권발행한도 제한(자기자본의 10배)

**심사결과** 무제한적 사채발행은 종합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 및 예금자 보호라는 목적, 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임을 감안할 때, 규제 준속 필요. 다만, 法상 종금사에 대한 인가규정이 없어 종금사 신규인가가 불가능하고, 현재 전업 종합금융회사인 우리종금(1개)의 경우에도 현재 추진 중인 우리은행 매각 후에는 존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규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종금사 운영현황에 따라 규제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몰 연장 필요

**규제내용** 종합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칙 등  
 - 종합금융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당 종금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시키기 위한 대출을 금지함

**심사결과** 종합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영업행위를 규율하여 예금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규제 완화 시 예금자 및 투자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출을 강제할 우려가 있고, 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임을 감안할 때 규제 준속 필요. 다만, 法상 종금사에 대한 인가규정이 없어 종금사 신규인가가 불가능하고, 현재 전업

종합금융회사인 우리종금(1개)의 경우에도 현재 추진 중인 우리은행 매각 후에는 존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규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종금사 운영현황에 따라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몰 연장 필요

**규제내용** 종합금융회사의 증권투자 한도(자본시장법 제344조, 동법 시행령 339조)

- 종합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100%이내의 범위에서 증권에 투자 가능

**심사결과** 다수 투자자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종금사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우려가 있으므로 건전경영확보 차원에서 증권투자 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임을 감안할 때 규제존속 필요. 다만, 法상 종금사에 대한 인가규정이 없어 종금사 신규인가가 불가능하고, 현재 전업 종합금융회사인 우리종금(1개)의 경우에도 현재 추진 중인 우리은행 매각 후에는 존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규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종금사 운영현황에 따라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몰 연장 필요

**규제내용** 단축명칭 사용금지(상호저축은행법 제9조제1항)

- 상호저축은행은 명칭 중에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상호저축은행은 일반 시중은행과는 달리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른 규율체계\*가 적용되고 있으며, 고객이 상호저축은행을 은행과 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규제존속 필요. 다만, 저축은행과 은행은 건전성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저축은행’ 형태의 금융기관이 존속하는 한 소비자 혼돈방지를 위해 해당 규제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어 일몰 해제

\*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 제한, 지점 설치시 인가 필요,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제한 등

**규제내용** 적용범위의 예외(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금융회사의 주요의무(인력, 시설,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제출 등) 범위 설정

**심사결과** IT 보안을 위한 전자금융 관련 주요 의무를 규정하면서 적용제외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전자금융 거래빈도 등을 고려하여 제외범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재 시행령은 일괄적으로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적용을 제외토록 하고 있는 바, 전자금융 거래 빈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제의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 전자금융거래 시장상황, IT보안기술 변화 등을 고려, 적용제의 범위 등에 대한 재검토 등을 위해 일몰 연장 필요

**규제내용** 감사인의 지정대상

-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의 범위\*

\* ①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②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고, ③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작은 회사

**심사결과** 기업들의 분식회계 및 의혹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회계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은 상태임을 감안할 때, 규제 존속 필요. 재무기준에 따라 외부감사 지정대상을 정하고 있는 바, 경기상황 및 제도 운영성과에 따라 기준조정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일몰 연장이 바람직

**규제내용** 계약체결비용 분할지급 비중 확대,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의 계약체결비용 단계적 인하

- (분할지급 비중) 저축성보험 및 장기실손의료보험의 계약 체결비용 중 분할지급하는 비용의 비중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계약체결비용)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비용을 일반채널대비 50% 수준으로 단계적 인하

**심사결과** (분할지급 비중) 설계사 등의 불건전한 모집행위를 줄이고 계약유지·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편익 및 설계사의 소득안정성 제고를 위해 분할지급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규제신설 이후 환급률이 개선되어 소비자의 신뢰회복 및 선택권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작용함을 감안하여 규제존속 필요. 보험계약 형태, 보험 설계사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분할지급 비중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몰 연장 필요

- (계약체결비용) 방카슈랑스 및 온라인 채널의 환급률을 개선하여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과도한 가입권유 및 불공정 관행 소지를 축소할 수 있으며, 규제도입 후 계약체결비용 인하에 따라 환급률이 개선되어 소비자의 신뢰회복 및 선택권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바 규제 존속 필요. 계약체결비용의 단계적 인하 방침에 따라(15년까지 일반채널의 50%) 규제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일몰 연장 필요

(21)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신설 2, 강화 1) 및 (2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 **신설**

- 대형 은행의 부도 및 영업형태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여타 은행보다 강화된 규제자본을 적용.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규모 및 다른 금융기관과의 상호연계성 등을 고려해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산정

〈시스템적 중요은행 평가방법〉

구 분	내 용
평가대상	은행지주회사, 국내은행, 외은지점
평가주기·시기	매년말 자본·자산을 기준으로 익년도 상반기에 평가
평가기준	자산규모, 여타 금융회사와 연계된 자산·부채 규모, 파생상품 거래액, 외화부채 규모 등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스템적 중요은행을 선정하고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

**심사결과** 대형 은행에 대한 규제자본 강화를 통한 금융안정 효과 및 은행감독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 감안 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1~2%의 규제자본 부과는 다른 나라와도 비슷한 수준인데다 '10년 국제기준 발표 시부터 대비해 왔을 뿐만 아니라 4년간 단계적으로 적립할 수 있으므로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원안동의

**심사내용** 경기대응완충자본적립 **신설**

- 국내 은행 신용공급의 경기순응성\*을 축소하기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를 도입
- \* 은행이 경기가 좋을 때 대출을 늘리고 경기가 나빠질 때 대출을 회수하는 영업행태로 인해 경기의 진폭이 더욱 확대되는 현상
- 금융위원회는 신용/GDP 갭\* 등 국내 신용공급 상황을 감안하여 매분기 경기대응 완충자본 부과수준을 결정

\* 신용/GDP 갭 : 대출 등 신용공급량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장기평균에서 크게 벗어나는 정도를 측정하는 수단. 신용/GDP 갭이 (+)로 커지면 GDP에 비해 신용공급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음을 나타냄



- 바젤위원회가 거시경제지표, 재무·건전성 지표 등 경기대응완충자본 참고지표가 분기별로 업데이트되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 분기 1회 이상 판단을 권고한 점을 감안해 매분기 평가
- 주지표(신용/GDP갭, 신용갭), 보조지표(가계부채, 주택가격, 시장성차입, 단기외채 등) 및 정성적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심사결과**

금융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추가자본 부과 수준도 과도하지 않으므로 원안동의 하되, 다만 경기상황 판단 등에 대해 부처간 이견이 나타날 경우 규제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간 긴밀히 협의할 것을 부대권고

**심사내용**

리스크수준에 따른 차별적감독 강화 및 시장공시 강화 **강화**

- 바젤위원회의 국제기준(바젤Ⅱ) 중 아직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 반영하지 못한 내용을 금번 개정시 반영\*

\* 바젤Ⅱ 중 필라(Pillar) 2와 필라(Pillar) 3는 현재 일부만 도입하였으나 국제기준에 맞추어 전면 도입

**〈바젤위원회의 바젤Ⅱ 규제 체계〉<sup>1)</sup>**

	규제내용	우리나라의 도입	
		현행	개정
필라1	최저 자기자본 보유 규제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sup>2)</sup>
필라2	감독당국의 은행 리스크 평가결과에 따른 차별적 감독 강화	일부만 도입	전부 도입 <sup>3)</sup>
필라3	은행의 자본 보유 수준 및 리스크관리 상황에 대한 자율공시 강화	일부만 도입	전부 도입 <sup>3)</sup>

주 : 1) 바젤Ⅲ는 바젤Ⅱ의 필라1~3의 체계는 그대로 두면서 규제내용·범위를 수정·보완

2) 바젤Ⅲ에 따른 필라1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금번 개정시 도입

3) 「리스크수준에 따른 차별적감독 강화 및 시장공시 강화」와 관련된 부분

**심사결과**

리스크관리 수준이 미흡한 은행에 대한 추가 규제자본 부과는 은행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통해 예금자 보호 등에 기여하며, 규제 수준도 과도하지 않고, 은행 경영 공시항목 확대 등은 예금자 및 투자자에게 은행의 경영건전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다,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공시항목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동의

### (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체계 개편 **강화**

- 은행의 거치식 대출 취급을 억제하기 위해 분할상환 대출 중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거치식 대출에 대한 기준요율을 연 0.10% → 연 0.30%로 상향조정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우대요율을 신설, 은행별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추가 감면
- 대위변제율을 고려한 차등요율을 조정

**심사결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제고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출연요율을 차등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러나 은행의 전체적인 '16년 예상 출연요율 및 출연금액은 '15년보다 하향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채 구조개선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출연료 부담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원안동의

###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고시 등 개정안 (신설 1, 강화 4)

**심사내용** 자산운용현황 통지 및 펀드매니저 관련 공시 의무화 **강화**

- 펀드 판매사가 펀드 가입자에게 자산운용 현황(펀드의 수익률, 자산운용사 등의 수수료, 환매예상액 등)에 대하여 매월 통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용사가 공모 펀드매니저의 공모·사모펀드 운용성과 및 보상체계 등을 공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심사결과** 펀드 가입자에게 펀드운용 현황 및 펀드매니저의 보수 등 펀드 투자 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는 데다 홈페이지 공시 확대는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중요로 분류하고 원안동의

**심사내용** MMF(Money Market Fund) 투자한도 예외 범위 조정 **강화**

- 현행 MMF는 채권 투자시 신용등급에 따라 전체 자산의 2~5%만 매입할 수 있으나 지방공사채는 특수채로 간주되어 현재 30%까지 투자가가능하나, 지방공사채에 적용되는 현행 투자한도 예외 범위를 조정해 지방공사채도 신용등급에 따라 2~5%만 매입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법률상 손실보전조항 부재,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및 채권시장의 평가 등을 고려할 때 MMF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방공사채에 대한 투자한도를 회사채와 동일하게 2~5%로 설정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음. 지방공사채에 대해 회사채보다 우대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수정해 투자한도를 상향조정(예 : AAA등급 30%, AA등급 10%)할 것을 개선권고

**심사내용** 공모펀드 등록 시 소규모 펀드 투자자보호 계획 제출 **신설**

- 공모펀드 등록 시 동 펀드가 사후적으로 소규모 펀드가 될 경우 실행할 투자자 보호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심사결과** 소규모 펀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자산운용사 별로 소규모 펀드 비율을 직접 일정 수준으로 낮출 것을 강제하기 보다는 투자자보호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투자자보호 계획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세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규제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원안동의

**심사내용** 사모단독펀드의 불건전 영업행위 차단 **강화**

- 사모단독펀드 의무 해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사 및 그 임직원 등이 사모단독펀드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

**심사결과** 사모단독펀드 의무해지 규제를 회피하는 자산운용사 등의 탈법행위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다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원안동의

**심사내용** 자산운용사의 자기운용펀드 투자공시 의무 **강화**

- 고유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과 수익률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함

**심사결과** 자산운용사가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할 경우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다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로 분류하고 원안동의

## (25)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인하 **강화**

-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0.7%p씩 인하  
(영세가맹점 : 1.5% → 0.8%, 중소가맹점 : 2.0% → 1.3%)

\* (영세)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중소) 연 매출액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심사결과** 영세·중소가맹점이 연간 약 3,760억원(영세가맹점 2,790억원, 중소가맹점 970억원)의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라는 규제 필요성이 인정. 또한, 금융위카드사여신금융협회 등으로 구성된 「수수료조정TF」에서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적정 비용을 산정, 합의를 통해 도출된 사항으로 규제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원안동의



## 5. 금융감독원

◎ 집필자 문유진 사무관 ☎ 044-200-2414 ✉ yujin700@pmo.go.kr

### 가.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5년도에는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등 10개 법령 개정안, 신설 9건, 강화 1건 등 총 10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0건 중 10건 원안의결 하였음

금융감독원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1.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5.01.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5.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5.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b>계</b>	-	<b>원안의결 10</b>	<b>신설 9, 강화 1 (비중요 10)</b>

## 나.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신용평가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강화 **신설**

- 신용평가지 채권의 개별 특약사항을 반영하도록 의무화 및 신용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품질유지 노력의무를 부과,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계약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한 공시내용을 강화, 구조화금융상품에 대한 공시를 강화

**심사결과** 동 시행세칙 개정안은 종전 모범규준에서 정한 내용을 법제화한 데 불과한 것으로 모범규준에 의해 既준수되오던 사항이 법제화되지 않을 경우 종전에 비해 투자자에 대해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게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투자자 보호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개정내용은 모두 신용평가의 투명성 및 신뢰 제고와 투자자 투자결정에 필요한 공시사항 등이며 추가 공시 자체로 신용평가회사에 발생하는 부담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금융회사 대상 개선계획 제출 명령 기준인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 비율 **신설**

-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한 ‘반기별 총 계좌수 대비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 비율’을 0.2%로 하되, 특정 금융권역의 사기이용계좌 발생빈도, 권역별 계좌개설 규모 및 영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이한 비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심사결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선계획 제출 기준으로 정한 0.2%는 규정 시행(2014.7.29일) 후 3개월간 금융회사의 대포통장 비율은 평균 0.17%로 이중 수협(0.85%), 우체국(0.73%) 및 새마을금고(0.64%)을 제외할 경우 0.2%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일부 금융업권의 건의를 반영, 금융업권별로 계좌개설 규모, 영업특성 등을 감안한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동 규제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비중요 규제로 판단



### (3)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연금저축업무보고서 신설 및 해외투자업무현황 업무보고서 개정 **신설**

- 금융투자업자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개인연금저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해외투자 현황’의 기재내용을 추가 및 보고서 제출주기를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

**심사결과** 연금저축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주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통계자료의 신뢰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보고서에 연금저축 관련 사항을 추가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아울러 해외 금융상품 투자에 따른 환율위험과 현지 경제상황 등에 따른 투자위험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보고주기를 현행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고, 보고서 기재범위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 (4)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보완자본의 기한도래전 상환시 보고(승인)의무 **신설**

- 후순위채무의 보완자본 인정요건이 충족된 경우 기한도래 전에도 보완자본 상환을 허용하되, 이 경우 금감원장에게 사후보고 또는 사전승인 받도록 함

**심사결과** 후순위채무는 엄격한 의미의 자본은 아니나 잔존기간에 따라 자본적 성격을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경영안정성 확보를 위해 여전사의 자기자본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제한할 필요 인정되고, 여전사 조정자기자본 권고비율이 8%인 점을 감안할 때 사전승인 요건으로 상환 후 조정자기자본비율을 8%로 두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5)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부가통신업자의 업무 및 경영실적 보고 절차 **신설**

- 부가통신업자의 업무·경영실적 보고 기준 및 절차를 규정, 기존 여신전문금융업자의 금융감독원 앞 업무현황 및 결산 보고 의무를 부가통신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되, 업무보고서 서식은 별도로 신설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주주총회 개최결과 등도 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일(즉시 또는 7일) 내에 금융감독원 앞 보고 의무규정

**심사결과**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부가통신업자가 업무·경영실적을 원활히 보고할 수 있도록 부가통신업자의 업무특성을 고려해 보고 항목 및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기존 여신금융업자 및 은행권과 비교시 보고서 제출 부담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6)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연금저축 업무보고서 서식 신설 **신설**

– 연금저축 업무보고서 신설

보고서명	주요 보고 내용
연금저축 계약현황표(월)	연금저축 증감내역, 보유계약 현황
연금수령 형태별·기간별 연금저축 현황표(월)	연금지급 개시 전·후별 계약현황
연금저축 납입금액별 현황표(연)	납입금액 구간별 저축 납입현황
연금저축 지급금 현황표(월)	연도별 연금 지급 현황
연금저축 지급금액별 현황표(연)	지급금액 구간별 연금 지급금 현황

**심사결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금감원이 보험사 연금저축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감독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위 규정 위임에 따라 연금저축 보고서 서식을 신설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연금저축 업무보고서 내용이 연금저축 계약현황 및 납입·지급 실적 등 연금저축 통계자료 작성에 필요한 수준이어서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7)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퇴직연금 수익률 및 수수료 관련 업무보고서 신설 **신설**

– 현행 「퇴직연금 업무보고서」 중 신설 보고서

보고서명	주요 보고 내용
퇴직연금 지급현황	○ 퇴직연금 지급 금액 및 수급자 인원
총비용부담율 및 운용수익률 현황	○ 거래수수료 및 펀드매니저 보수 등 비용 ○ 자산운용 수익률
집합투자증권 세부운용 현황	○ 퇴직연금이 가입한 펀드의 유형별 가입내역 *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부동산펀드 등



**심사결과** 금감원이 퇴직연금 지급 및 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감독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위 규정 위임에 따라 퇴직연금 보고서 서식을 신설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퇴직연금 지급현황 등 기존 보고서에 없는 항목을 파악하기 위해 신설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8)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보험금 지급 지연 시 기간별로 지연이자율 차등 부과 **신설**

- 손해보험, 생명보험 등 10종의 보험에 대하여 지급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보험금 지급 시 지연 기간별로 차등하여 가산 이율 부과

**심사결과** 보험금 누장 지급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가산 이율을 부과하여 보험사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가산 이율 부과 수준은 해외 사례, 타법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 (9)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청약처리·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 **신설**

- 「금융투자업규정」 위임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준수해야 할 청약처리·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신설

**심사결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투자자들이 인식해야 할 필수적인 정보로서 건전한 자본시장 형성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라는 점, 추가되는 직접비용은 경미한 수준이며, 투자자 이해 제고에 따른 분쟁가능성 축소, 투자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형성 등 사회적 편익은 훨씬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10)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강화 1)****심사내용**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기준 개선 **강화**

- ① 현재 보험사 홈페이지별로 공시되고 있는 책임준비금을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가 일괄적으로 공시, ②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주기를 현행 연 1회 → 반기 1회로 강화, ③ 금감원 점검 결과 보험사가 과도하게 적게 책임준비금을 계산한 경우 재계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④ 현재 표준이율을 적용해 책임준비금이 계산되므로 세부항목이 보험사별로 약간씩 상이한 것을 허용했으나, 표준이율 폐지에 따라 세부항목을 일정한 기준으로 통일

**심사결과**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가 일괄적으로 동 평가 결과를 공시하게 되면 일반인의 정보접근이 용이해진다는 점, 책임준비금 평가주기를 단축해 보험사 스스로 책임준비금을 적정하게 계산해 보험금 지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보험사가 부채를 과소하게 산출해 보험금 지급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금감원이 재계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세부항목에 차이가 있는 점을 이용해 보험사가 책임준비금을 과소하게 계산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제3절 산업·에너지 분야

### 1. 산업통상자원부

◎ 집필자 박성준 사무관 ☎ 044-200-2398 ✉ econlaw@pmo.go.kr

#### 가.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5년도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등 23개 법령 개정안, 신설 32건, 강화 22건 등 총 54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54건 중 52건은 원안의결, 1건은 개선권고, 1건은 부대권고로 의결하였음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1)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1.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2.27)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경제분과 (2015.03.13)	부대권고 1	신설 1 (중요 1)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안	예비심사 (2015.03.27)	원안의결 7	신설 7 (비중요 7)
(5)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4.03)	원안의결 7	강화 7 (비중요 7)
(6) 전기공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4.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4.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5.04.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5.05.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10) 에너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5.29)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1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5.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5.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3)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안전확인대상 및 공급자 적합성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5.06.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6.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5)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6.05)	원안의결 2	신설1, 강화 1 (비중요 2)
(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6.26)	원안의결 7	신설4, 강화 3 (비중요 7)
(17)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6.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6.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9)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6.26)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20)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5.08.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1) 2015년 도래 재검토행 일몰규제 심사안	경제분과 (2015.09.18)	-	일몰규제 16건
(22)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분위원회 (2015.10.16)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강화 2 (중요 1, 비중요 1)
(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30)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26)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b>계</b>	-	<b>개선권고 1 부대권고 1 원안의결 52</b>	<b>신설 32, 강화 22 (중요 2, 비중요 52)</b>



## 나.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효율관리 대상 품목 추가 및 기준조정 **강화**

- 대상품목 추가 : 전기레인지, 셋톱박스
- 효율기준 조정 : 변압기, 삼상유도전동기, 전기냉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전기냉난방기, 가스온수기

**심사결과** 전기레인지 및 셋톱박스의 과도한 전력사용량에 대하여 효율관리 필요성이 있고, 각 품목의 소비효율등급 분포,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존 효율관리기자재의 효율등급기준 조정하였으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2)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 수행 및 벌칙 **신설**

- 배관건전성관리 프로그램\*의 대상, 수행계획서 제출, 변경명령, 이행·작성·보존 및 벌칙 등
  - \* 배관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내부검사장비(pigging) 등 첨단검사장비를 이용하여 배관 건전성을 관리하는 기법

**심사결과** 도시지역에 설치된 고압가스 배관은 사고위험성이 높아 상시적 안전관리 필요하고, 배관건전성 프로그램의 이행강제력 확보를 위해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의 상한을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 수행결과 확인 등 **신설**

- 도시가스 사업자의 배관건전성관리 프로그램 수행결과에 대한 정기적 확인 및 부진한 사항에 대한 이행명령 등을 규정

**심사결과** 도시가스사업자의 동 제도에 대한 성실한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제3자의 확인을 거쳐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안전관리 이행사항에 대한 강제력 및 책임성을 부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고 발생시 피해의 심대함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및 등록 취소 등 **신설**

-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한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명령 근거 마련

**심사결과** 도시가스 사업의 특수성 및 안전관리 중요성을 감안할 때, 등록제로 운영하여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의무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바이오 혼합유종 및 연도별 혼합비율 **신설**

-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와 신재생에너지연료(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을 2.5%에서 3.0%까지 연도별·단계별 구체화

\* 대두유, 폐식용유, 유채유, 팜유 등으로 만든 식물성 경유

현 행		개 정 안	
2.0부피% 이상 ~ 5.0부피% 이하	⇒	2015	2.5
		2016	2.5
		2017	2.5
		2018	3.0
		2019	3.0
		2020	3.0

**심사결과** 바이오디젤은 탄소중립연료로서 전 세계적 확산 추세 및 온실가스 절감 필요성을 감안할 때 바이오디젤 사용을 확대·장려 필요가 있으나, 바이오연료 수급 및 가격 안정성 등을 위해 혼합의무자에게 일정부분 재량을 줄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연간 혼합비율은 개정안대로 적용하되 최소한의 품질기준 ‘범위’는 현재수준으로 규정하여 혼합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부대권고



####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안 (신설 7)

**심사내용** 사업자보고 의무의 증대한 사고범위 규정 **신설**

- 48시간 이내 보고가 필요한 중대사고의 범위를 ‘사망,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 화재’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에 따라 중대한 사고의 범위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고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및 안전위험의 신속한 확산 방지를 위한 최소 필요한 규정이라는 점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안전정보 제공 대상기관과 정보의 범위 규정 **신설**

- 안전관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과 정보의 범위를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정한 정보요청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피규제자의 인력 및 규모 등을 반영하여 피규제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였고 어린이 위해 발생시 신속히 안전 위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수준이라는 점에서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 범위 확대 **신설**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범위를 모든 어린이제품으로 확대

**심사결과** 해당 규제는 상위법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모든 어린이 제품으로 확대함에 따라, 공급자가 확인하여야 할 확인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자 의견 없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을 위한 것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사업자의 보고내용 **신설**

- 사업자가 48시간 이내에 보고하는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서식을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사업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보고방법을 위임함에 따라 보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 인정되고 어린이제품 관련 사고 발생시, 위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정보 및 사고내용 등에 대하여 신속한 파악을 위한 정보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안전확인 기록의 보관 **신설**

- 시험검사기관의 안전확인기록 보관기간을 최종 작성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이 안전확인 기록의 보관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보관기한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인정되고,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 안전확인 기록 보존에 따른 부담증가가 크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공급자적합성확인 증명서류 및 서류비치 **신설**

- 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안전기준 적합 증명서류를 규정하고 보관기간을 5년으로 규정

**심사결과** 개정안이 정하는 비치 서류는 '제품설명서, 검사결과서, 확인서'로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인정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판매를 위해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규제로 보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금지행위가 새로이 정해졌는바, 위반행위 억지력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은 종전 규율 법령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최고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 (5)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개정안 (강화 7)

**심사내용** 안전인증면제를 위한 확인 **강화**

- 안전인증을 면제 받은 제품에 대해 면제사유가 소멸된 경우, 안전인증 면제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면제받은 제품의 불법 유통을 방지

**심사결과** 안전인증 면제제품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제 사유가 소멸시 신고하도록 하여 적정한 관리의 필요성 인정되고, 이해관계자 의견 없으며 규제이행에 큰 부담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등 **강화**

- 허위 안전인증 표시 금지,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 및 판매중지 등 명령

**심사결과** 안전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량제품이 소비자에게 확산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비용이 크지 않은 반면,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만 유통·사용에 따른 편익이 크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안전인증의 표시 등 **강화**

- 안전인증 표시 없는 제품의 중개, 구매, 수입 금지

**심사결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 중 상당수가 안전인증표시가 없거나 불법제품으로,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책임 부담 필요가 있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담이 크지 않음에 비하여, 불법 전기용품 유통을 근절하여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상당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안전인증 및 안전인증의 취소 **강화**

-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변경신청 및 제한, 기록물 보관의무

**심사결과** 변경사실을 신고토록 하여 안전인증기관 지정시의 시험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기록물 보관 및 재신청 제한기한을 두어 안전인증기관의 의무 이행 확보 및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추가 **강화**

- 안전기준에 증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효력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심사결과** 안전성 확인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을 상실토록 하여, 소비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경우 등 제품의 제조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해관계자 의견 없으며 이행 강제력 제고를 위한 의무위반시 제재처분의 강화로 제조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 추가 **강화**

-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을 국내에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는 '12년 도입 이래 공급자 대상품목을 계속 확대하고 있음에도 시험건수는 줄어들고 있어 실효성 문제되는 상황에서, 실제 대부분의 전기용품이 안전성 확인 없이 판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보완 필요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정기검사 기피 등의 과태료 **강화**

- 면제사유 소멸신고, 인증표시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심사결과** 이행강제력을 제고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수준의 제재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각 행위별로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및 고의·중과실 정도를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여 규제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 (6)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등록기준신고를 지연신고한 경우 60일 이내와 이후로 분리하여 각각 100만원, 200만원으로 정하고, 등록자의 공사업자 표시 위반시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50만원), 2회 위반(100만원), 3회 이상위반(200만원)으로 차등부과

**심사결과** 위반행위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반자의 위반정도에 따른 제재 수준을 정할 필요성 인정되고,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및 중대성 여부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 (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제도 **강화**

- 문체부 장관은 카지노업을 허가하려는 경우 허가대상지역, 업체수, 절차 및 세부 허가기준 등을 공고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공고에 따라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신청에 따른 처리기한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



**심사결과** 경자구역 내 카지노업 허가선점을 위해 면밀한 사업성 검토없이 경쟁적으로 뛰어들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발생(카지노업 희망자에게는 자본투입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등 불필요한 비용,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사전심사를 위한 행정비용, 사회적으로는 카지노 설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찬반논란 등 불필요한 비용)을 막을 필요가 있고, 이해관계자 의견 없으며 카지노업 허가신청 절차를 현실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 (8)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협력업체의 행위제한 사항과 이에 따른 입찰제한, 과징금 및 가산금 세부규정 마련 **신설**

- 원전공공기관에 물품·용역을 공급 또는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협력업체의 행위제한사항(담합, 불법 하도급, 보안사항 위반으로 인한 사이버 침해·자료유출 행위 등) 및 입찰제한, 과징금·가산금 세부기준 규정

**심사결과** 원자력발전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물품·용역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자(협력업체)에 대해서도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하며, 상위법 위임 사항에 따른 구체화 규정으로서 원래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규제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 (9)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원전공공기관에 물품·용역을 공급 또는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협력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세부기준을 규정 **신설**

- 협력업체의 위반행위별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2/100~10/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

**심사결과** 협력업체의 위반행위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과징금 부과 객관성 확보 필요 협력업체 위반행위의 정도를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 (10) 에너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에너지복지사업 전담기관 지정 및 취소 **신설**

- 에너지 복지 전담기관 지정을 위해, ① 에너지업무 전문 수행 기관, ② 에너지복지 사업 수행경력, ③ 전담인력, ④ 재정·기술적 능력을 고려하여 산업부 장관이 고시로 지정
-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 기준 및 기준 미달시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전담기관을 지정·업무정지 기준을 두고 있는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에너지이용권 이용자 및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규정 **신설**

- (이용자의 준수사항)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공급받을 경우, 에너지 공급자로부터 에너지공급 대신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됨
- (공급자의 준수사항)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공급받으려는 이용자에게 에너지공급시 발생하는 비용(카드수수료 등)을 부담시켜서는 안 됨

**심사결과** 에너지 이용권은 대규모 재원투입(연 1,058억원)이 수반되는 사항인 바, 복지재원 누수를 막고 이용자의 부정 사용과 에너지공급자의 부당한 비용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와 공급자의 준수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타법 사례를 감안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에너지공급자, 에너지복지 사업대상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 조사 **신설**

- 에너지이용권의 지급액 산정 및 자격확인을 위해 필요시, 에너지공급자가 이용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한 내용 확인 필요시 등의 경우, 에너지공급자, 에너지복지 사업 대상자 또는 관계인에 대해 질문·조사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고,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 등에 따라 가구별 금액을 차등하여 이용권이 지급되므로 대상자에 대하여 질문·조사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에너지 공급 후 에너지공급자는 그 비용을 전담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바, 내용 확인을 위해 에너지공급자에 대하여 질문·조사 필요가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진술거부 또는 거짓진술 등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에너지공급자 등이 질문·조사에 대해 진술거부 또는 거짓진술, 조사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300만원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률에서 정한 상한선 내(500만원)에서 규정하면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부과하고 있다는 점,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의 경우에는 정상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중요 규제로 판단

### (1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전문광해방지사업자 행정처분기준 신설 **신설**

-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미달기간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차등 규정

1.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때	
가.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나. 가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다. 나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2.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가.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나. 가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다. 나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심사결과**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의 차등을 두어 행정처분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등록요건 미달 및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처분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복합구역 내 제조업 및 연관서비스업의 최소면적 기준 **신설**

- 복합구역에는 산업·지원·공공시설 모두의 입주를 허용하되, 제조 및 지식·정보통신 산업 등 산업시설의 최소 면적비율을 사업장 건축(연)면적의 50%이상으로 설정

**심사결과** 특정 시설로의 쓸림 현상을 방지하고, '편리한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용도기준을 설정하여 최소한의 산업시설 면적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주기업협의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없고 규제완화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설정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 (13)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안전확인대상 및 공급자 적합성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안전확인대상 및 공급자적합성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신설**

- (공통기준) 8대 중금속\*에 대한 유해원소 용출량, 물리적 안전요건 추가
  - \* 안티모니, 비소, 바륨, 카드뮴, 크로뮴, 납, 수은, 셀레늄
- (안전확인대상)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기준 마련, 스케이트 등 11개 품목\* 국제규격 반영 등
  - \* 스포츠 보호용품, 스케이트 보드, 어린이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스포츠용 구명복
- (공급자적합성) 어린이제품 표시사항 강화, 키보드 등 9개 품목\*에 대한 시험방법 및 기준 추가
  - \* 어린이용 가족제품,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롤러, 스키용구,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키보드, 어린이용 가구



**심사결과** 기존 품공법에 따라 관리 중인 어린이 제품이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어린이 제품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유해물질 안전요건과 물리적 안전요건을 정할 필요성 인정되고, 그간 기업, 소비자, 인증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변경된 기준이 국제기준(EN, ISO)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기술적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 (1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기준 합리화 **강화**

- 1일당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의 기준은 1일당 평균 매출액에 영업이익률과 기준경비율을 반영한 적정과징율\*을 곱하여 산정

$$\text{과징금 부과금액} = \text{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 \times \text{사업정지·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일수} \times 0.18^*$$

**심사결과** 매출액이 많은 사업자의 과징금 부과액이 매출액에 비해 너무 적어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및 제재의 실효성 저해하는 점, 개정안의 적정과징율은 영업이익률과 기준경비율을 고려하여 산출하였는바, 매출액을 환수하려는 과징금 부과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15)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건축물 공사시 안전조치 의무 **신설**

- 공사시행자가 공사 착공 7일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공사계획\* 규정
  - \* 발주자 인적사항, 공사시행자 회사명 및 공사담당자 인적사항, 공사의 종류·내용·위치 및 공사 예정일자,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조치계획
- 건축물 공사 착공 전 공사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간의 안전조치 의무사항 규정

**심사결과** 건축주 및 공사시행자, 공사의 내용 등을 파악하여, 도시가스 배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가늠하기위해 사전 고지내용으로 필요하고,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안전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해외사례 등과 비교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상위법에 규정한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함

**심사결과**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한 금액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는 점,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되도록 설계하고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4, 강화 3)****심사내용** 품질유지 대상 고압가스의 종류 및 품질검사 방법·절차, 위반 고압가스 공표절차 등 **신설**

- 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를 정함
- 품질검사 방법·절차 등을 정하고,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고압가스 유통한 고압가스 제조자 등에 대한 공표절차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사항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냉매가스의 품질관리 미흡시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품질유지 대상으로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타당. 또한 공표를 통해 사업자에게 품질기준 확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행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절차 및 굴착공사자 등의 조치사항 **신설**

-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제도 도입에 따라 매설상황 확인 절차 및 굴착공사자 조치사항 신설·규정
- 굴착공사자가 고압가스 매설배관 확인요청시 굴착계획 등을 “굴착공사 정보지원 센터”에 통보
- 공사계획을 통보받은 정보지원센터 및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

**심사결과** 지하매설물의 노후화로 교체·보수 등 굴착공사시 고압가스 매설배관 손상을 예방하여 대형사고를 방지하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 필요하고, 가스배관 매설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정확한 매설 배관 상황 및 특성 확인을 위해 통보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및 긴급굴착공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 고압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 등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 밖 배관 보유사업자와 안전조치 방법 등을 협의 및 협의서 작성하고, 그 협의 내용을 지키도록 함
-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등은 굴착공사 현장에서 사업자와 협의하고 안전관리자의 입회아래 공사 시작

**심사결과** 고압가스배관 배설상황 확인제도 도입에 따라 협의 필요한 굴착공사 및 긴급복구공사에 대한 구체적 내용 정할 필요가 있는 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시에는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개시 시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및 안전조치 사항 **신설**

- 사업소 밖 배관보유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안전조치 사항 규정
- 굴착공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조치사항
- 도면 기재사항

**심사결과** 상위법은 고압가스 배관 매설상황 확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배관보유 사업자 및 굴착공사자 조치사항 규정할 필요가 있고, 도면 표시 사항도 배관의 매설상황 및 배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강화**

-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에 기존 독성가스 외에 고압가스 품질유지 대상의 고압가스를 추가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리대상으로 추가된 ‘품질유지대상 고압가스’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관리 부재로 품질검사 미수검 가능성 우려되므로 등록대상으로 추가하여 체계적 관리를 도모할 필요한 점, 상위법 취지 및 등록제 도입에 따른 비용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과태료 **강화**

-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최고 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이행강제력 및 위반행위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함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개정안에서도 법정 상한액과 동일하게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정밀안전검진의 실시 **강화**

- (검진대상) 15년이 경과한 냉동능력이 500RT 이상의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제조시설을 정밀안전 검진대상에 추가,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검진 실시주기·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
- (진단항목) 수요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던 특수분야 검사를 선택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

**심사결과** 정기검사는 설비의 전반적인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노후화된 독성가스 냉동제조시설을 정밀안전검진 대상으로 확대하여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고 사고요인 사전 제어할 필요성 인정되고, '특수분야' 검사는 음향방출 또는 열화상 측정 방법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위험요소 및 사고발생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협의 결과 개정안 규제 도입에 반대의견은 없었으며 일부 찬성하는 기업도 있었음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17)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제품수거명령의 절차 및 이행계획서의 제출 **신설**

- 제품수거 명령 받은 자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사항으로서 제품수거 명령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행방법 및 절차를 규정할 필요성 인정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없으며 유사입법례를 감안할 때 이행계획서 제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 (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행정처분 기준 **강화**

- 금지행위 대상인 '영업시설 설치·개조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 행위 규정 및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부과금액을 정함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에 따라 '설치·개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고, 그 내용이 실제 위반행위 적발시 석유판매업자가 취했던 방식을 참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 또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부과기준이 타법사례와 비교하여 적정하므로 비중요 규제 판단

## (19)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5)

### 심사내용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소비자 열람방법 및 절차 **신설**

- 제품명, 모델명, 열람요청 사유 등을 포함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열람범위를 사업자명, 제품명, 모델명, 제조연월일 및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로 구체화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에 따라 열람절차와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 내용은 제품의 기본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상 적정하므로 비중요 규제 판단

### 심사내용 중대한 사고 발생시 보고의무 **신설**

- 제품의 중대한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에게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반복적인 사고'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사고발생 보고기한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48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 내용이 제품의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또는 제품의 위해성 및 파급효과가 큰 상황으로서 적정. 사고발생보고기한의 경우도 유사입법례 및 해외사례 등과 비교하여 보고기한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 판단

**심사내용** 제품사고 관련 자료요청 범위확대 **신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심사결과** 제품으로 인한 사고현황 및 원인과 경위를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로 범위를 정하였으며 제품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적정성이 인정되는 바, 합리적인 수준의 정보로 보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안전성 조사 또는 제품사고 조사 결과 공표 **신설**

- 안전성조사 또는 제품사고조사 결과를 신문·방송 또는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해 공표하고, 제품명, 모델명, 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안전성 조사 또는 제품사고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상위범위임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신문·방송 및 제품안전정보망 등 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 있고 개방성이 큰 매체를 정보제공 방법으로 설정한 것은 적합. 공표 내용도 위해성 있는 제품을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 **신설**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감경 규정 마련

**심사결과**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을 차등화 하여 규정하여, 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억지력 및 이행강제력을 높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위반행위의 고의성 및 과실수준에 따라 차등적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20)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기름난로(연료소비량 600g/h이하) 안전기준 제정안 **신설**

- 기름난로의 공통 안전성능으로서 건조연소가스 중의 CO농도, 연료소비량, 전도안전성, 기름 탱크내압 기준을 규정



**심사결과** 불완전 연소로 인한 질식 등 안전사고 위험, 난로가 넘어질 경우 화재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 기름탱크 누설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가능성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은 필요 타당하며 그간 기업, 소비자, 인증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21) 2015년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안 (일몰규제 16건)**

구분	계	규제 폐지	규제개선			규제준속		
			일몰 연장	일몰 해제	일몰 변경	일몰 연장	일몰 해제	일몰 변경
산업부	16	0	2	0	0	10	4	0

**규제내용** 신재생에너지 전원별 적용기준 및 가격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 하는 전력비용을 지원(발전차액)시 전원별 기준 단가

**심사결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과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따른 기준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2031년까지 예정되어 있으므로(법정지출의무), 지원금에 해당하는 차액산정을 위해 전원별 기준 단가는 필요하고, 주기적으로 기준 단가의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몰 연장

**규제내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 하는 전력비용을 지원(발전차액)시 기준단가를 정하는 산정기준

**심사결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과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따른 기준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2031년까지 예정되어 있으므로(법정지출의무) 차액산정을 위해 전원별 기준 단가가 있어야 하고, 이 기준 단가를 정하기 위한 산정기준은 계속 존속할 필요, 주기적으로 기준 단가 등의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몰 연장

**규제내용**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의 투자 권고 및 신재생 에너지 이용 의무화 등  
 -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를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부과

**심사결과** OECD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최하위권으로서 지속적인 보급확대 및 육성정책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 신재생에너지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존속여부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몰 연장

**규제내용**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  
 -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업체에게 수출입에 관한 지원을 받기위한 수출입확인을 받도록 의무 부과

**심사결과** 용역, 소프트웨어 등은 일반통관을 통해 수출입확인이 어려우므로, 수출입업체가 수출입에 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수출입 확인신청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존속여부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몰 연장

**규제내용** 무역조정기업, 무역조정근로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FTA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예정인 기업, 근로자를 지원 및 지원취소하기 위한 기준

**심사결과**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적절한 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을 지정하고, 동시에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하기 위해 법령에 요건 및 기준 등 규제 존속 필요, 무역조정지원기업 및 근로자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하고, 무역조정계획 착수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 절차 폐지 등 규제 개선예정,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존속여부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몰 연장

**규제내용** 과태료 부과  
 - 상공회의소 유사명칭을 사용시 과태료 부과

**심사결과** 상공회의소는 관할구역의 상공업체를 대표하여 상공업의 발전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으로 유사명칭기관 난립에 의한 혼란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보호할 필요, 상공회의소 명칭의 오남용 방지와 신뢰성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존속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몰해제

**규제내용** 회원대장 작성, 비치, 관리의무 등  
 - 상공회의소는 회원에 대한 실태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회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심사결과** 상공회의소가 지역 상공업계를 대표하고 상공업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역 상공업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회원대장을 작성·비치·관리하고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필요·타당, 상공회의소의 업무수행을 위해 계속적으로 필요한 규제이므로 일몰해제

**규제내용** 지방상공회의소 설립인가  
 - 상공회의소 설립시 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심사결과** 상공회의소는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상공업 발전 도모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으로 상공업계 대표성과 공공성 유지를 위해 설립시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은 필요, 환경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규제존속여부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몰연장

**규제내용** 고압가스사업자 보험가입  
 -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

**심사결과** 가스보일러 불량 시공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가스사고 중 인명피해율이 가장 높으므로(1건당 약 1명 사망) 철저한 관리 및 사고시 보상이 필요, 스토일러 불법시공으로 인한 피해와 손해로부터 가스사용자를 보호하기위해 계속 시행이 필요하므로 일몰해제

**규제내용** 도시가스사업 회계분리기준  
 -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시설과 판매부문 회계를 구분하도록 의무 부과

**심사결과** 공급시설 공동이용에 따른 요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공급시설과 판매부문을 분리하는 회계분리 절차 세부규정이 필요, 규제유지의 필요성은 있으나, 환경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규제존속여부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몰연장

**규제내용** 대규모 점포 개설, 변경등록  
 - 대규모점포개설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 개설시 등록의무 부과 및 등록제한

**심사결과**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골목상권의 자생적인 경쟁력 확보 기회 부여를 위해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와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주변)내 준대규모점포(SSM) 개설할 경우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 환경 변화에 따라 규제존속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몰연장

**규제내용** 석탄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 석탄산업 유지·보호를 위해 석탄광업자 등에게 석탄수급조정 조치에 따른 의무 부과

**심사결과** 상시 석탄 수급안정 및 자생력이 부족한 국내 석탄산업을 유지·보호하기 위해서 석·연탄 생산, 비축, 사용·유통, 가격 등에 대한 유사시 정부의 조정 기능이 필요, 석탄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규제존속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몰연장

**규제내용** 광업권출원 제한 등

- 석탄산업 합리화로 폐광된 구역에의 광업권 등 출원 제한

**심사결과** 탄산업합리화로 폐광된 탄광에 대해서 또다시 광업권 출원을 허용하게 되면 정책일관성 훼손 및 정부 재정 낭비 및 부담가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 석탄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규제존속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몰연장

**규제내용**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 공공기관 등에게 중소기업 인증신제품을 20%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부과

**심사결과** 공공조달은 NEP인증 중소기업의 초기시장 창출 역할을 하고, 대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규제는 유지할 필요, 다만, 중소기업 의무구매비율 20%를 두는 것은 대기업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증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이므로 10%로 낮추도록 개선 및 일몰연장

**규제내용**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보증 한도 제한

-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액 한도를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로 한정



**심사결과** 보증한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 과도한 신용공여로 인해 조합의 부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증한도를 제한함으로써 보증사고 발생에 대한 조합의 지급여력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금융적인 안정망 구축이 필요, 시장환경변화와 조합의 경영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규제존속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몰연장

**규제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각종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의무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계속 시행이 필요하므로 일몰해제

## (22)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강화**

- 영업전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시설에, 실내 권총사격장, 실내 골프 연습장을 추가

**심사결과** 실내 권총사격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은 칸막이나 개별 방의 형태로 구성되어 화재 발생 시 사전 인지가 어렵고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영업전에 전기적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 소방시설물 안전관리대상에 실내 권총사격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이 추가된 타법사례와의 규제균형을 고려할 때 적절한 규제로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강화**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을 현행 기준보다 100% 상향 조정, 기술인력을 현행 기준보다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용장비에 적외선열화상 카메라, 전기품질분석기를 각각 1대씩 추가

**심사결과** 규제 강화로 기술인력 요건을 50% 상향 조정시, 전체 사업자의 45.3%가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특히 이해관계자들이 상당수 반대하고 있는 등 큰 이견이 존재하여 중요규제로 분류하고 기술인력요건 강화부분은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제재부가금 부과율 세부기준 **강화**

- 제재부가금 부과구간을 5천 만원 이하 구간 신설 및 1억원 초과 구간을 4개로 분할하는 것으로 조정
- 제재부가금 부과율 상향(현행 20~100% → 50~300%) 및 계산방식 변경(현행 누진제 → 초과누진제)
- 제재부가금 가중 근거 및 기준 신설

**심사결과** 현행 제재부가금의 부과 구간 폭이 실제 R&D 과제별 지원규모를 고려할 때 비현실적으로 분할되어 있어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현행 부과율이 모법(부정사용금액의 5배이내)에 비해 과소하므로 모법의 위임취지에 맞게 상향조정 및 구간경계에서 제재부가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산방식을 초과누진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강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유(기간) 추가 및 동일 연구과제 2개이상 위반행위시 참여제한 기간 합산 규정

**심사결과** 출연금 부정사용시에는 제재부가금과 참여제한이 모두 가능하나, 그 외 협약 위반에는 참여제한만이 유일·실효적인 제재 수단이라는 점에서 제한사유추가는 필요하고, 여러 위반행위가 각기 다른 연구과제에서 발생하면 참여제한기간이 합산되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동일 연구과제에서 여러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기간합산이 필요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허가 **강화**

-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에 로딩암 설치 의무화
- LPG충전소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기준
- 사후적 이격거리 미충족시,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기준



**심사결과** 가스 이·충전은 매우 위험한 가스취급 작업이므로 금속재질의 로딩암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내 태양광발전설비는 충전소의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설치가 허용되어야 하므로 설치기준이 필요하고 그 수준이 적정함. 또한 충전소가 설치된 후 주변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이격거리규정을 충족치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필요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강화**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일정규모 이상 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한 경우 저장설비 주위 등에 시공표지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

**심사결과** 누가 어떤 시공을 하였는지 공시하여 시공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양질의 시공을 유도하여 시설미비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고, 시공표지판 부착에 따른 비용보다 시공자의 책임의식 제고에 따른 사고예방이라는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2. 중소기업청

◎ 집필자 박성준 사무관 ☎ 044-200-2398 ✉ econlaw@pmo.go.kr

### 가.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5년도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8개 법령 개정안, 신설 11건, 강화 1건 등 총 12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2건 중 12건 원안의결 하였음

#### 중소기업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2.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예비심사 (2015.04.1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4.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4.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2015년 도래 재검토행 일몰규제 심사안	경제분과 (2015.09.18)	-	일몰규제 9건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30)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30)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b>계</b>	-	<b>원안의결 12</b>	<b>신설 11, 강화 1 (비중요 12)</b>



## 나.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입찰참가자격 제한요건 **신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기준인 누산점수를 5점으로 하향 조정

\* 누산점수(직전 3년 기준) = 별점의 합 - 경감점수의 합(교육이수 실적 등)

**심사결과**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최근 3년간 누적별점 10점)이 '08년도 법 개정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기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시행을 위해 누적점수 하향 조정으로 규제 강화 필요하고, 유사법령과 비교하여 규제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2)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도시형 소공인 업종 **신설**

- 도시형 소공인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 소공인에 해당하는 범위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 중소기업 중에서 경영환경이 어렵고 고령화, 전문 기술인력 양성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형 소공인에 대한 법령 입법화를 통한 대책 지원 강화를 위해 범위를 정하고 있는 점, 제조업 적용 24개 업종 중 장치산업은 일정지역에 집적성은 있으나 노동집약도나 숙련기반이라는 도시형 소공인 특성과 배치되는 면이 있으므로 제외하여 소공인 범위의 적정성 확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기준 **신설**

– 도시형 소공인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준을 규정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준〉**

행정 구역		도시형소공인 수
특별시·광역시	읍·면·동	50
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동	40
	읍·면	20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시행하고 있는 소공인 특화지원 센터를 동단위 동일업종의 소공인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 점, 평균적인 도시형소공인 수가 행정구역 간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도·특별시·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구역별 차등 기준을 적용하여 부작용 최소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 **신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유사한 명칭 사용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재단”,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부과 규정 신설이 필요하고, 유사입법례에서도 유사명칭 사용 제한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준액 비교시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소기업 범위 기준 **신설**

– 소기업 범위기준을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

구 분	현 행 (~'15)	개편안 ('16~)
적용지표	상시근로자수	3년 평균 매출액
업종분류	18개 업종 (모든 업종 대분류)	41개 업종 (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그 룹	2그룹 (50-10명)	5그룹 (120-80-50-30-10억원)

**심사결과** 중소기업 범위가 3년간의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정('15년 시행)됨에 따라 소기업도 범위기준 조정이 필요한 점, 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여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 근로자 고용을 늘리지 않는 피터팬 증후군을 예방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특히 제조업)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5) 2015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안 (일몰규제 9건)

구분	계	규제 폐지	규제개선			규제존속		
			일몰 연장	일몰 해제	일몰 변경	일몰 연장	일몰 해제	일몰 변경
중소기업청	9	0	1	0	0	5	3	0

**규제내용**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46조)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심사결과**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란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회사이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란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조합을 말함.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조합은 설립요건이 엄격(납입자본 50억원 이상, 전문인력 및 시설 요건 등)하고 정부에 결산보고 및 감사 의무가 있으며 행위제한이 있고,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대상으로 공공성이 매우 큼. 또한, 여신전문금융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이 유사 조항을 두고 있고, 일반기업이 창업 투자회사 및 조합의

명칭을 사칭하여 불합리한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의 존속 필요. 한편,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 정책 환경 변화 가능성이 거의 없고 유사명칭사용은 기한에 관계없이 계속 금지할 필요가 있어 일몰해제 동의

**규제내용**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유사명칭 사용금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심사결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진흥 및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정부 출연금 내지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중소기업청의 지도·감독을 받을 의무가 있는 공공성이 큰 기관임. 타 기관이 유사명칭 사용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관계자의 혼란 및 피해가 우려되어 규제존속 필요. 한편, 공단은 임시기관이 아니라 항구적인 기관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정책 환경의 변화 가능성이 거의 없어 일몰해제 동의

**규제내용** 동의에 의한 특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려는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심사결과**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주체는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이며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은 토지소유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어 진행되어야 함.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도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와 유사한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도 규정되어 있음. 한편, 이 법 제4조에서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정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정법 제28조제7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에 비해 본 규제는 동의율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적정성이 인정되어 규제존속에 동의. 한편, 동 규제는 1996년에 도입되어 약 20년간 유지된 규정으로, 그동안 72개의 시장정비사업을 추진 및 완료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지금까지 없었으나, 향후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일몰 연장 필요



**규제내용**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도정법 제13조에 따라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심사결과**

추진위원회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조합 설립 준비 업무 등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립이 필요하며, 설립시 정비사업의 주체인 토지소유자의 동의 필요. 또한, 동의율(과반수)은 정비사업의 기본법인 도정법을 준용한 것으로 정비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절차적 민주성을 적절히 충족시키는 비율로 검토되어 규제의 적절성 인정. 한편, 향후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의율 등 규제의 개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일몰연장 필요

**규제내용**

사업시행인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

-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에 제49조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하여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함

**심사결과**

시장정비사업 추진시 임차 소상공인은 임대료 상승, 영업장 상실, 영업활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토지소유자와의 분쟁을 유발할 수 있음. 이러한 입점상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법 제49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 수행시 입점상인 보호대책 수립·시행의무가 있으며, 시·군·구청장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에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제는 적절하여 규제 존속 동의. 한편, 향후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의 개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일몰 연장 필요

**규제내용**

대규모점포의 등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났을 때 그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

**심사결과**

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이 법과 도정법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로서, 시장정비사업 추진시 대규모점포의 개설 필요.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서는 대규모점포 개설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의무 발생. 따라서, 이 규제는 타 법령상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규제 존속에 동의. 한편, 향후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의 개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일몰 연장 필요

**규제내용**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대한 자료제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제7항)

–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심사결과** 이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상인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부나 지자체는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 정부 지원금의 관리, 정산 및 추진실적의 확인 등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에게 서류제출요구권이 필요하며 이러한 규제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있는 타 법령에 존재하는 규정으로 규제 존속에 동의. 한편, 향후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의 개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일몰 연장 필요

**규제내용** 장부 등의 조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0조제1항)

– 중소기업청장, 시·군·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자금, 비용,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장과 상점가, 법인·단체 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시설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심사결과** 이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및 시·군·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자금, 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지원자금의 집행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위의 제출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도록 하여 지원자금이 목적에 부합하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타당한 규제이므로 규제 존속에 동의. 한편, 출입조사권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모든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일몰 연장의 실익이 없어 일몰 해제 동의



- 규제내용**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
- 별점을 받은 위탁기업의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명령 운영절차,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이양 대상 업종 및 품목 지정

**심사결과** 이 운영세칙 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해당하는 제7조~제15조를 대체하는 “중소기업 사업조정 시행세칙”을 새로이 제정(‘14.4.11시행)하였으므로, 새 시행세칙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도록 개선권고함. 한편,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와 관련된 내용은 대·중소 기업의 기업환경 및 시장상황 등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수정될 필요가 있어 일몰연장을 통해 주기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

##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 심사내용** 개인투자조합 법인·단체 조합원의 참가 기준 **신설**
- 개인투자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법인·단체 기준으로 벤처기업 및 창업자에 투자·출자하는 것을 사업내용에 포함하고 있을 것과 최소 1백만원 이상 출자할 것을 규정

**심사결과** 법인·단체 투자자의 외형을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벤처·창업자에 투자하지 않는 법인이 조합에 참여할 경우 조합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 효율적인 조합원 관리를 위해 최소 출자금액 기준은 필요하다는 점, 동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심사내용**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신설**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등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을 규정

**심사결과** 오락·유희와 관련되거나 중소기업 기술개발·육성과 관련이 없는 업종은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당 업종분류(상위분류)에 속하는 업종(하위분류) 중에서 제외 필요성이 있는 업종을 선별하여 열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협업기업의 선정기준 **신설**

- 협업기업 선정 기준 중 제외 업종 기준 규정, 주점/노래연습장/무도장/골프장은영/캠블링 및 배팅/담배·주류 도매업 및 여관업 및 기타 숙박업/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제외

**심사결과** 오락·유흥과 관련된 업종이나 산업전문성과 관련없는 업종은 ‘협업’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벤처기업법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아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전담기관의 지정 **신설**

- 협업지원 전담기관 지정요건 규정,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주요업무로 하고, 전담조직과 인력 보유 및 정보시스템 및 시설 보유할 것을 규정함

**심사결과** 협업참여기업의 영업비밀을 취급하고, 과제성과를 관리해야하므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인력, 시설 요건은 필요하고 해당 요건들은 전담기관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할 내용이므로 규제가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전담기관 행정처분의 기준 등 **신설**

- 협업지원 전담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위반행위	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지정취소

**심사결과** 정부가 지원한 예산의 투명한 집행 및 전담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부적절한 지정기관에 대해 제재조치를 두는 것은 필요하고, 제제사유가 상위법에서 열거한 사유와 동일하고 추가된 것이 없다는 점, 제제수준이 타법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다는 점에서 규제가 적절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구매 정책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보고 요청 및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대해 유형과 위반정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필요성이 있고, 개별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액 범위 내에 있으며, 감경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 타입법례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 (9)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강화**

- 제재부가금 부과율 상향(현행 20~60% → 50~300% 상향) 및 계산방식(현행 누진제 → 초과누진제) 변경
- 제재부가금 가중요건 구체화(출연금 상당부분 부정사용 → 100분의 50이상 부정사용)

**심사결과** 연구비의 용도의 사용행위를 실효적으로 근절하고 국가연구개발의 책임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해 규제가 필요한 점, 구간경계에서 제재부가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산방식을 초과누진제로 변경할 필요한 점, 제재부가금 가중여부 판단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해, 가중요건은 모호한 표현을 배제하고 명확하게 수치화 할 필요한 점, 제재부가금 제도를 운용중인 산업부·미래부·중기청 3개 부처가 협의 하에 공통안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이 적정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 3. 특허청

◎ 집필자 박성준 사무관 ☎ 044-200-2398 ✉ econlaw@pmo.go.kr

#### 가.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5년도에는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등 2개 법령 개정안, 신설 4건 등 총 4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건 중 4건 원안의결 하였음

#### 특허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0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 미생물기탁기관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0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 나.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지정 **신설**

- 산업재산권 정보화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변경(현행 기준 중 2개가 삭제되고, 새로운 기준 추가)

#### 〈정보화전문기관 지정기준 변경〉

현행	개정안
1. 산업재산권정보제공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1. <u>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u> 일 것
3. 산업재산권정보제공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갖추고 있을 것	3. <u>산업재산권 정보화업무를 수행한 실적</u> 이 있을 것



**심사결과**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및 활용 촉진, 정보서비스업 육성 등은 공익적 성격의 업무로서 수행하는 기관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므로 비영리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 산업재산권 정보화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정보화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확대된 전문기관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정보화 업무 경험은 필요하다는 점, 타법령과 비교하여도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지정 **신설**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기관 지정 기준(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수행하였거나 유사한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을 보유할 것,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갖출 것,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갖출 것)

**심사결과** 해당업무 수행 및 사무공간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회사”를 정의하는 기본적인 요소에 해당하므로 기준으로 필요하고, 보안 체계 구축은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타당함. 특정한 우수 업체를 지정하여 육성하려는 것이 아닌 현재 활동 중인 업체들을 전문회사로 지정하여 수요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의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비중요 규제로 판단

## (2) 미생물기탁기관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미생물기탁기관의 지정기준 **신설**

- 미생물 기탁기관 지정 등에 관한 요건

요건	내용
존속기간	○ 대한민국 영토 내 계속적 존재
인력	○ (자격)미생물 분야 관련 <u>학사이상 학위</u> 보유자 또는 미생물 수탁·분양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험자 ○ (직원수)계획공고에서 정하는 업무분야 별 1명 이상
시설	○ 수탁 미생물을 생존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u>전문장비</u> ○ <u>화재대비안전관리체계</u> 및 <u>비상전원공급체계</u> ○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체계

**심사결과** 특허출원과 관련해 기탁된 미생물은 조약에 의해 30년 이상 보존되어야 하고, 미생물의 배양·보존에는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 미생물의 수탁 및 장기 보존을 위한 보관방법이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므로 이를 위한 전문장비를 확보할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동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미생물기탁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 **신설**

- 미생물 기탁기관 지정 등의 취소에 관한 요건으로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규정

**심사결과** 지정요건으로 규정된 사항은 미생물 기탁기관이 갖추어야 할 필요·최소한의 요건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정 등을 취소하는 것은 규제가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



## 제4절 국토·해양 분야

### 1. 국토교통부

◎ **집필자** 한승민 사무관 ☎ 044-200-2423 ✉ foreverlg@pmo.go.kr  
 최인기 사무관 ☎ 044-200-2424 ✉ cyc1512@pmo.go.kr

#### 가.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5년도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7개 법령에 대해 신설 67건, 강화 52건 등 총 119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19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1.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1.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2.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2.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경제분과위 심사 (2015.02.17)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3.02)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7)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5.03.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건축물의 범죄예방고시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5.03.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5.03.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4.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4.10)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4.10)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4.13)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14)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5.04.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5)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4.20)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16)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4.20)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4.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경제분과위 심사 (2015.05.11)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1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6.15)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2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6.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1)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6.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예비심사 (2015.06.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15.06.29)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24)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7.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5)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7.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6)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7.15)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27)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7.15)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3 (비중요 4)
(28)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9)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2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9.0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2)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 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5.09.0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3)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9.11)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3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9.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9.14)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36) 특수구조 건축물 세부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5.09.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7) 실내건축의 구조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5.09.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8)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9)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05)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40) 2015년 도래 채검토형 일몰규제 심사안	경제분과위 심사 (2015.10.05)	-	일몰규제 4건
(41) 건축구조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19)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4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45)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26)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3 (비중요 4)
(46) 교통안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02)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0)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5.11.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02)	원안의결 5	신설 2, 강화 3 (비중요 5)
(5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02)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53)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09)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54)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0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09)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56)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5.11.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7)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8)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2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59)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0)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1)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2)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2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6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04)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6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04)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66) 초소형자동차의 임시운행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5.12.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8)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5.12.04)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69)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1)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1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73)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5)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2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7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7)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8)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b>계</b>	-	<b>원안의결 119</b>	<b>신설 67, 강화 52 (비중요 116, 중요 3)</b>

## 나.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강화**

- ‘지진구역 I’ 지역에 ‘중요도 특’ 건축물을 설계할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구조안전확인)을 받도록 규정

구 분	현 행	개 정 안
6층 이상 건축물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의무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의무
3~5층 건축물	건축사 재량으로 구조기술사 협력 여부 판단	지진구역 I의 중요도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의 협력 의무화

\* (현행)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을 확보하여야 함

#### 참고사항

- 지진구역도란 지반운동 가속도를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각 지역의 지진위험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I (Highest hazard)과 II (Low hazard)로 구분

지진구역 I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 경기, 강원남부(강릉, 동해 등), 충남·충북, 전북, 전남 북동부(광양, 나주 등), 경남·경북

지진구역 II  
 ○ 강원북부(속초, 춘천 등), 전남 남서부(목포, 강진 등), 제주도

- 중요도 계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내진설계 시 적용하는 값으로 ‘특·1·2·3’으로 구분됨

특  
 ○ 1천㎡이상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국가·지자체 청사, 외국공관, 소방서,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1  
 ○ 1천㎡미만인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국가·지자체 청사, 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 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운동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 학교, 5층 이상인 숙박시설·오피스텔·기숙사·아파트  
 ○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등

2  
 ○ 중요도 (특), (1), (3)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3  
 ○ 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 가설구조물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내진설계 건축물 중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구조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 관계기술자 협력 대상이 규모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종합병원·발전소 등 지진발생 시 큰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은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되며, 대상을 ‘지진구역 1’의 ‘중요도 특’ 건축물로 한정하여 이해관계자의 반발 또는 이견이 없다는 점을 반영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강화**

-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방화문은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되는 방화문의 차열성능을 의무화하여 화재 시 안전한 대피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방화문 관련 기준이 차염성 및 차연성 위주의 성능 확보만을 규정하고 있어 화재 열로 인한 피해에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차열성 확보대상이 일반 방화문이 아닌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방화문으로 한정하여 이행규제의 성질과 그 목적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배기설비 설치기준 강화 **신설**

- 주택의 부엌·욕실 및 화장실 배기구 설치 시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전용배기설비를 갖추도록 규정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다른 세대에서 배출되는 연기 또는 냄새가 역류·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기구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입주민 간 분쟁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4)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유사명칭 사용자에게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

-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동일명칭을 사용한 경우 400만 원 이하,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심사결과** 본 규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유사(동일)한 명칭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혼동과 피해 예방 및 공사의 소유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또한 상위법의 위임 범위(500만 원 이하) 안에서 정하고 있어 적절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신설 **신설**

- 건축 인·허가 시 건축주가 제출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에 대한 검토 수수료의 구체적 금액 및 감면사항 등을 규정
  - (제출대상)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다만, ① 단독주택, ② 동·식물원, ③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일부 건축물은 제외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연면적 크기에 따라 수수료 부과

제출대상면적합계(㎡)	주거부분 수수료(원)	비 주거부분 수수료(원)
1,000 미만	211,000	317,000
1,000 이상~1,500 미만	317,000	422,000
1,500 이상~2,000 미만	422,000	634,000
2,000 이상~3,000 미만	592,000	845,000
3,000 이상~5,000 미만	761,000	1,057,000
5,000 이상~10,000 미만	930,000	1,268,000
10,000 이상~20,000 미만	1,099,000	1,480,000(1만~1.5만) 1,691,000(1.5만~2만)
20,000 이상~30,000 미만	1,268,000	1,902,000
30,000 이상~40,000 미만	1,437,000	2,114,000
40,000 이상~60,000 미만	1,606,000	2,325,000
60,000 이상~80,000 미만	1,776,000	2,537,000
80,000 이상~120,000 미만	1,945,000	-
120,000 이상	2,114,000	-



- (감면대상) 친환경주택사업 승인 건축물, 제로에너지빌딩 건축물, 일정면적 이하로 증축하는 건축물, 소규모 건축물 등(의무사항 검토 시)

**심사결과** 수수료 부과 필요성 및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중요규제로 검토하였으나, 본제도의 원활한 집행 및 법적 완결성 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은 인정되며, 수수료 부과 수준 역시 실비수준으로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나,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허가 업무 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 경감을 위해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처리기한을 하위 행정규칙에 명시하도록 부대권고

## (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측량용역 사업수행 능력의 평가기준 **신설**

-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측량업자의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 항목과 배점\*을 구체적으로 규정

\* 항목(배점) : 기술자능력(50), 측량용역 수행실적(30), 건설도(10), 신용도(8), 교육이행실적(2), 감점 평가기준(△10) 등

**심사결과** 본 규제는 측량용역 발주자가 건설하고 적정한 측량업자를 쉽게 확인·선정할 수 있도록 측량용역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공시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유사입법례와 비교할 때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이 적절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측량용역 사업수행 능력의 평가 및 공시신청서 제출 **신설**

-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측량업자가 '측량용역 사업수행 능력평가·공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정함

\* 측량용역 수행실적 현황표,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표 등

**심사결과** 본 규제는 '측량용역 사업수행 능력의 평가기준'의 부수적 규제로서, 측량용역의 수행실적 제출 등 법률(제10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본 규제의 신설로 연간 약38백만 원의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평가 및 공시제도 구축시 연간 약 360백만 원의 편익(실적증명서 발급비용 절감)이 기대되는

만큼 규제 신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측량업자의 의견을 반영한 바,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7)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유지 **신설**

– 초경량비행장치를 제작한 자\*가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를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였고, 그 설계에 일치하도록 제작하였음을 보증하도록 규정

\* 완제품 제작자, 키트 제작자, 키트 조립제작자 등

–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에게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고, 제작자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여야 함을 규정

**심사결과** 본 규제는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자 및 소유자가 지켜야 할 제작 및 운용에 관한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최소한의 감항성 기준 제시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인 만큼 규제신설의 타당성이 인정됨. 본 규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작자 및 소유자의 주요의무는 안전성 시험절차 이해, 정비일지 작성 등으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예고 기간 중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8) 건축물의 범죄예방 고시 기준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에 관한 기준 **신설**

– 건축물\* 범죄예방 세부기준 규정(의무사항만 기술)

\* 공동주택, 일용품 소매점(1종 근린), 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교육연구시설(연구소·도서관 제외),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오피스텔

\*\* 단독주택·다세대 주택·연립주택 및 500세 미만 아파트는 동 기준 권장 적용

•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CCTV를 설치, △고립지역, 지하층(주차장과 연결된 경우 한정),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 계단실(1개 이상) CCTV 설치, △비상벨 설치(차로와 통로 및 동 출입구 기둥), △세대 현관문·창문은 KS F 2637/2638 기준에 적합



-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출입문·창문·셔터는 KS F 2637/2638 기준에 적합, 차도와 보행로가 함께 있는 도로에 보행자등 설치
  - \*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오피스텔
- (일용품 소매점) 출입구 및 카운터 주변에 CCTV 설치, 비상연락시설 설치(경찰서 직접 연결)
- (다중생활시설) 건축물의 출입구에 CCTV 설치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범죄예방 설계 제도가 법률에 도입(14.5.28 개정)됨에 따라 준수해야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CCTV, 비상벨, 보행자등 설치 등에 따라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세대 당 95만 원 이하 추정)되며, 범죄율 감소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 절감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의 편익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신설**

-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500만 원 이하)의 세부 부과 기준 마련
  - 우수건축자산의 거짓 등록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200만원
  - 우수건축자산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이전·철거 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 우수건축자산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이전·철거 시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1·2·3차 위반 시 500만원

**심사결과** 동 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의 세부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률 이행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세부기준 역시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 횟수별로 차등 산정하여 그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10)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특별관리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신설**

- 특별관리지역에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 (건축물의 건축 등) 국방·군사 및 교정시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주거·생활편의·  
**생업을 위한 시설\***,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설 건축물 등
    -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 주민 공동이용시설
  - (용도변경) △주택↔근린생활시설, △주택→박물관·미술관·종교시설·노유자시설,  
 △공장→연구소·연수원·교육원·도시형공장 등
  - (기타) 토지분할(330㎡ 이상), 물건적치(1~36개월), 토석채취,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옹벽·사방시설 등의 설치 등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제도가 법률에 도입됨에 따라 허용 개발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피규제 대상은 광명·시흥 지역으로 한정되며, 본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상기 개발기준은 개발제한구역 내 기준에 비해 완화되어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제도 실효기간이 10년 이내인 점, 산업단지·물류유통단지 등 지자체가 개발계획 추진 시 해제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중요 규제요 분류하여 원안의결

##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의 행정처분기준 **강화**

- 운송사업자가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1차 사업일부정지 20일, 2차 사업일부정지 50일, 3차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처분 규정 명시
-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사업전부정지 30일, 2차 사업전부정지 60일, 3차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처분 규정



**심사결과**

본 규제는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구체화 하려는 것으로, 위수탁제\*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위수탁차주\*를 보호하고, 부정할 금품 거래 등 비정상적 관행의 근절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됨. 상위법의 위임 근거\*\*가 명확하고, 위반정도에 따른 처분수위도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으며, 유사처분례와 비교할 때 규제의 강도도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 화물운송시장에서 '지입제'와 '지입차주'로 통용

\*\* 허가취소·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19조 제3항)

\*\*\*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심사내용**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강화**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할 금품을 주고받는 경우 과징금 부과 처분
  - \* 일반화물 360만원, 개별화물 180만원, 용달화물 180만원,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360만원
-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부과액 증액

구 분	현 행	개정안
일반화물	120만원	300만원
개별화물	60만원	150만원
용달화물	60만원	150만원

\* 일반화물(허가기준 1대 이상) : 5톤 이상 화물자동차

\* 개별화물(허가기준 1대) : 1톤 이상 5톤 미만 화물자동차

\* 용달화물(허가기준 1대 이상) : 1톤 미만 화물자동차

**심사결과** 본 규제는 운송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 간의 부정거래 금지 위반 또는 개선명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금품 거래 등 비정상적 관행의 근절 및 위·수탁차주 보호 차원에서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됨. 위임 근거\*가 명확하고, 위반정도에 따른 처분수위도 상위법의 위임\*\* 범위 안에서 정하고 있으며, 유사입법례와 비교할 때 과징금의 금액이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21조 제2항)

\*\* 제21조(과징금의 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같음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1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견본주택 건축기준 강화 **강화**

– 도시형 생활주택 등 특정 주택\*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견본주택 건축기준(규칙 제8조의2)\*\*을 준수하도록 규정

\* 고층자 주택, 조합 주택, 외국인 주택 등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주택

\*\* <견본주택 건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 ① (배치) 견본주택은 견본주택 건설대지와 인접한 대지의 경계로부터 3M 이상 분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1.5M 이상 분리)
- ② (구조) 1) 각 세대에서 외부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출구 설치(1개소 이상),  
2) 각 세대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설치
- ③ (유지관리) 각 세대 안에는 소화기 2개 이상 배치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견본주택 건축기준을 준수해야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가설건축물 이더라도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특성 상 특정 기간에 다수 방문객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전규제의 강화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건축기준은 이미 다른 견본주택 건축 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규제 적정성 및 이행에 관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무주택 인정기준 **신설**

-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세대 내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할 경우 무주택자 인정규정의 적용을 배제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감사원 감사결과(12년)를 반영하여 임대주택 공급 규정의 불합리함을 해소코자 임대주택 공급 시의 무주택자 인정기준을 강화하는 사안으로, 현행 기준만으로는 실제 거주 가능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임대주택을 공급받는 것이 가능하여 이를 통해 임대소득을 올리거나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5)**

**심사내용**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 **신설**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을 규정

기술인력	장비	사무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퓨터, 온도·습도계</li> <li>○ 컴퓨터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프로그램</li> <li>○ 표면온도계 등</li> </ul>	사무실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유사업종의 등록요건과 비교 시 과도한 수준은 아니며, 인력 및 시설요건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하여 입법예고안에 비해 **완화\*\*** 되었고, 그린리모델링사업자 등록을 위한 추가적인 인력고용 및 사무실 확보에 따른 사업자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기존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 사업,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그린리모델링사업, △그린리모델링 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인력요건) 설계·시공·설비 중 2개 분야 특급기술자 포함하여 중급기술자 각 1인 이상 (시설요건) 사무실 50㎡ 이상

〈유사입법례〉

법령	사업자 분야	등록요건
녹색건축법	그린리모델링	중급기술자 1명 또는 에너지평가사 1명 / 장비 / 사무실 보유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특급기술자 1명 포함 10명 이상 / 자본금 1.5억원 / 사무실 보유
	설계 등 용역	특급기술자 1명 포함 7명 이상 / 자본금 0.5억원 / 사무실 보유
	종합분야	특급기술자 2명 포함 15명 이상, 자본금 2억원 / 사무실 보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엔지니어링 사업자	특급기술자 1명 포함 10명 이상, 자본금 3억원 / 사무실 보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자재	기술자 2명 이상 / 자본금 2억원 / 사무실 보유
건축사법	건축사사무소	건축사(특급에 준함) 1명, 사무실 보유

심사내용 건축물에너지평가서 응시자격 등 **신설**

– 건축물 에너지평가서에 대한 응시자격을 규정

구분	자격증 또는 학력	실무경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직무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기사	2년
	산업기사	3년
	기능사	5년
	관련학과 4년제 대학	4년
	관련학과 3년제 대학	5년
	관련학과 2년제 대학	6년
	-	7년
	기술사	-
	건축사	-

※ 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자율 인증) 업무 중 평가부분 담당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에너지평가사가 국가자격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험 응시자격을 규정하는 것으로 에너지평가사의 질적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도 자격증·학력·경력 등의 최소 응시자격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한 불가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사\* 등 타 국가자격제도 응시자격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진입규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분류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 해당 직무분야 기술사, 기사+경력4년, 산업기사+5년 경력, 관련학과 대학졸업 +6년, 9년 경력



**심사내용** 건축물에너지평가서 교육 등 **신설**

-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 3년마다 2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교육이수의무 자체는 법률 사항이며, 개정안에서는 교육 시간을 규정)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에너지평가사 의무교육 시간을 규정하는 것으로 유사 국가자격의 보수교육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적정수준으로 판단되며, 집체교육(8시간)뿐 아니라 온라인 교육(12시간)을 병행하여 피교육자의 부담을 최소화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수준으로 책정(10만 원 잠정)하였는바 비중요 규제료 분류하여 원안의결

**심사내용** 건축물에너지 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처분 **신설**

- 에너지평가사 자격취소 및 정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업무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취소
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여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 2년
다. 그 밖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자격정지 1년
2)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에너지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가.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나. 1회 대여한 경우	자격정지 3년
다. 자격증 대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자격취소
3)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한 경우	자격취소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에너지평가사 자격 취소 및 정지처분에 땀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로 상위법 상 위임근거가 명확하며, 일반적인 국가자격제도의 자격취소·정지 등의 처분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료 분류하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과태료의 부과 징수 **신설**

–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

위 반 행 위	과태료
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100
다. 일사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00
라. 단열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지능형 계량기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00
마.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전문기관	300
바.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00
사. 녹색건축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경우	
1) 녹색건축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2)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경우	100
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경우	
1)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2)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경우	100
자.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법률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며, 부과액은 법률에서 정한 범위(2,000만 원) 이내로, 일반적인 입법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 (14)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준 신설 **신설**

대 상	건설 기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또는 표준바닥구조*** (I 형식)에 적합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오피스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또는 표준바닥구조(II 형식)에 적합

\* 주상복합에 해당, 일반적인 아파트는 주택법령상 층간소음 기준 준수

\*\* 「주택법」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인정 기관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을 확인한 바닥구조(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 경량충격음 58 데시벨 이하)

\*\*\* 콘크리트 슬라브, 완충재, 마감 모르타르, 바닥마감재 등으로 구성된 일체형 바닥구조

- (적용제외) 발코니·현관·세탁실·대피공간·창고·아래층 공간이 비거주 공간, 최상층 천장 등은 적용 제외

**심사결과** 동 제정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방지 대책이 법률에 도입됨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설계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성능기준만을 인정하는 「주택법」상 기준과는 달리 제정안에서는 **시방기준\***과 **성능기준\*\*** 中 하나를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제 이행수단의 폭이 넓어 피규제자의 부담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제정안에 따라 건축주에게 공사비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기구당 140만 원)하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 완화 및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편익을 감안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 시방기준(표준바닥구조): 콘크리트 슬라브, 완충재, 마감 모르타르, 바닥마감재 등으로 구성된 일체형 바닥구조로 층간소음 방지 시공방법 규정

\*\* 성능기준(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중량충격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 충격력이 큰 충격음) 50dB 이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벼운 충격음) 58dB 이하

### (15)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강화** &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해 후방카메라 또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의무설치하도록 하고, 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중 하나로, 국회 및 언론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대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지적한 바, 사회적 공감각 형성되어 있음을 고려하였고, 다만 후방카메라·후진경고음 설치에 따른 2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는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예방에 따른 편익과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한편, 상기 의무 불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50만 원)는 상위법 범위 내(100만 원)이며, 같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금액과 비교하였을 때,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어 위 규제사무 2건에 대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 품목 확대 **강화**

- 자동차 부품자기인증\* 대상 확대(5개 → 13개)

\* 자기인증: 제조업체가 적격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본인 책임 하에 우선 판매하고, 정부는 문제발생 시 사후적으로 리콜(recall) 시행

현 행	개 정 안
브레이크 호스, 좌석안전띠, 전조등,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브레이크 호스, 좌석안전띠, 전조등,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소비자보호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기부품인증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안전 규제강화’ 및 ‘기업 활동 규제완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現 상황을 감안했을 때 자기인증제의 확대는 적절한 결정으로 판단됨. 또한 개정안에서 추가하는 품목 역시 기재부 주관으로 산업부·국토부가 협의(3.27)하여 업체부담, 통상마찰 우려 등의 논란을 최소화하여 결정한 점을 감안(입법예고 시 18개 품목 확대 추진 → 산업부와 협의하여 8개 품목 최종확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16)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 심사내용 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신설**

-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서식(붙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법 제27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산업과 관련한 기관, 법인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심사결과** 본 규제는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공간정보사업자 신고의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상 지원 대상 명확화 등 공간정보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됨. 신고서 양식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서’와 유사하고, 회사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재무현황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입법예고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신고서 이외의 첨부 서류 제출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피규제자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 〈입법예고 전·후 제출서류 비교〉

입법예고 前	입법예고 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서</li> <li>○ 공간정보기술인력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제반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기술자의 명단</li> <li>- 기술자에 대한 공간정보 자격, 학력,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li> </ul> </li> <li>○ 공간정보 장비를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제반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li> <li>-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li> <li>-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서</li> <li>※ 첨부서류 삭제</li> </ul>

### 심사내용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신설**

- 공간정보기술자로 신고하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할 경력신고서(붙임 별지 제13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규정

\* 경력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교육훈련 관련 서류, 상훈증 사본, 근무처 또는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증명사진 1장

**심사결과** 본 규제는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공간정보기술자 신고의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간정보 기술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경력증명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됨. 본 규제의 신설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도 1인당 약 57,790원으로, 유사 기술자 등록비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으며, 입법예고 기장 중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 규제비용 〉

- 등록 수수료 : 1,379백만 원(50,000원\*×27,583명)  
\* 현행 측량기술자 등록비 5만원 기준
- 신고서류 작성비용 : 약 77백만 원(2,790원\*×27,583명)  
\* 2014년 최저임금 5,580원을 기준으로 1일 0.5시간 인건비 산정
- 신고시 제도운영기관 방문 교통비 : 138백만 원(5천원\*×27,583명)  
\* 1회 왕복교통비를 버스비, 택시비 등의 통상적인 평균치 추정 산정

\* 건설기술자 등록비 : 50,000원, 측량기술자 등록비 : 50,000원

(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운송사업자의 책임 **강화**

- 구난 작업 전에 고장·사고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난비용을 사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제재 처분

**심사결과** 본 규제는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구체화 하려는 것으로, 위반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과 사전고지 의무제도의 도입목적(운송사업자-소비자 분쟁예방) 실현 등을 고려할 때 신설 필요성이 인정되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인 사전고지 의무(시행규칙 제21조제21호)의 이행은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이의 위반에 대해 행정제재처분을 하는 것이 피규제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 불임 ‘사고차량·고장차량 구난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구두고지(口頭告知)’만하면 되는 사항



## (1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자동차관리사업자 업무내용 전송 **강화**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업체)는 폐차 예정차량의 폐차장 입고를 입증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 내에서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차량의 앞·뒷면 사진을 촬영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교통안전공단)에 전송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일부가 도입 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중요 규제로 분류하여 심사하였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협회의 검인업무를 폐지하면서, 제도 보완책으로 폐차 인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폐차 사진 전송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폐차 예정차량의 사진 촬영·전송 등에 따른 비용 부담, 추가적인 절차의무 등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검인업무 폐지에 따른 폐차업체의 편익, 대포차량 등 불법행위 방지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감안할 때, 동 규제의 도입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1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 **신설**

- 자동차의 앞쪽에 부착하는 등록번호판의 접합부분은 볼트로 체결 하여야 하며,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용접 또는 리벳\* 등의 방법으로 체결하지 말 것
- \* 체결용 부품의 일종으로서 환봉(丸棒)에 여러 가지 모양의 머리가 달려 있다. 철판이나 강재 등을 겹쳐서 뚫은 구멍에 리벳을 꽂고 끝을 압착하여 체결한다.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앞쪽 등록번호판에 대한 올바른 체결 방법 및 불법 체결행위를 피규제자인 자동차 소유자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는 것으로 벌금 처분을 받게 되는 불법 체결행위에 대한 다의적 해석을 차단함으로써 행정청과 자동차 소유자 간의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는 등 규제 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부분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규·이전 등록 시 공인된 곳에서 등록번호판을 교부받아 '볼트'를 이용하여 체결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무상 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강화**

- 자동차 제작자 등으로 하여금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기술지도·교육을 제작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 또한 제작자 등에게 국내 판매중인 차량의 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정비장비와 자료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일반정비업체도 직영·협력정비업체와 차별 없이 차량에 대한 정비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정비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만큼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또한 이는 입안·입법예고 단계, 입법예고 종료 후 등 수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자동차제작자·정비부감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1)****심사내용** 환기구의 설치 시 안전기준 신설 **신설**

-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 환기구를 배치하고,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 설치\***하며,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

\* (예외사항) △개구부를 벽면에 설치하는 등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하고 덮개를 차폐하는 경우 △펜스 또는 조경 등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경우는 제외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14.10.17)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환기구 설치기준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설치기준 역시 배치·높이·강도 측면으로 규정하고, 높이 기준의 경우 2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의 경우는 예외로 하여 규제 이행수단이 획일적이지 않음. 또한 덮개 등의 강도 기준도 현재 일반적인 설계기준을 적용할 예정으로 이 역시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1)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심사내용** 골재 선별·세척·파쇄업 신고 시 사업부지 의무 보유기준 규정 **강화**

- 골재 선별·파쇄업: 사업부지 3,000㎡ 이상(현행 없음)
  - (현행) 없음 → (입법예고안) 7,000㎡ 이상 → (심사안) 3,000㎡ 이상
- 바다골재 선별·세척업: 사업부지 1,000㎡ 이상(현행 없음)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 시 일정면적의 사업부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15.7.7 시행)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면적을 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선별·파쇄업은 최소 필요 면적만을 측정하여 산출하였고, 바다 골재 선별·세척업은 ‘건설공사 표준폼셈’등을 근거로 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여 그 적정성이 인정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보고 원안의결

## (2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강화**

-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대상을 추가
  -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부실’\*로 통보받은 점검·진단 업체가 통보 후 1년간 실시한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 1종 시설물\*의 정밀점검결과(現, 제외)
    - \*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 공공관리주체가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한 정밀점검(現, 제외)
  - 공동주택 정밀점검(現, 30년 미만이거나 안전등급 B이상인 경우 제외)

### 〈관련 규제 체계도〉

구 분		주 기 (안전등급에 따라)	수행자	결과 평가 (시설안전공단) ⇒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한 점검 결과 평가
안전 점검	정기 점검	1년 3회 ~ 반기	○ 안전진단전문기관 ○ 유지관리업자	
	정밀 점검	1년 ~ 4년		
정밀안전진단		4년 ~ 6년 (준공일 이후 10년 후 최초 실시)	○ 안전진단전문기관 ○ 시설안전공단	

**심사결과** 동 제정안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 등이 실시한 점검결과에 대한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의 추가부담은 자료제출 이외는 없어 이를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국회(‘14.국감)·총리실(부패척결추진단) 및 감사원 지적사항은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2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전매행위 제한 특례규정에서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 제외 **신설**

-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특례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공급 후 2년 또는 완납이전 까지 전매행위를 제한하되,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부실징후기업, 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신규 공공택지 부족으로 입찰경쟁이 치열해 질 향후 3년간 국토부의 안을 수용하되, 국토부가 택지공급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재검토형 일몰(3년) 권고

\*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법률은 '18년 하반기 이후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18년 상반기까지는 전반적인 공공택지 공급 개선방안 검토·수립 필요

### (24)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피난대책 마련 **강화**

-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이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알릴 수 있도록 표시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부착
  - 정전 시에도 눈에 보이도록 할 것
  - 출입문과 출입구 위 벽면에 각각 부착할 것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피난용도 표시의무 규정이 법률에 마련됨에 따라 그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구체적 방법 역시 일반적인 비상구(EXIT) 표시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제 이행에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개정안에 따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비용(약 2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미미한 수준으로 국민의 생명보호 편익에 비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25)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항공기사용사업 등록기준 **강화**

- 항공기를 이용하여 비행훈련을 하려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현행 등록기준 외에 자체 훈련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규정

**심사결과** 본 규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한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비행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또 이를 준수토록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비행훈련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 만큼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본 규제의 적용대상은 항공기사용사업자(50개 업체) 중 ‘항공기를 이용하여 비행훈련업을 하는 자’로, 제한적(16개 업체)이며, 규제의 내용인 ‘자체훈련규정’ 보유 의무 또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피규제자의 거부감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미국에서도 비행훈련기관에 대한 기준(연방항공규칙 142)에서 ‘훈련기관 자체규정’(Company policy manual)을 두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며, 항공법 시행규칙에서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교육훈련규정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등 유사 입법례와 비교할 때 규제의 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 (26)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4)

**심사내용**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강화**

-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설치할 경우 주차용 또는 적치용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단차(段差)를 두거나 차단시설”을 설치



[그림] 단차1

[그림] 차단시설1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비상 시 이용하는 대피통로를 타 용도(주차장, 물건 적치)로 검용 되지 않도록 단차를 두거나 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의정부 화재(15.1월) 재발방지 대책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대피통로의 본래 기능을 고려할 때 단차 및 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건축주로 하여금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건축물 안전 강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라는 편익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건축물의 마감재료 **강화**

- (내부 마감재료) 난연성 재료를 써야하는 대상 확대

현 행	개 정 안
○ PC방(연면적 3백㎡ 이상)	○ PC방(규모기준 삭제)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위락시설(연면적 2백㎡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위락시설(규모기준 삭제)
○ 주택, 학원, 의료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유스호스텔, 오피스텔 및 장례식장 (3층, 연면적 2백㎡ 이상)	○ 주택, 학원, 의료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유스호스텔, 오피스텔 및 장례식장(규모기준 삭제)

- (외부 마감재료) 준불연 재료 이상을 써야하는 대상 확대

현 행	개 정 안
○ 상업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2천㎡ 이상) * 음식점, 영화관, PC방, 목욕장, 학원, 노래방, 산후조리원, 스크린골프장, 고시원, 사격연습장 등	○ 상업지역 내 제1·2층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연면적 2천㎡ 이상)
○ 고층건축물(3층 또는 120미터 이상)	○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

※ 불연·준불연·난연·일반 재료 비교

구 분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일반재료
가열시험	20분 (불에 타지 않는 정도)	10분	5분	시험 없음
주요 재료	콘크리트, 석재, 철강, 알루미늄, 유리 등	석고보드 등	난연합판, 난연플라스틱판	목재, 일반합판
일반패널기준 재료비(원/㎡)	불연재료 없음	23,500 (외벽 29천원)	21,500	17,500 (외벽 28천원)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의정부 화재(15.1월) 재발방지 차원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가 가능하도록 난연(혹은 준불연) 마감재료를 써야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난연재료의 경우 초기 착화(着火)까지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화재 골든타임이 “5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효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임. 또한 규제대상 역시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학원·6층 이상 건축물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화재 시 대형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건축물로 규정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지의 공지 기준 **강화**

- 상업지역 內 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강화
  - (現) 미 규정 → (改) 건축물별 0.5 - 6미터 이하(구체적 기준은 조례 위임). 단,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에 대해 민법상 규정(0.5미터)의 별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상업지역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의정부 화재(15.1월)발생 시 인접 건축물과의 사이가 매우 좁아(1미터) 그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하였으며, 동 개정안으로 건축주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만, 화재 피해 최소화에 따른 국민 생명·재산 보호 및 일조권·조망권 확보 등의 편익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건축물의 마감재료 **강화**

- 필로티 구조의 천장과 벽체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설치 시 준불연 재료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필로티 구조의 천장 및 벽체가 외기에 면하면서 사실상 1층의 외벽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연한 사항인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발생한 의정부 화재(15.1월)의 경우에도 주차 차량의 연소 이후 필로티 천장(스티로폼)으로 급속히 화염이 확산돼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였음. 또한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 건축 시 공사비가 상승하나 그 증가분은 세대 당 2만 원으로 미미하며, 건축물 안전강화에 따른 국민 생명 보호라는 편익과 비교 시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7)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강화 3)

**심사내용** 준 다중이용건축물 신설 **신설**

- (대상) 연면적 1천㎡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위탁시설,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장례식장
- (적용규제) △상주(常駐) 감리(現, 상주 또는 비상주 감리), △정기 및 수시점검\*(現, 비대상), △소방통로 확보(現, 비대상), △건축구조기술사 안전 확인(現, 건축사 안전 확인)

※ 다중이용건축물과 준 다중이용건축물 비교

구 분	다중이용건축물	준 다중이용건축물(안)	
적용 대상	〈연면적 5천㎡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	〈연면적 1천㎡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위탁시설,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장례식장	
적용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위원회 심의</li> <li>○ 책임감리</li> <li>○ 정기·수시점검</li> <li>○ 소방통로 확보</li> <li>○ 실내건축기준 적용</li> <li>○ 구조기술사 안전확인</li> </ul>	현 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주/비상주 감리</li> <li>○ 건축사 안전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주감리</li> <li>○ 정기·수시점검</li> <li>○ 소방통로 확보</li> <li>○ 구조기술사 안전확인</li> </ul>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국가정책조정회의, '14.12.18)」 中 하나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중·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최근 붕괴 사고의 원인이 감리자 역할 소홀 및 부실시공인 점을 감안할 때 상주 감리 의무화 및 유지관리점검 대상 확대 등의 대책은 적절·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소형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 확대 **강화**

- 건축물 건축 시 구조안전 확인(건축사 서명) 서류제출 대상 확대
  - (現) 연면적 1천㎡ 이상 → (改) 연면적 5백㎡ 이상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구조설계자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고, 책임강화를 통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규제대상은 연간 5천 건(전체 건축 건수 대비 6%)정도이나, 건축주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서류제출에 따른 단순행정비용 뿐으로 미미할 것으로 보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건축물의 피난·방화시설 기준 강화 **강화**

- 직통계단 설치대상 확대(안 제34조)
  - 정신과 의원(1층 근린생활시설로 입원실이 있는 경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화재피난 시설 등의 설치대상 확대 및 설치기준 규정(안 제46조)
  - (설치대상)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설치기준)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피난용 발코니, △대피가 가능한 구름다리 형태의 구조물 中 하나의 시설을 설치할 것
- 배연설비 설치 대상 확대(안 제51조)
  -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을 내화구조로 설치(안 제53조)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감사원 지적사항 및 장성군에서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화재피해가 컸던 주된 원인이 관련 규정이 미비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규제대상의 경우 요양병원·정신병원·장애인 시설 등 자력으로 피난이 어려운 이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한정하여 그 목적에도 부합하고, 동 규제 적용 대상은 신축 또는 용도변경 되는 건축물로 한정하여,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복합자재 품질관리 규정 **강화**

- 복합자재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건축물 대상을 규정
  - 종교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운수시설·위락시설·의료시설·숙박시설 등 내부 마감 재료를 난연재료 이상으로 써야하는 건축물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불량 복합자재 유통 방지를 위해 시공 시 복합자재의 난연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마련(15.10.7 시행)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검사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대상 건축물은 난연 성능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로 한정하여 동 제도의 취지 및 규제 목적의 정합성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복합자재 성능 확인 절차 추가에 따라 공사 시공자의 업무부담 및 성능시험에 따른 수수료(13~14만 원 예상) 부담이 생기지만, 정품 복합자재 사용에 따른 화재피해방지 및 국민 생명·재산 보호라는 편익을 고려하였을 때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28)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보고 **신설**

-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화물터미널운영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사항 추가

### 추가 의무보고대상 행위

-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법 제2조제8호사목)
- 그 밖에 항공보안법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법 제2조제8호아목)
  - \*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 음주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 \*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등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항공기 지연 행위 및 기내 소란행위 등에 대한 공권력의 신속한 투입을 위해 기내 질서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 대상 역시 국민이 아닌 공항 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화물터미널운영자로 피규제자가 제한적이며 이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등 규제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29)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 대한 실무수습 실시 **신설**

-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 대해 3개월 간의 실무수습을 의무화
  - 에평사는 업무 수행 전 인증기관에서 3개월 간 실무수습을 거쳐야 하며, 인증기관은 모의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수료증 발급여부 판단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측정 등 고도의 전문성 및 인증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모의평가 4회 실시에 따른 소요기간 (주거 : 40일, 비주거 : 50일)을 고려하였을 때,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3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시특별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강화**

- 안전점검·진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부실 안전점검·진단에 따른 공중 위험을 해소하고, 안전점검·진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재 시설물의 보수·보강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도 동일 수준의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수준 역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3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여야 할 의무 **강화**

- 자동차정비업자가 수기(手記)로 작성·발급하고 있는 튜닝작업 완료증명서의 일부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도록 규정

\* 자동차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정비업등록번호, 업체명(대표자), 주소(전화번호), 튜닝작업 완료일자, 튜닝작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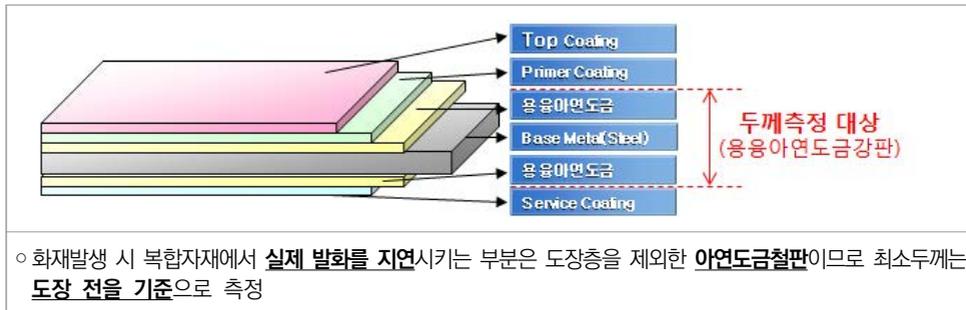
**심사결과** 본 규제는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자동차 튜닝작업 후 완료증명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비업계 시장질서 확립 등을 위해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자동차정비업자는 지금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점검명세서와 정비명세서를

전송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산환경은 이미 보유하고 있어 본 규제가 도입되더라도 자동차정비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단지 전산입력뿐으로, 추가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 본 규제는 입안과정에서 정비사업자단체와 사전 협의하였으며, 불법 튜닝 근절 및 업무편의 제고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정비업계도 적극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0조의6제2항)에서도 시설출입차량 소유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교육결과를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유사입법례도 있어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 (32)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 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철판 최소 두께 및 도금량 규정 **강화**

- 복합자재 중 철판에 대해 난연 기능 확보를 위한 기준을 새롭게 추가
  - (최소 두께) 철판의 두께는 최소 0.5mm이상으로 하되, 두께 측정은 ‘도금(鍍金) 후 도장(塗裝) 전’ 기준



- (최소 도금량) 철판에 대한 아연 도금량은 최소 180g/m<sup>2</sup>이상
- (도장 횟수) 철판에 대한 도장(페인트칠) 횟수는 최소 2회 이상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화재에 취약한 복합자재에 대한 난연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난연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중국산 복합자재의 무분별한 수입을 방지하고 건축물 내 대형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건축물 피난규칙의 철판 기준 및 KS 표준 기준을 준용하여 철판의 두께와 아연의 최소 도금량을 정한 본 개정안의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33)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긴급 통행제한의 기준 및 절차 **신설**

- 안개 등으로 인하여 시정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도로관리자가 긴급 통행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본 규제는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긴급 통행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짙은 안개 발생시 우려되는 대형 교통사고의 예방이 목적인만큼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통행제한으로 피규제자(운전자)의 불편이 예상되나, 본 규제의 적용이 극히 제한적(짙은 안개로 시정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이며, 규제의 이행에 비용이 들지 않아 피규제자의 거부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일본 고속도로의 경우 시정거리 70m 미만일 때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도 도로여건 별 시정거리 50~100m 수준에서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있는 등 본 규제(10m) 보다 엄격한 통행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일본 고속도로 통행제한 규정>**

구 분		중앙분리대 설치구간	비분리구간	교통정보판 예시
안개·연기	시계 200m 이상			안개·주행주의
	시계 200m 미만	제한속도 80km/h		안개·감속 80km/h 규제
	시계 150m 미만	제한속도 50km/h	제한속도 50km/h	안개·감속 50km/h 규제
	시계 70m 미만	통행금지	통행금지	통행금지 여기서 진출(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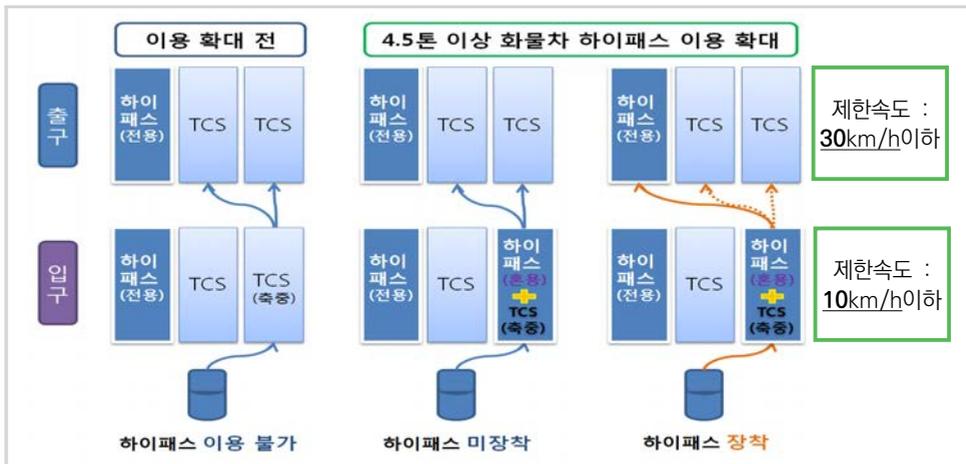
**심사내용**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신설**

- 시행령 제80조제4호에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추가
  - (현행) 단속장비의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 (개정) 단속장비의 정해진 위치 및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측정차로)를 벗어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심사결과** 본 규제는 화물자동차의 측정차로 이용을 의무화하는 법 조항(제78조제3항)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유형에 ‘측정차로를 벗어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를 포함시켜 법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본 규제는 현행 차량 운행 방식을 반영한 것으로, 화물자동차 등은 현재도 고속도로 진입시 적재량 측정을 위해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하이패스 차로가 아닌)로 운행하고 있음. 따라서 측정차로 의무 통행을 새로이 규정하더라도 추가 비용 등 부담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피규제자의 거부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개정 전·후 고속도로 입·출구 운행 방법〉

현행 고속도로 통행 방법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15.11월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속도로 입구)4.5톤 이상 화물차는 통행권 발급을 위해 단속장비(축중기)가 설치된 차로로 진입</li> <li>○(고속도로 출구)현금 요금 정산 차로로 진입해서 요금 납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속도로 입구)하이패스 단말기가 장착된 차량은 축중기가 설치된 하이패스 차로 진입</li> <li>○(고속도로 출구)하이패스 차로로 무정차 통과 ※ 하이패스 단말기 미장착 차량은 일반차로로 통과</li> </ul>



※ TCS : Toll Collection System(요금 영업소)



**심사내용** 측정차로 운행대상 등 **신설**

-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시속 10킬로미터 이내로 통행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본 규제는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화물자동차의 측정차로 이용대상 차종, 대상 도로, 및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의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인한 도로 구조 보전 및 대형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인만큼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본 규제의 적용대상은 4.5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이들 차량은 현재도 고속도로 진·출입로 및 국도 등에서 운행제한 차량 여부 확인을 위해 측정차로를 경유하고 있음. 따라서 본 규제가 도입되더라도 피규제자의 불편이 가중되거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한편, 적재량 단속시 차량의 속도가 시속 10km까지는 계측의 오류가 크지 않으나, 속도가 증가할수록 오차가 커짐에 따라 적재량 측정을 위해 10km/h 속도 제한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속도별 중량데이터 분석〉**

구 분	영업소	센서구성	속도별 오차범위(총중량)				
			1km	10km	20km	30km	40km
3축 차량	서평택등 9개소	1열	±2% 내	±1% 내	±9% 내	±3% 내	-
		3열	±2% 내	±1% 내	±8% 내	-	-
		4열	±1% 내	±1% 내	±7% 내	±13% 내	±18% 내
5축 차량	음성, 남대구	4열	±1% 내	±2% 내	±5% 내	-	-

**(3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주택단지 내 설치하는 출입문의 구조 **신설**

- 공동주택 내 옥외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빈번한 화재사고에 따른 옥상 출입문의 개방 필요성 및 옥상 내 각종 범죄발생에 따른 옥상 출입문의 폐쇄 필요성 등을 절충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자동개폐장치에 대해 관련 소방법령에 따른 제품 기준을 충족토록 규정한 것 역시 화재 시 오작동에 따른 옥상 출입문 미개방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고 원안의결

## (3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 **신설**

-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고, 다른 운송사업자의 물량을 연간 96회 이상 운송해야 직접운송으로 인정. 다만, 화물자동차의 운행횟수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상의 하차일 기준으로 산정(1일 1회만 인정)

**심사결과** 본 규제는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하는 차량(장기용차)의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현재의 계약기간(1년 이상) 외에 최소 운행횟수(연간 96회 이상)를 추가함으로써, 2차 운송업체 및 지입차주의 안정적인 운송물량 확보를 담보하려는 게 목적인만큼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지금도 지입차주가 최소 2개의 운송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1개 업체당 월 10회 정도 운송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연간 96회(월 8회×12개월) 이상 운송토록 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본 규제 도입으로 피규제자(운송사업자)는 장기용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차량으로 연간 96회 이상 다른 운송사업자의 물량을 운송해야 하나, 이의 이행에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지는 않음. 한편, 본 규제는 화물운송시장 내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TF('14.11~'15.6)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안으로, 피규제자들의 거부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심사내용**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강화**

-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운송주선사업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행위 금지
- (행정처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화물운송을 주선한 경우 사업정지 처분
  - 1차 : 사업정지 20일, 2차 : 사업정지 30일, 3차 : 사업정지 50일



**심사결과** 본 규제는 법에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운송주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허가제의 근간을 흔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본 규제는 또한 부작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단지 피규제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주선행위를 하지 않으면 되는 등 규제이행에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 거부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동 시행규칙(제11조,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에서도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 하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부작위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제12조, 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도 낚시터업자 등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어 본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됨. 한편 상기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은 상위법 위임 범위 내로, 같은 법령에 따른 유사처분례와 비교할 때 적정수준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 (36) 특수구조 건축물 세부기준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특수구조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 **신설**

1.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 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의 건축물
2. 6개 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3. 면진·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4.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재료가 주 골조로 계획된 3층 이상의 건축물
5. 건축구조기준의 정의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6.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진력 저항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 가.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 나.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 다.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 라. 합성 특수전단벽
  - 마.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 바.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 사.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 아.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 자.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 골조 시스템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특수구조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적용 대상 확정 시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적 충분히 반영하는 등 개정안의 규제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금번 개정으로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연간 약 350건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유지관리계획 마련/건축구조기술사 협력에 따른 약간의 비용발생이 예상되나, 이들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라는 편익 고려 시 이는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37) 실내건축의 구조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실내건축 기준 강화 **강화**

- (적용대상) 다중이용건축물 및 바닥면적 3천㎡이상 건축물·30실 이상 오피스텔 중 동 기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
  - 허가권자는 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실내건축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 (적용기준) 불연성재료 등 사용(안제4조), 바닥마감재(안제5조), 안전난간(안제6조), 완충재료(안제7조), 실내출입문(안제8~9조), 블라인드(안제10조), 설비배관(안제11조) 등 부문별 건축 기준\* 마련

\* 실내건축 가이드라인('13. 12월, 국토교통부)을 바탕으로 작성

건축부문	주요 내용
마감재료 (제4조)	○ 건축물 내부 벽 및 천장 등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 사용
바닥마감재 (제5조)	○ 건축물 진입부분, 공용 복도 등의 바닥은 미끄럼 방지 재료로 시공하고, 화장실·욕실·샤워실 등 물 쓰는 공간의 바닥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시공
안전난간 (제6조)	○ 난간 높이는 120cm 이상이어야 하며, 유리난간일 경우 안전유리로 설치
완충재료 (제7조)	○ 실내공간의 요철부, 모서리면 등은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완충재를 설치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
실내출입문 (제8~9조)	○ 거실 내 출입구 폭은 80cm이상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은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설치
블라인드 (제10조)	○ 실내시설에 설치하는 블라인드는 영유아를 위해 전자동식 등으로 설치하되, 줄이 있는 경우에는 일체형 보호 장치 등을 설치
설비배관 (제11조)	○ 급수·배수·환기 등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설치



**심사결과** 동 제정안은 그간 ‘가이드라인(지침, ’13.12월)’만으로 운용되던 실내 건축기준의 실효성 확보 및 실내건축물 내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화재·미끄럼·충돌 및 추락 사고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규제이며 대상 건축물 역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건축물로 한정하는 등 적정성도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38)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 방법 **신설**

–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에 대한 표시방법 및 절차를 새롭게 규정

• (표시방법)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음

- i) 행복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표시
- ii)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내
- iii) 아치의 기둥 크기는 지면으로부터 5m 이상
- iv)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
- v) 폭이 20m 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해서 표시 금지
- vi) 안전지대(「도로교통법」 제2조제13호)\*에 표시 금지

\*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 (절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에 대해 행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행복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 가능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선전탑·아치광고물에 대한 표시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확보하고, 구조물의 안전 및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표시방법 및 절차는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규정하여 그 수준 역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동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설치비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39)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강화**

- 15층 이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30년 경과되었거나, 안전등급이 C·D·E등급인 공동주택은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반기별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

#### 〈안전등급 기준〉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대형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입주자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대상 건축물 역시 15층 이하 건축물 중 재건축 최대 연한인 30년 경과 건축물 및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 건축물로 규정하여 그 수준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관리사무소장이 1회 35시가 교육 이수(교육료 35만 원, 세대 당 8,750원) 후 해당 단지 내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어 본 개정안에 따른 입주자 등의 비용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보고 원안의결

**심사내용** 부당한 광고 등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 부과
  - (표시광고법 위반) 3개월 영업정지(1차 위반) → 6개월 영업정지(2차 위반) → 6개월 영업정지(3차 위반)
  - (약관법 위반) 경고(1차 위반) → 1개월 영업정지(2차 위반) → 2개월 영업정지(3차 위반)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부당 표시·광고 및 약관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입주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재처분을 부과토록 하고 있는 관계법령이 광범위한 조사대상, 행정력 부족 등의 문제로 실질적인 제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처분 수단을 마련하기 위하 것이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벌에 더해 동 개정안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부과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40) 2015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안 (일몰규제 4건)**

구분	계	규제 폐지	규제개선			규제존속		
			일몰 연장	일몰 해제	일몰 변경	일몰 연장	일몰 해제	일몰 변경
협의결과	4	1	-	-	-	1	2	-

**규제내용** 토지경계 변경(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

- 지적공부 내 등록사항 오류로 토지 소유자가 정정 신청할 때, 토지소유자의 정정신청으로 토지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정정 신청자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보 등을 지적 소관청에 제출

**심사결과** 본 규제는 지적공부 상 토지소유권 등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는 주변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몰해제 필요성에 동의

**규제내용**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비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및 제32조 제10항)

- 혼인기간 5년 이내·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일정비율의 주택을 특별공급

**심사결과** 본 규제는 동일 내용이 ‘신혼 부부 주택 특별공급 비율’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바, 고시 폐지에 동의

**규제내용** 주택의 구조기준(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를 측정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치수 및 기준척도에 적합할 것

**심사결과** 주택 건설에 필요한 치수 및 기준척도는 통일된 기준에 따라 측정될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규제는 측정 지군에 대한 통일성을 담보하고 시장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기적 재검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일몰해제에 동의

**규제내용** 건설공사 금액의 하한(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 대형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 금액의 하한 설정

**심사결과** 중소 건설업체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 대형 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향후 건설시장의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동 규제의 존속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몰연장에 동의

(41) 건축구조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설계 시 적설하중 기준 강화 **강화**

- 일부 지역\*에 대해 지상적설하중 기준을 조정

\* 속초, 철원, 백령도, 인천, 울릉도, 울진, 안동, 창원, 목포, 흑산도, 완도, 진도, 고산, 성산, 천안, 보령, 거창 등 총 17개 지역

〈적설하중 기준표〉

NO	지명	실관측 최대값 (cm)	지상적설하중 제한값 (kN/m <sup>2</sup> )	지상적설하중(기준) (kN/m <sup>2</sup> )
1	속초	123.8	3.0	2.0
2	철원	19.3	0.5	-
3	대관령	188.8	7.0	7.0
4	춘천	44.2	0.5	0.5
5	백령도	22.5	0.5	-
6	인천	31.4	0.5	0.8
7	강릉	138.1	3.0	3.0
8	서울	30	0.5	0.5
9	원주	33.3	0.5	-
10	울릉도	293.6	10.0	7.0



NO	지명	실관측 최대값 (cm)	지상적설하중 제안값 (kN/m <sup>2</sup> )	지상적설하중(기준) (kN/m <sup>2</sup> )
11	수원	28.3	0.5	0.5
12	서산	32	0.5	0.5
13	<b>울진</b>	65.7	<b>1.0</b>	0.65
14	청주	39	0.5	0.5
15	대전	49	0.5	0.5
16	안동	27	0.5	-
17	포항	30	0.5	0.5
18	군산	37.1	0.5	0.5
19	대구	55.4	0.5	0.5
20	전주	28.1	0.5	0.5
21	울산	21.4	0.5	0.5
22	창원	21.8	0.5	-
23	광주	41.9	0.5	0.5
24	부산	37.2	0.5	0.5
25	통영	16.5	0.5	0.5
26	<b>목포</b>	56.1	<b>0.7</b>	0.5
27	여수	20.6	0.5	0.5
28	흑산도	15.7	0.5	-
29	완도	18	0.5	-
30	진도	23.1	0.5	-
31	제주	21.5	0.5	0.5
32	고산	6	0.5	-
33	성산	25.4	0.5	-
34	서귀포	37.8	0.5	0.5
35	진주	25.5	0.5	0.5
36	천안	30.8	0.5	-
37	보령	26	0.5	-
38	거창	32	0.5	-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마우나리조트 사고 등 건축물 붕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자 적설하중 기준을 최신 관측 자료로 업데이트하는 것이며, 적설하중은 지붕활하중 등 기타 하중에 비해 비중이 작기 때문에 동 개정안에 따른 적설하중의 증가가 구조물의 크기 증가 및 비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4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하도급 제한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신설**

-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공단의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관리주체로부터 사실조사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사실조사를 진행
  -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1)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2)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3)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안전점검, 각종 비리사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 발생 우려 시 이에 대한 감독·소가 권한을 행정기관 장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서는 사실조사에 대한 명확한 방법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임. 또한, 동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유사입법례를 고려하여 그 수준은 정하였는바 적정성도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시특별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강화**

-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및 공단이 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사실조사에 대해 자료 미(거짓)제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도입된 사실조사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과태료 부과 수준 역시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사실조사에 대한 불응 시 300만 원 이하를 부과토록 하여 적정성도 인정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4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금액 상향조정 **강화**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관광사업에 한해 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금액 기준을 현행 5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
  - 투자금액 기준 별 대상 업종 변동 현황

기존(시행령 제36조제1항)		개정(시행령안 제21조제1항)	
투자금액	대상 업종	투자금액	대상 업종
500만\$ 이상 (24개 사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식당업,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사업, 청소년수련시설사업, 궤도사업, 신에너지생산사업,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국제학교, (외국)의료기관, 교육원, 첨단기술산업,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식료품제조업	2,000만\$ 이상 (10개 사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식당업
		500만\$ 이상 (14개 사업)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사업, 청소년수련시설사업, 궤도사업, 신에너지생산사업,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국제학교, (외국)의료기관, 교육원, 첨단기술산업,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식료품제조업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관광객 증가 추이를 상회하는 객실 과잉 공급으로 부실 투자 및 사업성 악화가 우려가 커짐에 따라 소규모 관광투자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중단하여 객실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역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조건으로 투자금액 2,000만\$이상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4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기준 신설 **신설**

- 민간 전자입찰 시스템 사업자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보안, 신용등급 등)을 규정

〈민간전자입찰 시스템 사업자 지정 세부 기준(안)〉

구분	지침 개정(안)
기술인력	9명 이상(민원 상담 3명 이상 포함)
경영상태	자본금 2억 원 이상
신용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B등급 이상
시스템 기능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 공고 기능,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투찰 기능,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등
시스템 운영·관리	네트워크·DB서버, 웹서버, 서버시스템 사양 등
정보보안	네트워크·서버·관리자·시스템 이용자 보안 및 백업·복구 등

- 또한, 지정취소(안 제38조) 및 결격사유(안 제39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지정 취소) i)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ii)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iii)지정 후 6월 이내에 운영업무 미개시/ 6월 이상 운영업무 휴지 시 지정 취소 가능
  - (결격사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스템 사업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결격자가 지정 사업자가 된 경우에는 지정을 무효로 함

결격사유 세부 기준	
1.	임원 또는 기술인력 직원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li> <li>○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li> <li>○ 전자입찰시스템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 실형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li> <li>○ 전자입찰시스템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 받고 유예기간 중인 자</li> <li>○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li> </ul>
	2. 지정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3. 최근 3년 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 및 대표자
	4. 공동주택관리 업무 관련자 및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검열할 수 없는 자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공정경쟁을 위한 것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신용·보안 등을 지정기준으로 정하고, 임원 등에 대한 지정취소 기준 및 결격사유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세부 규정 역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시스템의 신뢰성 및 공공성 확보에 필요한 최소 수준을 정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운영 지정취소 및 결격사유 규정 역시 시스템의 미흡한 운영·민간정보 등을 악용한 비리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45) 철도종합시험은행 시행지침 개정안 (신설 1, 강화 3)

**심사내용** 철도종합시험은행 시행지침 개정 **신설** **강화**

- ※ 제7조, 제7조의2, 제10조, 제32조 등 4개 조문에 대한 개정이나, 동 지침이 행정규칙(고시)인 점을 감안하여 1건으로 심사
- (연간계획·시행계획) 철도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연간계획 수립 및 변경시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기 전 검토팀과 사전 협의토록 규정
  - 종합시험은행 시행 중에 시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10일전까지 검토팀에게 일정변경 사유서 제출 의무화
- (신교통시스템) 철도운영자 등에게 연간계획 제출 의무 부과 및 종합시험은행 실시 10개월 전 점검항목, 신교통시스템이 기 도입된 국가의 관련기준 등 세부자료 제출 의무화
- (영업시운전) 시설물검증시험 결과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팀의 확인 후 영업시운전을 시작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본 규제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75조제10항)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신교통시스템 도입 등 철도의 여건 변화 반영 및 철도종합시험은행 시행지침 운영과정의 문제점 보완 등을 통해 철도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인 만큼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본 규제의 적용대상은 공공재(公共財)인 철도를 설치·관리·운영하는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로, 공공기관적 성격이 강하고, 규제의 내용 또한 사전 협의 및 검토, 자료 제출 등으로 의무 이행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피규제자의 거부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일본의 경우 철도 신설·개축시 철도의

기술기준(신설 시설 및 신제차량 등의 검사 및 시운전)에 따라 검사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 열차의 안전을 확보한 후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 EU\* 등에서도 시설물 검증 절차 등을 규정한 철도 안전관련 규정을 두고 있어 본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 (미국 사례) 미연방규정집(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에서 철도안전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
  - 고속철도 안전 프로그램 FOX(Florida Overland eXpress)에 시험 운행에 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어 주요 부품에 대해 시설물 검증 등 4개월 이상 시스템 성능확인 및 모의 영업서비스 시험 실시
- (EU 사례) TSIs(EU 국가 간 상호운용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유럽횡단철도의 서브시스템은 TSIs에 부합하는지 검증절차를 거쳐야 함
  - 차량 및 인프라는 공인된 최대속도에서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안전성 요건을 충족할 것

#### (46) 교통안전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교통시설 개통 전 교통안전진단 시행 **신설**

- 교통시설 설치·관리(운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교통시설 개통 전에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

**심사결과** 본 규제는 교통시설을 개통하기 전에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교통시설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목적인만큼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한편, 교통시설이 개통되어 사용 중인 상태에서는 효과적인 교통안전진단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시설 개통 전 교통안전진단 실시는 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피규제자가 도로·철도·공항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적 성격이 강하고, 적용대상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시설로 제한적이며, 건당 약 24백만 원(도로분야)인 교통안전진단 비용에 비해 교통시설 결함으로 인한 소송 감소 등 무형의 편익이 커 피규제자의 거부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영국의 경우 1974년 도로교통법에 교통안전진단을 명문화하였으며, 독일은 2002년 연방정부훈령으로 도로안전진단체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이밖에 호주, 뉴질랜드, EU 등에서도 개통 전을 비롯해 여러 단계에서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해외 도로 교통안전진단 진단단계〉

구분	영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1단계	기본설계	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설계계획	계획	기본계획
2단계	실시설계	기본설계	기본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설계
3단계	개통전	실시설계	실시설계	실시설계	건설시	실시설계
4단계	개통후	개통전	개통전	개통직전/후	개통전	개통전
5단계	-	개통후	네트워크	모니터링	개통후	-

(4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 **신설**

-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고, 다른 운송사업자의 물량을 연간 96회 이상 운송해야 직접운송으로 인정. 다만, 화물자동차의 운행횟수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상의 하차일 기준으로 산정(1일 1회만 인정)

**심사결과** 본 규제는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하는 차량(장기용차)의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현재의 계약기간(1년 이상) 외에 최소 운행횟수(연간 96회 이상)를 추가함으로써, 2차 운송업체 및 지입차주의 안정적인 운송물량 확보를 담보하려는 게 목적인만큼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지금도 지입차주가 최소 2개의 운송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1개 업체당 월 10회 정도 운송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연간 96회(월 8회×12개월) 이상 운송토록 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본 규제 도입으로 피규제자(운송사업자)는 장기용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차량으로 연간 96회 이상 다른 운송사업자의 물량을 운송해야 하나, 이의 이행에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지는 않음. 한편, 본 규제는 화물운송시장 내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TF’(14.11~’15.6)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안으로, 피규제자들의 거부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심사내용**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신설**

-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운송주선사업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행위 금지

- (행정처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화물운송을 주선했을 경우 사업정지 처분
  - 1차 : 사업정지 20일, 2차 : 사업정지 30일, 3차 : 사업정지 50일

**심사결과** 본 규제는 법에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운송주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허가제의 근간을 흔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본 규제는 또한 부작용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단지 피규제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주선행위를 하지 않으면 되는 등 규제이행에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 거부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동 시행규칙(제11조,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에서도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 하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부작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제12조, 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도 낚시터업자 등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어 본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됨. 한편 상기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은 상위법 위임 범위 내로, 같은 법령에 따른 유사처분례와 비교할 때 적정수준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최소 화소수 상향 조정 **강화**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CCTV의 화질을 현행 41만 화소 이상에서 130만 화소 이상으로 상향 조정

〈CCTV 화질 상향에 따른 비교 영상〉

해상도 구분		식별수준	식별예시
41만	SD급	얼굴, 번호판 식별 불가	
130만	HD급	얼굴, 번호판 윤곽 식별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주택단지 내 CCTV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죄 등으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화질 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정책수혜대상인 공동주택 입주민으로부터 고화질 CCTV 설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음. 또한, 아파트 보안시스템 등의 진화로 최근 준공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130만~200만 화소의 CCTV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최근 지역별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요구사항으로 CCTV 설치기준을 130만 화소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동 개정안에 대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강화**

- 운행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1차 위반)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위반) 사업일부정지 60일, (3차 위반) 감차명령
-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입금현황 등 제반 서류를 보관·관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1차 위반)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위반) 사업일부정지 60일, (3차 위반) 사업일부정지 90일

**심사결과** 본 규제는 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행정처분 하려는 것으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운행기록증 발부·부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인만큼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상위법의 위임 근거가 명확하고, 위반정도에 따른 처분수위도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에서 규정한 유사처분례와 비교할 때 규제의 강도도 유사한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됨. 특히, 서류 보관·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경우 입법예고안보다 처분 강도를 완화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구 분	입법예고안	수 정 안
1차 위반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위반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3차 위반	감차명령	사업일부정지 90일

(50)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다중생활시설(고시원)에 대한 건축기준 제정 **신설**

- 다중생활시설(시행령별표1 제4호거목)\*에 대한 세부 건축기준을 제정

〈건축기준 세부 내용〉

구분	규제내용(제2조)
쾌적한 거주환경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제1호)
	시설 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제3호)
	다중생활시설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제4호)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적합할 것(제7호)
안전 관련 기준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단을 수 있는 창문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제5호)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이상, 중복도 1.5미터이상으로 할 것(제6호)
	범죄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적합할 것(제8호)
주거시설과의 구분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제2호)

**심사결과** 동 제정안은 고시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자차별 혼선을 방지하고,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주택과의 구분, 화재 발생 가능성 차단, 고시원 난립 등에 따른 주거지 슬럼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취사시설 설치 등을 금지한 동 개정안의 규제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을 절감할 수 있고,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으로써 이와 관련 된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5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강화 3)

**심사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강화**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법 제3조제11항, 제11조제12항, 제11조제12항 단서, 제11조제17항, 제16조제7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제제 처분 규정 명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법 제3조제11항을 위반한 경우	○ 규정 없음	○ 1차 : 사업전부정지 30일 ○ 2차 : 허가취소
법 제11조제12항을 위반한 경우	○ 1차 : 사업일부정지 5일 ○ 2차 : 사업일부정지 10일	○ 1차 : 사업일부정지 5일 ○ 2차 : 사업일부정지 10일 ○ 3차 : 허가취소
법 제11조제12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 규정 없음	○ 1차 : 사업일부정지 10일 ○ 2차 : 사업일부정지 20일 ○ 3차 : 허가취소
법 제11조제17항을 위반한 경우	○ 규정 없음	○ 1차 : 사업일부정지 10일 ○ 2차 : 사업일부정지 20일 ○ 3차 : 허가취소
법 제16조제7항을 위반한 경우	○ 규정 없음	○ 1차 : 허가취소

**심사내용**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강화**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가 법 제11조제12항, 제11조제12항 단서, 제11조제17항, 제26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 명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운송사업자(일반화물)가 법 제11조제12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규정 없음	60만원
운송사업자(일반화물)가 법 제11조제17항을 위반한 경우	"	"
운송주선사업자가 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
운송주선사업자가 법 제11조제12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	"
운송가맹사업자가 법 제11조제12항을 위반한 경우	"	"
운송가맹사업자가 법 제11조제12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	"

**심사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신설**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법 제11조제12항 단서, 제26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제제 처분 규정 명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법 제11조제12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 규정 없음	○ 1차 : 사업정지 10일 ○ 2차 : 사업정지 20일 ○ 3차 : 허가취소
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규정 없음	○ 1차 : 사업정지 10일 ○ 2차 : 사업정지 20일 ○ 3차 : 허가취소

**심사내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강화**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법 제11조제12항, 제11조제12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제제 처분 규정 명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법 제11조제12항을 위반한 경우	•규정 없음	•1차 : 사업정지 10일 •2차 : 사업정지 20일 •3차 : 허가취소
법 제11조제12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규정 없음	•1차 : 사업정지 10일 •2차 : 사업정지 20일 •3차 : 허가취소

**심사내용** 과태료의 부과 기준 **신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법 제40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명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운송사업자가 법 제40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	규정 없음	300만원

**심사결과** 본 규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허가 조건에 대한 이행 강제력 확보, 과적 운송위탁 금지, 화물위탁증 의무 발급 등을 통해 과적행위 근절 및 화물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게 목적인만큼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한편, 본 규제(행정제재처분 등)는 피규제자(운송사업자 등)가 법에서 규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 부과되는 것으로, 당초 피규제자에게 부과된 의무는 대부분 부작위의 의무(법 제11조제12항 화물위탁증 발급은 제외)로, 규제 이행에 비용이 들지 않으며, 화물위탁증 발급(작위의무) 또한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문서 등의 수단을 통해 발급하면 되는 사항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만큼 본 규제에 대한 피규제자의 거부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위임 근거가 명확하며, 위반정도에 따른 처분수위도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어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 (5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 심사내용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 **신설**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행정보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시·도 조합에 제출토록 규정
  - 신고서를 제출받은 각 시·도 조합은 운행기록증을 발부하고,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사업용 자동차 운전석 앞창의 중앙 하단에 부착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운행기록증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
- \* 자동차의 인도대금, 할부금 납부기록, 운송수입금 입금현황 등

**심사결과** 본 규제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운행정보(운전자, 운행경로 등)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지입차량의 개별 영업을 차단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운송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게 목적인만큼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본 규제 도입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운행정보신고서 작성·제출 및 운행기록증 부착·보관 등으로, 이행에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시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경우 운행기록증을 발부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약 2억 원\*, 연합회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운행기록증 제도 도입 자체가 전세버스연합회에서 요구한 사항임을 감안할 때, 본 규제 도입에 대한 거부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운행기록증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2년 동안 보관토록 한 것은 유사입법례\*\*와 비교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 〈시스템 구축비용 산출근거〉

구 분	금액(만원)	구 분	금액(만원)
프로그램 개발	7,000	DB 서버	2,500
운행기록증 발급 WEB/WAS 서버	2,500	서버보안 S/W	500
DB 암호화 솔루션	3,000	제증명발급시스템	4,500

\* 우수식품 인종관련 문서 비치·보존(3년,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

\*\* 소금 품질검사기록 보관(3년,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심사내용** 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신설**

- 운수종사자가 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1차 5일, 2차 5일) 처분
  - \* 제21조제9항에 따라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여야 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된 운행기간 중 해당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사결과** 본 규제는 운수종사자가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구체화 하려는 것으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운행기록증 발부·부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게 목적인만큼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본 규제는 상위법의 위임 근거가 명확하고, 위반정도에 따른 처분수위도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음. 규제의 수준은 입법예고안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며, 택시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구 분	입법예고안	수 정 안
1차 위반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5일
2차 위반	자격정지 20일	자격정지 5일

**(5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및 가격조사 등 **강화**

- 차량기술사는 자동차가격 조사·산정과 관련해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상을 보증하여야 하며, 매매업자는 매수인에게 중고자동차 가격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그 사본을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함

**심사결과** 본 규제는 법의 위임에 따라 차량기술사가 이수해야 할 교육 및 중고자동차 가격의 고지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중고자동차 가격 조사 및 산정, 고지를 통해 중고자동차 매수인과 자동차매매업자 간의 가격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인 만큼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차량기술사에게 자동차가격 조사·산정과 관련하여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상 보증토록 한 것은,



가격조사·산정 업무를 실제 수행할 기술사회와 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책임성 있는 가격조사·산정을 위하여 명문화해 달라’고 한 건의를 반영한 것으로, 동 시행규칙(제120조제3항)에서 정한 ‘성능·상태 점검’의 보증조건과 동일한 수준인 만큼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됨. 자동차매매업자로 하여금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본을 6개월간 보관토록 한 것은, 자동차 매매·정비·폐차 등의 과정에서 발행하는 서식 보관 규정과 비교할 때 최단기간으로, 규제의 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서’ 발급 및 보관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아 자동차매매업자의 거부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함. 입안 과정에서 피규제자인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 및 자동차매매업자, 이해관계자 등과 간담회(’15.3.31, ’15.7.8) 등을 통해 협의하여 마련한 만큼, 규제 이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심사내용** 해체재활용대상 자동차장치 **강화**

- 폐차시 압축·파쇄 또는 절단해야 할 자동차의 장치에 ‘에어백’ 추가

**심사결과** 본 규제는 폐차시 압축·파쇄 또는 절단해야 하는 자동차의 장치에 에어백을 포함시켜 에어백의 재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차량 탑승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에어백 압축·파쇄와 관련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업자)는 현재도 압축·파쇄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조향기어기구, 마스터실린더 등 안전과 직결되는 장치를 압축·파쇄하고 있어, 에어백을 압축·파쇄 대상 장치에 포함시키더라도 별도의 시설이나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 규제 이행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입안 과정에서 피규제자 단체와 협의(’15.6.23, 간담회 개최) 하였고, 폐차업계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규제 이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EU\* 등에서도 에어백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본 규제는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 (EU 자동차 재활용형식승인지침) 에어백 등 7개 품목에 대해 재사용 금지

**(5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심사내용** 자동차가격 조사 및 산정 교육 등 **신설**

- 차량기술사는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을 위하여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방법, 직무윤리 및 서비스교육 등에 대한 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 교육기관은 차량기술사에게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함

**심사결과** 본 규제는 법의 위임에 따라 차량기술사가 이수해야 할 교육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중고자동차 가격 조사 및 산정, 고지를 통해 중고자동차 매수인과 자동차매매업자 간의 가격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인 만큼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차량기술사에게 16시간(1회)의 교육을 이수토록 한 것은, 또 다른 가격 조사·산정 주체인 자동차진단평가사가 매년 1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동의

**(5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강화 2)****심사내용**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 감점 **강화**

- 중대 건설사고를 유발하여 업무정지 또는 부실벌점을 부과 받은 건설기술자에 대해 향후 5년 간 역량지수에서 최대 3점까지 감점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대형 건설 사고에 의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것으로 현행 법령 상 교육이수에 따른 역량지수 가점규모가 3점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건설사고 등에 따른 감점규모 3점 역시 적정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또한, 역량지수 감점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여 역량지수의 영구적 감점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과도한 피해를 방지하고 있는바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발주청에 의한 설계의 안전성 검토 **신설**

- 건설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 실시설계 시, 발주청은
  -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여부를 검토케 하거나
  -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토록 함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존의 사후대응식 안전관리 체계를 탈피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검토 대상 건축물을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축물로 한정하고,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참고하여 안전성 확보방안을 수립토록 하여 시공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규제 수준 역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축물 추가 **강화**

- 가설구조물을 이용하는 건설공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도록 의무화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의식 미흡에 따른 대규모 인명 피해 방지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 공사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건설근로자를 재해에서 예방하기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개정안의 규제 수준 역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56)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자율주행자동차 임시허가 요건 등 **신설**

- (안전운행요건)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율주행기능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하고, 고장이나 결함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운행기록을 위한 장치, 최고속도제한 및 전방충돌방지 기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외부에서 자율주행자동차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보험가입)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교통사고·운행실적 보고) 임시 운행 중 사고 발생시 교통사고 보고서, 기록물 원본 및 분석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시운행허가 종료일까지 분기별로 운영실적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심사결과** 본 규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3항)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위임근거가 명확함. 타 자동차와 달리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는 안전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안전운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 마련 및 보험가입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미국, 영국 등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위한 안전운행요건 및 보험가입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보험가입은 국내에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제1항)에서 도로를 주행하는 모든 자동차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임시운행 실적 및 교통사고 발생 보고(자료 제출)는 자동차 제작자에게도 자율주행기술 개발 및 향상을 위해서 관리하고 분석해야 할 사항인 만큼 피규제자의 거부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네바다주, 캘리포니아주 등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정에서도 사고발생시 교통부 보고 및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본 규제 도입으로 보험가입(대당 年 100만원), 안전운행 장치 설치(대당 215만원\*) 등의 비용이 발생하나, 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제작비용(대당 약 3억 원) 대비 미미한 수준이며, 특히 안전운행 장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필수요소로, 사실상 제작비용에 포함되는 만큼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입안단계에서부터 자동차 제작사,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본 규제 도입에 따른 피규제자의 거부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임시운행 관련 장착 등에 따른 비용〉

장치(장비)명	금액(원)	장치(장비)명	금액(원)
자율주행자동차 표지	100,000	운행기록장치	300,000
조종장치(비상스위치 등)	350,000	영상기록장치	400,000
표시장치(외부모니터 등)	500,000		
경고장치(스피커 등)	500,000	합 계	2,150,000

(57)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철회 제한 **신설**

- 조합 설립 시 제출한 동의서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동의서 철회기간 제한 규정(동의서 제출 후 30일 내에만 철회 가능)을,
  - 정비구역 해제 및 추진위·조합 해산 신청 동의서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동의서 제출 후 30일 내에만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08년 금융위기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정비사업에 대해 원활한 출구전략을 통한 조합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규정 상 동의철회제한 규정 미비로 동의 후 의사를 번복하여 해산신청이 반려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또한, 동 개정안은 동의를 요하는 11가지 절차 중 출구전략과 직접 관련이 있는 2개 절차에 한해 동의서 철회 제한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제 수준 역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에 보아 원안인결

### (58)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신설**

- 기계식 주차장의 출입구 및 주차구획의 최소 조도 기준 규정
  - (출 입 구) 최소 조도는 15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 (주차구획)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심사결과** 본 규제는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의 최소 조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통한 사용을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이 목적인만큼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KS 산업표준의 조도기준을 준용하여 지하식 주차장 '출입구'의 경우 최소 조도를 150럭스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주차구획'은 KS 산업표준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지하식 및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조도 기준의 중간 수준인 50럭스 이상으로 설정한 만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기계식 주차장 설치시 조명시설을 신규로 시공할 경우 약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나, 대부분의 제작사에서 기계식 주차장 설치시 조명시설을 기본적으로 시공하고 있어, 본 규제가 도입되더라도 조도 기준을 맞추기 위해 추가(전구 교체 등)로 소요되는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독일<sup>\*</sup>의 경우 출입구의 조도는 120럭스 이상, 주차구획은 적절한 조명을 유지하도록 규정(DIN EN 14010)하고 있으며, 일본은 주차장치 출입구 부분은 150~300럭스, 주차구획은 30~100럭스를 유지하도록 규정(일본 기계식 주차장 기술기준 2013)하고 있어 본 규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위임 근거가 명확하고, 해외 유사입법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독일의 조도기준(DIN EN 14010)〉

기준항목	기준내용
7.1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입구는 최소 120lx의 공칭조도와 조명을 제공 한다.</li> <li>전원이 차단되어도 60초간 유지되어야 한다.</li> </ul>
4.1.2.2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송 구역과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해당 장치상의 다른 구역 내 조명 관련 세부 내역도 해당 제조업체 측에 의해 별도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관련 작동 구역과 이송 구역, 사용자 이동 위치, 주차 장치 관리원 작업 위치 및 주변 지역에는 제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명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li> </ul>

심사내용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기준 **신설**

- 주차구획 및 운반기의 너비 확대
  - (주차구획) 너비 2.15미터 이상 → 너비 2.2미터 이상
  - (운반기 바닥) 너비 1.85미터 이상 → 너비 1.9미터 이상
- 안전감지센서 설치 의무화

심사결과 본 규제는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최근 출시되는 차량의 제원이 90년대 차종과 비교해 증가하였고, 광폭타이어 장착 등으로 타이어의 접지면 너비도 증가한 만큼 주차구획 및 운반기 바닥 너비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안전감지센서의 설치 또한 이용자(차량 탑승자, 엘리베이터 보수요원 등)의 안전을 담보하려는 게 목적인만큼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주차구획 및 운반기의 너비 확대폭이 5cm에 불과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 또한 크지 않아 피규제자(기계식 주차장 신규 설치자)의 거부감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인체감지센서 설치도 시공에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지 않고, 시공비용 또한 약 23만 원 정도로 저렴함. 일본의 기계식 주차장 주차구획 너비는 수용하는 자동차 너비(미러 포함)에 0.15m 이상을 더한 값으로, 자동차의 너비가 1.9m일 경우 주차구획 너비는 2.35m임. 독일의 기계식 주차장 주차구획 너비는 수용하는 자동차 너비(미러 포함)에 0.1m 이상을 더한 값으로, 자동차의 너비가 1.9m일 경우 주차구획 너비는 2.3m임. 따라서 주차구획 너비를 현행 2.15m에서 2.2m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한편, 안전감지센서의 설치와 관련하여, 일본 또한 「기계식 주차장 기술기준(2013)」에서 안전감지센서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안전감지센서를 설치토록 한 본 규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위임 근거가 명확하고, 해외 유사입법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 (59)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개정안 (신설 1)

### 심사내용 철도시설 안전관리 **신설**

- (유지관리시설의 보호) 철도시설 보안 및 안전 등의 확보를 위해 일반인 출입금지 시설 지정·관리
- (운영절차 및 이행계획 제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관련 운영절차의 제·개정, 각종 이행계획의 수립·변경시 30일 이내 제출 의무 부과

**심사결과** 본 규제는 「철도안전법」(제7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차시설 등에 대한 일반인들의 무단침입을 방지함으로써 철도시설 및 차량을 보호하고, 운영절차 제·개정시 국가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철도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사전 예방하려는 게 목적인만큼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본 규제의 적용대상은 공공재(公共財)인 철도를 설치·관리·운영하는 철도운영자와 철도시설관리자로,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하고, 규제의 내용 또한 ‘일반인 출입금지 시설’을 지정·관리하고, 운영절차 및 각종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의무 이행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피규제자의 거부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일반인 출입금지 시설’로 지정·관리되는 시설들은 현행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83조)에서 ‘출입금지 철도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시설(주차시설, 유지관리 부품 및 공구 보관장소는 추가)들로, 철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본 고시(철도안전관리체계기술기준)에도 명문화하려는 것인 만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 (60)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설 1)

### 심사내용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신설**

- 기계식 주차장치의 개별차량 최대 입출고 시간을 5분으로 하고, 모든 기계식 주차장치에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본 규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의 개별차량 최대 입출고 시간(5분)을 정하고, 기계식 주차장치에 소화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계식 주차장치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및 안전성 확보가 목적인만큼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개별 차량의 최대 입출고 시간 5분 이내로 하는 것은, 다층순환식, 승강기식, 승강기 슬라이드식 등 현재 현장에서 신규로 설치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경우 단순히

주차장치의 운행속도를 높이면 되(엘리베이터 속도 조절과 유사) 특별한 기술과 추가 비용이 들지 않음. 소화기(개당 20,000원) 설치에도 큰 비용이 들지 않아 피규제자의 거부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독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차량의 최대 이송시간이 3분 30초(210초)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본 규제는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소화설비의 경우 소방법에 따라 현재도 차량 20대 이상을 수용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치에는 이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본 개정안에서는 모든 기계식 주차장치로 확대하면서 물분무기 등 소화설비 외에 소화기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규제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한 만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국내외 유사입법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독일의 입·출고시간 규정〉

기준	기준항목	기준내용
독일기준 (VDI4466 Part 1)	5.6 최대이동시간	원칙적으로 자동 주차시스템은 가장 먼 주차장으로부터 최대 이송 시간을 약 3.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고안되어야 한다.

(61)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감리계획서의 거짓 보고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강화**

- 감리자가 감리계획서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관리비·사용료를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주택관리업체가 등록사항에 대해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내실있는 감리업무 이행을 위해 감리자로 하여금 감리계획서를 의무 제출토록 한 규정, 관리비 등의 부당사용 제한 및 세입 피해 방지, 주택관리업체 선정 시 입주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 수준 역시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정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62)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 심사내용 응급의료시설 의무 설치 신설

- 공사금액 5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중 50km 내 의료시설이 없는 경우,
  - 공사현장 내에 20㎡ 이상의 별도 응급진료공간을 마련하고, 의사·간호사·응급의료종사자 중 1인을 확보하도록 함

설치의무 대상 현장	○ 수주액 미화 5억불 이상 & 반경 50km 내 의료시설 無
응급시설 설치기준	○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별도 공간 및 처치·시설(20㎡) ○ 의사, 간호사, 응급의료종사자 중 1인 확보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의료시설이 없는 해외건설현장 내 근로자를 응급상황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대상 현장 및 응급시설 설치기준 역시 산업부문의 최소 공사금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결정하였고, 응급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 3억 원 역시 총 공사금액 대비 0.06% 수준에 불과하여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 적정성도 인정되는 바 비중요 규제요로 보아 원안의결

### 심사내용 응급의료시설 설치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신설

- 공사금액이 5억 불 이상인 건설현장 중 50km 내 의료시설이 없는 해외건설현장에서 응급의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의료진을 갖추지 않을 경우,
- 과태료(1차 위반 : 200만 → 2차 위반 : 300만 → 3차 위반 → 500만 원)를 부과

#### 〈시행령 개정안 [별표 4] 2. 제 마호〉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2차	3차 이상
마. 법 제18조의3에 따른 응급의료시설 또는 의료진을 갖추지 않은 경우(단, 계약체결 결과 보고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1조제1항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해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한 해외건설현장에 대해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토록 했으며, 본 규제는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과태료 부과 최고액을 500만 원으로 정했는 바, 위반 업체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상위법과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부과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중요 규제요로 보아 원안의결

### (6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책임기술자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 **강화**

-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
  - ① 토목·건축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② 해당분야의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하고, ③ 정밀안전진단 교육(70시간)을 이수하며, ④ 5천㎡ 이상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자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정밀안전진단제도의 부실진단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형 건설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지나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업무경력 3년 조건을 2년 조건으로 변경하고 3년의 경과규정을 신설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규제의 적정성도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정밀안전진단 미 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강화**

- 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필요성이 인정되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별표 4)
  - 1) 실시지연기간이 6개월 미만 : 2천만 원
  - 2) 실시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4천만 원
  - 3) 실시지연기간이 12개월 이상 : 4천만 원+(지연 개월 수-12)×100만원  
다만, 7천만 원을 한도로 함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과태료 부과 수준 역시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자에게 부과되는 금액과 동일한 수준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적정성도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6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및 사업정지 등 처분기준 **강화**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이하 대리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은 경우, 개인택시사업자 및 법인택시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규정 명시

\*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되거나,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대리운전자 지정 가능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대리운전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은 경우	(개인택시사업자) ○ 1차 : 운행정지 60일 ○ 2차 : 운행정지 90일 ○ 3차 : 운행정지 180일	(개인택시사업자) ○ 1차 : 운행정지 90일 ○ 2차 : 운행정지 180일 ○ 3차 : 사업면허취소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은 경우	(법인택시사업자) ○ 1차 : 사업일부정지 60일 ○ 2차 : 사업일부정지 90일 ○ 3차 : 사업일부정지 180일	(법인택시사업자) ○ 1차 : 사업일부정지 60일 ○ 2차 : 감차명령 ○ 3차 : 사업면허취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6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신규건설업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신설**

- 신규 건설업자는 건설업 등록 후 6개월 내 8시간 이상의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 건설업 교육과정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과목 운영
2시간	관련법령 개정 사항 등 (건설산업기본법 및 안전관련 법령 등)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2시간	윤리경영의 필요성 및 윤리의식 함양	국민권익위원회 교과목 반영
2시간	사회적 책임경영 및 우수사례	국민권익위원회 교과목 반영
2시간	건설공사의 품질·안전·환경	건설기술교육원 교과목 반영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불법 하도급, 자격증 부정 대여, 실태조사 위반 등 범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최근 5년 간 연평균 신규 건설업 등록자 중 51%가 5년 내 행정제재처분을 부과 받았음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건설산업 관련 법규·윤리경영·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교육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구성된 교육 세부 내용 역시 적정성이 인정됨. 또한, 교육 이수에 따른 교육비 약 7.7억 원(1인 당 20만 원)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나, 교육에 따른 위법건수 1% 감소 시 약 11.5억 원의 과징금 등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신규건설업자의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강화**

- 신규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 후 6개월 내 8시간 이상 교육 이수하지 않을 경우
  - 과태료 100만 원 부과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신규건설업자의 관계법령 숙지 등을 위해 의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상위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500만 원 한도 임에도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수준을 100만 원으로 정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66) 초소형자동차의 임시운행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안전관리자 선임과 운행결과 보고 **신설**

- (안전관리자 선임) 임시운행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함
  - \* 자동차 제작사, 연구기관, 사용자(개인사업자는 제외) 등
- (운행결과 보고)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는 운행결과 보고서를 월별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운행 중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심사결과** 본 규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의 위임에 따라 초소형자동차의 임시운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위임근거가 명확하며, 국내 운행사례가 없는 초소형자동차가 국내 도로환경에서 임시운행시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로부터 운전자 등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 만큼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안전관리자의 역할은



운전자 선정, 안전교육 및 운행계획 수립 등이며, 운행결과보고 또한 단순작업으로, 자체인력 활용이 가능해 추가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본 규제의 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함.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해서는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운행결과보고’와 관련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고시에 유사규정이 있어 본 규제는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입안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서울시, 송파구, 영암군, 자동차 제작사, BBQ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본 규제가 도입되더라도 피규제자의 거부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 (6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및 사업정지 등 처분기준 **강화**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이하 대리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은 경우, 개인택시사업자 및 법인택시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규정 명시

\*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되거나,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대리운전자 지정 가능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대리운전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은 경우	(개인택시사업자) ○ 1차 : 운행정지 60일 ○ 2차 : 운행정지 90일 ○ 3차 : 운행정지 180일	(개인택시사업자) ○ 1차 : 운행정지 90일 ○ 2차 : 운행정지 180일 ○ 3차 : 사업면허취소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은 경우	(법인택시사업자) ○ 1차 : 사업일부정지 60일 ○ 2차 : 사업일부정지 90일 ○ 3차 : 사업일부정지 180일	(법인택시사업자) ○ 1차 : 사업일부정지 60일 ○ 2차 : 감차명령 ○ 3차 : 사업면허취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68)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신설**

- 국·공립 연구기관, (전문)대학, 특정연구기관 등 「조경진흥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기관 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기관을 조경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 조경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세부 지정요건
1. 교육과정	○ 조경분야의 전문 교육과정 개설·운영
2. 교육시설 및 설비	○ 교육시설 및 설비를 갖추 것 ○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곳에 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소방안전설비를 갖추 것 ○ 교육시설은 24시간 교육전용으로 소유 또는 임차
3. 전문교수요원 (1개 이상 요건 충족)	○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보유 ○ 박사학위(또는 기술사) 보유
4. 전문교육 추진 및 운영 계획	○ 조경 전문교육 추진실적·계획 적절
5. 교육운영조직 및 예산	○ 전담인력 2명 이상 상시 고용 ○ 운영경비 조달계획, 지원금 활용계획 적절

**심사결과** 동 제정안은 삶의 질 향상으로 공원 면적 증가 등 조경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 조경인력 양성을 통한 조경 산업의 육성을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지정 요건 역시 유사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조경 산업 육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규정하였음을 고려하였을 때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조경진흥시설·단지 지정요건 **신설**

– 조경진흥시설·단지 지정요건을 정함

- (조경진흥시설) ① 5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서울시는 10 이상), ②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자가 30% 이상, ③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지원)시설의 면적이 총 면적의 50% 이상, ④ 공동이용시설 설치
- (조경진흥단지) ① 10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서울시는 20 이상), ② 조경관련 센터 및 기관 소재 ③ 교통·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설치

**심사결과** 동 제정안은 조경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진흥시설·단지의 지정 세부 조건을 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세부 지정 요건 역시 법 입법 취지·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소 요건으로 판단되어 적적성도 인정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고 및 감사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신설**

- 법 제1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1회 위반 : 30만 원, 2회 위반 : 70만 원)
-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1회 위반 : 50만 원, 2회 위반 : 100만 원)

**심사결과** 동 제정안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지원센터에 대해 보고 및 감사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조경진흥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과태료 부과 수준 역시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차등 적용 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적정성도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료 보아 원안의결

**(69)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신설**

-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1회 위반 : 50만 원, 2회 위반 : 70만 원)
-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7조를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1회 위반 : 400만 원, 2회 위반 : 200만 원)
-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12조를 위반하여 주택임대업의 현황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1회 위반 : 400만 원, 2회 위반 : 200만 원)
-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13조를 위반하여 위·수탁 계약서의 작성·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1회 위반 : 50만 원, 2회 위반 : 70만 원)

-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제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1회 위반 : 500만 원, 2회 위반 : 700만 원)
-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가능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1회 위반 : 50만 원, 2회 위반 : 70만 원)
-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를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의 제·개정 등을 협의하지 않은 경우,
  -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1회 위반 : 500만 원, 2회 위반 : 500만 원)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무주택 서민의 임차권 보장 및 주거안정'이라는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등에 대해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역시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정하였는바, 적정성도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에 보아 원안의결

### (7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류 제출기준 **신설**

- 인증 신청 시 제출되는 서류에 설계자 등의 서명날인을 포함
  - (제출 서류) 건축자재 및 설비 성적서 및 인증서, 냉난방·급탕·공조·환기 계통도, 조명밀도 계산서 등 10여 종

**인증신청  
도서목록**

- 건물 외피 전개도
- 장비용량계산서
- 조명밀도계산서
- 설계조도 계산서
- 설계변경 확인서 및 설명서
- 열원흐름도
- 냉난방·급탕·공조·환기 계통도
- 냉난방·급탕·공조·환기 배관평면도
- 예비인증 사본
- 건축자재 및 설비의 성적서 및 인증서 등



- (서명 날인자) 설계자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 단, 부득이한 경우 건축주가 날인 가능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설계-시공 간 괴리에 따른 부실인증 및 각종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제출 서류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제출 서류에 대해 설계자가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 건축주가 대신 서명 날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여 이는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71)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축진지구 내 개발행위 허가 **신설**

-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축진지구 내에서 해당사업과 관련없는 건축 등 행위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 등,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재,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7개 행위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축진지구 지정에 따른 투기 목적의 건축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행위허가제의 실효성 및 예측가능성 담보를 위한 것으로 그 종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7개 행위 역시 투기 목적의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정당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적정성도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7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전환율 **신설**

-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전환율 적용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중산층의 주거 안정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임차인의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환율 역시 임대보증금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임대사업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시장·군수 허가 **신설**

- 임대사업자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장기수선계획의 임의 조정 및 이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의 자의적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피용성이 인정되며, 시장·군수 등은 임대사업자가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경우 위법·부당 사항이 없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임대사업자의 조정 권한 자체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적정성도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73)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재계약 거절사유 추가 **신설**

- 임차인의 자산이 입주자격 요건을 초과하거나, 임차인의 소득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과의 임대주택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음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영구임대주택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입주만 소득·자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로 한정하여 입주민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소득·자산이 일정기준을 초과한 입주민에 대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세부 기준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을 개정하여 마련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차후 규제심사 시 검토할 예정인바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7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강화**

- 콜밴 운임 및 요금 사전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규정 마련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콜밴 요금 사전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별표2 제5호)	규정 없음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거나,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고 환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강화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은 경우 (별표2 제6호)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 2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3차 : 위반차량 감차조치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고 환급하지 않은 경우 (별표2 제22호)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2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3차 : 위반차량 감차조치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심사결과**

본 규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5조제5항)에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위임근거가 명확함. 본 규제는 동 「시행규칙」(제21조)에서 규정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콜밴 운송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통해 콜밴업계에 만연한 부당요금 수취행위를 근절하고, 또 이를 통해 외래 관광객을 비롯한 콜밴 이용 승객의 요금 관련 불만 및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처분수위를 상위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고, 콜밴 요금 사전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경우 입법예고안보다 처분 강도가 완화\* 되었으며, 동 시행규칙 상의 유사처분례\*\*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입법예고안과 수정안 비교>**

구 분	입법예고안	수 정 안
1차 위반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
2차 위반	위반차량 운행정지 20일	
3차 위반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요금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 처분

## (75)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 **신설**

- 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의 범위에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업무 철도종사자 포함

**심사결과** 본 규제는 「철도안전법」(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위임근거가 명확함. 철도차량 및 시설을 점검·정비하는 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할 경우, 차량정비 불량 또는 시설 이상을 초래하고, 또 이는 열차 전복·탈선 등 대형 열차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도차량 및 시설 점검·정비자에 대한 업무 투입 전 음주 등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현재도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에서 자체규정을 통해 피규제자를 음주약물 제한 대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고, 자체 음주판단 기준(혈중 알코올 농도 0.01% 이상)도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기준(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보다 엄격한 수준이어서, 본 규제가 도입되더라도 피규제자의 거부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또한 항공의 경우 항공기 정비종사자를 음주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등 유사입법례\*도 있어 본 규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본 규제가 도입되더라도 피규제자에게 부여되는 의무는 업무에 투입되기 전 음주행위를 하지 않거나,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음주판단 기준 이하로 술을 마시는 것으로, 규제 이행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 (항공법 제47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항공종사자) 운송용·사업용·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등(항공법 별표)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 (현행) 1회 위반시 2.5만원, 2회 위반시 5만원, 3회 이상 위반시 10만원
  - (개정)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매회 5만원



- 철도보호지구 내 조치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

- (현행) 구체적인 부과기준 없음
- (개정) 1회 위반시 12.5만원, 2회 위반시 25만원, 3회 이상 위반시 50만원

**심사결과**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 위반> 본 규제는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5만원)하게 부과하려는 것으로, 최근 3년간(13.1.1~15.8.31) 열차 내에서 무허가 물품판매 행위를 하다 적발된 자의 80.7%가 3회 이상 위반하여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고, 또 이들 대부분이 저소득 사회취약계층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과태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과태료 부과금액(5만원)을 상위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정하였고,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의 유사처분례(물품 강매·호객행위)와 비교할 때 규제의 강도가 동일하거나 약한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철도보호지구 내 조치명령 미이행> 본 규제는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사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의무 이행의 강제력 확보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위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정하였고, 동 시행령의 유사처분례(시정·조치명령 위반)와 비교할 때 규제의 강도가 약한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 (7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과태료의 부과기준 **강화**

- 불법자동차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 30만원 부과

**심사결과** 본 규제는 「자동차관리법」(제8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위임근거가 명확하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무고한 자를 허위로 신고함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고, 불법자동차 및 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여부 조사 등을 위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는 게 목적인만큼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30만원)을 상위법의 위임범위(50만 원 이하) 내에서 정하고 있고, 「경범죄처벌법」상 거짓 신고한 사람에 대한 처벌(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및 「형법」상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비교할

때 강도가 약한 수준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본 규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피규제자(허위신고자)의 비용부담을 전혀 초래하지 않음. 위임 근거가 명확하고, 유사입법례가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이견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동의

### (7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건축물의 단열기준 강화 **신설**

–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기 위해 단열기준(열관류율·단열재 두께 등)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 건축물로 구분하고, 현행 대비 평균 17.1% 상향 조정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파리기후협약 체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감축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건축주 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09년 이후 단열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규제의 적정성도 인정됨. 또한, 건축물의 유형별 열손실 정도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 건축물을 구분하여 단열기준을 달리 정한 것도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약 1.8억 원의 공사비 증가가 예상되나 난방에너지 절감 금액(약 4천만 원)을 고려하였을 때 투자비 회수기간은 4.3년에 불과하는 등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고 원안의결

### (78)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공공임대주택 일정비율 이상 의무 공급 **신설**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최소 5~10%를 확보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을 활용하더라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의무공급 규모 역시 공공성 확보와 수익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로 결정하였는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보고 원안의결



## 2. 해양수산부

◎ 집필자 김세욱 사무관 ☎ 044-200-2425 ✉ ksm123@pmo.go.kr

### 가.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5년도에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수산전통식품의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등 45개의 법령에 대해 강화 등 총 82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건 중 1건 개선권고, 81건 원안의결하였음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1.16)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2 (비중요 4)
(2) 수산전통식품의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1.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5.01.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5.01.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어선설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5.02.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어선복원성 및 만재흡수선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5.02.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5.02.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5.02.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 어선구조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5.02.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5.02.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1)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2.27)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 6)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2) 수산업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3.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4.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4) 도선법 개정안	경제분과위원회 (2015.03.27)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중요 1, 비중요 3)
(15) 어선법 개정안	경제분과위원회 (2015.04.10)	개선권고 1 원안의결 6	신설 7 (중요 1, 비중요 6)
(1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5.05.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5.22)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18) 해운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5.29)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19)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6.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0)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6.05)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3 (비중요 4)
(21)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6.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5.06.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3) 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6.26)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24)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5.07.0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5)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7.03)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6)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7.0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7) 항로표지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7.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5.07.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9) 어선설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5.07.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0)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7.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1) 선박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2)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3) 지정교육기관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5.09.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9.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5)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5.09.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6)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5.09.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7) 훈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5.09.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8)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방류종묘인증제 운영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5.10.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9)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0) 2015년 도래 재검도형 일몰규제 심사	경제분과위원회 (2015.10.30)	-	일몰규제 4건
(41)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13)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4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20)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43)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4) 해양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5.11.2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4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6)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11)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b>계</b>	-	<b>개선권고 1 원안의결 81</b>	<b>신설 51, 강화 31 (중요 2, 비중요 80)</b>

## 나.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강화 2)

#### 심사내용 면허취득 교육 등 **신설**

- 해기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을 명시하고 면허취득 전에 동 과정을 이수토록 함
  - (현행) 면허발급 → 교육이수 → 승선
  - (개정) 교육이수 → 면허발급 → 승선

**심사결과** 해수부에서 마련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국무회의 상정, '14.9)에 따라 연안 여객선 선원의 자질과 능력 제고, 대한민국 선원 면허 및 교육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면허 취득 전에 교육을 이수토록 할 필요성 인정. 또한, 면허발급과 교육이수 시기를 서로 조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과도한 부담이 아니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심사내용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신설**

- 운항관련 육상실습기간을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함

**심사결과** 해수부에서 마련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국무회의 상정, '14.9)에 따라 연안 여객선 선원의 자질과 능력 제고, 선원면허 및 교육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운항관련 육상실습기간을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 인정. 또한, 동 규제는 국제협약에 가입한 해외 해운 선진국 모두 자국법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심사내용 해기사 면허요건으로서의 해기사시험, 승무경력 **강화**

-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및 시험 강화
  - 6급항해사와 6급기관사의 승무경력 강화
    - ▶ 100톤 이상의 어선 이외의 선박 : 1년 ⇒ 2년
    - ▶ 5톤이상 100톤 미만의 어선 이외의 선박 : 2년 ⇒ 3년
  - 전자기관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및 시험기준을 마련



**심사결과** 해수부에서 마련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국무회의 상정, '14.9)에 따라 연안 여객선 선원의 자질과 능력 제고, 대한민국 선원 면허 및 교육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및 시험 강화 필요성 인정. 또한, 승무경력 강화는 5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과도한 부담이 아니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강화**

- 연안여객선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강화
  - 총톤수 3,000톤 이상 여객선에 항해사 1명 보강(3명→4명) 및 5,000톤 이상에 대한 승무기준을 신설
- 시운전선박 및 전자기관사의 승무기준 마련
  - (시운전선박) 선박의 항해구역, 선박의 크기(4단계)별 해기사의 승무자격을 각각 설정
  - (전자기관사)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및 절차에 따라 정하도록 함

**심사결과** 해수부에서 마련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국무회의 상정, '14.9)의 반영을 위해 연안 여객선 선원의 승무기준 강화가 필요하고 선박직원법('14.3.24. 공포, '15.3.25. 시행)에 '전자기관사'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세부 규정(승무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시운전 선박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시운전선의 해기사 승무요건 규정 필요. 또한, 동 규제는 국제기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국민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2) 수산전통식품의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우수식품 인증기관 재지정신청 절차규정 추가 **강화**

-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의 유효기간 만료 시 재지정 요령 내용 추가
  -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5년) 만료 3개월 전에 지정 신청함으로써 연속성 있는 인증업무 수행 근거 마련

**심사결과** 상위법(식품산업진흥법)이 우수식품 인증기관 재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13.3)됨에 따라, 기존 인증기관 지정신청 절차에 재지정신청 절차규정을 추가할 필요. 또한, 인증기관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 재지정 신청토록 함으로써 유효기간 만료 후 재지정 신청 시 약 2개월 간의 심사기간 동안 자격 정지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우수식품 인증기관 재지정 신청방법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3)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 범위내에서 세부 부과기준 마련
  - 국립해양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한 횟수에 따라 100만원(1회) ~ 500만원(3회이상)의 과태료
  - 국립해양박물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횟수에 따라 50만원(1회) ~ 250만원(3회이상)의 과태료

**심사결과** 해양문화와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존·연구하기 위해 ‘국립해양박물관법’이 제정(14.10.15, 의원입법)되고, 국립해양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할 필요. 또한, 법률로 정한 상한액(500만원)을 과태료 최고금액으로 하되, 위반내용·정도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유사 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한 수준이고,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4)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 범위내에서 세부 부과기준 마련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명칭을 사용한 횟수에 따라 100만원(1회) ~ 500만원(3회이상)의 과태료
  -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횟수에 따라 50만원(1회) ~ 250만원(3회이상)의 과태료



**심사결과**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14.10.15, 의원입법)되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할 필요. 또한, 법률로 정한 상한액(500만원)을 과태료 최고금액으로 하되, 위반내용·정도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유사 입법례와 비교시 적절한 수준이며,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5) 어선설비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어선설비기준 **강화**

- 어선원 복지공간(식당, 식품창고, 대변소) 설치대상 확대
- 충돌예방설비(자동식별장치(AIS), 어업등) 설치대상 확대
- 구멍뚫목 정비기록 방법 개선(주요정비과정 사진으로 기록)

	현 행	개 정
식당, 식품창고, 대변소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에 한정	배의 길이 <u>24미터 미만(총톤수 10톤 이상)</u> 에도 설치
자동식별장치(AIS)	배의 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에 한정	배의 길이 <u>45미터 미만(총톤수 10톤 이상)</u> 에도 설치
어업등	전장 20미터 이상 또는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에 한정	<u>야간항행을 하는 전장 20미터 미만 또는 총톤수 20톤 미만(총톤수 10톤 이상) 어선에만 설치</u>
구멍뚫목 정비기록	별지의 형식으로만 기록·관리	<u>주요정비과정을 사진으로 기록·관리, 소유자 요구시 사진 제시</u>

**심사결과** 수산업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국제기준에 맞춤으로써 선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및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규제의 필요성 인정. 또한, 어선원 복지 및 어선 안전 향상이 기대되고 일부 경과규정 및 유예기간을 두어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6) 어선복원성 및 만재할수선 기준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복원성기준 적용대상 확대 **신설**

– 복원성기준 적용대상 확대

- (현행)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의 낚시어선에 대하여 복원성기준을 적용하되, '00년 7월 30일 이후 건조된 어선으로 한정
- (개정) '00년 7월 30일 전에 건조된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의 낚시어선에 대하여도 복원성기준을 적용

**심사결과** 제2의 세월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그간 복원성기준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었던 '00년 7월 30일 전에 건조된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의 낚시어선에 대하여도 복원성기준을 적용할 필요. 또한, 복원성승인비용이 과도하지 않은 반면(적당 6만원) 국민안전 확보라는 편익이 크게 기대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7)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우수식품 인증기관 재지정신청 절차규정 추가 **신설**

- IMO 국제구명설비코드의 구명정 이탈장치에 대한 시험 요건을 수용
- FRP 어선의 화재예방을 위해 난연성 적층용 수지액 시험요건 신설

**심사결과** 국제협약(LSA Code) 개정 사항을 국내기준에 수용하여 구명정 이탈장치의 성능요건을 개선하고, 금번 「어선구조기준」 개정(안)에서 '난연성 적층용 수지액' 시공 대상을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 계기로, 어선용 기준을 명문화하여 화재에 취약한 FRP어선의 화재안전성 제고 필요. 또한, 시험신청 비용 증가가 예상되지만, 어선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인명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얻게되는 편익이 큰 점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8)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강화**

- 어선원 복지공간(간식변소, 조리실) 설치
- 무인기관실 소화장치, 무선설비 설치대상 확대
- 야간항행을 하는 어선에 어업등 설치

	현 행	개 정
간식변소, 조리실	미설치	<b>총톤수 8톤 이상</b> 의 어선에 한정
무인기관실 소화장치	총톤수 5톤 이상의 어선에 한정	<b>총톤수 5톤 미만(2톤 이상)</b> 에도 설치
무선설비	총톤수 5톤 이상의 어선에 한정	<b>총톤수 5톤 미만(2톤 이상)</b> 에도 설치
어업등	미설치	<b>야간항행을 하는 어선</b> 에 한해 설치

**심사결과** 수산업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국제기준에 맞추므로써 선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및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규제의 필요성 인정. 또한, 어선원 복지 및 어선 안전 향상이 기대되고 일부 경과규정 및 유예기간을 두어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9) 어선구조기준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어선구조기준 **신설**

- 난연성 적층용 수지액 등 적층대상 확대
  - (현행) 총톤수 10톤 이상 어선의 기관실에 ▲난연성 적층용 수지액 적층, ▲방화용 도료 도포, ▲방열재 부착 등으로 시공 의무
  - (개정) 총톤수 10톤 미만 새로이 건조되는 어선 기관실에도 난연성 적층용 수지액 등으로 시공토록 함

**심사결과** 중·소형 어선 대부분(90%)이 화재에 취약한 강화플라스틱 어선이나, 현행 법령상으로는 ‘난연성 수지액’ 등 시공대상이 총톤수 10톤 이상 어선에만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10톤 미만 어선의 경우는 시공이 면제되어 있음. 따라서 화재에 취약한 10톤 미만 어선의 화재안전성을 제고하여 인명피해를 방지할 필요. 한편, 기존 어선은 도포가 곤란하여 신조어선에만 적용하고 신조어선 적당 규제비용은 65만원 수준으로 부담이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10)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가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우수식품 인증기관 재지정신청 절차규정 추가 **강화**

-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가준을 강화
  - 낚시터용(붕어·잉어·향어) 이식(국내반입) 크기기준 : 제한없음 → 20cm 이상
  - 양식용 자라의 이식(국내반입)은 국내산과 동종에 한하여 이식승인

**심사결과** 낚시터방류용은 이식승인 물량에 제한이 없어 20cm 이하 크기의 경우 양식용으로 용도전환 가능성이 있으나, 낚시터방류용은 주기적인 질병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식장에 들어갔을 경우 양식어민 피해와 방역관리 측면에서 2차 피해 발생 가능 따라서 낚시터방류용(20cm 이상)과 양식용(20cm 이하) 이식물량의 크기를 구분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이식승인의 사용을 차단하고 효율적인 질병 및 방역관리를 위해 이식승인의 강화가 필요. 또한, 자라는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서식하지 않는 환경위해성 대형종이 무분별하게 이식(국내반입)되어 심각한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동종에 한해 이식승인 기준 마련 필요. 한편, 동 규제는 상위법인 「수산자원관리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이해관계자인 낚시업계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11)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신설 6)

**심사내용** 검수사 등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제재 **신설**

- \* 검수(檢數) : 선적화물(船積貨物)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인수를 증명하는 일
- 검수사·감정(鑑定)사·검량(檢量)사 자격시험 시행 중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제한 등 제재
  -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국가자격시험 시행 중 부정행위자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험 응시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통한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 인정. 또한, 「공인노무사법」, 「관세사법」, 「변리사법」 등에서도 국가자격시험 시행 중 부정행위자를 제재(3~5년간 자격정지)하는 규정을 두는 등 유사 입법례를 감안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선박급유업 사업계획 변경신고 제도 **신설**

- 선박급유업자가 타 항만 등록 자기 선박 또는 타 업체 등록선박을 일시 용선하여 급유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화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안전확보를 위해 정식 급유선이 아닌 선박을 통한 급유를 차단하되, 안전장치를 갖춘 타 업체 급유선을 일시 용선하여 급유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게 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수요에 대한 적기대응과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 인정. 또한, 「해운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주택법」 등에서도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인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하는 등 유사 입법례를 감안할 때 적정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부두운영회사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신설**

-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부두운영회사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대료 감면 등 조치(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부두운영회사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동안 업무지침에 의해 시행해오던 행정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과 평가에 대한 피규제자(TOC)의 신뢰도 및 순응도 향상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해부수에서 고시한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어 부두운영회사에 대한 새로운 부담사항은 아니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부두운영회사와 체결한 임대계약 해지 **신설**

- 항만시설운영자는 ▲공공의 목적에 반하는 경우, ▲부두운영회사의 임대료 체납, ▲사전 승인없이 다른 자에게 임대시설의 전부를 사용하게 하거나 운영권 일체를 행사하도록 한 경우, ▲기타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대 계약을 해지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공공복리 증진 또는 부도운영회사(TOC)의 귀책사유 등 발생 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동안 '부도운영 표준 임대차계약서'상의 관련 규정에 의해 운영해오던 계약해지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부적정한 업체의 부도운영 배제 필요성이 인정됨. 한편, 동 규제는 해부수에서 마련한 「부도운영 표준 임대차계약서」의 관련 규정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어 부도운영회사에 대한 새로운 부담사항은 아니며, 「국유재산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등 유사입법례를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부도운영회사에 위약금 부과 **신설**

- 부도운영회사로 선정될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화물유치계획 및 투자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위약금 부과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부도운영회사 선정 시 제출한 화물유치계획 및 투자계획 미이행 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동안 '부도운영 표준 임대차계약서'상의 관련 규정에 의해 운영해오던 위약금 부과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부도운영회사로 하여금 실현 가능한 화물유치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게 할 필요성 인정. 한편, 동 규제는 해부수에서 마련한 「부도운영 표준 임대차계약서」의 관련 규정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어 부도운영회사에 대한 새로운 부담사항은 아니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항만운송사업자에 고용된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의무화 **신설**

-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중 항만운송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해수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함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항만근로자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육체노동 및 위험화물 취급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항만운송 작업 종사자들의 안전 향상 및 재해발생 예방을 위해 필요. 또한, 타 업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주기적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함을 감안하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12) 수산업법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어업의 허가 **강화**

- (현행) 불법어업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되더라도 1년의 범위내에서 어업허가를 제한하고, 제한기간 이후에는 별도의 조건 없이 재허가
- (변경) 불법어업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년의 범위내에서 어업허가를 제한하고, 어업허가와 관련하여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의 교육을 추가

※ 새로운 허가의 제한기간 조정(안)(시행규칙 별표7)

취소사유	현행	조정(안)
거짓으로 허가 받은 경우, 허가어업 외의 어업, 어로한계선 월선	1년	2년
조업자제선 월선, 사전신고 없이 휴업	6개월	1년
어업협정 위반, <b>기타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b>	5개월	10개월

**심사결과** 현재 대부분의 불법(포획채취기간 위반 등) 어업자들은 어업허가 취소 시 최소 5개월 경과후 새로운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상습 불법어업자에 대한 제재로서 어업허가 취소처분의 실효성이 약하고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허가 제한기간 이후 아무런 조건 없이 새로운 어업허가를 하는 비정상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어업허가 취소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수산자원·어선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수산자원관리 제도의 정착과 준법어업 유도라는 측면에서 필요성 인정. 한편, 동 규제는 법령을 수차례 위반하여 경고·정지처분 등을 이미 받은 바 있는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 위반 수준 대비 과도하지 않고 수산관련 교육이수시 교육비 부담발생이 예상되지만 불법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어업인들간의 마찰이 감소되며, 어업생산성 향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또한, 「도로교통법(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수산업법」에서 어업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그 면허를 취소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어업면허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1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법의 적용대상 어선범위 **강화**

-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 확대를 위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선의 범위를 축소(5톤→4톤)
  - (현행)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제외대상 : 5톤 미만의 어선
  - (변경)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제외대상 : 4톤 미만의 어선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어선의 범위를 축소하여 당연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소형·영세어선 승선어선원 보호 강화 및 어선어업 경영안정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15년에 무사고 환급금을 도입, '16년에 휴향 환급금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고, 1964년 도입된 산재보험의 경우 36년만인 2000년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의무적용 대상을 확대한 점을 감안할 때 어선원보험분야도 점차 확대하는 것은 적정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14) 도선법 개정안 (신설 3, 강화 1)

#### 심사내용 면허의 갱신 **강화**

-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5년) 및 갱신제도 도입

**심사결과** 현재 도선사면허는 취득후 유효기간 없이 정년(65세)까지 유지하도록 되어있어 도선사의 자질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함에 따라 도선사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여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 및 항만 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 필요성 인정. 또한, 주요 해운국(대만, 일본,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등)들도 매 5년 마다 면허를 갱신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등 외국 사례를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입법예고 결과 도선사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심사내용 면허의 강등 **신설**

- 도선사면허 등급 강등(또는 승급 제한)제도 도입
  - \* 개정안은 도선사의 경력에 따른 등급을 현행 1,2종에서 1~4 등급으로 변경



- 3개월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1~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행한 위반행위로 다시 1~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도선사면허를 1등급 강등
- 1등급 강등기준에 해당하나 면허가 4급인 경우 : 1년간 승급 제한

**심사결과** 도선사가 경각심을 갖도록 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유도하고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선사 면허 강등제 도입에 대해 동의. 다만,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기존의 처분을 강화하거나 재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권고

**심사내용** 정보의 제공의무 **신설**

- 도선사의 선장에 대한 도선계획 제공 의무화
  - 도선사는 선장에게 도선계획을 사전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심사결과** 선박에 도선사 승선시 선장이 도선사의 비정상적 선박 운항 가능성 통제를 위해 필요성 인정. 또한, 동 규제가 도입된다 해도 각 항만의 도선구(導船區)별 도선사회별로 자체적으로 작성한 도선정보가 있어 추가적으로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도선사의 비정상적 선박 운항 가능성을 통제하여 해양사고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결과 도선사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직무교육 등 **신설**

- 도선사 교육훈련제도의 도입
  - 도선사면허를 갱신하려는 도선사는 해수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의무화
  - 면허갱신일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도선사는 직무교육 외에 특별안전교육 의무화

**심사결과** 선박의 대형화·고속화 및 첨단 선박장비의 등장 등 도선여건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도선사 자질 향상을 위해 도선사의 정기 재교육 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에서도 도선당국이 도선사의 안전도선을 위한 정기 재교육을 매 5년마다 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도선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어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15) 어선법 개정안 (신설 7)

**심사내용** 어선중개업 등록 등 의무화 **신설**

- 어선중개업의 등록제 도입 등
  - 어선중개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변경등록 의무, ▲등록 유효기간(3년), ▲등록의 갱신, ▲교육 등을 규정하고, 해수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규정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선중개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중개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운법 등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됨. 다만,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는 것은 그 타당성을 찾기 어려운바, 삭제를 개선권고함. 또한 어선중개업자의 자질이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하위규정에 마련할 것을 부대권고함

**심사내용** 결격사유 **신설**

- 어선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
  - i)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ii)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 iii)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2년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유예 중인자
  - iv)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v) 대표자가 i) ~ iv)까지의 규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어선중개업 등록 의무화 등과 함께 신설되는 규제로 불완전한 어선중개서비스로부터 어민들을 보호하기위해 동 제도를 운영·종사하고자 하는 자들의 최소한의 자격 규정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필요성 인정. 또한, 「해운법」, 「공인중개사법」, 「자동차관리법」 등에서도 중개업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을 두는 등 유사 입법례를 감안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이해관계자 토론회(‘14.6.24) 등을 통한 의견조회 결과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어선중개업자의 의무 **신설**

- 어선중개업자의 어선거래 중개시 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규정
  - 어선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본을 보존
  - 거래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작성 금지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어선중개업 등록 의무화 등과 함께 신설되는 규제로 중개업자에 의한 어선거래 수행시 중개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여 거래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 인정. 또한, 「공인중개사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등에서도 중개 의뢰인에 대한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의무 규정을 두는 등 유사 입법례를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이해관계자(어선거래 전문 중개업자) 토론회(14.6.24) 등을 통한 의견조회 결과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손해배상책임 **신설**

- 어선중개업자의 거래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
  - 어선중개업자는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
  - 또한,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심사결과** 어선중개업 등록 의무화에 수반되는 규제로 어선중개업자의 책임으로 어선거래 중개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거래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여 거래당사자의 피해 구제수단 확보와 어선중개업자의 거래의뢰인에 대한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 유도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 인정. 또한, 「공인중개사법」, 「자동차관리법」 등에서도 중개업자의 책임으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규정을 두는 등 유사 입법례를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이해관계자(어선거래중개업자) 토론회(14.6.24)를 통한 의견조회 결과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어선거래정보의 제공 **신설**

- 어선중개업자에게 어선거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해수부장관은 어선거래시스템을 이용한 어선거래에 관한 자료를 어선중개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심사결과** 어선중개업 등록제·어선거래시스템 도입에 수반되는 규제로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 시장 형성 및 어선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성 인정. 한편, 「수산업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식품부)」 등에서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이에 필요한 거래정보 보고에 관한 규정을 두는 등 유사 입법례를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어선거래 자료제출은 해수부가 구축한 거래시스템이 제공하는 양식에 내역을 입력함으로써 완료됨에 따라 어선중개업자 입장에서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또한, 입법예고 및 이해관계자(어선거래 전문 중개업자) 토론회('14.6.24)를 통한 의견조회 결과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신설**

- 어선중개업자의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사유를 규정
  - i)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중개업을 등록·변경등록 한 경우
  - ii) 지도·감독을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 iii)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iv)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v)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vi)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다만, i) 과 iii)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어선중개업 등록제 도입과 이에 따른 여러 제도들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거래질서 유지 및 어선중개업 등록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 필요성 인정. 또한, 「해운법」, 「자동차관리법」, 「공인중개사법」 등에서도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는 등 유사 입법례를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이해관계자(어선거래 전문 중개업자) 토론회(14.6.24)를 통한 의견조회 결과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과태료 **신설**

-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근거를 마련
  -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 관계 증서의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어선중개업 등록제 도입과 이에 따른 어선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거래질서 유지 및 원활한 어선중개업 등록제 정착을 위해 그 필요성 인정. 또한, 「자동차관리법」, 「공인중개사법」 등에서도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두는 등 유사 입법례를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이해관계자(어선거래 전문 중개업자) 토론회(14.6.24)를 통한 의견조회 결과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1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해수욕장 시설\* 정비·보수 미이행시 운영정지 **신설**

\* 해수욕장시설 : 백사장, 환경시설, 안전시설, 체육시설, 이용자 편의시설, 행정시설, 판매·대여시설 등(해수욕장법 제2조)

- 해수욕장 시설 정비·보수 미이행시 운영정지 명령 근거 신설
  - 정비·보수명령 미이행으로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청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시설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음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해수욕장 시설 정비·보수명령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청 등은 시설소유자 등에게 정비·보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에도 시설개선이나 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규제의 이행력 확보차원에서 필요성 인정. 또한, 유사입법례(「청소년활동 진흥법」 여성가족부) 검토결과 시설의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 의한 ‘시설의 운영 정지’ 제도를 시행중임을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1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마리나업\*등록기준 및 변경등록사항 **신설**

\* 마리나업 : 마리나선박\*\*을 대여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계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마리나선박 등의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

\*\* 마리나선박 :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보트 및 요트를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상위법 위임에 따라 마리나업(선박대여업, 보관·계류업) 등록기준, 변경등록사항을 정함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마리나선박	「선박안전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 또는 기구
사업자자격	대여업자 및 종사자는 「선박직원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와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출 것
사업장기준	선석이 구분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중 일부를 보유하거나 3년 이상 임대할 수 있을 것

•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기준

사업장기준	선석이 구분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중 일부를 보유하거나 3년 이상 임대할 수 있을 것
-------	---

• 마리나업 변경등록사항

▶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등록 시설, 사무실 소재지 등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마리나업(선박대여업, 보관·계류업) 등록기준 및 변경등록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기존 법령(「유선 및 도선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등)에서 반영하지 못한 마리나업 특성과 현실에 맞는 개별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기존 유선업자, 수상레저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보다 완화된 수준이고, 해외사례(미국)를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보험가입 기준 **신설**

- 상위법 위임에 따라 마리나업(선박대여업, 보관·계류업) 등록사업자의 보험가입 기준(가입기간, 가입금액)을 정함
  - 가입기간 : 마리나업의 등록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 가입금액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책임보험금〉**

구 분	보 험 금
1. 사망한 경우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최소 2천만원)
2. 부상한 경우	<b>상해정도에 따른 책임보험금 범위내</b>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 : (1급) 2천만원, (2~3급) 1천만원, (4~5급) 900만원, (6~7급) 500만원, (8~9급) 240만원, (10~11급) 160만원, (12~14급) 80만원
3. 후유장애	<b>후유장애의 정도에 따른 책임보험금 범위내</b> 손해액 보상 : (1급) 1억원, (2급) 9천만원, (3급) 8천만원, (4급) 7천만원, (5급) 6천만원, (6급) 5천만원, (7급) 4천만원, (8급) 3천만원 등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보험가입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사고발생시의 신속한 피해보상 등을 위해 보험가입기준을 구체화할 필요성 인정. 또한, 기존 해양레저사업의 보험가입 조건 수준에 준함을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인 한국마리나산업협회(선주, 제조업체, 마리나 운영사 등 의견 조화)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마리나 시설 공유자 및 회원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신설**

- 상위법 위임에 따라 마리나시설 공유자 및 회원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을 정함

구 분	준 수 사 항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를 제한하지 아니할 것
시설의 이용	공유자·회원이 이용하지 않는 선박이나 계류·보관시설만을 일반에게 이용토록 하고, 그 이용계획을 공유자·회원 대표기구와 협의하고, 이용명세서를 공개
시설 유지·관리 비용의 징수	시설 유지·관리 비용만을 징수하고, 관련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표기구와 협의·공개할 것
회원의 입회금의 반환	입회기간과 입회금은 체결한 계약에 따르되, 입회기간이 끝난 후 이를 반환 요구시에는 10일 이내에 반환
회원증의 발급 및 확인	공유자나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발급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2명 이상의 공유자·회원으로 대표기구를 구성할 것
그 밖의 공유자·회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에 마리나업 등록번호·일자, 시설물의 현황·소재지, 연간 이용일수 및 회원의 입회기간을 명시

##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마리나 시설 공유자 및 회원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마리나시설에 대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 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성 인정. 또한, 기존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의 규정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준수사항을 정함을 감안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인 한국마리나산업협회(선주, 제조업체, 마리나 운영사 등 의견 조회)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심사내용

마리나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 기준 **신설**

- 상위법 위임에 따라 마리나시설(선박, 보관·계류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 기준을 정함

구 분	모집 기준
소 유 권	분양 또는 회원모집 하고자 하는 마리나선박 또는 보관·계류시설이 지어지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분양인원	마리나선박당 분양인원은 2명이상으로 하되, 가족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말 것
이용일수	365일을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인원수로 나눈 범위 이내
기 타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선 안되고, 수상레저사업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마리나선박이나 그 보관·계류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모집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성 인정. 또한, 기존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의 규정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모집기준을 정함을 감안할 때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인 한국마리나산업협회(선주, 제조업체, 마리나 운영사 등 의견 조회)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검토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18) 해운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신설**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규정의 수립·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임하는 자(해운법 제21조의5)

- 선사의 자체적인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과 인원을 정함
  - (자격기준) 총톤수 3천톤 이상 3급 해기사, 5백~3천톤 4급, 500톤미만 5급 등
  - (인원기준) 선사별 최소 1명, 6척이하 3척당 1명, 7척~12척 : 4척당 1명 등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해운법」 개정으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자격기준과 인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가진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토록 하여 내항여객운송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성·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 인정. 또한, 동 규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유사입법례인 「해사안전법 시행령」 상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보다 완화된 수준이며, 별도 채용을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적정성 인정되는 바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과징금 처분 **강화**

- 상위법에서 정한 과징금 한도(최대 10억원)내에서 위반행위에 따라 업종별로 과징금 세부 부과기준 마련 (별표2)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과징금 수준 인상, 신규 위반사항 등이 규정됨에 따라 과징금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안전의무 이행력 제고와 사업자의 안전관리 경각심 제고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 인정. 또한, 법률로 정한 상한액(10억원)을 과징금 최고금액으로 하되, 위반내용·정도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유사 입법례(「항공법 시행령(국토교통부)」)와 비교 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 **강화**

- 상위법에서 정한 과태료 한도(위반 사항에 따라 100~500만원)내에서 세부 부과기준 마련(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 (별표3)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과태료 수준 인상, 신규 위반사항 등이 규정됨에 따라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안전관리를 위해 신규 도입된 제도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 인정. 또한, 법률로 정한 상한액(5백만원)을 과태료 최고금액으로 하되, 위반내용·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유사 입법례(「철도안전법 시행령(국토교통부)」)와 비교 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19)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원양어업 허가 및 신고 **강화**

- 원양어업의 허가사항 중 ‘경미한 변경사항’ 범위 축소
  - (현행) i) 성명, ii) 주소, iii) 어선의 선명·톤수·길이·너비 및 깊이, iv) 기관의 마력
  - (변경) i) 성명, ii) 주소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원양어선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안전 확보를 위해 원양어선의 선명과 구조 변경을 허가사항으로 재분류한 것으로, 그간 미국과 EU 등에서 국적 원양어선의 불법어업(IUU)에 관한 이력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어선의 구조(톤수, 길이, 너비, 깊이) 및 마력은 안전운항과 더불어 일부 국가의 입어조건에 해당하여 규제 강화의 필요성 인정. 한편, 동 규제는 국제사회의 요구사항(“원양어선의 불법어업에 관한 지속적인 이력관리”)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20)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3)

**심사내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기준 **강화**

- 해상여객운송사업 업종별·규모별로 자본금 세부기준 마련

### 〈자본금 기준(안)〉

사업의 종류	자본금 기준
내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객선 총톤수 합계 500톤 미만 : 2억원</li> <li>○ 500톤 이상, 3,000톤 미만 : 4억원</li> <li>○ 3,000톤 이상 : 10억원</li> </ul>
외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	10억원
순항 여객운송사업	50억원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50억원

- 카페리 등 여객·화물 겸용 여객선 선령 연장 가능 기한을 단축(10년→5년)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상위법 위임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으로 자본금 세부기준을 정하고, 여객·화물 겸용 여객선(카페리 등) 선령제한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차질 없는 시행 및 선박안전 도모를 위해 필요. 한편, 업종·선박규모 등의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자본금 기준을 설정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월호 사고 이후 노후 선박에 대한 국민적 우려·불신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안전 제고를 위해 외국사례를 참고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시행하는 바,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여객선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 공개 **신설**

-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이력관리 방법 및 내용을 정함
  - (이력관리 방법) 이력관리 장부로 작성하여 관리
  - (이력관리 내용) 선박의 도입 및 매매, 선박의 도입 후 운항항로 이력, 검사결과, 사고이력, 개조이력
-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정보 공개 범위 및 절차를 정함
  - (공개 범위\*) 여객선의 총톤수, 여객 정원, 화물적재톤수, 운항관리규정 등

\* 상위법에 선령, 검사결과, 사고이력 등을 규정하고 기타 여객운송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시행규칙에 위임

- (공개 절차)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자사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해운조합 홈페이지 이용 가능)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상위법에 여객선의 이력관리, 안전정보 공개 제도 등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내용·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여객선의 도입·개조·검사·사고 등의 종합·관리로 효율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알권리 향상 및 선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 유도라는 측면에서 필요성 인정. 또한, 국제협약 및 해외사례와 유사 입법례를 감안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인 해운조합 등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운항관리규정의 작성·제출 **강화**

-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제출시기 변경
  - (현행) 운항개시 7일전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
  - (개정) 운항개시 14일전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해운법」 개정으로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되고, 하위 법령에 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과 심사 절차(서류심사·현장심사) 등이 규정됨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이 내실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 인정. 한편, 내실있는 운항관리규정 심사를 위해 운항관리규정 제출시한을 14일로 강화하되, 경미한 사항(운항시간 및 횟수, 비상연락망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7일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한 바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여객의 승선신고서 작성 및 제출 **강화**

- 승선권·운송장 표기내용, 화물 계량증명원 확인 의무 규정
  - ▲사업자가 여객·운송인 등의 성명, 연락처 등이 표기된 승선권·운송장을 발급하고,
  - ▲ 화물은 계량증명원을 확인토록 규정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해운법」 개정으로 여객 신분확인과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의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신설된 사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내용·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여객의 신분확인 및 화물중량의 객관적 확인(계량증명원 발급·확인) 절차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필요성 인정. 또한 유사분야인 항공분야에도 유사한 의무가 있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2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상향조정
  - 과태료 하한을 타 법률상의 과태료 하한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함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해수욕장 준수사항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 유사입법례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과태료 부과행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그 처벌수위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해수욕장법」 상 과태료 부과액 조정의 필요성 인정. 타 유사입법례를 적절히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2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신설 1)

### 심사내용 자체안전관리계획 유효기간 설정 **신설**

- 위험물 자체안전관리계획 유효기간 설정(5년)
  -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최초승인은 위험물을 하역하기 전에, ▲변경승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갱신승인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위험물 하역업체가 자체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관리할 수 있도록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성 인정. 또한, 해외사례와 유사 입법례를 감안할 때 적정하고 추가비용이 거의 없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23) 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5)

### 심사내용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신설**

- 여객선 안전관리 전담 승무원 승선 대상 선박, 자격요건 및 승선인원 신설
  - (대상선박)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 (자격요건) 여객선 상급교육 이수자 (교육기간 4일)
- (최소 승선인원) 여객 정원에 따라 1~4명 이상 승선 (여객정원 100명 이상 선박을 대상으로 하고 500명 기준으로 증원)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상위법에 도입된 “여객 안전관리승무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 요건을 정하는 것으로서 필요성 인정. 또한 철도·항공분야 등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적정성 인정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내항선 예비원 확보 **신설**

– 내항선 예비원 확보 대상 확대

현 행	개 정(안)
1) 4척 이상 선박 소유자	1) 4척 이상 선박 소유자 2) 유조선 등 위험물 적재선박(500톤 이상) 3) 연해구역 이상 항해하는 모든 여객선 ※ 2), 3)의 경우로서 보유선박이 3척 이하인 경우 다른 선박소유자와 공동 운영 가능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이 내항 예비원 확보 적용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 요건을 정하는 것으로서 필요성 인정. 동 규제수준이 국제기준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선박소유자의 의무(제복제공) **신설**

- 선원에 제복을 제공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 제공시기 등을 신설
  - (제복제공자)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람(61개 여객업체)
  - (제복공급 시기) 2년에 2벌(하계·동계용)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이 선원에 대한 제복제공 대상 선박소유자와 제복 제공시기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필요성 인정. 현재 이미 대부분(90%)의 여객업체에서 제복을 제공중이며 입법예고 결과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선장의 의무 **신설**

- 출항 전 선장의 검사·점검사항을 규정
  - ▲항로 및 항해계획의 적정성, ▲해당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기상 및 해상 정보, ▲비상배치표 및 개인별 임무 숙지상태 확인, ▲그 밖에 선장이 안전항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선장의 직접 조종지휘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
  - ▲안개, 강설, 폭풍우 등 시계 제한으로 사고 우려 시, ▲통항량 폭주, ▲조류·해류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 ▲선박 설비 고장 등으로 정상 운항 곤란 시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상위법에 i) 출항 전 선장의 검사·점검사항, ii) 선장의 직접 조종 지휘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그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시행규칙에 추가하는 것으로, 선장의 책임성 강화 및 여객의 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 필요성 인정. 한편, 동 규제는 항공분야 등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적정하고, 선장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거의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여객선 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등 **신설**

-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항목 규정
  - 현행 「선원업무 처리지침(해수부훈령)」 상의 단순 항로숙지 등 6개 항목에서 ‘위기관리능력’, ‘비상시 의사결정 능력’ 등을 추가하여 8개 항목 규정
    - \* 현행 적성심사 항목 : ①선장책임 운항사고 경력, ②당해항로 운항경력, ③무선통신시설 조작능력, ④안전교육 이수여부, ⑤취항항로의 표지 숙지여부, ⑥특수항로(조류, 협수로, 암초 등) 특성 숙지여부
- 적성심사 유효기간, 응시제한 사유 등 규정
  - (유효기간) 3년 (65세 이상의 경우 2년)
  - (응시제한 사유) 적성심사에서 3회 연속 부적합 판정시 (1년간)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상위법에 여객선 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규칙에 적성심사기준의 충족확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선장의 자질향상 유도라는 측면에서 필요성 인정. 또한, 철도분야 등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적정성 인정되며, 입법예고 결과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24)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 심사내용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에 대한 카지노업 허가 **신설**

-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에 대한 ▲카지노 허가요건, ▲영업관련 제한사항, ▲시설 기준, ▲설치면적의 상한 등을 정함
  - (허가요건) 국제순항크루즈사업자의 신용상태(‘투자적정’ 등급 이상), 사업계획서 적정성, 재정능력, 내부통제방안
  - (영업관련 제한사항) 관광진흥법령의 카지노 휴업제한 일수 등 준용(정당한 사유없이 60일 이상 휴업 금지)
  - (시설기준) 전용사업장, 환전소, 게임기구 및 시설, 전산시설 등 구비
  - (설치면적 상한) 10만톤급 미만/1,300㎡, 10만톤급 이상 2,600㎡

**심사결과** 동 제정안은 상위법에 위임에 따라 총톤수 기준 외 카지노업 허가요건과 그 밖에 카지노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한 것으로 필요성 인정. 한편, 동 규제에 대한 유관기관의 의견, 타 입법례 및 해외사례, 실제 운영상 현실적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정된 바 적정성 인정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200만원) 범위내에서 세부 부과기준 마련

####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금 (만원)
보고 또는 자료제출 위반자	50(1회위반) / 100(2회위반) / 200(3회위반)
허위 보고·자료 제출자	50 / 100 / 200
출입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자	50 / 100 / 200

**심사결과** 동 규제는 상위법령이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 인정. 한편, 동 규제는 법률로 정한 상한액(200만원)을 과태료 최고금액으로 하되,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유사 입법례와 비교시 적정한 수준이며,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25)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 심사내용 선박검사 후의 시설변경 허가 **강화**

-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선박의 개조·변경을 허용
  - 여객선 : 개조 후 KG값이 개조 전 보다 상승되지 않는 경우
  - 여객선 이외의 선박 : 개조 후 GoM값이 음수가 아닌 경우
- 선박의 개조·변경에 대한 허가대상을 확대
  - (현행)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및 용도의 변경
  - (변경) 기존내용 + 주기관, 조타·구명·소방·거주설비의 변경, 여객선 복원성자료 재승인, 최대승선인원이 증가하는 경우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복원성 기준을 정하고, 선박의 개조·변경 허가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성 인정. 한편 동 규제는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와 비교 시 적정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심사내용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지정사업장 지정요건 강화 **강화**

- 지정사업장 지정요건 중 전문인력요건 강화
  - (자체검사자) 경력요건 신설(제조·정비 또는 검사경력 5년, 검사원 경력 1년)
  - (담재확인자) 정비기술자 2명 중 1명을 담재확인자로 지정

**심사결과** 세월호 구명뗏목 정비업체의 부실정비 등 선박용물건 지정(제조, 정비)사업장의 신뢰도 하락으로 부실정비 등 방지대책 필요성 인정. 미국, 일본, EU는 지정사업장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중이며, 사업장 지정 시 품질관리 능력과 자체검사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 등 요건을 확인하고 있음. 한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지정사업장에게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만, 선박용물건의 신뢰성 향상으로 선박과 인명의 안전이 향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고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부담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26)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외부전문가 감사의 자격요건 **신설**

- 조합 감사 2명 중 1명의 외부전문가 감사의 자격요건 신설
    - i) 중앙회, 조합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 ii) 수산·금융 관계 분야 연구기관·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5년 이상
    - iii) 판·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5년 이상
    - iv) 주권상장법인에서 법률·재무·감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 임직원 5년 이상
    - v)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감독원에서 재무 또는 회계 감독업무 5년 이상
- \*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준용하되, i)의 경력기간은 완화(10년⇒5년)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상위법에 조합 감사 2명 중 1명을 외부전문가 감사를 선출하도록 의무화되고, 그 위임에 따라 그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써 감사기능과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규제의 필요성 인정. 한편, 「농협법(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에도 지역농협에 외부전문가 감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 중이며, 해외사례와 비교 시 적정성이 인정되며 규제에 따른 추가비용이 미미하고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중앙회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신설**

- 중앙회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신설
  - (내부통제기준) 농협법의 내부통제기준을 준용하여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임직원 업무 수행시 준수절차 등 규정
  -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농협법의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준용하여 중앙회, 조합, 공공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규정

**심사결과** 일선수협 및 중앙회의 지도경제사업 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전담조직 부재로 상시·사전적 비리 예방기능 미흡이 문제됨에 따라, 수협법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하위법령에 그 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과 자격요건을 정한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 인정. 한편, 유사입법례인 농협법령 및 일본 사례 등을 고려 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27) 항로표지법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 강화

-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한도 상향 조정
  - (현행) 100만원 이하 ⇒ (강화) 300만원 이하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규’ 등에 따라 상위법인 「항로표지법」 벌칙이 징역 1년당 벌금 수준을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금 한도액 상향 조정에 비례하여 과태료 수준도 상향 조정할 필요성 인정. 한편, 유사입법례(「해사안전법」, 「국제선박항만보안법」등) 검토결과 과태료 부과한도(300만원)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결과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2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강화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체납 시 가산금 징수 근거 마련
  - (현행)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독촉·압류 등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변경) 체납금액 3/1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 징수
    - \* (경과조치) 가산금 징수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는 것부터 적용  
중간검사시부터 적용

**심사결과** 현행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관리청에 점용료·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독촉·압류 등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산금 부과 등 체납에 따른 부담이 없어 납부 지연하는 사례 다수 발생. 이에,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체납 방지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점용료·사용료 체납 시 가산금 징수 필요성 인정. 또한, 유사입법례(국유재산법, 도로법, 하천법) 검토결과 가산금 징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과규정을 두어 피규제자의 부담을 완화한 바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29) 어선설비기준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어선설비기준 **신설**

- 위험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의 방수복 설비기준 및 비치근거 도입
  - (설비기준) 방수복의 재료, 부력, 복원성, 부력체, 보온 요건 등 규정
  - (비치근거) 베링해 및 남빙양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어선에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만큼 비치

**심사결과** 베링해 등 수온이 낮은 위험수역에서 어선사고 발생시 선원 생존을 제고 및 인명피해 최소화 위해 방수복 비치 의무화 필요. 한편, 방수복의 요건은 일본 등 해외사례 및 국제협약(SOLAS)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결과 이해관계자인 원양선사(8개사) 등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30)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행정처분의 기준 **신설**

- 법령위반 행위의 유형, 그 사유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세부기준(안)〉**

위반행위	행정처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지정을 받은 자	허가·승인·지정 취소(1차위반)
항만시설 사용허가 내용 위반, 사용료 납부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내지 아니한 자	경고(1차) / 허가정지(2차) / 허가취소(3차)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상위법 위임으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개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필요성 인정. 또한, 위반내용·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동기·피해정도 등에 따라 1/2범위에서 감경하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적정성 인정되며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31) 선박용품물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선박용품물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강화**

- 소방용 개인장구 성능 시험요건 관련 국제기준(MED\* 기준) 수용
  - 장화의 내바닥 구멍시험 신설
  - 부품시험 중 질량, 두께 및 밀도계측 시험을 성능위주인 방염성능, 열방호성 및 복사열 성능시험으로 변경
  - 안면렌즈의 광선투과율 시험, 내열시험 신설 등
    - \* MED : Marine Equipment Directive(유럽 선박용품물 형식승인기준)
- 자장식호흡구 성능 시험요건 관련 국제협약(SOLAS\* 하위 FSS\*\* Code) 개정사항 및 국제기준(MED기준) 수용
  - 공기잔량(200L 이하)에 따른 가시가청 경보기능 시험방법 규정
  - 재료시험 중 호기밸브의 통기저항시험, 압력지시계 연결호스 시험, 경보장치시험, 불꽃저항성시험 신설 등
    - \* SOLAS : International Convention of Safety of Life at Sea
    - \*\* FSS : International Code for Fire Safety Systems
- 항해자료기록장치(선박용 블랙박스) 성능 시험요건 관련 국제협약(SOLAS) 개정 사항 수용
  - 전체성능시험 기준과 다운로드 및 재생장치 시험기준 신설
  - 제품검사요건 중 보호용기 내의 데이터 접근방법, 데이터 항목 선택 방법 등 신설
  - 기록기간 요건 개정

**심사결과** 국제협약 안전기준이 개정된 바, 이를 본 고시에 적용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선박용품물의 성능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강화할 필요. 한편, 국제협약 가입국들도 이미 자국법령에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고, 이해관계자인 선박용품물 제조·수입업체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고 행정예고 결과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32)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직무 강화 및 대리인 지정 **강화**

- 선박 및 해양시설 소유자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에 대한 직무지시의무 부여 및 의무위반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추가
  - (의무) 선박 및 해양시설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에게 오염물질 이송 작업시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함
  - (과태료) 지도·감독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선박 및 해양시설 소유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일시적 업무공백시 선박 및 해양시설 소유자에 대한 대리자 지정 의무 부과
  - 관리인이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 불가시 소유자는 반드시 관리인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 부과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오염사고 방지를 위한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입법상 미비사항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필요성 인정. 타법사례인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규제안과 유사한 형태의 규정이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33) 지정교육기관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지정교육기관기준 **강화**

- 전자기관사 교육과정, 고전압직무교육과정 개설·운영을 위한 시설요건 신설
  - (전자기관사) 강의실, 멀티미디어 강의실 및 기관시뮬레이터실, 자동제어실습실, 선박전기실습실, 선박전자실습실, 해상안전훈련장, 도서실(별표 4의2)
  - (고전압) 고전압 배전반, 스위치기어, 고전압관련 개인보호장구, 작업공구, 기타 관련서적 및 비디오 등(별표 28의1)

**심사결과** 국제협약 개정에 따라 협약가입국은 전자기관사 및 고전압직무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자국 내 선원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지정교육기관에서 각 교육과정 개설·운영을 위한 시설요건 추가 필요. 다른 국제협약 가입국도 교육과정 개설·운영을



위한 시설요건을 추가하였으며, 각 요건은 학계 전문가 등이 TF 구성을 통한 협의를 거쳐 도출되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34)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100만원) 범위내에서 위반횟수별 세부적인 부과기준 마련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령 별표5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7. 제3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극약·독약, 수산생물용의약품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자	법 제57조 제4항제1호	25	50	100
8. 제37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자	법 제57조 제4항제2호	25	50	100
9. 제37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소유자들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법 제57조 제4항제3호	25	50	100
10. 제37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자	법 제57조 제4항제4호	25	50	100
11. 제37조의10제6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보고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57조 제4항제5호	25	50	100
12. 제37조의10제8항을 위반하여 발급수수료를 고지·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자	법 제57조 제4항제6호	10	20	40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규제의 시행을 위한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의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인정. 법률로 정한 상한액(100만원)을 과태료 최고금액으로 하되, 위반행위의 성질 및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5)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강화 1)****심사내용** 검역장소 시설기준 **강화**

- 시설기준을 검역장소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온도조절장치시설에 필요한 시설기준 일부 추가
  - 검역물의 신선도 및 활력도 유지를 위한 온도기록장치 또는 온도기록대장 구비 의무 신설
- 검역물의 오염 및 전염병 발생·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기준 추가
  - 검역기간 중 폐사된 개체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충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 포획도구는 검역물 관리 전용으로만 사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부득이 다른 목적으로 반출 또는 사용시 소독 의무 신설

**심사결과** 검역장소 관리체계를 장소 유형에 맞게 개선하고 검역물의 오염 및 전염병 발생·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장소 시설기준을 장소 유형에 따라 세분화·구체화할 필요. 한편, 타법사례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해외사례 등 고려 시 적정성이 인정되며, 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36)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 개정안 (강화 1)****심사내용** 분노처리장치 **강화**

- '16.1.1 이후 건조되는 선박 중 국제해사기구가 지정한 분노배출규제해역(발틱해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분노처리장치 성능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강화(Ⅱ, 8의5 나.(5))
  -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총질소량과 인량에 대한 측정 항목 추가

**심사결과** '16.1.1 이후 건조되는 선박 및 여객선에 분노처리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기준에 따른 형식승인이 필요하므로, 국내제작업체의 원활한 수출 지원을 위해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개정 필요. 미국, EU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개정안을 자국법령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37)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혼획의 관리 **신설**

- 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별로 부착하여야 하는 혼획저감장치의 규모, 형태 및 부착방법을 규정(고시(안) 제3조 및 별표1)
  - 어업의 종류를 근해형망어업, 패류형망어업, 연안조망 및 새우조망어업으로 구분하고, 각 어업별 혼획저감장치의 규모, 형태 및 부착방법 규정

**심사결과** 동 제정안은 어구·어법상 혼획이 불가피한 어업에 대하여 적정 수준의 혼획을 허용하고, 혼획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 남획의 방지 및 허용된 혼획율을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업종간 갈등 감소 및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필요. 한편, 노르웨이·러시아·미국 등 어업선진국에서도 혼획저감장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비용 대비 편익이 훨씬 크고 고시 제정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행정예고 결과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38)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방류종묘인증제운영규정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방류종묘인증 품종, 인증기준, 절차 및 수수료 **신설**

- (인증대상 품종) 시행규칙 제25조의3에서 하위고시에 위임함에 따라, 운영규정 제3조 및 별표1에서 “넙치와 해삼”을 인증대상 품종으로 선정
- (인증기준) 시행규칙 제25조의4에서 “친어와 종묘의 유전자 분석에 의한 친자감별 비율”로 하고, 운영규정 제4조에서 친자감별비율을 넙치는 80% 이상, 해삼은 75% 이상으로 규정
- (인증절차)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검사시료(방류대상종묘 중 무작위 100마리 등)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 전문기관은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 전문기관은 종묘 방류 당일 무작위로 50마리의 시료를 채취 후 2차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인증된 종묘가 방류되었는지 조사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5조의5, 운영규정 제5조)
- (인증수수료) 시행규칙 제25조의6 및 별표2에서 시료 마리당 3만원으로 규정

**심사결과** 인증대상 품종, 인증기준, 절차 및 수수료 신설은 상위법인 수산자원관리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방류종묘인증제의 시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한편, 인증기준 및 절차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및 절차이며, 인증수수료는 인증작업에 투입되는 실비 성격의 비용으로 적정하고 입법예고 결과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39)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법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묘를 방류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200만원) 범위내에서 100만원으로 결정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규제의 시행을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인정. 한편, 과태료 금액은 법률로 정한 상한액(200만원) 이내에서 위반행위의 정도, 다른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금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40) 2015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안 (일몰규제 4건)

구분	계	규제 폐지	규제개선			규제존속		
			일몰 연장	일몰 해제	일몰 변경	일몰 연장	일몰 해제	일몰 변경
해양수산부	4	0	0	0	0	1	3	0

#### 1 선박만재흡수선기준(선박만재흡수선기준(고시))

**규제내용** 선박만재흡수선\*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

\* 만재흡수선이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적재한도의 흡수선(선체가 물에 잠기는 한계선)을 의미

\*\* 선박 만재흡수선의 종류 및 표시 등

**심사결과** 동 기준은 회원국이 국제만재흡수선협약(ILL)에 따라 동일하게 정해야 하는 의무규정으로, 규제존속에 동의. 한편, 동 기준은 국제협약 개정시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수시로 개정 조치를 하고(평균 1.7년마다 1회 개정) 개정시마다 규제위의 규제심사절차를 거치고 있으므로 별도의 일몰재검토의 실익이 적어 일몰 해제 동의



## 2 강선의구조기준(강선의구조기준(고시))

**규제내용** 강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

\* 재료 및 용접, 선박의 선체 구조, 선체의장, 선체보호 도장 등

**심사결과** 동 기준은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동일하게 정해야 하는 의무규정으로, 규제존속에 동의. 한편, 국제협약 개정시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수시로 개정 조치를 하고(평균 매년 1회 개정) 개정시마다 규개위의 규제심사절차를 거치고 있으므로 별도의 일몰재검토의 실익이 적어 일몰해제 동의

## 3 선박방화구조기준(선박방화구조기준(고시))

**규제내용** 선박에서의 화재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선박의 구조, 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

\* 국제항해여객선, 국내항해여객선, 화물선, 탱커, 카페리화물선 등의 방화구조 및 방화조치 등

**심사결과** 동 기준은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동일하게 정해야 하는 의무규정으로, 규제존속에 동의. 한편, 국제협약 개정시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수시로 개정 조치를 하고(평균 2년마다 1회 개정) 개정시마다 규개위의 규제심사절차를 거치고 있으므로 별도의 일몰재검토의 실익이 적어 일몰해제 동의.

## 4 도선사 정년(도선법 제7조)

**규제내용** 도선사 정년을 65세로 규정

**심사결과** 도선사는 도선선이라는 작은 배를 이용하여 대형선박에 접근 후 ‘수직 줄 사다리’를 이용하여 선박에 승선하여 도선을 행하는데, 업무의 특성상 상당 수준의 육체적(약력 등)·정신적(판단력, 집중력 등) 능력이 동시에 요구되어 선박의 안전한 도선을 위해 정년 규정 필요. 또한, 본 규제는 해외 선진국의 정년(62~65세)과 유사하고, 정책 환경이 규제도입당시 대비 변화가 없어 규제 존속에 동의. 한편, 5년 뒤 정책 해외동향, 국내 정년연장 논의동향을 반영하여 규제개선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연장 필요.

#### (41)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강화**

- 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하여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의 범위
  -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고
  - 선박이 충돌·좌초·전복·침몰 등으로 멸실되거나 감항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수난구조 또는 예인작업이 이루어진 사고
  -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름이 100킬로리터(「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류인 경우에는 30킬로리터) 이상 유출된 사고

**심사결과** 선박안전도정보 의무공표 대상인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사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의 규정 필요. 또한, 선박안전도정보 의무공표 대상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선주 및 선박종사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선박이용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국민의 안전한 선박 이용을 도모할 필요. 한편, 개정안의 경우 중대한 인명피해, 선박손실, 해양오염피해가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양사고조사코드” 및 이를 수용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기준과 유사하며 입법예고 결과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과태료부과 세부기준 **신설**

-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1천만원, 3백만원) 범위내에서 결정  
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생략)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너.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0조 제3항제15호	25	50	100
더. 법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았거나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하지 않은 경우 1)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2)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 제3항제15의2호	120		50
러. 법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 제3항제15호의3호	100	200	300
히.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검사·확인·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10조 제2항제2호	250	500	1,000
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된 짓된 보고 또는 거짓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110조 제2항제3호	250	500	1,000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규제의 시행을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인정. 한편, 과태료 부과금액은 법률상 상한액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과태료 상한액 관련 입법자의 의사, 타 과태료 금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결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42) 수산생물질병관리법 개정안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수산동물의 질병검사 **강화**

- 병성감정실시기관이 아닌 수산생물관련 대학 또는 민간연구소의 장도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병원체 분리시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심사결과**

병원체 관리강화를 통한 수산생물질병 확산 방지 및 병원체의 국제기구 신고의무 이행담보를 통한 국내수산방역 신뢰향상을 위해 병원체를 분리하는 모든 기관에 신고 의무 부여 필요성 인정. 한편, 「가축전염병예방법」도 가축전염병을 연구·검사하는 기관의 장이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용 대비 편익이 매우 크고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산동물의 검역 **신설**

- 검역장소 지정취소 및 6개월 이내의 기능정지 근거 신설
- 일부 사유에 따른 지정취소의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재신청 불가 근거 신설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검역장소에 대한 지정취소 등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검역장소의 관리 강화 및 불필요한 행정낭비 방지를 위해 필요성 인정. 한편, 축산물 검역시행소 및 식물 검역장소의 지정취소 근거가 관련법령에 동 규제안과 동일·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부당하게 지정취소 당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검역판정의 취소 **강화**

-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판정을 취소하고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반송·폐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심사결과** 적법하게 검역 받은 자와 형평성을 제고하고, 검역절차 실효성 제고로 부정검역을 원천차단하기 위해서는 반송·폐기 등의 제재수단이 필요. 한편, 「식물방역법」에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검역합격을 반드시 취소하고, 수입한 자에게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용 대비 편익이 훨씬 크고 입법예고 결과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43)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안 (강화 1)****심사내용**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강화**

- 항만공사·항만관리법인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항만시설, 국가가 직영하는 항만시설을 보안료 징수대상시설에서 제외하는 규정 삭제
- 화물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보안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안정적인 재원기반을 마련하여 급증하는 항만시설 보안비용을 해결하고 항만시설 보안 강화를 도모하며, 모든 항만시설소유자가 동등하게 보안료를 징수할 수 있게 유도함으로써 항만시설간 공정한 시장경쟁 도모를 위해 필요성 인정. 한편,



상위법령에서도 보안료를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항만시설이용자가 보안료를 지불하는 것이므로 비용 부담의 형평성이 강화되고, 유럽 및 미국 대부분 항만에서 항만시설 보안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하고 있어 적정성 인정. 행정예고 결과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44) 해양동물전문구조 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에 관한 지침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기준 **신설**

-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지정기준을 구체화함

**심사결과** 동 제정안은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최소한의 지정기준을 정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조인력의 안전확보와 해양동물의 원활한 구조·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 또한, 각 기준은 부상당하거나 좌초된 해양동물을 안전하게 구조하고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장비·시설을 제시한 것으로 적정성 인정되며, 유사입법례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있고, 행정예고 결과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해양동물구조·치료 및 자연복귀에서 필요한 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신설**

- 구조팀은 구조활동이 완료된 후 구조경위를 해양수산부에 유선 또는 무선전화로 보고해야 함(제정안 제11조 제4항)
- 치료기관은 구조현장보고서와 진료기록서를 구조 출동 후 1주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함(제정안 제12조 제2항)
- 치료기관은 치료 완료 후 해양동물을 자연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 해양동물방류 평가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제정안 제13조 제3항)
- 치료기관은 해양동물의 치료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진료기록서 등을 해수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제정안 제14조 제2항)
- 치료기관은 안락사를 실시한 후 사유와 처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폐사·안락사한 개체에 대해 질병·생리연구를 위해 부검을 실시한 때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심사결과** 동 제정안은 정부의 해양동물 구조·치료비용 지원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고, 해양동물구조·치료과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 또한, 구조·치료·방류·안락사 등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치료기관의 구조·치료활동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보고·서류제출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의무부과수준은 적정하고, 미국·영국 및 호주에서도 동 제정안과 유사한 수준의 보고 및 자료제출의무 규정이 있으며, 행정예고 결과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4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등 제한 **강화**

- 금지 기간(14) : (신설) 갈치, 고등어, 낙지, 주꾸미, 말쥐치, 문치가자미, 옥돔, 미거지, 오분자기 (조정) 참조기, 살오징어, 대구, 전어, 소라(시행령 별표1)
- 금지 체장(10) : (신설) 갈치, 고등어, 참조기, 살오징어, 말쥐치, 갯장어, 미거지, 민꽃게, 키조개 (조정) 대문어(시행령 별표2)
-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민꽃게의 암컷을 포획 채취 금지 대상으로 신설(시행령 제6조제3항제3호)

**심사결과** 수산자원은 공유자원으로 정부가 적절히 포획 기준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자원이 쉽게 고갈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전 지구적인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어업인의 소득감소 및 국민들의 수산물 섭취량 감소 등 다양한 피해 야기. 최근 연근해어업의 생산량은 자원남획 등으로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수산자원의 산란기, 성숙체장 등도 변화되고 있어 과학적 자료를 근거로 현행 포획금지 규정의 재검토 필요. 한편, 포획금지체장은 어업인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성숙체장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포획금지기간은 어종의 산란시기, 어업인 조업실태 및 자율휴어기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하였고, 일부 어종(갈치, 고등어, 참조기)의 경우 어법 특성상 혼획(混獲)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 20% 범위내에서 혼획을 허용하는 등 어업인들의 규제체감 정도를 완화하여 적정성 인정. 한편, 동 규제는 약 2년여간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큰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46) 선원법 시행규칙 (강화 2)

### 심사내용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강화**

- (현행) 유조선 또는 케미칼탱커 또는 액화가스탱커에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 (변경) 유조선 또는 케미칼탱커 또는 액화가스탱커에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을 갖추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해기능력평가에 합격하였을 것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을 국제기준(STCW)에 부합하게 하여 외국항에서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대한민국 선원의 국제적 신뢰도를 강화하며, 선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 한편, 영국, 호주 등 국제협약 체결국들은 모두 자국의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에 해기능력평가 합격의무를 추가하였으며, 평가 난이도가 높지 않아 시험응시자의 부담이 크지 않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심사내용 건강진단 **강화**

- 선장, 갑판부 당직자 및 운항 당직자 대상 색각 판정 기준 “적, 황, 녹색 구분 가능”에 청색 추가

\* 기관사 및 통신사는 이미 현재 “적, 황, 녹, 청색 구분 가능”으로 규정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해상부표식의 국내외 기준 개정으로 비상 침몰·좌초 선박표지를 신설하여 청색 부표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며, 국내 해기사 항해능력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필요. 한편,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기준에서도 선원의 색각 판정 기준에 “청색 구분 능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내 유사 입법례인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철도안전법」에서도 업계종사자의 신체검사기준(색각능력 포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입법예고 결과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 제5절 농림·산림분야

### 1. 농림축산식품부

◎ 집필자 정청리 사무관 ☎ 044-200-2421 ✉ jcl0708@pmo.go.kr

#### 가.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5년도에는 종자산업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의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7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29건, 강화 37건 등 총 66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66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1) 종자산업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1.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2.02)	원안의결 9	신설 1, 강화 8 (비중요 9)
(3)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5.02.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예비심사 (2015.04.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수의사법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4.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수의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4.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5.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5.05.26)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9)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6.0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10)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6.09)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1)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6.09)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6.0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3)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7.0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4)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5) 농약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9.15)	원안의결 6	강화 6 (비중요 6)
(16) 2015년 도래 재검토행 일몰 규제 심사	경제분과위 (2015.09.18)	-	일몰규제 15건
(17) 종자산업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05)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05)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19) 사료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12)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19)	원안의결 7	신설 1, 강화 6 (비중요 7)
(2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09)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22) 동물보호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3)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5.11.23)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2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경제분과위 (2015.12.01)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25)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5.12.14)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26)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7)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8)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b>계</b>	-	<b>원안의결 66</b>	<b>신설 29, 강화 37 (중요 1, 비중요 65)</b>

## 나.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종자산업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부정행위의 금지 등 **신설**

- 종자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종자의 검정 및 검사 등 종자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자산업법」으로 일원화 하면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상의 검정 내용, 종자검정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사항을 「종자산업법」에 추가

**심사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의 검정을 받거나, 검정결과를 제품 홍보·판매에 활용하는 행위로 인한 재배농민의 피해 예방 및 종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정한 관련 금지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2)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신설 1, 강화 8)

**심사내용** 방역관리지구 **신설**

- 고병원성AI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했던 지역 또는 철새 군집지 인근 등에 대해 방역관리지구 지정, 검사·예찰, 시설기준 등을 규정

**심사결과**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및 전염병 발생시 확산차단을 위해 방역관리지구를 지정·운영하려는 것으로, 방역관리지구에서는 축사내 AI 유입차단을 위한 시설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지역별 거점 소독·세척시설 등에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타 지역 이전시 축사 신축비용의 지원을 통해 지구내 농가의 부담은 미미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가축의 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강화**

- 축산농가에서 준수하여야 할 소독, 이동통제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차단방역 기준을 마련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는 소속 농가의 차단방역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관리 및 관할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 부과

**심사결과** 가축전염병 오염원이 농가로 유입되는 경로가 철새, 쥐 등 야생동물과 사람 및 차량 등의 매개체로 감염되는 점을 감안, 축산농가가 준수하여야 할 소독, 이동통제 등에 관한 차단방역 기준과 농장 또는 도축장 등 축산시설별 구체적인 차단방역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절한 규제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가축거래기록 작성·보존 **강화**

- 가축의 소유자 등 만이 가축거래기록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축산계열화사업자 (위탁사육자 포함)에게도 가축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하도록 의무 부과

**심사결과** 재난형 질병의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및 방역조치를 위해서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규제로 인정되고, 거래기록 작성 등에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소독설비 및 실시 **강화**

- 50㎡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시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분뇨재활용 또는 처리업자까지 적용되도록 대상 확대

**심사결과** 소독설비 대상 확대를 통해 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소독설비를 지원하고 있는 점,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재활용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강화**

- 차량등록 대상에 조사료, 톱밥 등을 운반하거나 철새 도래지 및 가금류 알을 수집·처리하는 시설 출입차량을 포함하여 정보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등을 위해서는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정보 등의 확인은 필수적으로, 등록차량에 장착되는 GPS 통신비는 국가(지자체)에서 50% 부담하여 비용부담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강화**

- 질병관리등급의 신청, 부여,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심사결과** 축산농가와 지역단위의 차단방역 및 질병통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축산농가 또는 마을단위로 신청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제도시행의 취지를 훼손하는 허위·과대광고 등의

금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질병관리등급 부여를 위한 평가절차, 등급평가, 준수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마련하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강화**

-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역류 및 이동제한 조치 대상에 가축 뿐만 아니라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원유, 알, 사료 등 오염 우려 물품 추가

**심사결과**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제1종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었을 때 격리·이동 제한대상에 “오염 우려물품”을 추가하는 것으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동제한, 소독 등 필요 비용은 국가(50%이상), 지자체(나머지)가 지원하고 있는 점,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축사 등의 소독 **강화**

- 기존 소독 의무 부과 대상(축사, 선박, 자동차 소유자 등) 외에 축산계열화 사업자 추가

**심사결과** 최근 구제역 발생 추세를 보면 계열사 위탁농장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계열화사업자의 경우 여러 농장을 방문할 뿐만아니라, 사료·분뇨·동물약품 배송 등 축산관련 차량의 출입 등으로 인해 농장 내로 바이러스 유입 등 피해확산 우려가 많으므로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절성이 인정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과태료 **강화**

-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축산계열화 사업자가 소속 농장에 대한 방역·점검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

**심사결과** 계열화사업자는 가축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지만 방역·위생관리를 계약농가에 일임하면서 위탁농장 방역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나, 고병원성 AI 등 발생시 사회·경제적 피해는 막대하므로, 방역조치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3)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고시)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 **신설**

-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 기준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지정기준은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4)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강화**

-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심사결과**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거나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기관이 지정될 경우 등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의 기준은 타입법 사례 수준으로 반영하여 적정성이 인정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로 원안의결

### (5)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강화**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동물병원 개설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령 위반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시 적정수준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6) 수의사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처방전 발급 및 등록 **강화**

- 수의사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 기재사항을 등록 의무화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3일 이내 등록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보건 증진과 축산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처방전의 적절한 발급 및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사용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처방관리시스템”에 의한 등록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유사 입법사례와 비교시 적절한 규제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원산지 거짓표지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신설**

- 2년간 2회 이상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검찰의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한 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규정

**심사결과** 부당이득의 유혹에 따른 위반사례 및 2회 이상 위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과징금 상한액은 거짓표시 상습자 벌금의 2배 수준인 3억원까지로 정하여 타 입법사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고, 위반금액별 부과범위도 세분화(7단계)하여 위반금액이 적은 영세업자의 과징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적정수준으로 판단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신청 및 평가 **신설**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농식품부장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업의 적정성, 사업 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평가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6차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농촌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규정으로, 사업자에게 부담되는 요인이 없고, 타 인증제와 중복소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승계 **신설**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상속, 양도·양수, 합병 등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인증 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위해 사망·양도·합병 등의 사유발생시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지위승계 관련 제출서류 및 절차규정으로, 승계사유별 최소한의 서류로 규정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영업시설 기준 **신설**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농산물을 가공·처리하거나 농산물 가공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영업시설의 시설기준을 규정

**심사결과** 지자체 대상으로 조례·규칙 제정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농업인 등 국민에게 비용발생은 없으며, 가공업체는 식품위생법 예외 규정 적용으로 업체당 평균 20백만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지위 승계 미신고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

**심사결과**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타 입법사례와 유사수준을 반영하여 적정금액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9)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축산업 등록의 절차 및 기준 **강화**  
 - AI 등 가축질병 예방 및 차단방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닭·오리 등 가금류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기준 강화,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을 강화\*

\* 케이지(cage) : (현행) 0.05㎡/마리 → (개정) 0.055㎡/마리

\* 평사 : (현행) 0.11㎡/마리 → (개정) 9마리/㎡(약 0.111㎡/마리)

**심사결과** 방역의 실효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방역시설 기준을 명확화, 구체화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축산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AI 지속 발생에 따른 입법의 시급성, 유사입법 사례 및 해외사례 비교시 과도하다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10)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농어촌 민박 서비스·안전기준 **강화**

- 민박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농어촌민박에 대한 식품위생·소방안전상 준수 사항 등 “서비스·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민박사업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위생·소방안전 등 관련교육의 방법, 내용 등을 규정

**심사결과** 펜션, 캠핑장 등의 화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농어촌 민박의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일반 숙박시설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반영하고, 해외사례 비교시 규제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 1차 20만원 → 2차 40만원 → 3차 80만원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정한 상한액(100만원)의 범위내에서 다른 위반사항과 동일한 금액을 반영하고, 타입법 사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11)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 심사내용 정부관리양곡의 미입자격 기준설정 등 **강화**

- 거짓표시 등의 금지, 양곡의 혼합 금지규정 위반시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제한 기준을 강화  
\* 거짓·과대 표시 또는 광고의 경우 : (1회 위반시) 1년  
\* 혼합 판매·유통 금지 위반시(1회 위반시) 1년

**심사결과** 국산쌀, 수입쌀 또는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표시하는 등의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위반시 벌칙이 같은 “지정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처분한 자”와 동일하게 매입제한을 1년으로 정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양곡가공업자 행정처분 기준 **강화**

- 양곡가공업자의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미곡 등 혼합판매·유통금지 위반”을 추가하여 영업정지 기준을 규정
- \* 1회 위반시(영업정지 1월) → 2회 위반시(3월) → 3회 위반시(6월)

**심사결과** 영업정지 기간은 동일 벌칙(3년이하의 징역 등)에 적용하는 “거짓·과대 표시 등의 위반사항”과 동일하게 반영하고, 타입법 사례와 유사수준이므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1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농어업법인 실태조사에 따른 시정명령 **신설**

- 조합원 5명 미만인 영농어조합법인, 비농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출자한도를 초과한 농어업회사법인에 대해 시정기간\*을 규정
- \* 6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해 3개월 이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심사결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시정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시정기간을 구체화 한 것으로서, 타입법 사례와 비교시 적정수준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농어업법인 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사안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의 위임근거 범위내에서 과태료 금액을 정하고, 타입법 사례와 비교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13) 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기준 **신설**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기준과 절차 규정

**심사결과** 국내 유사사례와 비교시 타입법 사례와 유사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한국마사회 등 8곳 지정기관) 등 의견수렴 결과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14)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신설**

- 인력·시설·장비 등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

**심사결과**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는 최소 기준을 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은 타입법 사례와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을 반영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15) 농약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6)

**심사내용** 농약판매관리인 교육 주기 **강화**

- 농약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이 고용한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주기 강화(2년→매년)

**심사결과** 농약의 오·남용 방지 등 농약 판매관리인의 안전관리 능력 향상과 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출입식물 방제업자”와 “농약 사용자”는 농약 등의 안전사용 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규제수준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한 자\*와 안전사용 기준과 다르게 농약을 추천하거나 추천하여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 (1차)20만원, (2차)40, (3차)60 → (1차)40, (2차)60, (3차)80

\*\* (1차)100만원, (2차)200, (3차)300 → (1차)200, (2차)300, (3차)400

**심사결과** 안전사용 기준 위반사례는 지속 발생(연간 과태료 500여건)하고 있고, 농약의 오·남용 방지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과태료 인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유사 입법사례와 비교시 낮은 금액을 적용하여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시험연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 **강화**

-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범위에 “시험시설”을 추가하고, 변경지정 신청 기한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



**심사결과** 시험의 정확성과 시험인력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험연구기관에서 생산하는 시험성적서의 품질향상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타입법 사례와 유사수준을 반영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출입식품방제업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 **강화**

- 수출입식품 방제업의 시설 및 장비기준에 “에틸포메이트 가스농도 측정기”와 “반면형 방독 마스크”를 장비요건에 추가

**심사결과** 신규약제의 처리를 위해 타 훈증제와 동일조건으로 장비규격을 적용하여, 방독마스크는 “격리형 전면형”만 허용하던 것을 “반면형”도 사용가능 하도록 장비기준에 추가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규제완화 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출입식품 방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강화**

- 대상 식물에 따라 정한 소독처리 약량, 시간 또는 온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항목 추가
- \* (1회 위반시) 영업정지 1월 → (2회) 3월 → (3회) 2년

**심사결과** “소독기준 위반” 관련항목을 신설하여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식물방역법)의 “열처리 기준 위반”과 유사수준을 반영하므로써, 유해 병해충 사멸이라는 동일 목적의 업종간 행정처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시험연구기관의 행정처분 **강화**

-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 \* (현행) (1차 위반) 경고 → (2차) 업무정지 1개월 → (3차) 업무정지 3개월
- \* (개정) (1차 위반) 경고 → (2차) 지정취소

**심사결과** 지정 유효기간이 4년인 점을 고려할 때, 3년 이상 시험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시험기관에 대해 2차 위반시 지정취소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2015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안 (일몰규제 15건)

구분	계	규제 폐지· 제외	규제개선			규제존속		
			일몰 연장	일몰 해제	일몰 변경	일몰 연장	일몰 해제	일몰 변경
국무조정실	15	1	6	-	-	5	3	-

**1** 농협중앙회의 임원은행의 겸영업무 인가(농업협동조합법 제126조)

**규제내용** 중앙회 임원으로 회장 1명, 각 분야별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이사 30명 이내와 감사위원 5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임원중 각 분야별 대표이사 각 1명, 전무이사, 감사위원장은 상임으로 함

**심사결과** (심사결과) 중앙회는 다양한 회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서,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반영, 방만경영 방지 등을 위해 임원의 정수 및 구성 등에 대한 규제 존속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주기적 검토가 필요하여 일몰 연장

**2** 손해평가(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1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규제내용**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또는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

**심사결과**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지속 확대로 손해평가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손해평가인 자격요건 등에 대한 규제존속 필요성이 인정되고, 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손해평가 인력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주기적 검토가 필요하여 일몰연장

**3** 가축개량 기관의 지정(축산법 제5조제3항, 축산법 시행령 제11조)

**규제내용** 농림부장관은 가축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축개량 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인력, 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규정

**심사결과** 개체별 유전능력 개량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무실 면적, 전산장비 규정 등은 현실 여건에 맞게 규제완화\* 추진(16년) 하였으나, 여건변화 등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의 필요성 및 지정요건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가 필요하여 일몰연장

\* 사무실 면적기준(24㎡) 및 전산장비 요건 폐지



**4** 가축검정기관의 지정(축산법 제7조제1항, 축산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제내용** 농림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해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등록 가축 및 씨알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검정기관의 지정요건으로 인력, 시설·장비를 확보 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심사결과) 유전능력이 뛰어난 우량 종축을 선발·보급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검정시설 등을 갖춘 기관으로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고, 여건변화 등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 필요성 및 지정요건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가 필요하여 일몰연장

**5**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0조)

**규제내용**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심사결과**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잠재적인 위해성 관리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허가제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허가제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여건변화 등에 따라 주기적 재검토 필요하여 일몰연장

**6** 동물용 의약품 등 제조업 허가(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4조)

**규제내용** 동물용 의약품 또는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함

**심사결과**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및 공중보건에 기여하기 위해, 규제의 존속 필요성이 인정되고, 허가제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여건변화 등에 따라 주기적 재검토가 필요하여 일몰연장

**7** 초지전용 허가 및 취소(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의2, 제27조제1항)

**규제내용**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함. 또한, 전용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

**심사결과** 초지의 훼손 및 유실 등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사후관리 등을 위해 규제 존속의 필요성 인정되고, 초지관련 국민편익 증진 및 불편해소 등의 차원에서 주기적 검토가 필요하여 일몰연장

**8** 농업유전자원 분양승인의 취소(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규제내용** 부정한 방법 등으로 농업생명자원을 분양승인 받은 경우 등에는 분양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분양승인이 취소된 농업생명자원은 반환하게 하되, 반환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반환하게 함

**심사결과** 부정한 방법 등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고, 환경변화 등에 따른 주기적 검토대상은 아니므로 일몰해제

**9** 농업유전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의 취소(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

**규제내용** 부정한 방법 등으로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 국외반출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심사결과** 부정한 방법 등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고, 환경변화 등에 따른 주기적 검토대상은 아니므로 일몰해제

**10** 농지의 임대·사용대·매도의 수탁관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 제19조의8)

**규제내용** 농어촌공사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농지를 임대·사용대(使用貸)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사용대(使用貸) 또는 매도를 수탁(受託)할 수 있으며, 수탁의 기준,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심사결과**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임차인에게는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속 보장하기 위해 규제존속의 필요성 인정되고, 농지이용의 국민 부담완화 등을 위해 수수료 인하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였으나, 수탁의 기준, 수탁 수수료 요율기준 등은 환경변화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여 일몰연장

\* ('12년) 10년 이상 임대위탁시 수수료 25% 감면, ('14년) 수수료 요율인하(10→5%) 추진

**11**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

**규제내용** 농산물 생산자, 유통·판매자중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관련규정 위반시 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농산물 안전성 문제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소비자 알권리 보장 등을 목적으로 제도를 도입('06.1)하였으며, 동 제도참여 여부가 자율적인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의 존속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산자 및 국민건강보호 등을 위해,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등록기준 등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일몰연장

**12** 식품의 품질관리(전통식품의 품질인증)(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규제내용** 전통식품의 품질 향상,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운영 및 인증대상 품목, 신청절차 등을 규정

**심사결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사후점검을 통한 고품질 식품 생산·공급을 위한 기준으로, 내용·절차·방법 및 사후관리를 위해 규제의 존속 필요성이 인정되고, KS인증 받은 업체가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심사항목중 중복사항은 심사 면제하도록 개선 예정('16년)이나, 여건변화 등에 따라 품질인증 기준, 품목 등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가 필요하여 일몰연장

**13** 식품명인의 지정 취소(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5항,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규제내용**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었거나, 식품명인 증명서류를 양도하는 등 불법행위 발생시 심의회를 거쳐 지정취소할 수 있고, 지정 취소된 자는 식품명인지정서를 반납하도록 함

**심사결과** 식품명인 지정에 따른 사후관리 측면에서 최소한의 취소기준이기 때문에, 주기적 검토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일몰해제

**14** 국가품종 목록의 등재(종자산업법 제15조, 16조)

**규제내용** 농림부장관은 농업, 임업 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에 대한 품종성능 관리를 위해 해당 작물의 품종을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품종목록에 등재 대상(벼,보리, 콩, 옥수수, 감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 및 등재신청 등 절차 규정

**심사결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높고, 농업 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벼, 보리 등 주요 식량작물에 대해서 국가품종목록 등재를 통해 지속적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가품종목록 등재 후 보증과정을 거쳐 유통까지 많은 시간소요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규정을 선택규정으로 규제완화('13.6)를 추진한 바 있으나, 등재대상 품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여건변화에 따라 주기적 검토가 필요하여 일몰연장

**15** 종자업의 범위(종자산업법 제2조제8)

**규제내용** '종자업'이란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심사결과** 종자업 정의규정으로 구체적인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규제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해제

**(17) 종자산업법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종묘업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등 **강화**

– 육묘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등록요건 및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

**심사결과** 불량묘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예방, 육묘산업 정책지원·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서, 종자업 등록 기준 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여 과도하지 않고, 육묘업 등록을 위해 초기 투자 비용은 발생하지만, 불량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및 분쟁요인 차단,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 등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크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통종묘의 품질표시 **신설**

–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묘의 품종명, 파종일 등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정확한 육묘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고품질 묘 생산 유도를 위한 것으로, 종자 및 유사입법 사례 등과 비교시 적정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육묘업자의 자료보관 의무 부과 등 **신설**

– 육묘업자는 분쟁발생시 원인규명이 가능하도록 구입종자에 대한 정보 등 관련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처분(1천만원 이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육묘분쟁 발생시 원인규명이 가능하도록 육묘업자 및 재배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타 입법사례에서도 구매자 정보 기록 및 일정기간 보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과태료 금액은 타 입법사례와 유사수준을 반영하여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신설**

-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이 직접 정정 또는 말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심사결과** 등록정보는 정책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등록정보의 정확한 관리 및 현행화를 위한 것으로 기존 수행 해오던 행정처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록 및 지정취소 **신설**

- 공동경영체의 지정요건, 신청 및 지정절차, 경영정보 등록, 사후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심사결과** 공동농업경영체의 안정적 운영, 양적 확대(논농사 → 밭·축산 등), 질적 개선 촉진 등을 위한 것으로, 현재 운영중인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지침」을 기준으로 마련하였으며, 해외사례 등 감안시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동농업경영지원센터 지정 등 **신설**

- 공동경영체의 운영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공동농업경영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임무 및 정부 지원 근거 등을 규정

**심사결과**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효율적 지원 및 우수관리 확산 등을 위해 “지원센터 지정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지원센터의 지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만 규정하고 있으며, 타 입법사례에서도 유사하게 운영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19) 사료관리법 (강화 2)

**심사내용** 사료를 시험, 분석할 수 있는 검정기관 지정 **강화**

- 사료검정기관에 대한 지정 및 인정제도를 지정제도로 통합하여 검정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법적 체계를 정비

**심사결과** 검정기관 업무의 혼동을 방지하고 검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현행법상 검정기관의 인정 기준과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동일하고, 지정제로 통합하면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기준 **강화**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1천만원 →2억원)

**심사결과** 사료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 등 사회적·경제적 피해는 큰 반면, 처벌효과는 미흡한 실정으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대비 영업이익과 타 입법사례 비교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2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6)

**심사내용** 유기식품 등의 인증신청 및 심사 등 **강화**

－ 연속하여 2회 또는 총 3회 이상 인증 취소자에 대하여 인증신청 제한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

**심사결과** 엄격한 인증관리를 유도하고, 친환경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2회 연속 상습 인증 취소자는 가중 처벌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인정되고, 유사 입법사례에서도 누범자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기식품 등 인증기관의 지정 **강화**

－ 인증업무관련 위반자에 대하여 3년간 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인증심사 직원으로 취업을 제한하고, 인증기관 지정 취소된 자는 3년간 신청을 제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해주거나 인증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인증이 남발되고 있는 점, 미국의 경우 「유기식품법」 위반에 따른 인증기관 자격 취소자에 대해 5년간 재지정 신청을 금지하고 있는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신설**

- 인증심사원의 업무능력 및 직업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관련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

**심사결과** 인증심사원의 부실인증에 따른 인증신뢰도 하락 및 그에 따른 농업인과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되므로, 보수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증심사원이 보수교육을 받도록 법적 근거만 마련하는 사항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강화**

- 인증기준 또는 표시사항 등을 위반한 인증사업자 또는 유통업자에게 해당 인증품 판매금지 등 종전의 조치 외에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인증취소된 인증품의 시증유통을 원천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고, 유사입법 사례에서도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방지를 위해 해당 제품을 수거·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강화**

-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만료후 계속해서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심사결과** 주기적인 지정요건 심사를 통해 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 강화로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타 입법사례와 비교시 적정수준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기농어업자재의 사후관리 **강화**

- 인증기준 또는 표시사항 등을 위반한 사업자 등에게 해당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해 종전의 판매금지, 표시제거 등의 조치 외에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불량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농가의 안정적인 인증품 생산을 위해 인증기준 위반으로 판정된 불량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해 관계기관이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회수·폐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회수·폐기 대상을 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시 검토가 필요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기식품 등의 인증 **강화**

-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 뿐만 아니라 동일 작업장도 1년간 인증 작업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심사결과** 인증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인증받은 작업장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타법 사례에서도 작업장 제한규정을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강화 4)**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심사결과** 현행 축산농가의 방역기준 미준수 등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으로, 그간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농가 및 정부재정의 막대한 손실을 감안할 때, 국가 방역관리 및 법령준수 유도 차원에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강화**

-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및 해제 기준·절차, 예찰·점검, 농가 조치사항 등의 내용·실시 시기·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

**심사결과** “중점방역관리지구”는 ’14.8월 정부에서 발표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그간 정부지침 형태로 운영된 것을 법령에 반영하는 것으로, 국가차원의 방역관리상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강화**

-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내용,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점검사항, 교육 주기, 결과보고 절차 등 규정

**심사결과**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사육 농가 대상의 방역교육 실시 및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점검사항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그간 지침형태로 운영중인 내용을 반영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가축소유자의 방역기준 **강화**

- 가축소유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방역기준을 규정

**심사결과**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 등에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역기준으로 판단되며, 그간 정부 지침 형태로 운영중인 내용을 반영하여 비중요 규제료 원안의결

**(22) 동물보호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등록대상 동물을 자치단체장에게 등록 **강화**

- 등록대상 동물을 잃어 버린 경우는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단서조항 추가

**심사결과** 유실·유기견 발생을 줄이고, 소유자의 반려견에 대한 책임의무 의식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현행 규정은 유실의 경우를 포함한 등록 변경사항으로 신고기한(30일)을 정하고 있으나, 실제 유실의 경우만 볼 때 현행 신고기간은 실효성이 낮고, 해외사례 비교시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료 원안의결

**(23)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농어업 작업 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 기준 **신설**

- 농어업인 안전보험으로 보장받는 농어업 작업 관련 사고·질병의 인정기준 및 관련 질병·재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

**심사결과** 국가의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정책보험사업이므로 보험금 지급요건을 명확히 하여, 분쟁 및 부정지급 등의 문제를 사전예방하고, 원활한 보험사업 추진 도모를 위해 구체적인 인정기준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간 타 법령 지원근거에 따라 “예산사업시행지침” 형식으로 운영해오던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등에 대해 보험대상을 확대하여 반영한 것이므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료 원안의결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 보험질서 위반, 준비금 미계상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금액을 규정

**심사결과**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 범위내에서 위반사항별로 부과기준을 정하고, 타 법령에 의한 정책보험 사례와 비교시 유사 수준을 적용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료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험사업자 승인사항 **신설**

- 농어업인 재해보험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하고, 보험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산정방법, 지급금액의 한도 등은 보험사업자가 정하여 농식품부 장관(또는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심사결과** 그간 타 법령 및 “사업시행지침” 근거에 따라 정부와 민간보험사업자간 약정체결에 의해 운영된 것을 법령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적정성이 인정되고,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정책보험이므로 정부 관리·감독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보험금의 세부지급기준 등에 대하여는 보험사업자가 정하도록 하되,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강화 1)****심사내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대상 **강화**

- (가공식품) 사용원료의 원산지 표시 수 확대
  - \*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3개(← 2개)까지 표시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16→20개) 및 조리용도별 표시대상을 모든 조리용도로 확대(단, 쌀, 콩은 일부 조리용도로 한정)

**심사결과** 원산지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선택권 보장 및 판매자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가공식품 원료 표시대상 확대로 주된 원료의 정보제공이 가능해지고, 소비의 대중성·원산지 둔갑 가능성, 현장에서의 갈등유발 등을 고려하여 음식점 표시대상을 확대한 것도 적정성이 인정되며, 현행 규정을 2016.12.31까지 병행 적용 가능하도록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한 점을 감안하여 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5)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5)****심사내용**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신설**

-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설비, 교육과정, 교육시간 등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



**심사결과** 차산업 및 차문화 발전을 위해 소비자 또는 차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교육훈련 시행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 및 절차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교육훈련기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반영하여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신설**  
 - 농식품부장관이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요건, 지정기준 및 행정처분의 기준 등을 규정

**심사결과** 차 산업 발전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정책지원(예산지원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국내 차산업 발전 및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최소한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반영하여 비중요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 조사 등을 거부·방해하는 경우, 표시의 변경 등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심사결과**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고, 타 입법사례와 비교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 **신설**  
 - 차 잎의 채취시기와 상태 등에 따라 차의 품질 등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을 규정

**심사결과** 차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유통·판매되는 차의 품질 등의 표시를 적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적용범위는 녹차에 한해 적용하도록 한정하고, 수확시기에 따라 품질차이가 있기 때문에 녹차의 종류를 수확시기 기준으로 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품질표시가 의무사항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의 명령 처분 기준 등 **신설**  
 -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처분기준 및 표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규정 마련

**심사결과** 차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표시위반에 따른 처분기준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타 입법사례와 비교시 적정수준으로 판단되어 비중요로 원안의결

## (26)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강화**

-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위반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심사결과**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업무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행 고시내용을 상향 입법하는 사항으로서 새로운 의무부과는 없으며, 행정처분은 타 입법사례 비교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로 원안의결

## (27)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원산지 인증기준, 절차 등 **신설**

- 원산지 인증 기준·절차·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심사결과** 우수한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프리미엄 식품·외식시장 창출로 농수산업과 식품·외식산업의 연계강화, 국산 농수산물의 사용촉진과 소비자의 신뢰향상 도모를 위해 “원산지 인증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증기준은 제도의 실효성 및 소비자 신뢰제고 측면을 고려하여 예외범위를 최소화(5%)하여 95%이상 동일한 원산지를 사용하도록 하여 적정성이 인정되며, 타 인증제와 중복소지가 없어, 비중요로 원안의결

## (28)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농업기계 표시의무 **신설**

- 농업용 표시의무 대상 “농업기계”를 정하여, “농업용 표시”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고, 농업용 기계 생산자 및 수입자에게 “농업용 표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을 규정

**심사결과** 농업기계 생산·공급시 다른 용도 기계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농업인의 알권리 보장 및 안전사고 예방, 농업용 면세유 등 부정유통 방지 등을 위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농업기계(40종)중에서 4종으로 한정하여, 규제대상을 최소화하고, 과태료 수준은 기존 동법체계 수준으로 반영하여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에 원안의결



## 2. 농촌진흥청

◎ 집필자 정청리 사무관 ☎ 044-200-2421 ✉ jcl0708@pmo.go.kr

### 가.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5년도에는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고시) 개정안에 대해 1건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농촌진흥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1)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0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 나.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고시)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비료에 사용가능한 원료 등 **강화**

-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설정기준 보완 및 신규 추가 등
  - \* (폐화석) 수분함량을 15%미만으로 기준 신설
  - \* (수용성발포구산) 규산질비료의 종류에 추가하고, 이에 대한 공정규격 마련

**심사결과** 유해 중금속 등 불량원료를 이용한 퇴비의 유통방지와 비료 사용자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해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고, 규제로 인해 인해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반면, 불량원료의 생산·공급 방지, 비료의 품질향상 및 사용자 편의 등 사회적 편익 예상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3. 산림청

◎ 집필자 정청리 사무관 ☎ 044-200-2421 ✉ jcl0708@pmo.go.kr

#### 가.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5년도에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시행령 등 7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6건, 강화 8건 등 총 14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4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산림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1.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6.1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5.08.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9.07)	원안의결 7	신설 1, 강화 6 (비중요 7)
(6) 2015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	경제분과위 (2015.09.18)	-	일몰규제 1건
(7)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b>계</b>	-	<b>원안의결 14</b>	<b>신설 6, 강화 8 (비중요 14)</b>



## 나.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및 지정절차 **강화**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14.6.3)
- 위반 행위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위반내용	처분기준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시
1.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2.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3. 지정받은 기관이 아닌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정 당시 제출한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경고	시정명령	지정취소

**심사결과** 산림치유에 대한 수요증가와 함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산림치유지도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행 법령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제도는 있으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양성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교육생 보호 등을 위하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규정은 필요하며, 그 처분기준도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시 시정명령을 하고, 2차 위반시에 지정취소 하는 등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규제로 판단됨

## (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신설 2)

### 심사내용 정원 등록 **신설**

- 정원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일반에 공개되는 정원만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서류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적정성이 인정되고, 국내·외에서 민간 등이 소유·관리중인 시설에 대해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등록에 필요한 직접비용 등 규제부담은 미미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심사내용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신설**

- 등록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기준을 마련

**심사결과** 등록된 정원에 대하여만 평가를 하고, 평가내용은 정원의 특화, 이용객의 안전, 정원운영의 기본사항 등으로 정원의 안전관리 및 서비스 제고 등을 위해 규제수준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타 입법사례, 해외사례에서도 민간소유 시설에 대해 법령에 근거한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 심사내용 국유림 대부 등의 취소 세부요건 **신설**

- 국유림 대부 등의 취소사유로 “대부 등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아니 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구체적으로 규정

**심사결과** 국유림이 목적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행 하위법령(시행규칙·훈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타 입법사례와 유사하거나 완화된 수준을 반영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4)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고시) 개정안 (신설 1)

### 심사내용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신설**

-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 마련



**심사결과** 불량 목재제품 유통 방지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 목재제품 가격 인상요인 최소화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며, 검사능력 검증 및 검사기관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5) 산지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6)

**심사내용**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대상 확대 **강화**

- (현행) 30만㎡의 산지면적 → (개정) 30만㎡의 산지면적으로 하되, 풍력발전시설 및 케이블카 시설은 660㎡로 강화

**심사결과** 산지전용허가의 타당성 및 입지 가능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산지에서의 풍력발전시설과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재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규제수준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관련단체(한국풍력산업협회)에서도 개정안에 적극 찬성입장임을 감안하여 비중요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토석채취 제한지역 **강화**

- 토석채취 제한 지역에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을 추가

**심사결과** 산림욕장과 치유의 숲은 휴양과 치유활동 등을 위해 조성된 시설로서, 공공의 이익증진 등을 위해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산림욕장과 치유의 숲은 자연휴양림과 조성 목적·이용이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토석채취 허가의 기준 등 **강화**

-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범위에 “축산시설”을 추가하고, 동의 받아야 하는 대상에 “축산시설의 소유자” 추가

**심사결과** 축산업의 피해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자는 사업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발생을 최소화 하는 등 상호간 갈등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수단으로 판단되며, 타 입법사례보다 완화된 수준을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산지복구대상의 감리대상 **강화**

- 사업계획을 분할하여 산지복구를 하는 경우 전체 사업계획 합산면적을 기준으로 감리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채석단지를 감리대상으로 추가

**심사결과** 토석채취지에 대한 복구공사 감리대상을 명확히 하여 감리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부실공사 예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수준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토석교육 실시 등 **신설**

- 현장관리 업무담당자의 업무지정 기준,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 교육기관·교육기간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심사결과** 토석채취는 소규모·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이나 대규모 산림훼손이 불가피하고, 재해발생 및 인명피해가 크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수준의 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육시간 등을 반영하여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과태료의 부과기준 **강화**

-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변경)신고하지 않은 경우 및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위반횟수별로 과태료 부과금액(50~500만원)을 규정

**심사결과** 과태료 수준이 교육비(신규 38만원, 보수 27만원)보다 적을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점을 감안,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강화**

- 서류의 제출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산지를 분할하거나 사업계획을 660㎡미만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660㎡가 넘을 경우 산림조사서 등 서류제출 예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2만㎡ 이상 허가신청시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검토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추가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서류제출 회피 등을 목적으로 사업면적을 분할하는 경우 등에는 관련서류 제출여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소면적(2만㎡미만)은 제외하고, 2만~30만㎡의 산지전용 등에 대하여만 전문가의 재해위험성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6) 2015년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안 (일몰규제 1건)

구분	계	규제 폐지	규제개선			규제존속		
			일몰 연장	일몰 해제	일몰 변경	일몰 연장	일몰 해제	일몰 변경
국무조정실	1	-	1	-	-	-	-	-

#### 1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관리법 제52조의2)

**규제내용** 보전산지에서는 법률에서 열거된 시설을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을 할 수 없도록 행위를 제한

**심사결과** 보전산지는 지속 관리·유지 필요성이 있는 산지로서,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행위에 대한 제한 필요성 인정됨, 또한,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왔고, '15년에도 제도개선 완화를 추진하였으나, 보전산지의 합리적 보전·이용을 위해서는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허용행위 등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일몰연장

### (7) 산림보호법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신고를 하지 않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입목·죽의 벌채 등 위반행위 및 위반횟수 별로 과태료 부과기준(10~500만원)을 규정

**심사결과** 유사 입법사례와 동일 수준이거나 완화된 수준을 반영하여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 시설의 기준 등 **신설**

-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 시설의 설치기준, 시설의 종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

## 심사결과

캠핑, 산림레포츠를 제도화하여 국민 여가문화 발전에 기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산림지역의 특성상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산사태 등 안전상 취약하므로 안전시설 및 산림훼손 취소화 방안 기준 등의 적절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제6절 방송·통신 분야

### 1. 방송통신위원회

● 집필자 노용환 사무관 ☎ 044-200-2420 ✉ nyhwan@pmo.go.kr

#### 가.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5년도에는 방송법 개정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9개 법령에 대해 신설 16건, 강화 1건 등 총 17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7건 중 1건에 대해서 개선권고하고, 나머지 16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3.16)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 6)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4.20)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5.05.0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6.2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5)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2015.08.27)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7)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5.09.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2015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 규제 심사안	경제분과회의 (2015.10.16)	-	일몰규제 2건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본회의 (2015.12.16)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계	-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6	신설 16, 강화 1 (중요 2, 비중요 15)

## 나.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신설 6)

**심사내용**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사업자)가 불법정보(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수행하여야 하는 기술적 조치내용을 명시 **신설**

- (조치내용) ①불법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조치 ②불법정보 검색 및 송수신 제한 조치 ③불법정보 전송자에 대한 경고문구 발송을 위한 조치

**심사결과** 음란물 노출방지를 통한 청소년 보호와 개인영상 유출에 따른 명예훼손 등 각종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웹하드 사업자로 하여금 음란물 등 사전차단 기술적 조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형식적 조치 방지)되도록 관련 기술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웹하드 이용자 간 파일 공유 특성을 감안할 때 음란물 유통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기술 조치로서 규제수준도 적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웹하드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음란물 유통방지 기술적 조치 운영·관리 기록 보관기간을 2년 이상으로 규정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규정한 웹하드 사업자들의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 등 조사 및 행정처분 등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동 사업지들로 하여금 관련 기술적 조치 운영·관리기록을 상당기간 이상 보관하게 할 필요가 있고, 동 기록 보관기간(2년)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유사 규정과 동일한 수준이어서 규제수준도 적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사업자) 등록요건에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24시간 상시 적용, 사업자의 모든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 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수익 증대화를 위한 웹하드 사업자들의 심야시간대 음란물 차단기술조치 고의 해제 등 각종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음란물 유통방지 기술적 조치를 24시간 상시적으로 모든 장비에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동 기술적 조치 적용 수준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상의 웹하드 사업자들에 대한 “저작권 보호 기술적 조치” 적용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규제수준도 적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음란정보 차단수단(①계약체결 전 차단수단 종류·내용 등을 청소년(법정대리인)에게 고지 ②차단수단 설치여부 확인 ③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매월 법정 대리인에게 고지)을 제공해야 함 **신설**

**심사결과** 최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보유가 급증하고 있고, 휴대성이 좋고 검색이 편리한 스마트폰의 특성상 청소년들이 음란정보 등 유해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게 음란정보 차단수단을 안내·설치하고 동 차단수단의 실제 작동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계약 시 청소년(법정대리인)에게 음란정보 차단수단(차단 앱)을 설명하고 스마트폰에 이를 설치·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규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수준으로서 차단수단 삭제 또는 일정기간 미작동시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토록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차단수단 삭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실효성 확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처분기준을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9개월'로 정함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규정한 웹하드 사업자들의 등록요건(음란물 유통방지 기술적 조치)의 이행 담보를 위해서 이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상위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음란물 유통방지 기술적 조치 미이행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규제수준도 적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전기통신사업법상 신설 금지행위(조사방해, 음란물 유통방지 기술적 조치의무 미이행)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조사방해 : 1차 1,5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5,000만원, 기술조치 미이행 1차 1,5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5,000만원)을 규정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들의 각종 이행사항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과태료액 부과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사업자들의 조사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종전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고, 조사방해시 과태료 부과금액도 유사 입법례와 비교시에도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수준도 적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신설 3)

**심사내용** 유료방송사업자는 재난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을 자막 등 형태로 송출하여야 함 **신설**

**심사결과** 모든 국민이 긴급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상파·보도채널 뿐만 아니라 일반 PP채널(영화, 스포츠, 드라마 등)에서도 재난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규제내용(재난정보 자막 단순 표출)도 유료방송사업자들이 현재 보유중인 기술·장비로 이행 가능한 수준이어서 별도 추가 비용이 미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시 규제수준도 적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방송사업자(지상파, 종편, 보도PP)는 재난방송매뉴얼을 마련·비치하고, 재난방송 관계자(기자·PD 등)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신설**

**심사결과** 국가 재난발생시 보도 방송사업자의 오보, 부적합 보도(선정보도·명예훼손 등)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도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재난방송 종사자(기자, PD 등)들이 교육 등을 통해 재난상황 보도시 관련 법령·준칙 등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보도 방송사업자들이 기존 시행해 오고 있는 재난방송 매뉴얼 제작·비치 및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규제수준도 적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재난방송매뉴얼을 마련·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재난방송 관련 교육을 미실시한 보도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재난방송시 오보·부적합 방송 방지를 위한 보도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매뉴얼 마련·교육 등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유사 입법례와 비교시에도 과태료 부과금액 수준이 과도하지 않는 등 규제 수준도 적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강화 1)

**심사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누출방지 조치대상(현행 “컴퓨터”)에 “모바일 기기”를 추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시간 제한 등 조치,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에 ‘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바이오정보’를 추가 등 의무 강화 **강화**



**심사결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고, 규제내용도 최근 개인정보 유출 실태(스마트폰 보급화, 악성코드·해킹 진화, 내부직원 유출 증가 등)를 감안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보호 기술·관리적 조치로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고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수준이어서 규제수준도 적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사유 중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위치정보의 누출 등 위치정보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 규정 **신설**

**심사결과** 위치정보 사업자의 현저한 개인 위치정보 누출사고 등 발생 또는 우려시, 이로 인한 피해상황 조사 및 피해대책 마련 등 국민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조치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소관 부처)의 자료제출 요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고, 규제내용도 입법목적이 유사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관련 내용(자료제출 요구 권한)과 동일한 수준이어서 규제수준도 적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위치정보 사업자가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을 규정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들의 자료제출 등 의무 이행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서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액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위법의 위임범위(1천만 원)내에서 범위반 횟수(1회~3회)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5)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신설 1)

**심사내용**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추가 규정(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 0%→0.5%) **신설**

**심사결과** 방송사업자들의 재정상태·사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담금 징수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하는 등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고, 방송사업자 재정상태 및 공익성(사회적 영향력) 등을 반영하여 방송사업자별로 분담금 징수율 수준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6) 방송법 (신설 1)

**심사내용**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서비스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에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도록 시장상황 분석·평가,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규제 신설이 아닌 현행 법령을 통해서도 결합판매 관련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등을 위한 교육·홍보 등 각종 비규제적 시책 마련은 이미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종전 개정안 내용에서 경품 등에 대한 규제근거 활용에 대한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경품 규제 근거 삭제)되었고 최근 결합상품 중심의 방송·통신 시장환경 등을 고려하여, 원안(재심사 수정안) 동의

### (7)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방송사업자의 가상광고 허용기준(프로그램 시작전 가상광고 안내 고지자막 크기는 화면의 1/16 이상, 고지자막에는 상품 구매·이용 권유내용 및 다른 가상광고의 삽입을 제한, 가상광고 크기는 화면의 1/4(DMB는 1/3) 이내 등)을 규정 **신설**

**심사결과** 방송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송사업자들의 다양한 가상광고로 인한 시청흐름 방해 등 시청권 제약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확대 허용된 가상광고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시청자의 시청권 제약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업자의 가상광고시 고지자막 크기·방법, 가상광고 크기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규제내용(가상광고 세부 방법 등)도 시청자의 시청권 방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8) 2015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 규제 심사안

구분	계	규제 폐지	규제개선			규제존속		
			일몰 연장	일몰 해제	일몰 변경	일몰 연장	일몰 해제	일몰 변경
협약결과	2	-	-	-	-	2	-	-

**규제내용**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3조)

- 단말기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시되는 동일한 공시기간 중에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로 규정

**심사결과** 그간 지원금이 신규가입·번호이동 등에 집중되었으나, 동 규제 시행이후, 가입유형에 상관없이 지원금 혜택이 주어지는 등 이용자 차별 해소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동 규제 시행(14.10.1) 이후 여전히 이통사 등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가 지속 발생하는 거래현실 등을 감안하여, 일몰연장을 통해 향후 통신시장 경쟁상황, 단말기 유통시장 여건 변화, 제도운영 등을 보다 살펴본 후에 동 규제의 재정비 여부를 재검토함이 타당

**규제내용** 긴급중지명령 기준(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수준, 번호이동 상황 등 시장 환경, 이용자 피해 규모 등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을 하거나 번호이동 제한, 신규가입 제한, 기기변경 제한 등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심사결과**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 과다지급 등 법 위반행위가 현저하고 이를 통한 가입자 유치 급증(소위 ‘대란’) 등으로 인하여 이동통신시장 자체가 일시적으로 과열될 경우 적시 대응을 위해서는 법 위반행위 중지 외에 중지에 필요한 조치의 수행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고, 동 규제 시행(14.10.1)이후에도 여전히 이동통신사 등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가 지속 발생하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일몰 연장을 통해, 향후 단말기 유통시장 여건 변화 및 제도 운영 경과 및 법 제정 취지 명료화 등을 살펴본 후에 동 규제의 재정비 여부 등을 재검토함이 타당

###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설 1)

**심사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주체(이용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범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1차: 1천만 원, 2차: 2천만 원, 3차: 3천만 원)을 규정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의 과태료 상한액 범위 내에서 부과금액을 범위반 횟수를 감안하여 단계적(1차: 1천만 원, 2차: 2천만 원, 3차: 3천만 원)으로 규정하여 규제수준도 적정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10) 방송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홈쇼핑사업자의 방송법상 금지행위의 세부 기준을 규정 **신설**

- 금지행위 내용 : ① 일방적 방송편성 취소·변경 금지 ② 특정 수익배분방식 조건으로 방송편성을 현저히 불리하게 결정·취소·변경 금지 ③ 제작비용 전가 금지

**심사결과** 개정 방송법에 홈쇼핑사 불공정행위 금지행위가 도입됨에 따라 시행령에 상위법상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등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나, 일부 규제내용(제3호)의 경우 홈쇼핑 업체 특성상 정액제 거래가 불가피한 일부 거래유형이 있음을 감안하여 규제조문에 법적용 예외사유를 명확히 기재할 것을 개선권고



## 제7절 노동·환경 분야

### 1. 고용노동부

◎ 집필자 김미영 사무관 ☎ 044-200-2447 ✉ judyca@pmo.go.kr

#### 가.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5년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등 6개의 법령에 대해 강화 등 총 1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1건 중 2건은 개선권고하였으며, 9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1) 2015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안	행정사회분과위심사 (2015.05.22)	-	일몰규제 3건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본위원회 (2015.09.04)	개선권고 2 원안의결 1	강화 3 (중요 3)
(4) 2015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안	행정사회분과위심사 (2015.10.16)	-	일몰규제 13건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30)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0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직업안정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사회분과위심사 (2015.12.11)	원안의결 3	강화 3 (중요 1, 비중요 2)
<b>계</b>	-	<b>개선권고 2 원안의결 9</b>	<b>신설 2, 강화 9 (중요 4, 비중요 7)</b>

## 나.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재검토행 일몰도래 규제 심사안

구분	계	규제 폐지	규제개선			규제존속		
			일몰 연장	일몰 해제	일몰 변경	일몰 연장	일몰 해제	일몰 변경
국무조정실	3	0	0	0	0	1	2	0

**규제내용** 1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알선 조사(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3)

-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 및 대여 알선 금지를 위해 사업주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심사결과**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 제고 및 자격 미취득자 고용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자격증 불법대여 적발·근절이 필요하며, 타 입법사례(예: 공인증개사법, 공인노무사법, 건축사법, 영육아보육법 등)에서도 자격증 대여 금지 및 법 위반행위 확인 등을 위해 보고·검사·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 규제존속 및 일몰폐지하기로 의결

**규제내용** 2 비밀 엄수의 의무(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의2)

- 시험문제의 출제 및 검토·인쇄를 담당하는 사람, 면접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실기시험 관리 및 시험감독을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심사결과** 시험업무에 있어서 자신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는 것은 시험 부정방지 및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당연히 필요하며, 비밀엄수가 의무화되지 않을 시 국가시험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므로 규제 존속 및 일몰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

**규제내용** 3 근로자 파견계약 체결방법 및 내용(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파견근로자의 수, 업무내용 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심사결과** 계약 체결방법(서면) 및 내용을 명확히 하여 파견계약 당사자 간 분쟁방지 및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서면명시 세부항목의 경우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적절한 증감, 조정이 필요하므로 규제존속 및 일몰연장하기로 의결

##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임신·출산 자료제공 요청 **신설**

- 고용부장관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임신·출산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권 부여

\* 제공요청 자료(정보): 임신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출산예정일, 이메일 주소

**심사결과** 모성보호제도가 여전히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임신·출산기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실제 작동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목적 달성에 효과적이면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권익의 침해의 정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료 원안의결

## (3)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3)

**심사내용** ① 근로자의 작업 중지 및 대피 **강화**

- 근로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후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시 추가조치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요구에 불응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 가능

**심사결과** 산업재해 방지 필요성이 있으므로 추가조치 요구권, 고용관서 신고권 등은 동의하되, 작업중지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추가조치 요구는 작업재개 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합리적 근거’ 문구도 현행유지토록 개선권고, 또한 ‘합리적근거’에 대한 판단지침을 마련토록 부대권고

**심사내용** ② 유해작업의 도급인가 **강화**

- 도급의 인가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의 변경시 및 인가기간 연장시 재인가를 받도록 강화

**심사결과** 유해 도급인가 작업시설의 노후화·위험 대비 등을 위해 인가 유효기간 설정(3년) 및 재인가 제도는 동의하되, 변경사항 발생시 재인가는 과도하므로, 재인가보다 간소화된 변경인가 기준·절차를 마련토록 개선권고

**심사내용** ③ 도급인의 사업장에서의 산재예방조치 대상장소 **강화**

-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 의무 부과장소를 현행 20개 장소\*에서 모든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확대

\* 토사 등 붕괴, 화재·폭발 우려,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산안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심사결과** 도급인 사업장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강화가 필요하므로 원안동의

#### (4) 재검토형 일몰도래 규제 심사안

구분	계	규제 폐지	규제개선			규제존속		
			일몰 연장	일몰 해제	일몰 변경	일몰 연장	일몰 해제	일몰 변경
협의를결과	14	0	3	1	0	8	2	0

**규제내용** 직업소개사업의 겸업금지(직업안정법 제26조)

- 식품접객업 또는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을 금지

**심사결과** 직업소개를 가장한 성매매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행위 알선 방지를 위해 일부 업종의 직업소개업 겸업금지는 필요하며,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숙박업의 경우 공중도덕 질서유지를 위해 규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더 이상의 일몰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규제존속 및 일몰폐지 의결

**규제내용** 국외 유료직업 소개요금 등 고시(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 국외 유료직업소개시 법정 요금 외의 금품 수령 금지

**심사결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요금 고시는 직업소개사업자로부터 과도한 소개요금 징수로 인한 중간착취를 막아 구직자 및 구인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다만, 유료직업 소개사업자의 소개요금 상한선을 두어 영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으므로 규제존속 및 일몰연장기로 의결



**규제내용** 근로자복지사업 용자업무취급기관 규정(근로복지기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생활안정자금융자 등 근로자복지사업의 용자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지정

**심사결과** 생활안정자금대부 용자 등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용자업무의 안정적 수행 및 국가채권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나, 향후 금융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추가로 있을 수 있으므로 규제존속 및 일몰연장기로 의결

**규제내용**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

**심사결과** 우리사주 조합의 안정적·지속적 운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원 자격에 대한 기준 필요성이 인정되나, 노동시장의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적정하게 재설계하기 위하여 주기적 검토 필요하므로 규제존속 및 일몰연장기로 의결

**규제내용**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배정규정(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제43조)

-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방법 및 사용용도와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을 규정

**심사결과**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방법 및 사용용도 등은 우리사주의 안정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한 것으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나,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주기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규제존속 및 일몰연장기로 의결

**규제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승인 및 취소(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위 내용과 관련된 규제가 2개로 분리되어 있으나, 사실상 중복되는 내용으로 통합심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짓·부정의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승인요건 미충족시 등의 경우 시정명령 또는 승인취소할 수 있음

**심사결과** 직업훈련교사의 자질 향상 및 직업훈련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훈련시설과 훈련과정에 대한 일정요건의 설정·관리가 필요하나, 인력·시설 및 장비요건 1회 위반에 대해 바로 승인취소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1회 위반시 시정명령, 2회 위반시에 승인취소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승인요건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제개선 및 일몰연장기로 의결

**규제내용**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요건(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요건과 운영상 신고 사항 등을 정함

**심사결과** 건전한 훈련시장 형성 및 훈련수요자에게 양질의 훈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향후 직업훈련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시설, 인력요건 등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제존속 및 일몰연장하기로 의결

**규제내용**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기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 지정직업훈련시설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등에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할 수 있음

**심사결과** 건전한 훈련시장 형성 및 훈련수요자에게 양질의 훈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의 제재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행 지정취소 기준이 적정하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일몰설정 및 주기적 재검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몰폐지하기로 의결

**규제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및 취소요건 등(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 제16조, 제1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과 자격취소·정지 기준을 정함

**심사결과** 직업훈련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 평생능력개발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가 갖추어야 할 일정요건을 설정·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훈련직종의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맞춰 자격취득 요건 등에 대해 주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규제존속 및 일몰연장하기로 의결

**규제내용**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관련 수수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0조)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변경·갱신수수료(1~3만원) 납부를 의무화



**심사결과** 무분별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허가 수수료 부과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나, 상황변화에 맞춰 수수료 금액조정 또는 수수료 폐지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규제존속 및 일몰연장하기로 의결

**규제내용**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변경시 신고) 및 취소 기준(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허가 및 허가취소 기준을 정함

**심사결과** 근로자파견업의 경우 인력의 채용 및 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간착취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자산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파견업을 허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허가요건 등에 대해 주기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규제존속 및 일몰연장하기로 의결

**규제내용**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공인노무사법 제12조의4)

- 공인노무사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심사결과** 공인노무사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장치(보험가입)가 필요하며,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은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므로 일몰폐지기로 의결

**규제내용** 공인노무사 시험의 일부 면제(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

- 공인노무사 시험의 일부면제 제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

**심사결과** 고용노동 관련 실무경험을 갖춘 공무원과 민간경력자 등 우수한 인력의 수급을 통해  
노동관련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어 규제의 필요성 인정되며, 면제범위, 면제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규제존속 및 일몰연장하기로 의결

##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강화 2)

**심사내용**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 **강화**

- 우수 등급 사업장이라도 감독, 기술지도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직권으로 이행상태평가를 재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심사결과**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 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사업장에서도 중대 산업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정안전보고서의 중요 내용 미준수 등으로 인한 중대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수등급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불량 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직권으로 재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등급을 재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명확화 **강화**

- 야간작업의 정의 중 가.에 대해 6개월간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를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로 명확히 함

**심사결과** 현행 규정은 야간시간에 계속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작시간이 법 규정과 다른 경우 야간 특수건강진단 적용대상에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존재하며, 국제노동기구(ILO)는 야간작업에 대한 정의도 자정부터 05시를 포함한 연속 7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 **강화**

-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록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고용부장관·금융위 등이 발하는 명령을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제재기준 정비

**심사결과** 법률의 위임취지 및 국회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등록취소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7) 직업안정법 (신설 1)

**심사내용** 소개요금 한도 위반 또는 무등록·무허가 사업자 명단 공표 **신설**

- 아래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명단 및 위반행위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여 소개요금을 수령하여 등록취소\*된 유료직업소개사업자
    - \* 3차 위반시 등록취소
  - 무등록·무허가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형사상 유죄가 확정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근로자공급사업자



**심사결과** 유료직업소개소 등을 이용하는 구직자가 주로 건설일용근로자 등 취업취약계층임을 감안할 때, 상습적으로 소개요금을 과다 징수하거나 무등록·무허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구직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 입법례도 존재하는 점을 감안 비중요 규제에 판단하여 원안의결

###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강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동 안전검사 대상에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를 추가

**심사결과** 안전인증·검사 대상품은 재해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의 경우 산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사고는 발생 즉시 근로자 사망사고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에 판단하여 원안의결

**심사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안전·보건교육 의무대상 사업장 관련 **강화**

- 서비스업종 중 재해율이 높은 특정 업종(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안전·보건교육 의무 부과

**심사결과** 재해율 상위 업종(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여 안전보건교육 고취 및 산재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동의(3년 재검토형 일몰 설정)하되, 다만, 대부분 단순·반복형인 서비스업의 재해 특성을 감안,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을 50%이상 단축토록 부대권고(산안법 시행규칙 개정)

**심사내용**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 **강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 중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에도 겸직이 가능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심사결과** 최근 5년 연속 건설업의 재해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현장(120억원 미만)에서의 재해율이 높은 상황이며, 또한, 터널·교량 및 굴착공사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는 추락·붕괴·낙하 등의 위험이 높아 재해가 다발하므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에 판단하여 원안의결

## 2. 기상청

◎ 집필자 김미영 사무관 ☎ 044-200-2447 ✉ judyca@pmo.go.kr

### 가.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5년도에는 기상법 시행령 1개의 법령에 대해 강화 등 총 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기상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1) 기상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4.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 나.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기상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 **강화**

- 기상정보 출처 명시 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심사결과** 제1차 위반 시 바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는 등 규제를 적정하게 설계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3. 환경부

◎ 집필자 김한필 사무관 ☎ 044-200-2442 ✉ kimhanpil@pmo.go.kr

#### 가.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5년도에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등 34개 법률에 대해 56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56건 중 8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4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환경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1)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제정안	행정사회분과위심사 (2015.01.26)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3.16)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3)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5.03.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행정사회분과위심사 (2015.04.03)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행정사회분과위심사 (2015.06.11)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본위원회 심사 (2015.06.15)	원안의결 3	강화 3 (중요 1, 비중요 2)
(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6.1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8)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5.06.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7.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7.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7.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12) 환경보건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7.27)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7.27)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1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07)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1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6)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5.08.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7)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2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2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9)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26)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2)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개정안	예비심사 (2015.09.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3) '15년 내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심사	행정사회분과위심사 (2015.09.30)	-	일몰규제 4건
(2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5)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본위원회 심사 (2015.10.20)	개선권고 2 원안의결 1	강화 3 (중요 2, 비중요 1)
(27) 먹은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사회분과위심사 (2015.10.13)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2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행정사회분과위심사 (2015.11.16)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2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본위원회 심사 (2015.11.16)	개선권고 1 원안의결 3	신설 4 (중요 1, 비중요 3)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본위원회 (2015.11.27)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2 (중요 1, 비중요 2)
(3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심사 (2015.12.14)	원안의결 2	강화 2 (중요 1, 비중요 1)
(3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24)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3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재심사)	본위원회 심사 (2015.12.30)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b>계</b>	-	<b>개선권고 8 원안의결 48</b>	<b>신설 19, 강화 37 (중요 12, 비중요 44)</b>

## 나.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신설 1)

**심사내용**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신설**  
 - 정수시설 내·외에서 사용되며 인증을 받아야 하는 물과 접촉하는 자재와 제품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심사결과** 수조, 패널류, 가스켓 및 씰링류 등 기존 인증대상 범위의 제품들을 명확히 하여 해당 제품 제조·수입·공급·사용자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고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음수기류, 수도꼭지 연결제품(절수기, 호스), 온수기류 등 수도물과 직접 접촉하는 자재·제품임에도 인증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던 것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인증확대가 필요. 한편, 음수기류, 수도꼭지 연결제품(절수기, 호스), 온수기류 등은 수도물과 직접 접촉하는 제품들로서 필요최소한 범위를 추가하는 것이고,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선진국 또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원안의결

##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거래에 대한 관리 **강화**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해상 반출·반입 허가 신청시 ‘거래영향평가서’와 ‘멸종위기종 적법어획 증명서’를 추가 제출토록 함

**심사결과** ‘멸종위기종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근거, 멸종위기종 해상 반출·반입시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추가되는 2종의 서류는 CITES와 야생생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각각 규정되어 있고, 멸종위기종의 거래시 국제협약을 따르도록 한 야생생물보호법 제16조를 구체화한 것으로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야생동물 역학조사, 살처분, 사체 처분 제한 등 **신설**

-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야생동물 질병의 종류\*를 정함
  - \*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병, 결핵병, 광견병 등
-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전기, 이산화탄소가스 또는 약물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살처분하여야 함

**심사결과** 야생동물에서 사람에게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질병 전파를 조기 차단을 통한 재산피해 예방 및 공중보건 보호 등 편익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3)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동강생물자원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 동일명칭 사용시 : 1차위반 100만원 ~ 3차위반 500만원까지 차등 부과
  - \* 유사명칭 사용시 : 1차위반 50만원 ~ 3차위반 250만원까지 차등 부과

**심사결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국가사무를 위탁수행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무분별한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기관의 신뢰도 저하 및 일반국민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과태료의 세부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률로 정한 과태료 상한액 범위 내에서 위반내용 및



위반횟수(3회)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경감이 가능하도록 일반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최초 위반시에는 가장 낮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규제부담의 집행방식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공공수역의 오염방지 토사 기준 **신설**

- 공공수역에 유출이 금지되는 토사의 기준 (선택적 적용)
  - \* 토사 1천kg 이상(공공하수도 및 폭 5m 이하의 배수로 및 소하천에 한함)
  - \* 배경농도를 제외하고 증가된 부유물질(SS) 농도가 100mg/ℓ 이상
  - \* 단, 육상의 건설공사에 한하며, 시간당 10mm 이상 강우 1시간 이상 지속 또는 누적강우량 30mm 이상의 경우 적용 제외

**심사결과** 공사장 토사관리기준의 명확성 확보, 토사로 인한 도심지 침수 예방, 하천의 수생태계 환경 보전 등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됨. 또한, 토사량 기준, 부유물질 농도 등은 적정성이 인정되나, 기준 적용 제외 강우량 산정기준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누적유출고 5mm에 준하는 누적강우량 20mm이상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선권고

#### (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등 **강화**

- 비산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상 업종 확대

**심사결과** 비산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인체위해성, 미세먼지·오존 등 2차 오염물질 생성 등을 고려할 때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대상업종 선정, 비용·편익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조율을 통한 업계현실 반영 등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규제의 적정성도 인정. 다만, 일부 업종(▲ 전기회로 개폐·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 합성섬유 제조업)의 경우, 개정취지, 기준 적용의 일관성, 업종간 형평성 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금번 추가 업종 선정에서는 3개 업종은 제외하고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개선권고

###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강화 3)

**심사내용**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관련 수수료 **강화**

-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항목 규정(관리주체의 변경, 관리방식의 변경, 시설규모의 변경)

**심사결과** 신고한 사항 중 변경신고 해야 하는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여 일선에서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장 명칭, 대표자 변경, 임대 등 일반적 변경신고의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라는 점, 단순히 법정 서식<참고1>을 작성·제출 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비산배출 저감 대상시설의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한 제도의 내실화 측면에서 부수적 편익도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휘발유사용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설명 **강화**

- 이륜자동차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단계적 강화

\* 신규기준: (현재) EURO-3 → ('17) EURO-4 → ('20) EURO-5

\* 양산기준: (현재) EURO-3 → ('18) EURO-4 → ('21) EURO-5

**심사결과** 한-EU FTA 합의사항, 대기오염물질 저감, 국민건강보호 등을 위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해외 이륜차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 배출허용기준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형자동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보증기간 확대 **강화**

- (이륜자동차) (현행) 2년 또는 10,000km → ('17) 최고속도 130km/h미만 이륜차(2년 또는 20,000km), 130km/h 이상 이륜차(2년 또는 35,000km)

- (경유택시) (현행) 10년 또는 160,000km → ('16) 10년 또는 192,000km → ('20) 15년 또는 240,000km

**심사결과** <경유택시> 대기환경개선, 운송업자 간 형평성 측면 등을 고려, 경유택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보증기간도 사용목적이 동일한 LPG 택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현행 개발된 차량 모두 강화되는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이륜자동차> 동 개정안은 한-EU FTA 협정에 따라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사안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의 실효성 제고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며, 보증기간도 유럽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 적정성도 인정됨. 이해관계자



(대림자동차, KR모터스)와의 회의 결과('15.5.26) 동 규제에 대한 필요성·타당성을 인정하며 전면 수용한다는 입장임.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 회수등 **신설**

-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냉매)에 대한 회수·보관 및 처리 기준 마련

**심사결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폐전기·폐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냉매 적정 처리(회수, 보관 등) 규정 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동 조항은 국내 기술 및 업체 현황, 회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온도, 압력, 유출방지 등 단계별(회수, 보관, 처리)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의 보관, 수집·운반 및 처리”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 선진국은 “인증된 기술자를 통한 회수, 진공상태에서 냉매 제거·회수” 등 보다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인가의 취소등 **신설**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인가취소

**심사결과** 동 조항은 인가취소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이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한편, 동 조항은 1년간 3회 이상 적법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거부한 불성실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유사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점 등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8)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강화 1)

**심사내용** 부적합 제품의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강화**

- (위해우려제품 지정 확대) 위해우려제품 지정 품목을 8종→15종 확대
-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확인) 추가 지정된 7종의 위해우려제품 內 함유된 유해물질에 관한 기준을 정함

- (품목별 표시기준 설정) 추가 지정되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표시 사항을 정하고, 기존 고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일부 보완

**심사결과**

〈위해우려제품 지정 확대〉 생활화학제품은 모든 국민이 쉽게 사용하는 제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건강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바, 관리를 위한 위해우려제품 추가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한편, 동 규제안은 범정부 종합대책(‘11.12), 차관회의(‘12.11), 국조실 조정(‘14.10) 등 범정부 협의에 따라 위해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생활화학제품에 한정하여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한 것으로 적정성이 인정되는바, 비중요 규제로 보완 원안의결

〈안전기준의 설정 및 확인〉 위해우려제품은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으로서, 제품 내 함유 된 유해화학물질의 과다노출 시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은 심각한 건강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 또한, 동 기준은 국내·외 물질규제 등을 참조하여 안전기준을 설정하였으며, 물질독성 자료 및 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여 사용 과정에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은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고, 살생물제품의 경우 사용가능한 주요 화학물질(유효성분) 목록은 업계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반영하였는바, 규제의 적정성도 인정.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표시기준의 설정〉 소비자의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표시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등 타 법령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수준.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 **강화**

- 비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

위반행위	현행	개정
자가 측정 결과 미기록·보존 등	1차-200만원 2차-200만원 3차-200만원	1차-200만원 2차-300만원 3차-500만원
대기배출시설 운영상황 미기록 등	1차-100만원 2차-140만원 3차-200만원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비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신설〉	1차-100만원 2차-150만원 3차-200만원



**심사결과** 대기배출시설 관련 기록·보전 허위 또는 미 실시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적정처리 유도 및 국가 배출량 자료의 정확성 확보 필요함. 한편, 과태료 부과 금액 관련, 최초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동결하여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동일사안에 대하여 타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동일하거나 완화된 수준인바,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1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폐기물처리기준 **강화**

- (지정폐기물 혼합보관 금지) 폐산·폐알카리, 금속성 분진, 폐유독물 등 혼합보관 또는 수분접촉 금지 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고시
- (지정폐기물 안전시설 설치 등)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장치 및 방제약품·장비와 사고대응 메뉴얼을 갖추도록 함

**심사결과** <지정폐기물 혼합보관 금지> 지정폐기물의 화재, 폭발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11~'14년 76건)하고 있어 반응·폭발성이 있는 폐기물은 혼합보관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유독물 등 유해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보관·운반 등에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으나, 폐기된 이후인 폐기물단계에서는 관리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14.4. 감사원 감사)된 점 등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지정폐기물 안전시설 설치 등> 지정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배출자(100톤/년 이상)와 폐기물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장치 설치, 사고 발생 대비 방제약품·장비 비치 등의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해물질이 폐기된 이후인 폐기물 단계에서는 관리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고, 유해물질 취급기준과 비교하더라도 규제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1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강화 1)

### 심사내용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관리 **강화**

- (지정폐기물 유출방지시설 설치) 지정폐기물 보관하기 위한 장소에는 폐기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류벽, 방류턱 또는 저류조 등의 유출방지시설 설치 의무
- (지정폐기물 관리기준) 반응·폭발·화재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은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에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기재, 지정폐기물을 취급하는 작업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의 업무책임자의 감독에 따라 작업 실시

**심사결과** <지정폐기물 유출방지시설 설치> 지정폐기물의 화재, 폭발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11~'14년 76건)하고 있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환경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바,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보관장소에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인정됨. 한편, 지정폐기물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기준을 미이행 할 경우 처벌 규정을 두어 집행의 실효성도 확보하고 있는바,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지정폐기물 관리기준> 지정폐기물의 상·하차나 보관장소 이동 등의 과정에서 부주의한 취급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바,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지정폐기물배출자는 매년 1회이상, 처리업자는 분기마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 이행시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규제집행 실효성도 확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12) 환경보건법 (강화 2)

### 심사내용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취소 등 **강화**

- 검사기관은 시험·검사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준수토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이외에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평시 관리에 필요한 관리기준과 기준 미준수시 처벌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 입법사례로, 「하수도법」에도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술진단 전문기관에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문기관에 대해 기술진단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바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 **강화**

-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평가 결과 5년 기간 내 3번의 경고를 받은 경우 센터 지정의 취소가 가능토록 함

**심사결과** 환경보건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제재처분 강화, 유효기간을 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지정취소 기준과 관련하여 “(현재) 6년, 4번 경고→(개정) 5년, 3번 경고”로 미세하게 강화하는 수준이며, 실제 5년에 3번 경고를 받는 경우도 극히 이례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동 규제는 기존 제도를 내실화 하는 것으로 별도 규제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바,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수렵면허시험, 수렵면허(갱신) 신청, 대여금지 등 취소 **신설**

- 수렵면허를 갱신(5년 주기)하는 경우에도 “수렵 강습 이수증” 제출

**심사결과** 수렵면허는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총기를 다루는 특수한 행위를 허가하는 것인바, 수렵면허 발급·관리에 대하여 엄격한 제도운영 필요성이 인정됨. 한편, 동 개정안은 강습에 대한 유효기간(1년)을 설정하여 최신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시간도 5년에 1회 5시간에 불과한바, 수렵면허를 발급·갱신하고자 하는 자에게 과도한 부담 부과하지 않음.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제출된 이견이 없는바,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렵강습기관의 지정의 취소 **강화**

- 수렵강습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기관자격인 비영리법인 요건을 신설하고 인력기준을 강화

**심사결과** 수렵강습은 수렵면허의 발급·갱신을 위해 받아야할 법정교육인 바, 안전수칙 등 체계적 교육을 위하여 수렵강습기관에 대한 자격조건과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일본의 경우 수렵면허는 환경성이 지방정부의 관련부서를 통해 발급하고 있으며, 수렵인들은 관할 지방정부가 실시하는 강습을 받도록 하고 있고 타 법령에서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경력 5년 이상인 자 보유”하는 등의 조건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렵강습 과목 및 강습시간 **신설**  
 - 수렵강습 과목에 사고 발생 시 조치 방법을 추가하고 실기교육을 1시간 이상 별도로 실시토록 함

**심사결과** 수렵장 내 총기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추진되는 사안으로 수렵관련 실기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됨. 강화되는 규제의 내용도 수렵과목에 1시간 범위에서 실기 강습을 추가하는 것인바,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1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 **강화**  
 - 미나마타 협약(부속서 A,B)에 따른 수은의 제조·수출입·사용 제한용도 추가

**심사결과** 수은의 특성 및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수은을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성 인정됨. 또한, ‘미나마타협약’ 채택(13.10월) 및 서명(14.9월)에 따라,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한편, 동 규제의 도입에 따라 연평균 최소 3.7억원 최대 13.1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의료비 감소와 건강편익 증진 등 연평균 최소 11억원 최대 18.4억원의 편익 발생 추정, 규제의 적정성도 인정됨. 미국, EU, 일본 등 국가별 수은함유제품 관리체계 및 관리수준 등은 모두 미나마타 협약 수준에 부합되게 수은첨가제품을 관리하고 있는 점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배출시설의 설치기준(배출량 예측명세서 제출 의무화) **신설**  
 - 잔류성물질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의 시설 설치 허가·신고 시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예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심사결과** 다이옥신은 타 매체법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물질에 비해 독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므로, 국민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예측명세서 제출의무의 필요성 인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타 법에서도 오염물질 배출예측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시험분석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점을 고려,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향후 '17년 잔류오염물질관리법 시행 전까지 추가적으로 규제대상이 되는 업체에 대한 변경사항 개별 고지, 관련업체 홍보, 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어 규제 이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고와 검사, 과태료 **강화**

– 잔류성오염물질 보고대상 및 검사대상 추가

	현행	개정
보고대상	배출사업자, 재활용자, 오염기기 등 소유자, 관리대상기기 등 소유자	(추가) 잔류성오염물질 취급자,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처리자
검사대상	배출원, 배출량, 배출허용기준, 잔류성 오염물질함유폐기물, 오염기기 처리기한	(추가)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와 제한 준수여부

**심사결과** 잔류성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위해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검사대상과 보고대상을 보완하는 등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 동 규제로 인한 비용은 연평균 최소 15백만원 최대 30백만원에 불과하나, 잔류성오염물질의 부적정 취급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으로 국민 건강편익 증진 등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야생동·식물보호 과태료 **강화**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였으나 하위법령에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조항에 대한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을 마련

위반행위	부과기준
① 유해야생동물 포획결과 미신고	1차-100만원 2차-150만원 3차-200만원
② 야생동물 치료기관 취소 후 지정서 미반납	1차- 50만원 2차-100만원 3차-100만원
③ 야생동물 질병 발생사실 미신고	1차- 50만원 2차-100만원 3차-100만원
④ 역학조사를 방해 또는 거부	1차-100만원 2차-150만원 3차-200만원
⑤ 사체 소각·매몰시 환경오염방지조치 미이행	
⑥ 야생동물 사체 매몰지를 3년 이내 발굴	

**심사결과** 시행령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이나, 경미한 사항에도 과태료 최고 금액이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초래할 수 있는바, 위반 횟수 등에 따른 부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별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액 범위 내에 있으며, 감경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 타입법례와 비교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16)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폐열 공급 승인 신청방법 및 공급현황 정산·보고 **신설**

-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폐열을 지역냉난방용으로 공급 승인 받으려는 사업자는 신청서 제출시 폐열량 증빙자료를 첨부토록 함
- 공급·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발전폐열을 지역냉난방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년 공급현황을 정산·보고하도록 규정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승인을 받거나, 폐열 공급 허용량을 2회 이상 초과하는 등의 경우 공급승인 취소

**심사결과** 사업자가 신청한 “폐열 공급량”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 과거 실적 자료 등의 제출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한편, 신청서 제출서류는 해당사업자가 발전시설의 운영·관리를 과정에서 이미 축적되어 있는 자료인 바, 서류 제출을 위하여 추가적 노력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공급현황의 정산·보고와 관련해서도 폐열 공급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발전시설을 운영하면서 관리되는 자료를 단순히 보고하는 것에 불과한 바,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청정연료 사용지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석탄 등을 사용하고 남은 폐열을 지역 냉난방에 공급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것임을 감안할 때, 승인취소의 적정성도 인정되는 점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17) 하수도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세부내용 **강화**

- 합류식 하수처리구역 내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 대상 확대\*

\* (현행) 1일 처리대상 1천명 이상 정화조 → (개정) 1일 처리대상 2백명 이상 정화조

**심사결과** 정화조로 인한 악취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으며, 도심지내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한편, 공기공급 등 악취저감시설은 정화조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인 바, 타당성도 인정. 200인조 이상 규모의 정화조는 전체의 4% 수준으로 매년 설치가 예상되는 정화조 대상은 약 960개소로 수준에 불과한 점, 악취저감시설(공기공급장치)의 설치비(200만원/개소)·운영비(8.9만원/년) 수준 등을 감안할 때 규제의 정도가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미 정화조 설치신고·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바, 집행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으며, 입법예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결과 이견도 없어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1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강화**

- 생산자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 확대[곤포용 사일리지 필름, 김발장(합성수지 재질에 한함)]

**심사결과** 자발적 협약 품목의 재활용률이 생산자 재활용 의무 대상(EPR) 품목 재활용률의 1/3 수준(12 기준)임을 고려할 때, 자발적 협약 품목으로 선정되어 재활용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곤포용 사일리지필름 및 김발장을 EPR품목으로 전환하여 재활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두 품목 모두 재활용 의무율을 초과하여 달성하고 있는 바, EPR

품목 지정에 따른 추가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임. EPR 관련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이 수탁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조직 및 인력으로도 충분히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도 이견이 없는 바,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19) 대기환경보전법 (강화 2)

**심사내용** 적산전력계,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의무 **강화**

- 자체관리 사업장 및 유지관리대행업체의 의무사항 추가
- 측정기기 부착시설 유지관리대행업 등록제 도입

**심사결과** 대다수의 사업장이 TMS 측정·관리·보수 업무를 관리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음에도 관리대행업 등록제도가 없어 중소·부실업체가 난립에 따라 측정결과 신뢰성 저하 등 문제 야기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TMS 관리대행업체를 등록 대상으로 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체계(결격사유, 제재처분 등)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한편, 자격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자는 합법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동일한 방식의 규제를 도입한 점 등을 감안, 적정성도 인정됨. 동 규제 도입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설명회 2회, '14.9, '15.3) 과정에서도 반대 의견도 없는바,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대상 **강화**

- 등록된 측정기기 유지관리대행업체 및 자체관리사업장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

\* (대행업체) 측정결과 허위결과 산출, 운영관리 기준 위반 등의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자체관리) 시설·장비, 기술인력 등 구비요건 미달 등 규정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안정적 굴뚝 측정기기 유지관리를 위해 측정결과 거짓 산출 금지, 등록 기준 준수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됨. 한편, 동 개정안의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도 타법령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인바, 적정성도 인정.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2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강화 1)

### 심사내용 과태료 강화

- 토사유출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심사결과** 동법 제78조 벌칙조항에서 수질오염피해가 큰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수질오염피해가 크지 않은 토사유출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바, 과태료로 변경하여 해당 조항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동 개정안은 원래 벌칙으로 규율되던 행위를 과태료로 변경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므로 비중요 규제에 보아 원안의결

##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1)

### 심사내용 제품등의 재활용 촉진 및 분리배출 표시 강화

- 폐형광등 재활용 방법 및 기준에 수은함유 기준 신설

**심사결과** 현재 폐형광등에 수은 기준이 없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바, 잔류 수은 허용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됨. 한편, 동 기준(0.005mg/L)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 설정기준과의 연계성,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는바, 적정성도 인정됨.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한국재활용협회는 동 규제의 적용시점에 있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을 요청. 이에 환경부는 이를 일정수준 반영[(시행시기) 공포 2개월 후 시행 → '16.1.1.시행]하였으며, 이해관계자도 수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이므로 비중요 규제에 보아 원안의결

## (22)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강화 1)

### 심사내용 유·도선사업 등 강화

- 특별대책지역 I 권역 내 입지제한 대상 추가\*

- \* 수상비행장·수상헬기장 및 수상이착륙장
- \* 유·도선사업 등을 위한 식품접객업

**심사결과** 팔당·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오염원 증가 및 오염사고를 방지하고 동시에 지역주민 등 피규제자에게 입지제한 사항을 명확히 공지하기 위한 관련규정 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공공수역 내 계류장 등에 식품접객시설 등이 설치·운영될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바로 유출되어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바, 식품접객시설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도 인정.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큰 I 권역에만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 적정성도 인정됨. 해외 선진국(미국, 독일)도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일정거리 내 입지(행위) 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점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3) '15년 내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심사 (일몰규제 4건)

구분	계	규제 폐지	규제개선			규제존속		
			일몰 연장	일몰 해제	일몰 변경	일몰 연장	일몰 해제	일몰 변경
국무조정실	4	0	1	0	0	2	1	0

**규제내용** 사업장폐기물 처리자의 의무

- 폐기물 수탁처리자가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위탁자에 통보토록 함

**심사결과** 동 규제는 폐기물수탁처리업자가 영업정지 등으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때 위탁자에 대해 단순 통보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불과한 바, 이는 당위적 규정으로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장 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처리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 처리자가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로, 규제의 주기적 재검토보다는 조문내용의 지속적 집행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일몰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함

**규제내용**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보험사로부터 수령하는 보증보험금액 및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기준을 정함

**심사결과** 방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제도」가 도입되었는바, 동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방치폐기물 처리 단가 기준이 필요. 또한, 현재의



단가 기준은 '14년 10월 18일에 개정되어 시행되는 것으로 아직 기준을 변동할 만한 특별한 상황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현 기준의 적정성도 인정됨. 한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제도」가 실효성 있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실제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비용의 현실화가 필요한 바, 주기적인 처리단가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일몰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함

**규제내용** 먹는샘물 등에 대한 광고제한

– 먹는샘물 등의 광고 제한기준

-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따라 표현하지 않은 경우
- \*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심사결과** 먹는샘물에 대한 경쟁 심화로 불공정, 허위·과대광고와 함께 수돗물에 대한 불신조장 및 건전한 물소비를 해칠 우려가 있는 바, 규제 유지는 필요함. 한편, 동 규제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먹는 샘물의 광고에 최소한의 규제를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먹는 샘물 관련 사업자의 권익과 허위·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의 공익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먹는 샘물에 대한 광고제한 내용 및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인정되는 바, 일몰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함

**규제내용**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분야

- 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 기준
-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의 분야(대기/수질 분야)

**심사결과** (응시자격) 형식적 응시자격을 폐지하여 우수한 인력이 조기에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 가능토록 하는 것인 바, 동 규제의 삭제는 타당함. (검정분야) 측정대행업체 등 시험검사기관은 2020년 7월17일부터 대기·수질토양·폐기물에 대한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소지자를 1명 이상 확보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법 제18조의2 제6항), 제도 도입취지 달성 및 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현재의 대기·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분야는 유지할 필요있음. 현 검정업무 분야인 대기 및 수질 외 폐기물, 토양분야 등으로 확대가 예정되어 있으며, 추후 과학적 시험검사의 필요에 따라 검정분야 확대 등에 대한 주기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일몰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

## (2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설 1)

###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 **신설**

-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함\*

\* 1차(60만원), 2차(80만원), 3차 이상(100만원)

**심사결과** 법에서 과태료의 상한(100만원)을 정하고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피규제자 및 집행기관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한편, 동 기준은 최소 위반시 과태료 금액을 60만원으로 하고 반복적 위반을 줄이기 위해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을 증가시키고 있는 바, 적정성도 인정. 대기환경보전법령 등 다수의 법률에서도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경우에 대해 동 개정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도 감안.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반대의견도 없는 사안인 바,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25)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강화 1)

### 심사내용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강화**

-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공고일 변경(주민입주 3일전 → 7일전)

**심사결과** 신축 공동주택 입주민의 알 권리 보호 및 최소한의 정화조치를 위한 기간 확보 측면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한편, 오염물질의 유의미한 감축을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측정공고일을 변경(입주 7일전)하였는바, 적정성도 인정됨. 또한, 동 규제는 단순히 측정결과 공고일은 앞당기는 것으로 직접적 규제비용은 없는 반면, 입주민 알권리 확보,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 등 편익은 클 것으로 판단되는바,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2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강화 3)

### 심사내용 대기환경보전법 행정처분 **강화**

- 측정기기 등 고의 훼손·조작, 측정결과를 비정상적 작성시, 일정기간 조업정지 및 허가취소·폐쇄 조치



**심사결과** 행정처분의 강화는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여 대기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규제의 필요성 인정됨. 한편, 조작이 이루어지는 소각시설은 폐기물저장조(7일 저장 가능)를 갖추고 있어 조업정지 10일로는 규제목적이 곤란, 조업정지 30일(1개월)·90일(3개월)은 행정처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 또한, 먹는물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조사·평가 자료 등을 부실·거짓 작성하는 경우, 1차 위반시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업무정지를 명하는 등 타 법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비산먼지 규제 **강화**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시 일반기준 이외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제철 및 제강업자” 추가\*
  - \* (기존) 시멘트 제조업자·콘크리트제품 제조업자·석탄제품 제조업자·건축물 축조공사자·토목공사자(5개) + (추가) 제철·제강업자(1개)

**심사결과** 기존 제철·제강시설에 대해 일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원안동의 하되, 신규 제철시설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은 철회하는 내용으로 개선권고

**심사내용** 운행차배출허용기준 **강화**

-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을 미국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강화

**심사결과**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 저감을 위해 휘발유·가스 운행차의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그러나, 배출가스 허용기준의 준거로 캘리포니아 사례 적용, 비용-편익 등 전체적인 방향에서 규제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측정항목 중 다소 과도한 부분이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따라서, 동 개정안 내용 중 HC에 대해서만 캘리포니아 수준으로 조정하되, CO, NO<sub>x</sub>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개선권고함

## (27)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강화 1)

**심사내용** 먹는물관리법 및 수도법에 따른 수질기준 **강화**

- ‘먹는샘물’, ‘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기준으로 우라늄 허용치 (검출한도량 30 $\mu$ g/L 이하일 것) 추가

**심사결과** 국민이 섭취하는 먹는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우리농 허용치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리기술적인 측면 및 국내 유사사례 등 종합 고려시 적정성도 인정되어 원안동의

## (2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보험금 선지급 기준 **신설**

-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해야 하는 경우 보험자는 추정한 보험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피해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선지급하여야 함

**심사결과** 보험금 선지급의 금액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의성 있는 배상을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됨. 한편, 보험금 선지급 기준이 제정안보다 완화(30%) 되는 경우 피규제자(보험사)의 부담은 완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배상책임보험 표준 약관(금감원)을 참고하여 선지급 기준을 보험사 추정 보험금의 50%이내로 설정하였는 바, 적정성도 인정됨. 관련 산업계 설명회 및 입법예고,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반대의견도 없는 바,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도급신고의 대상 및 절차 **신설**

- 환경오염시설의 도급신고 대상·절차·제출서류 규정\*
  - \* (대상)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시설, 유해화학물질영업자
  - \* (절차) 도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급신고서를 인·허가 기관에 제출
  - \* (제출서류) 주요 생산품·매출액 / 도급계획서 / 배상책임의 배분에 관한 내용 등

**심사결과**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유사법령, 규제비용-편익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됨. 다만, 도급신고의 대상·절차 등에 있어 타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 또는 같음 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제출기간도 연장토록 개선권고함

## (2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4)

**심사내용** 해양시설의 범위 **신설**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적용대상 해양시설의 범위 규정



- \*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시설을 포함한다)시설
- \* 오염물질 저장시설
- \* 폐기물해양배출자의 폐기물저장시설

**심사결과** 동 조항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구제법)」의 적용대상으로써 해양시설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한편, 전체 해양시설(1,084개소) 중 오염유발가능성이 높은 해양오염유발시설(420개소)만을 적용대상 시설로 한정하고 있는 바, 적정성도 인정됨. 관련 산업계 설명회 및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도 없는 바,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행정처분 기준 **신설**

-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

\* 1차(경고), 2차(영업정지 10일), 3차(영업정지 3개월), 4차(영업정지 6개월)

**심사결과** 법에서 영업정지 상한(6개월)을 정하고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여 피규제자 및 집행기관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한편, 동 기준은 최소 위반시 경고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복적 위반을 줄이기 위해 위반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영업정지 기간을 증가시키고 있는 바, 적정성도 인정됨. 유사사례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 시 동 규제안 보다 엄격한 수준의 영업정지 기준을 두고 있는 점도 감안.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과태료부과 기준 **신설**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1항) 관련
  -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자와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지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1차(500만원), 2차(700만원), 3차 이상(1,000만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2항) 관련

- 법 제15조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열람을 거부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법 제18조제5항,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안내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보고요구·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1차(250만원), 2차(350만원), 3차 이상(500만원)

## 심사결과

법에서 과태료의 상한을 정하고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피규제자 및 집행기관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한편, 동 기준은 법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 상한 범위 내에서 반복적 위반을 줄이기 위해 위반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과금액을 증가시키고 있는 바, 적정성도 인정됨. 유사법령과 비교하더라도 동 제정안은 동일하거나 완화된 수준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 관련 산업계 설명회 및 입법예고,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반대의견도 없는 바, 비중요 규제라 보아 원안의결

## 심사내용

환경책임보험 운영 **신설**

## -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가입단위·보장계약금액 규정\*

\* (가입대상) ① 특정토양시설(1,000kL이상 석유류 시설, 송유관 시설 등), ②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③ 일반 대기·수질 1종 시설

\* (가입단위) 사업장 단위로 보험 가입

\* (보장계약금액) 가군(고위험군) 300억원, 나군(중위험군) 100억원, 다군(저위험군) 50억원

## 심사결과

신속한 환경오염사고 피해구제, 사고에 따른 기업 도산 방지 등을 위하여 환경책임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환경오염사고의 피해규모, 유사환경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보험가입 대상시설 및 가입단위를 정하였는 바, 적정성도 인정됨. 다만, 소기업 부담완화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바, 나·다군 소기업의 보장계약금액을 각 20억원씩 하향조정토록 개선권고



### (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 **신설**

- 비용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조정

\* (현행) 50만원(1차), 100만원(2차), 300만원(3차) → (개정안) 영업장 면적에 따라 차등화

(단위 : 만원)

구분	1차	2차	3차
1,000m <sup>2</sup> 이상	100	200	300
165m <sup>2</sup> ~1,000m <sup>2</sup> (현행)	50	100	200
33m <sup>2</sup> ~165m <sup>2</sup>	30	50	100
33m <sup>2</sup> 미만	10	30	50

- 비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표시 않은 경우 과태료 신설

\* 50만원(1차), 150만원(2차), 300만원(3차)

**심사결과** <비용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조정> 현행 비용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일률적으로 50~300만원이 적용되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영세소매점의 부담이 큰 상황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영업장 규모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 조치하여, 소규모 영업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적정성도 인정되는바,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비용기 보증금 환불 문구 및 재사용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법에서 비용기 보증금 환불 문구 및 재사용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정하고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피규제자 및 집행기관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기준도 유사 입법례와 비교시 같거나 더 완화된 수준으로 부과함을 감안, 적정성이 인정되는바,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3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표준용기 사용 등록절차 **신설**

- 표준용기를 사용하려는 자의 등록절차 등을 규정

**심사결과** 동 조문은 법의 위임을 받아 등록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자원절약 및 비용절감을 위해 표준용기를 지정 및 등록 절차를 마련하여 제조사간 공동 사용을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됨. 제조사별로 상이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제조사별 선별 비용, 회수 후 교환비용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업계가 자발적 협약을 통해 표준용기를 지정하여 활용하고 있는 소수의 경우 해당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제조사가 무단으로 표준용기를 활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 한편, 동 규제는 표준용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순히 환경부장관에 등록토록 하고, 사용을 원치 않는 자는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업계 자율사항으로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움.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미 표준용기제도를 도입·시행 중이며, 이는 재사용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인결

**심사내용**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등의 준수사항 **강화**

- 빈용기 재사용 제조·수입업자의 준수사항
  - \*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유통지원센터에 납부
  - \* 보증금 포함제품 판매 및 회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취급 도매업자의 준수사항
  - \* 빈용기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제조업자에 반환할 것
  - \* 제조업자의 플라스틱박스 판매 확대에 적극 협조하고, 소매업자에게 이를 홍보할 것
  - \*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체계에 참여하고 보증금 포함제품 판매 및 회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 반환되는 빈용기의 보증금을 확인하여 지급할 것
-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취급 소매업자의 준수사항
  - \* 보증금 포함제품 판매 시, 제품 가격과 보증금액을 분리하여 표시하고, 소비자용 영수증에도 동일하게 표시할 것
  - \*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체계에 참여하고 보증금 포함제품 판매 및 회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 반환되는 빈용기의 보증금을 확인하여 지급할 것
  - \* 소비자의 원활한 빈용기 반환을 위하여 반환장소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할 것



**심사결과** 동 조문은 법의 위임을 받아 기존 빈용기 재사용 관련 당사자들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에 따른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 및 재사용을 위하여 준수사항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됨. 한편, 동 규제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는 빈용기 재사용의 활성화를 위한 권고적 성격의 선언적 규정으로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처벌도 없음을 감안,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빈용기보증금 제도 **강화**

-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현실화

\* (보증금) 소주병 40원/맥주병 50원 ⇒ 각각 100원(+60원)/130원(+80원)

\* (취급수수료) 소주병 16원/맥주병 19원 ⇒ 병당 33원(도매 18원/소매 15원 구분)으로 인상·단일화

**심사결과** (보증금 관련) 빈용기보증금을 입법예고안대로 인상(소주 100원, 맥주 130원)하되,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취급수수료 확정, 회수체계 개선 후 적용토록 하고(시행시기 1년 유예), 이에 추가하여 정책효과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3년 후 일몰(인상후 2년) 병행 추진(재검토행 일몰 3년 설정)하도록 개선권고

(취급수수료 관련) 소매점 참여 활성화 및 처리원가 등을 감안,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나, 수수료의 성격, 당초 규제 개선 취지 등을 고려, 업계 자율로 정하도록 개선권고[다만, 업계 요청시 정부가 가이드라인 제시·권고 가능]

### (3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종류 및 범위를 정함 **강화**

- 새로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사업의 규모

- (현행) 승인 면적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 (개정) 분야별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심사결과** 승인 면적의 15% 증가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할 경우, 사업면적이 소규모인 공장은 평가대상이 되고, 대규모 공장은 오히려 제외되는 등 형평성 문제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해 평가 기준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사업별 환경영향평가 최소규모'를 기준으로 정한 것은 해당 사업이 실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판단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와 목적 달성에 부합되므로 규제의 적정성도 인정. 면적기준 없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평가대상을 정하고 있는 미국·EU 등 선진국 사례에 비해, 동 규제가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3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강화 2)

**심사내용** 대기관리권역 **강화**

– 대기관리권역 확대

\* (기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옹진군 영흥면 제외), 경기도(가평·양평·연천군, 광주·안성·여주·포천시 제외) → (개정) 광주·안성·여주·포천시 추가

**심사결과**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으로 동 개정안 추가지역의 대기오염도 등 환경수준을 고려,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관리권역 추가에 따른 대기 개선효과, 사업장 부담정도, 적용대상 기업 수, 비용·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적정성도 인정되는바 원안의결

**심사내용** 총량관리사업장 설치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강화**

–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범위 확대

\* (현행) 1~2종 → (개정) 1~3종

**심사결과** 최근 악화되는 수도권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총량관리 대상을 현행 1~2종 사업장에서 3종 사업장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사업장 총량규제는 본래 취지상 배출량(4톤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배출량 4톤을 초과하는 3종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미국에서도 별도 사업장 규모에 대한 구분 없이 배출량을 기준으로 SOx, NOx 연간 4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점도 감안. 이미 시행중인 1~2종 사업장의 사례를 볼 때,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저감 가능한 수준에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있어 과도한 부담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관계기관 의견조회, 입법예고 과정에서 동 규제에 대해서는 이견도 없는 바,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3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강화 4)

**심사내용**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 **강화**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일반분야, PCBs 분야, 석면분야별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규율

**심사결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전문성·공공성 측면을 고려, 분야별로 기술·시설·장비 등을 다르게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동개정안의 분야별 시설·장비기준은 현재



고시에서 운영되던 기준을 그대로 법률로 상향하는 것인바,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동 분석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타분야의 분석기관과 비교시 유사한 수준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고려. 또한, 現 45개소 폐기물전문분석기관도 이미 분야별 분석능력, 장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였으며, 경과조치를 통해 종전의 기관은 개정안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점을 감안, 적정성도 인정. 동 지정기준 설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없는 반면, 향후 지정될 폐기물 분석기관의 공공성·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후관리이행보증금 **강화**

- 폐기물처리시설(매립) 폐쇄절차 대행자 신설
  - \* 매립시설 폐쇄절차 대행자는 한국환경공단과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폐쇄절차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정함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기존 비용 이외에 사용종료(폐쇄 포함) 검사 및 최종복토 비용 신설
  - \* (기존)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관리 비용, 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 비용, 주변 환경오염조사 비용, 정기검사 비용 → (개정) 사용종료 검사비용, 최종복토비용 추가

**심사결과**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폐쇄절차를 대행할 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후관리 대행자와 동일하게 기관을 정하고 있음을 감안, 적정성도 인정됨.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반대의견도 없는 사안,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지정폐기물의 종류 **강화**

-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폐형광등 파쇄잔재물”을 추가

**심사결과** 수은이 환경·신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고려할 때, 수은이 일정 수준(0.005mg/L) 이상 함유된 “폐형광등 파쇄 잔재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한편, 유사폐기물도 수은을 0.005mg/L 이상 함유한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폐형광등도 지정폐기물로 관리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수은 함유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점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과태료 **강화**

-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통해 과태료 항목을 신설하고 구체적 부과를 위한 위반횟수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

**심사결과** 법에서 과태료의 상한을 정하고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피규제자 및 집행기관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한편, 타 법령의 경우 유사한 사유에 대하여 동 개정안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감안, 적정성도 인정.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대 의견도 없는 사안인 바,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3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1)(재심사)**

**심사내용** 빈용기보증금 제도 **강화**

-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현실화

\* (보증금) 소주병 40원/맥주병 50원 ⇒ 각각 100원(+60원)/130원(+80원)

**심사결과** (보증금 관련) 빈용기보증금을 입법예고안대로 인상(소주 100원, 맥주 130원)하되,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취급수수료 확정, 회수체계 개선 후 적용토록 하고(시행시기 1년 유예), 이에 추가하여 정책효과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3년 후 일몰(인상후 2년) 병행 추진(재검토형 일몰 3년 설정)하도록 개선권고



## 제8절 교육·과학기술 및 문화 분야

### 1. 교육부

◎ 집필자 김한필 사무관 ☎ 044-200-2442 ✉ kimhanpil@pmo.go.kr

#### 가.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5년도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4개 법령에 대해 신설 등 총 40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0건 중 2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3건은 개선권고, 3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교육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1) 사립학교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1.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1.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유아교육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1.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사회분과위심사 (2015.04.03)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강화 3 (중요 1, 비중요 2)
(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6.0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6)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5.07.0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5.07.0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7.08)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9)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1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9.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9.0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2)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5.09.0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3)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9.1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4) 유아교육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9.1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5)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9.1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15.09.21)	철회권고 1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2 (중요 1, 비중요 3)
(1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사회분과위심사 (2015.09.2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신설 3 (중요 2, 비중요 1)
(18) 유아교육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9) 2015년 도래 재검토행 일몰규제 규제심사 검토서	행정사회분과위심사 (2015.10.21)	-	일몰규제 1건
(20)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	본위원회 (2015.10.21)	철회권고 1	신설 1 (중요 1)
(21)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5.11.09)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22) 사립학교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0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3)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4)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5)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제정안	행정사회분과위심사 (2015.12.14)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b>계</b>	-	<b>철회권고 2 개선권고 3 원안동의 35</b>	<b>신설 33, 강화 7 (중요 6, 비중요 34)</b>



## 나.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사립학교법 (신설 1)

**심사내용** 사립학교 교원 직위해제 규정 **신설**

- 사립학교 교원이 금품비위, 성범죄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

**심사결과** 성범죄 수사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부정적 파급효과로 인한 교권 추락의 방지 및 학생·학부모의 추가범죄 발생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효과적 수단으로써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2) 초·중등교육법 (신설 1)

**심사내용** 교원 교원자격증 취소 **신설**

-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교육 전문직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교원자격증 취소

**심사결과** 아동·청소년에 대상 성범죄 재범률이 우려할 수준이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임을 감안할 때, 교육자격증 취소를 통한 교직복귀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성범죄자를 미성년자와 격리함으로써 학생 보호 및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의 편익은 클 것으로 판단,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3) 유아교육법 (신설 1) \* 상기 초·중등교육법과 규제 내용 동일

**심사내용** 교원 교원자격증 취소 **신설**

- 유치원 및 특수학교 교원, 교육 전문직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교원자격증 취소

**심사결과** 아동·청소년에 대상 성범죄 재범률이 우려할 수준이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임을 감안할 때, 교육자격증 취소를 통한 교직복귀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성범죄자를 미성년자와 격리함으로써 학생 보호 및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의 편익은 클 것으로 판단,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4) 고등교육법 시행령 (강화 3)

##### 심사내용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수립 등 **강화**

- 학교협의체가 없는 원격대학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사유 발생 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단서규정 신설

**심사결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학생 및 학부모의 대입전형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변경을 허용되고 있으므로 학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원격대학의 경우에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전체 사이버대학 입학전형 담당자가 참여하고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주관하는 입학전형 협의회(14.9.26.)에서도 법안의 내용에 전원이 동의하며, 도입을 지지 하고 있는바,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심사내용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강화**

-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후 변경 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 마련\*
  - \*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1차위반),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정원감축(2차위반)
- 원격대학 시간제등록생을 입학정원의 10%를 초과 모집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벌칙조항 마련\*
  - \*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1차위반),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정원감축(2차위반)
- 평생교육시설에서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시 법령에 따라 **보증보험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를 갈음한 경우, 부칙이 정한 유예기간 3년이 도과한 이후에도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벌칙조항 마련\*
  - \*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1차위반),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정원감축(2차위반)

##### 심사결과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정비(별표4 제2호 라목)>

안정적인 수험 준비 등 법률 개정 취지를 고려하고, 법을 지키는 선량한 대학의 보호를 위해 행정처분 기준 마련의 필요성 인정되며, 동조항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처분 조항으로 적정성도 인정되는바,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시간제등록생 초과모집 행정처분 기준 마련(별표4 제2호 타목)〉

원격대학이 시간제등록생 규정인원을 초과하여 모집한 경우 현재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는바, 실효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모집인원 및 정원감축 등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을 통해 학사관리 개선 및 학교 경영환경 건전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필요성 인정, 한편, 동조항은 일반대학의 수강인원 초과모집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 조항으로 적정성도 인정되는바,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인가조건 위반 대학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별표4 제2호 커목)〉

평생교육시설을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보증보험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를 갈음한 경우, 3년 이내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의무가 부과됨에도 이를 미이행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바, 처벌조항 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재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한 제재대상 학교는 1개교에 불과하며, 법령상의 규정을 지킨 사이버대학(2개)들의 신뢰보호 및 추후 있을 전환대학의 법 준수의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시간제 학생 선발방법 **강화**

- 원격대학 시간제등록생 인원을 ‘편제정원 범위 이내’에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이내’로 축소하되, 2019년까지는 입학정원의 50%, 2022년까지는 30%, 2023년부터는 10%로 단계적 감축

**심사결과** 교육내실화, 대학 경쟁력 제고 등 시간제 등록생 모집정원 감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10%로의 일률적인 감축은 사이버대학의 설립취지, 규제정도, 적실성 등의 측면에서 적정성이 미흡함

다만, 입학정원의 50% 범위는 정책목표, 피규제자 부담정도, 비용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성이 인정되는 바, 시간제등록생 모집규모를 ‘입학정원의 50% 이내’를 적용하되, 적실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하여 재검토형 일몰(3년)을 설정하는 것으로 개선권고

**(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신설 2)**

**심사내용** 대학 선행학습 영향평가 절차 강화 등 **신설**

- 입학전형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입학전형 영향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대학별고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포함 여부, 선행학습 및 사교육 유발 여부 등을 평가함에 있어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구성·심의하도록 한 것은 영향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15학년도 논술 실시 대학은 4년제 종합대학 29개로, 실질적 규제대상이 되는 대학은 많지 않으며, 이들 대학은 이미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인바,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처분 요건 완화 등 **신설**

-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변경 명령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시정·변경 명령 없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가능토록함

**심사결과** 법률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변경할 수 없는 경우 기존의 제도를 통한 법적 실효성 담보에 한계가 있는바, 이를 개선할 필요성 인정되며, 고등교육법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정·변경 명령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6)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인성교육 인증 관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

- 과태료 부과를 위한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을 정함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성교육프로그램 및 인성교육과정을 인증 받은 경우	150	300	500
허위·유사 인증표시를 한 경우	100	200	300

**심사결과** 법 제22조(과태료)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 및 허위·유사 인증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며, 세부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인증 위반 관련 유사 입법례와 비교하더라도 동일하거나 더 적은 금액을 부과하고 있음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7)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신설 1)

**심사내용** 부적정 연구자 정책연구 참여 제한 **신설**

- 정부연구지원사업 참여제한 기간에 있는 자와 교육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정책연구 참여를 제한, 정책연구결과가 미흡하거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향후 3년간 정책연구 참여 제한

**심사결과**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연구자 책무성 제고 및 우수 연구자의 정책연구 참여를 유도 통해 품질 높은 정책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의 측면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3)

**심사내용** 학교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신설**

- 학교장에게 학교안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이를 토대로 행정지도 및 예산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심사결과** 최근 발생한 세월호 사고 및 해병대 캠프 등의 참사를 막기 위해 각급학교에서 체계적 안전교육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당해 연도 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고, 우수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행정지도 및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별도의 이견이 없는 바, 비중요로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 **신설**

- 유치원장에 안전대책 마련 및 유치원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의무 부과

**심사결과** 유치원에서도 원생들의 학교 밖 수련시설을 활용한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교육활동 시 안전대책 점검·확인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은 학교의 장은 학생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 유치원 원장이 학교 밖 교육 활동 시 안전대책 마련, 점검·확인 후 유치원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의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제로 납부의 위반에 대한 조치 **신설**

- 공제료를 미납한 공제가입자에게 공제로 납부명령을 하여야 함

**심사결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받기 위해서는 공제로 납부를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의 내용에 있어서도 연체금 등 추가적인 부담도 없이 납부명령만을 규율하고 있는 점을 감안,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9) 교육공무원임용령 (신설 1)**

**심사내용**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 **신설**

- 교육공무원 경력자 특별채용 대상자를 공고일을 기준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제한

**심사결과** 교육기관 종사자로서 현장교사의 역할 및 자질은 학생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특별채용 요건을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타 법령 및 타 사유로 인한 특별채용도 일정기간이 도과한 자를 특별채용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계약학과 신고제 도입 및 신규설치 제한 **신설**

- 계약학과 설치·폐지 시 교육부 장관에 신고

**심사결과** 계약학과에 대한 체계적 현황 파악 및 부적절한 운영의 방지를 위한 신고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한편 동 조항은 계약학과 설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 '자주적 신고'에 해당, 별도의 인·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평가인정의 기준 **강화**

-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학습시설(강의실, 실험실습실, 행정실 등) 중 강의실 면적 학습자 1인당 최소 1㎡이상으로 정함



**심사결과** 기존 평가인정 시 갖추어야 할 학습시설의 종류만 규정하고 있어,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의실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면적을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학원 강의실의 단위시설 기준(1명이하/1m<sup>2</sup>)과 동일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을 감안,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12)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대학도서관 사서배치 및 직무 관련 교육에 대한 기준 **신설**

**심사결과** 대학도서관의 최소 인적·물적 여건 확보를 통해 교육·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도서관법·학교도서관진흥법은 사서·자료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대학도서관은 별도 기준이 없는 실정이며, 동 제정안의 규율 수준도 이들과 비교,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학도서관 시설 및 자료에 대한 기준 **신설**

**심사결과** 대학도서관의 최소 인적·물적 여건 확보를 통해 교육·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도서관법·학교도서관진흥법은 사서·자료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대학도서관은 별도 기준이 없는 실정이며, 동 제정안의 규율 수준도 이들과 비교,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13) 초·중등교육법 (신설 2)

**심사내용** 교원자격검정의 결격사유 **신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심사결과**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를 교원자격검정의 결격사유로 신설하여 성범죄경력에 있을 경우 교원자격 취득이 제한되도록 취득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성범죄 사유를 교원자격 결격사유로 규율하는 것은 외국(일본)의 사례 및 타 법령과 비교,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교원자격의 취소 **신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심사결과** 아동·청소년에 대상 성범죄 재범률이 우려할 수준이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임을 감안할 때, 100만원 이하의 형벌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교원도 교원자격증 취소를 통한 교직복귀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성범죄 경력을 교원자격 취소사유로 규율하는 것은 타 법령과 비교할 때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14) 유아교육법 (신설 2) \* 초·중등교육법과 규제내용이 동일함

**심사내용** 교원자격결정의 결격사유 **신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심사결과**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를 교원자격검정의 결격사유로 신설하여 성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교원자격 취득이 제한되도록 취득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성범죄 사유를 교원자격 결격사유로 규율하는 것은 외국(일본)의 사례 및 타 법령과 비교,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교원자격의 취소 **신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심사결과** 아동·청소년에 대상 성범죄 재범률이 우려할 수준이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임을 감안할 때, 100만원 이하의 형벌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교원도 교원자격증 취소를 통한 교직복귀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성범죄 경력을 교원자격 취소사유로 규율하는 것은 타 법령과 비교할 때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15) 평생교육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취소 **신설**

-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보조금 목적외 사용, 부당 집행한 경우 시정 명령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정취소

**심사결과**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상당수는 개인에 의해 운영되는 비법인 형태이기 때문에 학교회계 횡령·유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개정안은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 먼저 시정명령을 하여 스스로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지정취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평생교육시설의 회계관리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 **신설**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요구, 지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의 지시를 위한 절차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단순히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벌칙·과태료 등 처벌조항도 없는 바, 과도한 부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1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2, 강화 2)

**심사내용** 교수 또는 강사의 결격사유 **신설**  
 - 학점은행제 교수 또는 강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함

**심사결과**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질은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결격사유 규정을 통해 최소한의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으며, 학점은행제 강사 역시 대학 수준의 교육을 담당하며 일정 학점이상 취득시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가 부여되는 점을 고려, 대학교원 등에 준하는 결격사유는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횟수 및 시기 등 **신설**  
 - 교육훈련기관이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횟수 등을 정함

**심사결과** 학습자들의 알권리를 보장 및 기관의 투명한 관리 유도를 위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초·중·고·대학에서도 공시하는 수준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강화**  
 - 법령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점수에 따라 제재처분

**심사결과** 현행 법률에서 평가인정 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부정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한편, 동 개정안은 법률 위반시 벌점(1~10점)을 부과하고 누적하여 30점이 넘는 경우에 평가인정 신청제한(1년) 처분을 하는 등 단계적 처분을 함을 감안,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학위수여 요건 **강화**

- 학사학위 취득자의 학점은행제를 통한 추가학위 취득 요건 강화

**〈추가학위 취득시 필요 이수 학점〉**

구분	최초 학사학위	1개 추가학위	2개 이상 추가학위
현행	140학점	48학점	48학점
개정안	140학점	48학점	140학점

**심사결과**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해 2개 이상 추가학위를 취득한 자는 전체 추가학위 취득자의 약 1.1%에 불과한 바, 이에 대한 규제 강화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2번째 이상의 추가학위 취득시해 기준에 이수한 학점(교양과목 등)에 대한 인정 없이 다시 140학점을 모두 이수토록 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판단됨. 한편, 헌법 및 동 법률의 평생교육이념 구현, 개인의 자아실현 등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음. 따라서 동 규제안의 효과성, 유사제도와의 비교, 헌법상 평생교육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정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철회권고

**(1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3)**

**심사내용** 학습자모집 **신설**

-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준수사항 규정) 연계모집금지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표기 / 평가인정 받은 정원 내 학습자 모집 / 대학·학과·정시·수시 등 명칭 사용 금지 / 과대 광고 금지

**심사결과** 연계모집 금지는 학점은행제도의 취지,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등의 차원에서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며, 정원 내 학습자 모집 등도 유사 입법례,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 과도하지 않은 규제로 판단됨. 또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대학’, ‘학과’ 등 관련 명칭 사용 금지 규정도 학습자 혼란 방지, 학점은행제 취지 등을 고려,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심사내용** 학적관리 등 **신설**

- 교육기관에 학적부 등 서류의 보관·관리 의무 부과, 교육기관 폐쇄 등의 경우 학적부를 국가평생진흥원장에 제출토록 함

**심사결과** 교육훈련기관에 관련 서류 보관·관리 의무를 부과하여 학습자의 성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재 모든 대학에서도 학생의 학적부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학습비 및 학습비의 반환 **신설**

- 학습비 인상률 제한(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
- (학습비 반환의무) 과오납 / 학습자가 학습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법령에 의해 학습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학습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심사결과** 학습비 반환 사유와 관련하여 학습자 보호, 학원·대학 등 유사 입법사례와 비교할 때,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됨. 그러나, 학습비 인상률 제한 조항은 유사 입법례, 관련 판례 등 고려시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조항만을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18) 유아교육법 (강화 1)

**심사내용** 유치원의 폐쇄 및 운영정지 **강화**

-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폐쇄 명령이 가능토록함

**심사결과** 유치원은 보호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되도록 운영·관리되어야 하는 바, 아동학대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규제대상 범위의 한정 및 면책규정을 두고 있음을 감안,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9) 2015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규제심사 (일몰규제 1건)

구분	계	규제 폐지	규제개선			규제존속		
			일몰 연장	일몰 해제	일몰 변경	일몰 연장	일몰 해제	일몰 변경
국무조정실	1	0	1	0	0	0	1	0

**규제내용** 인정도서의 신청

-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를 사용하려는 자는 학기시작 6개월 전까지 교육부 장관에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심사결과** 학생들이 배울 교과서 질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신청기한도(6개월 전) 인정도서를 사용하기 위한 심의·인쇄·발행 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적정성도 인정되는 바,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바, 규제를 존속토록 하고 일몰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

(20)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점인정 교과용도서 최고가격제 도입 **신설**

- 교육부장관이 사전에 고시한 가격상한액 범위 내에서 발행사가 자율적으로 가격 설정

**심사결과** 교과서의 공공재적 성격, 국민의 부담정도를 감안, 가격자율화 제도 하에서 급격한 가격인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형태의 규제 필요성은 인정됨. 그러나, 교과서 가격상승률이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현 가격조정명령제도를 통해 정책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 가격상한제 도입 필요성 및 적정성이 미흡한 바, 철회권고

(21) 진로교육법 시행령 (신설 3)

**심사내용** 진로전담교사의 배치기준 **신설**

- 초·중등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기준 마련

**심사결과**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감안, 진로전담교사의 배치를 통해 초·중등학교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시에 진로전담교사를 별도로 배치하기 보다는 연수(60시간 이상) 등을 통해 현 근무중인



보직교사를 진로교육 전담자로 지정토록 하는 것이며, 중등학교는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이미 학교당 1명의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바,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 자격 및 운영 **신설**

-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 자격기준 설정

**심사결과** 원활한 진로체험활동 등 진행을 위하여 진로교육에 대한 기본적 소양 및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진로전담교사 지원인력이 필요한 바, 지원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학교 현장 내·외부 인력 중 누구나 40시간의 연수를 거쳐 쉽게 자격기준의 취득이 가능한 바,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기준 및 지정취소 **신설**

-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및 인증 취소 기준 마련

**심사결과** 우수한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확보를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체험기회 제공을 위하여 인증기준 및 지정취소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재 인증기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향후 고시로 정할 계획인 바, 추후 고시 제정과정에서 적정성 여부 판단이 가능하며, 지정취소 기준은 인증의 기본적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바,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22) 사립학교법 (신설 1)

**심사내용**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시 외부위원 위촉 **신설**

-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시 1/3범위 내에서 다음\* 중 1인 이상의 외부위원 위촉  
\* 경력5년 이상의 변호사 등 / 법률학·행정학·교육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자 /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 전문가

**심사결과** 사립학교(초·중·고·대학)에서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시 법률·교육행정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여 징계의결의 공정성 및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됨. 한편, 사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국·공립학교의 경우 보다 강화된 내용의 규제를 이미 실시하여 공정성을 도모하고 있는 점도 감안,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23)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강사의 자격 기준 **신설**

- 강사의 자격 기준으로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 신설

**심사결과**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갖춘 강사가 교육을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동 자격기준은 석사(통상 2년 과정) 학위 취득 수준의 경력으로 강사 임용이 가능하도록 자격기준(교육·연구경력 2년)을 마련한 것으로, 시간강사 경력자는 기존 시간강사 경력도 환산(30~70% 인정)하여 반영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적정성도 인정됨. 아울러 △산업체 경력, △연구경력 등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 될 경우 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동 규제안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24) 고등교육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강사의 임용 및 재임용 절차 마련 **신설**

- 강사 임용 심사 시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며, 대학인사위원회(국공립)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사립) 심의를 거쳐야 함
-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기간', '급여', '복무 등 근무조건', '면직사유', '재임용 절차'가 포함된 계약조건을 정하여 강사를 임용
- 강사 재임용 절차에 '임용기간 만료사실의 사전통지'와 '재임용 조건'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한편, 계약서의 명시 의무사항인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면직사유, 재임용 절차 등은 이미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사항을 동 개정안에 명확히 하는 것이며,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기준도 타 법령상 위원회의 기준과 유사한 수준에서 학칙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강사에게 공정한 심사기회를 부여하고 대학은 교육과정에 적합한 강사를 채용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이 확보되어 궁극적으로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25)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 등 **신설**

–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해제) 등 규율

**심사결과** 내실 있는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그러나, 동 제정안의 지정기준이 모호하며, 지정취소 기준은 위임 근거가 없는 문제가 있는 바, 지정기준을 명확화·구체화하되, 다양한 기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이 높지 않도록 설계하고, 지정취소 기준은 향후 법 개정후 마련토록 개선권고

## 2. 미래창조과학부

◎ 집필자 노용환 사무관 ① 044-200-2420 ② nyhwan@pmo.go.kr

### 가.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5년도에는 방송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등 21개 법령에 대해 신설 40건, 강화 6건 등 총 46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6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미래창조과학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2.23)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2)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 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5.03.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5.03.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5.03.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5.27)	원안의결 5	신설 3, 강화 2 (비중요 5)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6.0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전파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6.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6.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7.0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5.07.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11)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1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5.08.17)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13)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4)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2015.08.27)	원안의결 8	신설 8 (중요 1, 비중요 7)
(15)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3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6)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5.09.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8)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0)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5.12.0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04)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b>계</b>	-	<b>원안의결 46</b>	<b>신설 40, 강화 6 (중요 1, 비중요 45)</b>

## 나.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신설 5)

**심사내용** 기간통신사업자가 휴지·폐지 승인을 받지 않고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기간통신역무를 미제공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의 휴·폐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방적 서비스 중단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휴·폐업시 승인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등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간통신사업자들이 허가취소 또는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승인없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것은 유사입법례를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이며, 이해관계자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 사업을 위해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요건을 규정 **신설**

- 등록요건 : (기술적 조치 계획)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 방지,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등록·관리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문자메시지 발송 및 재전송 통신이력을 6개월 이상 기간 유지·보관 (인력 및 물적 시설 확보) 기술적 조치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관련 전담인력 1인과 물적 시설 확보 (재무건전성) 5천만원 이상의 납입자본금 또는 납입자본금과 피해보상보증보험의 보험계약금액을 합하여 5천만원 이상을 확보 (기타)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

**심사결과** 스피밍·악성스팸·문자폭력 등 각종 범죄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인터넷발송 문자사업자로 하여금 등록 시 발신번호 임의 변작 및 부정가입 방지 관련 기술조치 등을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신설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 사업자 등록요건은 같은 법 제22조 규정의 웹하드 사업자에 준하여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제수준도 적정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이용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규정 **신설**

**심사결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사본(계약정보)을 제공받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및 거래당사자간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송부(거래당사자간 계약체결 시 상호간 거래계약서 작성·교부는 모든 거래분야에서의 일반적 거래관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전자우편을 통한 계약서 사본 송부방법도 허용하고 있어 관련 사업자들 입장에서 추가 부담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체결시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로 규정 **신설**

**심사결과** 분실·도난 신분증 등을 이용한 명의도용(일명 대포폰) 범죄 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와의 계약체결시 가입자 본인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하고 명의도용 범죄피해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 대해 철저한 본인확인 절차 수행이 아니고는 현실적으로 다른 방지수단이 없는 점 등을 감안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계약체결시 규제대상 범위를 전체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이통통신사업자’로 최소화하여 정하고 있어 적정한 수준이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공동구축 협의 대상 사업자를 시내전화 서비스와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규정 **신설**

**심사결과**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설비 중복투자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동구축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간 공동구축 협의회의 적극적 운영을 통해 공동구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규제대상 범위(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의무 대상 사업자 범위)를 시내전화 서비스와 인터넷 서비스 동시 제공하는 3개 사업자(KT, SKB, LGU+)로 최소화하여 정하고 있어 적정하며, 실제 사업자(피규제자)간 공동구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신설비 구축비용이 상당히 감소되는 편익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2)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 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등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 의무사업자(KT·SKB·LGU+)는 참여사업자(시내전화 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10만명 이상 가입자 보유 및 공동구축 전담기관을 포함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협의 의무사업자로 하여금 협의대상 설비를 공동구축할 때 참여사업자와 협의하여야 규정 **신설**

**심사결과** 전기통신 기간통신설비 공동구축 제도를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동구축 협의의무자의 협의 대상 등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협의 의무사업자(KT 등 3개사)로 하여금 협의대상 사업자(SKT 등 6개사)와 공동구축 진행여부를 협의하도록 수준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자간 협의 미성립시 개별구축 진행이 가능하여 규제수준도 적정하며,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였고 재검토 일몰(3년)이 설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3)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기간통신사업자(유선전화, 무선전화, 인터넷 등)는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명의도용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입사실(가입일, 가입 사업자 상호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문자메시지)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휴대폰 명의 도용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재산권 침해 및 각종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서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피규제자인 기간통신사업자 대다수(92%)가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과거부터 이미 자율적으로 제공해 오고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동 규제가 실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음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4)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전기통신사업자(유선전화, 이동전화)는 이용자가 국제전화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국제전화 식별번호(001, 007 등) 제공 또는 전화통화 연결 전에 음성("국제전화입니다" 음성 안내멘트) 안내하여야 하고, 이동전화사업자의 경우 이용자가 전화단말기 발송 문자와 인터넷발송 문자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에 대해서 식별문구("web발신 -" 문구 삽입)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의무를 규정 **신설**

**심사결과** 전화 발신번호 등 변작을 통한 보이스피싱·스미싱·악성스팸 등 각종 범죄 피해 예방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상위법 위임내용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로 하여금 국외 발신전화·인터넷 발송문자 식별 표시 및 기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동 규제는 피규제자들이 기 시행하고 있거나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제 수준도 적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신설 3, 강화 2)

**심사내용** 대학, 연구기관 등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를 "교수" 또는 "연구책임자 중에서 지정해야하고,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 시 연구실 특성에 따라 해당 연구실의 안전현황·유해인자별 위험분석·안전·비상조치계획을 포함토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주의 등에 의한 대학·연구기관 연구실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학·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주체적으로 수행할 자를 지정하고 각종 사고위험 사항을 파악하여 대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내용도 연구실 사고를 대비하여 사전에 발생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조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수준으로서 규제 수준도 적정하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연구주체 장(대학·연구기관 등)은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상시 연구활동종사자 포함) 이상인 경우, 지정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중 1명 이상으로 하여금 안전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함 **강화**

**심사결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사고 원인이 주로 관리적 요인(발생사고의 76.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연구실의 상시적이고 내실있는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대학·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정 연구실 안전관리자 중 1명 이상은 안전업무에 전담토록 할 필요가 있고, 규제내용도 대학·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기보유중인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2명)의 안전관리 업무를 조정(전담지정 및 업무 분담 등 조정)하도록 하는 수준이어서 규제수준도 적정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연구실 안전점검진단 대행업자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등록시 갖추어야 할 기술 인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연구실 안전점검진단 대행업자는 변경 등록시 2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와 변경 증명서류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강화**

구분	정밀안전점검진단 대행기관 (1종 안전점검진단업)		안전점검진단 대행기관 (2종 안전점검진단업)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보유 기술인력	7명 (기술사1, 기사6)	8명 (기술사1, 기사7)	4명 (기술사1, 기사3)	5명 (기술사1, 기사4)
보유 시설·장비	18종	15종	16종	15종

**심사결과** 현재 연구실 안전점검진단 대행업자 대다수가 법 규정 안전점검 인력·장비를 부적합하게 보유하고 있고 동 안전점검 대행기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므로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실에 대한 충실한 안전점검 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점검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인력·장비)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고, 동 규제내용(안전진단 대행 등록요건)은 현행 기준과 비교시 유사하고 변경등록시 20일 내 신고의무도 안전점검업 등록 사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절차라는 점에서 규제수준도 적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실책임자를 미지정한 경우, 연구실 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등 범위외행위의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1차 2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을 규정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범위외 횟수를 감안하여 단계적(3단계)으로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액도 범상 상한액(1천만원)보다 낮게 정하고 있어 규제수준도 적정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연구주체의 장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범위(보험가입 기관현황, 기관별 보험가입인원 수·보험가입금액·가입기간 등 보상기관 현황·사고일시·피해유형 및 내용 등)를 규정 **신설**

**심사결과** 연구실 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학·연구기관 등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소관 정부 부처에서 연구실 안전관련 보험가입·보상현황 등 사고관련 통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대학 등이 가입한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해당 대학 등의 보험가입 현황·보상내역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규제 수준도 적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학생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연구책임자(교수)에 대해서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5년간 제한토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연구책임자의 경각심을 보다 제고하고,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유용에 따른 학생들의 경제적 피해 방지 등을 위해서는 학생인건비 유용 연구책임자에 대해 제재(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당기간 참여 제한)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동 규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학생인건비를 부정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로서 실제



피규제자에게 실제 부담으로 작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규제내용도 상위법 위임범위 내에서 정하는 등 규제수준도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7) 전파법 (신설 1)

**심사내용** 위성보유 사업자는 대한민국이 국제등록한 위성주파수 또는 인공위성을 양도·임대 또는 위성주파수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국내 위성사업자가 보유한 위성을 외국사업자 등에게 무단 매각시 우리나라의 국제등록(ITU)한 위성망이 삭제되거나 이로 인한 국제분쟁 야기 등 국가적 손실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위성사업자로 하여금 보유 위성의 양도·임대시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위성 자산(기확보 위성궤도)이 제대로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동 규제는 사업자의 위성주파수 양도·임대를 금지하던 것을 승인제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규제완화적 측면이 있고 해외사례와 유사 입법례를 감안시 규제 수준도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이용자 요금한도 초과 고지의무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범위반행위별 횟수별 세부 과태료 부과금액(1차 35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1천만 원)을 규정 **신설**

**심사결과** 전기통신사업자의 요금한도 초과 고지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범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액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상위법 위임범위(1천만 원)내에서 범위반 횟수를 감안하여 과태료 금액을 단계적으로 규정하였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9)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운석의 국외 반출을 하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90일 전에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반출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희소 우주연구 자산인 운석의 무분별 국외반출을 방지하되, 운석의 국내외 과학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학술연구 목적 국외반출시의 일정 반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문화재보호법 등 유사입법례 및 해외사례를 감안시 규제 수준도 적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10)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세대내 인입을 위해 각 지상층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된 “층 장치함”을 재난·긴급방송 수신을 위해 “지하층 등”으로 설치범위를 확대하고, 재난·긴급방송 수신목적으로 지하층 등에 설치하는 방송공동수신설비로 에프엠(FM)라디오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설비를 지정 **신설**

**심사결과** 공동주택 등 지하층은 재해·재난 발생시 대피소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수신 설비가 미구축되어 있어 국민들이 지하층 대피시 재해·재난 진행상황 정보 등을 제대로 전달받기가 곤란하므로 국민들이 재난 등 발생으로 지하층에 대피시 재난·긴급 방송을 원활하게 전달받을 수 있게 하여 생명·안전이 제대로 보호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규제내용도 재난정보 청취 사각지대인 공동주택 등 지하층에 방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술적 조치이고 유사 입법례 및 외국사례 등을 감안할 때 규제수준도 적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설 4)

**심사내용** 과학벨트 거점지구 중 입주승인 대상인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을 규정 **신설**

- (기초연구구역) 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이공계 학부를 둔 학사과정이상 교육기관, 과학기술분야 법인 연구기관, 외국연구기관, 시험공장 등
- (산업구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8호에 따른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및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

**심사결과** 연구기관·기업 등의 과학벨트 거점지구(기초연구구역, 산업구역)의 입주가능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학벨트내 기초연구구역 등의 입주대상 기준을 용도구역 목적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동 규제는 유사 법령을 준용하여 연구기관·기업 등 입주자격요건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입주(진입) 제약 요소가 없는 등 규제 수준도 적정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과학벨트 거점지구 내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미래부장관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입주승인 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 내용을 “입주목적 변경, 부지 또는 연면적의 20%이상 변경, 건축 연면적 50% 이상의 임대, 시험공장으로 용도변경 등”으로 규정 **신설**

**심사결과** 과학벨트 입주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밀한 입주승인 심사를 위해서는 입주 신청자로부터 입주목적 및 세부사업계획 등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입주 기관의 과학벨트 입주목적 등 주요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승인 절차를 통해 효율적인 과학벨트 입주 관리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규제내용(입주 신청서류, 변경승인)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유사입법례 등을 감안시 규제수준도 적정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과학벨트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은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다만, 진행 중인 업무 중 다른 지역에서 수행할 수 없고 6개월 이내에 끝낼 수 있는 남은 업무 및 그 부대업무는 제외)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과학벨트 입주기관의 입주승인 취소사실을 알지 못해 발생될 수 있는 거래 기업 및 이용자의 손실 등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입주승인 취소기관에 대해 업무 수행을 즉시 중지토록 할 필요가 있고, 규제내용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유사입법례와 동일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시 규제수준도 적정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기초과학연구원” 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원본부”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법 위반행위 횟수별(1차 80만원, 2차 90만원, 3차 100만원) 과태료 부과금액을 규정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의 과태료 상한액 범위 내에서 부과금액을 범위만 횟수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규정하였고 유사 입법례와 비교시에도 과태료액 수준도 적정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1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5)

**심사내용**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사전예고 없는 서비스 중단 발생(서비스 중단 기간이 연속해서 10분 이상인 경우, 최근 서비스 중단 사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비스가 2회 이상 중단된 경우 그 기간의 합이 15분 이상인 경우)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클라우드 서비스는 정보의 소유·관리를 주로 이용자가 수행하므로, 서비스 중단 사실을 이용자가 신속히 인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해킹 침해사고 등 갑작스런 클라우드 서비스 중단사고 발생되는 경우 이용자 정보유출·손실 등 예방을 위해서 클라우드 이용자에 대한 신속한 통지가 필요하고, 규제내용(10분 이상 중단 통지)이 유사입법례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설문결과 등을 감안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대다수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서비스 중단·장애 발생시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이미 수행해 오고 있는 점 등을 감안시 실제 피규제자 부담은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통지 시, ① 사고내용, ② 사고원인, ③ 피해확산 방지 조치 현황, ④ 이용자의 피해 예방 또는 확산 방지 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하며, 통지 방법은 전화·휴대전화·우편·전자우편·문자메시지·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이용자 확인 후에 한함) 등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클라우드 서비스는 해킹·침해사고 등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사고가 발생되면 이용자 정보의 유출·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발생 사실을 신속히 통지하고 사고 개요·대처 방법 등을 충실히 고지하여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규제내용(고지내용, 방법)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유사입법례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규제 수준도 적정한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이용자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① 유출된 이용자 정보 항목 ②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③ 피해 확산방지 조치 현황을 포함하여 미래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클라우드 정보유출 사고 발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이용자 피해 확산방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사업자로부터 사고 발생시기·원인·조치현황 등 관련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규제내용(신고사항)도 개인정보보호법 등 유사 입법례 및 해외사례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며, 피규제자 입장에서 이용자 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관계부처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예상되나 실제 동 부담 수준은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시,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다음 각호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용자 통지는 전화·휴대전화·우편·전자우편·문자메시지 또는 유사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갑작스런 사업 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영업손실, 정보유실 등)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자들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사업 종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보유 이용자 정보를 제대로 반환·파기 조치토록 할 필요가 있고, 규제내용(사업종료시 고지, 정보 반환·파기)도 클라우드 서비스 특성상 사업자와 이용자간 기본적 계약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다양한 고지 방법과 예외(당사자간 별도 약정)를 허용하고 있어 적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침해사고 등 이용자 통지 의무, 이용자 정보 유출 사실 미래부 통지 의무, 이용자 정보 반환·파기 의무,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 준수 의무를 미준수 하는 경우의 범위반 횡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 기준을 규정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의 과태료 상한액 범위 내에서 부과금액을 범위반 횡수를 감안하여 단계적(3단계)으로 규정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유사 입법례와 비교시에도 과태료액 수준(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수준도 적정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13)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 1)

**심사내용**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추가 규정(IPTV방송: 0%→0.5%) **신설**

**심사결과** 방송사업자들의 재정상태·사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담금 징수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하는 등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고, 방송사업자 재정상태 및 공익성(사회적 영향력) 등을 반영하여 방송사업자별로 분담금 징수율 수준을 적정하게 조정하였으며,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14) 방송법 (신설 8)

**심사내용**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영위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신설**

**심사결과**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효율적 사업자 관리 등 등록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등록 사업자로 하여금 주요 등록사항이 변동시 이를 신고토록 할 필요가 있고, PP사업자의 개별 채널별 양도·양수를 금지하던 것을 허용하되 변경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규제완화적 측면이 있는 등 규제수준이 적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정부는 유료방송사업자간 효율적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유료방송사업으로 부당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함 **신설**

**심사결과** 유료방송시장의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체제 구축 및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동 시장내 모든 사업자에 대해 동일하게 관련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고, 동 규제는 사업자간 공정경쟁 유도의 수단으로서 사업자들의 회계분리 의무 마련(시행령 규정) 등 시장개입을 최소화는 규제수단을 예정하고 있고 유사입법례를 감안할 때 규제수준도 적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유료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공지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외에는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해서는 아니됨 **신설**

**심사결과**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직접사용채널 사용 실태 고려시, 일부 사업자에게만 허용되던 직사채널을 폐지하는 대신 모든 사업자가 동일하게 공지채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변경)할 필요가 있고, 규제내용도 유료방송사업자들의 현행 직접사용채널 운용방식에 맞춰 공지채널(방송 상품 안내 등)로 사용하도록 규제내용을 변경하는 수준이어서 규제수준도 적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유료방송사업자는 인정기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산업의 발전과 방송내용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우수한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 중 일부 사업자의 채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구성·운용하여야 함 **신설**



**심사결과** 방송콘텐츠 다양성 등 방송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소 PP채널도 방송플랫폼(유선·위성·IPTV)에 일정 범위내에서 편성(진입)기회가 보장되도록 제도적 장치 도입 필요가 있고, 채널 숫자가 한정(평균 74.1개)된 아날로그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부담 최소화를 위해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시행시기 1년 유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동의(재심사 수정안) 의결

**심사내용** 유료방송사업자는 이용요금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요금산정 근거자료(가입비·기본료·사용료·부가서비스료·실비 등)와 상품별 채널구성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신설**

**심사결과** 독과점 형태인 유료방송시장 특성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방송법(제77조)에 따라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유료방송사업자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 심사를 면밀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요금 산정 등 근거자료를 당해 사업자로부터 제출받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고, 규제내용(자료제출 범위)도 유료방송 이용요금 산정 근거자료에 한정되어 있는 등 규제수준도 적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유료방송사업자는 유료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필수적인 방송통신설비에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자기 보유설비의 부족·영업비밀의 보호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유료방송사업자가 사용 중인 자기 보유설비의 사용 등을 중단·제한하지 못하며,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신설**

**심사결과** 신규사업자 등의 방송통신서비스시장 진입 용이 등 사업자간 경쟁촉진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사업자 수 증가) 등을 위해서는 필수 방송통신설비 보유 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설비가 동등하게 제공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고, 규제내용(동등제공 의무, 조건 등)도 필수 방송통신설비 보유자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자의 설비 동등 제공요구에 대해 거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제수준도 적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유료방송사업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휴지·폐지하는 경우, 휴지·폐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시청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함 **신설**

**심사결과** 유료방송 사업자가 사전 예고없이 휴·폐업함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이용자(시청자)의 시청권 침해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자들로 하여금 휴·폐업시 이용자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규제내용도 유료방송사업자들이 현재 보유중인 기술·장비로 충분히 이행 가능하고 유사입법례 등을 감안할 때 규제수준도 적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요금산정 근거자료 미제출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신설**

**심사결과** 유료방송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 이행담보를 위해서는 과태료액 부과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등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고, 유사 입법례를 감안시 과태료 부과액 수준도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수준도 적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15) 방송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법위반 행위(납품업자에 대하여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TV홈쇼핑 사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기간을 “6개월”로 규정 **신설**

**심사결과** TV홈쇼핑 사업자의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한 방송편성 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법위반행위 발생 시 업무정지 등 실효적 행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고, 규제내용도 법상 위임범위 이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의 공익채널 운용 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과태료 부과금액(2,000만 원)을 규정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 규정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채널운용 의무 이행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서 위반시 과태료 부과액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상위법 위임범위(3천만 원)내에서 방송사업자 유형별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금액을 산정하여 적절한 수준이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16)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전기통신역무 필수설비 의무제공사업자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외 사유를 변경 **신설**

- (현행) 구축시점으로부터 3년이 미경과한 설비 → (변경) 구축시점으로부터 3년이 미경과한 설비(노후화 및 파손에 따른 대·개체 설비의 구축시점은 기존설비의 최초 구축일을 기준으로 함)

**심사결과** 전기통신역무 필수설비 제공의무 제도는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는 통신 인프라 설비의 중복투자 방지 및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동 필수설비(구축후 3년경과 설비) 제공의무 제도가 본건 고시 규정 상의 조문내용 불명확 등으로 인해 제도적 맹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소·보완할 필요가 있고, 규제내용도 필수설비 보유 사업자로 하여금 유희 통신설비를 다른 사업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고 제공토록 하는 수준으로서 적정한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1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소프트웨어 품질성능평가 시험기관 지정 요건을 규정 **신설**

일반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li> <li>○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li> </ul>
조직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 및 교정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에 관한 국제표준(ISO/IEC 17025)에 적합한 조직 보유</li> <li>○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력 보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 품질시험 또는 품질성능시험 경력 5년 이상의 전문 인력 3명 이상</li> <li>2. 프로젝트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의 전문 인력 2명 이상</li> </ol> </li> </ul>
장비 및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운영체제, 시험자동화도구 및 성능측정도구 등 평가시험에 필요한 장비 구비</li> <li>○ 시험업무 수행을 위한 독립된 평가시험 공간 및 시설 보유</li> </ul>
기술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 및 교정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에 관한 국제표준(ISO/IEC 17025) 적합 시험결과 품질 보증</li> </ul>
시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용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및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세부분야별 시험모델 보유</li> </ul>

**심사결과** 국가기관 등이 정보화사업 수행 과정에서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 동종 경쟁제품 간 객관적 비교분석을 통해 성능과 품질이 보다 우수한 제품들이 구매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품질성능의 전문적 평가·검증 역할을 수행하는 품질성능평가

시험기관의 자격(지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규제내용(시험기관 지정 요건)도 평가의 공정성 등 확보하고 내실있는 품질성능 평가 수행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적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18)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강화 1)

**심사내용** 이동통신사업자의 약정 사용량 한도 초과 이후, 단계별 고지 대상에 음성·문자 메시지를 포함 **강화**

**심사결과** 이동통신사업자의 음성·문자메시지의 사용량 한도 초과사용 미고지로 인해 발생하는 요금폭탄(빌쇼크)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동전화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약정요금 한도 초과 사용액 수준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규제내용도 현행 요금한도 초과 고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서 규제수준도 적절한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1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통신재난 발생시 미래부장관에게 보고의무가 있는 주요 통신사업자 대상 기준을 확대(현행: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전기통신사업자 →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전기통신사업자, 회선 수가 50만 이상인 전기통신사업자) **강화**

**심사결과** 대규모 통신 재난(사고) 발생시, 사고발생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복구대책 등을 정부가 신속히 파악·관리를 위해서는 기업 등에게 일정 규모 이상으로 통신회선을 대량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도 주요 통신사업자로 구분하여 통신재난 보고 및 관리 체계가 확립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규제대상(추가 주요 통신사업자 기준)도 통신 회선수를 50만개 이상 대규모로 제공중인 대형 기간통신사업자(4개사)로 한정하여 규제수준도 적정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20)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 등록요건을 규정(인적요건 : 상설 정보보호 평가 인력 5명 이상, 기술적 요건 : 미래부 정보보호평가기준 등 준용, 평가기관의 독립성·공정성 유지



수행(평가심의회 구성), 평가업무 규정 및 사무공간 보유, 재정적 요건 : 자본금 1억 원 이상)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사항에 따라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에 대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요건 등 세부 등록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등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며, 규제내용도 민간 자율 정보보호 수준 평가체계 도입이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평가기관 등록 요건을 유사 입법례(ICT 분야 평가기관 요건)와 동일하거나 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제수준도 적정한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성능평가기관 지정기준(지정 요건)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일정요건 충족하는 법인으로 규정 **신설**

- ① 성능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 ② 성능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 및 시험공간 ③ 성능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설비 ④ 성능평가대상 정보보호제품의 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절차

**심사결과**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전문적 성능평가 수행하게 되는 성능평가기관에 대해서 적정 자격(지정)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규제내용(평가기관 지정요건)도 정보보호제품의 전문적 성능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인력·장비 등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유사입법례 및 해외사례 등을 감안시 적정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2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강화 2)

**심사내용** 부당행위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사업 참여제한 기간 강화 **강화**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 제한없음 → (변경) 참여제한 2년
-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현행) 참여제한 1년 → (변경) 참여제한 2년

**심사결과** 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사업비 부당 사용액 환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연구책임자 등의 국가 연구개발성과 부당 이용(개인 특허 출원 등)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의 방지를 위해서 부당 행위 연구기관·기업·연구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향후 일정기간 사업참여 제한 등

관련 제재를 실효성 있게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규제내용도 상위법 위임범위(5년 이내)이내여서 규제수준도 적정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심사내용**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기업 등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시, 제재부가금 부과율 기준을 상향(현행: 용도의 사용액 20% ~ 100% 이내 → 개정: 50% ~ 300% 이내) **강화**

**심사결과** 연구기관 등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용도의 사용(개인유용 등)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연구기관 등의 동 행위 근절을 위해서 제재부가금 부과율 상향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확보 필요 등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고, 규제내용(부과율 50~300%)도 상위법 위임범위 이내에서 규정하여 유사입법례 및 해외사례 등을 감안할 때 규제수준도 적정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



### 3. 문화체육관광부

◎ 집필자 정지화 사무관 ☎ 044-200-2445 ✉ jihwaz@pmo.go.kr

#### 가.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5년도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0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35건, 강화 17건 등 총 52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52건 중 3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49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1)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1.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1.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2.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5.1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5)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5.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6.1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7)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6.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6.19)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9)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5.07.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7.10)	원안의결 6	신설 4, 강화 2 (비중요 6)
(11)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본위원회 (2015.07.24)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신설 3 (중요 1,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12)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5.09.2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3) 2015년 도래 재검도형 일몰규제 심사	행정사회분과위원회 (2015.09.18)	-	일몰규제 7건
(14)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행정사회분과위원회 (2015.10.13)	개선권고 2 원안의결 11	신설 13 (중요 3, 비중요 10)
(15)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1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6)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16)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1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행정사회분과위원회 (2015.10.13)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3 (중요 1, 비중요 3)
(19) 공연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26)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개선권고 3 원안의결 49	신설 35, 강화 17 (중요 5, 비중요 47)

## 나.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야영장업자가 등록된 영업범위를 초과하여 영업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200만원으로 정함 **강화**

**심사결과** 자동차야영장업이 일반야영장업을 추가하여 야영장업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등록된 영업범위를 초과하여 영업시 사업정지나 사업취소처분을 하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이 초래되어 이에 대한 과징금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호텔업 등 타 유사업종과 비교시 최저금액을 책정한 점 등을 고려, 비중요로 검토하여 원안의결



## (2)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노래연습장내 변칙영업차단을 위해 잠금장치설치 금지규정 마련 **신설**

**심사결과**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판매, 도우미 고용 등의 변칙영업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며, 유사입법례로 식품위생법상에서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도 잠금장치 설치가 제한된 점 등을 고려, 비중요로 검토하여 원안 의결

## (3)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등급별 차별화된 평가방식을 적용, 현장평가 외에 불시평가(1~3성급)·암행평가(4~5성급) 도입,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평가지 평가요원 수를 2배 확대, 1~3성급(126만원), 4~5성급(246만원)으로 수수료 현실화 **강화**

**심사결과** 미국,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도 불시평가, 암행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점과 소비자의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짐이 타당한 점,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적정하고, 최근까지 호텔협회 등이 평가료 보전을 위해 가입비용을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던 점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비중요로 검토하여 원안 의결

## (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체력인증기관의 지정기준으로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운영공간, 운영 전담조직 및 인력 등의 확보를 규정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 **신설**

**심사결과** 법률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양질의 국민체력 인증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체력을 측정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과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인력 등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인증 유효기간도 중소기업제품성능인증(3년), 인성교육프로그램인증(3년) 등 타 입법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비중요로 검토하여 원안 의결

**심사내용** 체력 인증기관의 위반행위별 처벌기준 마련 **신설**

**심사결과** 법률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법률에서 정한 처벌 범위 중 최소한도의 업무정지 기간을 적용하고 있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내용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감경규정을 두고 있는 등 규제수준도 타당하다고 판단, 비중요로 검토하여 원안 의결

### (5)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문체부장관의 정보제공 명령 미이행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하는 위반횟수별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 **강화**

**심사결과** 제1차 위반 시 바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액으로 규정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는 등 규제를 적정하게 설계한 점 등을 고려, 비중요로 검토하여 원안의결

### (6)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생활체육종목단체, 체육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 등이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강습을 실시할 경우, 대회기간 동안 등록된 사람 수에 맞게, 또는 등록된 사람 수와 강습기간을 고려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생활체육단체의 보험가입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규제비용(보험가입비용)은 개인당(1일 기준) 500원~600원 수준에 불과하며, 보험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어 생활체육단체의 실질적인 비용부담은 거의 없는 반면, 안전사고에 대한 재무적 안정성, 심리적 안전감 확보 등을 통한 생활체육 참여 확대, 국민체력 증진 등 사회적 편익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중요로 검토하여 원안의결

**심사내용** 생활체육회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국민생활체육회의 보고 및 검사 미이행 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신설**

**심사결과** 과태료 부과는 법률에서 정한 의무에 대한 이행력 확보를 위한 제재수단으로 필요하고,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과도하지 않고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해사안전법 시행령 등 타 입법례와 유사하므로 적정하다고 판단, 비중요로 검토하여 원안의결

### (7)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지않은 경우 및 유원시설업자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 **강화**

**심사결과** 안전관리자보다 유원시설업자에게 더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고용주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할 때 적정한 차등 부과로 판단되고, 타 입법사례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 비중요로 검토하여 원안의결

### (8)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유원시설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할 안전교육에 대해, 지식 및 법령, 사고의 이해, 안전관리 실무 등을 교육내용으로 1회 8시간을 교육하며, 신규관리자는 배치 후 6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2년당 1회를 받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유원시설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유원시설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며, 규제비용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안전교육비용의 50% 이상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할 예정임에 따라 비용부담이 완화되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로 검토하여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원시설업자에게 유기시설의 안전성 검사 결과를 게시하도록 규정 **강화**

**심사결과** 유기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결과 공개는 국민의 불안감 해소 및 허위정보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필요하고, 현재도 유원시설업자에게 이용요금표, 이용시 준수사항 등의 게시의무가 부과되고 있어 비용부담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 비중요로 검토하여 원안의결

### (9)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저작물을 수업지원목적으로 이용하는 교육지원기관 등이 지불하는 보상금을 포괄방식과 종량방식으로 구분하여, 포괄방식의 경우 학생 1인당 250원, 종량방식의 경우 어문 1쪽 및 이미지 1건당 7.7원, 음악 1곡당 42원, 영상물 5분 176원으로 규정 **신설**

**심사결과** 11년 4월 보상금 기준 마련 연구 진행 후 8차례에 걸친 협의체 회의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교육지원기관과 재산권 침해를 받는 저작권자 등 이해관계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기준인 점과 납부자(이용자)에게 보상금 산정방식(포괄방식, 종량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도모한 점 등을 고려, 비중요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4, 강화 2)

**심사내용** 국·공립 및 민간 체육시설 중 연면적 50%이상이 체육시설인 경우, 기둥·벽 등의 손상 및 균열,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여부, 위험시설의 보수·보강조치 여부 등을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연 1회 점검받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유사 입법례에서 연 2~3회 점검을 규정하는데 비하여 과도하지 않고, 피규제자에게 점검 수인의무 외의 별도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비하여 국민의 안전한 체육활동 향유로 인한 편익은 클 것으로 보아, 비중요로 검토하여 원안의결

**심사내용**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실시 후 보수·보강 조치를 해야 할 사유로, 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 손실,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손실, 절토·성토 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등을 정함 **신설**

**심사결과** 유사 입법사례인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대한 결함과 매우 유사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로 규정되어 있어 보완조치 의무화의 적정 사유라 판단, 비중요로 검토하여 원안의결

**심사내용**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실시 후 보수·보강 조치를 해야 할 사유 발생시, 보수·보강 조치를 해야 할 기한을 통보 1년 이내 착수, 착수 2년 이내 완료로 정함 **신설**

**심사결과** 보수·보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지 않는다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에 크나큰 위협이 될 수 있고, 타 입법사례인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 의무 기한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 비중요로 검토하여 원안의결

**심사내용**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실시 후 보수·보강 조치를 해야 할 사유 발생시 보수·보강조치를 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 **강화**

**심사결과** 개정 법률 위임에 따라 과태료 한도(100만원)내에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전상 중대한 결함이 있는 체육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조치 이행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수단으로 과태료 부과가 필요한 점이 인정되고, 유사 입법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비중요로 검토하여 원안의결



**심사내용**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실시 후 보수·보강 조치를 해야 할 사유 발생시 보수·보강조치를 행하지 않은 경우와,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상태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는 사고 발생시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함 **강화**

**심사결과** 체육시설에 중대한 결함 발생시 보수·보강조치,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 등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의무위반에 대해 적절한 행정처분이 필요하고, 유사입법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영유아 보육법 등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비중요로 검토하여 원안의결

**심사내용** 도로교통법에서 체육시설 등의 어린이 통학버스에도 보호자를 동승시키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준수하지 않은 체육시설에 대한 정보공개의 기준을 정함 **신설**

**심사결과** 공개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공개내용(체육시설 상호명, 체육시설 소재지, 체육시설업 등록 또는 신고일, 사고발생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법 등 유사입법과 비교시 공개내용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비중요로 검토하여 원안의결

### (11)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거나,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 행정처분기준 마련 **신설**

**심사결과** 법률상 관광사업자는 등록기준을 준수하고, 야영업자는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할 할 의무가 있으므로, 준수의무 위반횟수 등에 따라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재량적 행정처분 방지를 위해 필요하고, 동 법의 타 위반행위와 유사한 규제수준이며, 규제정도도 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 비중요로 검토하여 원안의결

**심사내용**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거나,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 **신설**

**심사결과** 법률상 관광사업자는 등록기준을 준수하고, 야영업자는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할 할 의무가 있으므로 준수의무 위반횟수 등에 따라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재량적 행정처분 방지를 위해 필요하고, 동 법의 타 위반행위와 유사한 규제수준이며, 과징금 부과한도에 비하여 매우 낮은 과징금액을 설정한 점을 고려, 비중요로 검토하여 원안의결

**심사내용** 야영장에 대하여 밀폐된 공간에서의 화기사용금지, 600W 이상의 전기 사용금지 등 포괄적 안전·위생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전기사용을 3년 기한부로 허용 **신설**

**심사결과**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야영장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필요성이 인정되며, 쟁점이 된 화기·가스·전기등의 사용에 관하여 일정부분 규제완화가 이루어 진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문체부가 긴급제안한 전기사용에 대한 3년 기한은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바 이를 제외하고, 오히려 동 규제안 전반에 대해 3년의 재검토형 일몰을 설정토록 개선권고

## (12)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공예문화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해 국내 제작자가 디자인하고, 제작·공정의 50% 이상이 수작업으로 이루어 진 제품을 우수 공예품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 **신설**

**심사결과**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실시하는 여러 지원사업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성격의 제도로, 의무인증이 아닌 임의인증이고, 프랑스/이탈리아/미국/일본 등 세계 각국도 자국 공예품에 대한 인증 및 지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중인 점 등을 고려, 비중요로 검토하여 원안의결

**심사내용** 제정법률에서 공예문화산업의 발전·진흥을 위하여 우수공예품에 대한 지정을 실시 하도록 함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공예품의 표시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신설**

**심사결과** 우수공예품으로 지정 시 취득하는 우수공예품 표시는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신뢰 및 우수공예품 품질에 대한 공신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제도인 바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표시를 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은 반드시 필요하고, 유사입법사례로서 발명진흥법상 허가받지 않은 명칭 사용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등과 비교시 과도하지 않은 바, 비중요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13) 2015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안 (일몰규제 7건)

구분	계	규제 폐지	규제개선			규제존속		
			일몰 연장	일몰 해제	일몰 변경	일몰 연장	일몰 해제	일몰 변경
국무조정실	7	0	1	0	0	5	1	0

**1** 비디오물의 등급등의 표시의무(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 시행규칙 제 25조)

**규제내용** 영리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수입/복제하는 자에게, 상호, 등급, 내용정보, 업자 신고번호, 등급분류번호, 제작년월일, TV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일자 및 방송사명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 부과

**심사결과** 상호, 등급, 내용정보, 제작년월일 등은 국민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업자 신고번호, 등급분류 번호 등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고, 향후 제공매체 변화 양상에 따라 표시 방식 등에 대한 규제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일몰연장

**2** 음악영상물 등급분류(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

**규제내용**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 포함)하는 자에게, 등급 분류, 상호, 제호, 제작년월일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 부과

**심사결과** 상호, 등급, 제작년월일 등은 국민의 선택권 보호 및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향후 제공매체 변화 양상에 따라 표시 방식 등에 대한 규제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일몰연장

**3** 경륜·경정사업의 위탁(경륜·경정법 시행령 제 23조, 시행규칙 제 19조)

**규제내용** 경륜·경정사업의 수탁사업자를 지방공사·공단/국민체육진흥공단/상법상 회사로, 수탁 업무 범위(회사의 경우)를, 구매권의 발권, 환급금의 지급, 반환금의 지급, 입장료 징수 등으로 제한

**심사결과** 경륜·경정사업 수탁사업자의 범위는 공단, 공사,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허용하고 있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경주사업자가 상법상 회사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수탁사업자의 범위에 대해서만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법률의 입법취지에서 벗어나고, 공단, 공사 등과 달리 회사에 대해서만 위탁업무를 제한하는 합리적 근거도 없어, 이를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4** 경륜·경정 발매수득률 제한(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제내용** 경주사업자의 발매수득금을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00분의 20이하로 제한

**심사결과** 20%의 수득률 제한은 유사입법사례인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동일하며, '14년 통계에 따르면 환급금 및 세금을 제외한 실제 수득금 비율이 12%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규제존속에 동의하며, 경주사업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로 일몰연장을 통한 재검토 필요성에도 동의

**5**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지급(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 33조, 시행규칙 제 36조)

**규제내용**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한 환급금액을 고정환급률식의 경우 100분의 50으로, 고정배당률식의 경우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70까지로 정함

**심사결과** 구매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환급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타 사행산업 환급금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규제존속에 동의하며, 향후 판매액 규모 변동등에 따라 환급비율 변경등이 필요할 수 있는 바, 일몰 연장에 동의

**6**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관광진흥법 제 28조)

**규제내용** 카지노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내국인 입장금지/법령에 위반되는 기기의 설치·사용·변조금지/19세미만인자 입장금 지, 허가받은 사업장 이외에서의 영업금지, 영업준칙 준수 등을 정함

**심사결과** 카지노 사업은 사행산업으로, 형법상 금지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인 바, 그 특수성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일정수준의 규제가 필요한 점이 인정되고, 또한 동 규제는 카지노라는 사행성 사업의 수행에 있어 본질적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바, 차후 특별한 규제완화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몰해제에 동의

**7** 카지노업 허가(관광진흥법 제 21조, 시행령 제 27조)

**규제내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으로, 관광호텔의 경우 국제공항 등이 있거나 관광특구에 있는



최상등급의 호텔로, 여객선의 경우 2만톤급이상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이 공고하는 총톤수 이상으로 제한하면서, 사업계획서, 재정능력,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 방안 등의 적정성등을 평가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카지노 사업은 사행산업으로, 형법상 금지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인 바, 그 특수성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일정수준의 규제가 필요한 점이 인정되고, 향후 관광산업 활성화 등 정책적 고려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요건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는 바, 일몰연장

#### (14)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신설 13)

**심사내용**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조성을 위한 토지의 개발은 개발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개발사업 부지 중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의 공급을 금지 **신설**

**심사결과** 조성토지의 사용에 있어 공공사업을 위한 목적을 준수하기 위해 당초 수립된 개발계획서에 따르도록 규정함은, 부동산 투기 방지, 금지된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진흥구역 지정취지 등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산지라는 개발구역의 특성상 원형지 상태로의 공급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의 범위 및 이행조건 등 제한사항을 붙여 원형지의 공급을 일부 허용하도록 개선권고

**심사내용**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의 해제조건으로, 개발계획 승인 이후 2년 이내 실시계획승인 미신청, 실시계획 승인 2년 이내 토지 매수 및 공사 착수 등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에 추진사항으로 보아 구역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 **신설**

**심사결과** 개발사업의 장기간 방치 등으로 인한 산지환경훼손 및 해당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구역지정해제 규제의 필요성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지정해제 사유 중 『그 밖에 추진사항으로 보아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측가능성이 없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제인 바, 이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 해제사유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개선하도록 권고

**심사내용** 산악관광진흥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 변경/토석(土石)의 채취/토지 분할/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죽목(竹木)을 베어내거나 심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위반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며 불응시 대집행 **신설**

**심사결과** 진흥구역내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이 자유롭게 행해질 경우, 환경 훼손, 난개발, 지정된 사업시행자와의 권리 다툼 등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행위제한은 타당하고, 유사입법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에서도 개발구역 등에 특정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행위제한내용도 동 법령과 거의 유사하고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요건을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실시 계획승인이 취소된 경우/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가·지정 등을 받은 경우/천재지변 및 파산 등의 경우로 규정하고, 지정취소시 종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로 대체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시행자 지정의 취소요건을 보면,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인·허가, 실시계획의 승인 미신청, 공사착수 지연, 실시계획의 승인취소 등으로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특히 사업추진 지연 등의 행위는 구역 내 토지소유주들에게 행위제한 기간의 연장으로 이어져 재산권의 제한을 가중시키는 등 불필요한 피해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취소사유로 타당한 바,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신설**

- (실시계획 포함사항)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항/토지의 확보 및 이용 계획/지구단위 계획/계획 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재난방지계획·구조구급계획 등
- (승인신청기한) 사업자 지정일로부터 2년이내로 제한

**심사결과** 실시계획에는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취지 및 상위계획인 개발계획과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개발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 유사입법사례에서도 구역개발시 사업시행자에게 실시계획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로 판단

**심사내용** 사업시행자의 타인 토지에서의 가능행위 및 관련절차를 규정 **신설**

- (가능행위) 타인토지에 출입, 재료적치장·임시 통로 및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 나무·흙·돌 등 장애물 제거
- (절차) 7일전까지 소유·점유자의 동의를 얻을 것, 단 부재 및 주소 불명등의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가능



**심사결과** 실시계획수립은 정확한 측량에 기반하여야 하고, 측량 및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타인 토지 출입이 행해질 수 있는 바, 원칙적으로 타인 토지 출입, 이용시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부재중 및 주소불명의 경우 등에 한하여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사한 토지출입규정을 두고 있는 타법사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비중요로 검토

**심사내용**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 수용, 사용 요건을 규정 **신설**

- (지자체·공공기관·공사인 경우) 산악관광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시 수용·사용 가능
- (민간, 민관합동투자자 등인 경우) 전체 산악관광진흥구역면적 중 3분의 2이상 매입 및 구역 토지소유자 총 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수용·사용 가능

**심사결과**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을 통해 개발하려는 토지를 모두 매입한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토지 소유주 등이 있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의 수용 및 사용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화 **신설**

**심사결과** 진흥구역 주민들은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재산권 등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며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타법에서도 일반적으로 준용되는 법이므로 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산악관광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별도의 이주대책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할 필요성도 없는 바, 비중요로 판단

**심사내용** 사업시행자의 조성토지 직접사용비율 및 위반시 행정명령 규정 **신설**

- (조성토지 직접사용비율) 전체의 50퍼센트 이상
- (직접 사용으로 계획된 토지에 대한 사용 미이행 시) 이행명령 및 조성토지등의 처분 제한 명령 가능

**심사결과** 산악관광진흥구역 토지의 대규모 공급 시 본래의 개발목적과는 다르게 당 지역에 투기열풍 등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성토지의

직접사용비용 규정 및 이의 이행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이자 잠재적 피규제자인 산악관광 관련 개발업체와 2차에 걸친 간담회를 거쳐 협의하여 마련한 점을 고려, 비중요로 판단

**심사내용** 산악관광진흥구역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 **신설**

- 자연친화적 운영 및 환경오염 저감·예방 방안 수립
- 수질·토양 보전을 위해 빗물 비투과율은 100분의 30이하로 제한
- 산지 수량변화를 최소화 하고 재해방지 대책 마련
- 건축물 디자인 등을 주변 경관과 조화,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심사결과** 산악관광진흥구역은 자연친화적 산지 관광활성화를 위해 개발·조성되는 것으로, 향후 관리의 부실함으로 인하여 산림이 가지고 있는 자연가치의 훼손이 발생할 수 있는 바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규제의 내용은 관련 전문가 합동 연구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산림의 자연가치 보호를 위한 기본적 사항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해관계자인 산악관광 관련 개발업체와 2차에 걸친 간담회를 거쳐 협의하여 마련하였으므로 비중요로 판단

**심사내용** 개발사업의 준공검사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 **신설**

- 준공검사의 신청 :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
- 준공검사 실시자 :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포함된 공공시설의 인수·관리주체인 국가기관 등에게 참여 요청 가능
- 준공검사의 결과 : 완료시 준공확인증 발급, 미비시 보완시공 등 필요조치 명령, 의제된 인·허가 상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

**심사결과** 건축물 및 구조물이 조성되는 경우 준공검사를 통해 국민들이 사용하여도 되는지의 여부를 점검함은 당연한 일인 바, 산악관광진흥구역의 경우에도 조성된 구조물 등이 최초에 계획된 바와 어긋남이 없는지, 안전상 문제는 없는지 등의 여부를 점검할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되며, 지역·구역의 개발을 규정하고 있는 타 입법사례에서도 이러한 준공검사와 관련하여 동 법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로 판단



**심사내용** 시·도지사(개발계획·사업자 지정·실시계획 승인) 및 문체부(구역지정·개발계획 승인)에게 자료요구 및 현장점검의 권한 부여 **신설**

- (자료요구)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명령 가능
- (현장점검)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 검사

**심사결과** 산악관광진흥구역은 환경적으로 엄격한 대책을 갖춘 경우에 한해 산지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친화적 개발을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의 엄격한 지도·감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바, 이를 위한 자료요구 및 현장점검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지역·구역의 개발을 규정하고 있는 타 입법사례에서도 이러한 보고·검사에 대하여 동 법률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고, 해외사례로 프랑스의 경우도 산악관광 시설과 관리를 항상 지자체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규정 (the 1985 act) 하고 있으므로, 비중요로 판단

**심사내용** 의무 불이행시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 **신설**

-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준공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준공검사 전 조성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한 자
- 보고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심사결과** 법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무 위반자에 대해 행정제재 필요성이 인정되며, 과태료 부과대상 의무위반행위 및 과태료 수준(1천만원 이하)도 타 입법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로 판단

## (15)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유원시설의 안전사고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제반 의무사항 구체화 **신설**

- 보고대상 안전사고(중대한 사고) : 사망자 발생/중상자 3명 이상 /사고피해자 6명 이상/30분 이상 운행중단으로 외부 비상구조가 발생한 경우
- 사고발생시 보고 내용 : 사고발생 내용 및 조치사항, 사업장 개요 및 사고발생기구 현황 등
- 관련자료 제출명령 시 기한 : 제출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단, 사유 소명시 10일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 가능)

- 사용중지명령의 기간 :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고 보완이 필요없다고 판단될 때 까지
- 개선명령의 기간 :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고 보완이 필요없다고 판단될 때 까지
- 철거명령 사유 : 구조 및 장치 결함으로 안전운전이 불가할 경우

**심사결과** 최근 인천 송도, 충북 보은 등지에서 잇따른 안전사고 발생으로 유원시설에서의 국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사고발생시 『보고 - 자료제출 및 현장조사 - 사용중지 등 조치』라는 적절한 대응체계를 수립, 상황에 대응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외사례로서 일본의 경우도 유원시설을 승강기와 동일시 하여 사고시 보고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로 검토

**심사내용** 유원시설 내 안전사고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1차 위반 : 100만원 / 2차 위반 : 200만원 / 3차 위반 : 300만원

**심사결과**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 - 자료제출 및 현장조사 - 사용중지 등 조치』라는 대응체계 형성을 위해 보고의무부과의 실효성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며, 법률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과도하지 않은 바, 비중요로 검토하여 원안의결

#### (16)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4)

**심사내용** 공연장 외의 시설에서 공연시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 확대 **강화**

- (현행) 예상관람객 3천명 이상의 경우 공연개시 7일전까지 신고
- (개정) 예상관람객 1천명 이상의 경우 공연개시 7일전까지 신고

**심사결과** 공연장 외의 시설에서의 공연 시 사고는 최근 10년간 총 9건이 발생하여 사고발생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없으나, 발생 시 사망자가 10여명이 넘고 부상자가 160여명에 이르는 사고도 있는 등 인명피해의 정도가 크므로 안전강화 필요성이 인정되며, 예상관람객이 3천명을 넘지 않아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않고 관할소방서의 위험관리가 미비했던 판교 사태(관람객 약 700여명)와 같은 경우 등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바, 신고대상 확대를 통해 소방관서에 의한 위험발생가능성을 관리하게 하는 것이 국민안전확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비중요로 검토하여 원안의결



**심사내용** 정밀안전진단의 의무화에 따른 실시주기를 정함 **강화**

- (현행) 정기안전검사 이후 안전진단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정밀안전진단을 행함
- (개정) 매 9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의무화

**심사결과** 노후공연장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진단은 공연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확보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나, '09년~'13년간 정밀안전진단의 시행비율은 평균 2%에 불과하여, 안전검사결과 필요시에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한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실정이며, 외국사례로 독일(4년마다 공연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비교시에도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로 판단

**심사내용** 자체안전검사 결과보고서 보관기간 명시 **강화**

- (현행) 보관기간 규정 없음 → (개정) 3년간 보관 의무화

**심사결과** 현행 법률상 공연장은 3년마다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매년 실시하는 자체안전검사 보고서는 정기안전검사의 자료로서 사고 및 수리이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나, 이러한 사항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 무대시설안전에 대한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바, 검사보고서 보관규정 마련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 작성한 검사보고서를 3년간 보관함에 대한 규제비용도 거의 없어 피규제자에 대한 부담도 미미하므로 비중요로 판단

**심사내용** 개정법률 위임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강화**

-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하지 않은 경우
  - 1차: 300만원 / 2차: 600만원 / 3차: 1200만원
- 재해대처계획 보완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 1차: 600만원 / 2차: 600만원 / 3차: 600만원
- 무대시설 안전진단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차: 200만원 / 2차: 300만원 / 3차 400만원
  - 1차: 200만원 / 2차: 400만원 / 3차: 800만원

**심사결과** 개정법률에 따라 법령상 의무위반자에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률상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률상 과태료 부과 상한액 범위내에서 세부기준 마련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2천만원, 1천만원 등임에 비해 3차위반시 금액이 각각 12백만원, 8백만원으로 과도하지 않고, 항공보안법 등 타 법령의 과태료 부과체계와 유사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비중요로 검토

### (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절차 및 직권말소 요건을 규정 **신설**

- (폐업신고)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
- (직권말소) 임대차계약 종료여부 및 영화상영시설 폐쇄여부 등을 확인한 경우 /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심사결과**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자체의 경우 전체 영화관의 23%정도가 실질적으로 영업폐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고, 폐업한 상영관 장소에 제3자가 다른 상영관 등록을 하려고 해도 기 등록 상영관이 있어 되지 않거나 이중등록상태가 초래되어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바, 폐업시 신고의무 부과 및 직권말소 규정을 통해 등록 관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인정되어 비중요로 판단

**심사내용** 매출정보 관련사안의 고의적 누락·조작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1차 위반 : 100만원 / 2차 위반 : 150만원/ 3차 위반 : 200만원

**심사결과** 매출정보의 조작 및 누락은 소비자가 낸 부과금을 사업주가 가로채는 행위인 바,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은 사업주의 불법적 이득을 방지하고 부과금의 정당한 징수를 위한 것인 바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입법사례로 방송법상 자료 허위제출에 대하여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로 판단

### (1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강화 3)

**심사내용** 인터넷 신문의 취재·편집 인력 요건 **강화**

- (현행) 취재인력 2명 포함,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 상시 고용
- (개정) 취재인력 3명 포함,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 상시 고용



**심사결과** 인터넷신문의 독자적 기사생산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자동기사 게재 및 어뷰징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동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등록 시의 인적요건의 강화 자체가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의 의무화 등 개정법률을 감안 시 적정수준의 인력확보가 요구되고 현재 등록인터넷 신문의 운영·인력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규제 강화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고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동의함

**심사내용** 상시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대체함 **강화**

- (현행) 취재·편집인력 명부 제출
- (개정)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

**심사결과** 현행 단순 명부제출은 상시고용인력 확인이라는 규제 목적의 달성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 1인 이상 상시고용(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사업장은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등의 가입이 필수임을 고려 할 때, 당해 사회보장보험 가입여부의 확인은 상시고용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규제 수단이 될 수 있는 점 인정되고, 확인서 발급에 별도의 수수료가 없는 점, 온라인·팩스·방문 등의 수단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바 규제강화로 인한 비용 증가는 미미한 수준인 점과, 상시고용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허위로 명부를 작성·제출한 뒤 유사언론행위 등을 행하는 이른바 사이버 인터넷 신문 출현 방지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규제라 판단되어 비중요로 검토

**심사내용** 인터넷 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의 구체적 업무 및 공개방법 규정 **신설**

- (구체적 업무) 음란·폭력정보 등에 대한 청소년 접근제한, 음란·폭력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공개방법) 인터넷 신문사업자: 홈페이지 첫 화면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 연결단계 구조 중 최상위 화면

**심사결과** 최근 인터넷 언론사들은 광고 확보 등을 위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 및 광고들을 무분별하게 게재하고 있으며, 이를 사이트 방문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동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독일 등 해외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청소년에게 유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콘텐츠 관리업무 등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로 판단

**심사내용** 인터넷 신문 청소년 보호 책임자 미지정시의 과태료 규정 마련 **강화**

– (보호책임자 미지정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심사결과** 동 법률상 과태료는 1천만원 한도이며, 법률상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300만원의 과태료 금액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유사 입법사례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도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1회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중임을 감안하여 비중요로 판단

### (19) 공연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공연시 안전확보 관련의무 위반에 관한 제재처분기준 마련 **강화**

- 공연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등록미비시 운영정지 : (1차) 3일 / (2차) 7일 / (3차) 15일
  - 변경등록미비시 운영정지 : (1차) 경고 / (2차) 3일 / (3차) 7일
- 행정청의 재해대처계획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운영정지: (1차) 3일 / (2차) 7일 / (3차) 15일
- 재해대처계획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공연장운영자 운영정지 : (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 공연자 활동정지 :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심사결과** 법률상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률에서 규정된 운영 및 활동정지처분의 상한선 범위 내에서 세부기준 마련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률상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데 비하여 공연장의 경우 최대 15일로 과도하지 않고, 공연자의 경우 공연장과 달리 연간 공연 횟수의 빈도가 낮아, 최대 6개월의 활동을 정지함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중요로 판단



## (2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도서정가제 적용 **강화**

**심사결과** 도서정가제 취지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간행물에 대한 출판유통질서 확립임을 감안할 때, 외국에서 발행되었어도 국내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것이 도서정가제의 취지에 부합하고, OECD 가입국가 중 13국(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모든 해외 발행 간행물에 도서정가제 시행 중인 점 등과 동 규제안이 작년에 출판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당시(‘14.9.25~’14.10.6) 직접적 피규제자인 출판유통계에서 유통질서 혼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직접 요구한 바 있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비중요로 판단

**심사내용** 도서정가제 위반시 과태료 금액 상향 : 100만원 → 300만원 **강화**

**심사결과** 위반 시 얻을수 있는 이익에 비해 현행 과태료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위반사례가 급증하는 등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바,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동 건은 과거 출판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당시(‘14.9.25~’14.10.6) 직접적 피규제자인 출판유통계에서 유통질서혼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직접 요구한 바 있는 사항으로, 300만원으로 상향하더라도 여전히 해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로 판단

## (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영화업의 폐업신고 절차 및 직권말소 요건을 규정 **신설**

- (폐업신고)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
- (직권말소) 당사자에게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 /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심사결과** 영화업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영화발전기금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투자 지원 등을 받는 업종으로, 국민의 세금을 문화산업진흥을 위해 특정인에 대한 지원에 사용하는 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그간 폐업 신고 관련 규정이 없어 정확한 관리가 어려웠으며, 영화발전기금 등이 기 폐업한 자에게 잘못 지급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동 규정 신설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인정되며, 규제내용도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로 검토

## 4. 문화재청

◎ 집필자 정지화 사무관 ☎ 044-200-2445 ✉ jihwaz@pmo.go.kr

### 가.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5년도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5개의 법령의 신설 6건, 강화 1건 등 총 7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7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문화재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5.04.2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4.2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7.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5.10.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7	신설 6, 강화 1 (비중요 7)

### 나.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매장문화재 발굴조사허가를 받은 자가 시굴조사결과 허가받은 주요내용(발굴범위, 기간 등) 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을 의무 부여 **신설**



**심사결과** 발굴조사 허가를 받은 자가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음 허가받은 사항의 중요사항인 ‘대상면적 및 조사기간’의 변경시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은 허가요건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고, 비용측면에서 변경허가신청에 따른 제재나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국토계획법 등 유사입법례도 다수인 점을 고려, 비중요로 검토하여 원안의결

**심사내용**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착수시 지표조사기관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의무 부여 **신설**

**심사결과** 규제비용측면에서 단순히 인터넷(<http://www.e-minwon.go.kr/> 문화재 협업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사항으로 그에 따른 별도의 제재가 없으며, 비용 부담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착수신고로 지표조사 현황과약이 가능해져 향후 동일지역 조사 시 지표조사를 제외(중복 지표조사 방지)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감소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중요로 검토하여 원안의결

##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사업시행자가 지표조사보고서 제출시 첨부서류 제출의무 부과 **신설**

- 축척 1/5,000~1/10,000 내외의 국가기본도에 그린 위치도
- 건설공사 계획서(지하굴착계획, 건축계획, 조경계획 등 포함)

**심사결과** 법률에서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동 개정안에서 보고서 제출시 첨부서류를 규정하는 것으로 새로운 의무부과는 아니며, 지표조사 결과의 적정성 여부 및 그에 따른 조치 등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바, 비중요로 검토하여 원안 의결

**심사내용**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의 선량한 관리의무 부여 **신설**

**심사결과** 규제대상이 연간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 32건(14년)에 불과하고, 관리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국가, 지자체 등이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피규제자에게 실제 규제비용이 미발생하는 점을 고려, 비중요로 검토하여 원안 의결

## (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거부 및 거짓보고, 검사방해행위, 공무원의 토지 출입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해 위반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차등부과 **신설**

**심사결과** 고도보존·육성법 제22조 및 제23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체적 부과기준 설정을 통해 처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2015 세계물포럼지원 특별법 등 다수의 유사 입법사례가 존재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규제를 적정하게 설계한 것으로 판단, 비중요로 검토하여 원안의결

####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전승공예품 인증을 받지 않은 상품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경우 및 명예보유자 등이 아닌 자가 이와 유사한 명칭을 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마련 **신설**

**심사결과** 전승공예품에 대한 인증 및 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칭 등은 관련 지원 대상여부의 결정 뿐만 아니라, 공예품 및 무형문화재의 공연 등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신뢰 확보에 매우 중요한 제도인 바, 인증의 허위 사용 및 명칭의 무단 사용 등에 대한 제재수단은 반드시 필요하고, 전승 공예품의 경우 유사입법례인 발명진흥법상 허가받지 않은 명칭 사용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등과 유사한 수준이고, 보유자명칭의 경우도 유사입법례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명칭 허위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300만원)와 유사하며,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이라는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고려 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로 검토하여 원안의결

#### (5)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문화재에 대한 정기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되, 동산문화재 및 보존상태가 양호한 문화재 등의 경우 5년마다 실시 **강화**

**심사결과** 국무총리 특별 지시('13.11.21 '문화재 관리 특별점검과 제도개선')에 따른, 문화재 특별종합점검 결과, 야외에 노출된 구조물 및 건축물 등의 경우 환경변화로 인한 훼손 위험성이 높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정기 조사주기 단축을 통해 이를 보강하려는 것으로, 타법사례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 주로 1년 내지 3년마다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로 검토하여 원안의결



## 5. 원자력안전위원회

◎ 집필자 김미영 사무관 ☎ 044-200-2447 ✉ judyca@pmo.go.kr

### 가.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5년도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7개의 법령에 대해 강화 등 총 12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1)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5.03.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5.03.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6.01)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28)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b>계</b>	-	<b>원안의결 12</b>	<b>신설 7, 강화 5 (비중요 12)</b>

## 나.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신설 1)

#### 심사내용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보안관리 시설 설치 및 보안계획의 수립·이행 **신설**

- 허가사용자의 방사성동위원소(RI, Radioisotope) 보안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 규정 (안 제5조 ~ 제15조)
- 1·2 등급 RI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의 수립·이행 및 1·2 등급 RI의 운반시 보안관리 조치

#### 심사결과

현재는 920개의 RI 허가 사용자\*가 있으나,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보안관리의 필요성 인정되며, 동 규제는 개정된('13.2.19)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RI에 대한 안전 기준과 별도로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IAEA의 수출입 지침 이행 등 해외 유사사례와 비교해도 적절한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10년(876) → '11년(890) → '12년(898) → '13년(911) → '14년(920)

### (2)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안 (신설 1)

#### 심사내용

의료방사선 품질관리 등 **신설**

- 품질관리결과 문서비치, 관리오차 초과항목 원익파악 및 시정조치에 대한 기록 및 비치
- 방사선 치료에 의한 의료피폭 대상자 이해 동의(서면) 및 의사·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을 통한 환자방호대책 수립
- 임신·모유수유 여성환자에 대한 방호 절차 수립·이행(안 제14조)
- 기타 진료환자의 격리 및 방사성동위원소 투여환자 퇴원기준 평가방법 제시

#### 심사결과

외부기관의 품질감사는 방사선의료기기의 품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방사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위성도위원소 투여환자 퇴원지침서 제공 및 임신·수유 중인 여성을 포함한 환자 등에 대한 방호대책을 수립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점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5)

**심사내용** 해체계획서상 기재사항 **신설**

-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운영 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해체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재사항을 규정

**심사결과** 규제내용(해체계획서상 기재사항)이 舊 원안법에서 해체승인단계에서 제출하는 해체계획서의 기재사항과 거의 동일\*하고, IAEA 안전보고서(SRS No.45)에 제시된 해체계획서 기재사항은 주요 선진국의 원자력시설 해체관련 서류와 동등한 점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해체 조직·인력·비용 및 자원, 해체전략, 해체의 용이성을 고려한 설계특성과 건설 또는 운영 시 조치 방안만이 추가

**심사내용** 해체계획서 갱신주기 **신설**

-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시 해체계획서 갱신주기를 10년으로 규정

**심사결과** 사업자는 원안법에 따라 운전·관리이력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어, 해체계획서를 갱신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이 요구되지 않으며, IAEA 안전기준 및 외국사례를 볼 때, 해체계획서의 갱신주기(10년)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IAEA에서는 매 5년 마다 또는 국가별 상황 내지 규제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주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심사내용** 해체승인 신청시기 및 제출서류 **신설**

- 해체승인신청서 제출시기는 영구정지를 위한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핵연료 주기시설의 경우 2년) 이내로 하고,
- 해체승인 신청시 제출서류는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부지재이용계획서, 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결과 및 공청회 개최결과(발전문·연구용등원자로에 한정) 등으로 규정

**심사결과** 해체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살펴보면, 舊 원안법 해체계획서에 포함된 사항(예: 해체 품질보증계획)이거나 해체계획서에 포함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한 원안법 제103조에 따른 의견서류나 공청회개최결과에 해당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해체상황 보고주기 및 보고내용 **신설**

- 해체와 관련하여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보고내용은 시설별 해체 현황, 제염·해체 활동 내역, 방사선안전관리 현황 및 방사성폐기물관리 현황 등으로 규정

**심사결과** 해체과정에서 방사선 안전관리현황은 가장 중점을 두고 관리해야 할 사항으로, 원안법 시행규칙 제127조에서는 '방사선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분기별로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원전 해체 시에는 운전 중인 경우보다 방사선 노출 등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해체기간이 장기간(약 9~25년)인 점 등을 고려 보고주기를 '반기'로 완화하였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심사내용** 해체완료시 보고내용 및 제출서류 등 **신설**

- 해체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제출서류를 규정
- (해체완료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해체의 전략 및 활동 내역, 해체 전후의 시설과 부지현황, 시설과 부지의 최종 방사선·능 현황 및 방사성폐기물관리 현황, 해체작업에 참여한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및 해체과정 중 발생한 비정상사건 등
- (해체완료보고 시 제출서류) 부지재이용 방안, 최종부지상태의 방사선·능준위 조사 계획, 방법 및 결과 등이 포함된 최종부지상태보고서

**심사결과** 규제수준이 원자력이용시설에 사용된 토지가 일반 토지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등으로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IAEA 안전보고서(SRS No. 45)에 제시된 해체완료보고서의 표준항목과 동일한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강화**

-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일)<sup>1)</sup>에 기준단가<sup>2)</sup>를 곱하여 산정(투입인력당 단가방식)
  - 1) 수탁기관이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투입한 인력
  - 2)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연)에 대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인건비의 84.9%), 제경비(인건비+직접비의 29.6%)를 합산한 금액을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일)으로 나눈 금액



**심사결과** 원전 호기수는 '12년 28기에서 '18년 32기로 소폭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후원전 증가, 계속운전 심사 등 규제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소요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호기당 비용 산정방식은 급증하는 안전규제수요를 충족하기에는 곤란하므로 부담금 산정기준의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강화**

-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일)<sup>1)</sup>에 기준단가<sup>2)</sup>를 곱하여 산정(투입인력당 단가방식)
  - 1) 수탁기관이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투입한 인력
  - 2)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연)에 대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인건비의 84.9%), 제경비(인건비+직접비의 29.6%)를 합산한 금액을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일)으로 나눈 금액

**심사결과** 원전 호기수는 '12년 28기에서 '18년 32기로 소폭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후원전 증가, 계속운전 심사 등 규제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소요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호기당 비용 산정방식은 급증하는 안전규제수요를 충족하기에는 곤란하므로 부담금 산정기준의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6)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수시출입자 건강진단 **강화**

- 원자력이용시설의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수시출입자에 대해서도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심사결과** 수시출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방사선작업 목적)와 방사선관리구역의 출입목적(비(非)방사선작업 목적)은 다르나, 출입하는 구역이 방사선 위험도가 높은 방사선관리구역으로 동일하며, 방사선은 오감으로 인지 불가능하고 방사선 피폭에 따른 건강상 위해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 건강진단 이외의 방법으로 피폭에 따른 건강상 이상 유무를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시, 방사선안전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수시출입자에 대해서도 건강진단 실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7)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방사성물질 등 운반신고 및 포장·운반검사 **강화**

- 방폐물의 영구처분시설로 운반하려는 1.6세제곱미터(200리터 드럼 8개) 이상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운반 신고 및 검사 대상에 추가

**심사결과** 방폐물의 영구처분시설로의 대규모 운반(매년 10,000 드럼 정도)이 본격화될 상황으로 방폐물 운반 전·후 모든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운반신고 및 검사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방폐물의 경우 국민의 건강·안전에 큰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엄격한 사전·사후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개정안에서는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신고(98조) 및 포장·운반검사(101조)에 대해 조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운반 신고 및 검사의 목적이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며, 새롭게 추가된 운반 신고 및 검사의 대상이 동일하므로 2개 규제사무를 같이 심사함



## 제9절 보건복지·여성 분야

### 1. 보건복지부

◎ **집필자** 이상훈 사무관 ☎ 044-200-2399 ✉ lsh@pmo.go.kr  
 안 호 사무관 ☎ 044-200-2443 ✉ stephen119@pmo.go.kr

#### 가.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5년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영유아보육법 등 45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39건, 강화 53건 등 총 9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92건 중 4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자진철회 1건 포함)하였으며, 8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인체조작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1.02)	원안의결 9	신설 7, 강화 2 (비중요 9)
(2)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2.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행정사회분과위 (2015.02.13)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중요 1, 비중요 1)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2.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2.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3.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3.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행정사회분과위 (2015.03.27)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9)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4.24)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0)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행정사회분과위 (2015.05.22)	원안의결 2	강화 2 (중요 2)
(1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5.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5.29)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5.06.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7.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5)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7.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6)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7.10)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1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7.10)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7.17)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19)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7.17)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2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7.2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5.07.24)	원안의결 6	신설 2, 강화 4 (비중요 6)
(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7.31)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4)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사회분과위 (2015.08.13)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2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6)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본회의 (2015.08.27)	개선권고1 원안의결 9	신설 6, 강화 4 (중요 2, 비중요 8)
(27)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28)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행정사회분과위 (2015.08.13)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2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5.09.21)	원안의결 8	신설 8 (비중요 8)
(30)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9.21)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사회분과위 (2015.09.18)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32) 정보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9.24)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33)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0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4)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09)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1 (비중요 2)
(3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6) 입양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7) 한국보건직업인 국가시험원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8)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행정사회분과위 (2015.10.30)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39) 의료법 개정안	본위원회 (2015.10.30)	자진철회 1	강화 1 (중요 1)
(4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1) 노후준비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5.11.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2)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11)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4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18)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4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b>계</b>		<b>개선권고 등 4 원안의결 88</b>	<b>신설 39, 강화 53 (중요 11, 비중요 81)</b>

## 나.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7, 강화 2)

#### 심사내용 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등록 절차 **신설**

- (생존 기증자 등록)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 등록신청서 +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사후 기증자 등록)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 등록신청서 +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가족 또는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기증희망자 등록) 장기등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 미성년 신청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 정신질환자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제출

####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며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제’ 시행을 위해 신청요건(구비서류)를 정한 것으로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서류요건을 구비토록 하는 것이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심사내용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신설**

- (지정기준) 조직기증자등록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 업무·상담 인력, 전산장비 구비
- (지정절차) 조직기증자등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제출
  - \* 의료기관의 경우: 신청서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 시설·인력 확인서류
  - 비영리법인의 경우 : 신청서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정관 + 시설·인력 확인서류
- (변경절차) 기관의 주요사항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관련 서류 제출
  - \* 변경신청서 + 변경사항 확인서류 + 등록기관 지정서

####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며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것으로 시설·인력·장비 기준 및 제출 서류 등은 유사법령 상의 장기이식등록기관과 같은 수준이며, 최소한의 기준 및 서류이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변경 절차 **신설**

- (지정기준)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 업무·상담 인력, 기증자 이송수단 등의 자격요건 구비
  - \* 사무실, 전산장비, 긴급이송수단, 인력(의사1명(겸임가능), 간호사6명, 사회복지사1명, 행정1명 이상)
- (지정절차) 조직기증자등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 의료기관의 경우 : 신청서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 시설·인력 확인서류
  - 비영리법인의 경우 : 신청서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정관 + 시설·인력 확인서류
- (변경절차) 기관의 주요사항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관련 서류 등을 제출
  - \* 변경신청서 + 변경사항 확인서류 + 등록기관 지정서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며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것으로 시설·인력·장비 기준 및 제출 서류 등은 유사법령상 장기구득기관과 비교하여 완화된 수준이며, 최소한의 기준 및 서류이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요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조직을 채취한 조직은행이 가공 조직은행이 아닌 이식이 시급한 의료기관에 우선 분배토록 하고 사후 관리 **신설**

- (우선순위) ①치료를 위해 이식이 시급한 이식의료기관에 우선 분배, ② 채취한 조직의 부위별로 신청순서,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분배
- (자료제출) 조직의 분배에 관한 사항 등을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질병관리본부)의 장에게 제출(연 1회)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인체조직이 이식이 시급한 의료기관에 우선 분배토록 하도록 하여 기증과정의 윤리성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 등과 같은 이식용 인체자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며 WHO 지침 등 국제 기준에 따른 것이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요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비밀유지 의무대상자 확대 **강화**

- (당초) 조직은행·이식의료기관·관련업무 종사자
- (추가)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관련업무 종사자 등
  - \* 등록기관의 장과 업무관련 자,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과 업무관련 자, 전산망시스템의 구축·관리·운영에 참여한 자,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관련업무에 협력하여 참여한 자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으로 신설된 기관 및 종사자에게 업무수행 중 취득하게 되는 민감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업무수행 과정에서 용이하게 취득하게 되는 비밀을 대상으로, 해당 담당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조사 대상(점검 및 확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 **신설**

- 기록의 점검 및 내용 확인, 조직의 보관 및 관리상태, 시설 및 장비 등의 적격 여부, 그 밖에 기증·관리·이식 관련 필요 사항 등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며 인체조직의 안전성, 수급관리, 생명윤리를 기반으로 한 공적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보고 및 조사를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에 조사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신설**

- 규제사항(신설강화) 및 세부 행정처분 기준

규제사항(신설)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이상
시설·인력 등의 기준 위반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이식부적합 조직 발생 시, 조직은행 및 유족 통보 의무 위반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보고 및 조사 불응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시정명령 미이행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허가취소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며 신설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반의 경중에 따라 세분하였으며, 유사 법령과 비교 시 동일한 수준이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강화**

– 규제사항(신설강화) 및 세부 과태료 기준

규제사항(신설)	과태료 기준(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20	50	100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폐업 신고 또는 자료이관을 하지 않은 경우	30	70	150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며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반의 경중에 따라 세분하였으며, 유사 법령과 비교 시 동일한 수준이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에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폐업등 신고 및 자료이관 절차 규정 **신설**

- 조직기증자등록기관·조직기증지원기관이 폐업 등을 할 경우 3일전까지 폐업·업무 종료 신고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폐업 또는 업무를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자료 이관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며 조직기증자등록기관·조직기증지원기관이 업무수행 중 취득하게 되는 민감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법령에서도 폐업 신고 및 자료 이관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에 보아 원안의결

**(2)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원을 초과하여 교육생을 선발한 경우 시정 명령 또는 지정 취소(청문 실시) **신설**

##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에 따라 동 규정(제25조)에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 및 요건을 규정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 근거(제25조의2)를 마련하는 것으로 유사 교육기관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이며 지정 취소시 청문을 실시하는 등 절차가 유사기관과 동일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에 보아 원안의결

## (3)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한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 **신설**

– 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손실액 징수

\* 제조업자등이 약제·치료재료와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범위 또는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때 요양기관의 위반행위에 개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약제·치료재료의 상한가격이나 판매가격을 높이는 등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금지

– ‘판매제한’의 효력이 소멸<sup>1)</sup>된 경우로써 ‘판매제한 기간<sup>2)</sup>’ 동안 요양급여 비용이 과다하게 지급<sup>3)</sup>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1) ‘판매제한’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약사법 제50조의9 제3항) : 판매제한이 신청된 의약품이 등재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 등재특허권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 등

2)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의 일환으로 식약처에서 특허침해 판단시 후발의약품에 대해 판매제한 처분(약사법 제50조의9) : 현재는 소송 등으로 판매제한되나, 변경시 행정처분으로 판매제한 가능

3) 법원에서 특허침해 없음 또는 특허효력 상실로 판단할 경우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이 발생(약가 추가 지출)한 것이므로 손실 상당액 징수 처분(국민건강보험법) : 현재는 소송 등으로 배상청구하나, 변경시 행정처분으로 손실액 징수 가능

–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및 요양급여 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심사결과** 제조업자 등이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법 제101조)하고 있으므로  
 同 규정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익  
 대해 공익상 징수하도록 하는 유사 입법 사례 등도 있으며, 징수행위가 무효가 되면  
 징수액을 되돌려 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판매제한제도)’ 제도 시행(약사법 개정안)에 상응하는 보완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매제한 처분’ 발령 요건 등과의 비교, 손실액 징수 요건  
 및 방법, 새 제도 도입에 따른 이익과 손실 간 균형 등을 감안하여 중요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다만, 하위 법령에서 손실액 산정방법 및 절차 등 마련시, 관계부처·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할 것을 부대권고

**심사내용**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 가능 **강화**

- (현행)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요양기관의 부당이득의 징수\*, 건강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 (추가) 제조업자 등의 건강보험재정 손실액 징수(개정법 제101조의2)

\* 속입수·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징수(법 57조(부당이득의 징수))

\*\* 건강보험료는 사용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납부(법 77조(보험료 납부의무))

**심사결과** ‘제조업자 등에 대한 손실 상당액의 징수’ 규정(제101조의2)이 신설될 경우 유사규정과  
 같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독촉 및 체납 처분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함

####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주야간보호·단기보호시설)의 계단 출입구, 외부  
 출입구에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강화**

**심사결과**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와 배회증상을 가진 어르신에 대한 보호에 효과적인  
 수준으로 판단되며, 장치 비용에 대해 전액지원할 계획인 바, 원안에 동의함

###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계단 출입구, 외부출입구에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강화**

**심사결과**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와 배회증상을 가진 어르신에 대한 보호에 효과적인 수준으로 판단되며, 장치 비용에 대해 전액지원할 계획인 바, 원안에 동의함

###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고위험병원체 보존관리 방법 강화 **강화**

구분	준수사항	비고
현행	고위험병원체 보존장비의 취급 및 보존구역의 출입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운영할 것	권장
개선	고위험병원체 <b>보존장비의 취급</b> 및 보존구역의 <b>출입을 모니터링</b> 할 수 있는 <b>보안시스템을 운영</b> 할 것	필수

**심사결과** 고위험병원체의 외부 유출을 예방하고 유출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해 보존장비의 취급 및 보존구역의 출입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CCTV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안시스템(CCTV 등) 미설치 기관(5개소)은 건물 출입구역에 CCTV를 운영 중이거나 금년 내 설치 예정이고 다른 45개 기관에서도 보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5년 이상 의지·보조기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시 의지·보조기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보수교육 대상에 포함 **강화**

**심사결과** 의지·보조기사는 해부학이나 생체역학 등의 생체구조나 역할, 원리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이론에 근거한 제작 및 가공능력이 요구되므로, 장기간(5년 이상) 의지·보조기 분야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의지·보조기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보수교육 의무 부과는 적절하다고 판단, 원안에 동의함



## (8)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사회복귀시설장의 자격기준 강화 **강화**

- (현행)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대표
  - \* 단, 주거제공시설·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도 가능(단서 규정)
- (강화)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 \*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대표 삭제, 공동생활가정 단서 규정 삭제
  - \* 사회복지사·간호사·임상심리사 등이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하여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취득하면 가능

**심사결과**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안전 등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성 인정되나, 개정취지, 유사사례 및 경과규정 등의 적정성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자격기준이 경력요건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전문성을 보유했다고 인정할 만한 경력요건을 추가토록 개선권고

## (9)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강화 **강화**

- (현행) 성인기준 5일 분량 범위 내 판매, 향정·한외미약 및 오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판매
- (강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환자에게 판매내역서 교부(추가)

**심사결과** 상위법에 근거하여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약품 등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약국이 환자에게 ‘판매 내역서’를 교부(전문의약품 판매에 한함)토록 하는 것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342개)으로 한정하고 있고 ‘판매내역서’ 상 제공하는 정보(의약품의 명칭, 투약량 등)도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요건으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의약품 판매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 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화**

〈규제사항 및 세부 행정처분 기준〉

	규제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현행	제4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강화	제4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등록취소	-

**심사결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스테로이드제제 허용범위 초과판매’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의약분업 지역에서의 준수사항 위반 등 유사사례와 동일한 수준이고 위반내용의 경중 및 횟수에 따라 차등 처분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에 보아 원안의결

(10)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 **강화**

- (요양병원) 인력기준 강화, 환자 신체억제대 사용근거·요건 마련 등

〈요양병원 의료인 정원 및 시설규격 강화〉

구분	현 행	강 화
의료인 정원(별표5)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1명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80명까지 2명, 80명 초과시 40명마다 1명
시설규격 (별표4)	안전손잡이 설치, 비상연락장치, 욕실 설치 등	(추가) 출입구에 자동개폐장치 설치
기타 (제36조, 별표4의2)	‘신체억제대 적정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규정 -	신체억제대 사용근거·대상·요건 등 법령에 명시 당직의료인 외에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 배치

- (의료기관 수술실) 설치대상 확대 및 시설기준 강화

〈수술실 설치기준 및 시설규격 강화〉

구분	현 행	강 화
수술실 설치기준 (별표3)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의원급 이상(의원, 치과의원에서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경우)
회복실 설치기준 (별표3)	병원급 이상 중 수술실이 있는 경우	의원급 이상 중 수술실이 있는 경우
수술실 시설규격 (별표4)	공기정화설비,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 등	(추가) 수술실 간 격벽 구획, 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 설치, 응급의료장비 구비



**심사결과** 요양병원 화재 등 위급 상황발생 시 초동조치가 중요하므로 긴급히 조치할 인력을 확보하고 자동개폐장치 등을 설치토록 하는 것으로 최소 의사 수 증원 대상은 요양병원 전체의 3.8%에 불과하고 자동개폐장치 등 화재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규정하고 있음

더불어, 전신마취 수술을 위해서는 수술실을 설치해야하고 수술실에는 인공호흡기 등 응급의료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 수술 집중도 향상, 감염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수술실 설치 기준과 수술 중 예측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 응급의료장비 구비 등은 환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이므로 중요 규제에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표시 의무대상 확대 **강화**

-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 표시
  - ※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과 가격을 적은 책자,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수수료 등을 접수창구 등에 게시
- (강화) 모든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 표시
  -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고시

**심사결과**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은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검색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접수창구 등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하고 있고 병원급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중요규제에 보아 원안의결

### (1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공중위생영업소가 성매매 알선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영업장 폐쇄(면허 취소) 기준 강화 **강화**

- (현행) 1년 간 3차례 적발 시 영업장 폐쇄, 이·미용업사 면허취소
  - \* 1차(영업정지 2월) → 2차(영업정지 3월) → 3차(영업장 폐쇄)
  - 1차(면허정지 2월) → 2차(면허정지 3월) → 3차(면허취소)
- (강화) 3년 간 2차례 적발 시 영업장 폐쇄, 이·미용업사 면허취소
  - \* 1차(영업정지 3월) → 2차(영업장 폐쇄) / 1차(면허정지 3월) → 2차(면허취소)

**심사결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 영업 정지 및 영업소 폐쇄 세부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의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14.5.2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장례용품의 강요·강매행위, 보고 및 기록보관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위반차수에 따른 부과기준 강화 **강화**

〈신설내용〉

구 분	법인묘지, 사설봉안당 등 / 장례식장
장례용품 등 구매·사용 강요금지	1차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이상 300만원
보고의무 미이행 또는 거짓보고	1차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
기록보관 의무 미이행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이상 250만원

〈강화내용〉

구 분	법인묘지, 사설봉안당 등 / 장례식장	
	현 행	개 정
가격표 게시의무 위반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이상 200만원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이상 250만원
게시된 가격 외 금품 수수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이상 200만원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이상 250만원
매장·개장 등 신고의무 위반	1차 100만원 2차 100만원 3차이상 100만원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이상 200만원
장례식장의 시신 위생적 관리의무 위반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이상 200만원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이상 250만원



**심사결과** 처분 등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처분의 신뢰성 확보, 불필요한 분쟁의 예방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불법적인 장례물품·시설 강요 등에 의한 유족 및 국민들의 피해와 사회적 갈등을 고려할 때 상위법(장사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처분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필요최소한의 규제라고 판단,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장례용품의 강요·강매행위, 관리금 용도 외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 및 위반처수에 따른 처분기준 강화 **강화**

〈신설내용〉

구 분	법인묘지, 사설봉안당 등	장례식장
장례용품 등 구매·사용 강요금지	1차(업무정지1개월) 2차(업무정지2개월) 3차(업무정지3개월) 4차(업무정지6개월)	1차(시정명령) 2차(업무정지1개월) 3차(업무정지2개월) 4차(업무정지3개월) 5차(업무정지6개월)
관리금 용도 외 사용	1차(업무정지15일) 2차(업무정지1개월) 3차(업무정지3개월) 4차(업무정지6개월)	해당없음

〈강화내용〉

구 분	법인묘지, 사설봉안당 등(장례식장 제외)	
	현 행	개 정
가격표 게시의무 위반	1차(업무정지7일) 2차(업무정지15일) 3차(업무정지1개월) 4차(업무정지3개월)	1차(업무정지15일) 2차(업무정지1개월) 3차(업무정지3개월) 4차(업무정지6개월)

**심사결과** 처분 등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처분의 신뢰성 확보, 불필요한 분쟁의 예방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불법적인 장례물품·시설 강요 등에 의한 유족 및 국민들의 피해와 사회적 갈등을 고려할 때 상위법(장사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처분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필요최소한의 규제라고 판단, 원안에 동의함

### (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신설**

시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무실(45㎡이상의 사무공간, 책상·컴퓨터 등 구비)</li> <li>자료실, 회의실, 비상재해대피시설</li> </ul>
인력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센터장 1명, 전문인력 8명 이상, 사무원 1명 이상</li> </ul>
운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5일·하루 8시간 운영, 관리규정 마련, 장부 등의 비치</li> </ul>

**심사결과**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정한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인력 및 구성원의 사무공간 확보 등 지원센터 설치기준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분석 등을 위한 해당분야 전문인력의 사무공간과 기자재 확보, 소방법에서 정한 재해대피시설 등 마련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에 동의함

### (1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 **강화**

- (현행)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위반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
- (변경) 세부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규제사항(신설)	과태료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5	150	300

**심사결과**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300만원)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세분하였으며, 유사 법령과 비교 시 동일한 기준이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에 보아 원안의결

### (15)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 **강화**

- 세탁물 처리업 관련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



규제사항(신설)	과태료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자가 <b>교육을 실시</b> 하지 아니한 경우	50	75	100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자가 <b>교육 실시 결과기록 및 유지</b> 를 하지 아니한 경우	15	30	60
<b>변경·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b> 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	40	50
<b>폐업 신고</b> 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	75	100

-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횟수(연간 1회, 2회, 3회 이상)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

**심사결과**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세분하였으며, 유사 법령과 비교 시 동일한 기준이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16)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산후조리업 종사자 및 신규 산후조리업자 건강검진 조건 강화 **강화**

구 분	현 행	개 정
산후조리원 종사자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	채용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제출
산후조리업 신규사업자	없음	신고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제출

**심사결과**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검진을 강화하는 것은 면역력이 약한 산모·신생아를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제라고 판단되어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산후조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기준 **신설**

구분	사망	감염·부상	감염·부상 치료 후 후유장애	재산상 손해
가입금액	1억원 범위	2천만원 범위	1억원 범위	건당 1억원 범위

**심사결과** 산후조리원의 질병·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용자는 산후조리원을 신뢰할 수 있고 감염·안전사고 발생시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산후조리업자는 책임보험을 통해 배상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를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 부과 **강화**

**심사결과**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고 산후조리원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이용요금 게시의무 준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판단되어 원안에 동의함

### (1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회수 또는 재발급 제한 **신설**

위반내용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주차표지를 타인 양도·대여	6개월 사용정지	1년 사용정지	2년 사용정지
장애인 탑승없이 전용주차지역 주차	경고	6개월 사용정지	1년 사용정지
주차표지 위·변조	6개월 사용정지	1년 사용정지	2년 사용정지

**심사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양도·대여 등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규정으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며,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등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질서 회복 등 사회적 편익이 크므로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강화**

- 거짓 인증시 200만원, 주차 방해시 50만원

**심사결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장애인 보호 등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 사례와 비교할 때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 원안에 동의함



### (1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인증기관 지정시 제출서류 및 보유해야 할 심사전문인력 중 장애인복지(편의시설)분야를 추가하여 규정 **신설**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인증업무 수행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 설명서, 심사전문인력 보유 증명서류, 인증업무 처리규정, 인증업무 수행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심사전문인력 : 도시·군계획, 건축, 도목, 조경,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분야 별로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이중 3명은 상근인력)

**심사결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신뢰확보와 인증의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이며, 타법 사례의 경우에도 전문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관련서류 및 전문인력에 대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등 규제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지정 취소 또는 1년 이내 기간 업무정지 사유 추가 및 행정처분 **신설**

	현행	개정	행정처분기준(신설)		
			1차	2차	3차
위반내용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좌동)	취소		
		(추가)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업무 수행	취소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업무중단	(좌동)	취소		
	심사전문인력 미보유	(좌동)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취소
	기준·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 수행	(좌동)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취소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 거부	(좌동)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취소

**심사결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법적 실효성 담보, 인증기관의 투명성 확보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인정, 동 규정을 통한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등 삶의 질 향상과 국가적 신뢰성 향상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의 근거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인증을 취소 **신설**

**심사결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는 인증이 원천 무효되는 사유이며,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이 변경되면 인증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므로 인증 취소가 타당, 원안에 동의함

### (19)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산후조리업 신고 시 제출서류 추가 **강화**  
- 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심사결과** 산후조리원 설립·신고 시부터 안전 및 감염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신규 산후조리원의 신고과정에서 법적 기준 충족 및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고 판단,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등의 공개 공개 **신설**  
- 산후조리업자는 해당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항목, 내용 및 요금체계를 이용자 및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책자 등에 기재하여 비치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산후조리업자는 서비스 내용 및 요금체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고 산후조리원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며, 한국산후조리업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15.5월)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 원안에 동의함

### (2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의 대행기관 지정 요건 **신설**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적합성 확인업무 수행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 설명서, 전문인력 보유 증명서류, 적합성업무 처리규정, 지회인력 교육방안, 적합성업무 수행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전문인력	건축·토목·조경·장애인복지(편의시설)분야 별로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이중 3명은 상근인력)



**심사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성 있는 대행기관의 지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며, 전문성이 확인된 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도록 한 규정은 필요최소한의 조건이므로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대행기관 지정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사유 **신설**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당연 지정취소)
- 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하여 해당업무를 한 경우
- 대행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업무정지 기간 중 적합성 확인 업무를 한 경우

**심사결과**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고령자·장애인 등 시설이용약자의 편의시설 증대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등 삶의 질 향상과 국가적 신뢰성 향상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 원안에 동의함

## (2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2, 강화 4)

**심사내용** 급여의 제한 또는 정지사유 확대 **강화**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급여 중단 또는 정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li>○ (추가)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때에 수급자가 관여한 경우에도 1년 범위에서 급여 제한</li> </ul>

**심사결과** 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간접적 예방책을 다각도로 실시하였으나, 수급자의 고의적인 담합행위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가 곤란하여, 직접적으로 급여를 제한하는 방식의 규제 필요성과 적정성을 인정,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활동지원기관은 폐업·휴업 신고시 활동지원급여 제공자료를 관할 지자체로 이관하여야 함 **강화**

**심사결과** 현행규정상 활동지원기관의 폐업·휴업 신고시 제공자료 처리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분실 또는 멸실의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폐업·휴업시에도 안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업무정지·지정취소 기간을 강화(1개월→6개월)하고 행정처분 사유를 추가 **강화**

현 행	개 정
<업무정지·지정취소 사유> 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나. 시설·인력기준 미달 다. 활동지원급여 제공 거부 라. 자료제출 등 거부 또는 거짓 제출 마.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청구 사. 지원인력이나 종사자가 수급자를 폭행 또는 성폭행, 유기  (당연 지정취소 : 가, 마)	<업무정지·지정취소 사유> 가. 시설·인력기준 미달 나. 활동지원급여 제공 거부 다. 수급자를 유인·알선·소개 라. 자료제출 등 거부 또는 거짓 제출 마.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청구 마. 지원인력이나 종사자가 수급자를 폭행 또는 성폭행, 유기  <당연 지정취소 사유> 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나. 휴업·정지기간 중 활동지원급여 제공 다. 업무정지처분 3회 이상

**심사결과** 활동지원기관이 수급자 유치를 위해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등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며, 타법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업무정지 명령시 수급자에게 불편 야기 우려 또는 공익 저해시,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신설**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청구시, 청구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

**심사결과** 업무정지시 급여중단으로 인해 수급자 불편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활동지원급여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필요성 인정, 활동지원기관 급여의 질을 담보하고 수급자에게 안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등 사회적 편익이 예상,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인력이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함 **신설**

**심사결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수급자들은 중증장애인들이 대부분으로 범죄에 노출 가능성이 높아 수급자들의 안전을 위해 동 규정이 필요하며, 1:1 대인서비스라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는 최소한의 규제라고 판단,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서비스제공인력의 자격상실 사유 변경, 자격취소 사유 보완, 자격정지 사유 보완 **강화**

구 분	현 행	개 정
자격상실	1. 법 제29조의 활동지원인력 결격사유에 해당 2.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인력이 된 경우 3.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목적외 사용 유도 4. 수급자 소개·알선·유인 등 5. 수급자 폭행상해·성폭행 등 돌봄 소홀행위	1. (좌동) 2. (좌동) (삭제) '자격정지'로 완화 (삭제) '자격정지'로 완화 (삭제) '자격정지'로 완화
자격취소	-	1. 고의·중과실로 수급자 등에게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자격정지 처분 3회 이상 3. 자격정지기간 중 급여 제공
자격정지	-	1.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목적외 사용 유도 2. 수급자 소개·알선·유인 등 3. 수급자 폭행상해·성폭행 등 돌봄 소홀행위

**심사결과** 활동지원인력의 위반행위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자격상실토록 하기보다 위반 행위의 횟수나 경중에 따라 단계별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규제의 적정성 제고 측면이 있어 원안에 동의함

**(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 등 **강화**

- 구급차 장착 장비의 기준, 정보수집·보관 및 장착·관리 기준 강화 : 구급차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요금미터장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착 기준 등
-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 강화
  - (현행) 의료장비: 산소호흡기 등 17개 품목, 구급의약품: 수액 등 8개 품목
  - (강화) 의료장비: 산소측정기 등 19개 품목, 구급의약품: 에피네프린 등 10개 품목
- 구급차등의 세부관리기준 강화 : 구급차의 내부에는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함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설치의무가 부과된 운행기록장치 등의 장착·관리 기준을 정하고, 응급의료 장비 등 보유·관리 기준을 추가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119구급차 등 유사사례 및 해외사례, 유예기간, 응급이송 현장의 긴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행정처분 세부기준 추가 **강화**

-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장비를 장착하지 아니한 경우
- 장비 장착에 따른 정보를 수집·보관하지 아니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 업무정지 1개월, 2차 : 업무정지 2개월, 3차 : 업무정지 3개월

**심사결과**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세분하였으며, 유사 법령과 비교 시 동일한 기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3)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 **강화**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100	150	200
인증 받지 않고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경우	50	100	150
인증표시의 사용 내용 및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	60	100
인증표시 부정사용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50	100	150

**심사결과**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세분하였으며, 유사 법령과 비교 시 동일하거나 완화된 기준이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24)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구급차의 운행연한(年限)을 9년으로 제한(2년까지 연장 가능) **강화**

- \* 차령 기간 만료 2개월 이내 또는 연장된 기간 6개월마다 검사 기준에 적합하면서 구급차의 형태, 표시, 장치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 경우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으로 하위 규정에서 구급차 운행연한 기준 마련하는 것으로 노후된 구급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응급환자 및 보호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구급차 상태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구급차의 운행연한을 “9년(2년 연장시 11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업용 승합자동차와 비교하거나 공공분야 구급차의 내용연수(耐用年數)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것이 아니므로 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㉔ 구급자동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및 **운행연한**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2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종합병원의 일반병상(4~6인실) 확보 비율을 (현행)50% → (강화)70%로 확대 **강화**

※ 단, 일반병상 중에서도 최저입원료만 산정하는 일반병상(6인실) 확보 의무비율 50%는 폐지(⇒ 4인실 중심의 병상환경 개선 유도)

**심사결과** 상급종합병원 등에 입원하여 중증질환 진료를 받는 환자의 입원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비율 70% 확대는 최소한의 수준이며, 의료기관의 손실은 전액 보전키로 결정(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하였고 6인실 확보의무 비율 폐지 등 규제완화 측면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26)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6, 강화 4)

**심사내용** 상담·심리분야 학사학위 이상이고,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를 정함 **신설**

**심사결과**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나 정신건강 관리 인력 부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정서·심리 상담전문인력 필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나 심리·정서적 문제 등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자격요건은 적절하다고 판단,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

— 대상아동수 × 정부보육료 평균지원단가(286천원) × 3개월  
(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에 限)

**심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동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업주 부담 완화 및 실제 보육수요 등을 감안, 보육대상 아동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 개선 권고함

**심사내용**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에 따른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및 영상정보의 열람절차 규정 **신설**

**심사결과** CCTV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로서 영상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개인정보 당사자의 열람권 보장 필요,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에 따른 설치기준 마련 **강화**

- 설치장소 : 각 보육실, 공동놀이시설, 놀이터, 식당, 강당에 1대 이상씩
- 운영 : 일정 방향 지속촬영, 임의 조작 및 녹음금지
- 성능 : 130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 60일 이상 저장 용량
- 안내판 설치 : CCTV 설치목적, 설치장소·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연락처 기재 (출입구 등)

**심사결과** CCTV의 설치장소·운영기준·성능기준, 안내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집 내 영유아의 안전 확인 및 CCTV 운영관리 등 규제의 목적을 감안할 때 그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에 따라 보관된 영상정보의 처리기준 및 관리대장 작성의무 **신설**

- 보관기간이 경과한 영상정보의 주기적 삭제  
(단, 보관기간 경과전 열람요청시 또는 아동학대·안전사고 관련 영상은 보관)
- 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작성, 3년간 보관

**심사결과** 영상자료의 주기적 삭제로 영상자료 저장에 따른 설치·관리자의 부담은 덜어주되, 아동학대나 안전사고 관련 영상은 보관함으로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규제의 적정성 인정,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에 따른 운영기준 마련 **강화**

- CCTV 관리책임자 지정
- 영상정보는 130만 이상 화소수로 10프레임/1초 이상 저장
- 정보 유출 및 오·남용 예방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장착
- 설치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영상자료 사용 및 임의 삭제 금지
- 녹화된 영상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보관, 접근 제한
- 보호자 등이 열람요청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시 열람 조치

**심사결과** 영상정보의 설치목적 외 사용금지 및 임의조작·삭제 금지, 영상자료의 물리적 보안조치는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적정성을 인정,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관기준 마련하고,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참관할 수 있도록 함 **신설**

**심사결과** 참관방법, 규모 등 세부기준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마련하고,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참관하게끔 함으로써 참관권과 어린이집 운영의 조화를 꾀하는 등 규제의 적정성을 인정,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 시설폐쇄하였으나, 아동에게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시설폐쇄하도록 함 **강화**

**심사결과** 아동학대는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그간 학대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1회 위반시에도 시설폐쇄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이라 판단,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원장이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시 자격정지 기간을 강화(1→2년), 원장이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 조치시 1년간 자격정지 함 **강화**

**심사결과**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경감심 고취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처벌조항을 강화·신설한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 인정,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한 바, 위임 범위에도 부합,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보조금 부정수급 또는 유용시 명단을 공표해야 할 금액기준 **신설**

- 3백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으로 누적 2백만원 이상일 경우

**심사결과** 일정금액 이상의 보조금 부정수급·유용시 명단 공개로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어린이집에 경각심을 제고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등 규제의 필요성 인정, 명단공표의 대상금액은 현행 행정처분 기준상 운영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도하지 않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 (27)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운영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 **강화**

-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미설치)
-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최소사양 미준수 등)
-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영상정보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CCTV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결과**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를 구체화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였고, 같은 별표의 다른 위반행위와 타법사례에 비추어 과태료 금액이 낮은 수준으로 규제가 과도하지 않아, 원안에 동의함

### (28)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완화의료전문기관이 ‘가정’ 또는 ‘완화의료병동 이외의 병동’(일반병동)에서 완화의료를 제공 또는 자문하고자 할 경우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 강화 및 필수인력 등의 의무를 추가 **강화**



〈완화의료전문기관 인력 기준 강화〉

구분	현행(완화의료병동내)	추 가(완화의료병동 외 병동 또는 가정)
의사	환자 수를 20으로 나눈 수 이상	○ '완화의료병동 이외의 병동'에서 완화의료 자문을 제공할 경우 : <b>전문의 1명 이상 포함</b>
전담* 간호사	환자 수를 2으로 나눈 수 이상 * 완화의료병동 소속, 완화의료 업무만 종사	○ '가정'에서 완화의료를 제공할 경우: <b>호스피스 전문간호사 또는 가정전문간호사 1명 이상 추가</b> ○ '완화의료병동 이외의 병동'에서 완화의료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 <b>호스피스전문간호사 1명 이상 추가</b>
사회 복지사	상근 1명 이상	○ '가정' 또는 '완화의료병동 이외의 병동'에서 완화의료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b>사회복지사 1급 1명 이상 포함</b>
교육 이수	기본교육 60시간 보수교육 연간 4시간	○ '가정' 또는 '완화의료병동 이외의 병동'에서 완화의료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 <b>16시간의 추가교육</b>

**심사결과** 가정 및 일반병동에서의 완화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체계를 갖추 수 있도록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인력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나, 자격요건을 강화할 경우 그간 가정·병동에서 호스피스를 제공한 간호사가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방안이 필요하고 일반병동에서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종양전문간호사도 교육과정, 임상경력을 고려,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간 가정·병동에서 호스피스를 제공한 간호사는 자격을 인정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종양전문간호사도 일반병동 내 완화의료 자문이 가능하도록 중요 규제에 보아 개선권고함

(2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8)

**심사내용**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업무 및 업무위탁 대상기관, 인력·시설기준 등을 정함 **신설**

**심사결과**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으로는 자해·공격성 등 문제행동을 갖고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어, 전문치료 기관 마련이 시급하고,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에 대한 기능평가와 응용행동분석적 치료 등 전문적 지원을 위한 인력·시설기준 등의 적정성 인정,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신설**  
 - 사회복지사(1급), 변호사, 특수교사(정교사 이상), 상담인력 등

**심사결과**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라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자격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동 규정을 통해 센터의 공공성·전문성을 확보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지정취소를 받은 자의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금지기간 지정(6개월) **신설**

**심사결과** 불법·부정한 행위에 대한 지정권자의 제재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재발방지와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규제의 필요성 인정,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발달장애인에 대한 위반행위시 과태료 기준 마련 **신설**

- 발달장애인 유기 등 미신고(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현장조사 거부·기피(150만원, 250만원, 300만원)
- 폐업·휴업시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한 자(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등

**심사결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 방지 및 관리·지원체계의 유지를 위한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 마련으로 제재업무의 효율성과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 규제의 필요성 인정,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설치기준 **신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중에서 상근인력이 최소 2인 이상인 기관

**심사결과** 위기발달장애인쉼터는 기존의 장애인거주시설 중에서 지정하며,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중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하곤 상근인력이 2명 이상이므로 상근인력 기준(2명 이상)은 과도한 수준이 아니므로,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거점병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신설**

- 지정기준 : 발달장애인을 진료하는 전문의 3명 이상(소아정신과전문의 1인 이상), 발달장애로 병원에 진료 및 치료를 위해 방문하는 환자수가 연 평균 100명 이상, 내외과적인 문제 또는 치과적인 문제에 대해서 직접 진료하는 전문의가 있거나 주변의 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한 병원, 발달장애 치료 인력(임상심리사, 특수교사, 언어재활사 등)이 5명 이상 등



- 취소기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거점병원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취소를 희망하여 거점병원 지정서를 반납한 경우, 제20조제3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결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평가기준은 환자의 수요, 적절한 치료 제공능력 등을 고려, 거점병원이 발달장애인에게 효율적 의료지원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것이므로 적정성을 인정,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심리상담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 **신설**

- 상담관련 박사이상 학위취득자, 상담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상담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등

**심사결과** 심리상담서비스 제공인력 기준과 관련한 기존 사업 지침, 타법사례 등과 비교할 때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신설**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지정취소)
- 시설·인력기준 등 지정기준 미충족(경고, 정지7일, 정지15일, 지정취소)
- 자료제출·보고 요구의 거부·방해·기피 등(지정취소)
-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 누설(경고, 정지7일, 정지 15일, 지정취소)

**심사결과** 서비스제공기관의 불법·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 확보 및 위반행위 방지로 서비스 수혜자의 피해 예방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규제의 필요성 인정, 원안에 동의함

**(30) 아동복지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아동복지법으로 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 실시 대상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외에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을 추가하고, 해당 기관에 소속된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연간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함 **신설**

**심사결과** 종합병원 및 아동복지시설은 의료인, 응급구조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상시근무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실시 필요,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 미실시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강화**

구분	위반행위	과태료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 미실시</li> <li>○ 피해아동 인수 거부</li> <li>○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미확인</li> <li>○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해임요구 거부 또는 미이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150만원), 2차(300만원)</li> <li>○ 1차(500만원), 2차(1,000만원)</li> <li>○ 1차(250만원), 2차(500만원)</li> <li>○ 1차(500만원), 2차(1,000만원)</li> </ul>
강화	○ 아동안전교육 미실시	○ 1차(100→150만원), 2차(200→300만원)

**심사결과** 과태료 부과대상별 횟수별 금액을 구체화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였고, 같은 별표의 1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상한 금액의 1/2로 하는 등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원안에 동의함

### (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입원 진료 비용의 본인부담 강화 **강화**

- (현행)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20%
  - \* 입원 진료비 : 입원료(병실료), 수술비, 처치비, 검사료, 약제비 등
- (강화) 입원 진료비 중 입원료(병실료)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15일 이하 20%, 16~30일 25%, 31일 이상 30%로 함
  -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및 16일 이상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경우(복지부장관이 정함)는 현행대로 20%만 부담

**심사결과** 장기입원 할수록 본인부담(1일당 입원료)이 낮아지는 모순을 개선하고 상급병실료 개선(입원료 부담 경감 등)으로 인한 장기입원 개연성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별 추가 부담 정도,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등 유사제도, 본인 부담을 입원기간에 상응토록 한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인부담 인상율을 당초 개정안에 비해 낮추고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는 입원료 인상에서 제외토록 수정안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함



### (32)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취소의 기준 마련 **강화**

- 인권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 강화
  -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국·공립 정신병원, 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
  - (추가) 현행 기준에 해당 기관 중 ‘인권전문교육강사 1인 이상’을 두고, ‘연 3회 이상 소집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 인권전문교육강사 자격기준 강화
  - (현행) 최근 3년 이내 인권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정신보건시설 운영자, 정신보건 업무 담당 공무원, 복지부 승인을 받은 자
  - (추가) 현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인권교육 강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인권전문교육기관 업무정지 및 지정 취소 기준
  - (현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추가) 인권전문교육강사를 6개월 이내에 채용하지 않은 경우, 소집교육을 3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에 따라 인권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기존 인권전문교육기관의 운영현황, 영유아보유법상 유사사례 등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정신보건시설의 장의 고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 **강화**

- 퇴원 또는 처우개선,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에 관한 사항을 구두 및 서면으로 알려야 함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에 따라 환자 및 보호의무자가 입원과 동시에 퇴원 청구, 처우개선 요구에 관한 권리를 명확히 인식·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외사례 및 유사사례를 고려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정신보건전문요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강화**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		
나. 법 제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취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7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			
1)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취소		
2)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여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3) 그 밖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심사결과**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세분하였으며, 유사사례를 고려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함

(33)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약제비 본인부담 조정 **강화**

- (현행)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 정액 500원
- (강화)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에 경증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의 경우,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을 정률제(3%)로 조정

**심사결과** 의료법상 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역할 및 기능에 맞게 이용토록 유도하는 것으로 유사 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점, 경증질환에 국한하고 있는 점, 1차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은 제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함



### (34)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장애인등록증 등록 취소 사유 **신설**

처분내용	현행	개정안	비고
등록증 반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li> <li>○ 장애요건 미충족</li> <li>○ 장애진단 명령 등 거부</li> <li>○ 등록증 양도·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증 양도·대여</li> </ul>	제32조 (기존)
등록증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li> <li>○ 장애요건 미충족</li> <li>○ 장애진단 명령 등 거부</li> </ul>	제32조의3 (신설)

**심사결과** 장애인 등록 여부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수급을 위한 기본요건이므로, 장애인 복지 대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관리강화의 필요,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사유에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 추가 **강화**

**심사결과**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대부분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거나, 의사전달이 불명확하여 인권침해 발생시 방어나 사후처리가 곤란하므로 사전 예방이 중요한 바, 종사자 등 관리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에 동의함

### (35)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 기준 개선 **강화**

구분	현행 권역센터 기준	개정 권역센터 기준
응급의학전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의학전문의 4인, 전담전문의 2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의학전문의 5인 이상</li> <li>- 환자 1만명당 1인추가(전년도 응급실 기준)</li> </ul>
간호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인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인 이상</li> <li>- 환자 5천명당 3인추가(전년도 응급실 기준)</li> </ul>
응급구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급 응급구조사 5인 이상 (위탁가능)</li> </ul>
시설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10병상</li> <li>○ 응급환자 진료구역의 병상간 간격은 1.5m 이상을 확보</li> </ul>
감염격리병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압병상 2병상, 일반 격리병상 3병상</li> </ul>

**심사결과** 중증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병상 및 인력 등을 확보하기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응급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인력을 규정할 점, 해외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 기준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요로 보아 원안의결함

### (36) 입양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국외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협약에 포함해야할 사항 규정 **신설**

- 사후관리의 횟수 및 방법
- 아동의 신체발달, 정서발달 및 양부모와의 유대관계 등 사후관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한국 입양아동에 특화된 사후관리 방안
- 사후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사결과** 국외입양은 국내·외 입양기관 간 협약으로 이루어지고,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는 국외입양기관의 역할이므로, 국외입양아동의 권익보호 및 양육지원을 위해 협약에 담은 사후관리 관련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관리 관련 협약 포함 사항을 검토한 결과,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에 동의함

### (37)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

-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과태료 400만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에 따라 500만원 이하에서 과태료 금액을 확정하려는 것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유사사례와 비교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함

### (38)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전문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기 변경 **강화**

- (현행) 모든 완제의약품은 의약품공급내역 현황을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 관리 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
- (개정) 전문의약품은 의약품공급내역 현황을 제품을 출하할 때 보고



**심사결과** 의약품의 유통 투명화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의약품의 실시간 이력 관리를 시행하는 것으로 현행 법령에서는 월 보고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불법·위조 의약품을 판별하려는 제도 취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 보고 시기 변경은 필요하며 이력추적 시스템 도입 관련 해외 사례 및 유사 사례, 장기간 제도 도입 예고 및 업계와 협의·추진 등을 감안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반영하였으므로 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함

### (39) 의료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간호지원사의 자격요건 등 **강화**

- 간호지원사 양성체계 재설계
  - (현행)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조무사(자격) 시험에 합격
    - ※ 고등학교 졸업학력 동등 이상자로서, 간호특성화고·학원 등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에서 이론 740시간·실습 780시간을 이수(現 시행규칙)
  - (개정) 간호지원사(간호조무사 → 간호지원사 명칭변경)가 되려는 사람은 복지부장관이 평가하여 인정한 교육기관<sup>\*</sup>을 졸업하고 1(면허)/2급(자격) 간호지원사 시험에 합격
    - ※ 현행 간호조무사는 일괄 2급으로 전환하고 일정 요건(의료기관 5년 경력, 교육이수, 1급 시험 합격 등)을 갖춘 경우 1급 면허를 취득(부치)[1급은 전문대학 졸업자, 2급은 현행과 동일(시행규칙 개정 예정)]
- 간호지원사의 업무범위 근거 마련
  - (현행) 간호지원사는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
  - (개정) 간호사는 간호지원사를 지도·감독<sup>\*</sup>, 간호지원사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 업무를 보조<sup>\*\*</sup>
    - \*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등의 지도 아래에서도 간호 업무에 종사
    - \*\* 다만,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평가, 간호계획의 수립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음

**심사결과** 보건복지부의 문제의식은 공감하나, 해결방안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同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 및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

-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부족
- 간호조무사의 명칭변경 및 1/2급 구분의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미흡
- 2년제 전문대학 출신 간호지원사에 대한 차등적 대우 필요성 검토 미흡
- 해외사례(3단계 간호인력 체계) 검토의 객관성 미흡
- 1급 면허제도 도입의 규제적인 성격(시장진입 장벽 도입)을 고려,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

⇒ 보건복지부에서 자진철회함

#### (4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시설기준) 강화 **강화**

- 소방 및 편의 관련 시설기준 마련
  -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휠체어 접근·이동성 제고, 장애인용 위생시설 등
  - 소방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심사결과** 장애아동의 안전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방·안전사고에 대비한 소방 및 편의시설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수준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적정성을 인정, 원안에 동의함



### (41) 노후준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노후준비지원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가. 정보제공을 거부한 자(금융회사 등의 장)	100	200	500
나. 보고·검사 등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노후준비지원센터 소속 임직원)	100	200	500
다. 금지행위를 한 자(유사명칭 사용 또는 표시·광고한 자)	100	200	500

**심사결과**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른 노후준비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있는 등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에 동의함

### (42)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 제도 강화 **강화**

- (현행)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온 결산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매년 제출
- (추가) 결산서 제출 병원 중 법인이 개설한 종합병원은 결산서 중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공시하도록 함

**심사결과** 법인이 개설한 종합병원(100병상 이상)의 회계 투명성·책임성 및 신뢰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결산서를 공시토록 하는 것으로 이미 제출하고 있는 결산서 일부를 공시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부담이 없고, 사회복지법인의 공시 등 유사사례, 해외에서는 모든 병원에 대해 공시하는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함

### (4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 구체화 **강화**

- (현행) 구체적 규정 없음
- (강화)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 위치정보 및 위치추적자료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에 따라 감염병 환자 등의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통신사·카드회사 등에 요구할 수 있는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실제 메르스 사태 시 활용된 정보로 한정하고 있는 점, 해외 사례 및 국내 유사사례를 고려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대해 거짓 진술 등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강화**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회	2회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경우	500만원	1,000만원

**심사결과** 1,000만원 이하에서 위반 횟수 별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성실하게 법령을 준수하는 자에게는 규제강화로 작용하지 않고 법 위반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 등을 감안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함

#### (4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감염병원체 확인기관의 신고절차 규정 마련 **강화**

- (현행) 의료기관 장 등의 신고절차 규정(신고서 제출 등)
- (추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신고절차 규정(신고서 제출 등)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신고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면 되고, 해외에서도 유사한 절차를 두고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감염병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장소를 구체화 **강화**

- (현행)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 (강화) 약국,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심사결과** 기존에는 법률에서 규정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던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규정된 장소는 실제 감염 사례 등을 고려한 것이며 상위법에서 정한 장소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함



### (4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보육교사 자격취득시 대면 교과목 신설 및 보육실습 기준 강화 **강화**

– 인성영역 등 3개 영역 및 9개 과목

구 분	교과목(9개)
인성 영역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보육관련 지식 및 기술 영역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보육실무 영역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8시간 이상 출석수업 및 1회 이상 출석시험 실시

– 현장실습기간 확대(4주 160시간→6주 240시간)

**심사결과** 사이버교육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취득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보육현장 적응 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해 대면교과목 지정과 교육방식을 정할 필요성과 적정성 인정, 보육교사의 현장 적응능력 함양 및 자질 향상을 위해 현장 실습기간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과 적정성 인정, 원안에 동의함

## 2. 여성가족부

◎ 집필자 안 호 사무관 ☎ 044-200-2443 ✉ stephen119@pmo.go.kr

### 가.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5년도에는 청소년보호법 등 7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4건, 강화 6건 등 총 20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일몰심사 1건)
- 심사대상 20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19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2.0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2.1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행정사회분과위 (2015.04.10)	개선권고 1 원안의결 3	신설 4 (중요 1, 비중요 3)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5.04.2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7.1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4.07.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2015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	행정사회분과위 (2015.09.18)	-	일몰규제 1건
(8)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30)	원안의결 7	신설 2, 강화 5 (비중요 7)
<b>계</b>		<b>개선권고 1 원안의결 19</b>	<b>신설 14, 강화 6 (중요 1, 비중요 19)</b>



## 나.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 이전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우선변제권자가 없는 경우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세금환급예정금액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이전하여야 함 **신설**

**심사결과**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타당성이 인정되고, 양육비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적정한 수준이므로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양육비이행관리원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1차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 **신설**

**심사결과** 수요자 등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명칭 사용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민들에게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지도를 높이고 서비스의 신뢰성 제공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 원안에 동의함

### (2)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주류나 담배 판매·대여·배포하는 소매업 영업자에게 청소년 대상 주류 등의 판매를 금지한다는 표시기준을 규정 **신설**

**심사결과** 청소년들에게 주류 및 담배 유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게시물의 재질·글자크기 등 선택에 자율성을 부여하므로 과도하지 않으며, 청소년들에게 유해물질의 유통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편익이 크므로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주류나 담배 판매·대여·배포하는 소매업 영업자에 청소년에게 주류 등의 판매를 금지한다는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신설**

**심사결과** 게시물 표시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며, 과태료 부과수준도 타 법령에 비해 적은 수준이므로 원안에 동의함

###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기준 **신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기준〉

구 분	규모	공통사항
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50㎡	사무실 1개, 상담실 1개(방음장치 등 확보), 휴게실 1개, 교육실 1개
시·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50㎡	

**심사결과** 유사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비해 설치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고, 기존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이 지정됨을 감안할 때 추가비용이 거의 없어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자격 기준 **신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구 분	자격기준
센터장	1. (관련분야) 학사 이상+실무 5년 2. (관련분야) 전문대학+실무 7년 3. 전문자격+실무 5년 4. (관련분야) 실무 5년(시장 등이 인정한 사람)
관리업무 수행 직원	1. (관련분야) 학사 이상+실무 3년 2. (관련분야) 전문대학+실무 5년 3. 전문자격+실무 3년
청소년대상 실무 업무 수행 직원	1. (관련분야) 학사 이상 2. (관련분야) 전문대학+실무 2년 3. 전문자격 소지자

**심사결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교육·자립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사자의 자격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상 실무적 경험이 중요하므로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도록 개선권고함

- ※ 청소년 관련분야 확대(청소년 대상 육성·활동·복지·보호 등 업무 종사 경력), 실무경험만 있는 자에 대해서도 자격 부여(소장 10년, 팀장 7년, 팀원 5년)



**심사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위반
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개선명령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개선명령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심사결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을 미달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행정처분을 통해 지원센터의 적정운동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타 입법례에 비해 상당부분 완화된 점을 고려,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위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유사명칭 사용 경우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심사결과** 유사 명칭 사용시 수요자 등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이의 금지가 필요하고, 국민들에게 지원센터의 인지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 원안에 동의함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학교장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입학 또는 재입학 지원 의무 **신설**

**심사결과** 학교장에 예산 투입 등 학생의 지원에 대한 적극적 지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정상적으로 학업을 복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협조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학교장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연계의 의무 **신설**

- 학교 밖 지원센터에 청소년에 대한 정보 송부
-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고자 하는 경우 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센터 관련 정보 안내

**심사결과** 설문조사 결과 지원체계의 부족이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조사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장이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최소한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에 국한하고, 청소년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바, 원안에 동의함

####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성폭력피해자가 전학·편입학할 경우,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승낙하여야 함 **신설**

**심사결과** 성폭력피해자의 취학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입학 승낙하고 있는 타법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수준이 아니므로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신설**

- 1년 내 동일행위로 2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명령을 위반으로 처벌 또는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청구한 경우
-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 취소 후 2년 이내 지정 불가

**심사결과** 부정한 방법의 의료비 청구나 부적절한 치료 방지를 위해 동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유사사례의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수준이 아니므로 원안에 동의함



## (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 **강화**

위반행위	현행	개정
거짓·부정으로 결혼중개업 신고·등록	1차(정지 3월) 2차(정지 6월) 3차(정지 1년)	1차(영업소 폐쇄)
법 6조(결격사유)에 해당	1차(정지 1년)	1차(영업소 폐쇄)
보증보험 미가입	1차(정지 3월) 2차(정지6월) 3차(정지 1년)	1차(좌동) 2차(좌동) 3차(영업소 폐쇄)

**심사결과** 보증보험 가입의무 미이행 등 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행정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제강화가 필요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이 유사법령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 원안에 동의함

## (7) 2015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 (일몰규제 1)

구분	계	규제 폐지	규제개선			규제존속		
			일몰 연장	일몰 해제	일몰 변경	일몰 연장	일몰 해제	일몰 변경
국무조정실	10	0	1	0	0	9	0	0

**규제내용**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 범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심사결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구제함으로써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규제존속에 동의하지만, 유해업소 범위가 시대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신종·변종 업소가 출현할 수 있으므로 유해업소의 범위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일몰을 유지할 필요

## (8)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신설 2, 강화 5)

**심사내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제결, 보조금 횡령 등의 경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간(2년) 자격을 제한 **신설**

**심사결과**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취소사유·근거를 명확히 하여 위탁취소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부적절한 위탁운영단체의 수련시설 운영을 제한하여 안전한 청소년활동 보장 등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수련시설운영자의 종합 안전점검 관련자료 제출 의무 추가 **강화**

**심사결과**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의 정확성과 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 수련시설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며, 타법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수준이 아니므로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시설운영자에게 수련시설 종합평가에 필요한 관련자료 요구 및 이행의무 부과 **강화**

**심사결과** 종합평가의 정확성,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수련시설을 조성하는 등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타법사례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수준이 아니므로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현행법상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과 같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시정명령 대상을 구체화하여 명확히 규정 **강화**

- 안전점검 미실시 및 보안요구 등 미이행
- 종합 안전점검 결과, 시설의 보완 등 요구 미이행
- 종합평가 결과, 개선요구 미이행
- 자료 미제출(이용률·프로그램 현황 등)

**심사결과**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 방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의 법적 요건 준수 도모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화하였을 뿐 새로운 사항을 추가·확대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청소년수련시설의 인증 취소 사유 추가 **강화**

- 시설 붕괴 등 안전 확보 현저히 미흡
- 수련활동 참가자 등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
-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성범죄 등 발생

**심사결과**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취소사유를 4가지로 특정하고 있어 과도한 수준이 아니므로 원안에 동의함



- 심사내용**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특수법인인 한국청소년 수련시설협회를 감독대상에 추가 **신설**
- 심사결과** 국고지원을 받는 협회에 대한 감독은 재정운영의 적정성, 공공성 등 확보를 위해 필요하며 그 수준도 적정하므로 원안에 동의함
- 심사내용**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300만원 과태료 부과 **강화**
- 심사결과**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며, 그 수준도 과도하지 않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 3. 식품의약품안전처

☎ 집필자 이상훈 사무관 ☎ 044-200-2399 ✉ lsh@pmo.go.kr

#### 가.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5년도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62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1건, 강화 86건 등 총 97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97건 중 6건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91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사회분과위 (2015.01.26)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2)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1.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조식은행허가등 세부운영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1.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1.28)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5) 식품위생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2.0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5.02.0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2.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5.03.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사회분과위 (2015.03.03)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10)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5.03.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5.03.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2) 의약품의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3.0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3) 의약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3.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4) 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 제정안	예비심사 (2015.03.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5)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3.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사회분과위 (2015.03.18)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17)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4.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2015.03.20)	개선권고 2	강화 2 (중요 2)
(19)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5.0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5.0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1)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5.0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2)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5.06.0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3)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5.06.0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4)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6.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5)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6.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2015.07.03)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27)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7.0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8)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7.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9) 식품위생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7.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0)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행정사회분과위 (2015.07.13)	개선권고 1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3 (중요 1, 비중요 4)
(31) 의약품 품위지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0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2) 약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24)	원안의결 5	신설 1, 강화 4 (비중요 5)
(3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31)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34)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9.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5)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9.0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6) 축산물물의 표시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5.09.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7)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9.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8)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9.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9)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9.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0) 의약품 품위표준제조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5.09.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1)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9.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2)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9.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3)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6)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7) 2015 재검토행 일몰규제 규제심사	행정사회분과위 (2015.10.16)	-	일몰규제 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48)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9)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5.11.02)	원안의결 5	신설 3, 강화 2 (비중요 5)
(5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5.11.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23)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5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23)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5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27)	원안의결 7	강화 7 (비중요 7)
(56)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7)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04)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58)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04)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59)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0)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 심사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1)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22)	원안의결 7	강화 7 (비중요 7)
(62)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5.12.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3)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24)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b>계</b>		<b>개선권고 6 원안의결 91</b>	<b>신설 11, 강화 86 중요 7, 비중요 90</b>

## 나.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식품관련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강화 **강화**

-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 (현행)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20만원
  - (개정)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381만원(신설)
- \* 과징금 =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 영업정지 기간

**심사결과** 현행 과징금 체계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개정안의 내용은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 특히 영세사업자에 여전히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어 법령 개정취지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바, 이를 반영토록 하되, 제재 실효성도 고려하여 영세사업자의 과징금 수준을 조정하고 적정성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재검토일몰(2년)을 설정할 것을 **개선권고함**

아울러, 재검토시 시행효과를 분석하여 과징금 적정성 뿐만 아니라 현행 과징금 체계의 개선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부대권고함**

### (2) 축산물의 가공 기준 및 성분 규격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강화 **강화**

- (축산물의 미생물 검사기준)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하여 장출혈성 대장균 중 O157:H7만 미검출되면 되었으나, 「장출혈성 대장균」 전체로 확대·적용
- (조제유류 기준·규격) 영·유아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요구량 충족을 위하여 열량, α-리놀렌산, 리놀레산과 α-리놀렌산의 비율, 탄수화물 규격 신설, 조단백질·조지방 규격 변경, 비타민C·B12, 구리의 최대권장기준 신설
- (성장기용 조제분유·성장기용 조제우유) 열량 규격 신설
- (아이스크림류 등의 세균수 규격)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 믹스류 세균수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



**심사결과** 최근 국제적으로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인한 대규모 식중독이 빈발하고, 다수의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장출혈성 대장균에 대한 식품안전기준 강화가 필요  
 조제유류는 영·유아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유일한 영양공급원으로서, 균형 잡힌 영양공급이 필요한바, 모유의 영양성분 함량, 영·유아 영양섭취기준, 국내·외 기준규격 조화를 통한 일부 영양성분 규격의 개선 필요  
 미생물 오염의 불균일성을 고려하여 시료수 확대, 검출수준의 범위 지정 등 미생물 규격의 과학적·합리적 적용을 위한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규격(삼군법: n, c, m, M) 도입 필요성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에 **원안의결함**

### (3) 조직은행허가등 세부운영 규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조직은행 허가 등 세부운영 규정 강화 **강화**

- ‘시험방법’ 규정 신설

구분	검사항목	시험방법	비고
현행	B형간염검사	○ 규정 없음(가이드라인으로 NAT 등 시험방법 권장)	○ 실제 Ag(항원), Ab(항체) 등 검사방법으로 시험
	C형간염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		
	매독검사		
변경	B형간염검사	HBsAg, HBcAb 또는 HBV NAT	항원·항체검사 유지
	C형간염검사	HCV Ab, HCV NAT	NAT* (핵산증폭시험)을 의무화하는 것임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	HIV 1/2 Ab, HIV NAT	
	매독검사	Syphilis(RPR 등)	항원·항체검사 유지

- ‘조직에 오염 시 폐기해야 하는 유해성 미생물의 예시’ 규정 신설

\* Clostridium species: 클로스트리디움 속 혐기성세균, Group A Streptococcus(Streptococcus pyogenes)  
 : 그룹 A 연쇄상구균(화농연쇄상구균), Fungi(Yeast/Molds): 곰팡이류 등 8종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적합성 검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국내 유사사례 및 해외사례에서도 ‘혈액검사’ 시 ‘핵산증폭검사(NAT)’를 의무화하고 있고 강화된 혈액검사 기준 도입을 위해 1년간 유예기간(16.1.1일 까지)을 두었으며,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핵산증폭검사(NAT)를 적십자사(혈액검사센터)에 위탁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음

또한, 유해성 '미생물검사'의 판정 시 각 조직은행의 의료관리자가 참고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4)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제조판매업자가 수입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 면제평가를 받았으나 사후관리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품질검사 면제를 취소 근거 마련 **강화**

- (현행) 현지실사에 필요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평가방법 등을 고시
- (변경) 현지실사에 필요한 제출서류, 평가방법, 사후관리 및 평가인정의 취소 등을 고시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에 따라 同 규정에서 품질검사 및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제 취소'도 同 규정에 마련하는 것으로 수입화장품의 품질을 유지할 경우 품질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고 '면제 취소'되더라도 품질 수준을 갖춰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인체 청결용 물휴지'를 화장품의 유형에 추가 **강화**

**심사결과** '인체 청결용 물휴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물품 분류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것으로 해외 사례, 다른 물티슈 제품에 대한 규제 강도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제조 및 제조판매 유형 변경' 미등록 시 행정처분 기준 추가 **강화**

	규제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b>현행</b>	○ 대표자, 상호 변경	경고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15일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3개월
	○ 소재지 변경	제조업무정지 3개월	제조업무정지 6개월	제조업무정지 12개월	등록취소
	○ 제조판매관리자의 변경	경고	판매업무정지 15일	판매업무정지 1개월	판매업무정지 3개월
<b>추가</b>	○ <b>제조업 유형 변경</b> ○ <b>수입대행형(전자상거래)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제조판매업자가 업유형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b>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등록취소
	○ <b>그 밖의 제조판매업자가 업 유형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b>	경고	판매업무정지 15일	판매업무정지 1개월	판매업무정지 3개월



**심사결과** 수입대행형(전자상거래)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당초 가벼운 요건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엄격히 관리되는 업 유형(제조·위탁제조·수입판매업자)으로 변경할 경우 미등록 시 강화된 수준으로 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5) 식품위생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과징금 부과 한도금액 상향조정 **강화**

- (현행) 2억원 → (개정안) 10억원으로 상향조정

**심사결과** 과징금 부과 체계 개편의 취지·목적이 현행 과징금의 역진성 개선 및 제재의 실효성 확보에 있는바, 과징금 한도 금액 상향조정의 필요하여 적정과징률(영업이익률+ 기준경비율)을 근거로 영업정지 1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개편(1일최고금액: 220→1,381만원)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6)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강화 **강화**

- 식품첨가물로 사용가능한 합성착향료 목록 축소
  - 합성착향료 중 3-acetyl-2,5-dimethylthiophene 목록 삭제
-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아황산류 6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 이산화황류 6품목 잔류기준
    - ▶ (현행) 건조과실류 : 1.0 g/kg
    - ▶ (개정) 건조과실류 : 1.0 g/kg(건조코코넛의 경우에는 0.20g/kg)
- 아스파탐의 사용기준 적용범위 개정
  - (현행) 건강기능식품 중 영양소 제품 : 5.5g/kg 이하  
(기능성 원료제품은 사용기준 제한 없음)
  - (개정) 건강기능식품 : 5.5g/kg 이하(전체)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 사용가능한 성분 일부 삭제

\* 염화세틸피리디움, 염화세틸피리디움일수화물, 올리오(염화 2-(2-에톡시)에톡시에틸구아니디움)

**심사결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합성착향료 성분을 사용가능 목록에서 제거하는 것이며, CODEX, EU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이황산류 6품목의 사용기준을 0.2g/kg으로 정하고, 아스파탐 사용기준을 건강기능식품 중 기존의 영양소 제품 외에 기능성원료제품에 대해서도 제한하는 것으로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 기구등의 살균 소독제 제소성분인 염화세틸피리디움 등 3종 성분은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성분으로,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소비자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염화세틸피리디움 등 3종 성분의 삭제하는 것이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 확대 **강화**

– (현행)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10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

\* 카페인 함량이 0.15mg / ml 이상인 탄산음료(예: 레드불, 번인텐스 등 에너지음료)

– (개정)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

\* 카페인 함량이 0.15mg / ml 이상인 가공유류, 발효유류(예: 커피우유 등)

**심사결과**

식품위생법 상의 에너지음료에 비해 현재 판매중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의 가공유류(커피우유 등)의 카페인 함유량이 더 높은 수준\*이고 청소년의 식품섭취 실태조사 결과 카페인 일일 섭취 기여비율이 커피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몸무게 30kg인 어린이의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이 75mg인데 현재 판매중인 가공유류의 카페인 함량은 평균 92mg에 달해 어린이가 1개만 마셔도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을 초과



## (8)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강화 **강화**

- 2종 A급기기\*에 대한 전자파방사 장애 허용기준 강화 :

(당초) 30m, 10m 거리에서 측정 → (추가) 3m 거리 측정

\* 2종A급기기 : 의도적으로 전자파를 발생하여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 이외의 모든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예 : MRI, 고주파·초단파 자극기 등)

- 2종 B급기기\*에 대한 전자파방사 장애 허용기준 강화 :

(당초) 10m 거리에서 측정 → (변경) 3m 거리 측정

\* 2종B급기기 : 의도적으로 전자파를 발생하여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력에 적합한 기기(예 : 개인용 초단파자극기 등)

- 1종 A급기기\*에 대한 전자파방사 장애 허용기준 강화 :

(당초) 0.15~30MHz 주파수대역 기준 없음 → (신설) 기준 설정

\* 1종A급기기 : 의도적으로 전자파를 발생하지 않는 기기로서 가정 이외의 모든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예 : X-ray시스템, CT, 초음파장비 등)

심사결과

국제적 수준의 전자파 안전관리 기준 확보 및 국산 의료기기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국내 전자파 기준규격을 국제기준에 맞추는 것으로 해외 주요국도 새로운 규격을 반영하고 있고 국내 산업표준(KS)도 동일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9)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약사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합의내용 제출의무 해태시 과태료의 세부부과 기준 등을 규정 **강화**

\* 특허권자·품목허가자·후발 제약사간 또는 후발 제약사간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 내용 등을 식약처·공정위에 제출하도록 규정(법 제69조의3)

\* 합의사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97조의2)

- (기본금액) 등재의약품의 전년도 총생산(수입)금액의 0.02% 부과

- (기한경과) 하루를 초과할 때마다 기본금액의 0.5% 가산

**심사결과** 합의 사항 제출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사법(제97조의2)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법정 최대금액을 고려하여, 생산·수입 규모 최상위 구간의 제약업체가 위반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비율을 상정한 것이고 제약업계 의견도 없으므로 원안의결함

## (10)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강화 **강화**

- 규격 미설정 유해물질에 대한 적부판정 기준 신설 : 특정 합성수지제에 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유해물질의 적부판정은 다른 합성수지제의 해당 유해물질의 규격을 준용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에 아세트알데히드 규격 신설 : 아세트알데히드 6 mg/L 이하
- 합성수지제 도장(코팅) 목재류(도마, 접시류, 코르크 등)의 기준·규격 개선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합성수지제 또는 고무제가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재질의 잔류규격 및 용출규격을 적용
- 용출시험 조건 강화
  - 재질별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 ▶ (현행) 사용온도가 100℃ 미만인 경우 용출온도를 60℃, 사용온도가 100℃ 이상인 경우 용출온도를 95℃에서 시험
    - ▶ (개정) 사용온도가 70℃ 미만인 경우 용출온도를 70℃, 사용온도가 70℃ 이상인 경우 용출온도를 100℃에서 시험
  - 비소 시험용액의 조제
    - ▶ (현행) 합성수지제, 목재류 및 전분제에 대해서 물을 침출용액으로 함
    - ▶ (개정) 합성수지제, 목재류 및 전분제에 대한 침출용액을 4%초산으로 함



**심사결과** 현행 유해물질에 대한 적부판정의 기준은 기구 및 용기·포장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원료에 대해서 관리하고, 보조적인 원료로 사용되거나 오염되어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격을 설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 필요  
 아세트알데히드는 발암가능물질로 일일추정섭취량(EDI) 평가 결과, 기준설정 필요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  
 목재류 중에서 합성수지제 등이 도장 또는 접착가공된 목재류의 경우 식품과 접촉하는 면에 사용된 합성수지제 등의 규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제 합리화 필요  
 현행 용출시험 과정이 용출물질 검출에 부적절하다는 평가에 따라 용출시험 온도 및 조건을 실제사용 현실을 반영토록 하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 **원안의결함**

###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현행) 영업자의 폐업신고 관련한 제한 규정 부재 → (개정)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 제조업의 폐업신고 금지 **강화**

**심사결과** 행정제재처분(영업정지 3月 등)을 받은 경우 즉시 폐업신고하고, 다시 허가를 신청하여 영업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식품위생법에서도 행정제재 기간 중 폐업신고 금지 규정을 두어 관리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 **원안의결함**

### (12) 의약품의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의약품 허가심사 체계의 국제조화, 소비자 안전 및 의약품 신뢰성 강화를 위해 허가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 **강화**

#### 〈규제강화 사항: 8개 항목〉

규제사항(강화)	현행내용	강화내용
① 기구를 이용한 흡입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 강화	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결과 자료 제출	흡입속도 등 자료제출 추가
② 제네릭의약품 허가신청시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적용	신약은 국제공통기술문서양식 자료 제출	제네릭의약품도 국제공통기술문서양식 자료 제출
③ 동물유래의약품의 품질 관리 개선	공정서 미수재 동물유래의약품만 바이러스불활화 입증자료 제출	공정서 수재 동물유래의약품도 바이러스불활화 입증자료 제출

규제사항(강화)	현행내용	강화내용
㉔ <b>의약품 시험자료의 신뢰성 보증방안 마련</b>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비교용출 시험'에 자료조작방지시스템 설치 의무화	약동학 시험기기에 <b>자료조작방지시스템 설치</b> 의무화
㉕ <b>제네릭의약품 허가시 사용기간 입증자료 제출</b>	기 허가·신고된 품목의 사용기간 준용(36개월 이내)	6개월 이상의 가속시험 등의 <b>안정성 시험자료를 제출</b>
㉖ <b>전문가용 맞춤형 정보 제공방안 도입</b>	의약품 사용설명서에 용법·용량, 취급시 주의사항 등 기재 (소비자·전문가 구분없음)	전문약품의 경우 약리작용, 약동학, 임상시험 등 <b>전문 정보 추가 작성(전문가용)</b>
㉗ <b>유산균제제 허가시 균종확인 자료 제출</b>	유산균 제제 허가 신청시 규격 관련 자료만 제출(유산균 균종 미확인)	유산균 제제 허가 신청시 유산균의 균종을 확인할 수 있는 <b>분석자료(유전자분석결과) 제출</b>
㉘ <b>원료의약품 소분품목의 제조방법 기재방식 개선</b>	소분 원료의약품은 제조방법을 '포장단위별로 칭량'하는 내용만 기재	소분 원료의약품의 경우에도 일반 원료의약품과 같이 <b>제조방법을 상세하게 기재</b>

**심사결과**

흡입제의 기구는 단순한 용기의 기능 외에 의약품의 복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의약품동등성 평가시 기구의 특성을 검토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필요

의약품 허가심사체계의 국제조화와 국산 의약품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공통기술문서로 허가신청자료 작성토록 하는 것으로 필요

동물유래의약품의 바이러스 불활화 입증에 관한 총리령이 개정되어, 제출 자료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필요

약동학 시험기기에 자료조작방지프로그램을 설치토록 하여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

국내 제네릭의약품의 사용기간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미흡하고 미국 FDA 등에서도 최소 기준을 발표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의약품의 신뢰도 확보를 안정성 시험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필요

현재 의약품에 첨부되어 있는 사용설명서는 전문가, 소비자용 구분 없이 사용상 주의사항이 작성되므로 전문가용 정보 기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

현재 의약품 최초 허가시 균종의 기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규정이 없어 허가 이후 균종이 변경되는 경우 비교 분석이 어려우므로, 균종 확인 자료(유전자분석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필요

소분 원료의약품은 국내 제조업체의 소분공정에 대하여만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료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외국 원료의약품의 제조방법 및 공정을 기재토록 하는 것으로 필요

더불어,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13)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의약외품 품목별로 용기나 포장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추가 **강화**

- (현행) 마스크, 생리혈의 위생처리용 위생대(수세식용 제품이 아닌 것에 한함), 생리혈의 위생처리용 탐폰에 사용상 주의사항 표기
- (추가) 에탄올 함유 구강 내에 사용하는 품목(구강청결용 물휴지, 구중청량제, 치약제 등)

\* 기재사항: '이 제품에는 알코올(에탄올)이 함유되어 있어 사용 직후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 음주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것이며, 소비자의 알권리 및 제품선택권을 보장하여 제품 사용으로 인한 비의도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구강청결용 제품 중 에탄올 함유 품목이 적고 다른 품목 생산도 가능한 점, 규제대안 중 최소한의 규제수준인 점, 1년간 경과조치를 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14) 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 공고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안전관리 필요성이 있는 제품을 의료기기로 분류(5개 품목)하고 잠재적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의료기기(6개 품목)의 등급을 상향 **신설**

- 의료기기 품목 신설 지정 (5개 품목) : 모유 성분 분석기(1등급), 수동식(1등급)/전동식(2등급) 함몰유두 교정기, 비멸균(1등급)/멸균(2등급) 의료용 겔
- 의료기기 등급 상향 조정 (6개 품목) : 중추신경계용/심내막 심근용 내시경 겸자(1·2→4등급), 비흡수성 봉합사 의료용 봉합기(2→3등급), 피부용 멸균 스테플/비접촉식 일회용 외과용 드레이프/치과시술용 엔진(1→2등급)

**심사결과**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 등의 차이에 따라 체계적·합리적 안전관리를 위한 것으로 다른 품목은 삭제하거나 등급을 하향한 점, 해외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품목 및 등급을 분류한 점, 의료기기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15)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24개 품목을 추가 지정 **신설**

- (현행) 총 28품목 →(강화) 총 52품목(24품목 추가)

구분	품목명[등급]	
유럽 추적관리 고위험 인체이식 전자의료기기(12)	이식형인술린주입기[4]	혼수각성용미주신경전자극장치[4]
	유헬스케어 이식형 인술린주입기[4]	경동맥동신경자극장치[4]
	이식형말초신경무통법전자극장치[4]	이식형전기배뇨억제기[4]
	이식형보행신경근전자극장치[4]	척수이식배뇨장치[4]
	이식형요실금신경근전자극장치[4]	인공심장박동기리드어댑터[4]
	이식형척추축만증신경근전자극장치[4]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수리교체재료[4]
일본 추적관리 지정 품목(4)	중심순환계인공혈관[4]	헤파린사용인공혈관[4]
	콜라겐사용인공혈관[4]	윤상성형용고리[4]
고위험 인체이식 인공관절(6)	특수재질인공엉덩이관절[4]	특수재질인공손목관절[4]
	특수재질인공무릎관절[4]	특수재질인공팔꿈치관절[4]
	특수재질인공어깨관절[4]	특수재질인공발목관절[4]
학회 추가지정 필요(2)	비중심순환계인공혈관[3]	인공엉덩이관절(관절부위 접촉면이 모두 금속인 경우에 한함)[3]

\* 추가 지정 품목

**심사결과**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줄 수 있는 의료기기를 추적관리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인공혈관, 인체이식 전자의료기기 등 유럽, 일본에서 추적관리하는 품목을 반영하여 국제적 수준의 추적안전관리 기반 확보가 필요하고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기준(의료기기법 제29조)을 충족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16)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강화 **강화**

- 식품알레르기 표시대상을 기존 13개에서 11개를 추가하여 24개로 확대
  - (현행) 13개 : 난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팥, 콩, 대두, 밀, 고등어, 계,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SO<sub>2</sub>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 (추가) 11개 : 호두, 잣, 키위, 닭고기, 조개, 굴, 전복, 홍합, 오징어, 쇠고기, 참깨
- 식품 알레르기 표시방법 변화 :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
- 제품명에 사용된 원재료명 및 그 함량 정보 제공 강화 : 원재료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해당 원재료명 및 그 함량의 활자크기를 기존 12포인트 → 14포인트로 확대

**심사결과** 동 규제는 소비자 알권리 확보, 알레르기 피해 발생 예방 등 사회적 편익, 해외사례, 업계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나, 알레르기 표시품목 확대와 관련하여 조개 등 일부품목의 경우 분류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조개와 유사한 품목은 재조정 할 것을 **개선권고함**

## (17)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강화 1)

### 심사내용 임상시험계획서 승인을 위한 요건 강화 **강화**

- (현행) 임상시험계획서 상 '3개월 이내 중복 참여 제한' 관련 요건 없음
- (강화) 임상시험계획서 상 '3개월 이내 중복 참여 제한\*' 요건을 포함하여 자료 제출
  - \*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1상 임상시험계획서의 경우 당해 시험 실시 전 3개월 이내에 다른 임상시험 또는 생동성시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를 제외하는 기준도 포함하여 자료 제출

**심사결과** 임상시험(1상) 참여자의 생명과 건강 상 안전을 위해 중복참여를 3개월간 제한하는 것으로 인유사사례, 참여제한 기간의 타당성, 기존에 승인된 임상계획서 상의 자체 제외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에 **원안의결함**

## (1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커피', '장류'를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추가 **강화**

- 커피(볶은 커피·인스턴트커피는 적용 제외), 장류\*(한식메주, 한식재래간장, 한식 된장, 청국장은 적용배제)

\* 적용대상 및 시행일: 연매출액 100억 이상('16.1.1.), 10~100억('17.1.1.), 5~10억('18.1.1.)

※ (기존 영양표시 대상 식품) 레토르트식품, 과자류(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빵류 및 만두류, 초콜릿류, 젤리, 식용유지류, 면류, 음료류, 특수용도식품, 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심사결과** 위해가능 영양성분 과잉섭취방지, 소비자 알권리 확보 등의 정책취지, 해외사례, 규제비용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나, 중소기업체가 다수인 장류산업의 현실과 국내 경제여건 등을 고려, 중소기업체에 대한 시행시기를 조금 더 유예하는 것으로 개선권고하고 장류에 대한 1회 제공량기준량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부대권고함

**심사내용** HACCP 인증취소 등의 기준 강화 **강화**

현행	개정
○ 정기평가 결과 → 85%미만* (1차)시정명령, (2차)시정명령, (3차)인증취소	○ 정기평가 결과(별표20 1호, 2호) → 60~85%미만 (1차)시정명령, (2차) 인증취소 → 60%미만 즉시 인증취소
<신설>	○ 식중독 등 인체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관리점(CCP) 등 주요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항목을 위반한 경우, 인증취소(별표20 10호)
<신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 받은 경우, 인증취소 (별표20 11호)

\* 현행 부적합 기준인 85%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로 정하고 있음

**심사결과**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HACCP 인증업체의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평가결과 부적합 업체(85점미만) 중, 극히 불량한 업체에 대해 즉시 인증취소하고 그 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은 식품안전의 중요성, 국민의 기대수준, 비용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도 인정되나, 주요관리점(CCP) 등을 위반한 경우 인증취소 조항(별표20 10호)은 규제내용의 구체성과 재위임의 적정성 논란 소지가 있으므로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선권고함



## (19)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 강화 **강화**

- (현행) 시험·검사 과정 중에 얻어진 모든 자료와 기록은 측정·관찰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록·보관, 시험·검사성적서는 오해 및 오용의 가능성을 방지하도록 설계 등
- (추가) 시험·검사 장비에 기록관리시스템 설치 및 시험·검사성적서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

**심사결과** 검사기관 허위성적서 발급 사건(15년) 중 대부분의 허위 시험·검사(약 95%)가 장비를 이용한 시험이므로 허위성적서 원천 차단을 위해 기록관리시스템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의약품 시험 등 유사사례 및 해외사례에서는 자료조작방지 프로그램 설치를 이미 의무화한 점, 시스템 설치를 위한 유예기간을 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2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 산출금액의 기준설정 **강화**

- 과징금 금액 = 판매량\* × 판매가격\*\*

\* 판매량은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 판매한 양에서 회수량 및 자연적 소모량을 제외한 수량

\*\*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함

**심사결과** 동 조항의 과징금은 징벌적 성격의 행정제재금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산출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법률이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토록 위임하고 있는바, 판매량×판매가격으로 그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21)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품질책임자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강화**

- 규제사항(신설강화) 및 세부 과태료 기준

규제사항(신설)	과태료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법 제6조의2제2항(법 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항(법 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b>품질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b>	50만원	80만원	100만원

**심사결과**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세분하였으며, 유사 법령과 비교 시 동일한 기준(과태료 50만원, 1차위반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22)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PIC/S 규정 수준으로 강화 **신설**

- ‘무균의약품 제조’, ‘적격성평가 및 밸리데이션’ 등 PIC/S GMP 규정 16개 부속서를 동일(형식, 내용)하게 규정화(별표1~16)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16개 별표〉

구분	내용(PIC/S 규정)	현재(국내규정)	강화(국내규정)
[별표 1]	무균의약품 제조	가이드라인 운영	PIC/S 규정과 형식·내용면서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별표 2]	생물유래의약품의 원료 및 완제의약품 제조	총리령* 골자 반영	
[별표 3]	방사성의약품 제조	총리령 골자 반영	
[별표 4]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	총리령 골자 반영	
[별표 5]	한약(생약)제제 제조	총리령 골자 반영	
[별표 6]	출발물질 및 포장자재 검체 채취	가이드라인 운영	
[별표 7]	액제, 크림제 및 연고제 제조	가이드라인 운영	
[별표 8]	흡입용 압축 정량 에어로솔 제제 제조	가이드라인 운영	
[별표 9]	컴퓨터화 시스템	가이드라인 운영	
[별표 10]	전리방사선의 의약품 제조 사용	가이드라인 운영	



구분	내 용(PIC/S 규정)	현재(국내규정)	강화(국내규정)
[별표 11]	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	총리령 골자 반영	
[별표 12]	사람의 혈액 또는 혈장에서 유래한 의약품 제조	총리령 골자 반영	
[별표 13]	적격성평가와 밸리데이션	총리령 골자 반영	
[별표 14]	매개변수기반 출하	가이드라인 운영	
[별표 15]	원료의약품 제조	총리령 골자 반영	
[별표 16]	참조검체 및 보관검체	가이드라인 운영	

\* PIC/S(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와 GMP 실시의 국제조화를 위해 결성된 국제 협의회(본부 : 스위스 제네바)

**심사결과** PIC/S 가입 후 PIC/S 규정과의 동등성 입증을 위해 국내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PIC/S GMP 규정 도입 관련 상위법 개정 시 규제위 심사를 받았으며, 기존에도 가이드라인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제약업계 부담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23)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을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회수·폐기 명령 미이행시와 수입 인체조직 관리현황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1년이내) 근거 마련 **강화**

- (현행) 업무정지 대상(분배·이식금지 부적합 조직을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장비·인력·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등)
- (추가) 업무정지 대상 추가(회수·폐기명령 미이행시, 수입관리서류 미작성·미비치시)

**심사결과** 회수·폐기 명령 미이행시와 수입 인체조직 관리현황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약사법·의료기기법 등에 유사 입법례가 있는 점, 과태료 등의 대안보다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원칙(법제처)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24)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HACCP 인증취소 등의 기준 강화 **강화**

현행	개정	비고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기평가 결과 인증취소 기준 강화 (별표 14의2 3호, 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85%미만 시정명령</li> <li>→ 60%미만 인증취소</li> </ul> </li> </ul>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보다 완화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중독 등 인체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주요 사항으로서 아래 항목을 위반한 경우 인증취소(별표 14의2 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원부재료 입고시 정해진 기준대로 검사성적서로 확인하지도 않고 자체검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li> <li>나. 정해진 기준대로 작업장 세척·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종사자 개인위생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li> <li>다. 살균(멸균) 등 가열이 필요한 공정에서 정해진 기준대로 중요관리점(CCP)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거나,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의 위반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li> </ul> </li> </ul>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동일 (규개위 개선권고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6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제5항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취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6조제3항 추가(무표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 (별표 14의2 9호)</li> </ul>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동일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서에서 정한 제조·가공 방법대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별표 14의2 5호)</li> </ul>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동일

심사결과 축산물 HACCP 인증취소·시정명령 기준을 식품 HACCP 인증취소·시정명령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기평가 결과에 대한 식품 HACCP 인증취소 기준에 비해 완화된 내용이며, 인증취소 대상도 미미하고 해외사례에서는 HACCP 인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25)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의료기기 회수 통보의무 강화 **강화**

- (현행) 의료기관개설자는 회수계획을 통보받은 의료기기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여 치료받은 환자에게 회수사실을 알려야 함
- (추가) 의료기관개설자가 환자에게 통보한 경우, 환자통보확인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고, 의료기관개설자의 환자 통보가 미흡한 경우에 최초 통보와 다른 방법으로 통보토록 명령

**심사결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작용 의료기기를 이식받은 환자에게 회수계획 등을 통보하고 환자통보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보건의료인은 치료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고 환자 정보는 의료기관에서만 보유하고 있으며, 중대한 부작용이 있는 의료기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2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영업자 준수사항 중 일반음식점에서의 금지사항 추가 명시 **강화**

- (현행)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 (개정)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심사결과** 업종간 형평성 및 질서 유지, 화재 등 대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만, 식약처 당초 개정안은 과거의 규제 틀의 획일적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 지역경제침체, 젊은 층의 새로운 문화수요 사장 등 규제의 적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지자체가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한 영업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함**

## (27)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위반사실의 공표 **신설**

- 위반사실 공표 대상 및 내용 규정(법 규정과 동일)
- 위반사실 공표 기간 : 취소·폐쇄 처분 : 1년, 정지처분 : 처분기간 종료(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의 경우 그 납부가 완료된 때) 후 3개월

**심사결과** 화장품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소비자의 알권리 및 제품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제도 동일한 내용으로 공표하고 있는 점, 유사법령에서도 위반사실 공표 근거를 두고 있는 점, 위반사실 공표기간은 현재 지침으로 운영 중인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28)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화장품 안전기준 **강화**

-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에 ‘물휴지’ 관리기준 별도 신설<sup>1)</sup>,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형광증백제<sup>2)</sup>’, ‘자일렌<sup>3)</sup>’ 추가
  - 1) 메탄올 : 0.002(v/v)%이하 / 포름알데하이드 : 20 $\mu$ g/g이하 / 세균 및 진균수는 각각 100개/g(mL)이하
  - 2)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 종이나 섬유 등을 하얗게 보이도록 첨가하는 물질로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발암 가능성이 높음.
  - 3) 자일렌(xylene): 용해력이 뛰어나 인쇄·고무·가죽 산업에서 용매로 사용되며 가연성이 높은 무색의 액체, 200ppm 이상의 자일렌에 노출된 사람에게서 식욕부진(anorexia), 구역(nausea), 구토(vomiting), 복통(abdominal pain)을 호소했으며, 눈, 코, 목에 자극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음(美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화장품에 사용하는 살균·보존제 성분<sup>1)</sup>에서 ‘트리클리신<sup>2)</sup>’ 및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sup>3)</sup>’은 사용 제한
  - 1) 同 고시에서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살균·보존제는 59개 성분군 임(이외 살균·보존제는 사용할 수 없음)
  - 2)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까지 사용 허용
  - 3) 사용 후 씻어내는 인체세정용 제품류, 데오도란트(스프레이 제품 제외), 페이스파우더, 피부결점을 감추기 위해 국소적으로 사용되는 파운데이션(예:블레미쉬컨실러)에 0.3%까지 사용 허용



**심사결과** 국민 건강 위해 방지를 위해 ‘물휴지’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화장품 살균·보존제 성분을 사용제한 하는 것으로 공산품으로 관리한 ‘물휴지’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고 살균·보존제는 다른 성분의 대체 원료가 다수 존재하며, 유사사례 및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29) 식품위생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위해식품 등의 자진회수 대상 확대 **강화**

- (현행) 위해식품, 병든 동물 고기 및 기준·규격이 없는 화학적 합성품, 유독기구 등 판매 금지, 식품·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 (추가) 표시기준,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표시, 허위표시 금지 위반(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

**심사결과** 표시기준 위반,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위반,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사항의 경우 신속한 회수 및 회수율 제고를 위해 자진회수토록 하는 것으로 회수 대상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고 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감면조항 및 국제기준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30)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강화 3)

**심사내용** 위해화장품의 회수 **신설**

- 회수대상 화장품의 기준 : 변패(變敗), 병원미생물 오염, 이물 혼입·부착(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것),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부적합(내용량 부적합의 경우 제외), 사용기간 위·변조 등
- 위해화장품의 회수·폐기 계획 및 절차 등
  - 위해화장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계획서(회수대상 인지 후 5일 이내) 등 제출, 회수계획의 공표
  - 회수 화장품 폐기시 폐기 신청서 및 폐기 확인서(2년간 보관) 제출
  - 회수 완료 후 평가보고서 작성 및 회수종료신고서 등 제출

**심사결과** 화장품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위해화장품 부작용 피해 사전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자진 회수토록 하는 것으로 '회수 대상 화장품의 기준'은 화장품법상 위해성 기준과 동일하며, 자진회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하는 점, 해외사례 및 유사사례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회수·폐기 명령 세부절차 규정 **강화**

- (현행) 법률에 위해화장품의 폐기 명령 근거만 있고 시행규칙 등에 세부절차 규정은 없음
- (강화) 시행규칙에 자진회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심사결과** 화장품법(제23조)에서 위임된 사항이며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화장품에 대해서 회수·폐기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자진회수 절차와 동일하며 유사사례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위해화장품의 공표 방법 및 절차 **신설**

- 위해화장품 회수문을 일간신문(1개 이상) 및 자사 홈페이지 게재
- 식약처 홈페이지 게재 요청(해당 제품 사용기간 종료일까지 게재)
- 회수 계획을 판매자·취급자 등에게 통보(통보입증자료 2년간 보관)

**심사결과** 화장품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위해화장품을 공표하여 화장품 안전 사용 및 제품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해화장품의 공표 방법 중 과도한 부담은 없으며, 유사법령 및 해외사례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에어로졸 및 분무형 자외선차단제의 사용시 주의사항 추가 **강화**

-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반드시 손에 털어 얼굴에 바를 것”

**심사결과** 분무형 자외선 차단제를 흡입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사용상 주의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화장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주의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부담이 경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외 사례, 경과 규정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강화**

**〈규제사항(신설강화) 및 세부 행정처분 기준〉**

규제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이상
조직 및 인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 (제조판매관리자 등)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위해화장품 공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판매 또는 제조 업무 정지 12개월	등록취소	
위해화장품 회수명령에 따라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판매 또는 제조 업무 정지 12개월	등록취소	
광고업무정지기간에 광고업무를 한 경우	판매업무정지 3개월	판매업무정지 6개월	판매업무정지 9개월	판매업무정지 12개월

**심사결과** ‘위해화장품 회수 및 공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3개 행정처분 기준은 필요성 및 적정성을 인정되고 ‘광고업무 정지기간에 광고업무를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관련,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광고업무 정지처분’을 이행토록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는 인정하나 가중 처분의 법적 근거 부재, 중복 규제적 요소, 처분기준의 획일적 적용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 등 적정성 측면에서 미흡하므로, ‘광고 정지기간에 광고를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법적 근거 마련,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 등 규정을 보완하여 추진토록 하고 금번 개정안에서는 삭제토록 개선권고함

**(31) 의약외품 범위지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의약외품 지정 범위 확대 **강화**

- 의약외품 금연보조제 범위 확대 : (현행) 흡연욕구저하제 ⇒ (추가) 흡입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
- 구강 내에 탈·부착하여 사용하는 물품의 세척·소독제와 구강의 위생관리에 사용하는 제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
  - (현행) 의치(틀니) 세척 또는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
  - (추가) 치아교정기의 세척·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 위생관리를 위해 구강 내 치태·설태 등을 염색·착색하는 제제

**심사결과**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는 제품 범위를 지정하는 것이며, 전자기기에 충전하여 흡입하는 ‘액상향료’(일명 전자담배) 및 ‘치태염색제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구강청결용 제품 중 에탄올 함유 품목이 적고 다른 품목 생산도 가능한 점, 규제대안 중 최소한의 규제수준인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32) 약사법 개정안 (신설 1, 강화 4)

**심사내용** 생동시험\*과 임상시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투여된 의약품의 체내 반응을 확인하는 시험으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임상시험에 통합하여 관리 **강화**

\* **생동시험** :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생체시험으로서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두 제제의 생체이용률이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

\*\* **임상시험** :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약력·약리·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

- 종전의 생동시험 실시기관에 임상시험 실시기관과 동일한 의무 부과
- 종전의 생동시험 실시기관은 임상시험 실시기관·검체분석기관으로 재인증

#### 〈법 개정에 따른 기관 변경 사항〉

현 행	개 정 안
임상시험 실시기관	임상시험 실시기관 (변경 없음)
생동시험 실시기관 중 의료기관	임상시험 실시기관
생동시험 실시기관 중 분석기관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

**심사결과** 종전의 생동시험 실시기관에 임상시험 실시기관과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임상(생동)시험 참여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생동시험을 실시하는 의료기관 현황,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인터넷 등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 통신판매 행위를 알리거나 광고금지 **신설**

**심사결과**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의 예방 차원에서 의약품 불법판매를 알리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불법정보의 유통 관련 유사법령, 인터넷의 인터넷 불법의약품 근절 프로젝트 추진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의약품 등의 표시 기재사항 **강화**

- 거즈·마스크(가목 의약품) 등의 용기·포장에 제품명칭 기재
- 살충제·마스크·생리대(가목·다목 의약품) 등에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 표시
- 의약품용기를 직접 담는 용기·포장에 적힌 사항이 외부 용기 등에 가려 보이지 않으면 그 외부 용기 등에도 같은 사항을 기재
- 의약품에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기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심사결과** 의약품 관련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표시·기재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유사 입법례,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의약품등 수입자의 의무 **강화**

- 수입 의약품등 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의 해외 제조원 명칭·소재지 등을 식약처에 등록하도록 함(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식약처장은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입자, 해외 제조소 또는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국민보건을 위하여 해외에서 생산되는 위해 의약품 등의 수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으로 수입식품 관련 유사입법례, 선진국도 해외 제조소 등록 및 현지실사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조정 **강화**

- 약사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한 의약품 판매로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과징금으로 환수(생산·수입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

**심사결과** 부정·불량 의약품 제조·수입자에 대한 부당취득 경제적 이익 환수를 통해 국민보건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규제 도입 목적을 충족하면서 현행 약사법 체계 내에서 합리적 수준에서 규제를 도입한 점, 국내 유사 입법례,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3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단축 **강화**

식품유형(비율)	현행	개정
과자 등 154개 식품(58%)	1회/6개월	1회/3개월
빵류 등 25개 식품(9%)	1회/3개월	1회/2개월
이외 시리얼류 등 88개 식품(33%)	1회/1개월	1회/1개월

**심사결과** 자가품질검사의 실효성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가공 식품의 검사 주기를 단축하려는 것으로 건강기능식품·축산물가공업 관련 유사법령보다 완화된 수준이며, 안전관리가 우수한 HACCP 인증업소는 6개월로 주기를 완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자가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업자는 검사결과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강화**

**심사결과**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기업의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법령, 기록관리시스템의 무상보급 및 매출액별 단계적 시행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검사결과 부적합 식품을 식품제조 시 원료로 계속 사용한 경우 식품관련 영업허가의 취소 등 **강화**

- (현행) 1차: 시정명령, 2·3차: 품목 제조정지 7·15일
- (강화) 1·2·3차: 품목 제조정지 1·2·3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며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세분하였으며, 同 규정 상 타 기준과 유사한 수준인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34)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약사법 위반 과태료 금액 규정 **강화**

- 임상시험등 계획서, 임상시험등 실시기관 지정사항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30만원
- 임상·생동시험 관련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100만

**심사결과** 「약사법」 위임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서 과태료 금액을 확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른 과태료는 유사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지 않은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35)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수출용 한약제제 의약품도 GMP 평가 자료 제출 **강화**

- (현행) 수출용 한약제제 의약품 또는 군수·관수를 위한 납품용(비축용)의 경우 제조 등의 허가 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면제
- (강화) 수출용 한약제제 의약품도 ‘GMP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심사결과** 의약품 해외시장 확대 등을 위해 수출용 의약품(한약제제)에 대해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평가토록 하는 것으로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며, 국내 법령 상 모든 의약품은 GMP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36)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축산물의 표시 기준 추가 **강화**

- 기계발골육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육가공품 등에는 ‘기계발골육’ 사용 의무표시
-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 식육가공품 확대(햄류 추가)
-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제조·처리하는 제품은 품목보고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

**심사결과** 소비자가 축산물가공품을 선택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조·가공업자가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 주요국에서는 ‘기계발골육’ 표시, 햄류 영양표시 등을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37)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임상시험 등을 하려는 자에 대한 교육 **강화**

- 임상시험 등 종사자의 최소 교육 이수시간 규정(직종, 참여경험 유무에 따라 세분화 규정)

임상시험등 경험이 없는 종사자(최초 신규자)			경험이 있는 종사자(경험자)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관리약사	임상시험등 심사위원회 위원	그 밖의 종사자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시간
8시간	12시간	40시간	

- 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았으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정 취소

**심사결과** 「약사법」 위임에 따라 교육시간, 교육기관 지정취소 요건을 확정하려는 것으로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의무 부과 및 교육시간, 교육실시기관 지정취소 요건은 유사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38)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횟수(연간 1회, 2회, 3회 이상)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 **강화**

**심사결과**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세분하였으며, 유사 법령과 비교 시 동일한 기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39)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의약품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신설 및 인상 **강화**

민원사무명		수수료 개정내용	산정기준	비고
수입업 신고	의약품등 수입업 신고	○ 280,000원(전자 252,000)	유사기준	신설
	변경신고	○ 소재지 140,000원(전자 126,000) ○ 소재지 이외 43,000원(전자 38,000)	유사기준	신설
희귀의약품	허가 신청	○ 3,217,000원(전자 2,895,000) (현 2,070,000원(전자 1,863,000))	유사기준	인상
	허가 신청 (임상성적서 첨부)	○ 1,608,500원(전자 1,447,500) (현 1,035,000원(전자 931,500))	유사기준	인상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 975,000원(전자 877,000)	유사기준	신설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 상황평가	○ 172,000원(전자 155,000)	유사기준	신설
수출용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신청	○ 350,000원(전자 315,000) (현 120,000원(전자 108,000))	유사기준	인상
임상시험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	○ 380,000원(전자 342,000)	유사기준	신설
	변경지정 신청	○ 190,000원(전자 171,000)	유사기준	신설
의약품 광고심의 신청		○ 100,000원(현 60,000)	유사기준	인상
의약품 식별표시 (변경)등록·예비(변경)등록, 의약품 식별 업소고유표시 (변경)등록		○ 100,000원	원가분석	신설

**심사결과** 상위 법령 개정으로 도입된 허가(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를 규정하고 의약품 광고심의의 정상운영을 위한 의약품 광고심의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유사 허가(신고)의 수수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산정하였고 관련부처(기재부)와 협의를 완료한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40)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치약제 사용상의 주의사항 기재 강화 **강화**

- (현행) 불소 함유 치약제에만 어린이 사용상의 주의사항 기재
- (개정) 모든 치약제에 일반적인 사용상의 주의사항 기재 추가

**심사결과** 치약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며, 치약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것으로 치약제 사용시 주의사항 안내는 최소한의 규제인 점, 다른 의약외품도 사용상 주의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41)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강화 **강화**

- ‘흡입성 제제’에 사용례가 없는 첨가제 사용 시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 지정
  - (현행) 의약외품 또는 의약품에 사용례가 있는 첨가제는 ‘흡입성 제제’에 사용례가 없어도 안전성·유효성 심사 없이 품목 허가
  - (개정) ‘흡입성 제제’에 사용례가 없는 첨가제는 반드시 안전성·유효성 심사 받아 품목 허가
- 의약외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위한 심사자료 제출범위  
(‘흡연습관개선보조제’에 대한 품목 허가 시 제출해야 할 자료 지정)
  - \*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안정성에 관한 자료, 독성에 관한 자료 등 (자료 제출 면제 포함)

**심사결과** 의약외품의 품목허가를 위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을 정하는 것이며 가슴기 살균제 및 금연보조제 등 ‘흡입성 제제’와 흡연습관개선보조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의약품도 흡입제로 사용하는 경우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등 유사사례도 있으며 ‘흡연욕구저해제’와 같은 수준으로 자료 제출 범위를 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42)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의약품등에 사용하는 타르색소 중 외용색소 2종(적색2호, 적색102호)은 치약 등 구강내 적용 제품에 사용금지 **강화**

**심사결과** 외용 타르색소 중 안전성 우려가 있는 적색2호·적색102호의 구강내 적용 제품에 사용 제한하여, 타르색소 안전관리 강화 및 국민의 안전성 우려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구강내 적용 가능한 다른 타르색소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타르색소 함유 제품도 많지 않은 점, 미국에서는 사용 금지하고 있는 점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43)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축산물HACCP(도축업 및 축산물가공업) 심사기준 강화 **강화**

- (현행) 인증심사는 만점의 70% 이상, 조사·평가는 80% 이상시 적합
- (개정) 인증심사는 만점의 85% 이상, 조사·평가는 85% 이상시 적합

\*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은 이미 최초인증 및 조사평가시 만점의 85%이상을 적합으로 판정

**심사결과**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HACCP 적용작업장(도축업 및 축산물가공업)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일반 가공식품 HACCP 등 유사 판정기준과 동일하며 해외에서도 HACCP 기준을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에 **원안의결함**

#### (4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식품 등의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검사항목\*을 규정 **강화**

\*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이물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에 따라 재검사 제외 검사항목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검사결과가 달라 질수 있는 검사항목 등은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다수의 검사항목 중 5개 검사항목만을 제외하고 있으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유사법령보다 완화된 재검사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에 **원안의결함**

#### (4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범위 확대 **강화**

- (현행) 각종 상장·감사장,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광고\*를 금지

\* 정부표창, 행정·공공기관의 인증·보증, 식품산업진흥법 및 산업표준화법 등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은 표시 가능

- (강화) 각종 상장·감사장,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표시·광고 금지

※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여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은 표시 가능

**심사결과**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 등이 있는 표시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유사법령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정부(식약처)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은 민간인증 등은 표시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46)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식품등의 표시기준 강화 **강화**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식품포장용 랩 제조 시 첨가된 PVC 등은 알코올에 의해서도 용출되므로 주류에도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문구 표시 강화
  - (현행) 식품포장용 랩의 주의사항은 지방성분이 많은 식품에만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표시
  - (개정) 식품포장용 랩의 주의사항은 지방성분이 많은 식품과 주류에도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표시
- (식품등의 표시사항의 적용특례)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 중 선식 및 우편 또는 택배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의 경우 개별 제품에 제품명, 유통기한 등 표시
  - (현행)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은 특례규정에 따라 제품별 표시 생략가능
  - (개정)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 중 선식 및 우편 또는 택배로 배달하는 식품은 제품명, 유통기한 등 필수 표시사항 의무 표시
-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등
  - 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토록 개정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제조하는 제품은 ‘품목보고번호’를 의무 표시하도록 신설
  - 먹는물(생수)과 유사한 음료의 제품명으로 ‘~수’, ‘~물’, ‘~워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한 경우에는 식품유형(혼합음료 등)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토록함
  - 고추장에 사용된 고춧가루 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추장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으로 고춧가루 함량을 표시하도록 개정



**심사결과** 식품포장용 랩에 첨가된 PVC 성분이 알코올에 의해 용출된다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 소비자 주의문구 추가가 필요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 중 선식 및 우편 또는 택배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에 제품명, 유통기한 등 필수 표시사항을 표시토록 하는 것으로 선식 및 배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며, 원재료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해당 원재료명 및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고 먹는물(생수)와 혼합음료(첨가물함유)간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유형(혼합음료 등)을 표시토록 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 및 오인·혼동 방지를 위해 필요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47) 2015 재검토형 일몰규제 규제심사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1건)**

구분	계	규제 폐지	규제개선			규제존속		
			일몰 연장	일몰 해제	일몰 변경	일몰 연장	일몰 해제	일몰 변경
국무조정실	1	0	0	0	0	1	0	0

**규제내용**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외부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서류에 기재하는 사항의 글자 크기, 줄 간격 및 그 밖의 기재방법

**심사결과** 의료기기 사용에 필수적인 정보를 표준화하여 효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고 미국(FDA)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표시·기재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에 규정된 표시·기재 의무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제시해야 하므로 규제 존속 필요하고 의료기기 사용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필수적인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그 적정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48)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식용타르색소(9종 16품목) 사용 기준 변경 **강화**

- (현행) 해당 색소를 사용할 수 없는 식품유형 설정
  - (개선) 해당 색소의 사용대상 식품유형 및 사용량 기준 설정
- \* 식용타르색소 사용 대상 식품은 현행과 동일

식용색소 9종 16품목

- (9종) 적색제3호, 적색제102호, 적색제2호, 적색제40호, 녹색제3호, 청색제1호, 청색제2호, 황색제4호, 황색제5호
- (16품목) 적색제3호, 적색제102호, 적색제2호, 적색제40호, 녹색제3호, 청색제1호, 청색제2호, 황색제4호, 황색제5호, 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심사결과** 어린이 등 국민 건강 위해 예방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사용하던 식용타르색소의 최대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사용 대상식품은 현행과 동일하며 각 대상식품별 사용량만 규정하는 것으로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대체 첨가물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에 **원안의결함**

(49)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변경 **강화**

- 식품유형 명칭 개정 : (현행) ‘식육가공품’, ‘알가공품’을 (개정)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으로 개정
- 중금속 기준 신설 및 강화 : 망콩 또는 견과류의 납(0.1 mg/kg 이하) 및 카드뮴(0.3 mg/kg 이하) 기준 신설, 과일·채소류음료의 납 기준 : 0.3 mg/kg 이하 ⇒ 0.05 mg/kg 이하로 강화
-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 농약의 개별 기준이 없는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해서 일률기준(0.01 mg/kg) 적용, 농약관리법에서 사용기준이 개정된 다이아지논의 기준 반영
- 미생물 규격에 통계적 개념 도입 : 기존에는 하나의 시료를 검사하였으나, 5개의 시료를 검사토록 함
- 식품원료 사용기준 개정 : 석창포를 물추출물의 형태로만 사용하도록 사용조건 신설, 등침의 줄기, 미국자리공, 에키네시아, 제령의 씨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



**심사결과** 식품유형 명칭 개정은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과 축산물의 유사한 식품유형 명칭을 구분 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웰빙열풍, WTO 등 무역환경의 대외개방과 수입식품의 증가를 감안하여 중금속 기준 신설(견과류) 및 강화(과일주스)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0.01mg/kg 이하(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내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시료 1개를 검사하여 판정하던 것을 통계적 개념을 이용(시료 5개 검사)하는 것으로 미생물의 특성상 오염이 균일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필요성 인정되고 석창포 등의 독성물질 및 부작용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5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식품첨가물제조업자가 빙초산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어린이보호포장을 하도록 함 **강화**

**심사결과** 어린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초산함량 99% 이상의 빙초산 제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의약품, 화장품, 접착제·방향제 관련 유사법령, 경과규정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5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3, 강화 2)

**심사내용** 해외제조소 등록 방법 및 정보 등 구체화 **신설**

- 등록신청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인터넷 등 이용)
-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영업 종류가 변경 될 경우 변경 등록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대상 정보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으로 미국, EU 등 다른 국가의 입법사례, 등록 정보를 최소화한 점, 인터넷 시스템 구축으로 등록의 편의를 제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현지실사 방법 및 수입중단 등 세부절차 마련 **강화**

-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자에게 현지실사 계획을 통보하고,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회신토록 함
- 현지실사 점검 기준(해외제조업소 등 위생관리 기준) 마련
-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 시 ⇒ 보완 요구 ⇒ 수입중단 조치 가능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에 따라 현지실사 및 수입중단 조치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해외사례 및 유사사례를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및 처분기준 **신설**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신청 등 절차

\* 지정신청 첨부 서류 : 정관, 서약서, 사업계획서, 조직도, 현지실사 등 업무 외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해당되는 경우), 해외식품 위생평가원 현황 및 평가원 자격 증명 서류, 업무규정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인력, 조직, 시설 등 기준

**〈주요 지정 기준〉**

구분	기준
인력	○ 해외식품 위생평가원을 10명 이상 고용
조직	○ 식품 등의 수출·수입·유통·판매·통관업무 금지 ○ 최소 6개월 이상 평가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보유
시설	○ 문서 보안을 위한 시설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준수사항

**〈주요 준수사항〉**

- 외부로부터 상업적, 재정적, 기타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는 안됨
- 평가대상과 혈연 등 개인적 연고, 경제적 이해관계, 최근 2년이내 근무경험, 자문 행위 등이 있는 평가자는 해당 평가업무에서 배제
- 결과보고서 및 업무수행 중 확보한 자료 등에 대한 보관(5년) 및 자료 제출
- 직무와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의 누설 금지 등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

위반사항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업무정지 처분 위반	지정취소		
외부 압력 및 영향을 받아 평가를 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개선조치 미이행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위반사항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국비 지원금을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에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자체교육훈련 미시행 등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법령에 따른 점검기준 미준수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점검표 허위작성 및 허위평가 등	지정취소		
평가 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평가업무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평가와 관련한 정보를 고의로 누설하거나 직무에 사용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출입 검사 및 보고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요건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유사사례, 평가업무의 신뢰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임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수입식품 관련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신설**

– 업종별 시설기준

종류	시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li> <li>○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li> <li>○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소</li> <li>○ 보관 창고(수입판매업에 한하며 임차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 경우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식품등 보관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폐수·화학물질 등이 식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 등에 위치</li> <li>○ 보관시설은 방수, 환기, 해충유입 방지 등 설비</li> </ul>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에 따라 업종별 영업에 필수적인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 유사사례, 최소한의 시설 요건임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 중량이나 가격을 변조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에 납·얼음·한천 등 이물을 혼입시키거나 냉동수산물에 얼음막 생성을 통하여 중량을 변조하여 수입신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 (현행) 영업정지 1개월(1차) / 영업정지 2개월(2차) / 영업등록 취소(3차)
- (강화) 영업정지 2개월(1차) / 영업등록 취소(2차)

**심사결과** 냉동수산물에 얼음막 생성 등을 이용하여 중량이나 가격을 속이는 기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수입·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고의적으로 중량이나 가격을 속여 수입신고 하는 행위에 한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것 임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5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신설 1)****심사내용**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신설**

– 업종별 특성 및 연간매출액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업종별로 5만원부터 404만원까지 26단계로 구분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과징금의 납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활동을 허용하면서 행정제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식품위생법과 동일한 수준이며, 영업자가 과징금의 납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5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심사내용**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 시 허위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현행) 허위신고에 대한 별도 처분기준 없음
- (추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 영업정지 (1차) 7일, (2차) 15일, (3차) 1월

– 자가검사결과 부적합 원료 사용에 대한 처분 강화

- (현행) 자가검사결과 부적합 원료 사용에 대한 별도 처분기준 없음



- (추가) 자가품질검사 등에 불합격한 원료임을 인지하고도 사용: 해당 제품 폐기 및 품목제조정지 (1차) 1월, (2차) 2월, (3차) 3월
- 비위생적인 식육운반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현행) 현수운반 위반은 별도로 처분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기타 위반사항을 적용(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3일, 3차 영업정지 7일)
  - (추가) 비위생적 운반시 : 해당차량 영업정지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영업정지 1개월

**심사결과** 축산물가공업자 및 운반업자 등의 의무 부과 사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으로 추가된 행정처분 기준은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현행 행정처분 기준과 비교 시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강화**

- 냉장식육의 냉동전환시 신고사항 및 준수사항 추가
  - (현행) 영업자가 냉장제품을 냉동전환으로 전환시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짜를 보고, 표시기준 준수
  - (추가) 냉동전환 완료일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하고, 냉동전환 완료일이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준수사항 추가
- 기록관리시스템 설치 의무 부과
  - (현행)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기록관리시스템 설치 의무 없음
  - (신설)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검사결과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심사결과** 냉동전환 축산물의 안전관리 및 자가품질검사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것으로 현행 규정과 비교시 과도하지 않고 해외사례·유사사례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5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 심사내용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추가 **강화**

-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추가
  - (현행) 인력, 시설, 설비(장비 및 기구), 현장조사(품질관리 기준 평가, 수행능력 평가), 제출서류\*
  - (추가) 시험·검사 적정 검사건수 및 그 산정방법(자율적으로 설정) 제출
    - \* 조직 및 인력현황, 시설 평면도, 설비(장비 및 기구) 현황, 업무규정(검사소요기간, 품질관리기준 문서, 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
- 시험·검사기관의 재지정 요건 강화
  - (현행) 현행 지정요건과 동일 ⇒ (추가) 재지정 제한 요건\* 추가
    -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검사실적 없는 경우, 검사 업무정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검사능력 평가 3회 연속 부적합한 경우 재지정 제한

**심사결과** 상위법에 근거한 것이며 시험·검사기관 지정 요건을 강화하여 부실 검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험·검사기관의 적정 업무량 설정을 업체 자율에 맡기는 것이며, 해외사례·유사사례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심사내용 시험·검사기관 등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

- 자가품질위탁검사 결과 부적합 미보고시 행정처분
  - (현행) 업무정지 7일→15일→1월
  - (강화) 업무정지 1월→2월→3월
- 시험법 미준수와 같은 식품·의약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현행) 4차 위반시 지정취소
  - (강화) 3차 위반시 지정취소
- 수수료 미준수시 행정처분 명확화
  - (현행) 수수료 미준수(시정),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15일)
  - (강화) 수수료 미준수 및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15일)



**심사결과** 시험·검사기관의 의무(부적합 시험결과 보고, 시험법 준수 등)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으로 시 식품위생법령 등 유사사례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5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7)

**심사내용** 수입신고시 안전성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법적근거 마련 **강화**

- (현행) 검사성적서(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한글 서류제출 가능), 구분유통증명서(유전자재조합 식품과 구분)
- (추가) 위해정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추가로 규정

\*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유전자재조합 안전성 관련 승인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수시로 식약처 수입식품정보사이트 공지

**심사결과**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위해정보에 따라 필요한 사안별로 검사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령에서도 동일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점, 실제 통관절차 현장에서는 해당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영업자간) 거래기록 작성
  - (현행) 일반판매업자는 공급받은 내역만 작성·보관, 유통전문판매업자는 기록 작성·보관 의무 없음
  - (개정)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일반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는 영업자간의 거래에 관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거래기록\*을 작성·보관

\* 거래기록 : 공급업소명 및 연락처, 제품명, 수량, 공급일자, 판매업소명 및 연락처, 제품명, 수량, 판매일자 등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이상사례 통보
  - (현행)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자는 이상사례 관련 의무가 없음
  - (개정)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자가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 알리도록 함

－ 자동판매기 판매 영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 (현행) 관련 규정 없음
- (개정) 자동판매기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

\* 자판기 판매업자 준수사항

- (1) 판매하는 제품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자동판매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 (2) 자동판매기에는 영업신고번호, 연락할 수 있는 연락번호를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자동판매기 앞면에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 (3)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선·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하여 진열하여야 한다.
- (4) 자동판매기 외부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제품에 표시된 기능 정보 이외에 다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5) 영업자는 자동판매기 외부에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을 게시 또는 부착하는 등 소비자가 이를 확인 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심사결과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회수할 때 제품의 공급 및 판매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기록을 작성토록 하고, 건강식품 이상사례 누락 방지 및 소비자 편의를 위해 일반판매업자가 접수한 이상사례를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건강기능식품을 자동판매기로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토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건강기능식품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강화**

- － (현행)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자는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함
- － (추가) 자동판매기는 제품의 안전성·위생을 보장할 수 있는 곳에 설치, 불결한 장소에 설치 금지

심사결과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장소에 대한 최소한의 위생 및 안전 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유사법령에서도 자동판매기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고, '위생적'이라는 기준은 동일 규정의 다른 기준에서도 적용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건강기능식품관련 과태료 처분 **강화**

- 소분요건을 모두 갖추지 안하고 소분·판매 : 100만원
- 허위·과대·비방의 광고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고도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때 : 100만원
- 자동판매기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50만원

**심사결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로 처분의 실효성 확보 및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것으로 유사법령에서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의 등록 **강화**

- (현행) 의무 등록자를 연 매출액 50억원 이상으로 규정
- (개정) 의무 등록자를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으로 규정

**심사결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유통차단·회수조치 등을 위해 이력추적관리 대상 확대가 필요하고 영세 제조업체(매출액 10억이하, 326개 업소)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체판매액의 97%를 이력관리 할 수 있도록 한 점, 식품위생법 등 유사사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방사선조사처리 및 유전자재조합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 (현행) 기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 적용 : (1차) 시정명령 ⇒ (2차) 품목제조정지 15일 ⇒ (3차) 품목제조정지 1개월
- (개정) 위반행위 별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세부 기준〉**

위반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처분
○ 조사처리된 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1개월	품목제조정지 2개월
○ 조사처리건강기능식품을 표시함에 있어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1개월
○ 유전자재조합건강기능식품에 유전자재조합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1개월	품목제조정지 2개월
○ 유전자재조합건강기능식품을 유전자재조합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으로 표시·광고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1개월	품목제조정지 2개월	품목제조정지 3개월

**심사결과** 방사선 조사처리 및 유전자재조합 표시기준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식품위생법에서도 동일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등의 교육의무 **강화**

- (현행) 필요한 경우 교육명령 가능(법 제13조①)

※ 건강기능식품법 제13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강화) 교육을 명령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을 규정(시행규칙안 제16조의2)

※ '수입신고한 건강기능식품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한 영업자' 및 '출입·검사·수거 등을 실시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

**심사결과** 건강기능식품영업자에 대한 보수교육이 없으므로 법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한해 변화되는 산업 및 위생규정 등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위반사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위생법에서는 모든 영업자에 대해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별도로 법령 위반자에 대해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56)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축산물관련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처분 **강화**

-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 (현행)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20만원
- (개정)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381만원

\* 과징금 =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 영업정지 기간

**심사결과** 축산물관련 영업자가 법령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영세업체 완화, 대형업체 강화)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과 동일한 수준인 점, 국내 과징금 수준(비율)은 해외에 비해 매우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57)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생물학적 제제등 및 원료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 강화 **강화**

- (현행) 보유 시설: 미생물 관련 저장·배양·회수·정제시설·살균 시설, 제조·시험에 사용한 동물 관리·처리 시설, 원액의 희석시설 등
- (추가) 세포 관련 저장시설, 배양·회수·정제시설·살균 시설
- (현행) 작업실 분리·구획 대상 : 폴리오병원체·유아포병원균·결핵균
- (추가) 폴리오\* 병원체, 포자형성균, 결핵균(비씨지 백신에 사용/튜베르쿨린 (tuberculin) 제제에 사용), 사람의 혈액·혈장, 기타 병원성 미생물, 살아있는 미생물·세포 등

\*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질병(치료법은 없음, 보존적 치료 / 생후 2·4·6개월 예방접종)

심사결과

바이오의약품의 제조시설에 대한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관리하고 품질위해관리 원칙에 기초하여 작업소의 분리, 교차오염 관리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 기준과 유사한 수준인 점, 오염방지 대책이 있는 경우 작업소를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의약외품의 제조소의 시설 기준 강화 **강화**

- (현행) 의약외품 품목과 관계없이 작업소 내 시설을 공유
- (강화) 의약외품 중 살충제 등을 제조하는 작업소는 그 밖의 의약외품을 제조하는 작업소\*와 분리

\* 유효성분의 칭량 작업, 의약외품의 조제·충전작업 및 의약외품의 마개를 막는 작업이나 밀봉작업을 하는 작업실만 해당

심사결과

교차 오염에 의한 위해 발생을 사전 차단하여 의약외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살충제 등을 제조하는 작업소는 그 밖의 의약외품 작업소와 분리토록 하는 것으로 교차오염 우려로 인한 작업소 분리하는 유사사례가 있으며,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시설 보수기간을 2년간 유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58)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이식적합성 검사’ 결과 부적합 조직에 대한 폐기 절차 마련 **강화**

- (현행) ‘병력·투약이력 조사’결과 부적합한 조직은 격리·폐기
- (추가) ‘이식적합성 검사’ 결과 부적합한 조직도 격리·폐기

**심사결과** 이식적합성 검사(혈액검사, 미생물학적검사) 결과 부적합 인체조직에 대한 격리보관, 폐기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부적합한 인체조직(병력, 미생물 오염)은 격리보관·폐기해오고 있으며, 유사법령(의약품, 화장품 관련 법령) 및 해외에서도 격리보관 및 폐기토록 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조직은행의 준수사항 **강화**

- (현행) 조직은행은 인체조직의 안전을 위하여 오염된 조직의 분배금지, 인체조직 관리기준에 따른 운영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 (추가) 인체조직을 조직은행·조직이식의료기관 이외의 자에게 분배하지 못하도록 규정, 조직은행의 변경보고 기한(20일) 설정

**심사결과** 인체조직은 기증취지에 맞게 환자치료를 위해 조직은행·이식의료기관에만 분배토록 하고 조직은행의 중요변경 사항은 기한내 보고토록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同 규제 사항은 조직은행이 현재도 준수하고 있는 내용이며 의약품 등 유사사례도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행정처분 기준 **강화**

- (현행) 회수·폐기 미이행시 업무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없음
- (추가) 처분기준 마련

#### 〈개정안 : 인체조직안전에관한규칙 별표5〉

위반사항	1차	2차	3차	4차
법 제24조의2에 따른 회수·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심사결과**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조직을 회수·폐기토록 하는 명령을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통해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관련 법령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해외사례도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 **원안의결함**

### (59)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강화**

- (현행) 아이스크림 등 666개 미생물 규격 도입(1개 시료→5개 시료)
- (추가) 우유류 등 37개 미생물 규격 추가 도입(1개 시료→5개 시료)

**심사결과** 우유류 등의 미생물 검사시 시료 1개를 검사하여 판정하던 것을 통계적 개념을 이용(시료 5개 검사)하는 것으로 미생물의 특성상 오염이 균일하지 않음을 고려하고 현행 미생물 기준과 동등한 수준이며, 식품 분야에서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미 도입·운영 중이므로 비중요 규제 **원안의결함**

### (60)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 심사 규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줄기세포치료제 등에 대한 장기적 모니터링 의무 부과 **강화**

- (현행) 장기추적조사를 의무화한 별도 규정 없음
- (추가) 최종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해 장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기추적조사계획을 식약처에 제출하고, 그 수행한 결과를 보고

**심사결과** 줄기세포치료제는 특성상 장시간 경과 후 부작용이 발생 가능하므로 최종임상시험 종료 후에도 장기추적 조사·평가토록 하는 것으로 장기추적조사 방법을 고려할 때 과도한 부담은 아니며, 해외사례 및 유사사례를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 **원안의결함**

**(61)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 (강화 7)****심사내용** 제조방법에 에탄올 변성제 제조공정 기재 및 근거자료 제출 **강화**

- (현행) 변성제 제거공정 기재 및 근거자료 제출 의무 없음
- (추가) 변성제가 함유된 에탄올을 사용하여 제조된 의약품의 경우, 변성제 제거 공정을 기재하고 그 제조 공정에 따른 시험성적서 제출

**심사결과** 의약품의 안전성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제조방법 중 허가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상세기재토록 하는 것으로 국제 기준과 유사한 수준인 점, 변성제 함유 에탄올을 사용시 의약품의 안전성 및 품질을 위하여 변성제 제거 공정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심사내용** 의약품 허가신청시 실제 제조·유통하는 포장단위 기재 **강화**

- (현행) 내용액제류, 액상 주사제 등 외에는 ‘자사 포장단위’ 또는 ‘제조원 포장단위’로 기재
- (강화) ‘자사 포장단위’ 또는 ‘제조원 포장단위’로 기재 삭제

**심사결과** 실제 제조·유통하는 포장단위를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의약품 포장단위 신속제공 근거마련 하는 것으로 포장단위를 허가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실제 제조·유통하는 포장단위 기재에 따른 의약품안전관리 제도 도입 목적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심사내용** 주사제의 보관조건 및 사용기간 근거자료 제출 **강화**

- (현행) 일부 주사제 사용기간 입증자료 미제출
- (추가) 주사제 사용기간 입증자료 제출

**심사결과** 의약품 허가시 보관조건에 따른 사용기간을 입증하는 최소 제출기준을 도입하여 사용기간 내 의약품의 안전성 및 품질확보를 하는 것으로 국제 기준과 유사한 수준인 점, 의약품 허가시 사용기간 입증의 과학적 근거가 의약품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 추가 및 명확화 **강화**

- (현행) 현탁성주사제, 기허가와 첨가제가 다른 경우 별도 규정 없음
- (추가)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으로 현탁성주사제, 기허가와 첨가제가 다른 경우 대상으로 규정화

**심사결과** 의약품의 안전성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의약품 허가시 안전성·유효성 자료의 심사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국제 기준과 유사한 수준인 점, 의약품의 품질을 위하여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제출범위를 합리적으로 명확히 규정한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로 원료에 관한 자료 제출 **강화**

- (현행)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대상 품목 등 원료에 관한 자료 미제출
- (추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대상 품목 등 원료에 관한 자료 제출

**심사결과** 의약품은 품질이 확보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함으로써 최종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확보가 가능하므로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 심사를 위한 것으로 국제 기준과 유사한 수준인 점, 의약품의 품질 평가시 원료의약품을 포함한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비교용출시험 자료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 (현행) 허가신청시 제출된 비교용출시험 자료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 없음
- (추가) 허가신청시 제출된 비교용출시험 자료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화

**심사결과** 의약품의 안전성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의약품 허가 신청시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국제 기준과 유사한 수준인 점, 의약품 허가시 자료의 신뢰성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표준품 평가·관리 자료 제출 범위 확대 **강화**

- (현행) 신약 등은 허가신청시 표준품 및 시약, 시액에 관한 자료 제출
- (추가) 전문의약품은 허가신청시 표준품 및 시약, 시액에 관한 자료 제출

**심사결과** 의약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기준의 기준물질로 사용되는 표준품에 대한 적절한 평가 등이 요구되고 국제 기준과 유사한 수준인 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약품 신청시

제출문서인 국제공통기술문서(CTD)에 표준품 및 시약·시액에 관한 자료 제출의 의무화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62)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임상시험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강화**

- 임상시험 등 종사자의 최소 교육 이수시간 규정(직종, 참여경험 유무에 따라 세분화, 매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구분	신규자(우선교육 <sup>3)</sup> )	경험자(심화교육/보수교육 <sup>3)</sup> )	
의사, 약사 등	8시간(4시간)	6시간/4시간	50%까지 심포지엄, 워크숍, 온라인 교육 가능
임상시험등 심사위원 <sup>1)</sup>	12시간(8시간)	6시간/4시간	
그 밖의 종사자 <sup>2)</sup>	40시간(40시간)	연간 24시간(2년)/8시간	

- 1) 임상시험등 심사위원 : 임상시험등을 수행하기 전에 계획서의 윤리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 병원에 설치된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비전문가 및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됨
- 2) 임상시험등 모니터요원, 임상시험코디네이터, 임상시험실시기관 신뢰성보증 담당자
- 3) '우선교육'은 총 교육시간 중 임상시험 시작 전에 받아야하는 교육시간이며, 경험자의 경우 '심화교육'과 '보수교육'을 차례로 받도록 하고 있음

### - 교육기관 지정요건

-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교육대상자 20명 이상, 교육수행경험 3년 이상)
- 임상시험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

\* 협회 또는 단체(임상시험 및 교육수행 3년 이상 등)  
 임상시험 실시 관련 연구기관(임상시험 및 교육수행 3년 이상)  
 임상시험 수탁기관(충분한 임상시험 경험, 교육수행 3년 이상)  
 임상시험실시기관(임상시험센터 등 지원기구 운영 및 교육수행 3년 이상 등)

※ 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등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임상시험 품질 및 윤리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기관(병원)도 상위법령에 따라 지정 요건에 해당됨



- 교육 전담부서 설치 및 교육관리자 지정, 사무실·강의실·화장실 보유(추가 강의실은 입차가능) 등

**심사결과** 「약사법」 등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임상시험 종사자 등의 전문성 및 윤리성 제고를 위해 교육시간, 교육기관 지정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의무 부과 및 교육시간, 교육실시기관 지정 요건은 유사사례 및 국제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63)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화장품에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강화**

- 자외선 차단제 ‘드로메트리졸’의 사용기준 변경((현행) 7% → (개정) 1%)

**심사결과** 국민 건강 위해 방지를 위해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자외선차단제(트리메트로졸)의 사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당 성분을 이용한 기능성화장품은 없으며 해외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성분의 대체 원료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심사내용** 화장품 원료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의 안전기준 강화 **강화**

- (현재) 성장, 무균시험, 마이코플라스마 부정시험 등 6개 품질검사
- (추가) ‘항생제’, ‘혈청’ 등의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부재시험  
(배양액 제조에 해당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 한함)

**심사결과** 국민 건강 위해 방지를 위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시험토록 하고 있고 안전기준을 확보하여 사용토록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함**

## 제10절 통일·외교 및 국방 분야

### 1. 국가보훈처

◎ 집필자 김미영 사무관 ☎ 044-200-2447 ✉ judyca@pmo.go.kr

#### 가.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5년도에는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3개의 법령에 대해 강화 등 총 12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사회분과위심사 (2015.08.27)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2 (중요 1, 비중요 3)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행정사회분과위심사 (2015.08.27)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2 (중요 1, 비중요 3)
(3)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정안	행정사회분과위심사 (2015.08.27)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2 (중요 1, 비중요 3)
<b>계</b>	-	<b>원안의결 12</b>	<b>신설 6, 강화 6 (중요 3, 비중요 9)</b>



## 나.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2, 강화 2)

#### 심사내용 신설 수익사업의 승인대상

-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시 승인대상 등을 정함
  - 수익사업의 신설, 업종 및 품목, 수익금 사용계획, 수익사업의 업종·품목의 추가 또는 변경, 사업수행자의 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 등

**심사결과** 법률에서 수익사업 승인대상, 승인이 필요한 주요변경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익사업 승인대상, 주요 변경승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사업승인의 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제라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심사내용 강화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 당초안에서는 수익사업이 허용된 모든 보훈단체(14개)에 대해 업종·품목을 제한하고 있으나, 수정안에서는 수익사업 허용단체 중 수의계약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5개 및 자활집단촌을 포함)에 대해서만 업종·품목을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
  - \* 수의계약 자격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현재 5개 단체만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2개 단체(특수임무유공자회 및 재향군인회)는 '15.12.31까지만 수의계약 허용
- 또한, 수의계약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기 승인된 수익사업의 업종·품목과 같더라도, 승인받은 보훈단체와 합의 등으로 과잉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없는 경우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예외 적용 규정을 둠

**심사결과** 보훈단체간 수익사업 경쟁을 촉진하되, 과도한 사업권 분쟁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수정안은 업종·품목의 제한을 받는 피규제대상을 수의계약 허용단체로 제한하여 그 범위가 크게 축소(14개→5개)되었고, 상이단체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취지와 특수성 및 타 입법사례 등을 감안시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에 대해 원안동의

**심사내용**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강화**

- 국가계약법령, 독점규제법령 등 5개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등에 처한 경우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보훈단체는 다른 일반 단체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공단체이며, 법률에 근거 예외적으로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유지를 위한 법령(5개) 위반에 대해 승인 취소 사유로 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익사업의 시정조치 **신설**

- 국가계약법령, 독점규제법령 등 6개 법령\* 법령에 따른 지시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개정법률에 따라 시정조치 사유에 해당하는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보훈단체는 다른 일반 단체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공단체이며, 법률에 근거 예외적으로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유지를 위한 법령(6개)에 따른 지시사항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정안은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규제내용(4개)과 동일



## 제11절 일반행정·안전 분야

### 1. 행정자치부

◎ 집필자 안 호 사무관 ☎ 044-200-2443 ✉ stephen119@pmo.go.kr

#### 가.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5년도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신설 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행정자치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5.07.2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 나.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신설**

**심사결과** 국세, 지방세, 과태료의 경우에도 체납처분을 위해 관허사업 제한 등 간접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등 유사사례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규제는 아니며,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이므로 규제수준은 적정,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신설**

**심사결과** 공개기준의 최저금액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유보조항을 감안할 때 규제의 적정성 인정, 원안에 동의함

## 2. 인사혁신처

◎ 집필자 안 호 사무관 ☎ 044-200-2443 ✉ stephen119@pmo.go.kr

### 가.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5년도에는 공직자윤리법 등 4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2건, 강화 4건 등 총 6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6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2.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7.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02)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4)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0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6	신설 2, 강화 4 (비중요 6)

### 나.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취업이 제한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규모를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으로 규정 **강화**

**심사결과**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취업제한 기준(기본재산 100억 이상)은 기존 사기업체 및 법무법인 등의 취업제한 기준, 타 법령 사례 등을 고려한 것으로, 규제의 적정성 인정, 원안에 동의함



## (2)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공무원 임용제한 사유 추가 **강화**

- 「형법」 제303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심사결과** 모든 성범죄자를 공직임용에서 배제하거나 영구히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벌금액의 하한선(300만원)과 배제기간(2년)을 두고 있어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적절한 수준이라 판단, 원안에 동의함

## (3)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소득금액에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시키고, 소득기준을 변경  
(평균임금월액 → 평균연금월액) **강화**

**심사결과** 종전 공무원연금 소득심사 기준은 국민연금 등 타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 국민연금 소득심사 기준액보다 1.5배가량 높아 형평성 차원에서 평균임금월액을 평균연금월액으로 조정하는 것은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퇴직공무원이 국가·지자체가 전액 출연·출자한 공공기관에 재취업시 근로소득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이상일 경우 연금 전액 지급 정지 **신설**

**심사결과** 모든 공공기관 재취업자가 아닌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747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연금 지급을 정지하므로 재산권 침해 소지는 적어 과도하지 않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연금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 변경사항(사망·이혼·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 해외 거주 연금수급자는 매년 5월말 기준으로 6월30일까지 신분변동사항 제출 의무 및 자료 미제출시 급여 지급 일시 정지 **신설**

**심사결과** 신분변동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아 연금이 과오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상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는 필요최소한의 규정으로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해외 체류중인 연금수급자의 경우 실제 신상조사가 곤란함을 고려하여 연 1회 신고 의무로 부담을 최소화한 점을 감안 원안에 동의함

#### (4)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퇴직 전 근무기관의 업무취급 제한 기간 강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1년→2년) 하고, 백지신탁주식 또는 보유주식 관련 직무 회피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1천만원 이하) **강화**

**심사결과** 업무취급제한기간 강화에 따라 제한기간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기준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의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며,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여부 확인 없이 취업하거나, 취업사실 미신고 등 직무회피 관련 유사 의무사항 위반시 1천만원의 과태료 규정 등과 비교할 때 과도하지 않아, 원안에 동의함



### 3. 경찰청

◎ 집필자 안 호 사무관 ☎ 044-200-2443 ✉ stephen119@pmo.go.kr

#### 가.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5년도에는 경찰공무원임용령 등 7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3건, 강화 6건 등 총 19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9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1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경찰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7.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16)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4)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개정안	행정사회분과위 (2015.10.30)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신설1, 강화 2 (중요 1, 비중요 2)
(5)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5.11.20)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6)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5.11.20)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7)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18)	원안의결 6	신설 3, 강화 3 (비중요 6)
<b>계</b>	-	<b>개선권고 1 원안의결 18</b>	<b>신설 13, 강화 6 (중요 1, 비중요 18)</b>

## 나.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시 부정행위 구체화 **신설**

- 당해시험 정지 또는 무효처리, 5년간 응시금지 : 답안지 보여주기, 대리시험, 부정자료 소지, 병역·가점 등 관련 서류 위·변조 등
- 당해시험 정지 또는 무효처리 : 시험 전 시험문제 열람, 시험 전 또는 종료 후 답안 작성,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 소지 등

**심사결과** 경찰공무원임용시험 부정행위자의 유형에 따른 처분을 구체화하여 채용시험의 공신력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과 적정성을 인정, 원안에 동의함

###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총포(엽총·공기총에 한정)·석궁 소지허가자가 수렵을 하려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신설**

**심사결과** 엽총 등 소지자는 소지허가 신청시 교육을 제외하면 추가교육 규정이 없어 소지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였는 바,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필요하며, 교육대상·교육시기·교육내용 등 적정성 인정, 원안에 동의함

### (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총기 미사용시 총기를 지정 경찰관서에 보관하고, 총기 사용시, 필요 서류(위치정보수집 동의서 등)를 해당 경찰관서에 제출 **신설**

**심사결과** 현행 규정상 허가 받은 총기는 다른 지역 이동이 가능하고,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는 집에서 보관이 가능하므로 사건·사고의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동 규제가 필요,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로써 적정성 인정,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총포소지자도 장부를 비치하여야 함 **강화**

**심사결과** 업총용 실탄을 구입·사용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어 실탄을 모아 악용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수렵인의 실탄 구입·보관·사용 등 유통 경로와 수량을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어 원안에 동의함

#### (4)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총포 등 소지허가신청시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신설**

**심사결과** 총기소지 부적격자를 사전에 배제함으로써 사고·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신질환 치료여부와 관계없이 정신과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토록 할 필요성 인정,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전문의의 진단이 가장 정확하므로 정신과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적합,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총포 등 소지허가의 갱신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강화**

**심사결과** 총포 등 소지허가 갱신시(5년 주기)에도 정신장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총기소지 부적격자를 사전에 배제함으로써 사고·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신과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토록 할 필요성 인정, 전문의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므로 정신과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적합,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총포 등 소지자는 일몰 전·후 관할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경찰관서에 총포 보관해야 하고, 수렵장 내 3인 이상 계속 동행하고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 조끼를 착용해야 함 **강화**

**심사결과** 일몰 전·후 지정경찰관서 총포 보관, 주황색 '수렵'조끼 착용은 원안동의, 수렵장 내 3인이상 계속 동행은 개선권고

- 수렵 총기 등을 이용한 사건·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총기 소지심사를 강화하고 총기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어 일몰 전·후에 지정경찰관서에 총포를 보관하고,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 조끼 착용의무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에 동의함
- 수렵장 내 '3인 이상 계속 동행'규정은 규제의 실효성, 수렵활동의 특성 등을 감안,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유해조수구제용 총기 입·출고 지침' 관리기준을 준용하여 '2인 이상 동행'하되, 비수렵인도 동행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 (5)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경찰제복·장비 제조·판매업자의 시설기준을 정함 **신설**

- 제조업 : 중소기업청장 또는 조달청장이 요구하는 시설을 갖출 것
- 판매업 : 건물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을 갖출 것  
(단, 경찰청 소속기관 내에서 영업하는 경우,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심사결과** 경찰제복·장비를 이용한 경찰사칭범죄를 예방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도모하고, 필요최소한의 시설기준을 통해 경찰제복·장비의 무분별한 생산·유통을 근절하는 등의 필요성 인정, 판매장 없이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판매될 경우 경찰관 외 판매 등 불법행위 관리가 곤란하므로 동 규제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과도한 수준이 아니므로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폐업, 경찰제복 및 장비 제조·판매 중단, 등록 취소, 사망(해산)시 제조·판매업 등록증 반납 **신설**

**심사결과** ‘폐업, 제조·판매 중단, 사망(해산)’은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되는 사유이며, ‘등록취소’는 불법·위법한 사유에 의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등록증을 반납토록 한 것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제조·판매 장부에 제조·판매 품목의 증감내역 및 재고량을 기재 **신설**

**심사결과** ‘제조·판매 품목의 증감내역’과 ‘재고량’ 기재를 통해 경찰제복·장비의 유통을 파악할 수 있고, 이는 불법 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비추어 필요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적정성을 인정,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제조·판매업자는 필요시 검사·질문 공무원에게 장부·서류·물품을 제출하여야 함 **신설**

**심사결과** 제조·판매업자의 위반행위 확인 필요시 장부 등 물건을 인멸·은닉·위조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단속이 곤란, 경찰제복·장비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적정성을 인정, 원안에 동의함



## (6)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경찰제복·장비 제조·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기준 **신설**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변경 등록을 한 경우	등록 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 취소
다.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만, 제4조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 취소
라. 영업정지기간 중에 제조·판매업을 한 경우	등록 취소
마. 등록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바. 제조·판매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사항을 기재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사. 법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7조 : 명의 대여 금지 *제8조 : 경찰 아닌 자에게 제조·판매 및 유사경찰제복 등 제조·판매 금지	등록 취소
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자.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심사결과**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및 정도 등 사유를 고려하여 영업정지인 경우 2분1로 감경하거나, 등록취소인 경우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부담을 최소화한 측면을 고려, 원안에 동의함

**심사내용** 제조·판매 장부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함 **신설**

**심사결과** 경찰제복·장비의 조달구매가 연 1~2회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장부의 보존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규제의 적정성을 인정, 원안에 동의함

## (7)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3, 강화 3)

**심사내용** 총포 등의 임대업자는 임대명세부를 비치하여야 함 **강화**

**심사결과** 장부의 비치 등 의무사항은 임대 총포 등의 임대 현황 관리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사항이며, 현행 제조·판매업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규제가 과도한 수준은 아니므로 원안에 동의함

- 심사내용** 총포에 제조국명, 제조회사, 제품명, 제조번호 등 식별표지를 새기도록 함 **신설**
- 심사결과** 총포의 몸통부분에 제조국명, 제조회사, 제조번호 등을 새기는 것은 현행 총포 검사기준과 총포생산과정의 식별표시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총포의 출처 확인을 위해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에 동의함
- 심사내용** 총포 제조사는 매월 장약총포의 식별표지 정보를 명세부에 기록하고 그 사본을 다음 달 7일까지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함 **신설**
- 심사결과** 총포의 출처 추적을 통한 범죄악용 방지라는 규제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사항으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에 동의함
- 심사내용** 예술소품용 총포는 실탄이 발사되지 않도록 하되, 용접 등 반영구적인 방법으로 조치하고, 예술소품용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등은 현행법에 따라 관리 **강화**
- 심사결과** 총포의 실탄이 발사되지 않도록 하고 총포강(총열 내부) 일부를 용접 등과 같은 방법으로 반영구적으로 막는 조치는 총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규제의 적정성을 인정, 원안에 동의함
- 심사내용** 총포 등 소지허가자 및 관리책임자의 관리기준 및 방법을 정함 **신설**
- 총포 등의 2중 잠금장치 보관함 관리
  - 총포 등을 일시 소지하게 된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그 밖에 경찰관서장의 지시를 따를 것
- 심사결과** 현재 수출입·사용되고 있는 영화 촬영용 모의총기 사용시에도 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관리기준 및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새롭게 추가되는 부담은 없으므로 규제가 과도하지 않아 원안에 동의함
- 심사내용** 장약 총포·화약류를 수출하려는 경우 수입국의 허가 및 경유국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강화**
- 수입국의 수입허가증 사본 또는 수입업체의 수입면허증 사본
  - 3국 경유시 경유국의 동의 증명서
- 심사결과** 수입국의 수입허가 여부 및 경유국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반국가 단체, 테러·범죄단체 등에 총포·화약류가 전달되거나 밀수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과도한 수준은 아니므로 원안에 동의함



## 4. 법무부

◎ 집필자 김한필 사무관 ☎ 044-200-2442 ✉ kimhanpil@pmo.go.kr

### 가.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5년도에는 변호사법, 외국법자문사법 2개 법률에 대해 12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2건 중 3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9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법무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본위원회 (2015.07.10)	개선권고 3 원안의결 6	신설 9 (중요 6, 비중요 3)
(2) 변호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11)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계	-	개선권고 3 원안의결 9	신설 12 (중요 6, 비중요 6)

### 나.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외국법자문사법 (신설 9)

**심사내용** 합작법무법인 합작참여자의 자격 **신설**

－ 합작법무법인 합작참여자의 자격 설정

국내 합작참여자	외국 합작참여자
변호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5년 이상의 운영되었을 것	자유무역협정 당사국에서 적법하게 설립되어 5년 이상 운영되었을 것
경력 5년 이상인 5인 이상의 변호사 보유(최소 3인은 해당 로펌의 구성원)	경력 5년 이상인 5인 이상의 변호사 보유(최소 3인은 해당 로펌의 구성원)
최근 5년간 징계·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단, 경미한 경우 제외)	최근 5년간 징계·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단, 경미한 경우 제외)
인적 구성, 업무사례, 업무능력 등에 비추어 적합한 전문성을 보유할 것	인적 구성, 업무사례, 업무능력 등에 비추어 적합한 전문성을 보유할 것

**심사결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가능토록 한 FTA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급격한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합작참여자 5년 업력과 관련, 높은 진입장벽의 우려, 국제통상적 측면,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 고려 시,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합작참여자의 업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할 것을 개선권고

**심사내용** 합작참여자의 가입 **신설**

- 합작참여(제35조의8)의 요건을 충족하는 합작참여자는 합작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인가 시 추가 가입 가능

**심사결과** 합작법무법인에 추가로 참여하는 자도 설립에 참여한 법인과 동일한 법적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의 타당성이 인정됨. 또한, 추가 참여자에 완화된 조건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 편법적 방식으로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한편, 전원의 동의 없이 새로운 참여자가 가입되는 경우 합작참여자간의 갈등 등의 문제가 예상되며, 일반적으로 합작법무법인에 다수의 법인이 동시 참여하지 않음을 감안할 때, 과도한 조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합작법무법인의 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및 소속변호사, 소속외국법자문사 **신설**

- 5년 이상의 경력(원 자격국 2년 이상) 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를 각 2인 이상을 두도록 규정
- 합작법무법인 내 변호사 구성 제한
- 합작법무법인의 선임 및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을 3단계 개방국을 원자격국으로 하는 외국변호사로 제한

**심사결과** 합작법인에 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인적요건(5년 이상, 2명 이상) 규제의 타당성은 인정되며, 외국법자문사의 원자격국을 3단계 개방국으로 한정된 것도 단계별 개방의 취지에 부합함. 다만, 선임변호사 비율 제한은 적정성은 인정되나,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선권고



**심사내용** **합작법무법인의 대표 자격** **신설**

-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가 대표를 맡도록 하였으며,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
- 대표 외국법자문사의 원자격국을 합작참여자의 소재지국으로 제한

**심사결과** 합작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한다는 점 등을 고려, 선임변호사(외국법자문사)로 제한할 필요성은 인정됨. 또한, 합작법인 대표의 상징성·대표성을 감안, 대표의 원자격국과 외국합작참여자의 설립지국을 일치시킬 필요도 있음. 다만, 대표 7년 경력 요건과 관련하여, 규제의 실익, 기준 설정의 근거, 유사입법례 및 해외사례 등을 감안, 적정성이 미흡한 바, 7년 경력 요건은 삭제를 개선권고

**심사내용** **외국 합작참여자의 지분 비율 등 제한** **신설**

- 외국 합작참여자의 합작법무법인 지분 비율을 49/100 이하로 제한
- 합작참여자 회의에서 합작참여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외국 이해관계자는 동 조항이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이유로 지분율·의결권 제한을 완화, 개선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국내로펌의 국제경쟁력, FTA 협상 결과, 역진방지 조항 등을 종합 고려 시, 개방초기 국내 법률시장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는 바, 원안의결

**심사내용** **외국 합작참여자의 수익 분배 비율 제한** **신설**

-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분비율에 따라 수익 배분

**심사결과** 국내 합작참여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 수단이라는 점, 참여자간 합의에 따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점,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원안의결

**심사내용** **외국 합작참여자의 업무범위 제한** **신설**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의 사법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그러한 절차를 위한 법률 문서의 작성
-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위한 대리
- 노동 분야 자문

-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그 밖에 행정관청에 등기 또는 등록함을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으로 하는 권리의 득실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의 대리 및 이를 목적으로 한 문서의 작성
-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친족, 상속관계 사무의 대리 및 이를 목적으로 한 문서의 작성

**심사결과** 국내 중·소형 로펌 등 보호 및 미개방 분야의 우회적 개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합작법무법인의 보고 의무 **신설**

- 합작법무법인의 본질에 관한 사항 변동 시 법무부장관에 보고하도록 의무 부과

**심사결과** 합작법무법인 참여자의 자격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임의적 신고사항으로 할 경우 합법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바, 보고를 의무화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합작 조건 등은 국내 합작참여자가 외국 합작참여자로부터 선진 법률서비스 기법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 업계를 개방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인 바, 그 조건 및 요건의 준수를 확보하는 것은 성공적인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해 필수적 사항으로 판단.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국내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결과, 동 법안의 취지와 규제 정도에 대해 이견도 없었으므로 비중요 과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합작법무법인에 대한 외국법자문사 징계 규정 준용 **신설**

- 외국법자문사 징계 규정(제7장 별칙)을 준용하는 형식으로 합작법무법인에 대한 징계 규정 신설

**심사결과**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사무직원의 고용 등과 관련하여 외국법자문사, 변호사와는 별개로 합작법무법인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 개정안의 합작법무법인과 관련한 대부분 조항은 합작법무법인을 의무의 주체로 하고 있는 바, 합작법무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위한 징계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제91조의2)도 법무법인 등의 담당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변호사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등도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도 감안, 비중요 규제외로 보아 원안의결



## (2) 변호사법 (신설 3)

**심사내용** 전문분야 미등록자 전문분야 표방 금지 **신설**

- 전문분야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전문분야를 표시하여 광고하는 것을 금지

**심사결과** 전문분야 등록제도의 공신력 확보, 변호사 전문분야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 등의 측면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문분야 미등록 변호사의 전문분야 표방행위’가 현행 금지조항(객관적 사실 과장 광고 금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바,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도 인정됨. 한편, 동 조항은 허위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내용을 규율하는 것에 불과하며, 별도의 별칙을 없이, 위반의 경위·정도에 따라 징계를 통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변호사의 금품 분리·보관 의무 **신설**

- 변호사가 자신의 재산과 타인의 재산을 분리·보관하도록 의무 부과

**심사결과** 동 개정안은 변호사 자신의 재산과 의뢰인을 위하여 받은 금품을 분리·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횡령 등 변호사 비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변호사윤리장전에 의뢰인에게 받은 금품을 임의로 유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변호사단체의 자치규정에 불과한바, 법령에 명문화 할 필요가 있음. 한편, 동 조항은 금품의 분리보관의 원칙을 선언하는 것으로 구체적 보관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적정성이 인정됨. 영미법 국가도 신탁계좌 등을 활용한 의뢰인의 금품 분리·보관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재무 운용 내역을 완전하게 기록해 놓을 의무를 부과하여 관리·감독하는 등 우리보다 엄격한 규제를 실시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심사내용**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등 취업 결격사유 **신설**

– 퇴직공직자의 로펌 취업 결격사유\* 규정

- \*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자
-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심사결과** 법무법인 업무의 공공성 측면 등을 고려 할 때 법무법인에 취업하려는 퇴직공무원에도 결격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동 규제의 내용은 현재 법무법인에 취업하려는 사무직원, 변호사보다 완화된 수준인 바, 적정성도 인정. 그 밖에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타법령에서도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점도 감안, 비중요 규제로 보아 원안의결



## 5. 국민안전처

◎ **집필자** 정치화 사무관 ☎ 044-200-2445 ✉ jihwaz@pmo.go.kr

김미영 사무관 ☎ 044-200-2447 ✉ judyca@pmo.go.kr

### 가.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5년도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제정안, 등 40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30건, 강화 31건 등 총 6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61건 중 1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2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5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국민안전처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5.03.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3.16)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3.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플랩뎀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5.04.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행정사회분과위원회 (2015.05.11)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15.05.27)	원안의결 2	강화 2 (중요 2)
(7)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6.01)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6.0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6.0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소방시설공사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5.06.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1) 소방시설 공사 등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5.06.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행정사회 분과위원회 (2015.06.16)	철회권고 1 원안의결 1	강화 2 (중요 1, 비중요 1)
(13)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행정사회 분과위원회 (2015.07.14)	개선권고 1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2 (중요 2, 비중요 2)
(1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5) 저발화성 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5.08.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18)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9)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5.08.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31)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2 (비중요 4)
(2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08.31)	원안의결 6	강화 6 (비중요 6)
(22)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3)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0.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4)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제정안	행정사회분과위원회 (2015.11.16)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25)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5.11.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6)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2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04)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8)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9)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04)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30)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1) 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5.12.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2)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5.12.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2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4)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5)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5.12.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6)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7)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8)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2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9)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0)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b>계</b>	-	<b>철회권고 1 개선권고 2 원안의결 58</b>	<b>신설 30, 강화 31 (중요 7, 비중요 54)</b>

## 나.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주방의 대두유(기름) 화재예방을 위한 K급 소화능력 시험기준 마련 **강화**

**심사결과** 기존 소화기로는 주방(기름)화재를 효과적으로 소화하기 어려우므로 주방화재 특성에 적합한 소화기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소화능력 시험기준은 국제공인 UL 및 ISO 시험방법을 준용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비중요로 검토

###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수시검사 대상에 승강기 종류, 제어반, 구동기 변경시 추가 **강화**

**심사결과** 승강기 종류, 제어반, 구동기 변경은 승강기 안전에 직결되므로 수시검사를 통해 승강기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 확인을 함이 필요하고, 현재도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등 변경시 수시검사 대상이므로 검사대상 추가(제어방식 등 변경 없이 제어반, 구동기 교체)에 따른 규제비용 증가는 연간 1.2억원 정도로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비중요로 검토

**심사내용** 승강기에 대한 정밀안전검사 요건 강화 **강화**

- (현행) 승강기 설치후 15년 도래시, 중대사고발생시, 완성·수시·정기검사시, 결함원인 불명확시 등

- (개정) 승강기 설치후 15년 도래시, 매 3년마다 추가

**심사결과** 승강기에 대한 연령규제가 없고, 노후 승강기는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노후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고,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등 유사사례 비교시 15년 경과 후 3년 주기의 정밀안전검사는 적정하다고 판단, 또한 정밀안전검사시 정기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는 측면도 고려, 비중요로 검토



###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승강기 중대고장 보고대상 항목 확대 **강화**

- (현행)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 개문출발, 목적층미운행, 문안열림 등/  
에스컬레이터 : 핸드레일과 디딤판 속도가 다른 경우
- (개정) 엘리베이터(휠체어리프트) : 최상층이나 최하층을 지나 계속운행시/승강장 문이탈 등 경우 추가/에스컬레이터 : 역주행, 브레이크오작동, 스탭파손 등 추가

**심사결과** 승강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고장 보고 항목을 추가하여 중점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연간 보고비용이 52만원 정도 추가발생하나 보고항목을 추가로 동일 중대고장의 재발을 방지하고, 중대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승강기관련 단체(5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약 900개)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결과 별도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로 검토

### (4)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플랩댐퍼의 구조, 재질, 내구성능, 작동시험, 성능시험, 배출량시험, 온도환경시험, 염수분무시험 등의 기준 마련 **신설**

**심사결과**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플랩댐퍼에 대해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성능인증에 따른 직접적 규제비용은 33백만원으로 추정되며, 플랩댐퍼에 대한 성능인증 및 기술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플랩댐퍼에 대한 성능담보라는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플랩댐퍼 생산관련 제조업체 의견수렴결과 별도 이견 없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로 검토

### (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위험물저장탱크 등에서 위험물누출사고·화재사고 등 예방을 위해 위험물 저장탱크, 주유소 등에 대하여, 인증제품사용 및 방유제요건강화, 수동/자동유량측정 모두 설치, 주유소주유기 외부에 정전기방지패드 설치 등 시설요건 마련 **강화**

**심사결과**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규제로 규제강화 필요성이 있고, 외국사례 등과 비교시 과도하지 않고, 기존 시설에는 소급적용 없이 신규 또는 변경허가시에만 적용하고 있는 등 규제수준도 적정하므로 원안동의

##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강화**

- (현행) 바닥면적 300㎡~600㎡에는 간이스프링클러, 바닥면적 600㎡이상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등 설치의무 부과
- (개정) 바닥면적 300㎡ 미만 및 기존 운영중인 요양병원에 대해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 부과

**심사결과** 개정안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소급적용 함에 따라 규제의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 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나, 스프링클러가 화재시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설비이므로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요양병원의 특성을 감안시 예외없는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통해 얻는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피규제자의 현실적인 이유 등을 고려하여 당초 규제안보다 규제수준을 완화해 주고, 의료수가 조정을 통해 규제비용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원안동의

**심사내용**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 위반횟수별 과태료를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00만원, 3차위반 200만원 으로 정함 **강화**

**심사결과** 과태료 부과는 법률에서 정한 의무에 대한 이행력 확보를 위한 제재수단으로 필요하고,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과도하지 않고 소방기본법 시행령 등 타 입법례와 유사하므로 적정하다고 판단, 원안의결



### (7)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3)

- 심사내용**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의 명시사항 규정 **신설**
- 소방시설공사 등의 내용, 도급금액, 착·완공 시기, 선금금·기성금 지급시기 및 방법, 도급목적물 인도 시기, 준공금 지급시기 등
  -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부담, 면책의 범위, 도급금액 및 계약내용의 변경,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보험료 지급, 하자보수 등

**심사결과** 별도의 추가 비용 발생은 없는 반면, 시공품질 향상에 따른 부실시공 감소 등의 국민편익 증진이 예상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사업법 등 타 법령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며, 내용도 과도하지 않은 바 비중요로 검토

- 심사내용**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하도급금액을 정함 **신설**
-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 하도급률 82%)
  - 하도급계약금액이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결과** 안전성의 확보가 필수적인 시행중인 건설, 정보통신 공사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기준을 이미 설정하여 운영 중이며, 최소 하도급율 미만 등으로 적정성 심사대상이 될 경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 등에 따른 규제비용은 발생하나, 시공품질 향상에 따른 부실시공 감소 등의 국민편익 증진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중요로 검토

- 심사내용**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와 관련된 절차 및 방법, 자료 공개대상 계약규모 등을 정함 **신설**
-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시설공사등을 발주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는 1천만원 이상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도급한 경우로 함

**심사결과**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홈페이지 게재하도록 하는 것은 발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음으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개대상 계약규모 1천만원 이상은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도급액 현황, 불공정하도급 계약을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바, 비중요로 검토

**(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심사내용** 피난계획 세부내용 및 정비, 피난유도 안내 정보제공 방법 등 마련 **신설**

- (피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화재경보수단 및 피난경로, 각 층별 피난 인원 및 재해약자, 피난경로 등
- (피난계획 정비) 2년에 1회이상 정비
- (피난유도 안내 정보제공의 방법) 피난안내 교육, 피난안내 방송, 피난 안내도, 피난 안내영상 등을 통해 제공 (선택사항)

**심사결과** 비용편의 측면에서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피난안내 정보 제공 등에 관한 표준안을 안전처에서 작성, 배포할 예정임에 따라 규제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장성 요양병원 화재 등 최근의 대형 화재사고 등을 통해서 볼 때 재난발생 시 국민안전의 확보라는 규제 편익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 비중요로 검토**(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심사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등록내용, 등록주체, 등록시기 등을 규정 **신설**

- (등록내용) 설치검사 결과, 정기검사 결과,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결과, 보험의 종류, 시설운영 변경사항 등
- (등록주체) 안점검사기관, 관리감독기관, 안전교육실시기관 등
- (등록시기) 지체없이 시스템에 등록

**심사결과** 법률 개정 이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추가인력이나 예산소요 없이 집행이 가능하며 기술적, 행정적으로 특별한 어려움도 없고, 타 입법사례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상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 구축·운영내용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 비중요로 검토



## (10)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요령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의 진단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기업진단요령’을 마련 **신설**

- (진단자 및 진단 기준일)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진단기관 등이 진단하며, 진단일은 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
- (진단불능사유) 제출된 재무제표 허위, 진단을 받는 자가 자료 제출 요구 거부, 입증서류에 대한 보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
- (부실자산) 자산의 과대평가에 따른 가공자산,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선급비용, 부도어음 등
- (자산의 평가) 예금, 매출채권, 가지급금, 장단기대여금, 공사용 전도자금, 유가증권, 재고자산, 토지 및 건물, 중기계 및 차량 등의 평가방법

**심사결과** 유사입법례로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 공사업 등의 기업진단요령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며, 이미 운영중인 기업보고서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동 고시로 인한 새로운 비용발생은 없으며, 공정한 기업진단 환경 조성에 따른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중요로 검토

## (11) 소방시설 공사 등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개정법률에서 소방시설공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을 마련 **신설**

- (적정성 심사대상) 하도급율이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해당시
  - \*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등
- (세부심사기준)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 등
- (계약내용 등의 변경요구 요건)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 하도급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 (재심사) 발주자의 변경요구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결과** 유사입법례로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 공사업 등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며, 비용측면에서 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 등이 소요되나, 공정한 도급계약 환경 조성에 따른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중요로 검토

## (1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15.7.1.부터 '18.12.31.까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19.1.1.이후 과징금 산정기준에 있어 등급구분을 삭제하며, 1일당 평균 도급액에 적정과징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기준으로 변경 **강화**

- 업종 구분 : (현행) 소방시설공사업 1개 → (개정) 설계 및 감리업, 공사업, 방염처리업 등 3개로 세분화
- 등급 구분 : (현행) 도급액별 13등급 → (개정) 18등급으로 세분화
- 1일 과징금 : (현행) 70,000원~330,000원 → (개정) 6,000~2,137,000원

**심사결과** 개정안은 현재 역진적 구조의 모순이 있는 과징금 부과체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1일 과징금 한도의 대폭 상향조정으로 도급액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되어 철회권고

**심사내용** 부실설계·시공·감리 및 도급대금의 지급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심사결과** 부실 설계·시공·감리가 낳는 위험성에 비해 현행 행정처분 기준이 부실 설계·시공·감리 등에 대한 1차 처분은 경고 등으로 경미한 수준이고, 소방시설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부 소방시설업자의 법령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민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처분기준 강화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 비중요로 검토

## (13)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신설 2, 강화 2)

**심사내용**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통한 공사중지 요청의 기준, 이행상황 관리대장 비치, 관리책임자 지정 **신설**

**심사결과**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내용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는 것으로 현행 법률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도와 관련 관리·감독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에도 고시로 시행중이므로 사업자에게 새로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규제내용이 유사입법과 비교시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안동의

**심사내용** 방재관리대책 수립 대행자의 등록취소 요건 규정 **강화**

- (현행) 대행자의 등록취소 사유로 8개 요건을 규정(이중 당연등록 취소사유 3개\*)
  - \* 요건 미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개정안) 대행자 당연 등록취소 사유에 3개 요건을 추가
  - 휴업·폐업·영업재개시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심사결과** 개정안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등록취소 요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폐업신고, 사업자등록 말소 등은 실제 폐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안에 동의하나, 휴·폐업 신고 및 영업재개 신고 없이 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당연 등록취소 요건으로 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당연 등록취소 요건에서 제외할 것을 개선권고함

**심사내용**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등의 부당수령시 지급제한규정 마련 **신설**

**심사결과** 자연재해대책법상 재난지원금(복구비 등)의 경우 허위·과다신청이 만연하고 있는 바,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강화가 필요하고, 또한, 정당한 수령자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허위·부정청구를 통한 부당수령자에 대한 지급제한이므로 규제 적정성이 인정되며, 타 입법에서의 국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 비중요로 검토

**심사내용**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관련 의무 불이행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 **강화**

- 이행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는 경우
-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착공 등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 요청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결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동 법률상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고, 유사입법인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에서도 영향평가와 관련된 의무사항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한도(500만원)도 타 입법사례와 동일하거나 완화된 수준임을 고려, 비중요로 검토

#### (1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제설·제빙의무의 대상건축물 및 예외적 상황시의 의무사항 규정 **강화**

- (대상건축물) 공업화박판강구조 (PEB) 및 아치판넬 지붕구조 건축물로, 연면적 500㎡ 이상 공장 및 다중이용시설, 대형 건축물 등
- (예외상황시) 제설·제빙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작업 중지 및 이용객 대피, 위험 해소시까지 시설물 사용 제한 조치

**심사결과**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14.2.17)와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 적설, 적빙 시 지붕붕괴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제설·제빙 필요성 인정되고,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특정관리대상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 공장 등)중 과도한 하중 부과시 붕괴 위험이 있는 PEB 및 아치판넬 구조의 건축물에 한정하고 있어 규제수준도 적정하다고 판단, 비중요로 검토

#### (15) 저발화성 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화재방지성능 인증시, 그 수수료를 971,960원으로 정함 **신설**

**심사결과** 화재방지 성능인증을 받은 저발화성 담배를 생산·판매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인증 수수료를 정하는 것으로, 수수료 부과기준의 강제성이 있으나, 상위법령에서 실비변상적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재부와 3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당초안보다 수수료를 대폭 인하 (1,334,410원 → 971,960원)한 점 등을 고려, 비중요로 검토



## (16)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사업등록의 유효기간 **신설**

- 등록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후 계속 사업을 하려는 경우 갱신토록 규정

**심사결과** 수상레저사업의 경우 이용자의 안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일정기간(10년)을 단위로 사업등록의 기준·요건 등의 유지여부를 재점검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영업의 제한 **강화**

-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된 경우, ⑤휴업기간 중에 영업하는 경우에 영업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현행 법령에서도 '보험 미가입' 및 휴업중 영업'에 대해 법 해석상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나, 법 규정의 명확성을 위해 영업제한 요건에 이를 추가하는 것이며, 보험미가입 상태에서의 사고시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보험미가입 기간 동안 영업정지 처분 등을 통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1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련 의무위반시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강화**

- (과태료 한도) : 최대 200만원 → 최대 300만원
- (책임보험 미가입) : 미가입 구간별 고정 과태료 → 미가입일수에 따라 과태료 세분화
- (실내장식물 설치·유지, 내부구획의 불연재료 사용의무 위반) : 횟수와 무관히 200만원 부과 → 위반횟수별로 50/100/300만원

**심사결과** 비상구를 창고용도로 사용하거나, 방화셔터 자리에 물건을 놓아두는 등 안전확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법률개정취지에 따라 과태료 한도를 상향할 필요성·적정성이 인정되고, 규제 취지가 보험가입의 신속한 확보에 있다고 할 때, 구간 변경 시점에만 가입유인이 있는 고정 과태료 부과보다 미가입일수에 따른 차등 과태료부과가 더 효과적인 유인체계이며, 유사입법사례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도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시 미가입일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중인 점 등을 고려, 비중요로 검토

**(1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심사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교육 범위 **강화**

- (현행)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해 소방안전에 대한 신규교육(4시간)과 법령위반시 수시교육을 받도록 함
- (강화) 신규·보수 교육을 받은 달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4시간)을 받도록 함(기존 수시교육은 그대로 존치)

**심사결과**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주기적인 보수교육 필요성이 인정되고, 보수교육 시간을 유사입법례와 같이 신규교육 시간과 동일하게 하고 있으며, 교육비용은 무료이고, 인터넷 교육도 가능하므로 실제 규제비용도 미미한 점을 감안, 비중요로 검토

**(19)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강화 1)****심사내용** 행정처분의 기준 **강화**

- 교통안전특정해역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내용·조건 등을 위반 시 허가취소 또는 공사·작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내용·조건 등 위반 시의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예측가능성 제고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강화 2)****심사내용**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강화**

- (현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
- (개정)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의무 부과,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및 교육 참여의무 부과



**심사결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훈련을 실시하더라도, 실 거주자 및 근무자 등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방훈련 자체가 무용해질 수 있는 바,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소방훈련에 대한 적극 참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과태료 등 행정제재수단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불참시 불이익처분 및 범칙금 등을 부과하는 미국 등 해외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비중요로 판단

**심사내용** 소방점검 결과보고체계 개선 및 사후 보완조치 관련 의무 부과 **강화**

- 결과보고체계 개선 : 점검자는 관계인에 통보, 관계인이 소방서장에 보고하고 점검자가 관계인에 보고시,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됨
- 보완조치 관련 의무 : 점검결과 제출 시 보완계획서를 함께 제출하고, 보완기간 만료시점까지 소방서에 보완 결과를 통보

**심사결과** 관계인(건물주 등)이 점검업자에 위탁하여 자체점검시 점검자가 소방관서에 보고하던 것을 점검결과 왜곡 등의 방지를 위해, 관계인이 직접 소방관서에 보고하도록 보고의무 대상자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소방시설 자체점검결과는 방화대상물의 관계자(소유자, 점유자 등)가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보완조치 관련 의무의 경우도, 관계인의 입장에서 보완계획서 제출에 따른 비용은 일부 발생하나, 소방관서의 행정명령 및 현장조사 등의 감소로 규제가 완화되는 측면도 있고, 소방관서가 부적합 대상을 모두 확인하고 이행점검을 함에 따른 행정 비효율도 개선하는 측면을 고려, 비중요로 판단

**심사내용** 취소규정의 상향입법 및 인증 취소시 제한규정 신설 **신설**

- (인증제한) 성능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동일품목에 대한 성능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

**심사결과** 거짓 성능인증 등으로 인증이 취소된 자에게 취소 후 일정기간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타당하고, 인증제품의 용도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용임을 감안할 때, 2년의 인증제한을 두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과도하지 않은 바, 비중요로 검토

**심사내용** 신설된 의무의 위반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 **신설**

- 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관계인
- 소방시설의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관계인
- 보완계획서 및 보완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관계인
- 안전점검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점검자

**심사결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점검결과 / 보완계획서 / 보완결과 등의 제출 역시 당해 시설물의 소방안전확보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그 이행확보를 위한 동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며, 해외사례로 일본의 경우도, 점검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 30만엔(한화 2억8500만원 상당)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로 검토

## (2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강화 6)

**심사내용** 행정처분 **강화**

- 행정처분 대상에 음주 후 유·도선 조종행위를 포함

**심사결과** 다중이 이용하는 유·도선의 경우 사고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동반함에 따라, 술에 취해 유·도선을 조종하는 행위는 유·도선 안전의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이를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유·도선 안전확보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금액 **강화**

-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를 상향 조정

\* (현행) 300만원 → (개정) 1,000만원

**심사결과** 도선의 경우 운항정지 시 교통수단의 단절로 인해 국민의 불편초래 및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타 입법사례와 비교해볼 때 과징금 부과금액이 현저히 낮게 규정되어 있어 타 법령과 균형을 맞추어 상향조정된 점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선 승객의 준수사항 **강화**

- 무동력 유선을 대여하여 조종하는 자에 대해 사업장과 연락 가능한 통신장비 (휴대전화)를 휴대토록 규정

**심사결과** 유선이 시야권 내에서 멀어지거나 안전 사각지대 진입 시 방송시설만으로는 승객에게 안전과 관련하여 안내·계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시 승객과의 직접적인 연락수단 부재로 인해 안전확보에 차질이 우려되며, 대부분의 국민이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도선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강화**

- 유·도선사업자에게 선원 및 기타 종사자 등에 대해 비상훈련을 실시토록 의무 부과

**심사결과** '14.4.16. 세월호 침몰사고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선박사고 발생 시에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장, 선원, 기타 종사자 등의 명확한 판단과 초기대응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유·도선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훈련 의무부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요금 등의 게시 **강화**

- 유·도선사업자는 유·도선 및 유·도선장에 현행 게시항목 외에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탈출요령,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장소 등을 추가 게시

**심사결과** 법정 게시사항에 대한 그 게시방법, 게시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기존 게시사항은 대부분 운임, 영업정보 등으로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부족하므로 비상상황 발생시 승객이 스스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관련 사항을 추가 게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금액 **강화**

- 유·도선 사업과 관련하여 안전운항질서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심사결과** 안전운항 질서위반행위는 국민의 안전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제재수준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 법률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유사입법과 비교시 과도하지 않음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22)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보수교육 불참에 따른 손해평가인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 **신설**

- 보수교육을 2회 연속하여 받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 보수교육을 3회 이상 연속하여 받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1년

**심사결과** 손해평가인은 풍수해보험제도의 운영의 핵심이 되는 자로, 보험목적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나, 손해평가인 대부분이 평상시 생업(농업, 상업 등)에 종사하고 대규모 재난발생시 한시적으로 피해시설에 대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과, 타법사례로 기상산업진흥법 상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의 경우도 차기 보수교육을 받을 때 까지 자격정지를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판단

## (2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계측기기 성능검사 대행업의 등록 상 인력요건 강화 **신설**

- (현행) 기계분야, 전기분야 또는 전자분야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 (강화) 기계분야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전기·전자분야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심사결과** 기계와 전기·전자라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성능검사 기기 및 검사대상장비를 고려할 때, 전문가 2명을 검사인력으로 요구함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해외사례로서 일본의 경우도 측량기기·측량성과의 검정담당기관 자격 기준으로 전문인력 2명을 요구(측량기기 및 측량성과의 검정 기관에 관한 기준 및 등록요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로 검토

## (24)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정함 **신설**

**심사결과**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지진발생시에도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세부 내진설계기준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였고, 해외사례 등과 비교시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원안에 동의하나, 내진설계기준 적용여부에 대한 확인시점을 시행일('16.1.25) 이후 건축허가 동의시점으로 하고 있는 것과 관련, '16년에 건축허가 신청이 계획된 건축물에 대해 동 규제 도입에 따른 건축설계변경 등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줄 필요가 있으므로, 시행 후 1년에 한하여 내진설계적용 확인시점을 건축허가 동의시점이 아닌 소방시설 착공신고 시점으로 하는 부칙규정을 마련토록 개선권고

### (25)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대한 기준을 정함 **신설**

- 표지 부착위치 : 이동탱크저장소의 전면 상단 및 후면 상단
- 규격 및 형상 : 60cm 이상×30cm 이상의 횡형 사각형
- 색상 및 문자 : 흑색 바탕에 황색 반사 도료로 “위험물”이라 표기
- 위험물 분류 : 위험물의 내용 및 위험도에 따른 분류

심사결과

동 위험성 경고표지 기준은 UN의 위험물 운송 관련 권고사항인 UN-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유럽 및 미국 등 해외 선진국도 UN의 권고사항을 기준으로 위험성 경고표지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로 검토

### (26)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선박주유취급소의 특례로 수상주유취급소를 신설하면서, 그 설치 기준 등을 규정 **신설**

심사결과

현재는 수상주유취급소에 대한 설치기준조차 없어, 레저선박 보유자들은 주유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 바, 설치기준 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설치기준의 내용도 충돌 사고에 대비한 구조물 설치 및 누유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차단밸브 및 오일펜스 설치 등으로, 필요적 사항이고 과도하지 않으며, 미국·유럽 등 해외 선진국들은 동 기준과 유사한, 수상구조물에 고정주유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의 기준을 운영 중인 점 등을 고려, 비중요로 검토

## (2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소방시설 공사범위를 구체화 **강화**

- (현행) 연면적 1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은 제외)
- (개정)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改設)하는 공사 등

**심사결과** 면적에 관계없이 옥내·외 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특정 소방시설의 신설/개설 등의 공사로 한정함에 따라 연면적 1천㎡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 일부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연면적 1천㎡ 이상의 소방시설공사에서는 예외사항을 제외한 전 소방시설공사에서 특정 소방시설공사로 한정(포지티브 규제 → 네거티브 규제)함에 따라 규제완화의 측면이 있고, 특정소방대상물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있으나 그 면적에 따라 위험성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바, 면적에 따른 감리대상 구분은 삭제하되,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소화설비의 신설/개설/증설 시에만 공사감리를 지정하도록 한정함은 타당하고,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 비중요로 검토

**심사내용** 일정규모(3만㎡) 이상의 공사시 보조감리원을 추가 배치 **강화**

(※ 연면적 20만㎡이상 공사시, 10만㎡마다 보조감리원 1명 추가 배치)

**심사결과** 소방시설의 공사감리는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비상시 소방시설의 올바른 작동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나, 대규모 공사구역 내 동시다발적으로 소방시설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1명의 감리원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감리가 어려운 점이 인정되는 바, 책임감리원을 보좌할 보조감리원을 투입하여, 대규모 공사구역내 여러 공사지역을 동시에 감리할 필요성 인정되며, 감리원 1인당 최대 10만㎡ 이하의 건축면적을 감리하도록 함에 따라, 감리의 정확성 및 체계성을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점과 유사입법사례로서 전력기술관리법 제 22조에서도 공사규모에 따라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을 차등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비중요로 검토



## (28)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이음관의 결합부 금속재 보강 및 암모니아 부식시험 도입 **신설**

**심사결과** 이음관의 결합부 파손으로 인한 누수와 이로 인한 부식 발생은 건축물 자체의 안전은 물론 화재시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바, 결합부에 금속재를 보강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시공 후 반영구적인 사용이 이루어지는 배관의 특성상 부식시험을 거칠 필요성도 인정되고, 또한 암모니아 공기를 이용한 부식시험은 타법사례인 『소화전 우수품질 형식기준』과 그 방법 및 기준이 동일하며, 미국표준인 『UL 1821, 열가소성 스프링클러 파이프 및 소방서비스용 부품에 대한 표준』에서도 암모니아 부식시험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값이 동 기준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 비중요로 검토

## (29)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신고의무 추가 및 폐업전 지위승계사유 추가 **강화**

- 신고의무 :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시 신고의무 신설
- 지위승계 : 폐업 후 6개월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시 폐업신고 이전의 행정처분 효과 승계

**심사결과** 현행 법률은 입법상의 미비로 인하여 위법행위를 하여 제재처분을 부과 받고도 이를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며, 최근 3년간 소방시설업 재등록 업체 117개 중 56개 업체(48%)가 행정제재처분 부과 후 청문 등 절차 진행 중에 자진폐업을 한 후 재등록을 한 업체일 정도로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이 무용해지고 있는 바, 동 규제 신설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전기공사업법 제9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 등 국내 여러 타법사례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해외사례로서 일본도 소방시설공사업의 폐업 관련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로 검토

**심사내용** 입찰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발주자가 시설업자의 법령 위반사실을 알 경우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발주자가 입찰자의 위법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경우와 소방시설 공사와 관련한 입찰 관련 서류의 위·변조는 입찰 참가자들 간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에 필수적인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동 규제를 통한 제재 필요성이 있고, 타 입법사례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 31조에서도 입찰 서류의 위·변조 등의 경우 제재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로 검토

### (30)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접착제 사용시 『접착제 및 가지배관은 접합부와 동일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것』이라는 주의사항 표기 의무화 및 최대급힘횟수 표기 의무화 **신설**

**심사결과** 배관의 재질 및 접합부, 접착제에 대한 통합된 규격을 만들어, 이를 모든 제조사에 강제 적용하는 경우, 어떠한 제조사의 접합부를 사용하더라도 완벽한 밀착을 이룰 수 있으나, 기술적 여건상 현재 제조사마다 서로 조금씩 다른 배관의 재질을 감안할 때, 이는 제조사에 지나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바, 동 개선안은 동일회사에서 제공하는 가지배관·접합부·접착제를 사용하도록 하여 접착에 따른 오차를 줄이려는 것으로, 피규제자의 부담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규제 필요상황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판단, 비중요로 검토

### (31)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옥외소화전의 설치높이조정 및 강도(단단함)확인시험 도입 **신설**

- 높이조정 : (현행)지면으로부터 450mm 이상 → (개정안) 0.5m 이상 1m 이하
- 강도확인시험 : (신설) 5분간 5 MPa의 압력을 가할시 파괴되지 않고 견딜 것

**심사결과** 소화전은 화재시 내부에서 강한 수압을 견딜 수 있어야만 초기소화시설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이에 대해 두께를 측정하는 것은 각종 충격에 대비하는 측면은 일부 있으나, 내압에 대한 내구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닌 바, 동 시험 신설의 필요성이 있고, 또한, 신설의 내용은 특정 강도의 수압에 대해 5분간 버티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불필요하거나 과도하지 않으며 유사사례로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 13조에서 송수구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본체강도시험기준과 동일한 점 등을 반영, 비중요로 검토



### (32)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수신기의 기록장치 기준을 마련 **신설**

- 999개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정보의 확인·복사·출력이 가능할 것
- 임의적 데이터 수정방지 기능 및 삭제방지 기능을 보유할 것
- 가스 누설신호, 주전원의 ON/OFF 상태, 감지기·중계기 등의 발신신호, 소화설비등의 작동신호 등의 발생 시각을 기록할 것

**심사결과** 형식승인을 받은 수신기 중 50.2%가 이미 기록장치와 유사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등, 이미 보편화된 기술로 개발을 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외사례로서 EN(유럽통합규격)에서도 소방시설의 작동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등, 과도하지 않고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비중요로 검토

### (3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대상, 작성내용, 훈련 횟수 등을 규정 **신설**

- (작성대상)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7호 가목)상 다중이용건축물
- (작성내용) 대응조직 체계 및 구성원 역할, 상황·단계별 대처방법,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 관련사항
- (훈련) 연 1회 실시 후 결과를 환류(feedback)하여 매뉴얼 수정

**심사결과** 상위법의 입법취지가 국민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재난상황을 대비하도록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을 의무화한 것임을 감안할 때, '다중이용 건축물'을 정의한 건축법 제2조 제17호 규정 중 층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나목을 제외하고,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한 가목을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대상으로 함은 타당하며, 동 시설들은 평소 국민 다수의 이용이 잦은 시설로, 그 중에서도 바닥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만이 규제대상에 해당되는 바,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의 규제에 판단하여 비중요로 검토

**심사내용**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관리의무 미이행, 훈련의무 미이행, 개선명령 불응시의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 마련 **신설**

- 작성·관리의무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훈련의무 위반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개선명령 미이행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심사결과** 위기상황 대처에 기본이 되는 매뉴얼 작성·관리와 이에 따른 훈련, 그리고 안전확보에 문제점이 있을 때 내려지는 개선명령에 불응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며, 해외사례로서 영국의 경우 화재안전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의무 위반 시 9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과, 동법 제 40조, 41조의 규정에 따른 위험지역에서의 퇴거명령 및 대피명령에 불응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로 검토

### (34)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물이용 놀이기구 관련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기준 개정 **강화**

- 물놀이 시 안전수칙 및 최대수심 등을 표기한 안전표지판 설치
- 하강공간 주변 돌출된 기둥 및 노출된 기초물 설치 금지
- 활동공간 내 최대수심 300mm 이하
- 배수구 그물망 메쉬 20mm 이하
- 물놀이용 구동구조물(버킷) 등에 추락방지 이중안전장치 설치 등

**심사결과** 기존의 기준에는 그네, 미끄럼틀 등에 대한 설치기준은 있으나 물이용 놀이기구에 대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아, 설치검사시 안전관리에 부적합한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규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동 기준 마련을 통해 이를 제재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검사기준의 내용도 안전표지판의 설치, 추락방지 이중안전장치 설치 등으로 과도하지 않으며, 실태조사 결과 안전표지판은 이미 전 놀이시설에 설치되어 있어 게시내용만 일부 수정하면 되는 등 경미한 비용수준에 비해, 어린이 안전확보라는 편익의 규모가 더 클것으로 예상되어 비중요로 검토



### (35)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준을 규정 **신설**

**심사결과** 자동개폐장치 설치시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의 정상 작동 여부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것인 바, 동 성능인증을 통해 그 품질을 담보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증기준의 내용도 기존에 임의 인증으로 운영되어오던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인정기준’과 동일하며 기존에 이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그대로 인증을 유지하여 주는 등, 기존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로 검토

### (36)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기상특보시 수상레저활동 허용범위 **강화**

- 태풍, 해일시에는 수상레저활동(서프보드, 윈드서핑) 금지

\* (현행) 기상특보(태풍, 해일 풍랑, 호우, 대설)시 관할관청에 신고한 경우 수상레저활동(서프보드, 윈드서핑) 허용

**심사결과** 수상레저활동의 경우 안전사고발생시 국민의 생명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다 안전관리에 철저할 필요가 있으며, 태풍·해일과 같은 기상특보시에는 안전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시, 수상레저기구의 운항허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37)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강화**

- 이용요금 게시(제43조) 위반 : 1차(경고) → 2차(정지1월) → 3차(정지3월) → 4차(등록취소)

- 안전준수사항(제45조, 제48조, 제49조) 위반 : 1차(정지1월) → 2차(정지3월) → 3차(등록취소)

**심사결과** 법위반행위의 경중에 대한 고려없이 제재수준을 정하고 있는 현행 등록취소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며, 수상레저사업장의 경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며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시, 안전준수사항 위반시에는 보다 엄격한 제재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3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유·도선사업의 면허시 필요한 조건 **신설**

- 유·도선사업의 면허시 붙일 수 있는 조건의 세부내용으로,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상상태에 따른 통제기준, 출항 전 승객 안전사항 안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심사결과** 유·도선사업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면허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타법사례(해운법)에서도 여객에 대한 안전강화 및 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출항·입항의 기록·관리 **신설**

- 유·도선의 출항·입항 기록 및 관리대장 등의 비치장소 및 보관기간 등을 규정

**심사결과** 현행 관할관청별로 상이하게 관리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타법사례(선박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운법)에서도 입·출항 정보를 관리하거나 승선신고서(승선권 발급내역 등)을 보관토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39) 인명구조요원·레프팅가이드 자격관리지침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교육기관 신청자격 **강화**

- 인명구조요원·레프팅가이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최근 2년간 인명구조요원·레프팅가이드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매년 5회 이상 관련 민간자격이나 교육이수증을 발급한 실적을 추가적으로 요구

**심사결과** 수상안전요원 교육기관 지정시 해당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의 충실성·신뢰성과 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육기관 지정신청자격으로 일정 수준의 교육실적을 요구하는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 사례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교육실적(연간 약 1개월)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40)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비상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을 훼손·제거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규정 **신설**

- 훼손한 경우 : 과태료 15만원
- 제거한 경우 : 과태료 25만원

**심사결과** 민방위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분단과 휴전상태라는 국가적 현실을 감안할 때, 비상대피시설로의 신속한 대피를 통해 주민안전을 확보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장이 설치한 안내·유도표지판 등을 멸실·훼손하는 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필요성도 인정되며 타법사례로 도로교통법상 위법행위를 한 운전면허학원에 대한 표지제거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가 100만원인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검토

## 6. 국민권익위원회

◎ 집필자 김미영 사무관 ☎ 044-200-2447 ✉ judyca@pmo.go.kr

### 가.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5년도에는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법령에 대해 강화 등 총 13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3건 중 5건은 개선권고하였으며, 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안	본위원회 (2015.01.09)	개선권고 3 원안의결 2	신설 5 (중요 3, 비중요 2)
(2)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	행정사회분과위심사 (2015.07.24)	개선권고 2 원안의결 1	신설 3 (중요 3)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5.07.27)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5.11.09)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b>계</b>	-	<b>개선권고 5 원안의결 8</b>	<b>신설 12, 강화 1 (중요 6, 비중요 7)</b>



## 나. 201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1)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안 (신설 5)

**심사내용** 제재부가금 부과 **신설**

- 공공재정을 제공받은 개인·법인 등 수익자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이 없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금전·재산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부정이익의 금액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금의 1~5배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심사결과** 허위·부정청구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가 심각하므로 금전적 제재 강화를 통해 허위·부정청구 행위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다만, 제정법률안 제9조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의 조문만으로는 사법 적용이 제외되는 공공재정만 적용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규제의 명확성을 위해 ‘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마련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일률적 제재부가금 부과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부가금을 1/2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하고, 제재부가금과 관련한 합리적인 법집행을 도모하고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판단기준 등 세부지침 마련 및 하위법령에 제재부가금 부과 전 심의 절차 마련을 강구할 것을 부대권고

**심사내용**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신설**

- 사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관계 등에서의 공공재정이 △거짓·부정 청구 △부정계약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부정이득 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내에서 배상책임 부과

**심사결과** 사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재정에 대해서도 제재부가금에 상응하는 민사적 조치로써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통해 허위·부정청구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다만, 규제수준이 사법의 적용을 받는 대등한 계약관계라는 점과 타 입법례 등을 고려 시 과도하므로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추가 부처협의 등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적용 대상, 수준 등에 대해 구체화 방안을 강구토록 개선권고

**심사내용** 부정청구 등 조사 및 과세자료 등 요청 **신설**

- 행정청이 부정이익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익자등 및 부정청구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의무 부과
- 부정이익 반환 및 제재부가금 등의 징수를 위해 행정청에게 세무관서 및 지자체에 대한 과세정보 요청권 부여

**심사결과** 효율적인 조사 및 부정이익의 환수 업무 등을 위해 행정청의 조사는 필요하므로 행정청의 조사권, 서류열람·등사 청구권에 대해서는 원안되의하되, 다만, 포괄적으로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 침해 및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높으므로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과세정보 제공범위를 명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을 개선권고

**심사내용**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참여제한 **신설**

-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 및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발주사업 참여를 제한

**심사결과** 동 제정안은 한 사람이 여러 공공기관에 다니며 부정청구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허위·부정청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참여제한과 관련된 입법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상습 부정청구 등 행위자 명단공표 **신설**

-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중 부정이익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 공표

**심사결과** 상습 부정청구 등의 행위 근절을 위해 명단공표 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한 명단공표 여부 심의 및 공표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고 있으며, 유사 입법사례가 다수 있으며, 규제수준도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2)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신설 3)

### 심사내용 조정을 위한 조사 **신설**

- 집단민원(민원인 100인이상) 조정을 위해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조정인에게 조사권한 부여 및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조사에 대한 협조 의무 부과

**심사결과** 조정에 대한 타 입법사례에서도 자료제출, 각종 조사협조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립적 제3자 입장에서 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조사권한 부여 및 당사자 등의 협조의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동의

### 심사내용 조정여부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 **신설**

-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신청이 없어도 긴급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 권익위에 사전조사 권한 부여

**심사결과** 집단민원의 선제적 대응 및 갈등조정을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사전조사(실태확인) 절차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당사자의 자발적인 신청이 없는 사전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자료제출,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전조사 시 제24조(조정을 위한 조사)를 준용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하되, 행정기관등에게만 자료제출, 의견청취 등 최소한의 협조의무를 부과토록 개선권고

###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 **신설**

- 조사의 거부·기피·방해 및 조사 불응(불성실)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

**심사결과** 사전조사(실태확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사권한과 병행하여 위반 시 제재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사전조사 시 조사협조 의무부과 대상에서 국민은 제외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은 행정기관 등으로 한정하도록 개선권고

###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1, 강화 1)

#### 심사내용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신설**

-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장 및 직원은 청렴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

**심사결과**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청렴교육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행 권익위법 제3조에서도 교육·홍보 등의 방법으로 소속 직원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고취를 위해 적극 노력토록 공공기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의무화한 유사 입법례 다수 존재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 **강화**

- 부패행위면직자의 취업제한기관 취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권익위와 공공기관장이 취업제한기관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부패행위면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권익위나 관계공공기관이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취업해제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심사결과** 현행 권익위법상 부패행위면직자의 취업과 관련하여 취업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나 취업해제조치에 불응할 경우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제라고 판단되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윤리법에도 유사한 제재(과태료) 규정이 있는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4)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신설**

- 공익신고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요구, 자료·서류 제출요구, 방문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실태조사 방법·절차 등 규정

**심사결과** 설명 또는 자료·서류 제출요구시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고 있으며, 방문조사시에는 조사의 목적·일시·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토록 규정하여 실태조사의 절차적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사 입법례도 존재하여 비중요 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신설**

-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을 불이익조치 유형별로 차등화하여 마련

**심사결과** 신고자에게 미치는 불이익 정도를 고려, 불이익조치 유형을 3단계로 차등화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의 이행강제금도 차등 부과하고 있는 등 타 입법사례와 비교해 볼 때도 규제가 적정하게 설계된 것으로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특별보호조치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행정소송 등을 통해 확정된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심사결과** 신고자에게 미치는 불이익 정도나 수준에 따라 불이익 조치유형을 3단계로 구분하여 과태료를 차등부과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제재수준이 적정하게 설계된 것으로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제12절 규제영향평가

◎ 집필자 문두식 사무관 T 044-200-2913 E heka214@pmo.go.kr

### 1. 규제영향분석제도 개요

#### 가. 의의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ssessment)”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이는 규제담당자들로 하여금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탐색·설계 시 복수의 규제 대안 및 비규제 대안을 폭넓게 비교·검토하고, 규제의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규제의 비용·편익, 파급효과, 집행의 실효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제시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도모하고 규제의 질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 나. 목적

##### (1) 합리적 정책결정을 통한 규제의 품질제고

규제의 내용에 따라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르므로, 다양한 규제 및 비규제대안의 광범위한 비교·검토를 통해 비용효과적(cost-effective)이고 부작용과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품질 높은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하도록 한다.



## (2) 경제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의 사전예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규제부담만 양산하여 경제활성화와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하고 비효과적인 규제를 사전에 방지한다.

## (3) 규제자의 민주적·합리적 역량 강화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비규제대안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 검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규제대안을 설계하는 규제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 (4) 성공적 국정운영의 기반이 되는 좋은 규제의 제시

규제대안별 비용과 편익을 비롯한 각종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국정운영의 기반을 마련한다.

## 다. 법적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제영향분석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강화하고자 할 때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법 제7조1항)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도록 규정(법 제7조2항)하고 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 관련된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법 제7조4항, 시행령 제6조4항)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6.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① 삭제 <2006.3.3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1> ④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3.31>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2. 평가항목 및 요소

평가요소	세부항목	주요내용
I.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 규제의 내용을 나타내는 사무의 명칭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해당규제에 대한 관리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와 담당부서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부서의 국장 및 과장의 성명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자의 직책 및 인적사항
	3. 관련법령·고시 등	○ 규제가 근거하고 있는 법령이나 고시 등의 명칭
	4.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 규제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피규제자를 비롯하여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
	5. 규제존속기한	○ 5년 범위내에서 설정(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에는 설정이 곤란한 사유 제시
	6. 구분(신설/강화)	○ 규제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경우의 구분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 기존규제의 강화, 존속기한 연장의 경우 현행규제의 내용 중 변경하려는 (심사를 요청하는) 규제의 내용 ○ 신설규제 내용심사의 경우 심사 요청한 규제의 주요내용
	8. 규제체계도 및 법령위계 정보	○ 규제와 관련된 규제체계, 주된 규제 및 근거법령 등 관계의 도표화
	9. 신규조문 대비표	○ 기존규제와 신설 또는 강화되는 조문의 대비표를 별도 파일로 첨부
II.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대두된 사회, 경제적 배경이나 경위(예: 관련업계 등의 현황, 사고나 재난의 발생 등)
	2. 정부개입의 필요성	○ 시장기능 또는 민간의 자율에 맡겨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
	3.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규제도입의 목표와 이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대하는 미래의 상황

평가요소	세부항목	주요내용
Ⅲ. 대안의 발굴·검토	1. 고려된 대안	<p>※ 대안발굴의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의 활용여지 확대</li> <li>· 포지티브(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방식보다는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우선</li> <li>· 투입기준보다는 성과기준 규제 우선</li> <li>· 정부의 일방적 규제보다는 자율규제 우선</li> <li>· 국제적 기준 및 비례원칙 근거</li> <li>· 국제기준을 준수하되, 국내외 기업간의 차별발생 방지</li> </ul> <p>○ 규제목표 달성을 위해 상정할 수 있는 복수의 대안을 명시적으로 제시</p> <p>○ <b>현행유지안</b> :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이며, 신설 규제의 경우 규제가 없는 상황, 규제강화의 경우 현재 규제 또는 동일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존재하는 관련 규제</p> <p>○ <b>비규제대안</b> : 경제적 유인(세금감면 혜택, 저리융자 등), 보조금 지원, 사회운동(각종 캠페인, 공익광고 등) 전개 등과 같은 비규제적 대안</p> <p>○ <b>규제대안 1</b> : 규제당국이 도입하고자 하는 선호된 대안</p> <p>○ <b>규제대안 2</b> :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대안1과 다른 방식의 규제대안(①달 규제적인 대안, ②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규제대안 등)</p>
	2. 대안의 분석	<p>○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해외사례 분석, 타법사례 분석, 위임근거 검토, 이해관계자협의 결과 등에 대한 분석과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검토</p>
Ⅳ.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1. 대안별 분석 비교표	<p>○ 제시된 규제대안들에 대해 각 대안의 영향집단별 비용·편익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직접편익, 간접비용, 간접편익</li> <li>- 피규제 일반국민 : 비용, 편익</li> <li>-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 비용, 편익</li> <li>-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비용, 편익</li> <li>- 정부 : 비용, 편익</li> </ul>
	2.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편익 분석 결과	<p>○ 활동별 산식, 근거설명, 정성적 분석 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대안관련 업무에 따른 활동별 산식, 근거설명(정성적 분석 포함)</li> </ul> <p>※ 산식과 근거설명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제시</p>



평가요소	세부항목	주요내용
V.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1.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대안별 현실적 집행가능성</li> <li>○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현행 행정인력·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li> <li>○ 기술적 집행가능성 : 현행의 보편화된 기술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li> <li>○ 지방자치단체 집행가능성 :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될 경우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li> </ul>
	2.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조치가 중소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평가</li> <li>○ 규제조치가 시장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평가</li> <li>○ 규제조치가 기술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평가</li> </ul>
	3. 대안선택 및 근거	○ 대안의 분석, 대안별 비용·편익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여 선호된 대안을 선택하게 된 근거
	5.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선호된 대안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기대효과
	6.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 선호된 대안에 대한 최종 결정 과정에서 규제 내용 및 집행의 실효성 등에 대해 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 기관 등이 제시한 의견과 그 협의과정 및 조치결과

### 3. 작성 대상 및 절차

#### 가. 작성 대상

모든 신설·강화 규제는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대상이 된다.(행정규제기본법 제7조1항) 규제영향분석과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여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술규제에 대한 중복성 여부의 3개 분야에 대한 규제의 적정성 및 규제 부담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경쟁영향평가(공정위), 중소기업영향평가(중기청), 기술영향평가(산업부)

#### 나. 작성 절차

##### (1)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경우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분석서를 작성한다.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은 규제 등록단위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2개 이상의 규제가 하나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연계 시행되는 경우 분석 내용을 통합하여 1개의 규제영향분석서로 작성이 가능하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여야 하며,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시행령 제6조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수립·통보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조4항 및 5항)

##### (2) 규제영향분석서 공개 및 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 예고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하고, 이 때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법 제7조2항, 시행령 제6조3항)



### (3) 자체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법 제7조3항)

### (4) 규제영향분석서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작성·보완된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 심사를 요청한다. 다만,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13조1항) 다만, 이 경우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법 제13조2항)

### (5)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영향분석서를 토대로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이 충실히 수행되었는지를 검토·심사한다.

- 문제가 정확히 정의되었는가?
- 규제의 신설·강화 등 정부의 조치가 정당한가?
- 복수의 대안을 검토하였는가?
- 규제의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 하는가?
- 외국의 사례 등에 비취볼 때 규제의 정도가 적정한가?
- 이해관계인과의 충분한 협의가 되었는가?
- 규제 집행의 실효성이 있는가?

## 4.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가. 개요

규제개혁위원회는 각 부처의 신설·강화규제 심사건에 대해 경쟁영향, 중소기업영향, 기술영향 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작업단에 분야별 규제영향평가를 요청·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심사시 작업단의 의견을 검토·반영한다.

각 작업단은 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에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규제심사 의뢰(부처→국무조정실), ②평가의뢰(국무조정실→작업단), ③의견수렴 및 평가(작업단), ④검토의견 제출(작업단→국무조정실), ⑤규제심사(국무조정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는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 규정<sup>\*</sup>」에 따라 규제개혁작업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2013.4.15.)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공정위) :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중기청) : 중소기업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 기술규제개혁작업단(산업부) :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분야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 나. 경쟁영향평가

### (1) 개념

경쟁영향평가는 정부나 여러 규제기관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새로운 규제 또는 이미 도입한 규제가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평가하며, 경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한다.

### (2) 추진경과

OECD경쟁위원회는 규제당국이 규제를 신설·강화할 경우 스스로 경쟁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하며 2007년 경쟁영향평가 Toolkit을 제작하여 각 국가에 배포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공정위가 담당토록 제도화하였고 2010년 10월 OECD 경쟁위원회(프랑스 파리)에서 우리나라의 경쟁영향평가 제도 및 실제운용사례를 세계 최초로 발표하였다.

### (3) 목적

제안된 규제가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규제안의 도입단계에서부터 경쟁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여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신설·강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4) 대상

각 부처의 법령 제·개정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5) 2015년도 경쟁영향평가 검토결과

국무조정실은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에 571건의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경쟁영향 평가를 요청하였다. 작업단 검토결과, 총 16건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 있음’ 의견을 제시하고 2건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 미미’ 의견을 제시하였다. 작업단이 ‘경쟁제한성 있음’ 의견을 제시한 16건 중 11건이 규제조정실의 규제심사 과정에서 반영(반영률 : 69%)되었다.

(6) 2015년도 경쟁영향평가 주요 검토내용

연번	부처명	법률(고시)명	규제심사안	의견내용
1	해양수산부	어선법	어선중개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변경등록 의무, 등록유효기간, 등록의 갱신, 교육 등을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감독권한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 어선중개업자의 시장진입이 제한되어 공정·자유로운 경쟁제한 우려</li> <li>○ 해운중개업자도 별도의 어선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입할 수 있도록 어선중개업자로 의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또는 어선법 개정안에 어선중개업자로 의제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li> </ul>
2	국토교통부	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에서 위임된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 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부지 면적기준을 선별·파쇄업은 7,000㎡, 바다골재 선별·세척업은 1,000㎡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재 선별·파쇄업자의 신고요건을 강화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야적장을 보유한 사업자만이 시장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 사업자와 달리 신규사업자에게만 동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할 우려</li> <li>○ 사업계획서상 처리물량에 연동하는 야적장면적 확보기준을 마련하여 불법 토지점유 등의 사례를 예방하고 관련사업자의 진입도 자유롭게 할 필요</li> </ul>
3	미래창조과학부	방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타사업 지배력의 부당한 전이방지 의무를 정부에게 부과</li> <li>○ 다른 사업자의 지배력이 유료방송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합상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후생 제고 효과는 큰 반면, 지배력 전이의 객관적 증거는 없으므로 규제당국의 사전규제는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는 등 경쟁제한 가능성이 높음</li> <li>○ 시장지배력 전이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위를 통한 사후적인 규율 가능성도 열려 있으므로 규제의 신설은 불필요</li> </ul>
4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수익사업 승인기준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li> <li>○ 다른 보훈단체에 이미 승인한 사업과 업종 또는 품목이 다른 경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수익사업을 시작하는 보훈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특정업종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며,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회피하게 하여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등 공정 경쟁을 제한할 우려 있음</li> <li>○ 법률에서 허용한 수익사업을 시행규칙에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훼손에 해당할 수 있음</li> </ul>



## 다.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 (1) 개념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는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업활동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평가하고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 신설·강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14,177건(13.6월 기준) 중 중소기업 관련 규제는 전체의 58.5%인 8,291건

### (2) 추진경과

2008년 8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6차 회의를 통해 8개부처 합동으로 보고한 “중소기업제도 개혁방안”을 검토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8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 시 중소기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개정을 개정하였다.

2013년 6월에는 중기영향분석 시 중소기업의 규제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을 개정하였다.

### (3) 목적

각 부처의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의 비용 및 편익, 파급효과, 집행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가 도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4) 대상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는 신설·강화되는 법령(고시 등 포함) 중 직·간접적으로 중소기업을 피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모든 법령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소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하며, 비영리 기업이지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일부도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 (5) 2015년도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검토결과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에 245개 법령(시행규칙, 고시포함), 550건의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하였다. 작업단 검토결과, 15건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시 8건이 반영(반영률 : 53%)되었다.

### (6) 2015년도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주요 검토내용

연번	부처명	법률(고시)명	규제심사안	의견내용
1	해양수산부	항만운송사업법	부두운영회사가 선정될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화물유치계획 및 투자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위약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물유치계획 및 투자계획 달성도에 따라 부두운영회사* 위약금 부과 시 기업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위약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이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 필요</li> </ul>
2	국민안전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2019.1.1. 이후 과징금 금액 1일 산정기준을 1일당 평균 매출액에 영업이익율과 기준경비율을 반영한 적정과징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기준으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종별 적정과징률 산출기준을 2010년('11)~2012년('13)까지의 3년 평균으로 하고 매해 업황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함에도, 산출기준의 변동없이 적용하여 업체의 영업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li> <li>○ 따라서, 3년마다 재검토하여 산출기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필요 있음</li> </ul>
3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식품에 “순대”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년 10월 1일 순대가 식품위생법 소관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리품목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업체에서 축산물 가공·유통을 위한 시설기준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보완을 위하여 이미 많은 비용을 부담한 상황에서, 또 다시 HACCP 적용을 위한 자본을 투자해야 하는 문제 발생</li> <li>○ 이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은 도산, 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어 HACCP 시행 보류 필요. 순대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 식품위생법 위반시 벌칙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방안 모색 필요</li> </ul>



## 라. 기술규제영향평가

### (1) 개념

기술규제<sup>\*</sup>영향평가는 각 부처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개정 시에 기존·유사제도와 중복성 여부 및 국가표준(KS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여부 등을 파악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이나 시험·검사·인증 등

### (2) 추진경과

2012년 7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검토하고 기술기준, 인증제도 관련 법령 제·개정 시에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을 개정하고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신설하였다.

2014년 1월 ‘기술규제영향평가 매뉴얼’을 제정하였고, 2015년 8월 규제개혁위원회가 보고한 ‘신설인증 규제심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의원입법으로 신설되는 인증제도에 대한 별도의 검토 톨을 추가하여 개정하였다.

2015년 8월 전부처 기술규제 개선 TF 운영을 통해 기술규제 애로 발굴하고 동년 12월에는 17개의 기술규제 개선방안 과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 (3) 목적

각 부처의 기술규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의 비용, 편익, 파급효과, 규제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 대안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기술규제가 글로벌스탠더드에 적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4) 대상

기술규제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거나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과 시험·검사·인증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기술기준은 상품(농산품 포함)의 특성·공정·생산·유통·폐기 및 서비스의 제공·절차 등에 관한 기준으로 그 준수가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강제되는 것을 말하며, 시험, 검사, 인증 등은 제품, 시스템, 자격심사, 서비스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평가하는 활동을 뜻한다.

#### (5) 2015년도 기술규제영향평가 검토결과

국무조정실은 “기술규제개혁작업단”에 25개 부처(청)의 275개 법령(시행규칙, 고시포함), 602건의 기술규제영향평가 요청하였으며, 작업단은 602건의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총 102건의 분야별 검토의견 제시하였다.

102건(16.9%)의 검토의견 제시 중, 의견수용 53건(52.0%), 수용곤란 49건(48.0%)으로 처리되었다.



(6) 2015년도 기술규제영향평가 주요 검토내용

연번	부처명	법률(고시)명	규제심사안	의견내용
1	국토교통부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기준 고시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기준 고시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 기준(별표1)에서 성능기준을 국가표준(KS)과 일치화
2	국민안전처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ISO 7165와 일치화
3	해양수산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리나업 등록기준 및 변경등록사항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와 마리나선박이 중복
4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국외시험·검사기관의 유효기간 규정	현행 국내 시험·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은 3년인 바, 국외 시험·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는 것은 역차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음. 동 개정은 국외시험·검사기관의 자격유지와 관련한 중요한 변경이므로 WTO/TBT협정에 따라 TBT통보가 이루어져야 함
5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필터링된 급기·배기 및 음압제어’의 수준을 명확화
6	문화체육 관광부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우수공예품의 지정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우수공예품의 지정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어떤 제품을 제3자(인증기관)가 표준(기준)에 따라 기술적 성능의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인증’의 형태임
7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비용기보증금포함제품의 제조자 등의 준수사항	모든 소매업자에게 빈용기 반환장소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한 사항(별표5, 3호, 나목)과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판매시 제품의 가격과 빈용기 보증금액을 분리하여 표시하도록 한 사항(별표5, 3호, 마목)은 현실적으로 모든 소매업자가 준수하기 어려운 과도한 규제로 판단
8	농림축산 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신청 및 승계 등 절차	인증의 대상이 되는 산업이 기존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의 대상과 중복될 우려

2015

WHITE PAPER ON REGULATORY REFORM BOOK

국민행복  
경제부흥의  
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혁하여 기업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 Part 05

## 제5장

### 규제개혁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1절 2015년 규제개혁 평가	716
1. 규제개혁 평가 개요	716
2. 2015년 규제개혁 평가결과	717
3. 부처별 평가결과	717
4. 분야별 평가결과	718
제2절 2016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720
1. 기본방향	720
2. 중점 추진분야	720

## 제1절 2015년 규제개혁 평가

◎ 집필자 박현수 사무관 T 044-200-2452 E qkrgustn@pmo.go.kr

### 1. 규제개혁 평가 개요

규제개혁의 실효성 확보 및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노력 및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있다. 2015년에는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단순한 규제개선 건수 보다는 ‘현장에서 얼마나 개선되었느냐’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였다.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대상기관 중 등록규제가 30개 미만인 기관(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권익위, 법제처,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농진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을 제외한 2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27개 기관의 1년간 규제개혁 실적과 성과를 장관급 기관(18개)과 차관급 기관(9개)으로 구분하였으며,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처업무특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2개 분과(경제, 사회)로 범주화(Grouping)하여 평가하였다.

평가항목은 핵심규제, 경제단체 건의과제, 기존규제 등 2015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규제시스템 개혁 과제들을 대상으로 하되, 홍보실적 및 규제개혁 만족도 등 국민성과체감 관련 항목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2014년부터 평가항목으로 추가된 규제비용총량제 항목이 2015년에는 시범사업 부처 확대, 규제비용자동산정시스템 도입 등으로 평가가 더욱 강화되었다.

2008년부터 규제개혁추진에 현장·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규제개혁 평가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규제개혁 만족도 및 규제영향분석 충실성 등의 평가는 전문연구기관(리서치 기관, 한국행정연구원)을 활용하고 있다.



## 2. 2015년 규제개혁 평가결과

기업과 국민이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규제개혁의 기본 틀을 혁신했던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현장의 체감도를 중점으로 접근하였다.

부처별 핵심규제 정비, 경제단체 건의과제 이행, 기존규제 정비 등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3·4차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1·2·3차 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과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하였다.

- (규제시스템)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확대 실시('14년 7개 부처 → '15년 15개 부처), 규제비용편의 자동산정시스템 구축, 규제등록체계 개편
- (경제단체 건의) 1차 수용과제 114건, 2차 수용과제 123건, 3차 수용과제 73건 개선 추진

또한,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애로해소를 위해 규제신문고, 손톱 밑 가시 등의 추진을 지속적으로 했으며, 규제정보포털도 개편을 통해 규제관련 법령정보를 연계하였다.

- (규제신문고) 수용률 40.1% 달성('15.11월)으로 '13년 대비 5배 이상 상승
- (손톱 밑 가시) '15년 완료 예정 과제 162건 중 158건 완료(97.5%)
- (규제정보포털) 부처별 규제법령 정보 연계, 규제개혁 추진상황 실시간 공개 등

## 3. 부처별 평가결과

평가결과,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가지고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다. 장관급 기관에서는 인증규제 개혁(미래부·산업부 등), 환경·입지규제 합리적 개선(환경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입지·물류 관련 규제 개혁(국토부),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 및 정비(행자부)를 추진한 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산지이용 및 산림개발 제한 완화 등으로 투자를 활성화한 기관(산림청), 규제현장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과제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 기관(중기청), 신산업 창출 및 융복합 제품 등을 위해 창의적으로 규제를 개선한 기관(식약처)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이 낮고, 과제에 대한 이행도 등이 저조한 기관이 미흡한 기관으로 평가되었다.

## 4. 분야별 평가결과

### 가. 파급력 큰 핵심분야 규제개혁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핵심분야의 규제개혁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경제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파급력 큰 과제들을 선정하였다. 특히 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등의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통해 입지·건축 등 파급력 있는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최종 선정 과제는 정상 추진을 위해 월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였다.

#### 주요성과

- 총 1조 1천억원의 경제적 효과 및 1만2천개 일자리 창출  
(’14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150건 중 39건 표본조사 결과, ’15.10월)  
\* (주요사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민간출자 확대(3,400억원 투자), 산지에서 10만㎡까지 풍력발전시설 설치(675억원 투자, 150명 고용유발 등)
- 203개 인증 전수조사·현장조사 실시 및 정비 추진  
\* 약 23만개 중소기업이 연간 5천억원 비용절감 및 8천억원 매출증가 기대(KDI 검증, ’15.9월~10월)

### 나.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개혁

국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껴야한다는 취지 아래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경제단체에게 직접 과제를 받아 해결하는 경제단체 건의과제, 국민들이 건의한 규제애로를 해결하는 규제신문고, 현장간담회를 통해 추진하는 손톱 밑 가시 등을 통해 현장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주요성과**

- 규제신문고 수용률 40.1% 달성  
( '15) 40.1%(3,097/7,963건) > ( '14) 36.6%(2,301/6,281건) > ( '13) 8%(24/300건)
- 경제단체 건의과제 단기간 집중 개선  
\* '14.12월 1차 수용과제 114건 중 113건(99.1%), '15.7월 2차 수용과제 123건 중 114건(92.7%) 완료,  
'15.12월 3차 건의과제 90건 중 73건(81.1%) 수용
- 현장간담회를 통한 경제단체, 기업인 등 건의과제(손톱 밑 가시) 1,625건 중 198건 발굴  
\* 198건 중 12월말 완료 과제 162건 기준 158건 완료(97.5%)

### 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현장과 맞닿아있는 지역에서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하자는 인식 하에, 규제개혁 최초로 지방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11대 분야 6,440건을 발굴하였고 규제 정비를 위해 국토·산업 등 우선정비 5대 분야를 포함한 분야별 3단계 정비를 추진하였다. 1단계는 2015년 10월말, 2단계는 2015년 12월말에 완료했으며, 3단계는 2016년 3월말까지 추진 예정이다. 또한, ‘법령-자치법규 연계시스템’ 등을 통해 정비과제 여부, 정비율을 공개중이며, 전국규제지도 공표를 통해 지자체 규제개혁 현황을 공개하고 독려하고 있다.

**주요성과**

- 지방규제 11대 분야 6,440건 발굴·정비 추진  
\* ( '15.12월말 기준)총 6,440건 중 입법예고 이상 진행 5,929건(92.1%), 정비완료 5,171건(80.3%)
- 전국규제지도 공표  
\* 전국규제지도 공표 후 경제활동 친화지역 상위등급인 S·A등급 지자체 수 대폭 증가  
(S, A등급 : '14.12월 68개 → '15.12월 110개)

### 라. 규제시스템 혁신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규제개혁을 뒷받침하는 규제시스템도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개편·정비되었다. 먼저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확대(7→15개 부처) 및 규제 비용·편익 자동산정시스템 도입을 통해 부처의 규제영향분석 질적 수준을 제고하였다. 또한, 규제등록 단위를 규제 ‘사무’에서 규제 ‘조문’으로 변경하는 규제등록체계의 개편을 통해 규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미등록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 제2절 2016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 집필자 박현수 사무관 ☎ 044-200-2452 ✉ qkrgustrn@pmo.go.kr

### 1. 기본방향

그간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4차례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와 지역현장을 순회하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현장과 수요자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개혁을 심없이 추진해 왔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2015년 말까지 규제개혁을 통해 현장에서 이루어진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 총 5.5조원 규모의 투자창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6년 규제개혁은 지난 3년간 개선하기로 약속한 규제개혁 과제들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세계경기 침체, 북한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규제개혁 대책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 2. 중점 추진분야

먼저 2016년 규제개혁은 ①‘원칙 폐지’ 네거티브 방식 규제개혁, ②‘사전 허용·사후규제’ 본격 도입, ③민간이 결정하는 규제 시스템 등 규제패러다임 혁신 3대 원칙하에 생명·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모두 푼다’는 각오로 특단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우리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분야의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할 예정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획일적이고 사전적인 규제로 인해 사장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는 일단 출시토록 허용하고 사후에 보완하는 사후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신속히 도입, 추진할 것이다. 또한 신산업 분야 민간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신산업 투자위원회’를 국무조정실에 설치해 민간이 개선여부를 직접 결정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규제로 재설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속한 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규제에 대해 일정기간 i)규제완화, ii)집행중단, iii)시행연기를 하는 ‘한시적 규제완화·유예’를 도입하여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활력 넘치는 기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조달 진입규제 혁파, △중소기업 차등규제 적용, △행정부담 비용 경감 등 ‘중소기업 경영부담 경감 3대 프로젝트’를 기획,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규제개혁의 모든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인드 변화가 필수적이다. 이에 인허가 간주제 확대 등 공무원 소극행태 사전차단을 위한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법령에 없는 주민동의서 요구 등 현장의 불합리한 행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현장과 맞지 않는 중앙정부 규제개선, 전국규제지도 확대·개편 등 지방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 2015

WHITE PAPER ON REGULATORY REFORM BOOK

## 규제개혁이 만드는 미래를 잇는 길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길,  
바로 규제개혁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정한 평가와 거 큰 비전을 가진 추진 방향으로  
행복한 미래로의 길을 잇겠습니다.



# Part 06

## 제6장

### 부 록



<b>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일지</b>	<b>724</b>
1. 본 회의 개최 일지	724
2. 경제분과위원회 개최 일지	726
3. 행정사회분과위원회 개최 일지	727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일지

## 1. 본 회의 개최 일지

☎ 집필자 박성준 사무관 ☎ 044-200-2398 ✉ econlaw@pmo.go.kr

회차	소관부처	안건명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개선	철회	계
제361회 (15.12.24)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국무조정실	기술규제 개선방안	의결	0	0	0	0
제360회 (15.12.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1
제359회 (15.12.11)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0	
	국무조정실	2016년도 기존규제 정비지침	의결	0	0	0	0
제358회 (15.11.27)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0	
제357회 (15.11.13)	환경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0	1	0	1
제356회 (15.10.30)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의결	안건철회		0	
제355회 (15.10.16)	교육부	교과용도서예 관련 규정 개정안	의결	0	0	1	1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제354회 (15.09.18)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2	0	2
	국무조정실	규제등록체계 개편방안	의결	0	0	0	0
	교육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0	1	1
제353회 (15.09.0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의결	1	2	0	3
제352회 (15.08.27)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0	2
	미래창조과학부	방송법 개정안 (부처재심사요청)	의결	1	0	0	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개정안 (부처재심사요청)	의결	1	0	0	1
	국무조정실	2015년도 도래일몰 심사방안	보고	0	0	0	0
제351회 (15.07.24)	미래창조과학부	방송법 개정안	의결	0	0	1	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개정안	의결	0	0	1	1
	국무조정실	2015년도 규제신문고 상반기 운영성과	보고	0	0	0	0
	국무조정실	2015년 상반기 손톱맡가시 추진실적	보고	0	0	0	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개정안	의결	0	1	0	1



회차	소관부처	안건명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개선	철회	계
제350회 ( '15.07.10)	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의결	3	3	0	6
제349회 ( '15.06.26)	국토교통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의결	0	0	0	0
제348회 ( '15.06.12)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1
	국무조정실	신설인증 심사강화 방안	보고	0	0	0	0
제347회 ( '15.05.22)	국토교통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0
	국무조정실	2015년도 규제정비계획	보고	0	0	0	0
	국민안전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2	0	0	2
제346회 ( '15.05.08)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0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개선권고 과제안	의결	0	0	0	0
제345회 ( '15.04.10)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0	2	0	2
제344회 ( '15.03.27)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0
제343회 ( '15.03.1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2	0	2
	금융위원회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융복합단지 활동성과 및 향후계획	보고	0	0	0	0
	국무조정실	2015년 행정규제 업무관리방안	보고	0	0	0	0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제342회 ( '15.02.27)	국무조정실	2015년 규제정비지침	의결	0	0	0	0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개선(안)	보고	0	0	0	0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2015년 업무계획	보고	0	0	0	0
	국무조정실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	0	0	0	0
제341회 ( '15.01.23)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운영 개선방안	보고	0	0	0	0
	국무조정실	규제등록체계 개편방안	보고	0	0	0	0
제340회 ( '15.01.09)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안	의결	0	3	0	3
	국무조정실	2015 규제개혁 추진방향	보고	0	0	0	0
	국무조정실	2014년도 규제개혁 평가결과	보고	0	0	0	0
<b>계</b>		<b>안건수 : 52</b>		<b>11</b>	<b>25</b>	<b>4</b>	<b>40</b>

## 2. 경제분과위원회 개최 일지

◎ 집필자 박성준 사무관 ☎ 044-200-2398 ✉ econlaw@pmo.go.kr

회차	소관부처	안건명	안건구분	회의결과			
				원안	개선	철회	계
제501회 (*15.12.24)	해수부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결	계속심사			0
제500회 (*15.12.11)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고시 등 개정안	의결	0	1	0	1
제499회 (*15.11.27)	농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1
제498회 (*15.11.13)	금융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의결	3	0	0	3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의결	3	0	0	3
제497회 (*15.10.30)	해수부	재검토형 일몰규제	의결	1	0	0	1
	기재부	재검토형 일몰규제	의결	1	0	0	1
제496회 (*15.10.16)	방통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검토형 일몰규제	의결	1	0	0	1
	공정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의결	1	0	0	1
	금융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의결	0	1	0	1
제495회 (*15.10.08)	금융위	증권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1	0	0	1
제494회 (*15.09.18)	산림청	재검토형 일몰규제	의결	1	0	0	1
	중기청	재검토형 일몰규제	의결	0	1	0	1
	농식품부	재검토형 일몰규제	의결	1	0	0	1
	국토부	재검토형 일몰규제	의결	1	0	0	1
	산업부	재검토형 일몰규제	의결	0	1	0	1
제493회 (*15.07.10)	금융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0	0	1
제492회 (*15.05.22)	금융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0	1	0	1
제491회 (*15.05.08)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제490회 (*15.04.10)	해수부	어선법 개정안	의결	0	1	0	1
제489회 (*15.03.27)	해수부	도선법 개정안	의결	1	0	0	1
제488회 (*15.03.13)	산업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1
제487회 (*15.02.27)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의결	0	1	0	1
제486회 (*15.02.13)	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b>계</b>		<b>안건수 : 24</b>		<b>19</b>	<b>8</b>	<b>0</b>	<b>27</b>



### 3. 행정사회분과위원회 개최 일지

☎ 집필자 안 호 사무관 ☎ 044-200-2443 ✉ anho1226@pmo.go.kr

회차	소관부처	안건명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개선	철회	계
536회 (15.12.11)	교육부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0	1	0	1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1
535회 (15.11.13)	안전처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제정안	의결	0	1	0	1
	환경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0	1	0	1
534회 (15.10.30)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경찰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533회 (15.10.16)	노동부	재검토형 일몰도래 규제 심사	의결	0	1	0	1
	경찰청	2015년 재검토형 일몰도래 규제심사안	의결	1	0	0	1
	식약처	2015 재검토형 일몰규제 규제심사	의결	0	1	0	1
	교육부	2015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규제심사	의결	1	0	0	1
	문체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1
	환경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532회 (15.10.13) * 서면	문체부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1	0	2	3
531회 (15.09.18)	문체부	재검토형 일몰도래 심사	의결	0	1	0	1
	여가부	2015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	의결	0	1	0	1
	환경부	'15년 내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심사	의결	1	0	0	1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1
	교육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결	1	1	0	2
530회 (15.08.27)	보훈처	국가공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정안	의결	0	1	0	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회차	소관부처	안건명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개선	철회	계
529회 (15.08.13)	복지부	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보훈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530회)			0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530회)			0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정안	의결	계속심사(530회)			0
528회 (15.07.24)	권익위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1	2	0	3
527회 (15.07.10)	안전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의결	1	1	0	2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526회 (15.06.12)	안전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0	1	1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결	0	1	0	1
525회 (15.05.22)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0	0	2
	노동부	재검토형 일몰도래 규제 심사	의결	1	0	0	1
524회 (15.05.08)	안전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523회 (15.04.10)	권익위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계속심사 (528회)			0
	여가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0	1	0	1
522회 (15.03.27)	복지부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1
521회 (15.03.13)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의결	0	1	0	1
520회 (15.03.03) * 서면	식약처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1
519회 (15.02.13)	문체부	도서관법		계속심사 (2.25 부처철회)			0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결	1	0	0	1
518회 (15.01.23)	환경부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제정안	의결	1	0	0	1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1
<b>계</b>		<b>안건수 : 46</b>		<b>18</b>	<b>26</b>	<b>3</b>	<b>47</b>

2015년도  
**규제개혁백서**

---

발 행 일 : 2016. 4.

발 행 처 : 규제개혁위원회

편 집·인 쇄 : 경성문화사(044-868-7636)

